

1999년도

규제개혁 백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김종필 국무총리가 위원회 발족 1주년을 맞아 위원들을 공관에 초청하여 격려하고 있다(1999. 4. 23).



새로 국무총리에 취임하신 박태준 위원장께서 규제개혁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2000. 1. 18).



위원장이신 박태준 국무총리께서 제47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2000. 1. 28).



경제1분과위원회 회의 장면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 장면



경제2분과위원회 회의 장면

발간사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조속한 경제회생과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면서, 한편으로는 경제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나라, 삶의 질이 높고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행정규제를 개혁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경제개발시대에 양산되었던 중앙행정기관의 기존규제를 대폭 정비하고, 사업자단체 규제 개혁 등 여러 부처에 걸친 고질적이고 복합적인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혁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의 규제개혁 노력의 결과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와 벤처기업의 활성화 등 많은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우리의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은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동안 짧은 기간에 많은 규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고 또 폐지된 일부규제에 대한 보완대책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와 함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2000년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추세에 걸맞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다듬어가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교육·인력개발 분야, 벤처기업 분야, 전자통신 분야 등에 대한 규제개혁에 더욱 역점을 두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을 개발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소관규제를 개혁해 나가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 무 총 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백태준

규제개혁백서 발간에 부쳐

정부는 지난 2년간 민관합동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1998년도에 중앙행정기관의 기존규제를 전수조사하여 전체 11,125건의 규제 중 48%를 폐지하고 22%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데 이어, 1999년도에는 나머지 잔존규제를 대상으로 2단계 규제정비작업을 추진하여 503건(7.4%)의 규제를 폐지하고 570건(8.4%)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외국인투자,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 등 다수의 법령과 여러 부처에 얹혀 있는 핵심덩어리 규제 70여개 과제를 선정하여 일괄정비 하였습니다.

또한 1998년 6월 이후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해야 할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규제의 증가를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1999년 12월 현재 총 1,325건의 신설·강화규제를 심사하여 455건(34.3%)의 규제를 철회 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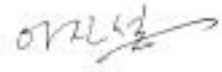
특히, 1999년도에는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 나가고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미진한 분야를 시정하였습니다.

본 백서가 공무원에게는 업무지침서로서, 국민 여러분에게는 규제개혁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제1장에서는 국민의 정부 2년간의 규제개혁을 총론적으로 개관하고, 제2장에서 제5장까지는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자료집처럼 자세하게 기록하였으며 제6장은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2000년도 추진계획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동안 규제개혁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규제개혁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규 제 개 혁 위 원 회

공 동 위 원 장



제 1 장 국민의 정부 2년간의 규제개혁 개관

제1절 규제개혁 2년의 추진실적 · 25

Ⅰ. 중앙행정기관소관 규제의 전수조사 및 일괄정비 · 26

1. 제1단계 정비 · 26 / 2. 제2단계 정비 · 27

Ⅱ. 핵심 규제개혁과제 추진 · 30

1. 핵심과제 추진개요 · 30 / 2. 기대효과 · 33

Ⅲ. 신설·강화규제 심사 · 34

1. 제도개요 · 34 / 2. 심사실적 · 34

제2절 규제개혁관련 법령정비 · 37

Ⅰ. 법률정비 추진실적 · 37

1. 국회제출 현황 · 37 / 2. 국회심의 현황 · 38

Ⅱ. 국회 수정법률의 재입법 추진 · 39

1. 추진배경 · 39 / 2. 국회 수정 및 재입법 추진현황 · 39

Ⅲ. 규제개혁관련 하위법령 정비 · 43

제3절 규제의 등록 및 공표(누락규제 등록) · 44

Ⅰ. 규제 등록관리 · 44

1. 규제등록지침 개정 보완 · 44 / 2. 부처별 규제등록 현황 · 45 / 3. 누락규제 정비 · 46

Ⅱ. 등록규제의 공표 · 47

1. 추진개요 · 47 / 2. 서비스의 내용 · 48

|| 규제개혁백서 ||

Ⅲ. 규제등록·관리 및 향후계획·48

제4절 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국민제안·49

Ⅰ. 규제신고센터 설치·운영·49

Ⅱ. 국민제안 접수·처리실적·50

Ⅲ.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53

제5절 규제개혁 성과홍보 및 교육·54

Ⅰ. 규제개혁 성과관련 홍보·54

1. 그동안의 규제개혁 성과홍보 추진실적·54

2. 규제개혁관련 홍보내용(1998.11 ~ 1999.12)·55

Ⅱ. 규제개혁관련 교육·58

1. 공무원에 대한 규제개혁관련 교육훈련의 내실화·58 / 2. 규제개혁관련 연구자료를 공무원 교육에 활용하도록 전 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에 배포·59 / 3. 각급 행정기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에 강사 지원·59

제2장 핵심규제개혁과제 추진실적 및 성과

제1절 진입규제 개혁·63

Ⅰ. 자동차운송사업 진입규제 개선방안·63

1. 검토배경·63 / 2. 규제개혁의 기본방향·64 / 3. 규제개혁방안·64

Ⅱ. 농업관련산업 진입규제 개선방안 · 70

1. 규제개혁의 기본방향 · 70 / 2. 세부규제 개혁방안 · 72

Ⅲ. 금융산업 진입규제 완화 · 84

1. 현행 진입기준 및 문제점 · 84 / 2. 자본금기준 완화시 고려사항 · 87 / 3. 진입규제 개선방안 · 89 / 4.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91

제2절 기업활동관련 규제개혁 · 92

I.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방안 · 92

1.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의 기본방향과 과제 · 92 / 2. 세부과제별 규제개혁방안 · 94

Ⅱ. 경쟁제한적인 수출입 및 관련산업에 대한 규제개선방안 · 131

1. 우리나라의 수출입규제제도 개요 · 131 / 2. 세부과제별 개선방안 · 134

Ⅲ.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 출연금 개선방안 · 147

1. 현황 및 문제점 · 147 / 2. 개선방향 · 149 / 3. 조치계획 · 151

Ⅳ. 약용작물의 가공 및 유통관련 규제개선 · 151

1. 추진배경 · 151 / 2. 분야별 개선방안 · 152

V. 기업의 준조세관련 규제개혁 · 161

1. 준조세 현황 · 161 / 2. 준조세의 문제점 · 163 / 3. 검토의 한계 · 164 / 4. 규제개혁 기본방향 · 164 / 5. 분야별 정비개혁방안 · 165

Ⅵ. 양식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방안 · 169

1.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현황 및 특징 · 169 / 2. 과제별 규제개혁 추진계획 · 169 / 3.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174

Ⅶ. 농산물의 가공 및 식품산업관련 규제개혁 · 174

1. 추진배경 · 174 / 2. 주요 규제개선방안 · 174 / 3.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191

Ⅷ.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의 개선방안 · 192

1. 검토배경 · 192 / 2.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현황 · 195 / 3. 개선방안 · 197

Ⅸ.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 · 200

|| 규제개혁백서 ||

1. 전자거래의 개요 · 200 / 2.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 · 202 / 3. 향후 추진계획 · 205

X. 규제자유지역 설치방안 · 205

1. 과제 추진배경 및 과제의 성격 등 · 205 / 2. 규제자유지역 설치방안 연구용역보고서 요약 · 206 / 3. 추진방안 · 211 / 4. 기대효과 · 217 / 5. 향후계획 · 217

제3절 행정절차 개선 · 218

I. 증명민원제도 규제개혁 · 218

1. 추진개요 · 218 / 2. 감축내용 · 219 / 3. 향후 조치계획 · 225

II. 비영리법인 설립 · 감독관련 규제개혁방안 · 225

1. 규제현황 · 225 /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 225 / 3. 개선방안 · 226 / 4.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 일정 · 233

제4절 건설 · 도시분야 규제개혁 · 234

I.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제개선방안 · 234

1. 검토배경 · 234 / 2. 규제개혁방안 · 235

II. 주택공급 자율성 확대방안 · 241

1. 검토배경 · 241 / 2. 주택시장 실태 · 242 / 3. 1998년중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주요내용 · 243 / 4. 규제개혁방안 · 244

III. 비업무용 토지제도 및 공장업종구분 개선방안 · 251

1. 검토배경 · 251 / 2. 규제개혁방안 · 251

IV. 민간건축물 공사감리관련 규제개혁방안 · 258

1. 검토배경 · 258 / 2. 공사감리제도 현황 · 258 / 3. 규제개혁방안 · 264

제5절 단체·자격제도 개혁·271

I. 전문자격사관련 규제개혁·271

1. 추진경과·271 / 2. 전문자격사관련 규제개혁방안(제27차 1999. 4. 9)·272 / 3. 부처별 자
체정비계획안 및 규제개혁방안·274 / 4. 향후 조치계획·287

II. 국가자격제도관련 규제개혁·287

1. 현황 및 문제점·287 / 2. 규제개혁방안·288 / 3. 기대효과·290 / 4.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
일정·290

III.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추진·290

1. 1998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290 / 2. 1999년도 법령정비 결과·292 / 3.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301

제6절 안전·의료분야 규제개혁·303

I. 산업현장 안전기준 등 관련규제 합리화방안·303

1. 안전보건 교육의 합리화·303 / 2.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 규제 폐지·305 / 3.
보험급여 결정시 사업주의 청문제도 도입·306 / 4. 청소년수련시설법인 운영책임자 선임제한 폐
지·307

II. 석유·화학시설 등의 안전관리관련 규제개혁·308

1. 현황 및 문제점·308 / 2. 규제개혁방안·309 / 3. 기대효과·311 / 4.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
일정·311

III. 건설현장 안전관리관련 규제개혁·311

1. 현황 및 문제점·311 / 2. 규제개혁방안·312 / 3. 기대효과·315 / 4.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
일정·316

IV. 소방관련 법령·규제 정비계획·316

1. 추진경위·316 / 2. 소방법령체계 개편방안·317 / 3. 규제정비 계획·320 / 4.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325

|| 규제개혁백서 ||

V. 지정진료제도 개선방안 · 325

1. 규제현황 및 문제점 · 325 / 2. 개선방안(선택진료제도 실시방안) · 326 / 3.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327

제7절 교육 · 문화분야 규제개혁 · 328

I. 저작권관련 규제개혁 방안 · 328

1.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운영체제 개선 · 328 / 2. 분야별 규제개혁 방안 · 329

II. 문화산업관련 규제개혁방안 · 331

1. 등록관련 규제개선 · 331 / 2. 게임제공업종 구분관련 규제개선 · 333 / 3. 등급분류제도 개선 · 335 / 4. 수입 · 반입 추천제도 개선 · 336 / 5. 기타 게임제공업종소관련 규제개선 · 337 / 6. 청소년 연령기준 정비 · 337

제8절 규제 품질개선 · 339

I. 규제영향평가 사례연구 · 339

1.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 용역 · 339 / 2.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 요지 · 340 / 3. 연구결과 활용계획 · 348

II. 규제대안개발 연구 · 348

1. 규제대안개발 연구용역 · 348 / 2. 규제대안개발 연구 요지 · 349 / 3. 연구결과 활용계획 · 357

제9절 기타 개별기획과제 개혁 · 358

I.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제도 규제개혁 · 358

II. 공공공사의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참가 자격제한 개선 · 360

1. 규제현황 · 360 / 2. 문제점 · 360 / 3. 개선방안 · 361 / 4.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362

III. 자동차 운전속도 제한관련 제도개선방안 · 362

- 1. 자동차 운전속도제한 현황 · 362 / 2. 외국의 속도관련제도 현황 · 363 / 3. 제도개선방향 · 364 / 4.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368 / 5. 차로별 통행차의 기준(지정차로제)관련제도 보완사항 · 368
- IV. 의료용구산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 369
 - 1. 의료용구 품질관리제도 개선 · 369 / 2. 기준 및 규격의 투명성 확립 · 372 / 3. 제조(수입)품목 허가증 발급기일 단축 · 373 / 4. 의료용구산업체의 전문화 · 특성화를 위한 위탁제조 범위 확대 · 374
- V. 오수처리시설 설치관련 규제개혁 · 375
 - 1. 오수처리시설 설치관련 규제현황 · 375 / 2. 분야별 개선방안 · 376
- VI. 보세구역관련 규제개혁방안 · 281
 - 1. 검토배경 · 381 / 2. 세부 개혁방안 · 382
- VII. 승강기 검사제도 개선방안 · 385
 - 1. 검토배경 · 385 / 2. 승강기 검사제도 개선방안 · 385

제 3 장 분야별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성과

제1절 경제 및 공정거래 분야 · 391

- I. 개요 · 391
 - 1. 규제 및 근거법령 현황 · 391 /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 393 /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400 /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 400
- II.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 401
 - 1. 재정경제 분야 · 401 / 2. 공정거래 분야 · 402 / 3. 주류 분야 · 404 / 4. 관세 분야 · 406
- III. 신설 · 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 408

|| 규제개혁백서 ||

1.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408 / 2. 심사 및 조정내역·409

Ⅳ. 누락규제 등록·412

1. 누락규제내용 : 통계간행물의 사후통보의무(1999. 5. 12)·412 / 2. 검토의견·412 / 3. 누락
규제 등록 : 1건·413

제2절 금융 분야·414

Ⅰ. 개요·414

1. 규제 및 근거법령 현황·414 /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415 /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418 /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418

Ⅱ.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419

1. 재정경제부·419 / 2. 금융감독위원회·423

Ⅲ. 신설·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427

1.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427 / 2. 심사 및 조정내역·428

제3절 산업자원 분야·440

Ⅰ. 개요·440

1. 규제 및 근거법 현황·440 /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442 /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446 /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446

Ⅱ.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448

1. 산업자원부 소관 규제·448 / 2. 중소기업청 소관 규제·449 / 3. 특허청 소관 규제·449

Ⅲ. 신설·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450

1.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450 / 2. 심사 및 조정내역·450

제4절 건설교통 분야 · 460

I. 개요 · 460

1. 규제 및 근거법령 현황 · 460 /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 461 /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466 /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 466

II.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 467

1. 경영자율성 및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의 개선 · 467 / 2. 사업진입규제 완화 · 471 / 3. 중복규제의 간소화 · 474 / 4. 규제내용의 구체화 · 객관화로 규제의 투명성 제고 · 475 / 5. 국민의 일상생활상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으로 생활편의 증대 · 477

III. 신설 · 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 481

1. 신설 · 강화규제 심사개요 · 481 / 2. 심사 및 조정내역 · 481

IV. 누락규제 등록 · 500

1. 등록누락규제 정비 추진경위 · 500 / 2. 등록 누락규제에 대한 심사 · 501

제5절 보건복지 분야 · 518

I. 개요 · 518

1. 규제 및 근거현황 · 518 /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 519 /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520 /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 520

II.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 521

1. 기초생활관련 규제개혁 · 521 / 2. 가정보건복지관련 규제개혁 · 524 / 3. 보건정책관련 규제개혁 · 529 / 4. 보건증진관련 규제개혁 · 536 / 5. 연금보험관련 규제개혁 · 540 / 6. 식품 · 의료용구 분야 · 546

III. 신설 · 강화규제심사 및 조정 · 548

1. 신설 · 강화규제 심사개요 · 548 / 2. 심사 및 조정내역 · 548

|| 규제개혁백서 ||

제6절 일반행정 및 법무 분야 · 563

I. 행정자치부 소관 규제개혁 · 563

1.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현황 · 563 / 2. 잔존규제정비 추진경위 · 563 / 3. 정비결과 · 564 / 4. 잔존규제 정비계획 세부내역 · 568

II. 법무부 소관 규제개혁 · 573

1. 개요 · 573 / 2.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 575 / 3. 신설 · 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 576

III. 경찰청 소관 규제개혁 · 579

1. 개요 · 579 / 2.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 583 / 3. 신설 · 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 587 / 4. 누락규제 등록현황 · 595

IV. 청소년보호관련 규제개혁 · 596

1. 개요 · 596 / 2.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 597 / 3. 신설 · 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 598

제7절 교육 분야 · 599

I. 개요 · 599

1. 규제 및 근거법령 현황 · 599 /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 600 /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604 /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 604

II.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 605

1. 대학원 및 대학관련 분야 · 605 / 2. 초 · 중등교육관련 분야 · 606 / 3. 교과용 도서관련 분야 · 606 / 4. 폐교재산관련 분야 · 607

III. 신설 · 강화규제의 심사 및 조정 · 609

1. 신설 · 강화규제 심사개요 · 609 / 2. 심사 및 조정내역 · 609

제8절 문화관광 분야 · 612

I. 개요 · 612

1. 규제 및 근거법령 현황 · 612 /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 613 /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613 /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 613

II.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 614

1. 문화·예술 분야 · 614 / 2. 관광 분야 · 616 / 3. 체육·청소년 분야 · 617 / 4. 음반·비디오
물 분야 · 619 / 5. 정기간행물 분야 · 619 / 6. 문화재관리 분야 · 620

III. 신설·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 621

1.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 621 / 2. 심사 및 조정내역 · 621

제9절 노동 분야 · 627

I. 개요 · 627

1. 규제 및 근거법령 현황 · 627 /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 628 /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631 /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 631

II.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 632

1. 고용정책 분야 · 632 / 2. 직업안정 분야 · 633 / 3. 고용보험 분야 · 634 / 4. 노사관계 분야 ·
636 / 5. 산업재해·산업안전 분야 · 637

III. 신설·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 640

1.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 640 / 2. 심사 및 조정내역 · 640

IV. 누락규제 등록 · 646

1. 누락사유 및 등록현황 · 646 / 2. 누락규제 목록 · 646

|| 규제개혁백서 ||

제10절 외교·국방 및 보훈 분야 · 648

I. 외교통상부 소관 규제개혁 · 648

1. 개요 · 648 / 2.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 650 / 3. 신설·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 653

II. 통일부 소관 규제개혁 · 654

1. 개요 · 654 / 2.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 656 / 3. 신설·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 657

III. 국방부 소관 규제개혁 · 658

1. 개요 · 658 / 2.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 660

IV. 병무청 소관 규제개혁 · 661

1. 개요 · 661 / 2.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 664

V. 국가보훈처 소관 규제개혁 · 667

1. 개요 · 667 / 2.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 669

제11절 환경 분야 · 670

I. 개요 · 670

1. 규제 및 근거법령 현황 · 670 /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 671 /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672 /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 672

II.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 673

1. 환경일반 분야 · 673 / 2. 자연공원법 분야 · 674 / 3. 대기환경 분야 · 675 / 4. 수질환경 분야 · 676 / 5. 폐기물관리 분야 · 677 / 6. 먹는물관리 분야 · 679

III. 신설·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 679

1.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 679 / 2. 심사 및 조정내역 · 680

제12절 해양수산 분야 · 704

I. 개요 · 704

1. 규제 및 근거 법령현황 · 704 /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 705 /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707 /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 707

II.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 709

III. 신설 · 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 712

1. 신설 · 강화규제 심사개요 · 712 / 2. 심사 및 조정내역 · 713

IV. 누락규제 등록 · 719

제13절 농림 분야 · 722

I. 농림부 소관 규제개혁 · 722

1. 규제 및 근거법령 현황 · 722 /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 723 /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726 /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 726 / 5.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 727 / 6. 신설 · 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 731 / 7. 누락규제 등록 · 736

II. 산림청 소관 규제개혁 · 738

1. 규제 및 근거법령 현황 · 738 /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 739 /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739 /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 739 / 5.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 740 / 6. 신설 · 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 744

제14절 과학기술 · 정보통신 분야 · 746

I. 과학기술부 소관 규제개혁 · 746

1. 개요 · 746 / 2.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 749 / 3. 신설 · 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 750 / 4. 누락규제 등록 · 752

II 규제개혁백서 II

II. 정보통신부 소관 규제개혁 · 753

1. 개요 · 753 / 2. 1999년도 규제개혁의 주요내용 · 756 / 3. 신설 · 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 760 / 4. 누락규제 등록 · 763

제15절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 767

I. 자치단체 규제정비 · 767

1. 추진배경 · 767 / 2. 1999년도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현황 · 768 / 3.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 770 / 4. 향후 자치단체 규제정비시 중점사항 · 770

II.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 772

1. 규제개혁 이행실태 상시 점검체계 운영 강화 · 772 / 2. 국민제안 및 불편신고에 대한 환류체계 활성화 · 773 / 3. 규제개혁관련 교육의 내실화 · 774 / 4. 대국민 홍보 및 여론조사 · 774 / 5. 향후 중점 추진계획 · 774

III. 규제개혁작업단 설치 · 운영 · 775

1. 설치목적 · 775 / 2. 지원단 구성 및 기능 · 775 / 3. 향후 추진계획 · 776

제4장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제1절 이행실태 점검개요 · 781

I. 점검체계 구축 및 점검활동 · 781

II. 점검결과 · 782

제2절 1차 이행실태 점검 · 784

I. 점검개요 · 784

1. 점검기간 및 대상기관 · 784 / 2. 중점점검항목 · 785

II. 점검결과 · 785

1. 점검결과 총평 · 785 / 2. 분야별 점검결과 · 787

제3절 2차 이행실태 점검 · 794

I. 점검개요 · 794

1. 점검기간 및 대상기관 · 794 / 2. 중점점검 사항 · 794

II. 점검결과 · 795

1. 점검결과 총평 · 795 / 2. 점검결과 개요 · 795 / 3. 분야별 점검결과 · 796

제4절 3차 이행실태 점검개요 · 799

I. 점검개요 · 799

1. 점검기간 및 대상기관 · 799 / 2. 중점점검 사항 · 800

II. 점검결과 · 800

1. 점검결과 총평 · 800 / 2. 점검결과 개요 · 801 / 3. 분야별 점검결과 · 802

제5절 4차 이행실태 점검 · 806

I. 점검개요 · 806

1. 점검일시 및 대상기관 · 806 / 2. 중점점검 사항 · 807

II. 점검결과 · 807

1. 점검결과 총평 · 807 / 2. 지적사항 · 808 / 3. 분야별 점검결과 · 809

제5장 OECD 규제개혁 국별심사

제1절 OECD 규제개혁 심사관련 업무 · 815

I. 개요 · 815

OECD 규제심사준비기획단 구성 · 운영 · 816

II. OECD 규제개혁 질의서에 대한 답변 · 818

OECD 질의서에 대한 답변개요 · 818

제2절 한국에 대한 분야별 심사 · 822

I. 정부역량(국무조정실) · 822

1. OECD 보고서의 요지 및 권고사항 · 822 / 2. Peer Review 참석결과 · 823

II. 경쟁정책(공정거래위원회) · 826

1. OECD 보고서의 요지 및 권고사항 · 826 / 2. Peer Review 참석결과 · 829

III. 시장개방(외교통상부) · 831

1. OECD 보고서의 요지 및 권고사항 · 831 / 2. Peer Review 참석결과 · 833 / 3. 정책권고 사항에 대한 우리측 입장과 조치 계획(표) · 835

IV. 정보통신산업(정보통신부) · 836

1. OECD 보고서의 요지 및 권고사항 · 836 / 2. Peer Review 참석결과 · 838

V. 전기산업(산업자원부) · 842

1. OECD 보고서의 요지 및 권고사항 · 842 / 2. Peer Review 참석결과 · 843

제6장 규제개혁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제1절 규제개혁에 대한 외부전문가 평가 · 849

Ⅰ. 규제개혁 2년의 평가와 과제 · 849

1. 규제개혁의 배경과 특징 · 849 / 2. 규제개혁 2년의 추진실적 · 851 / 3. 평가 · 854 / 4. 과제와 전략 · 856

Ⅱ. 경제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뉴밀레니엄 시대, 새 규제개혁) · 857

1. 기업의 낮은 규제개혁 체감도 · 858 / 2. 급변하고 있는 경제환경과 규제개혁 과제 · 860 / 3. 규제개혁에 따른 국민경제적 효과는 매우 높아 · 861 / 4. 규제개혁의 목적은 시장경제 원리의 정립 및 실천 · 863 / 5. 향후 과제 · 864

Ⅲ. 사회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 865

1. 사회분야 규제개혁의 이론과 실무적 원칙 · 866 / 2. 1999년의 사회 분야 규제개혁의 개요 · 868 / 3. 1999년 사회 분야 규제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868 / 4. 결론 · 871

제2절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2000년도 계획 · 872

Ⅰ. 기본방향 · 872

Ⅱ. 추진전략 · 873

Ⅲ. 2000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 873

1. 중점 규제개혁과제 등의 정비 · 873 / 2.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 874 / 3. 준공공기관 규제 의 정비 · 875 / 4. 규제총량의 엄격한 관리 · 875 / 5. 규제개혁 사후관리의 철저 · 875 / 6. 현장중 심 규제개혁 지속 추진 · 876

|| 규제개혁백서 ||

부록 1 규제개혁관련 법령

행정규제기본법 · 881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892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 902

부록 2 규제개혁 추진체계

I. 개요 · 907

1. 효율적이고 일관성있는 추진기구 구축 · 907 / 2. 추진기구 · 907

II.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909

1. 개요 · 909 / 2. 운영체계 · 910 / 3. 회의운영 · 911 / 4. 심사 절차 · 912 / 5. 활동실적 · 913

III.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914

1. 개요 · 914 / 2. 회의운영 · 915 / 3. 활동실적 · 916

IV. 전문가 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916

1. 개요 · 916 / 2. 활동실적 · 917

V.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 917

1.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 917 / 2.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 919

부록 3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현황 및 상정안건 · 921

1999년도

규제개혁 백서

규제개혁위원회

제 1 장

국민의 정부 2년간의 규제개혁 개관

제 1 절

규제개혁 2년의 추진실적

* 집필자 : 최기조 과장(Tel. 3703-2157)

규제개혁의 제도적 기반 정립과 새로운 행정문화 조성

국민의 정부는 다원화되어 있던 규제개혁 추진기구를 민관합동의 ‘규제개혁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각 부처별로 자체 규제개혁 추진기구를 설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연계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범정부적으로 규제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도 행정규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를 정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제도적인 추진체계의 정비와 함께, 행정부의 모든 규제를 등록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규제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등록되지 않은 규제, 다시 말하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는 그 운용을 금지하여 규제법정주의를 정착시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단계에 걸쳐 기존규제를 한건 한건 검토하여 절반수준의 규제를 폐지하고 3분의 1가량의 규제는 품질을 개선하여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의 선도자 역할을 하였고,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규제개혁을 비롯하여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전문자격사관련 규제개혁 등 다수법령과 여러 부처에 얽힌 고질적이고 복합적인 규제를 일괄 정비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심사를 실시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난 2년간 국민의 정부는 규제개혁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체계를 완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의 기틀을 확고하게 마련하였고, 규제중심적인 행정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는 탈규제적인 새로운 행정문화를 조성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 중앙행정기관소관 규제의 전수조사 및 일괄정비

1. 제1단계 정비

국민의 정부는 출범 첫해인 1998년도에 기존규제를 전수조사하여 규제 한건 한건에 대해 전문가심사소위원회, 분과위원회, 본위원회의 3단계 심사를 거쳐 전체 규제 11,125건 중 타당성이 없거나,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 규제 5,430건(48.8%)을 폐지하고, 불합리한 규제 2,411건(21.7%)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분야별 주요 규제 정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투자자문화사, 자산운용회사 및 환전상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가로막던 요인들을 제거하였고, 선물거래업(100억원→30억원), 증권투신운용업(300억원→100억원) 등 금융서비스업종의 자본금을 대폭 인하하여 경제위기로 인해 금융업분야에서 퇴출된 사람들의 창업기회를 제공하였다.

외환위기상황에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던 52개 업종 중 선물거래업, 종합금융업, 주유소운영업 등 31개 업종을 개방하였다.

농산물유통과 관련하여 민간인들도 농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과 민간시장의 자유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은 업종별로 건설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건설업면허는 5년마다 갱신하여야 했으나, 이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면허갱신제도를 폐지하여 건설업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건설업분야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교통분야의 내항화물 운송사업은 100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1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어 시장진입을 보다 쉽게 했고,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의 외국국적 화물선 사용허가제도를 폐지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증대시켰다.

그동안 부작용이 적고 사용방법이 널리 알려져 오·남용의 우려가 없는 단순의약품도 약국 이외에는 판매할 수 없었으나 자양강장제, 영양제, 소화제 등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구급용 단순의약품에 대해서는 슈퍼마켓,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보험 진료권 이용제한을 폐지하고 환자가 주소지에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생활관련 규제를 개선하였다.

2. 제2단계 정비

1998년도 1단계 규제정비 후에 남은 나머지 규제에 대해 민간조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검토하여 철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1999. 2. 22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잔존규제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품질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30개 분야별 전문연구기관(민간 : 15개, 국책 : 15개)을 선정하여 잔존규제 총 6,811건(신설규제 511건 포함)을 검토하도록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검토용역을 의뢰함에 있어서는 각 분야별로 전문연구기관을 복수로 선정하고(민간·국책 각 1개 기관), 양 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비방향을 모색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정비상의 오류를 방지하고 규제정비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외부 전문연구기관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1999. 7월 이후 3개월여의 기간 동안 부처별 잔존규제를 집중 심사하여 조정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먼저 1998년도와 같이 재정·금융, 산업·건설, 행정·복지, 교육·문화·노동, 농림·해양 및 환경·정보 등 6개 분야의 전문가 40명으로 분야별 전문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제의 존치여부 및 품질개선방안 등을 집중 심사하는 한편, 전문가 심사소위원회를 거친 부처별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규제개혁위원회의 3개 소관 분과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1999년 한 해 동안 정부는 전문가심사소위원회 28회, 분과위원회 8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전체위원회 5회 등 총 41차례에 걸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처별 잔존규제 정비계획을 심사·조정하였으며 1999. 10. 1일에 열린 제40차 규제개혁위원회를 끝으로 21개 부처의 잔존규제정비 계획 심사·조정을 모두 마치고 1999년 잔존규제 총 6,811건 중 폐지 503건(7.4%), 개선 570건(8.4%)의 정비계획을 확정하였다.

■ 주요 정비내용 예시

- 품질보증인증기관·연수기관 지정권한 등 민간이양(산업자원부)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보건복지부)
- 대학원 정원 자율화(교육부)
- 일반·전문건설업의 겸업·영업범위 제한 폐지(2002년, 건설교통부)
- 일정규모 이하의 양곡가공업(제조·제분업) 등록제 폐지(농림부) 등

※ 자세한 정비내용은 '제3절 분야별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성과'를 참조

부처별 규제 정비결과 종합

부처명	1998년 정비결과			1998년 정비 이후 변경				1999년 정비결과				1999년 정비 후 잔존 규제수
	당초 규제	폐지	잔존 규제 (A)	국회 수정· 계류	재심사 등	신설 심사	누락 규제 등록	소계 (B)	정비 대상 (A+B)	폐지 등 (%)	개선 (%)	
합 계	11,125	5,430	5,695	140	94	608	274	1,116	6,820	△503 (7.4)	570 (8.4)	6,308
재경부	509	△255	254	12	2	68	-	82	336	△12	28	324
통일부	57	△24	33	-	6	-	-	6	39	△11	-	28
외교부	40	△6	34	-	-	3	-	3	37	△10	6	27
법무부	88	△11	77	-	-	15	-	15	92	-	-	92
국방부	46	△34	12	-	△7	-	-	△7	5	-	-	5
행자부	484	△214	270	31	16	-	-	47	317	△16	16	301
교육부	272	△142	130	1	3	2	-	6	136	△31	27	105
과기부	426	△216	210	-	3	2	-	5	215	△24	3	191
문화부	404	△202	202	26	△1	17	-	42	244	△14	22	230
농림부	701	△362	339	6	△11	75	14	84	423	△23	15	400
산자부	667	△345	322	1	8	15	9	33	355	△16	25	339
정통부	342	△182	160	4	6	23	35	68	228	△28	43	200
복지부	1,703	△857	846	6	△12	31	12	37	883	△90	36	793
환경부	643	△224	419	10	17	48	42	117	536	△25	67	511
노동부	420	△211	209	2	△1	57	3	61	270	△11	42	259
건교부	917	△467	450	6	29	22	99	156	606	△23	33	583
해양부	778	△422	356	11	39	91	38	179	535	△53	38	482
보훈처	87	△45	42	-	1	-	-	1	43	△3	1	40

부처명	1998년 정비결과			1998년 정비 이후 변경					1999년 정비결과			1999년 정비 후 잔존 규제수
	당초 규제	폐지	잔존 규제 (A)	국회 수정· 계류	재심사 등	신설 심사	누락 규제 등록	소계 (B)	정비 대상 (A+B)	폐지 등 (%)	개선 (%)	
공정위	75	△16	59	-	1	12	-	13	72	-	4	72
금감위	630	△315	315	14	20	49	9	92	407	△35	64	372
국세청	27	△7	20	-	-	-	-	-	20	-	-	20
관세청	251	△133	118	-	1	-	-	1	119	△11	9	108
조달청	27	△17	10	-	△3	-	-	△3	7	-	-	7
통계청	10	△7	3	-	-	-	1	1	4	-	-	4
병무청	29	△2	27	-	-	-	-	-	27	-	11	27
경찰청	382	△148	234	5	4	6	-	15	249	△20	10	229
기상청	28	△14	14	-	-	-	-	-	14	-	-	14
농진청	14	△7	7	-	-	-	-	-	7	-	-	7
산림청	276	△138	138	-	△24	28	7	11	149	△21	5	128
중기청	89	△47	42	-	-	-	-	-	42	△3	-	39
특허청	75	△39	36	-	-	-	-	-	36	-	5	36
식약청	311	△160	151	-	△3	-	1	△2	149	△10	39	139
철도청	57	△30	27	-	-	-	2	2	29	-	-	29
해경청	124	△63	61	4	-	20	-	24	85	△13	1	72
문화재 청	136	△68	68	1	-	1	-	2	70	-	20	70
청소년 보호위	-	-	-	-	-	23	2	25	25	-	-	25
국 무 조정실	-	-	-	-	-	-	-	-	9	-	-	9

. 핵심 규제개혁과제 추진

1. 핵심과제 추진개요

규제개혁위원회는 1998년도에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경제회생에 시급한 외국인투자관련 분야를 비롯하여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분야, 금융·유통·무역관련 분야, 그리고 국민 생활 불편 분야 등 37개 핵심 규제개혁과제를 추진하였다.

■ 1998년도 주요 추진과제 예시

- 주택건설산업관련 규제완화
- 건설산업 분야 규제개혁
- 자동차관련 규제개혁
- 물류·유통 분야 규제개혁
- 외국인 투자관련 규제개혁방안
- 수출입 통관관련 규제개혁방안
- 주류 분야 규제개혁
- 벤처산업 분야 규제개혁
- 풍속영업관련 규제개혁 등

1999년도에도 다수의 법령과 여러 부처에 얹힌 복합규제로서 일괄적인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먼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 단체나 기관들의 건의를 적극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쳐서 토지, 통신, 물류,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와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등 33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방안 등 16개 과제는 관계부처가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고, 전문자격사관련 규제개혁 등 17개 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상정하였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자체추진 과제 중 문화산업관련 규제개혁, 규제자유지역 설치방안 등 10개 과제는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여 관련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그동안 규제개혁의 성역으로 여겨져 왔던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의 선발인원을 5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전문자격사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고학력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였으며, 공무원 등 경력자의 자동자격취득제도를 개선하고 공개경쟁을 확대하였다.

정보통신 분야의 기간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제도를 개선하여 일시 출연금의 경우 유선분야는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무선분야는 현행의 절반수준으로 낮추었고, 연도별 출연금의 경우는 2001년부터 기간통신 역무관련 매출액의 1%수준으로 단일화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부담을 대폭 절감시켰다.

다가오는 문화의 세기에 대비하여 문화산업중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제작업 등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비디오물·게임물의 판매·대여업은 자유업종으로 전환하는 등 문화산업관련 규제를 개혁하였다.

1999년도 핵심과제 추진 목록

- 1)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방안(1999. 3. 12, 위원회 상정의결)
- 2) 경쟁제한적인 수출입 및 관련산업에 대한 규제개선방안(1999. 3. 26, 위원회 상정의결)
- 3) 전문자격사관련 규제개혁방안(1999. 4. 9, 위원회 상정의결)
- 4) 주택공급 자율성 확대방안(1999. 5. 7, 위원회 상정의결)
- 5) 비업무용 토지제도 및 공장업종 구분 개선방안(1999. 5. 7, 위원회 상정의결)
- 6) 기간통신 사업자의 연구개발 출연금제도 개선방안(1999. 5. 21, 위원회 상정의결)
- 7) 산업현장 안전기준 등 관련규제 합리화 방안(1999. 6. 4, 위원회 상정의결)
- 8) 자동차 운수사업 진입규제 개선방안(1999. 6. 4, 위원회 상정의결)
- 9) 향만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1999. 6. 4, 위원회 상정의결)
- 10) 농업관련산업 진입규제 개선방안(1999. 6. 18, 위원회 상정의결)
- 11) 석유화학시설 등의 안전관리 합리화 방안(1999. 6. 18, 위원회 상정의결)
- 12)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련 규제 개혁방안(추가과제 1999. 7. 2, 위원회 상정의결))
- 13) 증명민원제도 개혁방안(1999. 7. 2, 위원회 상정의결)

- 14) 비영리법인 설립 · 감독관련 규제개혁방안(추가과제 1999. 7. 2, 위원회 상정의결)
- 15)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1999. 7. 16, 위원회 상정의결)
-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제개선방안(1999. 7. 30, 위원회 상정의결)
- 17) 약용작물(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관련 규제개선(1999. 8. 27, 위원회 상정의결)
- 18) 기업의 준조세 정비개혁방안(1999. 9. 3, 위원회 상정의결)
- 19) 국가자격제도 규제개혁방안(1999. 9. 17, 위원회 상정의결)
- 20) 양식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방안(1999. 10. 29, 위원회 상정의결)
- 21) 저작권 관련 규제개혁방안(1999. 10. 29, 위원회 상정의결)
- 22) 국내기업 역차별관련 규제개혁(1999. 10. 27, 분과위 심의종결)
- 23) 물류산업 규제개혁방안(1999. 11. 3, 분과위 심의종결)
- 24) 지정진료제도 개선방안(1999. 11. 12, 위원회 상정의결)
- 25) 민간건축물 공사감리관련 규제개혁방안(1999. 11. 26, 위원회 상정의결)
- 26) 농수산물가공 및 식품산업 규제개혁(1999. 12. 10, 위원회 상정의결)
- 27) 학원운영 · 설립관련 규제개혁(1999. 12. 10, 분과위 심의종결)
- 28) 규제자유지역 설치방안(1999. 12. 10, 본회의 보고종결)
- 29) 소방법령체계 개편방안 추진계획(1999. 12. 10, 본회의 보고종결)
- 30) 문화산업 관련 규제개혁(1999. 12. 24, 위원회 상정의결)
- 31) 규제대안개발 연구(1999. 12. 24, 위원회 상정의결)
- 32)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1999. 12. 24, 본회의 보고종결)
- 33) 금융산업 진입규제 완화(1999. 12. 20, 분과위 심의종결)

2. 기대효과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적 과제에 대한 규제개혁의 효과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시일이 지남에 따라 더 큰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외국인투자 가능업종의 확대, 외국인 토지취득제한 완화,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 M & A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는 꾸준히 늘어 1997년에 70억달러에 불과하던 외국인 투자가 1999년에는 155억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

1997년	1998년	1999년
70억달러	88억달러	155억달러

특히,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실을 벤처기업의 공장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교수나 연구원이 사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최저 설립자본금도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춤으로써 벤처기업의 붐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결과 1998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5천여 개의 벤처기업이 창업되었다.

민간사업자 보유택지 및 수도권내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하여 아파트 공급자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아파트 공급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함에 따라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연간 55만 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세관, 검역소, 출입국관리소 등 입출항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18종(28건)의 민원서류를 9종(9건)으로 간소화하고 유관기관간 정보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여 민원인이 컴퓨터를 이용해 입출항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간 66만건에 달하는 서류의 감축 효과 및 70억원의 국민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동안 한약재 가공업자나 한약재 도매상 등이 한약재의 공급을 독점해 오던 제도를 개선하여 농민이 규격기준에 맞추어 가공토록 하고 구기자나 대추 등 중독 우려가 없는 품목은 농민이 직접 한약취급업소에 납품토록 하여 전국 4만4천여 한약재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규제개혁의 효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연구원은 '국민의 정부'의 규제개혁

에 따른 향후 5년간의 경제적 효과는 국민비용절감이 18조원(1997년 GDP의 4.4% 해당)에 달하며 정부비용절감은 6천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 신설·강화규제 심사

1. 제도개요

정부는 지난 1998년 6월 1일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신설·강화규제 심사제도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규제 신설·강화의 타당성을 자체심사토록 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시 심사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를 거친 신설·강화규제 중 중요규제가 아닌 규제에 대해서는 소관 분과위원회가, 중요규제로 판단되는 경우는 본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토록 하고 있다. 다만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강화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직접 심사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규제심사제도도 아울러 운용하고 있다.

2. 심사실적

1998년 6월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는 357개 법령, 1,325건의 신설·강화규제를 사전심사하였으며, 전체 심사대상규제 1,325건 중 870건(65.7%)을 원안대로 수용하고 455건(34.3%)에 대해서는 개선 및 철회를 권고하였다.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중요 신설·강화규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 범위(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부당 표시·광고의 임시금지명령제 도입(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화장장소 제한·연고자 범위(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장기적출·이식제한(장

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주소 이전 신고의무(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이다.

자산유동화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정안 등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소관 4개 법령의 31개 규제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3조에 의거 긴급규제로 인정하여 규제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였다.

■ 예시

- 자산유동화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1998. 10. 30, 제17차 규제개혁위원회)
-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제정안(1998. 10. 30, 제17차 규제개혁위원회)
- 은행법개정안(1998. 11. 20, 제19차 규제개혁위원회)
- 주택저당채권유동화중개회사법 제정안(1998. 11. 20, 제19차 규제개혁위원회)

※ 심사결과, 31건의 규제 중 20건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11건은 원안수용

부처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1998. 6~1999. 12)

구분	법령수	심사대상 규제	심사결과(%)			비고
			개선권고	철회권고	원안수용	
경제1분과위원회						
재경부	38	109	27(24.8)	7(6.4)	75(68.8)	
산자부	40	117	33(28.2)	19(16.2)	65(55.6)	
건교부	37	71	9(12.7)	13(18.3)	49(69.0)	
금감위	28	99	28(28.3)	7(7.0)	64(64.7)	
공정위	5	11	3(27.2)	0(0.0)	7(72.8)	
경제2분과위원회						
과학기술부	3	8	0(0.0)	1(12.5)	7(87.5)	
농림부	17	91	15(16.5)	0(0.0)	76(83.5)	
산림청	2	30	2(6.7)	0(0.0)	28(93.3)	
정보통신부	5	32	6(18.8)	3(9.4)	23(71.8)	
환경부	34	146	61(41.8)	6(4.1)	79(54.1)	

구분	법령수	심사대상 규제	심사결과(%)			비고
			개선권고	철회권고	원안수용	
해양수산부	34	122	18(14.8)	12(9.8)	92(75.4)	
해양경찰청	1	25	8(32.0)	5(20.0)	12(48.0)	
행정분과위원회						
외교통상부	4	8	1(12.5)	2(25.0)	5(62.5)	
통일부	2	9	3(33.3)	1(11.1)	5(55.6)	
법무부	9	39	2(5.1)	0(0.0)	37(94.9)	
행정자치부	1	5	4(80.0)	1(20.0)	0(0.0)	
교육부	10	16	4(25.0)	2(12.5)	10(62.5)	
문화관광부	17	53	19(35.8)	11(20.8)	23(43.3)	
청소년위원회	1	13	5(38.5)	0(0.0)	8(61.5)	
보건복지부	41	191	31(16.2)	56(29.3)	104(54.5)	
노동부	17	89	6(6.7)	11(12.4)	72(80.9)	
국가보훈처	3	10	0(0.0)	4(40.0)	6(60.0)	
경찰청	6	27	3(11.1)	4(14.9)	20(74.0)	
병무청	2	4	0(0.0)	2(50.0)	2(50.0)	
계	357	1,325	288(21.7)	167(12.6)	870(65.7)	

Ⅰ 제2절 Ⅰ

규제개혁관련 법령정비

* 집필자 : 정현용 서기관(Tel. 3703-2158)

. 법률정비 추진실적

1. 국회제출 현황

정부는 지난 1998년 344개의 규제개혁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1999년에도 14개 부처소관 총 51개의 규제개혁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1999년도에 제출한 51개 법률을 부처별로 보면 재경부가 13개 법률로 가장 많고 환경부 9개, 문화관광부 5개, 보건복지부 4개, 건설교통부 4개 등의 순이다. 51개 법률의 부처별 제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1999년 국회제출 규제개혁관련 법률

- 재정경제부 : 은행법, 신탁업법, 보험업법 등 13개 법률
- 환경부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률
- 문화관광부 : 저작권법, 영화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5개 법률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 건설교통부 : 부동산중개업법, 측량법, 주차장법 등 4개 법률

-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고용정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4개 법률
- 정보통신부 :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등 3개 법률
- 해양수산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항만법 등 3개 법률
- 과학기술부 : 대덕연구단지관리법 1개 법률
- 산업자원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개 법률
-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1개 법률
- 교육부 : 초·중등교육법 1개 법률
- 산림청 : 산림법 1개 법률
- 경찰청 :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1개 법률

2. 국회심의 현황

정부가 지난 1998년도에 국회에 제출한 344개 법률 중 298개의 법률은 그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43개의 법률은 1999년도에도 계속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다(대한소방공제회법, 대한지방공제회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3개 법률은 국회 상임위 폐기).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1998년도 제출 국회 계류법률 43개 및 1999년도 제출 51개 법률 등 총 94개의 규제개혁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국회 계류중이던 94개 법률 중 63개(67%)의 규제개혁관련 법률이 1999. 12. 31일 현재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63개 법률 가운데에는 1998년도에 제출되어 계류중이던 20개 법률과 1999년도에 제출된 43개의 법률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은 총 31개 법률이다.

국회 계류중인 31개 법률 중에는 지난 1998년 정부가 국회수정에 따라 즉시 재입법을 추진하였던 18개 법률 중 15개 법률(먹는물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3개 재입법추진 법률은 국회를 통과 : 택지개발촉진법은 재입법 추진사항을 국회에서 수용, 나머지 2개 법률은 수용되지 않은 채 통과)과 1999년도에 국회에 제출된 9개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계류중인 규제개혁관련 법률(1999. 12. 31일 현재)

- 재정경제부 :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세무사법 등 10개 법률

- 행정자치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지적법, 온천법 등 4개 법률
- 문화관광부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등 2개 법률
- 보건복지부 : 재해구호법, 노인복지법 등 3개 법률
- 건설교통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소운송법, 건축법 등 3개 법률
- 노동부 : 고용정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2개 법률
- 환경부 : 소음진동규제법 등 5개 법률
- 국방부 : 군복 및 군용장구에 관한 법률 1개 법률
- 교육부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1개 법률

· 국회 수정법률의 재입법 추진

1. 추진배경

정부는 1999. 12. 21일 국무회의시, “국회심의과정에서 본질이 왜곡되거나 훼손된 규제 개혁법률안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규제개혁법률의 수정내용을 면밀히 검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1999. 12.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수정법률에 대한 대응방안 및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2. 국회 수정 및 재입법 추진현황

당초 국회 계류중이던 94개 규제개혁법률안(1998년 제출 : 43개, 1999년 제출 : 51개) 중 63개 법률안이 제208회 정기국회에서 의결 · 확정되었으나 63개 국회통과 법률 중 「약사법」·「의료법」·「식품위생법」 등 20개 법률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되어 통과되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개 국회 수정통과 법률 중 규제개혁의 본질이 상당부분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는 법률에 대하여는 공포 후 즉시 재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와 소관부처 및 당 · 정간 협의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재입법 추진대상 법률을 선정하였으며,

소관부처 주관으로 재개정안을 마련키로 결정하였다. 다만, 수정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회 수정법률을 일단 수용키로 하였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약사법, 의료법, 변호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4개 법률에 대하여 즉시 재개정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나머지 16개 법률의 경우 차기 국회 원구성 후 재개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20개 수정법률안의 규제개혁위원회 주요 의결내용과 국회 수정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규제개혁관련 수정법률 현황

(1999. 12. 30일 현재)

법률명	제출년도	규제개혁위 주요 의결내용	국회 수정내용	검토결과
약사법 (복지부)	1998	• 약사회 설립강제 및 약사회 가입 의무 폐지 • 약사회 지부 또는 분회신고 폐지 • 의약품·의약부외품 제조관리자 고용의무 폐지 •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기준 중 약사고용의무 폐지 • 약국시설기준 폐지 • 시·도지사가 정하는 약국의 개설등록기준 폐지	• 동 조항 존치 • 동 조항 존치 • 동 조항 존치 • 동 조항 존치 • 동 조항 존치 • 동 조항 존치 • 동 조항 존치 (1999. 12. 7일 통과)	즉시 재입법 추진
의료법 (복지부)	1998	• 의사회 설립 강제 및 의사회 가입 의무 개선 • 지부 또는 분회 신고 폐지 • 의사회 설립 및 정관변경시 허가제 폐지 •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협조 및 보수교육 실시의무 폐지 •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공지사업 신고 폐지 • 의료인단체에 대한 정관 또는 임원개선 명령 폐지	• 동 조항 존치 • 동 조항 존치 • 동 조항 존치 • 동 조항 존치 • 동 조항 존치 • 동 조항 존치 (1999. 12. 13일 통과)	즉시 재입법 추진
식품위생법 (복지부)	1998	•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의무고용제 폐지	• 동 조항 존치 (1999. 12. 7일 통과)	차기 원구성 후 재입법 추진

법률명	제출년도	규제개혁위 주요 의결내용	국회 수정내용	검토결과
공중위생 관리법 (복지부)	1998	•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 개설 통보의무 폐지	• 동 조항 존치 (1999. 12. 7일 통과)	차기 원구성 후 재입법 추진
농어촌보건의 료를위한특별 조치법 (복지부)	1998	•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 거주의무 폐지	• 동 조항 존치 (1999. 12. 7일 통과)	차기 원구성 후 재입법 추진
변호사법 (법무부)	1998	• 변호사단체 설립임의화 • 징계 · 등록권의 국가 환수 등	• 동 조항 존치 • 동 조항 존치 (1999. 12. 28일 통과)	즉시 재입법 추진
영화진흥법 (문화부)	1999	• ‘등급외 등급’ 신설 • 청소년 연령기준을 18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	• 동 조항 폐지 • 현행 19세 미만으로 존 치, 고등학생은 성인용 관람 불가 (1999. 12. 13일 통과)	차기 원구성 후 재입법 추진
국민체육 진흥법 (문화부)	1999	• 각종 체육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폐지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서는 존치로 수정 (1999. 12. 7일 통과)	차기 원구성 후 재입법 추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문화부)	1999	• 등록박물관(미술관)의 법령위반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던 것을 폐지	• 동 조항 존치 (1999. 12. 7일 통과)	차기 원구성 후 재입법 추진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1998, 1999	• 먹는샘물의 TV광고 금지 또는 제한 폐지	• 동 조항 존치 (1999. 12. 13일 통과)	차기 원구성 후 재입법 추진
수질환경 보전법 (환경부)	1999	• 배출시설 허가제를 신고제로 일원화 • 환경관리인의 임명 신고제도 폐지	• 동 조항 존치 • 동 조항 존치 (1999. 12. 16일 통과)	차기 원구성 후 재입법 추진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1999	• 폐기물처리업자의 기술관리대행 계약제를 폐지	• 동 조항 존치 (1999. 12. 13일 통과)	차기 원구성 후 재입법 추진

법률명	제출년도	규제개혁위 주요 의결내용	국회 수정내용	검토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건교부)	1998	•사업자단체 설립시 회원자격이 있는 자의 1/5 이상 동의를 1/10으로 완화 •발기시 총회 동의제 폐지	•동 조항 존치 •동 조항 존치 (1999. 12. 28일 통과)	즉시 재입법 추진
부동산 중개업법 (건교부)	1999	•중개인의 업무지역 확대 (기초단체→전국) •중개사무소 명칭을 표시토록 하던 규제를 폐지	•전국→광역시로 수정 •규제를 폐지하되, 다만 공인중개사가 아닌자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명칭사용을 금지 (1999. 12. 28일 통과)	차기 원구성 후 재입법 추진
산업안전 보건법 (노동부)	1999	•선박건조·수리업을 표준안전 관리비 계상 대상업종에서 제외	•대상업종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1999. 12. 13일 통과)	차기 원구성 후 재입법 추진
농어촌정비법 (농림부)	1999	•농어촌휴양지사업 양도·양수 신고 폐지	•동 조항 존치 (1999. 12. 16일 통과)	차기 원구성 후 재입법 추진
산림법 (산림청)	1999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추가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1999. 12. 16일 통과)	차기 원구성 후 재입법 추진
대한민국 재향 경우회법 (경찰청)	1999	•경우회 감독 등 폐지	•보조금 교부의 경우 관련감독으로 수정 (1999. 12. 28일 통과)	차기 원구성 후 재입법 추진
전기통신사업법 (정통부)	1999	•전기통신사업자 조치 행위에 대한 조치명령의 이의신청제 신설	•동 조항 삭제 (1999. 12. 28일 통과)	차기 원구성 후 재입법 추진
관세사법 (재경부)	1999	•2001. 1. 1일 이후부터는 관세사자동자자격부여제도 폐지(일부 과목만 면제) ※ 현행규정상 법정연수교육 이수 후 관세사자격 부여	•2000. 12. 31일까지 관세행정경력 구비자에 한해 법정연수교육 이수기한을 2002. 12. 31일까지 연장 (1999. 12. 16일 통과)	차기 원구성 후 재입법 추진

· 규제개혁관련 하위법령 정비

1999년도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되어야 할 규제개혁관련 하위법령은 시행령 79개, 시행규칙 91개, 고시·공고·훈령예규 138개 등 29개 부처 총 308개로 집계되었다.

정부는 1999. 12. 31일 현재 이들 308개 하위법령 중 시행령 30개, 시행규칙 41개, 고시·공고·훈령·예규 95개 등 총 166개(53.9%)의 하위법령에 대한 정비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하위법령의 정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모법이 국회에서 기통과된 경우에는 하위법령도 즉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직 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법 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는 즉시 정비를 추진토록 하며, 모법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법률이 통과되는 대로 즉시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나갈 방침이다.

Ⅰ 제3절 Ⅰ

규제 의 등록 및 공포 (누락규제 등록)

* 집필자 : 류충렬 과장(Tel. 3703-2188)

. 규제 등록관리

1. 규제등록지침 개정 보완

기시행중이던 규제등록업무처리지침(국무총리 지시 98-10호, 1998. 5. 11)이 주로 기존·신설규제에 대한 등록요령만을 정하고 있어 변경규제에 대한 등록요령의 추가적인 마련과 규제단위 분류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등록업무처리지침을 보완·시행(1999. 5. 3)하였다. 보완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신설규제 등록시 규제의 분류·등록단위에 대한 기준 추가, ② 폐지·완화·강화 등 변경규제에 대한 등록기준 및 요령 마련, ③ 등록프로그램의 보완에 따른 입력요령 변경 등이다.

2. 부처별 규제등록 현황

등록된 규제 수가 최초의 10,717건(1998. 8. 31)에서 1999. 12. 31일 현재 7,402건으로 변동되었다. 증가된 규제 수가 599건(신설 406건, 누락등록 기타 193건)이고, 감소된 규제 수가 3,914건(폐지 3774건, 기타 140건)으로 3,315건이 순수하게 감소되어 7,402건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다.

7,402건은 최초등록규제 10,717건의 69.06% 수준인 데, 이는 1998년 정비계획상 48.8%의 규제를 폐지하였고, 1999년도에도 일부 규제를 폐지한 정비실적에 비해 다소 그 수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이유로 ① 그동안 신설된 규제가 있었고 ② 폐지키로 하였으나 국회 등에서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며 ③ 폐지규제의 등록시점이 실제 폐지되어 시행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등록규제 7,402건의 부처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관부처	등록규제 수	소관부처	등록규제 수
여성특별위원회	6	국가보훈처	46
공정거래위원회	78	청소년보호위원회	23
금융감독위원회	402	재정경제부	313
통일부	39	외교통상부	38
법무부	93	국방부	13
행정자치부	366	교육부	183
과학기술부	220	문화관광부	316
농림부	488	산업자원부	343
정보통신부	227	보건복지부	1,064
환경부	574	노동부	245
건설교통부	739	해양수산부	500
국세청	20	관세청	119
조달청	11	통계청	4
병무청	27	경찰청	310

소관부처	등록규제 수	소관부처	등록규제 수
기상청	14	농촌진흥청	7
산림청	177	중소기업청	43
특허청	36	식품의약품안전청	165
철도청	29	해양경찰청	54
문화재청	70	계	7,402

3. 누락규제 정비

가. 누락규제 등록 실적

기존규제 등록 이후 등록이 누락된 규제가 발견되는 즉시 규제정비계획에 준하여 심사하고 존폐여부를 결정한 뒤 폐지가 불가능한 규제는 등록조치하고 있다. 1999년중 누락규제로 판단되어 추가로 등록한 규제는 10개 부처청의 124건이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이 부처 규제개혁 실태점검시 미등록 규제로 지적한 사항이 301건 발생되었으나,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999. 12. 31일 현재 일부는 정비가 완료되어 등록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항은 현재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나. 감사원 지적 미등록규제 정비

감사원의 각 부처청에 대한 규제개혁 실태점검(1999. 6. 7 ~ 1999. 7. 24)시 미등록 규제로 지적한 301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6개 부처의 80건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를 하여, 30건을 신규로 등록(등록단위조정 4건 포함)토록 하고, 46건은 폐지하거나 규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등 정비를 완료하였다.

소관부처	지적된 누락규제	정비결과
재정경제부	72	정비추진중
건설교통부	60	"
산업자원부	15	"

소관부처	지적된 누락규제	정비결과
공정거래위원회	14	”
정보통신부	27	신규등록 14건, 분류조정 11건, 비규제 2건
과학기술부	35	신규등록 11건(분류조정 4건 포함), 폐지 20건
농림부	3	신규등록 1건, 기등록 2건
해양수산부	8	신규등록 1건, 기등록 2건, 분류조정 5건
환경부	5	신규등록 3건, 비규제 2건
국세청	18	정비추진중
관세청	13	”
특허청	12	”
중소기업청	17	”
산림청	2	기등록 1건, 기폐지 1건
계	301	신규등록 30건(분류조정 4건 포함), 폐지 20건, 분류조정 16건, 비규제 4건, 기타 6건 (1999. 12. 31일 현재)

· 등록규제의 공표

1. 추진개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소관규제를 등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웹(Web)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규제등록 상황을 상시 공개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주소는 www.rrc.go.kr로 1999. 2. 22일 서비스를 시작해 1999. 12. 31일 현재 96,654명(일평균 308명)이 방문하였다.

2. 서비스의 내용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규제와 관련된 27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①부처별·유형별·부문별·법령별·존속기한별 자료 및 통계 ②신설·폐지·누락·강화·완화 등 변경된 규제에 대한 정보 ③행정규제기본법 및 규제등록제도에 관한 안내 등이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을 자료실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1999.12.31일 현재 자료실에는 77건의 각종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며, 모든 자료는 다운로드(download)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이트와의 링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정부대표 홈페이지(w ww.gcc.go.kr), 국무총리실 홈페이지(w ww.opm.go.kr)와 링크되어 있고, 규제등록서상의 근거법령 조문을 동시에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제처 법령데이터베이스와 한번의 클릭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규제신고센터와도 연결되어 있어 검색 후 즉시 규제신고가 가능토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 규제등록·관리 및 향후계획

앞으로 규제등록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0년 1월 이후 등록된 규제등록서를 검토·보완함은 물론 인터넷으로 규제에 대한 검색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전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제4절

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국민제안

* 집필자 : 이재홍 과장(Tel. 3703-2153)

. 규제신고센터 설치·운영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규제개혁 과제의 선정과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인터넷에 규제개혁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반 국민을 비롯한 기업과 단체들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 건의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신고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제안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규제건의 제출방법

- 우편 :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 방문 : 규제신고센터(정부중앙청사 206호실)
- 전화 : 02-722-9797, 02-3703-2177~9

- FAX : 02-720-2056
- 인터넷 : <http://www.rrc.go.kr>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혁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 지하철 등에 광고를 계속하고 있으며 우수제안자를 선정하여 표창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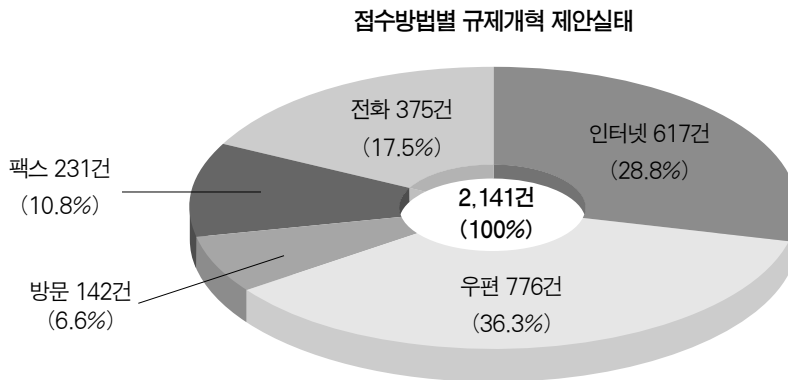
우수제안자 표창내용

- 해상운송업 행정규제 정비방안(김창중)
- 냉장보세구역 및 냉장창고업 관련규제 정비방안(김영택)
- 민속주 통신판매 금지에 대한 규제완화(이용훈 외 2명)

. 국민제안 접수·처리실적

규제개혁위원회가 1999년중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한 규제개혁 제안은 총 2,141건으로 월평균 178건 내외이며, 제안방법은 우편이 776건(3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전화, 팩스, 방문순이었다.

제안과제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공보 분야 220건(10.3%), 운송·물류 분야 213건(10.0%), 주택·건축 분야 188건(8.8%)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 규제개혁 제안실태

관련 분야	접수건수	관련 분야	접수건수	관련 분야	접수건수
문화·공보	220	금융·통화	44	민사	10
운송·물류	213	군사·병무	41	국가보훈	10
주택·건축	188	건설	40	해운·항만	9
경찰·교통	149	사회복지	38	축산	7
보건·위생	116	행정일반	35	수산	6
지방행정	98	토지·지적	34	수자원	5
재정·경제	95	법무	31	과학·기술	4
환경	95	상·공업	30	공업소유권	4
농지·농정	80	소방·민방위	28	관광	3
교육·학술	80	체육·청소년육성	27	형사·교정	1
에너지	79	산림	24	무역	-
국토·도시개발	73	정보통신	24	외무·여권	-
의료·약사	59	전매	22	기타	51
노동	55	국적·출입국	13		

소관부처별로는 건설교통부 542건(25.3%), 문화관광부 225건(10.5%), 보건복지부 197건(9.2%), 행정자치부 159건(7.4%), 경찰청 155건(7.2%) 순으로 상위 5개 부처소관 제안건수가 1,278건으로 전체의 59.7%에 이르러 건설교통, 보건복지, 경찰 등 규제가 많고 법령이 복잡한 분야와 국민들의 제안이 많은 분야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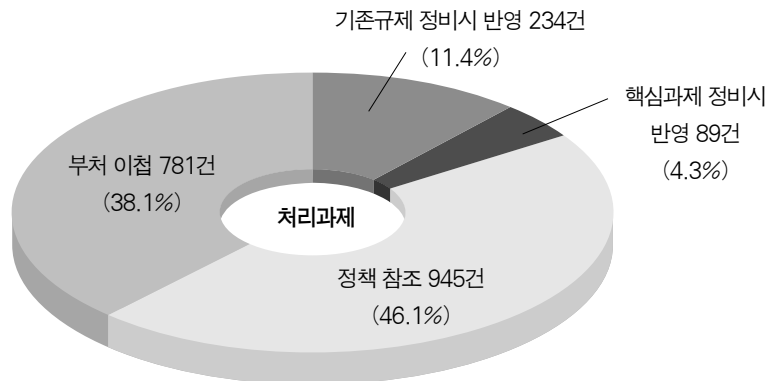
다만, 문화관광 분야는 PC방 관련 규제와 청소년 관람허용 연령조정 등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제안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소관부처별 규제개혁 제안 현황

소관부처	접수건수	소관부처	접수건수	소관부처	접수건수
건설교통부	542	금융감독위	40	조달청	5
문화관광부	225	병무청	30	식약청	5
보건복지부	197	정보통신부	24	특허청	5
행정자치부	159	산림청	23	과학기술부	4
경찰청	155	청소년보호위	19	철도청	3
산업자원부	111	해양수산부	18	공정거래위	3
환경부	97	국세청	17	기획예산위	2
교육부	87	국방부	12	해양경찰청	1
농림부	84	중소기업청	11	통일부	1
재정경제부	82	국가보훈처	10	기타	46
노동부	58	외교통상부	10		
법무부	47	관세청	8		

1999년에 건의된 제안과제 2,141건 중에서 2,049건을 처리하고 92건은 검토중에 있으며, 처리한 과제는 기존규제 정비시 반영 234건(11.4%), 핵심과제 정비시 반영 89건(4.3%)이고 정책참고 945건(46.1%), 부처 이첩 781건(38.1%) 등이었다.

규제개혁 제안 처리실태



·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1999년도에 접수된 국민제안은 작년도 1,971건보다 170건이 증가하였으며, 제안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한 제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안의 내용면에서 볼 때 규제개혁과 관련된 제안보다는 개인적인 민원사항과 자신의 사업에 대한 개인의 편의 주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규제제안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기도 한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을 구현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규제사항 제안이 매우 중요하므로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일부 보완하여 보다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Ⅰ 제5절 Ⅰ

규제개혁 성과홍보 및 교육

* 집필자 : 이재홍 과장(Tel. 3703-2153)

. 규제개혁 성과관련 홍보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1999년도에는 규제개혁 성과 홍보에 보다 큰 비중을 두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였다.

1. 그동안의 규제개혁 성과홍보 추진실적

- 규제개혁위원회 발족시 규제개혁 추진배경, 목표, 추진계획 등 홍보
 -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제안창구 안내를 위한 지하철 내 광고 시행중
- 규제개혁방안 확정시 및 달라지는 제도 시행시 규제개혁 내용 홍보
 - 규제개혁위원회와 각 부처에서 직접 대언론(신문, TV) 홍보, 분야별 관련 전문지, 홍보지 등에 소개

- 언론 홍보자료 발표 및 동 내용 인터넷 게재
- 규제개혁방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 공청회, 간담회, 신문기고, TV토론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및 홍보
- 규제개혁위원회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규제개혁 성과 집중홍보, 기자간담회 개최,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홍보책자 및 「규제개혁 백서」 발간 등

2. 규제개혁관련 홍보내용(1998. 11 ~ 1999. 12)

가. 신문광고 실시

- 규제개혁의 성과 총괄 이미지 광고(국무조정실)
 - 1998. 11. 24 ~ 25 양일간 15개 종합일간지 1면
- 정보통신 규제개혁 내용광고(정보통신부)
 - 12. 10일 서울경제, 내외경제
 - 12. 14일 서울경제, 12. 15일 매일경제, 12. 23일 한국경제
- 채용장려금, 고용보험제도, 직업훈련사업 안내광고(노동부)
 - 12. 14일 조선, 매일경제/12. 16일 조선, 경향/1. 27일 동아, 조선/3. 24일 동아, 세계, 국민, 한국경제/4. 8일 조선, 한겨레, 매일경제/5. 17일 대한매일, 문화 등

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매월 달라지는 제도 홍보
 - 4월(434회), 5월(680회), 6월(319회), 7월(460회), 8월(314회), 9월(371회), 10월(333회), 2000년 달라지는 제도(422회) 등 높은 조회수를 기록
- 규제개혁위원회 주요 안건의 게재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안건의 의결사항에 대한 보도자료 발표 및 안전 게재

다. 신문·TV 등 언론매체 홍보

- K-TV 「정보파노라마」 내 '달라진 규제개혁' 을 통한 홍보
 - '달라진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및 규제개혁 성공사례 등 방영

- 매주 1회 녹화를 하여 주 6회 방영
- 1999. 7월부터 12월까지 총 23회 방영
- 일간지에 규제개혁 성과보도(150여회)
 - 전 일간지에 규제 50% 철폐 성과보도(11.9)
 - 수정·변질된 규제개혁법안 재입법 추진(1.13)
 - 부처별 주요 규제개혁 내용보도
 - ※ 외국환 거래제도 자유화(재정경제부), 수입선 다변화품목 축소(산업자원부), 민원행정개혁(행정자치부) 등
- 규제개혁위원회 1주년 계기 홍보(4. 26 ~ 29)
 - 규제개혁 성과 종합홍보
 -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 보도
 - 규제개혁 지상토론회 보도(한국경제신문)
 - 매월 달라는 제도 홍보 등
- 일간지에 장·차관 및 전문가 특별기고(15회)
 - 동아일보 「특별기고」(국무조정실장), 한국일보 「시론」(규제개혁조정관), 문화일보 「포럼」(이진설 규제개혁공동위원장)
 - 중앙일보(이성우 금융감독위원회 상임고문·한성대 교수) 등
 - ※ News World(영문일간지) 특집인터뷰(국무조정실장)
- TV에 장관이 직접 출연, 규제개혁 홍보(28회)
 - KBS 「정책진단」(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장관, 노동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 KBS 「뉴스라인」(노동부 장관), MBC 「주부가 세상을 바꾼다」(정보통신부 장관, 노동부 장관), YTN 「집중조명」(산업자원부 장관, 노동부 장관), K-TV 「국정대담」(노동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국가보훈처장) 등
- 해외언론 인터뷰 등 외신을 통한 홍보
 -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방침(Paris Match)」, 「기간통신사업 외국인 투자 지분 규제완화」(상주 전 외신 영문보도자료 배포), 해외투자 현지설명회 개최(뉴욕, 런던)
- 라디오 프로그램 활용 홍보
 - KBS-1R 「생방송 오늘」 시리즈 홍보(12. 7~19)

- ※ 국무조정실 및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10개 부처 출연, 규제개혁 성과홍보
- MBC-R 「뉴스의 광장」, 「화제집중, 전화를 받습니다」(보건복지부)
- KBS-1R 「건강 365일」(보건복지부), EBS(교육부, 정보통신부), KBS-1R 「안녕하십니까 이양원입니다」(노동부) 등
- KBS 「국방소식」, 「교육을 말합니다」, 「병무상담」 등 부처별 고정 프로그램 활용 홍보 등
- 부처별 전문지 및 월간지 게재(180여 회)
 - 「원자력 산업」(과학기술부), 「정보와 통신」·「전파」(정보통신부), 「국방소식」(국방부), 「철마21」(철도청), 「신호등」(경찰청), 「약사공론」·「의계신문」 등(식품의약품안전청), 「내가 살고 싶은 나라」(공보실), 「금융감독정보」(금융감독위원회), 「환경 정보지」(환경부), 「계간 어항」(해양수산부), 「월간기상정보」(기상청) 등

라. 각종 홍보책자·자료 제작 배포

-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 규제개혁이 만들어갑니다」, 「Creatin a Business-Friendly Country」, 「규제개혁 신문보도자료집」, 규제개혁 홍보소재자 영문판, 「1998년도 규제개혁 백서」,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산업연구원 연구용역)」(국무조정실)
-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외국인 투자」, 「국민의 정부 1년, 우리 경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1년, 경제정책 성과와 과제」(재정경제부)
- 「무역·산업·에너지 분야 규제 이렇게 달라집니다」(산업자원부)
- 「달라진 제도, 달라지는 문화예술」(문화관광부)
- 「정보통신 규제, 이렇게 달라집니다」(정보통신부)
- 항만개발 민자유치를 위한 영문홍보책자 (해양수산부)
- 「규제관련업무 이렇게 달라집니다」(과학기술부)
- 우편 이용관련 규제 폐지 안내 팜플렛 7종, 350만부(정보통신부)
- 「고용보험기업의 자산을 지켜드립니다」(노동부)
-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내용 홍보책자(특허청)
- 「1998 보건복지 규제개혁백서」(보건복지부)
- 「어, 이렇게 달라졌나?」(국정홍보처)

마. 설명회·간담회 개최

- 장·차관 기자간담회(21회)
 - 문화관광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 노동부, 정보통신부 외신기자 간담회 개최
- 각종 세미나, 교육, 설명회(34회)
 - 원자력 안전관련 세미나(과학기술부), 환경관리인 교육(환경부), 외국기업인 설명회(정보통신부), 중금 등 4개 금융업종에 대한 규제완화 설명회(금융감독위원회) 등 각종 세미나 등

바. 기타

- 각 부처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내용 게재
- 반상회보, 국정신문 등을 통한 홍보 등

. 규제개혁관련 교육

각 분야의 공무원들이 규제중심의 행정문화에서 탈피하고, 규제개혁의 방향과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여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각급 교육기관과 직장교육의 교육 프로그램에 규제개혁 관련 강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규제관련 자료를 각급 행정기관과 산하기관에 수시로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1. 공무원에 대한 규제개혁관련 교육훈련의 내실화

가. 각급 공무원 교육기관의 정규 및 수시(특강 등) 과목으로 교육 실시

- 중앙 및 지방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 도모
 - 특히 간부직 공무원의 교육시 특강 실시

- 규제개혁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나. 교육분야

- 규제개혁의 이해(비전, 철학 및 추진전략 등)
 - 규제정비지침 및 정비계획 추진
 - 규제영향분석(전문교육과정) 등
- ※ 강사진, 교육내용관련 사항은 국무조정실에서 지원

2. 규제개혁관련 연구자료를 공무원 교육에 활용하도록 전 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에 배포

-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
- 규제대안 개발연구
-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분석

3. 각급 행정기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에 강사 지원

- 지방행정연수원,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경기도 공무원교육원 등에 개설된 규제개혁관련 과목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규제개혁조정관실 직원이 출장 강의
- 각급 기관 직원교육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이 강의

제2장

핵심규제개혁과제 추진실적 및 성과

Ⅰ 제1절 Ⅰ

진입규제 개혁

· 자동차운송사업 진입규제 개선방안

* 집필자 : 민용식 사무관(Tel. 3703-2159)

1. 검토배경

- 우리나라의 물류비는 1997년에 약 69조원으로 GDP 대비 16.5%를 차지해 미국 (10.5%)등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높은 실정이며,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비의 절감이 필수적임
- 화물운송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책임있는 일관수송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1997. 8월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운송사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업종을 통폐합하여 1999. 7.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자동차 대수 제한, 화물운송사업자의 상주영업소 설치 제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재면허 제한 등 운송사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가 상존하고 있어 이들 각종 진입규제를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

2. 규제개혁의 기본방향

-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진입규제를 개선
- 기존의 자동차운송사업계의 구도를 고착화하는 기존사업자 이익지향에서부터 시장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 절감 지향으로 접근방법 전환

3. 규제개혁방안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진입규제 폐지

가. 규제현황

- 자동차운수사업법 · 육운진흥법 · 터미널관계법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1997. 8. 30일 제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일 제정)으로 정비
- 새로 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운송사업 업종을 통합 · 단순화하고 진입규제 완화
 - 노선화물 · 전국화물 · 일반화물 · 컨테이너운송업 · 용달화물 ·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 6개 업종을 일반화물 · 개별화물 · 용달화물 등 3개 업종으로 단순화
 - 면허 또는 등록제로 이원화되었던 것을 등록제로 일원화
- 일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업종의 경우에는 진입규제 상존
 - 냉장차량의 경우는 차량이 1~5톤일 경우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등록하여 영업할 수 있으나, 5톤 이상일 경우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25대 이상)으로 등록하여야 함
 - 컨테이너 차량의 경우는 등록기준이 개정 전의 10대에서 개정 후에 25대로 강화

화물운송사업 개편 내용

종전의 업종	변경된 업종(등록제)
1. 노선화물운송사업(면허제) - 대수 : 30대 - 차량 : 일반형, 밴형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대수 : 25대 이상 - 차량 : 화물차 및 특수차(톤급 구분 없음)
2. 전국화물운송사업(등록제) - 대수 : 50대 - 차량 : 5톤 이상 일반형	
3. 일반화물운송사업(면허제) 〈개별〉 - 대수 : 1대 - 차량 : 1톤 초과 5톤 미만 일반형 〈일반〉 - 대수 : 1대 - 차량 : 5톤 이상 일반형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 대수 : 1대 - 차량 : 1톤 초과 5톤 미만, 중형 특수차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4. 컨테이너운송사업(등록제) - 대수 : 10대 - 차량 : 견인차(컨테이너)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5. 용달화물운송사업(면허제) - 대수 : 1대 이상 - 차량 : 1톤 이하 일반형	용달화물운송사업 - 대수 : 1대 이상 - 차량 : 1톤 이하
6.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제) -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및 중형 특수자동차(견인형 제외) - 최대적재량 5톤 밴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소형 특수자동차 - 기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용달화물운송사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새로운 업종구분과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관련)은 1999. 7. 1일부터 적용

* 외국사례 : 외국의 경우 대다수의 국가가 최저 차량대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제한하고 있는 나라도 우리보다 기준이 매우 낮음

외국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규제현황

구 분	영 국	미 국	캐나다	스웨덴	일 본
시장참여 제도	면허제	면허제	면허제	면허제 또는 없음	허가제 및 신고제
업종구분	×	△	△	○	○
사업구역 제도	×	△	△	×	○
최소면허기준	×	×	×	×	○
면허기준 (수요·공급)	×	○	×	○	×

* 일본의 경우 최소 면허기준 : 화물운송(지역별 5~15대), 특정운송(3~5대)

* ○ : 규제있음 / × : 규제없음 / △ : 일부 규제있음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나. 문제점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진입장벽 강화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면허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최저자본금 및 최저기준 등록대수를 조정하였으나,
- 일반화물운송업의 최저기준 등록대수를 25대로 제한함으로써 등록제 전환의 의의가 상당부분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업종은 진입규제가 강화되는 결과 초래

화물자동차의 톤급별 등록가능업종

구 분	1톤 이하	1~5톤	5톤 이상
1대		개별화물	개인지입차주
1~24대		중소운송업자	
25대 이상		일반화물운송업자	
차량비중(%)	19.4	23.2	57.4

[자료] 산업연구원

■ 물류비 증대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됨에 따라 기존의 지입제

관행 등이 지속되면서 업체경영이 지입료와 알선료를 주수입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운송사업의 비효율성을 심화시키고, 수출입화물 등의 운송비 상승을 초래해 국내 산업체에 물류비 증대로 전가되고 있음

- 현재 컨테이너 육상운송시장은 15개 내외의 대형 ODCY(부두 밖 영업용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관계로 중·소 하주들은 운송업체 선택권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으며 대형 하주들에게 비해 훨씬 높은 운임을 지불하고 있음

※ 1998년도 무역업계 컨테이너 육상운송요금 부담액은 1조 1,500억원 규모에 달해 해상운임 다음으로 무역업계 물류비 부담이 큰 항목임

- 특히 시장진입 철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999. 7월부터 운임이 자율화 되면 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 운임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

■ 운송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 지입 및 개별차주가 부담하는 지입료 및 알선료 등으로 인해 현재 지입차주는 화주가 실제 지급하는 운임의 50~60% 수준만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자료: 교통개발연구원)

※ 연간 지입료 추산: 96,117대(1999. 3월 기준 5톤 이상 차량대수) × 0.9(지입률) × 12월 × 200,000원(월평균 지입료) = 2,076억원

[자료] 전국차주연합회

-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가 운수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 운수업체가 회사를 양도·양수할 때 또는 부도시에 차량의 실명등록이 되지 않아 개인 차주의 재산권행사가 극히 제약됨
- 제세공과금을 개인차주가 부담하나 세제혜택 등 각종 권리는 운수사업자가 누림

다. 개선방안

■ 제1단계: 등록기준 하향 조정(1999년 하반기)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등록기준 대수를 '25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낮추고, 등록기준 중 사무실 및 영업소 시설기준 폐지

■ 제2단계: 등록기준 폐지(2000년 말까지)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등록기준대수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건설교통부는 등록기준 하향조정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관련단체·수요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등록기준대수 폐지 추진계획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 지입제의 문제는 지입제를 폐지하기보다는 경영위탁의 취지에 맞는 지입제 육성이 필요하므로 향후 지입차주는 단독으로 운영을 하거나, 스스로 위탁관리방식의 지입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 현행 운송사업법인은 진입규제의 보호막 없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운영(전국 규모의 대량화물·동원물자 등)상의 육성대책을 별도 강구

라. 기대효과

■ 물류비 절감 및 운송서비스 개선

- 지입제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증대 및 낙후된 물류 수주체계로 인한 운송원가 이외의 상당한 누수부분이 제거되어 물류비 절감에 기여

선진국의 운송업 규제완화 이후 요금인하 효과

국 가	기 간	요금 인하폭
영 국	1970~1978	25%
미 국	1980~1985	12~25%
뉴질랜드	1984~1987	25%
프 랑 스	1987~1990	15%

[자료]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 운송산업의 건전한 발전

- 운송업체 명의로 사실상 개인 영업을 하는 개별 운송업자를 제도권 내로 흡수해 기존 운송업체와 신규 시장진입자 사이의 서비스 경쟁과 물류확보를 위한 새로운 물류 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송시장 형성 기대
- 컴퓨터를 이용한 화물운송 시스템이나 정보교환 시스템의 개발, 복합운송 서비스의 확산은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혁신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 물류기반 구축

-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운송사업자의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사업여건을 조성하여 물류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마.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 개정 : 2000. 1. 1일 시행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영업소 설치기준 개선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 화물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시·또는 군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함(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는 제외)
- 시·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같은 관할관청인 도내의 타 시·군에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는 상주영업을 할 수 없어 운송사업 경영상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나. 개선방안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 설치기준은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외의 타 지역에서 운송사업을 할 경우 예상되는 당해 지역 내에서의 불법주·박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 타 지역에서 영업 후 차고지로 돌아올 수 있는 광역시·도단위 지역 내에서는 영업소 없이도 상주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소설치 단위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확대

다. 기대효과

- 불합리한 경영비용 절감으로 운송사업의 경영상 애로요인 해소 및 경영 효율성 제고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2000. 1. 1일 시행 예정

3) 개인택시운송사업 재면허제한제도 폐지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날부터

새로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일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금지하고 있음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기준인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의 계산방법에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함
- 10년간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재면허 금지는 2중규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로 위임의 범위를 이탈

나. 개선방안

- 개인택시운송사업 재면허 금지기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폐지

다. 기대효과

-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진입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장기 종사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서비스 질 제고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1999. 12. 16일 시행

. 농업관련산업 진입규제 개선방안

* 집필자 : 전홍 과장(Tel. 3703-2188)

1. 규제개혁의 기본방향

1) 농업분야의 경쟁제한적 요소

-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도모하고, WTO 체제 출범 이후 선진국들의 무차별적인 통상압력으로 무한경쟁하에 처한 농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농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나,

- 이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 관련업체로부터의 각종 불만 및 민원 발생
- 관련 사례
 - 농업지원사업인 시설원예생산·유통지원사업의 경우, 온실시공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온실시공능력 평가서를 '대한온실산업협회'에서 발급받도록 함으로써 협회가입을 사실상 유도
 - 정부양곡 운송은 지금까지 관행에 따라 대한통운에서 독점적으로 수행
- 따라서 이러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민원을 해소 및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제고 필요

2) 농자재산업의 규제개혁

- 비료·농약·농기계·사료·종자·동물약품 등의 농자재는 농업생산의 기반이 되는 요소이고, 특히 농자재의 적기 안정공급과 품질은 생산의 양과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
- 따라서 국가에서 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자재의 품질관리 및 수급조절'에 상당부분 개입함으로써, 농자재산업에 대한 규제의 주요 부분을 차지
- 농업인 보호차원에서 농자재의 품질·안전관리 및 수급조절·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 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진입규제는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고, 품질·안전관리를 위한 엄격하고도 중복적인 규제는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산업의 발전을 저해
 -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1998년도 이후 민간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대폭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각종 인·허가 등 불필요한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에 대한 제한을 상당수 폐지하였으나
 - 1998년에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누락된 부분, 각종 민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잔존하여 이를 추가로 발굴·개선

3) 규제개혁의 기본방향

- 농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경쟁제한적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개선
- 농자재산업 규제개혁의 미흡한 점을 보완

2. 세부규제 개혁방안

1) 정부양곡의 운송에 시장경쟁원리 도입

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양곡의 운송은 전국을 대상으로 수시로 운송해야 하므로 현재까지 전국적인 운송망을 가지고 있는 대한통운에서 독점 수행
- 대한통운과의 계약체결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단위로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
- 운송료는 건설교통부에 신고수리된 일반화물자동차 운임 및 요금을 기초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양곡 트럭운임 요율에 의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정 1998. 2. 17)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화물자동차 운임 및 요금의 신고수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요금은 운송사업자와 사용주가 자율결정
 - 정부양곡 트럭운임 요율은 1997. 10. 10일 개정하여 현재까지 적용

나. 현행 정부양곡 운송체계 평가

■ 긍정적 측면

- 긴급운송 및 소량의 운송물량 발생시 신속운송 가능
- 운송회사의 오랜 경험축적으로 정부양곡의 안전운송 및 신속처리 가능
- 3년 단위로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

■ 부정적 측면

- 대한통운 이외의 대규모 운송회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업체의 참여기회 상실에 따른 불만
- 정부양곡 운송을 3년간 독점적으로 계약하여 수행함으로써 운송서비스의 질적 하락

우려

- 요율에 의한 고정적 대가 지급에 따라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운송료 미반영

연도별 정부양곡 운송료 지출 현황

(단위 : 억원)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144	126	138	83	115	82

다. 개선방안

- 원칙적으로 일정물량 이상의 양곡운송은 일반경쟁입찰제 도입으로 정부양곡 운송시장을 완전히 개방
 - 정부양곡에 대한 대한통운과의 독점 도급계약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차운송업 면허소지자로서 작업을 일관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체와 운임 입찰제 단계적 확대 실시
 - 소규모 운송물량은 기존의 방식대로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운송추진

라. 추진일정

-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양곡의 운송부터 실시
 - 1999년 M M A 수입양곡 11만 4천톤에 대한 국내운송업체를 입찰에 의해 선정(2000. 1월)
- 수입양곡 운송입찰결과에 따라 2001년부터 국내산 양곡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시행

마. 기대효과

- 정부양곡의 운송분야에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양곡운송분야의 진입장벽 해소 및 운송서비스의 질 개선
- 운송입찰제 시행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 최근 3년간 운송료 기준시 연간 약 10억원 수준 절감예상
 - 최근 3년간 평균 운송료는 112억원 수준

2) 시설원에 생산·유통지원 사업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가. 추진배경

- 농촌노동력 부족, 농산물 시장개방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자본과 첨단기술의 집약을 통해 노동력을 대폭 절감하고 전천후 상시농업 및 고부가가치 농업기반을 마련코자 정부는 1994부터 채소류 주산지 중심의 생산·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해 왔음
- 시설원에 생산·유통지원 사업은 시설원에 경영체에 현대화된 생산·유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단위수량 제고 및 품질개선 등을 도모하고, 기존시설의 개보수 지원으로 에너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하는 정부지원사업임
 - 관련 근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 시설원에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원예특작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지원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 원예시설(온실) 설치, 유상 A/S 및 기존시설의 개·보수 등 사업의 시공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개선코자 함

나. 시설원예시설 설치시 시공업체 선정관련

■ 현황

- 농어촌구조개선사업상 온실 등 시설설치를 위한 시공업체는 시장·군수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
 - 시공업체로 선정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인 보호차원에서 온실시공능력평가위원회의 공시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확인서를 '대한온실산업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농림사업 시행지침)
- 시공업체의 자격기준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온실시공업체로 관련기관에 등록한 자
 - '대한온실산업협회'가 운영하는 '고객사후봉사단체협약'에 가입한 자
 - 온실 시공능력 평가 공시업체

■ 문제점

- 온실시공능력평가서를 대한온실산업협회에서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협회가입 유도 오해소지

※ 현재 대한온실산업협회는 입회비 300만원과 연 50만원의 정액회비 및 수주액의 1/1,000을 납부토록 하고 있음

- 법적 근거 없이 대한온실산업협회가 운영하는 ‘고객사후봉사단체협약’에 가입한 업체에게만 시공업체 자격을 주는 것은 비가입업체의 민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개선방안

-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및 온실시공능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
 - 온실시공능력 평가확인서 발급을 시공능력 평가주체인 ‘온실시공능력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발급하도록 개정
- ‘고객사후봉사 단체협약’ 규정 폐지
 - 고객사후봉사단체협약 규정을 폐지하여 진입규제의 소지 해소(1999. 7. 31일까지 관련규정 개정 또는 폐지)

다. 시설원예시설 유상 A/S 관련

■ 현황

- 단체협약에 의한 책임사후봉사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온실시공업체가 사후봉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폐업·도산 등으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자인 농업인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 대한온실산업협회에서 선정한 ‘도 사후봉사지정점’에서 책임지고 사후봉사를 실시하여 온실시공의 하자로 인한 농업인의 불만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음
- 시설원예는 신속하게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작물의 생육중지, 고사 등이 발생하여 곧바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시 개폐장치, 난방시설 등이 고장난 경우에는 하자발생 신고를 접수한 시각으로부터 8시간 이내
 - 그외 하자발생은 신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현장에 수리요원을 파견하여 하자를 수리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에 의한 책임사후봉사’를 제도화하였음

■ 문제점

- ‘고객사후봉사단체협약’은 법적 근거 없이
 - 사후봉사지정점 자격을 대한온실산업협회에 가입한 자로 제한하고,
 - 하자보증기간 내 유상 A/S를 사후봉사지정점에서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경쟁제한

적인 요소가 있음

■ 개선방안

- ‘고객사후봉사단체협약’ 규정 폐지
 -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발생에 따른 하자보수는 당사자(발주자와 시공업체)간의 문제로 온실건설공사도급 표준계약조건에 의해 이행되도록 하고
 - 표준계약서에 하자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시킴(1999. 7. 31일까지 관련규정 폐지)

라. 기존원예시설 현대화(개·보수)사업 관련

■ 현황

- 1991년부터 시설원에 경영체에 현대화된 생산 유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단위수량 제고 및 품질향상 등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시설원에 생산 유통사업 추진
- 사업 초창기에는 단가가 높은 양액재배시설(평당 5만원), 에너지 절감시설(평당 2만~3만원) 등을 지원하지 못하여 당시 지원시설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 사업추진 기간이 10년 정도 경과함에 따라 온실자동화시설 보온커튼 등 새로운 자재를 활용한 우수한 자재들이 개발되고, 기존시설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에너지 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설개 보수사업이 필요함

■ 문제점

- 기존 원예시설 현대화(개·보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한온실산업협회에 가입하고 대한온실산업협회가 지정한 사후봉사지정점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비지정업체 불만
- 단순 개·보수와 중요 개·보수 구분없이 지정점으로 제한함에 따라 단순 개·보수의 경우 농자재상이 실제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면허업체는 면허를 빌려주거나 중간마진만 챙기는 부작용 발생

■ 개선방안

- 시설원에 개·보수사업 세부추진지침 중 ‘시공업체 선정’ 분야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된 시공업체로서 온실시공능력평가위원회의 시공능력평가 공시를 받은 업체
 - 단, 경미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전문 건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도 가능(1999. 7. 31일까지 관련규정 개정)

3) 비료공급체계 개선

가. 현행 비료공급체계

- 비료는 식량생산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영농자재로서 식량증산요인 중 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종자 30%, 농약 20%에 비해 가장 높은 증수효과를 보이고 있음
- 현행 비료공급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 비료수급계획에 따라, 농협에서 계통공급하는 식량작물용 비료에 대하여 농업인에게 판매원가보다 싸게 공급하고, 차손을 정부재정에서 보전
 - 식량작물용 비료(화학비료, 유기질비료)는 영농기(3~6월)에 집중 소비되므로 적기안정공급을 위하여 공급물량을 사전 확보할 수 있는 창고 및 수급관리를 위한 전산망을 보유한 농협을 통해 공급
 - 6월까지 비료 소비량 : 전체의 70%
 - 농협의 비료창고 보유량 : 5,343개
- 시중의 농약, 비료 판매상은 대부분 식량작물용 비료를 사전구매 확보할 수 있는 창고 및 수급관리에 필요한 전산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기안정공급을 위하여 농협에서 사전 확보하여 농가에 공급해 왔음
 - 원예용 비료는 원예조합 및 일반시판상 등에서 판매하고 있음
- 비료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비료의 공급 및 재정지원)에 근거하여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비료의 공급으로 결손액이 생길 경우 정부예산에서 보전
- 식량작물용 비료는 매년 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협을 통해 비료를 판매한 후 차년도 정부예산에서 비료판매가격 차손액을 농협에 보전
 - 1962~1987년까지 비료계정은 농협에 설치하고 비료계정에서 차손을 보전하였으나, 1991년부터는 정부예산에서 가격차손 보전

나. 현행 체계의 장·단점

■ 장점

- 농업인에게 구매가격보다 싸게 비료를 적기공급함으로써
 - 지원액 규모의 농업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생산성 제고
 - 농협을 통해 영농기에 적기공급함으로써 안정적 영농수행 가능

- 소비자는 보다 값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물가안정효과 발생
- 유기질비료 및 주문배합비료 등의 지원 · 공급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업 실현에 기여

■ 단점

- 비료산업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저가공급으로 비료업체의 경영난 가중
 - 농협에서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여 공급물량 및 종류를 미리 결정하므로 생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농업인의 구미에 맞는 다양한 품종의 신제품 개발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음
- 환경친화적인 농업정책의 추진에 저해요소로 작용
 - 저가로 공급받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토양성분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 양보다 과다하게 화학비료를 사용함으로써 토양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됨
- 정부재정부담 가중
 - 농업인 영농비 부담경감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 예산이 매년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어 정부재정에 부담이 됨

연도별 비료판매 가격차손 지원실적

(단위 : 억원)

연도	1991~1995	1996	1997	1998	1999
지원액	1,617	557	866	1,065	1,065

다. 기대효과

- 비료판매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어지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비료가격 형성
- 비료가격이 현실화될 경우 비료판매가격 차손을 정부재정에서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정부예산 절감효과 발생
- 비료가격 현실화에 따라 비료 과다사용을 방지할 수 있어 토양보전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

라.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현재 비료판매업은 신고제(시장 · 군수)로 되어 있으나, 개정 비료관리법이 발효되는 1999. 7. 1일부터 신고제 폐지

- 시판상을 포함한 누구나 비료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비료판매업이 완전자유화됨
- 농협을 통해 계통공급되는 식량작물용 비료에 대한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 지원액을 연차적으로 축소
- 2004년부터는 비료판매가격을 완전 현실화하여 정부보조 없이 비료를 판매하도록 함

연도별 비료판매가격 지원액 감축계획

(단위 : 억원)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지원액	1,065	965	815	665	465	200	0

* 예산연도(익년도 보전) 기준임

4) 농자재산업 분야의 규제개선

가. 농기계 형식검사제도 개선

■ 현황

- 농촌노동력 부족해소와 대형 농기계에 의한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가 및 생산자단체, 공동 이용조직 등에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형식검사에 합격해야 함(농림사업 시행지침서 : 농기계 구입 지원)
 - 시제품의 구조 · 성능 · 조작 · 취급요령 등 검사항목의 설정과 농기계품질협의회(위원장 : 농업기계화연구소장) 심의 및 시험방법 고시 등에 6월 이상이 소요되고
 - 다시, 농업기계화연구소의 형식검사에 45일이 소요됨
- 다만,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소형이며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는 기종으로서 여건변화에 시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는 농업기계화연구소의 검정에 의해 지원
 - 구조 · 성능 · 조작의 난이도, 안전성 등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되 검정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농업기계화연구소장이 위탁자와 협의해서 정함(소요기간 단축 추진 : 126일 → 90일)
 - 점정기종(3개) : 농용환풍기, 석(연)탄보일러, 온실난방용 대체에너지화 기기

■ 문제점

- 검사항목이 설정되지 않은 신기종의 경우 형식검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농기계 적기 공급에 애로가 있음
- 검사항목이 설정되어 있는 기종의 경우도 성능향상을 위한 신형식 개발시마다 형식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향상된 기능의 농기계 보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적은 농기계는 형식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검정으로 대체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안전장치 부착의무 기종과 승용형 기종(다른 법령에 의한 공인기관의 인증대상 기종 제외)은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농업기계화연구소의 형식검사 실시
 - 형식검사 대상 외의 농기계는 농업기계화연구소의 검정으로도 정부 지원대상 기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부담 완화
- 1999. 12월까지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

나. 종자관리사 고용의무 예외대상 확대

■ 규제현황

-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종자관리사 1인 이상을 두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종자산업법 제137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 종자관리사 제도
 - 국가 보증종자 대상 이외 종자의 자체보증은 종자관리사가 행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가에 의한 우량종자의 생산과 종자보증제도의 실효성 확보
 - 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8조) : 화훼, 사료작물, 목초작물, 특용작물, 빵, 임목, 해조류
 - 현재 종자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종자업 : 식량작물, 채소, 과수, 버섯
 - ※ 종자업 등록업체수(1998년말 현재) : 332업체(채소 50, 과수 162, 화훼 23, 버섯 70, 빵 11, 식량작물 11, 기타 5)

■ 문제점

- 종자관리사 제도는 전문가에 의한 우량종자의 생산으로 종자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종자보증을 위한 제도이나

-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작물의 종자업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종자 관리사 고용의무가 부담이 되고 새로운 업체의 진입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주요한 농작물 이외 작물종자업의 종자관리사 고용의무를 폐지하여 업계의 부담경감 및 진입규제 완화
- 종자관리사 보유 예외작물 확대 추진안
 -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외의 식량작물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자두, 매실, 참다래, 감귤 외의 과수
 - 무, 배추, 양배추, 고추, 토마토, 오이, 참외, 수박, 호박, 파, 양파, 당근, 상추, 시금치 외의 채소류
 - 양송이, 느타리버섯, 팽나무버섯, 영지버섯, 만가닥버섯, 잎새버섯, 목이버섯, 팽이버섯, 복령, 버들송이 외의 버섯

다. 종자관리사 보유 예외로 확대되는 작물

- 전세계적으로 작물의 종류는 2,500여종이며, 이중 식용작물이 888종(출처:재배학원론)이므로 확대작물은 수백종이나
 -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작물(통계조사 대상작물) 중 해당작물은 37개 작물임
 - 식용작물(8) : 밀, 호밀, 조, 수수, 메밀, 팥, 녹두, 고구마
 - 과수(11) : 감, 살구, 밤, 호두, 대추, 양앵두, 무화과, 모과, 바나나, 파인애플, 유자
 - 채소(16) : 우엉, 연근, 토란, 미나리, 쑥갓, 딸기, 가지, 메론, 마늘, 생강, 셀러리, 피망, 적채, 파세리, 꽃양배추, 녹색꽃양배추
 - 버섯(2) : 상항버섯, 신령버섯
- 종자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999. 7. 1일부터 시행 예정

라. 품종생산·판매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 규제현황

- 우량종자의 생산·보급과 종자사고 예방을 위하여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보호품종의 종자,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 장관에게 신고품종의 사진 및 종자시료 등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종자산업법 제138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

- 신고시 구비서류

- 품종생산 · 판매 신고서 부분 1부
- 신고품종의 사진 및 종자 시료
-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
 - ※ 품종보호권 설정,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품종 : 벼, 보리 등 품종보호 대상작물(27개 작물) 중 품종보호 권리가 설정등록된 품종
- 국가품종목록 등재품종 : 벼, 보리, 옥수수, 감자 중 목록에 등재된 품종
 - ※ 품종생산 · 판매 신고수(1999. 4. 12일 현재) : 8,451품종
- 식량작물 25, 채소류 925, 과수류 107, 버섯류 32, 특용작물 43, 사료작물 120, 화훼류 7,188, 기타 11

- 문제점

- 품종의 생산 · 판매신고시 “신고품종의 사진(포장전경, 실물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외국품종의 경우 사진의 사진입수가 어려워 품종생산 · 판매신고시 민원인들의 불편 초래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고시 구비서류 보완으로 민원인의 불편 해소
 - 신고시 구비서류에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의 제출도 허용
 - 품종생산 · 판매신고서 부분을 구비서류에서 제외하여 제출서류 간소화
- 1999년 상반기중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11조 개정 추진

마. 사료제조업 운영관련 제도개선

- 규제현황

- 단미 · 보조 · 배합사료의 제조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와 공장부지의 등기부등본 및 부지증명서류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단미 · 보조 · 배합사료 등록을 한 자가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설변경의 승인신청을 하도록 함(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 문제점

- 사료제조업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 중 공장부지의 등기부등본 및 부지증명서류는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와 무관한 사항으로서 불필요한 규제임
- 사료제조시설의 변경에 있어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은 배합시설의 변경, 분쇄시설의 변경, 공장이전인데 이 중 공장이전은 이전한 이후 다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단순한 공장이전신고는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임
- 단미·보조·배합사료의 제조업은 1996년 이전까지는 허가제로 운영되어 시설의 변경시에 승인을 받도록 하였는데, 등록제로 완화됨에 따라 시설변경승인 불필요

■ 개선방안

-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변경시에만 신고토록 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 추진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등록을 할 때 제출서류 축소
 - (현행) 사업계획서, 공장부지의 등기부등본 및 부지증명 → (개선) 사업계획서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시설 변경 신고대상 축소
 - (현행) 배합시설의 변경, 분쇄시설의 변경, 공장 이전 → (개선) 배합시설의 변경, 분쇄시설의 변경
 -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변경의 승인신청제도를 폐지하고 신고만 하도록 함
- 1999년 7월까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금융산업 진입규제 완화

* 집필자 : 이상희 사무관(Tel. 3703-2159)

1. 현행 진입기준 및 문제점

1) 현행 진입기준

가. 업종별 최저자본금 기준

구 분	최저자본금	비 고
은 행	• 1,000억원. 단, 지방은행은 250억원	
증권회사	• 종합증권업 500억원 • 자기매매 · 위탁매매업 300억원 • 위탁매매업 30억원 • 장외 유가증권매매 · 매매중개 10억원	
보험회사	• 300억원. 단, 외국보험사업자(영업기금)는 30억원	
투자신탁회사	• 100억원	
신탁업법	• 금전신탁 인수업무 250억원 • 금전 이외의 재산 인수업무 100억원	
선물거래업자	• 30억원	
증권투자회사	• 8억원	
종합금융회사	• 300억원	
상호신용금고	• 특별시 60억원, 광역시 40억원, 도 20억원	
여신전문금융사	• 3개 이상의 여신전문금융업 영위 400억원, 기타 200억원	
신용협동조합	• 지역조합 : 특별시 · 광역시 3억원, 시 2억원, 읍 · 면 5천만원 • 직장조합 : 4천만원 • 단체조합 : 특별시 · 광역시 1억원, 시 8천만원, 읍 · 면 5천만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	• 250억원	
신용정보업자	• 종합신용정보업 50억원 • 신용조사 · 채권추심업 15억원	

* 선물거래업, 증권투자신탁업, 신용정보업, 증권위탁매매업, 채권추심업 등 일부 금융서비스업에 대하여는 1998년 잔존규제 정비시 최저자본금을 대폭 완화

나. 주요 업종 자본금 기준의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자본금 기준은 전신통제체제하에서 마련된 일본의 진입규제를 모델로 한 것으로 생각되나, 일본보다도 엄격하고 서방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임

주요 업종의 최저자본금 국제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영 국	독 일
은행	1,000억원. 단, 지방은행은 250억원	10억엔	100만달러	100만파운드	1천만마르크
증권	• 종합증권업 500억원 • 자기매매·위탁매매업 300억원 • 위탁매매업 30억원 • 장외 유가증권매매·매매중개 10억원	• 50인 이상의 고객대상 간사업무 100억엔 • 상기 외의 간사업무 30억엔 • 인수업무 5억엔	• 고객계정취급 위탁매매·자기매매 25만달러 • 자기매매 10만달러(종목에 따라 최고 1백만달러) • 인수업무 10만달러, 인수금액의 30% • 매매중개·자기매매 5천달러	• 다음의 합계액 - Base Requirement(25만파운드, 연간비용의 25%, 영업규모 관련 결정된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Position Risk Requirement - Counterparty Risk Requirement	
보험	• 300억원. 단, 외국보험사업자(국내지점 영업기금)는 30억원	• 10억엔	• 생명보험 200만달러 • 손해보험 종목별로 10만~90만달러	• 생명보험 80만 EMU • 손해보험 종목별로 20만~40만 EMU	• 생명보험 80만 EMU • 상호보험 20만~80만 EMU • 손해보험 732천~5124천 DM

* 1999. 12. 16일 현재 해당통화 환율

• 1 US\$: 1,132.60원, 1 엔 : 10.94원, 1 파운드 : 1,825.75원, 1 EMU : 1,139.06원, 1 DM : 582.39원

2) 진입기준의 문제점

가. 국제적 정합성 결여

- OECD 가입 등 개방화 진전에 따라 금융기관 진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가 요구되
나
- 우리나라는 그동안 금융시스템의 안정 도모를 위해 금융기관의 진입 및 퇴출을 과도하게
규제해 왔으며,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 허가 등 심사기준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최소 자본
금요건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

※ 허가 등 심사기준의 투명성 부족 문제는 1998~1999년 잔존규제 정비로 진일보

나.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을 저해

- 과도한 진입기준은 기진입 금융기관에 대한 과보호를 초래하게 되어 경쟁위협이 현재화
하지 않음으로써 경영효율화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게 되고,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획일적이어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 또한 여신심사 · 리스크관리 · 언더라이팅 · 자산운용 등 전분야에 걸친 금융기법의 선진
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함

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유발

- 거액의 자본금 요건은 소액자본가의 금융산업 영위를 곤란하게 하고, 결국 자본력이 풍
부한 대규모기업집단 등의 직 · 간접적인 참여를 불가피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 동일인 및 동일계열기업군 신용공여한도 설정 등 편중여신 억제장치에도 불구하고 제3
자를 통한 우회적 자금공급 및 교차지원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 재벌의 사금고화할 것이
라는 우려가 대두됨

라. 금융업 구조조정 지연

- 과도한 최저자본금 요건은 금융기관의 외형성장을 유발하게 됨으로써 이들 기관이 부실
화할 경우 사회 · 경제적 파장이 우려되고 금융기관 스스로의 인수 · 합병이나 금융당국
의 도산처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됨

2. 자본금기준 완화시 고려사항

1) 자본금의 기능 : 부실금융기관 설립방지를 통한 고객보호

- 자본금은 금융기관 성립의 기초가 되며, 주주에 대한 출자액과 책임의 한계를 의미하고, 예금자·투자자 및 채권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신용 및 담보(리스크 방파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 다만, 예금자 및 투자자에 대한 리스크 방파제로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1995. 12월 예금자보호법의 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예금보험제도가 동 기능을 보완
 - 금융기관의 공신력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금융기관이 스스로 예금자 등에 대한 보호 동기를 가짐
 - 거래감리 시스템, 전자공시 시스템의 발달 등

2) 금융산업의 성격 : 지식집약산업으로의 이해 필요

- 금융산업의 개방, 금융수요의 다양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접목 등으로 끊임없이 금융신상품이 개발되고 있고, 금융기관간 가격경쟁의 심화로 인해 자산운용의 수익률 제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자본금의 확충보다 해당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더욱 긴요함. 즉, 금융산업은 자본집약산업이 아니라 지식집약산업으로 이해하고 육성·발전시켜야 할 것임

3) 금융기관 구조조정과의 관계

■ 금융기관 구조조정 현황

- IMF의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정부와 IMF측과의 합의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의 조기퇴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1999. 11월말 현재 인·허가 취소, 합병 및 해산 등 정리된 금융기관의 수는 328개로 1997. 12월말 현재 전체 금융기관의 15.6%에 달함

금융기관 구조조정 추진 현황

구 분	1997년말 총 기관수(A)	구조조정 내용				B/A (%)	1999.11월말 현재 기관수
		인·허가 취소	합병	해산 등	계(B)		
은행	33	5	5	-	10	30.3	23
종금	30	17	3	-	20	66.7	10
리스	25	-	1	5	6	24.0	21(신설2 포함)
증권	36	5	-	1	6	16.7	32(전환2 포함)
보험	50	4	1	-	5	10.0	45
투신	31	2	-	4	6	19.4	25
금고	231	33	11	10	54	23.4	187(신설10 포함)
신협	1,666	1	55	165	221	13.3	1,454(신설9 포함)
합계	2,102	67	76	185	328	15.6	1,797

- 은행·종금 및 증권사를 제외한 여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아직 진행중이며 투신사의 경우에는 2000년 하반기에나 추진될 것으로 보임

■ 금융구조조정과의 관계

- 진입규제 완화는 장기적으로 금융기관 스스로의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나,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진입과 퇴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출에 상응하는 신규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시장의 비경쟁적 전환 우려가 있음

4) 금융시장의 전망

■ 국제금융시장 : 금융산업의 경쟁촉진 추세 가속화

- 1999. 10. 22일 미 의회 지도자들과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간에 은행법 개정안(H.R.10)에 합의함
 - 동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증권·보험의 다른 업종 진입을 금지하는 클래스-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과 은행 지주회사법의 관련규정 폐기로서 은행 · 증권 · 보험의 상호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경쟁촉진에 의한 금융기관의 효율성 제고에 있음

- 전통적으로 금융산업의 안정유지를 도모해 온 일본도 자유경쟁, 다양, 효율을 금융재편의 방향으로 잡고 있음

- 일본 경제대책 각료회의(1999. 11. 11)에서 결정한 경제신생대책에서 구조개혁의 개념을 재정립함

■ 국내금융시장 : 금융산업의 재편 시작

- 2000. 1월부터 부보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황,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에 따라 예금보험 요율이 차등화되는데, 우량 금융기관은 이를 광고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2001년부터는 금융기관별 1인당 원리금 보장한도가 2천만원으로 축소됨으로써 금융기관 고객의 대대적인 이동(금융권간 이동 및 금융기관간 이동)을 유발할 것임
- 이러한 현상이 가시화되는 2000년 하반기 이후에는 금융기관간의 활발한 인수 · 합병으로 소수의 대형 금융기관과 여타의 특성화된 금융기관으로 재편될 것이 확실해 보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금융기관 진입규제 완화가 필요

3. 진입규제 개선방안

1) 기본방향

가. 최저자본금 기준의 인하

-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
 - 예금자 · 투자자의 금융기관 선별자료 제공을 위한 공시강화 등으로 보완

나. 진입기준의 차별화

- 일부업무 특화 금융기관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신축적인 진입기준 마련
 - 생보 · 손보 중 특정업무 영위 보험사 설립기준 마련

* 부보금융기관 등의 차등보험요율 비교광고는 금지됨(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 제30조의 2 제1항)

다. 인·허가 기준 투명화(계속)

- 재량중심적 운영에서 규칙중심적 운영으로 전환

라. 감독기능 강화

- 경영자 자격요건 등 심사 강화
- 설립 후의 적기시정조치 등 지도감독권 강화

2) 최저자본금 기준의 인하

가. 인하대상 업종

- 은행, 증권업(종합증권업, 자기매매·위탁매매), 보험업, 종합금융업,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업
- 1998년 잔존규제 정비시 최저자본금 요건을 인하한 업종,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령 제정한 심사시 자본금 요건에 대해 심사한 업종 등을 제외
 - ※ 신탁업의 경우 부동산신탁회사를 제외하고는 은행이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어 자본금 인하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나. 인하의 기준

- 원칙적으로 현 기준의 1/2 내지 1/3 수준으로 인하
- 각 업종별로 수신기능이 차지하는 비율, 파산시 예금자 보호 및 투자자 보호대상의 다과 및 장기 정책방향(예 : 우량 상호신용금고의 지방은행 전환 등)을 감안하여 결정

3) 진입기준의 차별화

가. 차별화 필요성

- 진입규제의 목적인 시스템리스크(system risk) 및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문제가 동일 업종 내에서도 영위업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최저자본금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요건의 획일적 규정으로 일부 업종에 특화된 전문금융기관(소규모의 지역밀착형 은행, 화재·해상·자동차 등 특정 손보상품 취급 보험사 등)의 출현 애로

나. 차별화대상 업종

-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핵심업종 및 여신전문금융업

다. 차별화 수준

- 업무제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은행·증권·보험의 핵심업무중 업무성격상 구분 영위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 해당사업 영위에 필요한 자본금 규모를 개별적으로 산정, 세분화

4) 인·허가 기준 투명화(계속)

가. 주요 투명화 대상

- 수지전망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 리스크관리 등 관련 전문인력 확보계획 등 비계량적 항목

나. 투명화 수준

- 설립 인·허가 등 신청자가 신청결과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구체화
- 인·허가권 자의 재량권 범위를 허가당국의 규정(지침)에 명시
- 인·허가 신청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3개월) 경과시까지 인허가 거부조치가 없을 경우 인가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가의제 제도 도입 검토
 - ※ 금융산업 진입규제 관련 규제개혁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추이 및 동 산업에 대한 주무 부처의 정책목표가 반영되어야 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재정경제부로 하여금 2000년 3/4분기까지 마련토록 함

4.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세무 개선방안 마련 : 2000. 9월말
 - ※ 재정경제부가 추진할 2000년 중점규제개혁과제(2000년도 규제정비지침, 국무총리 지시 제 1999-27호)임
- 관계법령 정비(재정경제부) : 2000년말까지 법제화 검토

Ⅰ 제2절 Ⅰ

기업활동관련 규제개혁

·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방안

* 집필자 : 이용의 사무관(Tel. 3703-2159)

1.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의 기본방향과 과제

1) 규제개혁의 기본방향

가. 강제인증 대상분야와 품목의 축소·폐지

- 강제인증제도는 국민보건, 안전, 환경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하고 나머지는 축소 또는 폐지
- 대상분야의 성격상 강제인증제도로써 존속필요성이 낮거나 임의인증제도의 활용도가 높은 분야는 강제인증제도 자체를 폐지
 - 강제인증제도로써 존속이 필요한 분야라도 그 대상품목 중 강제인증의 필요성이 적거나 임의인증 또는 기업의 자율품질검사로 대체가능한 품목은 강제인증대상품목에서 제외
 - 예) 형식승인을 받아도 업계관행상 KS마크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

나. 인증제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인증·시험평가기관의 통합 및 자기인증제도 도입

- 정부는 인증기관의 지정 및 인증의 규격·기준을 관장하고 사후감독하는 인정기관의 역할만 수행하도록 기능 재정립
- 인증기관 및 시험평가기관은 원칙적으로 통합하여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복수화 허용
 - 인증기관의 특별한 역할이나 기능이 없는 경우 시험평가기관이 직접 인증토록 개선
 - 인증업무와 평가업무를 통합하되, 인증·시험평가기관의 복수화가 가능토록 함
 - 복수화 허용에 따라 정부는 인증기관 등에 대한 사후감독 철저
- 전산업 부문에 자기인증제도(DoC)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자체생산제품에 대한 책임 및 자율성 확대
 - ※ 자기인증제도(DoC=Declaration of Conformity) : 사업자가 인정기구가 정한 일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업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 스스로 기술기준에 일치함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다. 품질인증 절차의 간소화 및 보험제도의 활용

- 품질인증의 단계별 과정의 간소화
 - 생산과정·시제품에 대해 사전검사·형식승인을 실시하고 사후에 정기검사·수집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완성제품의 출고 전 완성검사·확인검사·검정은 폐지 또는 최소화
- 품질인증을 위한 제출서류, 처리기간, 인증필표시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
- 민간보험제도와 연계성 확대
 - 재해보상보험 가입시 강제인증의무 축소 또는 폐지
 - 특히, 생산자·수요자간의 협상력이나 정보 비대칭문제가 크지 않아 보험제도에 의한 강제인증제도 대체의 실효성이 높은 산업용 제품의 경우 우선적으로 도입

라. 품질인증제도의 국제화

- 국내 인증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
 - 국제규격(예: 전기용품 IEC)의 기술기준을 국내기술기준에 적극적으로 인용·조정
- 국내 인증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인력 보완 등을 통한 신뢰성 제고로 외국기관과의 M R A(상호인증협정)체결 확대

2) 품질인증제도의 규제개혁과제 추진현황

개 혁 과 제	추진현황	관련부처
1.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 개선	제25차 규제개혁위 의결(1999. 3. 12)	산업자원부
2. 공산품 사전안전검사제도 개선	"	"
3. 압력용기 사전안전검사제도 개선	"	"
4. 가스용품 사전안전검사제도 개선	"	"
5. 유선기기·무선기기·전자파 장애기기의 형식승인 등 제도개선	"	정보통신부
6. 의료용구 사전검사제도 개선	"	보건복지부
7. 정수기 품질검사제도 개선	"	환 경 부
8. 보호구 검정제도 개선	"	노 동 부
9. 유해·위험기계·기구 검사제도 개선	"	"
10. 자동차 형식승인 등 제도개선	제27차 규제개혁위 상정(1999. 4. 9)	건교부·산자부
11. 건설기계 형식승인제도 개선	"	건설교통부
13.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개선	"	환 경 부
14.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형식승인제도 개선	"	해양수산부

* 당초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방안'에 포함되었던 '선박 및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제도'는 경제1분과위원회 검토 결과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기로 함

2. 세부규제별 규제개혁방안

1)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 개선

가. 규제현황

- 1종 전기용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전기용품의 형식구분별로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9조의 2)
- 2종 전기용품의 경우 기업 스스로 자가인증 후 시·도지사에 신고하였으나 1997. 5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신고의무도 면제

제도 현황

구 분	1종 전기용품	2종 전기용품
구분기준 (시행규칙 별표8)	구조·사용방법, 또는 기타 사용상황으로 보아 위험·장해 우려가 많은 것	위험·장해발생이 우려되나 1종전기용품 보다 안전도가 확보된 것
품목수	TV수상기 등 233개	전기치출 등 67개
인증방법	형식승인	자가인증 후 신고
인증기관	국립기술품질원	시·도지사
표시마크	전	전

* 1종·2종 구별은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 후 산업자원부령으로 결정

■ 형식승인 절차 (영 5조, 지침 3, 19조)

- 제조업자는 '형식구분별', 수입판매업자는 '형식구분별, 제조국별, 제조자별'로 지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신청
- 형식구분 예 : TV 수상기는 '사용전원 110V/220V/기타, 변압기있는것/없는것,

형식승인 절차 및 구비서류

구 분	절 차	구비서류
국내제품	• 시제품 2~5개의 지정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형식승인 신청 → 전기용품심사위원회 심사 → 형식승인서 발급	형식승인신청서 시험기관성적서 제조업자증명서류 자체검사설비명세서
수입제품	• 수입전기용품 시료 확인(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후 통관 → 지정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형식승인신청(AS서류, 제품사용설명서 첨부) → AS체제 확인(전기용품안전 관리협회) → 전기용품심사위원회 심사 → 형식승인서 발급	형식승인신청서 시험기관성적서 AS체제계획서 제품사용설명서 무역업신고서
기형식승인제품을 다른 사람이 수입시 (형식승인확인)	• 시료 확인(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후 통관 → 형식승인 확인 신청 → AS체제 확인(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 지정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수입전기용품확인서 발급	형식승인확인신청서 AS체제계획서

* 수수료 : 시험신청 1만~40만원, 형식승인신청 건당 5만원

* 처리기간 : 시험신청 40일, 형식승인신청 법정 30일

칼라/흑백, 리모콘있는것/없는것' 으로 형식구분됨.

- '형식구분별' 형식승인의 경우 형식승인 후에는 동일 형식구분 내에서는 기기변경 가능(예 : '변압기있는것' 은 변압기의 교체가능)

■ 지정시험기관(법 16조 ①)

- 시험설비, 시험원자격 등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신청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 함 (영 제6조)
- 지정신청 서류 :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대표자 및 시험원 명단 이력서, 시험설비 명세서, 시험 외의 업무수행시 업무종류 및 개요(규칙 21조)
- 지정된 시험기관 (1998. 11월 현재 총 14개)
-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연구소
- 지방중기청 (11개)

※ 가진 3사(삼성 · 대우 · LG전자)는 자체시험결과로서 시험성적서 대체

■ 전기용품심사위원회(영 12조)

- 구성 : 관계공무원, 관련전문가 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위촉(위원장 : 국립기술품질원 품질관리국장)
- 기능 : 형식승인, 기술기준, 승인표시, 제조업시설 기준 등 심사

■ 형식승인의 갱신, 승계 등

- 형식승인 유효기간은 품목별로 3~7년임
- 형식승인 갱신절차 : 유효기간 만료 50일 이내 기형식승인서를 첨부하여 갱신신청→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가 시료채취하여 시험의뢰→시험결과에 따라 국립기술품질원에서 형식승인갱신서 발급(법 11조, 갱신수수료 10,000원)
- 형식승인 승계 : 양도, 상속 등 형식승인의 승계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시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에 신고함(지침 4조)

연간 형식승인 현황

구 분	1996		1997		1998. 1~11월	
	제조	수입	제조	수입	제조	수입
승인건수	2,367	1,607	2,582	1,450	2,101	855
계	3,974 건		4,032 건		2,956 건	

나. 문제점

- 인증기관(국립기술품질원)과 시험평가기관(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 등)이 분리·운영되고 있어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비효율적
 - 인증업무를 정부기관(국립기술품질원)이 독점 운영함에 따라 인증기술·절차·서비스 등의 개선 노력 미흡
 - 인증업무와 시험업무가 통합되는 국제추세에 역행되며 인증·시험업무가 통합되어 있는 외국과의 상호인증협정(M R A) 체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형식승인대상품목(1종 233개)이 많고 위험·유해성이 낮은 품목이 포함되는 등 합리적 기준 결여
- 수입전기용품 형식승인을 위한 시료수입시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통관이 지연되고 사업자의 비용부담 발생
 - 시료확인 은 형식승인대상 여부의 확인과 시료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것으로 시료가 소량(2~5개)에 불과하여 형식승인을 받기 위한 수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됨
 - 시료확인 수수료 : 건당 50,000원
 - 협회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형식구분, 카탈로그 또는 회로도
- 수입품의 형식승인요건 중 '사후봉사체제(AS)구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라는 형식승인제도의 취지와는 관계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임
 -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의 AS체제 확인절차로 인해 형식승인이 지연되고 사업자에 불합리한 비용부담 발생
 - AS체제 구축여부는 제품구매시 소비자가 판단할 사항
 - AS체제확인 수수료 : 건당 110,860원(출장비 제외)
- 형식변경이 없는데도 일정기간 경과시 형식승인을 갱신토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
 - 현재 형식구분이 바뀌면 형식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므로 형식변경이 없을 경우 형식승인을 갱신할 필요가 없음
 - 이에 따라 사업자가 부주의로 갱신기간을 경과하는 사례 다수 발생(형식승인 유효기간이 지나면 형식승인이 취소되어 형식승인 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게 되어 2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

다. 개선방안

- 인증업무와 시험평가를 한 기관에서 수행토록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으로 이양하

며 인증 및 시험평가와 관련된 기술·시설·인력 등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복수화가 가능토록 함(2000. 1월 시행)

- 정부는 인증기관의 지정·관리, 기술기준과 규격 및 절차를 관장하고 사후감독하는 인정기관의 역할을 수행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6조 개정(1999. 9)

■ 형식승인 대상품목의 조정

-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되 그 대상을 최소한으로 함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00년 상반기)

■ 수입전기용품 시료수입시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의 확인제도 폐지(2000. 7월 시행)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1999. 9)

■ 수입품 형식승인 신청시 AS체제계획서 제출의무 삭제

- 해당기업에서 자율적으로 AS체제를 구축토록 개선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운용에 관한 지침 제22조 개정(1999. 10)

■ 형식승인 갱신제도 폐지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1조, 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16조 삭제(2000년 상반기)

2) 공산품 사전안전검사제도 개선

가. 규제현황

- 소비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의 제조·가공·수입업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 ①)

■ 사전안전검사 절차

- 제조품 : 제품수량별 검사신청→완성품 확인검사→출고
- 수입품 : 시료수입 확인(검사기관)→통관→시료검사→물품통관(시료검사결과통지서 또는 시료검사 동일공산품 수입예정확인서 첨부)→수입품확인검사→출고
 - '검'(검사필증)마크는 검사기관에서 매 제품마다 부착하나, 공산품의 수량이 많은 경우 안전검사합격증표 자체인쇄 승인을 받아 안전검사 의무자가 부착(규칙 36조)

안전검사제도 현황

구 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품목기준 (시행규칙 별표 4)	위해방지 등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이 큰 품목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나 사전검사품목 보다는 인체위해 정도가 낮은 품목
품목수	건전지 등 17개	텐트 등 34개
검사방법	제품출고 전 또는 수입통관 전	유통 제품 중 시료검사
표시마크	‘검’	
검사기관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등 4개	국립기술품질원 지방중소기업청 11개

* 품목분류는 국립기술품질원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검토·지정

* 사후검사는 국립기술품질원장 또는 시·도지사가 주관하여 실시

■ 사전안전검사기관 및 검사품목

- 사전검사기관은 사전검사대상 공산품별로 시험검사 설비와 검사원 3명을 갖추면 산자부장관 지정(시행규칙 제30조, 별표 5)
- 안전검사기관은 사전검사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규칙 33조)

사전검사기관 및 검사품목

검사기관	검사분야	품목수	품목 (17품목)
한국생활용품 시험연구원	생활용품 분야	8	유모차, 보행기, 작동원구, 유아용 침대, 자동차용 연소자 보호장치, 외줄롤러스케이트, 공기주입물 놀이기구 및 보트, 승차용 및 운동용 안전모
한국화학 시험연구원	화학제품 분야	5	건전지, 재생타이어, 양식용 부자, 자동차용 안전유리,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솔
한국기기유화 시험연구원	화학제품 분야	3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부동액, 앞면 창유리 세정액
한국원사직물 시험연구원	섬유제품 분야	1	등산용 로프

* 검사수수료 : 품목별 공장도가격(수입가격) × 0.3~1.0%

* 처리기간 : 시료검사 품목별 3~18일, 확인검사 3일

- 지정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시험검사 설비보유 현황, 검사원의 보유현황(규칙 31조)

■ 사전안전검사의 면제품목(영 18조)

- 한국산업규격(KS) 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제품
- 법령에 의한 형식승인 검정 또는 검사를 받은 제품
-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의 유명규격을 획득한 제품 또는 품질보증제품 등(Q, GQ마크 등)

1997년 사전안전검사 현황

내수품(백만원)			수입품(천달러)					
			시료검사			확인검사		
건수 (금액)	불합격 (금액)	불합격률	건수	불합격	불합격률	건수 (금액)	불합격 (금액)	불합격률
938 (13,127)	44 (453)	4.6 %	835	83	9.9%	3,066 (68,817)	50 (829)	1.6%

* 금액 : 검사신청 제품수량별 공장도가(수입가)의 합계

나. 문제점

- 대부분의 사전안전검사품목 제조업체들이 KS 등 임의인증을 획득하여 검사를 면제받고 있어 사전안전검사의 실효성이 저하
 - 아울러 사후검사품목에 대한 사후검사업무를 시·도 및 국립기술품질원에 위임하였으나 시·도에서는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사후검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 효율성이 낮음
- 품목별로 검사기관이 하나만 지정되어 있어 안전검사에 대한 사업자의 선택이 제한되고 검사기관간 검사결과의 비교가 곤란
- 실제검사와 관계없이 모든 공산품에 대해 0.3~1.0%의 검사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과다하고 공산품 가격상승요인으로도 작용
 - 실제 검사는 샘플검사이나 검사필증(‘검’)은 검사신청 수량에 전부 부착토록 하여 모든 제품금액에 대해 검사수수료 징수
 - 예 : 0.3 % 부과품목 →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 포함)
 - 1.0 % 부과품목 → 자동차용 연소자 보호장치

다. 개선방안

■ 사전검사품목의 조정

-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되 그 대상을 최소한으로 함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품질경영촉진법 시행규칙 개정(2000년 상반기)

■ 사전검사기관의 복수화 허용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공산품안전검사제도 운영요령 개정(2000년 상반기)

■ 사전검사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

- 수수료는 실제 검사한 제품에 대해서만 부과
- 검사필증(‘검’)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착 또는 인쇄토록 자율화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공산품안전검사제도 운영요령 제10조 개정(2000년 상반기)

3) 압력용기 사전안전검사제도 개선

가. 규제현황

- 용기 등(용기 및 특정설비, 이하 압력용기라 함)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당해 압력용기를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함(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 시·도지사는 압력용기의 검사(신규검사, 재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전문검사기관에 위임

압력용기 검사제도 현황

구 분	액화가스용(액체)	압축가스용(기체)
검사기관	가스안전공사 전문검사기관(일부 재검사)	가스안전공사 전문검사기관(일부 재검사)
적용대상	설계압력 (또는 35°C에서의 압력) 2kg/cm ² 이상 고압가스 압력용기	설계압력(또는 35°C에서의 압력) 10kg/cm ² 이상 고압가스 압력용기
적용제외	타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내장 압력용기 (시행령 별표1)	
인증마크	각인 (‘검’ 및 연월일, 검사지역)	
대상품목	LPG용기 등(가정·공공용 압력용기) 저장탱크, 탱크로리 등(사업장용 압력용기)	

■ 검사대상품목

대상용품	종 류
용기(이동용기)	LPG용기, 아세틸렌용기, 암모니아용기, 프레온용기, 염소용기, 초저온용기, 납불임 및 접합용기, 그밖의 용기, 용기부속품(용기밸브, 안전밸브, O링, 시이트 등)
특정설비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탱크로리), 압력용기(고정용기), 기화 장치, 독성가스 배관용 밸브, 긴급차단장치, 안전밸브, 자동차용 가스주입기, 역화방지장치, 냉동용 특정설비

■ 안전검사 절차

- 제조품 : 시설기술 검토→시설 제조허가→자체검사→신규검사(제품검사)→재검사(정기검사)
- 수입품 : 수입자 등록→수입신고서(제조자 시험성적서 첨부)→제품통관→신규검사(제품검사)→재검사(정기검사)
 - 대량 생산·수입하는 가정·공공용 압력용기 및 용기부속품의 신규검사는 ‘시제품 검사’(정밀검사)와 ‘제품검사’(샘플확인검사)로 나누어짐
 - 검사기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6~28,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 고시 제15장

■ 신규검사(제품검사)

- 설계검토, 주요공정 입회검사 및 자체검사성적서 확인
- 검사항목 : 설계검토, 재료검사, 가공검사, 구조검사, 내압시험, 기밀시험, 외관검사, 표시사항 등

■ 재검사(정기검사)

- 일정기간 경과(품목에 따라 1~5년), 손상의 발생, 합격표시의 훼손,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시 재검사 실시
- 검사항목 : 두께측정, 내·외면검사, 비파괴시험, 내압시험, 기밀시험 등
 - LPG용기 재검사(3년)는 27개 민간전문검사기관(시·도지사지정) : SK에너지 공항 충전소, 명신가스(주) 등
 - 저장탱크, 탱크로리 재검사(4년)는 9개 민간전문검사기관(시·도지사지정) : 삼양석유(주), 동해가스산업 등

■ 검사면제제품 압력용기(영 15조)

- 압력용기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품목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생략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용기 등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함

- ①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 제조하는 것
- ②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 ③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 ④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 ⑤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 ⑥ 용기 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 ⑦ 소화기에 내장되어 있는 것
- ⑧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6월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로써 외국에서 검사를 받은 것
- ⑨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 ⑩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수리를 한 것

-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산업안전보건법의 3개 법률에 의거 각각 상이한 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으로 '압력용기 동시검사제도(202개 사업장, 19,413개 압력용기)'를 도입

- 세무지침이 1998. 10. 1일에 마련·홍보중이어서 실적이 전무

- 선진국의 경우

· 미국, 독일, 영국, 대만 : 단일법률을 적용하여 통일된 검사기준

· 일본 : 검사기관과 검사기준이 2개 법률로 이원화

- 원자력발전소용 압력용기(원자력법, 원자력안전기술원), 발전소용 압력용기(전기사업법, 전기안전공사), 위험물취급압력용기(소방법, 소방검정공사)

나. 문제점

- LPG용기 등 가정·공공용 압력용기에 대한 제품검사는 실효성이 낮고 기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 LPG용기 등의 연간 생산량 : 약 1천만개

각 법률별 사업장용 압력용기 검사제도 현황

구 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구분	액체 또는 기체상태의 고압가스내장 압력용기	보일러 및 증기발생 압력용기	저압위험물용 압력용기
주무부처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검사대상	- 설계압력 10kg/cm ² 이상 인 압축가스용 압력용기 - 설계압력 2kg/cm ² 이상인 액화가스용 압력용기	대기압 이상의 압력에서 사용 하는 증기발생 압력용기(1종) - 최고사용압력이 2kg/cm ² 초 과하는 기체용 압력용기(2종)	최고 사용압력이 0.2kg/cm ² 이상인 압력용기
검사내용	- 제조허가 - 신규검사 - 재검사	- 제조업등록 - 설치·개조검사 - 계속 사용검사	- 설계검사 - 완성(성능)검사 - 정기검사
검사주기	- 압력용기 : 4년 - 안전밸브 : 2년	- 압력용기 : 2년 - 보일러 : 1년	- 압력용기 : 2년 - 보일러 : 1년
검사기관	- 가스안전공사 - 민간전문검사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 보험회사	- 한국산업안전공단

* 기타 : 유사한 안전검사대상 압력용기

사업장용 압력용기 연간검사 현황

구 분	1996		1997	
	제조	수입	제조	수입
신규검사	2,478건	1,082건	1,825건	1,550건
재 검 사	2,998건		3,221건	

* 압력용기 제조·수입업체 수 : 90여 개, 사용업체(공장) 수 : 350개

* 검사수수료

┌	신규검사 : 17,000원~210만원
└	재 검 사 : 14,700원~150만원

- 제품검사 전에 공장검사, 자체검사, 정밀검사에 의해 안전성이 검토되고 있어 제품검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 법 제25조에 의해 모든 사업자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성격상 제품검사와 중복되는 소지도 있음
- 제품검사이 모든 제품에 대해 검사수수료를 부과함은 불합리하고 사업자에 과다한 부담
 - 샘플검사를 함에도 수수료는 모든 검사대상제품에 대해 부과하고 있어 제품가격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
 - 검사대상 압력용기에 관한 사고발생시에도 검사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에도 모든 제품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불합리
 - LPG용기(가정용 용량 20kg의 경우) 검사수수료 : 개당 520원
 - 아울러 검사필증('검')은 검사기관이 제작· 배부하여 출고지연의 사유가 되고 있음
-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의 경우 동일한 시설에 대해 여러 기관이 중복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어 생산차질 초래 등 비효율 발생
 - 각 검사주기에 따른 여러 검사· 점검· 진단기관이 수시 출입하여 운전중단 등 사업장에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업무가 과다하여 민원을 초래
 - (주) SK의 1회 운전중단시 손실발생액(추정) → 정유공장 : 1,180억원, 석유화학공장 : 760억원
 - 검사의 기준, 절차, 용어 및 검사원 자격이 각 법률에 따라 상이하여 검사혼란 초래
 - 검사기준 예 : 탄소강판의 최소두께가 2.5 m m(고압가스안전관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3 m m(산업안전보건법)로 서로 다름

다. 개선방안

- LPG용기, 용기밸브 등 가정· 공공용 압력용기와 용기 부속품에 대한 제품검사의 면제 확대
 - 제품검사 합격률이나 사고율 등 고려시 자체품질관리 수준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검사를 면제하는 제도 도입
 - 업계선택에 의해 정기적인 공장심사(6월 또는 1년마다)를 받는 경우 제품검사 면제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개정(1999. 6)
- 제품검사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
 - 수수료는 실제 검사한 제품에 대해서만 부과

- 검사필(‘검’)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착 또는 인쇄토록 자율화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고압가스 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산자부 고시 98-44) 개정(2000년 상반기)
-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의 압력용기에 대해서는 각 법률에 의한 검사주기를 통일하고 검사시기를 조정
 - 모든 압력용기의 검사주기를 4년으로 통일하고 검사시기 조정
 - 단,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압력용기에 대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P S M)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4년으로 조정
 - 검사시기에 대해서는 ‘압력용기검사처리지침’ (1998. 10. 1일 시행)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999년 하반기)
- 산업용 압력용기에 대해서는 자체 검사체제를 갖춘 경우와 보험가입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재검사 면제
 - 사업자가 재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인력·장비 등 검사체제를 갖춘 경우
 - 보험사 등을 통하여 압력용기 개개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검사·진단을 받은 경우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999. 6)

4) 가스용품 사전안전검사제도 개선

가. 규제현황

-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당해 가스용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함(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1조 ②)
 - 시·도지사는 가스용품 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임(영 33조)
- 안전검사 절차
 - 제조품 : 시설기술 검토 후 제조허가→시설 자체·중간·완성검사(이후 정기검사(1년), 수시검사)→시제품 제작→정밀검사(본사)→완성품 제품검사(지사)
 - 수입품 : 수입신고서(제조자 자체시험성적서 및 시료 첨부)→시제품 통관→정밀검사

안전검사제도 현황

구 분	정밀검사(시제품)	제품검사(완성품)
검사기관	가스안전공사 본사	가스안전공사 지사
검사시기	• 제조 · 수입시 시제품 • 재료 · 구조 변경시 (경미한 변경 제외) • 수집검사에 부적합되어 재정밀검사 판정을 받을 때	• 완제품 출고 전 • 수입품 통관 후 출고 전
인증마크	각인 또는 검사필증 (‘검’) (제품수량별 사전신청)	
대상용품 (13개 종류)	압력조정기, 가스누출차단장치, 고압고무호스, 연화비닐호스, 금속플렉시블호스, 배관용밸브, 콕크, 전기절연이음관, 전기용착폴리에틸렌이음관, 이형질이음관, 쿼카플러, 강제혼합식가스버너, 연소기	

→수입품 통관(정밀검사항격증명서 및 수입신고서 첨부)→수입품 제품검사

■ 정밀검사

- 시제품에 대하여 ‘가스용품 제조기술기준’에 규정된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 실시
 - 가스용품 제조기술기준 : 품목에 따라 상세한 기준(시행규칙 별표 6)
 - 구비서류 : 정밀검사신청서, 제조사업허가증 및 완성검사 필증(수입신고검토서 및 수입면장), 자체검사성적서, 사용설명서, 조립도 및 부품구조, 재료에 관한 자료, 시료
- 공사 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성능인증한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시는 그 부품의 정밀검사항목을 면제

■ 제품검사

- 정밀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 대하여 대량의 완성제품을 분해 · 파괴 또는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검사
 -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동일제조소, 같은 날, 같은 생산단위(LOT별)로 제조된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Sample** 검사 실시
 - 샘플수는 출고 · 수량에 따라 지정됨(시행규칙 별표 11)
 - 검사항목 : 구조검사 · 치수검사 · 조정압력시험 · 폐쇄압력시험 · 작동검사 · 표시의 적부 등 품목별로 검사

선진국의 운송업 규제완화 이후 요금인하 효과

1조를 형성하는 수	10개 이하	11~ 100개	101~ 300개	301~ 700개	701~ 3000개	3001개 이상
채취 수	전 수	10개 이상	15개 이상	20개 이상	25개 이상	신청수량의 1/100

- 검사필증(‘검’)은 매 제품마다 검사의무자의 사전 신청수량에 따라 검사기관이 부착하고 수수료 징수

■ 검사생략품목(영 12조)

- 가스용품 안전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 생략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허가 또는 승인 제품
- ②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 ③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 ④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 ⑤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 ⑥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 ⑦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 구비서류 : 사양서(관련도면 또는 카탈로그), 용도확인서, 수입요건 확인신청서 각 1부

연간 정밀검사 현황

구 분	1997	1998. 11. 30
검사건수	1,121건	1,213건
합 격	1,022건	1,118건
불합격	99건	95건
불합격률	9%	7.8%

* 가스용품 제조업체 수 : 308개 / 수입업체 수 : 109개

* 검사수수료 : 정밀검사 → 품목별 136,000~305,000원

제품검사 → 제품 개당 30~4,100원

* 정밀검사 처리기간 : 20~25일

나. 문제점

- 대량생산되는 가스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실효성이 낮고 기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 제품검사 전에 공장검사, 자체검사, 정밀검사에 의해 안전성이 검토되고 있어 제품검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 법 제33조에 의해 모든 사업자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성격상 제품검사와 중복되는 소지도 있음
- 제품검사이시 모든 제품에 대해 검사수수료를 부과함은 불합리하고 사업자에 과다한 부담
 - 샘플검사를 함에도 수수료는 모든 검사대상제품에 대해 부과하고 있어 제품가격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
 - 검사대상제품에 관한 사고발생시에도 검사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에도 모든 제품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불합리
 - 제품검사 수수료 : 품목에 따라 검사대상 제품당 30~4,100원(평균 제품가격의 1% 정도)
 - 아울러 검사필증('검')은 검사기관이 제작·배부하여 출고지연의 사유가 되고 있음

다. 개선방안

- 대량생산하는 가스용품에 대한 제품검사의 면제 확대
 - 공장의 품질관리상태가 우수하여 제품검사 합격률이 높은 업체는 업계선택에 의해 정기적인 공장심사(6월~1년)을 받는 경우 제품검사 면제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개정 (1999. 6)
- 제품검사이시 검사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
 - 제품검사 수수료는 샘플검사이시 발생한 실비용을 실제검사한 제품에 부과하는 방안 강구 추진
 - 검사필('검')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착 또는 인쇄토록 자율화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산자부 고시 98-43) 개정(2000년 상반기)

5) 유선기기, 무선기기, 전자파 장애기기 형식승인 등 제도 개선

가. 규제현황

- 전자파 장애기기는 정보통신부장관(전파연구소장)의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아야 함(전파법 29조의 5)

- 전자파 장애(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 전자파가 방사 또는 전도되어 다른 기기의 성능에 장애를 주는 상태

- 다만, 개별법에 의하여 적합평가 및 인증을 받는 품목은 제외

- 적용 제외품목

-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품목
- ②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
- ③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
- ④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 ⑤ 소방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기기
- ⑥ 약사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용구

- 대상기기는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컴퓨터 내장구성품, 유선통신 단말기 등 정보기기류(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에 한정됨

- 전자파 적합등록 절차

- 제조자 : 지정시험기관(30개)에 시제품의 성능시험 · 전자파 적합등록 신청 → 시험기관이 전파연구소장에 등록신청 → 등록증명서 교부

- 수입자 : 시험용 기자재의 수입기기 확인신청(전파연구소장) → 시험용 기자재 통관 → 지정시험기관에 성능시험 · 전자파 적합등록 신청 → 시험기관이 전파연구소장에 등록신청 → 등록증명서 교부

- 유선기기 · 무선기기 · 전자파 장애(EMI) 기기분야의 시험기관 지정 및 인증절차를 개별규칙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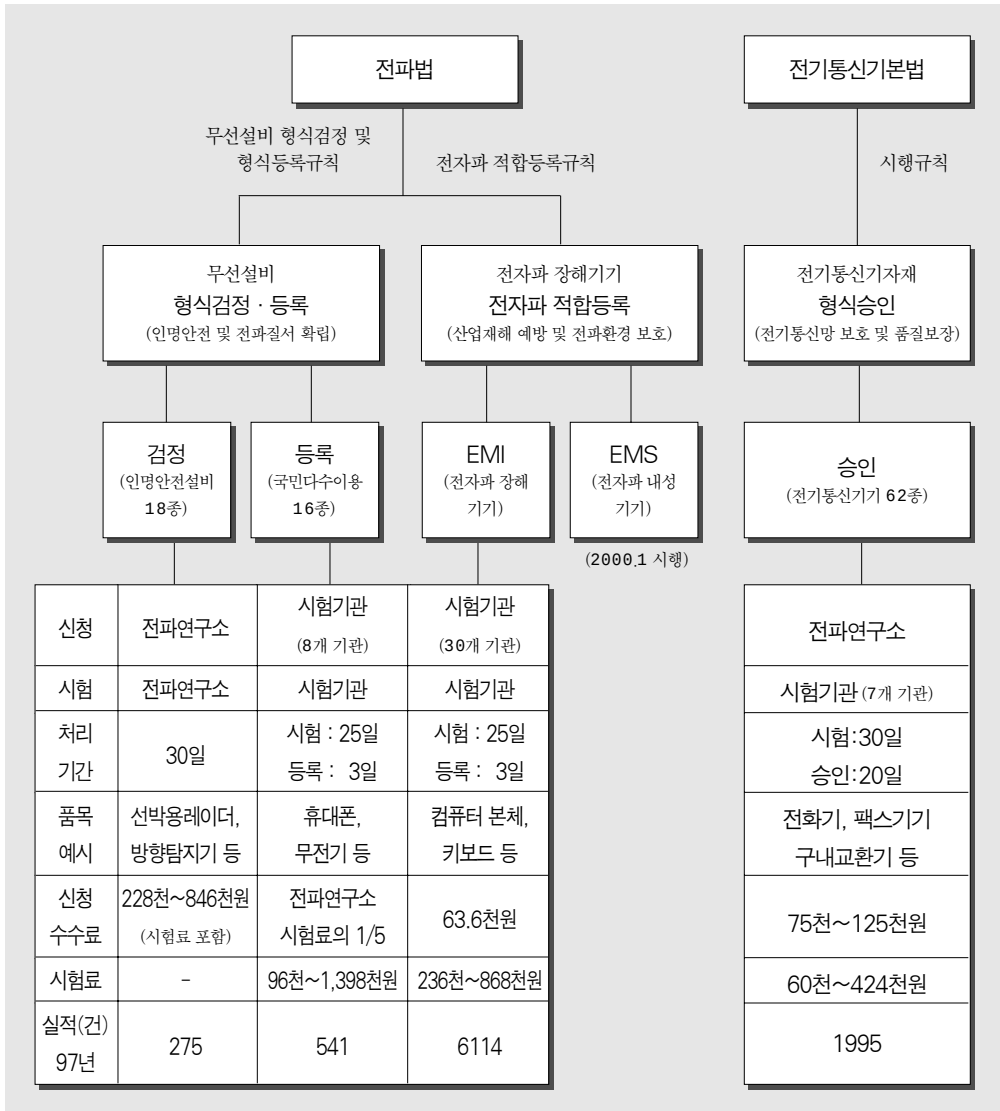
- 시험기관 지정 관련규정(지정신청, 지정기준, 시험기관 지정취소 등)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2절(유선기기), 무선설비형식검정 · 등록 및 기술기준 확인증명규칙 8장(무선기기), 전자파 적합등록규칙 4장(전자파 장애기기)

- 인증절차 관련규정(신청방법, 처리기간, 표장관리, 변경신고, 등록취소 등)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12~18조 · 3절(유선기기), 무선설비형식검정 · 형식등록 및 기

술기준 확인증명규칙 2장 · 17조 · 4장 · 5장(무선기기), 전자파 적합등록규칙 3장 · 5장 · 6장(전자파 장애기기)

- 유선기기의 형식승인 유효기간은 7년이고 갱신가능함(전기통신기본법 제34조)
- 형식승인서 유효기간 갱신신청(전파연구소장) → 유효기간 갱신 → 형식승인서 교부

정보통신기기(유선기기, 무선기기, 전자파 장애기기) 품질인증 개요



* EMS(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전자파 내성) : 전자파 발생기기가 방사 또는 전도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

- 품질인증 사후관리를 모델명(형명, 형식명)과 인증번호(ID)로 하고 있으며, 인증번호는 전파연구소장이 부여
 - 모델명과 인증번호에 대한 사후관리나 인증번호 부여는 관행에 의한 것이며, 법령상 명문규정은 없음
 - 인증번호 : 유선기기 형식승인번호, 무선기기 형식검정·등록번호, 전자파 적합등록번호
- 형식승인을 얻은 유선기기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16조)
 -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유선기기 변경신고 실적(1997) : 354건
 - 유선기기 변경신고 절차 : 신고서 기재양식에 따라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전파연구소장에 제출

나. 문제점

- 전자파 장해기기의 경우 기술변화의 속도가 빠르므로 기술변화 속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정보기기류는 제품주기(Life Cycle)가 짧으나(통상 1~2년 내), 인증과정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어 기술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술혁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컴퓨터의 제품주기 : 6개월 미만
 - 전자파 적합등록 법정처리기간 : 등록(3일)
 - 전자파 적합등록 수수료 : 63,600원
 - EU나 미국 등에서는 기술변화가 빠른 품목에 대해 DoC제도를 채택하여 기업의 자율성 제고
 - EU에서는 자기선언(DoC=Declaration of Conformity)제도를 시행중이고, 미국도 일부 기기에 대하여 DoC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
- 유사한 성격이 있는 시험기관지정이나 인증절차 규정을 무선기기, 유선기기, 전자파 장해기기별로 각각 따로 정함으로써 중복규정이 많고 투명성이 낮아 민원인의 불편 초래
 - 중복규정 예시 : 시험기관 지정취소 관련

- 관련규정 : 전자파 적합등록규칙 제22조,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 무선설비 형식등록·형식검정 및 기술기준 확인증명규칙 제44조
- 주요내용 :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 등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업무정지요건에 해당되면 업무정지
- 아울러, 국제기준(ISO/IEC Guide)에의 불일치로 인해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국제기준과의 차이점(예시)
 - 시험기관의 자격을 우리나라는 법인과 개인에게 모두 허용하고 있으나, 국제기준(ISO/IEC Guide 25)은 법인에 한함
 - 국제기준(ISO/IEC Guide 58)은 시험기관의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술위원회 설치토록 하고 있고, 시험의 정확성과 유효성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로서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러하지 않음
- 유선기기 형식승인 유효기간 7년은 통신기기 제품주기 고려시 비현실적
 - 무선기기 및 전자파 장애기기의 경우 유효기간관련 규정이 없고, 제품주기가 2~4년인 유선기기에 대해 7년 후 형식승인 갱신을 하여야 하는 등 사업자 불편 초래
 - 미국, 일본의 경우 형식승인 유효기간은 무기한임
- 모델명 및 인증번호 기준에 의한 사후관리제도와 정부에 의한 인증번호 부여제도는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
 - 모델명의 변경도 일일이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적시에 신모델 개발·판매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미국의 경우 인증번호(ID)만에 의거 품질인증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 모델명 변경은 신고만으로 자율적으로 가능
 - 인증번호(ID)를 부여받은 후에야 제품의 라벨링(7~10일 소요)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 생산계획이 지연되고 영업전략 수립에 있어 예측가능성 저해
 - 미국의 경우 인증번호를 사업자가 정하기 때문에 제품 생산계획 및 영업전략을 적기에 신속적으로 수립 가능

다. 개선방안

- 전자파 적합등록제와 병행하여 대상기기에 따라 일정한 전자파 시험시설·인력을 갖춘 제조자(수입자)에 대한 자기인증제도(DoC) 도입·시행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전파법 개정(2000년 이후 시행)
- 유선기기, 무선기기 및 전자파 장애기기에 대한 시험기관 지정과 인증절차관련 규정의 통합 및 국제기준에의 일치
 - 3개 기기의 시험기관 지정 및 인증절차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단일화하고 국제기준과 일치시킴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규칙 제정(1999. 10)
정보통신기기 품질인증규칙 제정(1999년 하반기)
- 유선기기 형식승인 유효기간 폐지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전기통신기본법 제34조 개정(2000년 상반기)
- 품질인증 사후관리 기준을 인증번호(ID)로 일원화
 - 모델명의 설정 및 변경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사후신고토록 함
 - 다만,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모델명 변경은 금지
 - 예) 규격 · 구조 · 기능 등이 모두 같은데도 가격인상을 위해 모델명을 변경하는 경우
 - 인증번호는 일정한 원칙과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정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미국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18자 이내”의 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FCC(연방통신위원회) ID를 정하여 FCC에 신청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정보통신기기 품질인증규칙 제정(2000년 상반기)

6) 의료용구 품질관리제도 개선

가. 규제현황

- 의료용구 제조 · 수입자는 제조 · 수입시설에 대해 조사기관(생산기술연구원)의 ‘품질관리기준적합인정’을 거쳐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약사법 제26조, 규칙 제22조)
 - 시설에 대한 허가신청시 제조 · 수입자는 1개 이상의 품목에 대한 제조 · 수입 허가 또는 신고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 조사기관은 제조 · 시험시설 또는 보관시험시설, 품질문서 등이 ‘의료용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규칙 별표 4의 2)’ 또는 ‘수입의료용구품질관리기준(규칙 별표 4의 3)’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제조(수입)품질관리적합 인정
 - 시설기준령(시행규칙 별표 4의 3)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확인(약사법 제26조 2항)

- 제조 : 작업소 · 시험실 및 보관소 면적의 합이 **100m²** 이상이고, 그중 시험실의 면적은 **15m²** 이상
- 수입 : 영업소 및 창고 면적의 합이 **33m²** 이상, 시험실 **15m²** 이상
- 의료용구 품질관리기준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및 제조위생관리기준서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함(수입자의 경우에는 제품표준서, 수입관리기준서)
 - ※ 제조관리기준서 : 제조공정관리기준서, 시험검사기준서, 부적합품관리기준서, 시정조치기준서, 반입 · 보관 · 출고관리기준서, 교육훈련기준서, 문서관리기준서
 - ※ 수입관리기준서 : 제품관리기준서, 시설관리기준서, 시험검사기준서, 부적합품관리기준서, 반입 · 보관 · 출고관리기준서, 시정조치기준서, 교육훈련기준서, 품질문서관리기준서
- 품목별 제조(수입)허가는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 안전성 · 유효성 검사(대상품목에 한정), 시험검사를 거쳐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의료용구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되며, 이중 1등급은 신고, 2~3등급은 허가사항
 - 1등급 : 인체에 직접 접촉되지 않거나 접촉되더라도 잠재적 위험성이 거의 없으며 고장 발생시에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의료용구
 - 2등급 : 제품의 원자재 · 구조 · 사용방법 · 사용목적 등으로 보아 당해 의료용구의 안전성 · 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기준 및 시험방법의 검토, 시험검사, 제조 · 수입품목허가 등 일정한 관리가 필요한 의료용구
 - 3등급 : 당해 의료용구에 대한 안정성 ·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한 의료용구, 생명유지용 의료용구, 심장 · 중추신경계 또는 중앙혈관계에 직접 접촉되는 의료용구, 기타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의료용구
- 안전성 · 유효성 심사 대상(안전청)
 - 대상품목 중 기존의 품목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제품
 - 신개발 의료용구와 3등급 품목 중 안전성 · 유효성 확보정도가 미흡한 의료용구
 - ※ 시험검사기관(7개소) : 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서울대 · 연세대 · 경희대 치과대학(치과재료에 한함)
- 동일 외국제조회사의 동일제품(모델)을 타수입자가 수입할 경우 품목허가에 있어 그 품목에 대한 최초 수입자와 동일절차 필요

나. 문제점

- 품질관리 적합인정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활동 및 진입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
 - 작업소 · 시험실, 영업소 · 창고 등의 면적은 사업자가 자기 필요에 따라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불필요
 - 또한, 다양한 의료용 기기 제조(수입)소에 동일한 면적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종업원 20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약 73%)인 국내 의료용구시장의 실정고려시 품질관리기준이 너무 복잡하고 엄격하여 비현실적
 - ① 작업실 및 설비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중 청소대상, 청소방법 및 청소 횟수의 설정, 청소에 사용되는 약제 및 청소도구의 관리방법까지 규정
 - ② 작업원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중 건강상태의 파악방법, 작업원의 소독방법 등
- ※ 현재 전체 제조 · 수입업체 1,221개 중 33%만이 인증획득(日刊保社, 1998, 12, 8)
 - 종전(1997. 9. 1일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1999. 9. 1일까지 개정된 기준(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품질관리적합인정'을 받아야 함(약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7조)

고용규모별 업체수 및 인원현황(제조업)

고용규모	구 분	업 체 수		인 원 수	
			점유율(%)		점유율(%)
300명 이상		4	1.0	2,048	17.0
300~200명		7	1.7	1,809	15.0
200~100명		16	3.9	2,344	19.0
100~ 50명		27	6.6	1,940	16.0
50~ 20명		58	14.3	1,809	15.0
20명 이하		295	72.5	2,142	18.0
합 계		407	100	12,092	100

- 제품품질이 기검증된 동일회사 · 동일제품을 다른 수입자가 품목허가요청시에도 동일절차(기준및시험방법검토, 안전성 · 유효성심사, 형식시험)를 요구함은 불합리
 -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시간 · 비용(번역 등)을 수반케 하고, 이는 제품에 대한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

다.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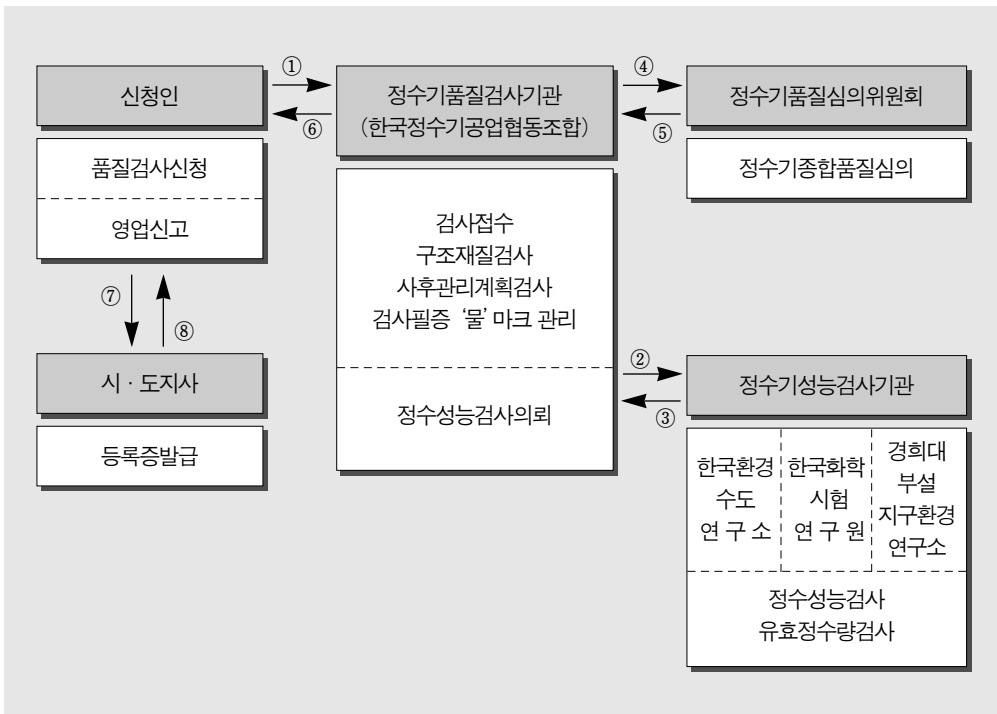
- 제조(수입)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시 시설면적기준 삭제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0조 4항, 제12조 제1항 4호 및 3항 삭제 (2000. 3)
- 의료용구 제조(수입)설비 등의 품질관리 기준항목을 간소화하고 실효성있게 개정
 - 품질관리기준 항목 중 작업실 및 설비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원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은 품목의 특성에 따라 차등적용(예 : 멸균제품 ; 일회용 주사기, 인공신장 등)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및 4의 3 개정(2000년 상반기)
- 동일 외국제조회사의 동일제품을 타수입업자가 수입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와 기허가된 제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만으로 대부분의 품목이 수입허가가 가능토록 개선
 - 사업자가 동일 품목의 수입 여부 확인을 식약청에 요청할 경우 이를 확인해 주도록 의무화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2000년 상반기)

7) 정수기 품질검사제도 개선

가. 규제현황

- 정수기 제작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 등)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정수기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제조자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함(먹는물관리법 제18조 제4항)
 - 시·도지사는 신고서 접수 후 현지확인을 거쳐 신고필증 발급
 -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을 지정(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9조)
 - ※ 정수기조합은 환경부 장관 인가단체(설립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 신고 첨부서류
 - 제조업 : 정수기의 품목·형식별 제조공정설명서, 품질검사성적서, 사후관리계획서
 - 수입판매업 : 사업계획서, 보관시설내역, 품질검사성적서, 사후관리계획서

정수기 품질인증제도 운영체계도



- 품질검사기관인 정수기조합은 환경부 장관이 정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검사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
 - 환경부 장관은 정수기의 종류·성능·제조방법·유통등에 관한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이하 기준고시)'를 제정(동법 제29조 제1항 및 제30조)
 - ※ 품질검사심의위원회는 학계, 소비자단체, 법조계, 구조·재질전문가, 성능검사기관, 담당공무원, 정수기단체 이사 등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참석과 2/3 찬성으로 의결
 - 품질검사항목은 구조·재질, 표시 및 사후관리계획서, 성능(정수성능 및 유효정수량 검사)으로 구성
 - 성능검사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환경수도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경희대부설지구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
 - ※ 품질검사기관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중에서 검사능력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정수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정수성능검사(45개 항목)는 의무항목인 일반검사의 5개 항목과 제조자가 정수기에

표시하고자 하는 선택적 항목인 특수성능검사, 그외 항목에 대해 실시하는 수질검사로 구분

- 기타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는 별도로 제조된 유입수를 통해 검사하는 일반·특수성능 검사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 수돗물을 정수기에 통과시킨 후 유출수가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

※ 일반정수성능 검사항목(5개 항목) : 냄새,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

※ 성능검사 45개 항목은 일반 5개 항목, 기타항목 4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 중 특수검사 항목은 기타항목 중 37개 항목임(수소이온농도, 중발잔류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 3개 항목은 제외)

※ 검사기간은 검사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 단 이 기간에 성능검사기간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기간(30~60일)과 법정공휴일은 불산입

- 제조자 등은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정수기검사필증(물마크)을 정수기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함(기준고시 14조)

- 검사필증은 매월 생산량 또는 수입량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한 수로 하며, 제작·발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품질검사기관에서 정함(정수기품질검사기관 관리지침 제10조)

- 이 중 구입단가 및 최소구입매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중

※ 최소구입매수는 500매이며, 장당 단가는 2,000매 이하 1,000원, 2,000~3,000매 600원, 3,000매 이상 구입시는 500원으로 되어 있음

- 정수기 제조업자는 생산품목 형식별로 6월마다 1회 이상(생산량이 5천대 미만인 경우 1년마다) 자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함(법 33조, 규칙 제29조 제3항)

-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연 1회의 자가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봄(기준고시 제17조)

- 자가품질검사는 성능검사를 받은 일반 및 특수항목의 개개 항목별로 실시하며, 기타항목에 대해서는 8개군별 분류 대표항목에 대해서만 실시

※ 지정고시 제18조(수거검사) ①환경부 장관은 자체계획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판매중인 정수기를 수거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품질검사기관은 환경부 장관이 품질검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검사합격한 정수기에 대해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매 1년마다 품질검사를 받

아야 함(정수기품질검사기관 관리지침 제3조 제4항)

나. 문제점

- 기타항목(40개)에 대한 검사는 이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물을 유입수로 하여 검사하는 것이므로 항목별 검사는 불합리하고 중복적
- 검사필증의 경우 단가가 과다하고 최소단위 매수를 둬으로써 영세 제조업자나 사업자에게 부담을 초래
 - 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제작비용과 필요한 만큼의 구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
- 제조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자가검사는 제품출하 후 완성검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써 연 1~2회 실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사업자에게 과다한 부담으로 작용
 - 또한, 정수기품질검사기관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에 합격한 정수기(제조·수입 공통)가 매 1년마다 받아야 하는 품질검사는 법적 근거가 없고, 자가검사와 중복되는 과다한 규제임

다.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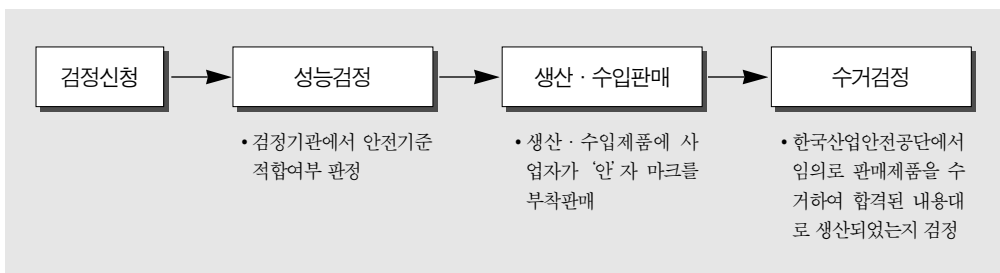
- 기타항목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에서의 같은 군별 대표항목에 대한 검사로 검사항목 단순화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지정 고시 제18조 제2항 개정(1999. 6)
- 사업자 선택사항으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기준에 적합한 검사필증을 사업자가 직접 부착 또는 표시토록 허용
 - 자율표시에 따른 부작용방지를 위해 허위표시에 대한 벌칙 강화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지정 고시 제14조(1999. 6)
- 제조업자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폐지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먹는물 관리법 제33조 제1항 개정(2001년)
- 검사에 합격한 정수기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품질검사제도' 폐지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정수기품질검사기관 관리지침 제3조 제4항 삭제(1999. 4)

8) 보호구 검정제도 개선

가. 규제현황

- 보호구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규 생산·수입제품의 성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의 양도, 대여, 사용, 판매목적의 진열 금지(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1항)
- 이와 별도로 유통중인 합격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임의검사(수거검정)도 실시

검정절차



- 검정대상 보호구 :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면, 안전장갑, 보안경, 귀마개,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방열복
- 신규검정에 불합격하거나 수거검정 결과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와 동일한 규격 및 등급의 보호구는 30일 이내에 검정신청 불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
-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에 따라 인력·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함(법 제35조 제2항)
 - 안전모 인력기준(예: 3년 이상 안전모의 연구·설계·공작 또는 검사실무 경력이 있는자)
 - 안전대 시설기준(예: 프레스 등 전단기, 연마기, 벨트 봉제용 미싱, 인장시험기, 충격 흡수 시험설비)
 - 인력 시설요건은 1999년부터 폐지예정
-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보호구의 검정업무를 수행(법 제65조, 시행령 제47조)
 -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재해예방기금 중 5%를 지원받아 운영

나. 문제점

- 검정신청서류 중 수입의 경우 외국 제조업체와 수입계약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병행수입의 제한
 - 외국제조업체와의 수입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외국판매상과의 계약에 의한 병행수입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
- 검정 불합격·취소시 검정 신청 제한기간(30일)이 너무 길어 영세업체에 과도한 부담 초래
 - 수주한 제품의 납기 지연 등 부작용 발생

다.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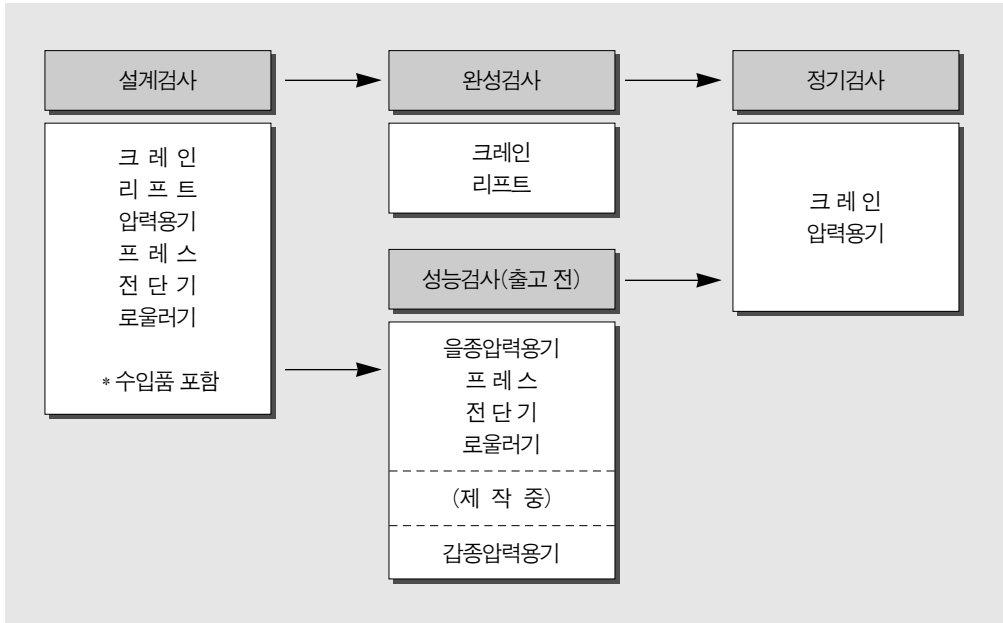
- 검정신청서류 중 수입시 외국 제조업체와 계약 또는 공급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제외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3조 개정(1999. 8)
- 검정신청기한 제한 완화
 - 신규제조 보호구의 검정불합격시 불합격 부분을 보완하여 즉시 재검정신청이 가능토록 함
 - 다만, 신청인의 허위신청으로 인한 신청각하 또는 합격취소에 대해서는 현행 일정기간(30일) 신청제한 유지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 개정(1999. 8)

9) 유해·위험 기계·기구 검사제도 개선

가. 규제현황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성에 관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따른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의 제조·수입·진열·사용·대여 또는 판매의 금지(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항, 제5항)

검사절차 및 대상품목



- * 설계검사 : 검사대상품의 제작 전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
- * 성능검사(제작중, 출고 전) : 검사대상품의 제작 또는 출고 전 설계대로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
- * 완성검사 : 검사대상품을 설치 완료시 설계대로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
- * 정기검사 : 최초검사일 기준 매 2년마다 1회

- 한국산업안전공단은 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설계·완성·성능검사 및 정기검사를 수행(법 제65조, 시행령 제47조)
-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재해예방기금 중 5%를 지원받아 운영

나. 문제점

- 빈번한 정기검사(2년에 1회)로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지장 초래
- 크레인 및 압력용기의 사용자가 스스로 일상점검을 하고 있어 공단에 의한 정기검사의 필요성이 매우 낮음

다. 개선방안

- 정기검사의 주기를 공정안전보고서(P S M)를 제출한 사업장에 한하여 2년에서 4년으로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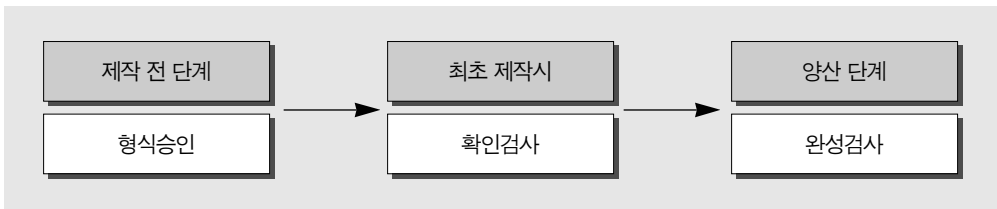
- 크레인 등 현행 유지(2년)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 2 개정 (1999.8)

10) 자동차 형식승인제도 개선

가. 형식승인 개요

■ 종류 및 절차



* 모든 제작차량에 대해 받도록 되어 있는 완성검사는 1999. 4월부터 폐지

* 자동차 형식승인과 확인검사는 2002년까지 도입할 예정인 자기인증제도가 시행되면 폐지 예정

■ 형식승인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 형식승인 및 시험·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나. 규제현황

- 일부 민수용 차량에 대해 유사시 군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등화관제등을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고 이를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시 점검(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 국방부공문(1985. 4) 물동 24123-62호)

- 등화관제등 장착 대상차량 : 모든 지프차, 카고트럭(2.5톤, 4.5톤, 8~9톤), 덤프트럭(8~9톤), 트랙터, 탱크로리, 급수·유류운반차량, 트레일러(20톤 이상)

- LPG차량은 신규제작시 건교부의 확인검사 이외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해 완성검사를 받아야 함(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다. 문제점

- 민수용 차량에 등화관제등을 장착토록 함으로써 차량제작비용이 상승되고 디자인 및 설계의 제한요소로 작용

- 아울러 내수용 차량과 수출용 차량간에 설계, 제작을 달리해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

- 등화관제등 부착비용 추정 : 연간 약 31억 4천만원(1997년 기준)

- 부품비용 : 23억 2천만원(17,850원/대당평균×130천대)

- 조립비용(인건비) : 8억 2천만원(6,300원×130천대)

- LPG차량의 안전검사체제가 건교부의 확인검사(자동차관리법)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LPG차량 완성검사(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로 이원화되어 있어 검사절차 복잡

검사기준 비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자동차관리법
• 연료장치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 용기 및 배관의 고정, 보호장치 및 방열장치 - 용기의 검사품 여부 확인 - 배관의 재질 - 안전밸브 - 과류방지장치 - 여과장치 - 전자밸브 - 감압기화기 - 액면표시장치 - 긴급차단밸브 - 용기보호대	• 연료장치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 - 용기 및 배관의 고정, 보호장치 및 방열장치 - 용기의 검사품 여부 확인 - 배관의 재질

라. 개선방안

- 민수용 차량의 등화관제등 장착의무를 폐지하고 일정 수량의 등화관제등을 확보한 후 유사시 차량에 부착토록 개선
- 다만, 전제조건으로 ① 등화관제등의 호환성 보장 ② 등화관제등용 배선 사전설치 ③ 스위치용홀 표지 마련 ④ 컨넥터에 등화관제등 표지부착 등을 자동차 생산업계에서 충족토록 하며
 - 등화관제등의 보급에 대한 소요비용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 국방부에서 부담토록 함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 개정(1999. 6)
- LPG차량에 대한 검사를 '자동차관리법'의 확인검사로 일원화하되, '액화석유가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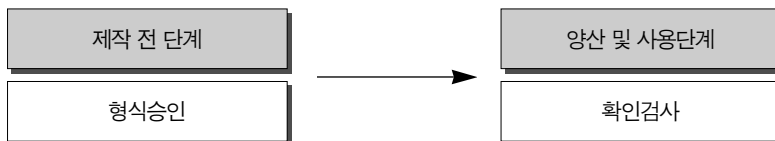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세부검사기준도 포함하여 검사하도록 함

- 다만, 구조변경의 경우 2000년말까지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자동차형식승인 요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2000년 상반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2000년 상반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개정(2000년 상반기)

11) 건설기계 형식승인제도 개선

가. 형식승인 개요

■ 종류 및 절차



- 형식승인 : 건설기계 30종 중 9종, 나머지 21종은 형식신고로 같음
 - 굴삭기, 로우더, 기중기, 불도우저는 타이어식일 경우에는 형식승인, 무한궤도식일 경우에는 형식신고 대상임
- 확인검사
 - 최초확인검사 : 최초제작 또는 수입된 기계 1대에 대한 검사
 - 계속확인검사 : 최초확인검사 후 매 2년마다 최초 확인검사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 1대에 대한 검사

■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기관

- 형식승인기관 : 건설교통부 장관
- 확인검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나. 규제현황

- 신규제작 또는 수입 건설기계는 건교부 장관의 형식승인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형식신고시 ① 제원표 및 외관도 ② 소음 및 배기가스 시험성적서 ③ 도로이동시 분해 ·

운반요령 등 3건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 건설기계에는 대해서는 형식승인 및 최초확인검사 이외에도 매 2년마다 계속확인검사를 받도록 함
- 사업자는 형식승인 및 최초확인검사 이후에도 제작 또는 수입한 건설기계에는 대해 1년간 무상정비 및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무상제공의무를 지며,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검사 기계)과 기술인력(정비사 3명) 확보의무를 짐

다. 문제점

- 형식승인기관과 확인검사기관의 이원화로 건설기계 제작사 및 수입업자에게 불편을 초래
- 소음 및 배기가스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법령에 의해 별도로 검사받고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이중부담 초래
- 건설기계의 안전성은 형식승인과 최초확인검사를 통해 확보가 가능함에도 매 2년마다 계속 확인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을 초래
- 건설기계의 사후관리를 위해 별도의 시설·인력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에 과도한 부담
 - 사후관리 여부나 정도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구매자는 이를 고려하여 제품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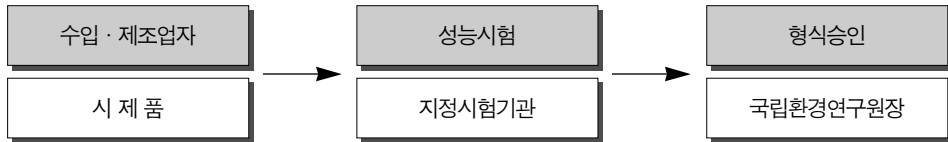
라. 개선방안

- 건설교통부의 건설기계 형식승인권한을 확인검사기관으로 이관(2000. 7. 1일 시행)
 - 건설교통부는 건설기계 형식승인제도에 대한 인정기관으로의 역할만 수행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 개정(1999. 12)
- 건설기계 형식신고 제출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 삭제
 - 소음 및 배기가스 시험성적서 제출 폐지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 2 개정(1999. 10)
-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계속확인검사 폐지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개정(1999. 9)
- 건설기계 제작사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사후관리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의무 폐지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1999. 10)

12)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개선

가. 형식승인 개요

■ 형식승인절차



■ 인증 및 시험검사기관

- 인증기관 : 국립환경연구원
- 시험검사기관 : 4개 지정시험기관

환경측정기기 지정시험기관

지정시험기관	소관부처(설립근거법)	주요 업무	시험·검사분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과학기술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계량 및 측정표준의 연구, 개발, 유지 및 보급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산기술연구원	산업자원부 (공업 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대기, 수질, 자동차, 소음·진동
환경관리공단	환경부 (환경관리공단법)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 사업환경관련기술의 연구개발, 시험, 검사, 평가	대기, 수질
교통안전공단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공단법)	자동차구조·성능 및 교통안전	자동차

나. 규제현황

환경측정기기를 제작·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국립환경연구원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다. 문제점

- 인증기관(국립환경연구원장)과 시험평가기관(생산기술연구원 등)이 분리·운영되고 있어 인증절차가 복잡
 - 인증업무와 시험업무가 통합되는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현행 인증기관 및 시험평가기관의 분리·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인증업무를 정부(국립환경연구원장)가 직접 수행함에 따라 절차의 지연, 서비스 개선 노력 미흡 등의 문제점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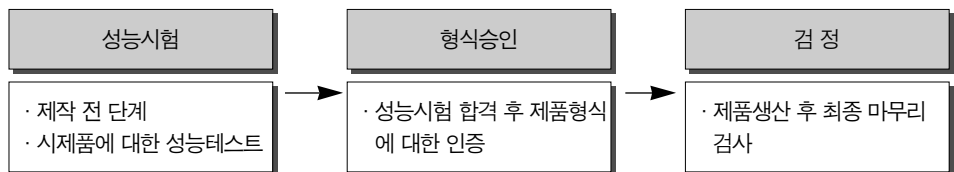
라. 개선방안

- 시험평가기관에서 시험평가와 인증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며 인증·시험평가기관의 복수화가 가능하도록 함(2000. 1월 시행)
 - 정부(국립환경연구원)는 시험평가 및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시험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인정기관의 역할만 수행
 - 다만, 시험기관의 지정·관리 및 정도검사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강화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개정(2000년 상반기)

13) 해양오염 방지설비 등 형식승인제도 개선

가. 형식승인 개요

■ 형식승인 및 검정 처리절차



- 형식승인대상 해양오염 방지설비(11종) : 유수분리기,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유분농도계,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유수경계면검출기, 화물창세정기, 유량계, 분뇨처리장치, 분뇨마쇄소독장치, 소각기, 유화기
- 형식승인대상 자재·약제(4종) : 오일펜스, 유처리제, 유흡착제, 유겔화제

■ 성능시험 ·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

구 분	성능시험	형식승인	검 정
해양오염 방지설비	선급법인	해양부 장관	선급법인
자재 및 약제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해양경찰청장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형식승인처리기간 : 3~5일

나. 규제현황

- ‘해양오염 방지설비’ 나 방제를 위한 ‘자재 · 약제’ 를 제작 · 제조 및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방지설비) 또는 해양경찰청장(자재 · 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아야 함(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 제1~4항, 동 규칙 제103조 및 제104조)
- 검정 : 형식승인 후 완성품 제조시 실시하는 확인검사

다. 문제점

-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 · 검정기관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인력 및 시간도 추가 소요
 -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이 직접 집행업무적 성격의 형식승인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질적 필요성도 없음
 -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이 시험평가 결과에 따라 처리기간 내에 자동적으로 승인서를 교부하는 실정
- 성능시험과 검정업무의 수행기관을 선급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비효율성 초래
 -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의 서비스 개선, 기술개발 등의 노력이 미흡하고, 사업자의 불편 초래

라. 개선방안

- 국제협약규정에 따라 정부의 형식승인을 요하는 해양오염 방지설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제협약 강제적용사항이 아닌 오일웬스, 유처리제 등 자재 · 약제는 민간단체에 형식승인 위임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 및 동 규칙 제102~110조 개정(2000년 상반기)

-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성능시험, 검정 및 인정업무 수행기관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제한없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함
-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114조 제1항 개정(2000년 상반기)

· 경쟁제한적인 수출입 및 관련산업에 대한 규제개선방안

* 집필자 : 박계옥 사무관(Tel. 3703-2158)

1. 우리나라의 수출입규제제도 개요

1) 규제현황 및 개선과제 선정

가. 수출입제도 전반

- 수출입 관련 업무는 대외무역법과 품목관련 개별법에서 규율
 - 대외무역법은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국제협약·자원보전 등 목적의 수출입 제한, 수입증가 등에 의한 산업피해조사 구제, 수출입의 질서유지 등 일부 수출입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대외무역법 제3조, 제14조, 제26조 등)
 - 국제협약 등에 의한 수출입 제한의 내용은 '수출입 공고'로 공고됨
 - 품목관련 개별법에서는 안전, 환경보호, 건강 등을 목적으로 관련 품목에 대해 별도 규율(식품위생법, 농약관리법 등 54개 법률)
 - 개별법에 의한 수출입 제한의 내용은 '통합공고'로 공고됨(참고 1 참조)

나. 사업자단체에 의한 수출입 제한

- 대외무역법 및 개별법에 의한 수출입 승인 추천 검사 등의 권한을 대부분 사업자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근거 : 대외무역법, 54개 개별법,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등)
 - 대한염업조합 등 40여개 단체가 수출승인, 수입요건확인 품질검사 등의 업무 수행(참고 2 참조)
 - ※ 사업자단체에 위임·위탁하는 사유 : 사업자가 생산하는 품목의 현황 파악이 용이하고 행정기관의 자체 전문인력의 확보 한계를 보완

〈참고 1〉 통합공고상의 주요 수출입 제한 현황(예시)

구 분	현 황
허가제에 의한 경우	• 양곡관리법(미국 수입시 허가)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에 관한 법률(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수입 허가) 등
등록제에 의한 경우	• 농약관리법(농약수입업자의 등록) • 담배사업법(제조담배수입업자의 등록) • 석유사업법(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등록) 등
신고제에 의한 경우	• 식품위생법(식품 수입시 신고) • 공중위생법(위생용품 수입시 신고) 등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염관리법(염수입시 조합에 의한 검사) 등 •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압가스 용기수입시 검사) 등
기 타	• 관세법상(통관절차상의 제한) • 자동차관리법(자동차에 대한 형식승인) 등

〈참고 2〉 사업자단체에 의한 수출입 제한 현황

구 분	사업자단체 수	주요 단체의 수출입제한 현황
수출입공고	14개 사업자단체	• 농림수산물수출입조합(사과, 배의 수출승인) • 한국골재협회(모래, 자갈, 대리석의 수출승인)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육우의 수입승인) 등
통합공고	12개 사업자단체	•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유해화학물질 수출입 신고) • 한국동물약품협회(동물약품의 수입요건 확인) • 대한염업조합(수입염의 품질검사) 등
수출입 다변화공고*	13개 사업자단체	• 한국기계공업진흥회(충전기부품 등의 수입승인)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자동차부품 등의 수입승인) • 한국광학기기협회(사진기부품의 수입승인) 등

* 수출입 다변화공고는 1999. 6월까지 폐지 예정

2) 문제점

가. 정부 또는 대행기관에 의한 수출입 규제

- 개별법에 근거한 수출입 규제가 본래의 정책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수출입시장에서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를 초래
 - 수출입업자에 대해 제조업자와 같은 수준의 시설기준 등의 등록요건을 부과하여 과중한 부담(예 : 농약)
 - 수급조절 등을 위한 수입의 불합리한 제한으로 국내 생산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축소(예 : 한약재)

나. 사업자단체에 의한 수출입 제한

- 사업자단체의 수출승인제도나 수입요건 확인 검사제도는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
 - 수출승인 과정에서 지도가격제 수출물량 배분(예 : 사과, 배) 등을 실시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과 가격경쟁을 제한
 - 수입품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 확인(예 : 동물약품)이나 불필요한 품질검사(예 : 소금)로 수입관련 절차가 복잡해지고 관련 비용증가 초래

3) 규제개혁의 기본방향

- 수출입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관련산업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제하에서의 대외 신인도 제고
- 정부 또는 대행기관의 직접적인 수출입규제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하여 수출입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 과도한 시설요건 등 불필요한 진입장벽과 불합리한 수출입 절차상의 제한은 폐지·완화
-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제한적 수출입추천 요건확인 제도 등을 개선하여 신규 진입제한 완화와 사업자의 부담요인 최소화
 - 과당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수출자격기준, 물량배정제는 원칙적으로 폐지
 - 사업자단체에 의한 불합리한 수입요건 확인제 및 품질검사제 개선

- 수입제도와 관련하여 국내산업에 대해 경쟁제한적이거나 불합리한 잔존 규제도 병행하여 개선

2. 세부규제별 개선방안

1) 정부 또는 대행기관에 의한 수출입 및 관련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

농약 제조·수입업에 대한 등록요건 완화

가. 규제현황

- 농약제조업이나 수입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농약관리법 제3조)
 - 전문관리인 및 자체 검사책임자, 실험실시설, 보관창고시설 등
 - 실험실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건조기 등 실험기구에 대해 상세히 규정
 - 농약의 중간원료를 생산하는 원제업의 경우 제조업보다 다소 완화된 인력 시설요건 규정

농약제조·원제·수입업의 주요 등록요건 비교

구 분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 인력	• 전문관리인 1인 및 자체 검사책임자 1인	• 전문관리인 1인	• 제조업과 동일(원제만 수입시 원제업과 동일)
• 시설 - 실험실 - 보관창고	• 생물 및 화학실험실 - 바닥 면적 각 10평 이상 - 건조기, 수소농도측정기, 향온기 1대 등 • 면적 : 200평 이상 • 바닥 : 방수처리 • 환기구 설치	• 원제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 • 면적 : 50평 이상 • 바닥 : 방수처리	• 제조업과 동일(농진청장 승인 검사기관 시설 이용 시 생략 가능) • 면적 : 100평 이상
• 기타	• 제품혼조기, 분쇄기, 포장 시설 등	• 건조장치, 포장시설 등	• 포장시 해당품목의 저장조, 포장시설

※ 농약 제조업자는 대부분 농약원제업을 겸업

※ 농약수입업은 1995. 12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1999. 3월 현재 총 38개 업체 등록

■ 농약의 품목 등록 및 검사

- 수입업자나 제조업자(원제업자 포함, 이하 같음)가 농약 생산·수입시 농약품목별로 등록(농약관리법 제17조)

- 등록시 농약 품목별로 농약의 약효·약해·독성·잔유성 등에 관한 시험성적서 및 시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사기관이 검사

※ 품목 등록시 검사기관 : 농약과학기술원(농약의 약효, 농작물·사람·가축에 대한 유해성 여부 등을 검사)

나. 문제점

- 농약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수입업자에게 제조업자와 비슷한 시설 장비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임

- 시설요건을 구비하기 어려운 수입업자(예 : 수입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으로 작용

- 농약 품목별 등록시 행하는 독성, 유해성 등에 대한 검사 등에 의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수입업 등록시 농약의 안전확보 차원의 시설 장비요건은 불필요

- 농약 제조업자의 등록요건에 불필요한 요건이 있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 농약에 대한 품목검사를 철저히 할 경우 제조 실험실 시설에 대한 엄격한 요건 부과는 불필요

- 제조업자들은 필요시 전문검사기관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체 실험시설의 확보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낮음

다. 개선방안

- 농약수입업의 등록요건 완화

- 보관창고 면적

- 수입업 : 100평(임차 불가능) → 50평(임차 가능)

- 원제 수입 및 수입농약재 가공 : 150평(임차 불가능) → 100평(임차 가능)

- 실험실 시설 및 장비는 임차 가능토록 개선

■ 농약 제조업의 인력 및 시설요건 폐지 또는 완화

- 인력요건 중 자체 검사책임자 이외의 '관리인 1인 이상' 요건 폐지
- 실험실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시설 및 장비는 임차 가능토록 개선
- 보관창고 면적기준은 200평(임차 불가능)에서 100평(임차 가능)으로 완화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999. 8. 23일부터 시행

석유품질검사소의 석유제품 품질검사제 개선

가. 규제현황

- 석유제품의 생산·수입업자는 품질유지를 위해 산자부 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석유사업법 제25조)

-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및 검사방법은 산자부 장관이 정하며, 품질검사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권한 위탁

※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위탁된 사항 :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가 생산·수입하거나 송유관사업자가 수송·인도하고자 하는 석유제품

- 국내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제품 출하 중 정유공장은 월 1회 이상, 저유소(정유사 및 송유관공사 소유 74개소)는 분기별 1회 이상 품질검사 실시

- 기타 수입업자는 매 수입시마다 통관 전 품질검사를 실시하되, 국내 정제업자와 품질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월 1회 이상 실시

-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유통시키는 석유제품은 시·도지사의 의뢰로 유통중 수시로 품질검사 실시

※ 석유품질검사소(4개 지소)는 시·도지사의 의뢰로 연 45,000여 건 실시

※ 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 수수료

· 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 l 당 0.122원

· 윤활유 : l 당 3.33원

· 그리스 : kg당 3.33원

※ 석유품질검사 수수료 실적(1998) : 97억원

나. 문제점

- 품질검사업무가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독점되어 있어 검사 서비스의 질 향상 유인 부족
 - ※ 석유제품 품질검사 내용 및 방법 : 납, 벤젠, 방향족화합물, 인화점, 옥탄값 등의 품질기준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의함(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3조)
-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가 장기간 소요되어 수입업자의 비용부담 증가
 -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하역항에서 떨어져 있거나 업무량이 많아 검사기간이 평균 5일 이상 소요(검사업무 규정상 검사기간은 15일)
 - 민간검사기관의 경우는 평균 1~2일 이내에 검사 완료
- 자체 검사시설과 능력을 갖고 있는 대규모 정제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검사는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크지 않음
 - 대규모 정제업자의 경우 고객관리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스로 품질관리를 하고 있어 사전적인 강제검사제도는 이중의 부담이 됨
 - ※ 일본의 품질검사 제도 : 휘발유 및 경유 등의 석유제품 정제업자나 수입업자는 자가 품질확인을 하여 통산성에 신고를 하고, 필요시 통산성이 지정한 분석기관에 확인을 위탁할 수 있음

다. 개선방안

- 품질검사업무 위탁기관 복수화를 허용하여 경쟁여건 조성
 - 일정한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충족하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을 모두 검사기관으로 지정
-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지정기관의 품질검사를 통관 전 품질검사에서 통관 후 유통 전 품질검사로 전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4조 개정)
- 일정 요건을 갖춘 대규모 석유정제업자에 대해서는 2000. 1. 1일부터 품질검사를 자체 검사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
 - 품질검사 결과를 산자부에 보고토록 하고, 필요시 산업자원부가 검사기관에 품질확인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석유사업법 개정(1999. 12), 2000년 7월 시행 예정

한약재 수급조절 및 수입제한제도 개선

가. 규제현황

- 26개 한약재에 대해 국내 생산농가 보호와 수급조절 등을 위해 수입 등을 제한(약사법 제38조,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 규정 제4조)
 - ※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 품목: 강활, 구기자, 당귀, 독활, 두충, 맥문동, 목단피, 방풍, 백수오, 백지, 백출,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 적작약, 지황,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허수오, 향부자, 황금, 황기(총 514종의 한약재 중 26개)
 - ※ 약사법 제38조(의약품 등의 질서유지) : 수입업자 등은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화 및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급조절 등의 관리를 위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설치된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서 수입품목, 수량, 시기, 배정업무를 수행(동 규정 제5조)
 -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도 약용이 아닌 식용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없이 수입 가능
 - ※ 한약재 수입 및 배정절차 : 각 소비자단체에서 수입 건의 → 수급조절위원회에서 품목, 수량, 수입시기 결정 → 공개입찰을 통해 수입자 선정 → 수입자의 수입 및 수급조절위원회가 정한 배정단체에 배정 → 배정단체는 소속회원사 등에 배정 유통
 - ※ 수급조절 한약재 수입실적(1997) : 8,035천달러(4,125톤)

나. 문제점

- 국내 생산농가 보호와 직접 관련없는 한약재의 수입제한으로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국내 한약재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거나 생산량이 미미한 백출, 백수오, 창출 등의 경우 수급조절품목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지정
 - 수급조절 한약재가 식품용으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제한 규정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도 없고 형평성 문제 제기
 - 인위적인 수입제한으로 밀수 등의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
 - ※ 전체 한약재의 밀수 적발 금액(1998. 1~10) : 85억원
- 한약재 수입제한 및 배정제도의 법적 근거도 미흡
 - 약사법 제38조(유통체계화 및 질서유지)는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투명성이 떨어져 한

약제에 대한 수입제한 및 배정근거로 보기 곤란

다. 개선방안

- 국내 생산농가에 대한 피해, 규제의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수급조절품목의 단계적 축소
 - 1999년중 수급조절품목에 대한 평가작업 후 2000~2001년에 걸쳐 품목 축소하고 잔존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화 추진
 - ※ 축소대상 품목(예시) :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산비중이 미미한 품목(창출·백출), 식용으로도 수입되는 품목(구기자), 국내외 가격차가 적은 품목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2000년 상반기) 예정

2) 사업자단체에 의한 수출입 및 관련산업에 대한 규제개선

농림수산물수출입조합의 사과·배 수출승인제도 개선

가. 규제현황

- 사과·배는 대만에 수출시 농림수산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 가능(대외무역법, 수출입공고, '대 대만 사과, 배 수출자율규제요령'〈농림수산물수출입조합 제정〉)
 - 사과·배의 수출은 대만측의 수입규제 및 정부차원(한·대만 과실교역회담)과 민간대표부 차원(한·대만 과실교역 창구회의)의 협정에 의한 구상무역(바나나 등 대만산 과실수입 의무부여)형식으로 진행
 - 수출입 업무는 양측 정부에서 지정하는 단체(한국 : 한국농림수산물수출입조합, 대만 : 대만성청과온소합작사)에서 수행
 - ※ 1998년도 사과·배의 대만수출은 1997년 양국 교역회담의 결렬로 중단(대만측이 현재의 국장급 회담을 장관급 회담으로 격상 요구하였으나, 우리나라가 거절하여 현재 회담이 결렬된 상태)
 - ※ 사과 및 배 수출실적
사과 : 1995년 8.1백만달러 → 1996년 5.5백만달러 → 1997년 4.3백만달러
배 : 1995년 3.9백만달러 → 1996년 3.5백만달러 → 1997년 4.1백만달러

※ 대만산 바나나 등 수입실적

1995년 0.4백만달러 → 1996년 2.5백만달러 → 1997년 1.4백만달러

■ 수출업자 자격요건, 물량배정, 수매가격, 수출가격 등을 규제

사과 · 배에 대한 수출자율규제 내용

	사과	배
수출업자요건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과를 수출한 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실적이 100톤 이상인 자 • 과실용 저온저장 창고를 660m²(200평) 이상 소유 또는 임차한 자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배를 수출한 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실적이 50톤 이상인 자 • 과실용 저온저장 창고를 660m²(200평) 이상 소유 또는 임차한 자
물량배정	• 수출물량은 과수분과위원회에서 배정 • 물량배정은 당해연도 배정대상 총물량을 기본쿼터 90%, 개방쿼터 10%로 구분하여 배정 - 기본쿼터는 전년도 대만 수출실적 비율로 배정 - 개방쿼터는 대만을 제외한 기타지역 전년도 수출실적 비율로 배정	
수매가격	• 분과위원회에서 수출용 과실 수매가격을 결정하여 시행	
수출가격	• 한 · 대만 과실교역창구회의에서 합의된 가격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정한 자율지도 가격	

나. 문제점

- 수출업자 자격 및 시설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국내업자간 경쟁저해 소지
 - 수출업자에 대한 높은 수출실적 요건으로 인해 신규 진입 제한
 - 저장시설과 같이 사업자 스스로가 수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판단 · 설치할 사항도 수출자격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 물량배정에 있어 기본쿼터(대만 실적)의 비중이 높아 신규 참여 제한
 - 신규업체에게는 개방쿼터(10%) 내에서 대만을 제외한 기타지역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정
- 생산자협의회와 수출업자 대표간의 협의 및 분과위원회에 의한 수매가격의 일률적 결정으로 경쟁 저해
 - 수매가격은 기본적으로 개별 구매자와 생산자가 시황과 협상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

다. 개선방안

- 정부간 협약적 성격을 고려하여 승인제도 등 협약준수를 위한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경쟁제한적인 운영형태는 개선
- 수출업자 자격 및 시설기준 규제 폐지 또는 완화
 - 수출업자의 자격기준을 최근 2년간 사과 연평균 수출실적이 30톤 이상인 자, 배 20톤 이상인 자로 완화
 - 냉동시설 보관의무만 부과하고 저온창고 시설기준인 660m²를 삭제
- 수출물량 배정시 개방쿼터 비율을 현재 10%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하여 신규진입 제한 완화
- 수매가격은 개별생산자와 수매자가 시황과 협상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대 대만 사과 · 배 수출자율규제 요령 개정(1999. 2. 12), 현재 시행중

한국동물약품협회의 수입요건 확인제도 폐지

가. 규제현황

- 동물용 의약품 수입하는 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의 '수입요건확인' 을 받아 통관(동물용 의약품 취급규칙 제19조, 통합공고 제17조 등)
 - 수입요건 확인의 목적 : 수입자 자격여부와 수입허가 품목과 동일한 함량, 성분의 품목 인가 여부를 확인
 - 수입자 자격 여부 : 수입자확인증(동물용 의약품은 농림부 장관 발부)에 의거 확인
 - 수입허가품목 여부 : 수입품목허가(신고)증(동물용 의약품은 농림부 장관 발부)에 의거 확인
 - 수입자는 협회의 '수입요건확인증' 을 교부받아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통관 사전요건으로 수입요건 확인증 요구)
 - 수입요건확인제도는 불량 의약품 등의 통관을 막기 위해 도입
 -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수입요건 확인실적은 135백만달러, 4.5천건이고, 확인수수료는 회원 · 비회원에 관계없이 2.2원/수입 1달러당(1997년 수수료 총액 220백만원)
- ※ 의약품 및 의료용구에 대해서는 제18차 규제개혁위원회(1998. 11. 6)에서 수입요건확인

제도를 폐지토록 의결하였음(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개혁방안으로 추진)

■ 수입요건확인제도 현황

- 동물의약품은 안전성 · 유효성 정도에 따라 농림부 장관의 '허가 · 신고 품목' 과 '허가 · 신고 생략품목' (대신 협회에 신고)으로 분류

품목 구분	확인 요령
허가 · 신고 품목	• 최초 수입시 농림부 장관이 허가 또는 신고 • 재수입시 협회가 요건확인
허가 · 신고 생략품목	• 최초 수입시 협회에 신고 • 재수입시 협회가 요건확인

■ 수입요건확인 구비서류 (근거: 통합공고)

구 분		구 비 서 류
수입허가 · 신고 품목	• 완제동물의약품 • 동물용 의약부외품	• 수입승인신청서 3부 • 한글표시서 1부
수입허가 생략품목	• 원료 동물약품 및 의약부외품 • 동물용 의약품 • 체외진단용 의약품 • 동물용 위생용품	• 수입승인신청서 3부 • 한글표시서 1부 * 원료동물약품 및 의약부외품은 '한글표시서' 대신 '생산계획서' 제출

* 동물용 의약품은 수입자가 총 100명 정도의 소규모여서 수입자확인증 및 수입품목허가증 제출 생략(협회에서 확인)

나. 문제점

- 안전성에 문제가 적은 '수입허가 · 신고 생략품목'에 대해서 매 수입시마다 수입요건확인을 받도록 함은 수입자에 과도한 규제
- 수입요건확인이 서류상의 요건확인 등 형식적 확인에 그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음
 - 세관에서 샘플(10%)로 불량품목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수입의약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경쟁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수입의약품 국내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등 부작용 초래

- 국내 제조의약품 등은 제조허가 후 자유롭게 판매·유통되는 점과 비교시 형평성 문제 제기

다. 개선방안

- 재수입시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의한 수입요건 확인제도 폐지
 - 최초 수입시 농림부 장관에 대한 허가·신고(허가 신고품목)와 협회에 대한 신고(허가·신고 생략품목)는 존치

제도개선 내용

제도내용	현행	개선 후
• 수입의약품 등의 수입시마다 '수입요건확인' 실시	• 협회가 수입요건확인을 실시하고 수수료 징수 • 세관에서는 수입요건확인증을 보고 통관	• 최초 수입허가·신고 후 반복 수입시 수입요건확인 폐지 • 세관제출 수입신고서에 수입요건확인증 대신 수입품목허가증 첨부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동물의약품취급관련 통합공고 개정(2000년 상반기) 예정

대한염업조합의 염품질 검사 및 수입신고제도 개선

가. 규제현황

- 국내염과 수입염으로서 공업용염이나 기타 식용염(재제·가공염을 제외한 소금)은 염업조합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함(염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다만, 재제·가공된 식용염(이하 '식용염'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국내염은 제조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사
 - ※ 소금의 종류
 - 공업용염 : 가성소다, 피혁 등의 제조시 사용되는 소금으로 화학공업용과 일반공업용으로 구분됨(천일염, 기계염 등)
 - 기타 식용염 : 재제·가공소금을 제외하고 식용으로 사용되는 소금(천일염, 압축·분쇄·세

염 품질검사제도 개요

구분	공업용염 및 기타 식용염	식용염(재제·가공업)
수입	염업조합에 검사신청-시료채취-품질검사-검사필인 또는 검사필증 교부	염업조합에 검사신청-시료채취-품질검사-검사필인(염관리법 제10조, 이하 같음)
국산	식약청에 수입식품신고-정밀검사-수입신고필증발부(식품위생법 제16조)	제조공장에서 자가품질검사(식품위생법 제19조)

척염 등)

- 식용염(재제·가공업) : 식품의 조리·제조 등의 원료나 직접 식용으로 사용되는 소금(꽃소금, 맛소금 등)

※ 염수요 구성비(1997년 기준)

- 공업용염 및 기타 식용염(256만톤, 97.6%) : 국산염 26%, 수입염 74%
- 식용염(6.2만톤, 2.4%, 복지부소관) : 국산염 98.7%, 수입염 1.3%

※ 공업용염 및 기타 식용염 구성비(1997년 기준)

- 공업용염 79%(국산 7, 수입 72), 기타 식용염 21%(국산 19, 수입 2)

■ 염 수입자는 염업조합에 수입신고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등)

- 수입신고는 수입부담금 부과 목적이며, 동 부담금은 염수입자유화에 따른 국내 염산업 구조조정(폐전 지원 등) 촉진을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염관리법 제14조)

※ 염의 수입 신고 실적(1997년) : 44백만달러(190만톤)

수입부담금 징수현황

연 도	수입금액(억원)	수입량(만톤)
1997	23	3.4
1998	120	22.2

* 수입부담금 부과대상 : 화학공업용과 외화획득용을 제외한 기타 염

* 수입부담금은 현재 톤당 53,950원 부과

※ 소금은 GATT/BOP 제2단계 수입자유화계획에 따라 1997. 7. 1일부터 수입 자유화되었고, 우리나라는 수입부담금제를 1997. 7. 1~2001. 12. 31일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GATT에 통보(1994. 4)

- 수입신고시 법령상 구비서류는 총 6종과 함께 수입신고서에 총 27개 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있음

- 법정서류 이외에 각서(용도 내 사용보장 등)를 제출

※ 수입신고서의 주요 기재사항 : 수입자와 위탁자의 상호, 무역업등록번호, 주소 및 업종, 품목 번호, 품명, 물량, 단가, 금액, 제조회사, 수출회사, 수송편 종류 등

※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 수입대행계약서(수입자와 실수요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 조합 또는 협회 설립인가증 사본(실수요자가 가입하고 있는 조합이나 협회에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함)

- 생산지에서의 염의 제조·가공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문제점

- 염업조합의 품질검사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낮으며, 유사한 검사에 대한 수수료 차이가 커서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 검사수수료 실적(1997년) : 약 5억원(256만톤)

※ 수수료(톤당) : 수입염 77원, 천일염 530원, 기계염 330원, 가공염 550원

- 공업용염의 품질은 실수요자인 사업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실제로 수입시 산지로부터 품질에 대한 보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입

※ 외국의 사례 : 호주의 경우 생산자 스스로 품질관리를 하며, 일본은 생산자가 염품질검사보고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호주·일본 공히 사후관리에 중점

- 현행 품질검사는 검사능력 및 방법의 낙후·검사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금속 등에 대한 분석능력 한계

- 관능검사(맛·냄새·탁도 등), 육안검사(색상, 염도·입도·수분함유량 등)로는 안전성과 관련된 중금속 등에 대한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

- 염업조합의 정밀검사 기기 및 인력이 미비하여 중금속 등의 분석에 한계(검사인력

총 25명이 총 256만톤의 품질검사를 시행)

- 영업조합에 의한 품질검사제도는 사업자단체의 과도한 기능의 축소 정비방향에도 배치 소지
- 수입신고서의 내용이 복잡하여 수입업자에 대한 부담 초래
 - 수입신고 목적에 비추어 불필요하거나 영업비밀 관련사항이 포함되어 수입자의 불편과 영업활동의 침해 가능성
 - ※ 신고서 기재사항 중 불필요한 사항(예시) : 염 단가, 제조회사, 수출회사, 가격조건 등
 - 수입자로 하여금 최초 수입신고 후 매 수입시마다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수입자에게 불편 초래
 - ※ 최초 수입신고 후 매 수입시마다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수입대행계약서, 조합 또는 협회 설립인가증 사본, 생산지에서의 염생산방법 소명자료

다. 개선방안

- 염 품질검사기관 복수화를 허용하여 경쟁여건 조성
- 수입 및 국산염에 대한 품질검사제도를 국내 염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2002. 1. 1일부터 자가 품질표시제도로 전환
 - ※ 다른 1차산품(예 : 채소 등)에도 사전 품질검사제도가 없는 점과 염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업용염에 대한 품질검사는 실수요자가 판단할 사항인 점 등을 고려
 - 염에 대한 성분기준을 설정하고, 동 성분 함량을 사업자가 포장에 스스로 표시하는 제도로 전환
 - ※ 다만, 식용염(재제 · 가공염) 및 부산물염(화학제품 생산시 발생하는 부산물에서 생산하는 소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사전품질검사제도를 유지
 - 성분표시를 위한 검사는 자가검사시설을 갖추도록 하거나 또는 영업조합이나 기타 일정한 시설 능력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허용
 - 성분의 허위 불량표시에 대한 제재 도입
- 수입신고 서류의 간소화
 -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 및 각서 제출 개선(1998년 하반기중 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지 서식 개정)
 -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중 수입부담금 징수 목적과 관련없는 단가, 제조회사, 수출회사, 가격조건 관련 항목 삭제

- 최초 수입신고 이후의 수입신고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수입대행계약서, 조합 또는 협회 설립인가증 사본, 생산지에서의 염 생산방법 소명자료 제출 면제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염품질검사기관 복수화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1999. 12. 31)을 통해 2000년 4월부터 시행 예정
- 수입신고 서류 간소화는 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999. 4. 13), 현재 시행중

.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 출연금 개선방안

* 집필자 : 윤순희 사무관(Tel. 3703-2182)

1. 현황 및 문제점

1) 출연금제도의 내용

- 정보통신 기술개발 및 정보화촉진 등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정보화촉진기금에 출연토록 하고 있음
 - 허가에 따른 출연금과 정보통신부의 권고에 따른 출연금이 있으며, 허가에 따른 출연금은 일시출연금과 연도별출연금으로 구분

2) 출연금제도의 변천 과정

- 1992년 이전의 사업자(한국통신, 데이콤, SK텔레콤)는 정부의 지정에 의하여 진입함에 따라 출연금 관련 제도가 없었음
 - 1993년 이후 타사업자 진출 이후 형평성 차원에서 출연금을 납부토록 권고(권고출연금)
- 1992년 사업자 허가시(제2이동통신사업자, 제2무선호출사업자 등) 출연금제도 정립(5년 시한)

- 무선호출사업자는 1994~1998년까지 출연
- 신세기통신, 한국TRS, 데이콤 시외는 1996~2001년까지 출연
- 1996년 사업자 허가부터는 출연금 납부의무기간이 명시되지 않음
- 1998년 의무출연금 납부기간이 만료된 무선호출사업자는 권고출연금 대상사업자로 전환됨

3) 법적 근거

- 권고에 의한 출연 :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 대상 : 한국통신(CT-2제외), 데이콤(시외제외), SK텔레콤, 무선호출사업자(10개)
 - 출연금 산정근거 : 명확한 산출근거 없음
 - 한국통신(1.34%), SK텔레콤(1.51%), 데이콤(1.26%), 무선호출사업자(1.26%)
 - ※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 정보통신부 장관은 연구개발 투자 등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토록 권고함
- 허가조건에 의한 출연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및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 기준(정통부 고시)
 - 대상 : 1994년 이후 허가한 기간통신사업자
 - 데이콤(시외전화), 신세기통신, PCS 3사, 한국통신(CT-2), TRS 11사, 무선데이터 3사, 회선임대사업 3사, 무선호출 2사, 온세통신, 하나로통신
 - 출연금 산정비율
 - 일시출연금은 허가시 향후 5년간 예상매출액의 3.5%~7% 범위
 - 연도별출연금은 허가서상의 출연비율에 따라 출연
 -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역무제공, 전기통신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 제4조 : 일시출연금 상한액은 역무의 향후 5년간 총매출액의 7%로 하며, 하한액은 상한액의 50%로 함
- 정보화촉진기금으로의 기업출연금 산입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
 - 기업출연금 산입규모 : 1997년 1,917억원, 1998년 2,183억원, 1999년(예정) 1,384억원

4) 주요 문제점

가. 법적 근거의 취약성

- 출연금제도가 준조세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권고 방식 또는 허가조건에 의해 제도가 운영됨으로 인해 법적 투명성 부족
- 출연금 산정근거와 관련, 권고출연금의 경우 법령에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부과되고 있으며, 허가조건에 의한 출연금의 경우도 관련 고시에 의거하여 출연금이 부과됨

나.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중한 부담 및 산정기준 문제

- 기간통신사업 진입시뿐만 아니라 매년 매출액의 2.1%~5.0%를 출연금으로 납부함에 따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있는 기술개발 투자를 저해하고, 경영기반을 위축
- 동일 역무제공 사업자간에도 허가연도에 따라 출연금 부과비율이 상이함에 따라 공정경쟁에 저해될 소지가 있음
- 출연금 산정기준이 매출액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순익을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을 부담해야 함
 - 또한 현재의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및 표준양식' (정통부 고시)에 의하면 연구개발 출연금은 영업외 비용으로 포함되어 요금산정 원가의 일부로 작용하므로 인해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

2. 개선방향

기본 방향

- 출연금은 정부가 특정사업자에게 독과점적으로 통신선로구축권을 부여한 데 따른 대가와 공공자산인 주파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징수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으며
- 기초연구개발 등을 위한 재원은 조세로 부담하여야 가장 적절하나 현재의 재정상황에서는 곤란하므로 출연금제도의 존속이 필요
- 다만,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규제이므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부담기준과 부과절차를 투명하게 법령에 명시

1) 법적 근거의 명확화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개정하여 출연금 등 중요한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도록 함

※ 개정 예시(전기통신사업법 제5조)⑤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개시, 출연금,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출연금 부담의 합리화

가. 일시출연금

- 유선분야는 폐지, 무선분야는 유지하되 대폭 경감
- 유선분야는 WTO협정 등 세계적 통신정책 흐름에 맞춰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정보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일시출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
 - 기존사업자 보호 및 사업자간 형평을 고려하여 우선 2000년부터 일시출연금을 절반 이하 수준(3~1%)으로 대폭 경감하고 2002년부터 완전 폐지 추진
- 무선분야(유·무선 복합 포함)는 희소 공공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배타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렌트(희소성 렌트, 차등적 렌트)가 발생하므로 유지하되 출연비율을 경감
 - 일시출연금 납부비율은 현재 향후 5년간 매출액의 7%(상한)~3.5%(하한)이나 기간통신사업자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상한비율은 30% 정도 경감하여 5%로 하되, 하한비율은 서비스 다양화 추세에 따른 서비스별 이익의 상대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40% 정도 경감한 2%로 함

나. 연도별 출연금

- 유지하되 대폭 완화
- 지식정보화 사회가 성숙단계에 접어드는 2001년부터는 민간 R & D투자의 활성화 차원에서 대폭 완화
- 허가시기 및 허가조건에 의해 사업자별로 상이한 출연비율(2.1~5.0%)을 2001년부터 유·무선 기간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자체 R & D비율(평균 5~6%)의 20% 이하 수준이면서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수준인 기간통신 역무관련 매출액의 1.0% 수준으로 단일화

3) 관련사항

- 가격경쟁방식에 의한 주파수 할당제도 도입 검토
- 무선분야의 경우 시장성 있는 주파수 배분시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격경쟁방식에 의한 주파수 할당제도의 도입방안도 동시에 검토

4) 기대효과

- 연도별 출연금의 경우 연평균 약 1,800억원 수준(2001~2005년까지 5년 동안의 추정치 기준)의 기간통신사업자 부담경감 예상
- 일시출연금의 폐지 등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운영 초기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시장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정보통신 인프라의 조기구축 및 요금인하 등의 효과 기대

3. 조치계획

- 연구개발출연금제도는 1999년중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개정 추진
- 가격경쟁방식에 의한 주파수 할당제도는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 추진

. 약용작물의 가공 및 유통관련 규제개선

* 집필자 : 류충렬 과장(Tel. 3703-2189)

1. 추진배경

- 약용작물(한약재)은 농가의 주요한 소득원으로서 의약품인 동시에 식품의 원료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음
 - 최근에는 식품소비 패턴의 변화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및 한방의료보험제도의

실시 등으로 한약재의 소비가 계속 증가

- 한약재의 소비증가에 따라 다양하고 합리적인 가공 및 유통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나,
 - 현실과의 괴리감 있는 규제 등으로 이해 관계자들의 불만 및 시장의 불공정거래로 자율적 경제활동이 위축 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 파생
- 따라서 현실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한약재의 가공·유통·이용상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한약재 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과 안전을 도모

2. 분야별 개선방안

1) 한약재의 음식료품 원료사용 규제개선

가. 규제현황

-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공전 제3조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동·식물과 부원료로 최소량만 사용할 수 있는 동·식물의 종류 및 양을 설정하고 있는데
 - 전통적으로 음식료품의 원·부자재로 사용되어 온 한약재 중 상당부분이 ‘식품공전’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신소재를 식품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신청인이 안전성과 건전성을 입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
 - 식용가능 여부의 검토는 식용근거, 원료의 독성·부작용 및 금기사항 여부, 독성시험 결과 등 안전성자료, 외국에서 식용사례 등을 기준으로 판단

나. 문제점

- 전통적으로 식품으로 사용해 온 다수의 동·식물을 과학적 근거없이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자원의 낭비 및 식품산업의 발전 저해
 - 식품원료로 사용이 제한된 하수오, 홍화 등의 한약재가 일반식품 또는 식품원료로 불법 수입·유통되고 있어 유통질서 문란 초래
- 식품공전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 중 식품으로써 건전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없이 상당수의 한약재를 국민들이 상용하고 있어서 오·남용의 우려 상존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원료 사용허가를 위한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과 방법에 대한 법

적 근거 불비

- 현재는 식품공전상의 원료 구비요건을 근거로 “식품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용근거와 안전성 및 건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 하도록” 민원인에게 의무 부과
 - 투명한 절차나 기준없이 ‘민원사무편람’에 의해 2명의 인력으로 매월 약 60여건의 식품원료 사용관련 민원처리
- 식품 및 약품으로 혼용이 가능한 품목의 경우 식품용도 판매를 의약품으로 취급하여 과잉단속 등의 시비발생으로 식용한약재 유통이 위축(예 : 농협에서의 황기 판매단속 등)

다. 개선방안

■ 단기방안

- 식품공전에 식품원료 수재품목을 확대하여 사업자들의 원료확인에 따르는 불편해소
 - 수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토·회신한 공문을 근거로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동식물 원료를 재정리, 식품공전에 추가함으로써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리 제공
- 식품원료로 사용을 불허 및 제한하는 품목에 대한 재검토
 - 복분자, 어성초, 음양곽 등 오래 전부터 차나 술로 이용해 온 품목은 위해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식품원료로 추가인정
- 새로운 식품원료의 사용을 위해 신청절차와 심사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 확보 및 심사기준의 투명성 제고
 - 식약청 심사과정에서의 자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의 구체화 및 건전성·안전성의 입증방법 제도화
- 식품용도로 판매시 약사법적용 배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치
 - ※ 식품으로 사용가능 품목 중 의약품으로 한방병원에 유통할 경우에는 해당품목이 의약품으로서의 약효·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규격화하는 등 약사법의 규제대상

■ 장기방안

- 한약재의 식용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품목별 사용범위에 대한 분류기준과 관리체계 확립
 - 한의사, 약사, 식물학자, 식품학자 및 독성학자 등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통해 한약재의 약리작용 등 성분본질에 따른 분류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식품으로 사용가능한 한약재의 목록 및 사용기준 정립

- 선진국의 식품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식품의 제조·판매에 대한 자율성 강화
 - 신청인이 해당 품목의 성분 또는 식품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부적합 회신이 없을 경우 신청인 책임하에 식품으로 제조·판매 허용
 - 단, 식품으로 유통중에 부작용이나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정부가 조사, 유해판정시 판매금지 조치하고, 정부가 고시하는 등 사후관리방식으로 전환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 후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1999년말까지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식품의약품안전청)

2) 한약재 규격화제도의 개선

가. 한약재 규격화제도

- 한약재 규격화제도는 한약재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 의약품도매상, 약국 개설자 및 한약업사는 규격품 아닌 것을 판매 불가
- 69개 지정품목은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제조 불가(단, 농민과 한약도매상의 자가규격 인정)
-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이하 관리규정)에 의해 1996년부터 추진

규격품 한약재의 구체적인 조건

- 규격기준(관리규정 제28조) : 대한약전 및 한약규격집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
- 포장방법(관리규정 제29조) : 포장단위는 자유지만 밀폐포장해야 함
- 기재사항(관리규정 제30조) : ① 제조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② 제품명 ③ 제조번호와 사용기한(포장일자) ④ 중량·용량 ⑤ 용법, 용량 및 사용일수 ⑥ 판매가격 ⑦ 성상 ⑧ 효능·효과 ⑨ 저장방법 ⑩ '규격품' 문자 ⑪ 원산지명(국산은 생산지역 병기)

- 규격화 대상품목 : 전체 한약재 514개 품목
 - 전체 규격화 대상 중 69개 품목은 보건복지부가 허가한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나머지 445개 및 국산 69개 품목에 대해서는 도매상 등에서 제조

■ 한약재 제조업의 허가요건

- 약사법 및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이하 시설기준)상의 시설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방식약청의 허가
 - 전용작업실 등 면적 100㎡ 이상
 - 제조관리사(약사 또는 한약사) 고용
 - 저울, 세척기, 절단기, 건조기, 분쇄기, 포장기, 작업대, 계량기 등 한약재 제조에 필요한 12종의 시설 및 기구
 - 30종의 기본시설과 품목별로 필요기자재 등 총 85종의 시험기구
 - ※ 허가받은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거나 시험검사 관련 시설을 갖춘 의약품 제조업소 및 식약청에 등록된 한약재 검사기관과 계약, 품질관리 가능

■ 한약재도매상의 허가요건

- 한약도매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 허가
 -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관련 학과를 졸업한 관리자 의무고용
 - 자산기준 2억원 이상
 - 영업소 33㎡ 이상, 창고 66㎡ 이상 등 총 99㎡ 이상의 면적기준

나. 한약재 관련 공급체계

■ 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공급체계의 지나친 규제로 복잡·혼란

- 한약 제조업소(174개소, 지방식약청 허가)
 - 규격화 대상 514개 중 69개 품목(국산 한약재 제외)을 독점적으로 제조·판매
- 한약도매상 (820개, 시·도지사 허가)
 - 규격화 대상 514개 품목(제조품목 69종 중 수입한약재 제외) 모두를 자가규격화하여 판매
 - ※ 국산 한약재, 도매상의 자가규격 허용 등으로 제조업소의 가동률 저하
- 생약 가공공장(170여개, 농림부 지원사업 대상업체)
 - 제조시설 등은 한약제조업소와 유사하나 실험실, 약사고용 등의 부담으로 제조업 허가를 못 받고 수집상 및 한약도매상 등에게만 판매
 - ※ 소비자(한약사, 한방병원)에게 직접 납품시보다 15% 소득 감소
- 생산농민 자가규격 : 예외적으로 허용은 하고 있으나 책임 소재 문제로 한약취급업소에 직접공급이 사실상 제한

다. 문제점

- 규격화에 대한 농민의 반발 및 부가가치 창출 기회 상실
 - 의약품도매상, 약국 개설자 및 한약업사는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의 진열을 금지하고 있으나, 상당부분이 비규격품 상태(마대 등)로 다수 거래(규격품 유통은 10~15%에 불과)
 - 농민들이 자체 생산·포장한 국산 한약재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구입한 자가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판로를 제한
- 관련 법규상 약사법 적용 한약재의 개념 혼란
 - 법규상 한약은 생약으로, 한약제제는 의약품으로, 한약재는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약재로 각기 규정하고 있으나 어느 단계에서부터 의약품으로 약사법 관리대상인지 불분명
 - 도매상 등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관할의 중복이 존재
 - 약사법상 한약재의 의약품 취급 근거 취약
 - 구기자, 당귀, 황기 등 상당수의 한약재는 식품공전에 의해 식품원료 사용이 허용되어 있으며, 현실적으로 많은 량이 식용으로 수입되고 있어 의약품 용도만으로 별도 관리되기 어려운 실정임
 - 의약품 용도가 아닌 한약재까지 일부 약사법을 적용하여 민원 야기
-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하는 품목지정상의 문제
 - 규격화 대상 514개 품목 중 69개 품목에 대해 한약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지정함으로써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특혜의혹이 있다는 주장 제기
 - 자율적으로 규격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445개 품목 중에도 중독이 우려되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조업소에서 제조해야 하는 품목(69개)의 선정이유 불분명
- 식품으로도 사용가능한 한약재의 관리상의 문제
 - 식품으로도 사용가능한 한약재의 경우 한약재로 수입시에는 수급조절제도에 의거 허가를 받아 통제되고 있으나, 식품으로는 수입 및 유통시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식품으로 수입한 후 이를 한약취급업소에서 한약재로 유통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규격품만을 공급토록 하는 규제가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려움
- 한약재 제조업소 진입상의 문제
 - 한약재를 단순 절단·포장하는 제조업소에 대해 의약품제조업에 해당하는 시설(100㎡ 이상)과 장비를 요구하고, 관리자(약사나 한의사 등) 고용과 실험실 설치를 의무화

- 농림부가 총 298억원의 예산으로 설치한 생약가공공장(174개소)은 실제 기능이나 규모, 시설에 있어서 규격품 제조업소와 비슷하지만, 여기서 생산한 한약재는 규격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판로 제한

※ 약사고용은 월 70만~80만원이 소요(대부분 면허대여 형태)

■ 한약도매상 진입상의 문제

- 포장된 규격한약재를 판매하는데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등의 고용의무와 자산기준 2억원 이상 및 영업소와 창고 등 면적기준(99㎡ 이상)을 설정함으로써 진입 애로

라. 개선방안

〈단기방안〉

■ 등록제조업소

- 현행 의약품제조업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제조업등록제로 전환
 - 작업소 등 면적기준 100㎡ 이상을 하향 조정 또는 폐지
 - 제조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기존의 약사, 한약사 외에 일정기간 약용작물(한약재)의 생산가공·유통 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등도 포함
 - 위탁시험을 할 수 있는 곳 중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외에도 시설을 갖춘 대학, 연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포함

※ 허가기준 완화로 생약가공공장, 한약재도매상이 등록업소로 쉽게 진입이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던 자가규격이 제도권으로 진입하여 관리가 용이해짐

- 의약품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품목신고를 통해 품목별로 관리기준을 보완
 - 등록제조업소에서는 규격화 대상 514개 품목 전체에 대해 제조하되, 독성우려가 있는 품목, 수치·법제가 필요한 품목은 별도의 품목신고 기준에 맞는 업소만 생산

※ 단, 등록제로의 전환은 약사법상의 양약제조업 허가제와 이원화 등의 문제가 있어 별도 한약 관련법 제정까지 허가기준은 등록제에 준하여 대폭 완화하되 허가제를 유지

■ 자가규격

-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 중 중독 우려가 없는 품목 중 농민이 규격기준에 맞추어 생산한 '자가규격품'을 규격품으로 전면 한약취급업소에 직접 유통가능토록 허용
 - 단, 자가규격품의 의약품으로서의 사후 관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품질관리 및 표시 의무준수 등을 의무화하는 관리시스템 구축

■ 한약재도매상

- 한약(재)도매상의 제조업 및 유통업 기능을 분리하여 유통질서 확립
 - 한약(재)도매상의 제조업소 미등록시 규격품제조를 전면 금지 시키고, 유통업무만 전담토록 함(단, 등록제조업소 겸업은 허용)
 - 유통업무만 할시에는 약사고용 폐지 및 자산규모와 영업소 등의 면적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유통도매상 기능으로 전환

〈장기방안〉

- 약사법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상 생약·한약, 한약제제·한약재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한약재의 유형을 구분하여 약사법 적용대상을 명확히 조정
 - 약사법 체계 속에 혼재하고 있는 한약재의 개념을 정립하여 별도 한약(재) 관련법을 제정
- 장기적으로는 국산 한약재의 경쟁력 제고 및 양질의 한약재 유통을 위해 등급화(성상·수분함량·물질함량 등)를 바탕으로 한 품질규격화제도의 도입
 - 단순한 포장규격화가 아닌 품질규격화로의 발전을 위해 한약재규격화 제도에 소비자(생산농민 포함)가 품질 우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 설정 및 품질표시 방안 강구

마.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개선방안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추진상황을 1999. 12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보건복지부)

3) 한약재 품질관리제도의 개선

수입한약재 품질검사제도 개선

가. 규제현황

- 수입의약품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98-95호) 제10조 제2항에 의해 한약재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시 식약청장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수협)장에게 품질검사를 받고 통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규정 제10조 제3항의 6에 의해 의약품제조업소에 서 당해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는 품질검사를 면제
- 동 규정 제10조 별표 1은 수입한약재 중 녹용과 우황은 식약청, 기타 한약재는 의수협과 기타 식약청에 등록한 한약재 검사기관(6개소)이 검사

- 그러나 검사실시란에 “식약청에서 검사하는 한약재 이외의 수입한약재에 있어서 관능검사는 원칙적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약재 감별위원이 행하고,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검사는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
-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 규정 제16~20조 및 제31조에 의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수입한약재 품질검사 및 표시 기재운영 규정을 제정, 수입한약재의 검사수수료를 징수 (기본료 7만원, 수입액 1달러당 10원)

나. 문제점

- 규격품제조업소는 시설과 인력 부족 등으로 자가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통관시 품질검사를 면제함으로써 불량한 약재 유통과 위생상 허점 노출
- 의약품수출입협회에 수입한약재에 대한 독점적 관능검사권 인정으로 경쟁제한(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제10조 별표 1)
- 의약품수출입협회가 수입한약재 품질검사 및 표시 기재운영 규정을 제정, 검사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1998. 8월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 규정 제16~20조를 삭제, 징수의 근거와 기준 상실

다. 개선방안

- 제조업소가 수입하는 한약재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
 - 제조업소에서 수입하는 한약재도 다른 경로를 통해 수입하는 한약재와 동일하게 품질검사를 하거나 혹은 자가품질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의약품수출입협회에 독점 위탁중인 수입한약재에 대한 관능검사권의 다양화 및 수수료 징수의 근거 마련
 - 수입 한약재에 대한 의수협 의 독점적 관능검사권 개정(관리규정 제10조 별표 1 개정)
- 중장기적으로 수입 한약재의 안전관리를 위해 이화학적 검사의 실효성 확보

한약재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제도 정비

가. 규제현황

- ‘약사법’ 상 한약재의 중금속, 잔류농약, 표백제의 허용기준

- 중금속 허용기준 : '생약 등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 고시)' 상 중금속은 총량기준으로 30ppm 이하
- 잔류농약 허용기준 :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 고시)' 상 유기염 소제 5종은 0.01~0.2ppm 이하
- 표백제 허용기준 :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1998. 10)' 중 유해물질 검사방법에 따라 표백제는 10ppm 이하

나. 문제점

- 총 중금속량을 품목과 이용부위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설정한 식약청의 고시는 과학적 근거가 약하며, 인체에 꼭 필요한 중금속도 있음을 감안할 때, 총 중금속 양보다 개별 중금속의 종류와 함유량에 대한 기준치 설정 필요
 - 대한약전에는 개별 중금속에 대한 시험기준치가 없음
- 국산 한약재에 대한 표백제 허용기준치는 법적 근거없이 운용되고 있으며, 수입한약재에 대한 표준허용치(10ppm)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이 기준을 적용할시 한약재에는 전혀 표백제를 사용할 수 없음
 - 중국과 일본은 한약재에 대한 유헥훈증 또는 유헥표백을 허용, 미국 FDA는 건조과실류에 표백제 사용 허가
 - 우리나라의 경우 건조 과실류는 2,000ppm 이하, 기타 식품은 30ppm 이하를 사용하도록 허용

다. 개선방안

- 한약재 기원별로 중금속과 표백제 허용치의 차별화 및 식품의 중금속 허용기준치와 비교하여 한약재 특성에 맞는 개별 허용 적정치 설정
 - 한약재의 품목과 이용 부위별(뿌리, 잎, 줄기, 열매) 기준이 차별 적용되어야 하며, 또한 한약재는 고온에서 4~5시간 가열하여 복용하기 때문에 임상실험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치 설정
 - 수입약재의 시장점유율이 60~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입약재부터 품질검증체계 확립
- 한약재 품질관리는 재배·생산과정부터 관리되어야 하므로 일관성있게 지도·관리할 독립기구를 만들든지, 생산단계에서는 농림부와 농진청이, 의약품단계에서는 식약청이

각각 품질관리를 위한 상호 협조체제 구축

- 한약재의 수거검사는 농가생산단계의 한약재, 건조한약재, 시중 유통한약재 등에 대한 단계별 검사를 통해 유해물질의 오염경로 추적 필요

· 기업의 준조세관련 규제개혁

* 집필자 : 이상희 사무관(Tel. 3703-2159)

1. 준조세 현황

1) 준조세의 의의

- 기업입장에서는 준조세를 “기업의 생산활동에 수반되는 직접적인 생산비용 및 조세를 제외한 모든 경제적 부담”으로 이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특별부담금, 행정요금, 행정제재금, 분담금, 사회보험료는 물론 기부금, 성금 등을 포함
- 조세연구원에서는 “행정주체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담 중 사용자로서의 반대급부가 명백히 반영되는 경우와 사회비용 유발에 따르는 교정책임의 결과 및 사회질서 위반에 따르는 경제적 제재의 결과를 제외한 것”으로 정의
 - 기업에서 이해하는 준조세의 범위에서 일부 특별부담금과 행정제재금 등을 제외

2) 준조세의 규모(한국조세연구원 추정)

가. 부담금 등의 규모

- 조세연구원에서 추정(1997년 기준)한 바에 따르면 최광의로는 10조 3,031억원, 광의로는 10조 1,719억원, 협의로는 8조 954억원임
 - ※ 최광의 : 명백한 법적 규정이 없더라도 관례상 강제적인 것으로 인지되는 것을 모두 포함
 - 광의 : 명백한 법적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각종 부담
 - 협의 : 명백한 법적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각종 부담으로서 사업자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이득에 대한 보상이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닐 것

- 협의의 준조세를 분야별로 분류하면 고용분야가 73.1%, 통상·산업분야가 25.3%로서 이들 두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고용분야의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의 4대보험이 4조 1,351억원(손금 산입분 차감)에 이르고 있음

분야별 준조세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내 용	규 모	
		손금 산입 전	손금 산입 후
고용 분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직업훈련 촉진기금 등	60,050(73.1)	43,236(73.0)
통상산업 분야	축산발전기금, 산업기반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등	20,749(25.3)	14,991(25.3)
개발 분야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립비 등	- (-)	- (-)
교통 분야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교통안전기금, 교통유발 부담금 등	1(0)	1(0)
환경 분야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폐기물예치금, 과밀부담금 등	2(0)	2(0)
기타 분야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대한적십자사회비 등	152(0.2)	109(0.2)
기부금	각종 성금, 기부금	1,186(1.4)	895(1.5)
합 계		82,140(100)	59,234(100)

나. 기부금의 규모

- 1997년 기준 법정기부금이 1조 3,146억원, 지정기부금이 5,638억원에 달함
- 이중 비자발적 성격의 기부금으로 준조세에 해당하는 것은 법정기부금 중 1,039억원
과 지정기부금 147억원으로 추정

2. 준조세의 문제점

1) 부과 및 징수의 투명성 결여

■ 부과·징수의 투명성 결여

- 부과기준·절차의 불합리·형평성 결여, 유사목적 부담금의 중복부과 등
 - ※ 조세의 경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5조)고 규정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등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집행의 투명성 결여

- 대부분의 징수자금이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유입되는데, 기금의 경우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약하고, 특히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아니함

예산과 기금의 통제방법 비교

구 분	예 산	기 금	
		공공기금	기타 기금
편 성	국회 심의·의결	대통령 승인, 국회 보고	주무 장관 승인
계획변경	추경예산 편성	1/2 이상 변경시 대통령 승인	자율(주무 장관)
사후관리	국회의 결산승인	국회 제출	—

2) 징수 및 운용에 대한 심사·감독의 미흡

- 부담금 등의 부과·운용에 대한 심사기준이 없음. 그 결과 손쉬운 재원조달 수단으로 인식되어 각 행정기관이 선호하고 있고 통제되지 않는 재정분야를 양산

3) 기업의 부담과중 초래

- 기업의 부담과중으로 종국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외국인투자 유치에 위한 각종 시책의 효과를 반감시킴

3. 검토의 한계

1) 사회보험료

- 사회보험료는 사회보장세 대신 존재하는 것으로 부과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 다만 급여 및 재정의 통합관리 등 관리 운영상의 효율제고를 통한 기금의 낭비 방지책이 요구될 뿐임
- 한편, 1997. 10월 사회보장심의회 산하에 '4대보험 통합추진기획단'이 설치되어 부과 기준의 일원화 및 징수·자격관리의 통합, 급여 및 재정의 통합관리방안 및 관리운영의 통합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검토대상에서 제외

2) 각종 기부금

- 1995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제정으로 인해 기부금품의 모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행위는 대폭 감소(조세연구원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기부금 총액의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국민복지 및 사회통합에 적지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의 자발적 기부행위까지 인위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으므로 검토대상에서 제외

3) 각종 기금

- 기획예산처에서 현행 75개 기금을 55개(△20개)로 정비하고, 기금운용·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기타기금 13개를 공공기금으로 전환하는 등 조치를 기확정(1999. 6. 28일 국무회의 심의의결)함에 따라 검토대상에서 제외

4. 규제개혁 기본방향

- 부과기준, 대상 및 절차의 객관화·투명화
 - 부과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규정

-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경우는 예외
- 부과방법 등의 재검토
 - 유사 또는 중복부과되는 부담금 등의 통폐합
 - 징수목적과 용도간의 괴리가 큰 경우 조세로 전환
- 부담금 등의 집행내역 공개(소관 각 부처)
 - 기금백서 수록내용의 내실화
 - 각종 특별회계 및 기금의 집행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 공개
- 특별회계나 기금 신설 억제
 - 특별회계나 기금 신설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 아울러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통해 부처의 재원에 대한 재량권을 축소

5. 분야별 정비개혁방안

1) 에너지 및 자원관련 준조세 정비방안

가. 현황

- 준조세의 종류
 -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로 부터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을 부과(석유사업법 제18조 내지 제20조)
 - 부과기준
 - 수입부과금 : 석유 1.7U\$/배럴, LNG 5.58원/m³
 - 판매부과금 : 고급휘발유 90원/l, 등유 20원/l
-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등(LPG), 가스공사(LNG) 등으로부터 '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 2 및 제34조의 3)
 - 부과기준 : LPG는 4.5원/kg, LNG는 3.9원/m³
 - 준조세의 귀속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함)
 - 용도 : 석유가스산업, 석탄산업,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합리화, 가스안전관리 등

준조세 부과(조성)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96	1997	1998
석유의 수입 · 판매부과금	8,861	10,034	12,047
안전관리부담금	—	454	447

나. 문제점

■ 부과 투명성 결여

- 법률에 부담금 등의 부과근거, 부과주체, 부과대상만을 정한 후, 징수대상자 · 부과기준 · 징수방법 · 징수유예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석유사업법 제18조 제2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 2 제2항)
- 특히 석유의 수입 · 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 고시(석유의 수입 · 판매 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로 운영

■ 재원과 용도간의 괴리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자는 주로 석유 · 가스의 수입 · 판매자인 반면, 수혜자는 일반국민이나 석탄산업, 농어촌 등임
- 1998년의 경우 유가의 완충사업에는 석유관련 부과금의 극히 일부인 1천억원 정도가 계상된 데 불과
- 조세(휘발유 · 경유에는 교통세 · 교육세, 등유 · LNG · LPG에는 특별소비세 · 교육세)외에 상기 준조세가 존재함으로써 특정 에너지원에 이중, 삼중의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가중은 물론 에너지원 전반에 대한 효율적이고 형평에 맞는 과세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다. 개선방안

■ 부과기준 등의 객관화 · 투명화

- 유가안정은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교통세로 대응 가능하므로 부과기준 등을 법률 또는 시행령에 규정(“석유의 수입 · 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의 관련조항 폐지)

- 장기적으로 석유수입 · 판매부과금 및 안전관리부담금의 조세(가칭 에너지세) 전환 및 에특회계의 유지

- 전환시기 : 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교통세의 특소세 전환 등을 감안 2003년까지 시행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석유사업법 개정(1999. 1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2000. 6)

2) 수질개선부담금의 합리적 조정방안

가. 현황

-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과(먹는물관리법 제28조)
- 부과대상
 -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먹는샘물”
 - 샘물개발 허가를 받아 샘물을 원료로 제조·판매하는 제품 “청량음료·주류”
- 부과율·기준
 - 먹는샘물 : 평균 판매가액의 20/100
 - 청량음료·주류 : 제품판매가액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의 5/100
- 부담금 사용
 -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 20%는 징수비로 시·도에 교부, 징수비 제외 50%는 취수정이 위치한 시·군·구에 교부
 - 용도 : 수질관리시책, 수질검사 비용지원,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조사사업 등

나. 문제점

- 많은 국민이 먹는샘물을 마시고 있고, 청량음료와 일부 경쟁관계까지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간 수도물의 대체성을 이유로 “먹는샘물”에 대한 규제위주로 관련산업 발전이 왜곡
- 유통업체에 대한 무상지원 형식의 물량 탈루 등 유통질서 문란과 불량샘물 유통으로 국민건강 우려

※ 전체 물량의 40~50%가 부과금 탈루(샘물협회 자료)

■ 동일한 지하수 사용·개발에 대해 부담금 부과 형평성 결여

- 지하수 전체 개발의 0.04%를 차지하는 먹는샘물이 전체 부담금의 99.9% 이상을 부담
- 부과기준이 청량음료와 상이하고 부과율도 높아 불합리·형평성 시비
 - 청량음료는 샘물원가의 5%, 먹는샘물은 판매가의 20%

수질개선부담금 부과(1998년 기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판매량	부과액	비 고
먹는샘물	940천톤	17,347	톤당 18,447원
청량음료·주류	5,331천톤	5.3	톤당 2.4원
계	6,271천톤	17,352.3	

* 1톤 지하수 사용에 대한 부가, 청량음료 : 먹는샘물 = 1 : 7,686배

다. 개선방안

■ 납부증명(납부병마개)제도 도입

- 샘물의 물량탈루 및 불량샘물 유통을 방지

■ 부담금 조정

- 부과율을 현행 20%에서 7.5%로 조정
- 청량음료에 대한 부과기준이 되는 샘물원가에 정수비 등을 추가함으로써 원가 구성을 일부 현실화

라. 개선효과

- 무허가·불량 먹는샘물에 대한 지도단속이 용이해져 국민건강 보호 및 먹는샘물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
- 먹는샘물과 청량음료·주류간 부과금의 형평성 부분 완화

마.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먹는물관리법(납부증명제도 도입), 먹는샘물관리법 시행령(부가율) 개정
 - 2000년 1/4분기 이전 개정

. 양식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방안

* 집필자 : 윤순희 사무관(Tel. 3703-2182)

1.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현황 및 특징

가.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현황

- 우리나라 수산업에서 양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량 측면에서 총 3,244천톤 중 1,015천톤으로 약 31.3%이고, 생산액 측면에서는 총 48,182억원 중 9,218억원으로 약 19.1%이며 지속적으로 생산량 및 생산액이 증가하고 있음
 - ※ 특히, 최근 들어 한·중·일 어업협정의 체결에 따른 어획량 감소 및 연안의 환경오염 등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양식어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양식어업은 크게 어류, 패류, 해조류, 기타 수산동물 등으로 구분하며, 양식건수는 패류가 가장 많으며(총 8,232건 중 4,482건), 양식면적은 해조류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총 112,987ha 중 61,159ha)

나. 특징

- 바다의 특성상 개별양식장에서 질병발생 및 어장환경 오염시 인근 양식장에 상호영향을 주고 있음
- 그동안 생산력 증대에 치중한 결과 과잉생산 등에 따른 가격불안정으로 양식어민의 실질 소득이 감소함
- 양식어업의 확대에 따라 연안어업이 축소되는 등 타어업권과의 이해관계가 상충

2. 과제별 규제개혁 추진계획

1) 어장이용 개발계획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해양수산부 장관의 기본지침에 따라 시·도가 세부지침을 시달하고 시·도 및 시·군·구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하므로 절차가 너무 복잡

나. 개선방안

- 양식어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은 존치하고, 시·도 조정위원회의 심의절차는 폐지
- 일정한 경우에는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한 집행종료 후에도 시·도에서 부분적 사업 재조정이 가능토록 제도 마련

다. 기대효과

- 어업 면허절차의 간소화 및 사업 재조정제도 도입으로 어업인의 편의 도모

2) 양식어업권의 변경

가. 현황 및 문제점

- 양식어업권은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즉 어업권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이전, 분할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여 어업의 실패 또는 기타 환경변화로 어업권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법적인 어업권 변경이 불가능함

나. 개선방안

- 어업권 이전제한 기간을 종전에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 어업권의 공유지분 처분시 공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사항은 폐지하되, 공유지분 처분시 계약체결 전에 공유자에게 처분사실 및 계약내용을 통보하여 공유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대효과

- 어업권의 행사를 합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양식어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
- 공유자의 동의서 징구폐지로 재산권 행사의 자율성 보장

3) 어장의 수심

가. 현황 및 문제점

-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에 따라 양식가능한 수심을 지정
- 그러나 현행제도는 어장수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설방법, 양식방법 등 기술개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 양식에 대한 수요증가로 외연어장으로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어장의 수심제한으로 어장확대가 불가능한 실정임

나. 개선방안

- 양식 종류별로 규정되어 있는 어장 수심에 관한 규제를 해역별·양식방법별 실태에 맞도록 대폭 완화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던 기준을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대효과

- 새로운 어장에서의 양식기술 개발 효과
- 어장이 외연으로 확대됨에 따라 생산성 증대 및 양식어민의 소득 증대 예상

4) 양식어장 청소

가. 현황 및 문제점

- 양식 어업권자는 어업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당해 어장의 청소를 실시하여야 함
- 그러나 일률적으로 양식어장 청소주기를 3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양식물의 종류 및 양식 주기 등에 따른 합리적인 어장청소가 곤란하는 등 어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

나. 개선방안

- 일률적으로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어장청소 주기를 양식물의 종류 및 시설, 어장위치 등에 따라 3년 내지 5년의 범위 내에서 기초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대효과

- 어장청소 주기의 유연성 있는 적용으로 양식어민의 어장청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 및 불편 해소
- 어장청소의 실질적 실시로 인한 양식어업의 생산성 향상

5)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배수침전시설 규제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육상수조식 양식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사육시설 면적의 20% 이상의 침전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 2)
- 그러나 대부분의 양식장의 경우 해안선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여건상 추가시설에 대한 입지확보가 어려움
-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배출수는 사육수로서 수질오염이 적음

나. 개선방안

- 현행규정 적용시 침전조 시설확대 및 동등효율시설 설치에 따른 어민의 부담이 많으므로 거름망시설을 동등효율시설로 인정하여 어민부담 경감
※ 20% 침전조 비용 : 약 1억원, 스크린 비용 : 약 75백만원, 거름망 비용 : 약 2백만원
- 향후에는 수조식 육상양식장 등에 대한 환경규제 방법을 시설기준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전환토록 함

다. 기대효과

- 침전시설 설치부담 완화에 따른 양식어민의 경쟁력 제고

6) 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의 배출 규제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수산물의 단순가공시설의 경우 특정시설로 분류되어 방류수는 수질환경보전법상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그러나 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해안가에 인접하고 있어 주변지역에 수질

오염 영향이 적고, 처리기준도 구체성이 부족함

나. 개선방안

- 해안가에 인접한 일정규모 이하의 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의 경우에는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특정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기대효과

- 어민의 부담경감에 따른 양식어업의 경쟁력 향상

7) 국립공원 내 수산시설 건축규제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자연환경지구 내에서는 육상양식시설 및 종묘생산시설에 대하여 최소한의 시설만을 허용하고 있음
 - 육상양식 및 종묘생산시설 : 연면적 $1,200\text{m}^2$ (약 360평) 이하
 - 그 부대시설 : 연면적 100m^2 (약 30평) 이하
- 또한 관리사를 부대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부대시설의 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경영상 애로 발생

나. 개선방안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육상양식어업의 필수시설인 관리사에 대해서도 부대시설에 포함하여 시설가능토록 함
 - 다만 관리사의 시설기준 및 설치가능지역 등을 엄격하게 규정(예 : 시설규모 10m^2)하여 공원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함

다. 기대효과

- 관리사를 부대시설로 인정함으로써 어업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이에 따른 경영의 안정화 도모

3.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수산업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2000년 상반기)
- 지속적으로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어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과제발굴 추진

. 농산물의 가공 및 식품산업관련 규제개혁

* 집필자 : 류충렬 과장(Tel. 3703-2189)

1. 추진배경

- 농수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은 국민건강과 농가소득의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동안 지나친 규제로 인해 경영의 자율성이 낮고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
- 식품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획일적인 가공방법, 원료배합 기준, 원료사용 제한, 과도한 시설기준 등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생산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규제개혁위원회는 농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규제개선방안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의결(1998. 11)하고,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3개월)한 결과를 중심으로 규제개선(안) 작성
 -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농협중앙회 가공사업부 등 유관기관 의견 수렴

2. 주요 규제개선방안

1) 다양한 식품생산 저해규제개선

식품 등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대한 규제개선

가. 규제현황

- 국민보건 또는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식품위생법(식품공전), 축산물가공처리법(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주세법(주세사무처리규정), 인삼산업법 시행령, 농산물 검사규칙 등에 의해 식품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설정
 - 원칙적으로 기준과 규격이 고시된 식품만 제조·판매가 가능하며, 상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준과 규격을 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
- 법령에 의해 가공방법과 성분규격을 획일적으로 설정하여 경직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안전성 및 건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식품원료의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식품산업의 발전을 제약

나. 문제점

- 모든 식품에 대한 제조방법과 가공기준·원부자재의 종류·성분규격 등을 법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규정, 운용함으로써 다양한 가공식품의 개발이 저해되고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해
-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획일적으로 제품의 제조 및 가공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가공기술에 의한 다양한 신제품개발 제한
 - 예시
 - ① 들기름 등의 가공방법을 압착법으로만 규정, 다양한 제품생산 제한(식품공전)
 - 미국에서는 유지자원의 착유방법을 제한하지 않으며, 우리나라도 고추씨 기름은 압착방법과 용매를 이용한 추출방법을 모두 허용
 - ② 젓갈류 중 '액젓'은 '젓갈을 여과·분리한 액'으로 규정하여 코오지나 단백질 분해 효소 첨가 등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액젓생산 제한(식품공전)
 - ③ 알코올함량을 기준으로 주류의 규격(약주류 13도 이하, 청주류 14도 이상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류 제조방법을 신규설정 또는 변경시 관할 세무서의 허가를 받아야 함(주세법)
 - 1998년 주류관련 규제개선에서 제품별 규격제한을 폐지하기로 의결
 - ④ '인삼류제조기준(제15조 관련 별표2)'에 의하면 건조작업을 위해 직화식 연탄 사용을 금지하고, 본삼(홍삼·백삼·태극삼)의 수분함량을 14.0% 이하로 획일적으로 규정(인삼산업법 시행령)
 - ⑤ 정부미를 수매할 때 벼의 수분함량을 15% 이하로 획일적으로 규정(농산물검사규

격규칙)

- 식품의 원부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식품공전에 열거하고 그 밖의 품목은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원부재료로의 사용을 제한함

• 예시

① 조제유가공 기준에서 생(生) 산양유 및 산양유의 (조제유류)원료사용 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 산양유의 영양성분조성은 모유에 가까워 유아용 조제유로 적합하며, 뉴질랜드는 '산양유로 만든 조제유(Goat Milk Infant Formula)'를 대만으로 연간 약 1천톤 수출

② 옷땀, 유황오리 등과 같은 전통식품은 오랫동안 식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의 식당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이지만 일부 소비자들에게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제품개발 자체를 금지(식품공전)

③ 두부제조시 '초당두부'에서 사용하는 방법인 바닷물 또는 간수사용 금지

④ 동충하초 중 *Paceilomyces Japonica* 품종만 인정하고 국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다른 품종(*Cordyceps Sinensis*, *Cordyceps Militaris*)에 대해서는 식품원료사용 금지(식품공전)

⑤ 버섯가공품의 원료로 상황버섯 등은 부작용이 보고된 예가 없음에도 식품원료 사용 금지(식품공전)

- 한약재의 식품원부재료 또는 첨가물로의 사용제한에 대해서는 '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관련 규제개선(제37회 규제개혁위원회, 1999. 8. 27)' 참조

- 경직적인 성분규격 및 원료성분배합기준의 설정으로 기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다양한 제품생산의 가능성을 제한(이하 예시)

① 설탕제조공법상 인공감미료가 검출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탕의 성분규격에 "인공감미료가 검출되면 안된다"고 규정, 인공감미료검출검사 실시(식품공전)

② 병조림 용기인 '병'은 통조림 용기인 '주석관'과는 달리 식품과의 접촉으로 부식될 우려가 없어 주석과 납이 검출될 수 없음에도 병조림 용기의 성분규격에 주석과 납 성분의 허용기준을 설정, 주석과 납 검출검사 실시(식품공전)

③ 식육가공품의 수분함량을 햄류는 72% 이하, 소시지류(육함량 중 10% 미만의 알류혼합 포함)는 70% 이하로 제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 원료육의 수분함량(71~78%)을 감안할 때 수분함량은 식품의 안전성과는 무관하

지만 이를 규제하여 다양한 제품생산 제한

④ 프레스햄 및 혼합프레스햄은 각기 육(肉) 함량 85% 및 75% 이상, 전분함량 5% 및 8%이하로 규정하여 육류와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가능성 제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⑤ 산양유의 성분규격은 “조지방 함량이 3.6% 이상”이라고 높게 규정하여 국내산 산양유는 조지방기준을 지킬 수 없음(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 산양의 품종별로 유지방 함량이 다른데 국내 사육중인 산양은 98% 이상이 유지방 함량이 낮은 자넨(Saanen)종임

※ 자넨종이 주종인 뉴질랜드는 유지방 함량을 3.2% 이상으로 규정

■ 새로운 규격이나 기준을 수용하기 위해 식품공전 등을 수시로 개정, 부분적으로 현실화해 주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변화의 내용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수용하는데 한계

- 식품의 규격과 기준의 변경 및 신설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기준 불투명
- 새로운 식품의 규격이나 기준을 설정하는데는 입안 예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의결, 고시를 거치는데 장기간이 소요

다. 외국의 사례

■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경우, 정부가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대해 사전적으로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자가 자기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제조하되 원료와 성분규격, 제조방법 등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하고 정부는 이에 근거하여 철저한 사후관리

- 식품원료는 사업자가 식용근거 등의 자료를 갖추어 FDA에 신청하고 75일 이내 회신이 없으면 자기 책임하에 제조·판매 가능

라. 개선방안

■ 식품의 제조 및 가공과정에 있어서 기술적인 방법에 관한 규제완화

- 제품류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 이 범위에 해당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되 중간단계의 제조·가공방법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삭제토록하여 새로운 제조기술의 도입이나 다양한 가공방법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
 - 특정한 품질의 식품을 만들기위해 제조기술까지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규제하고 나머지는 권장사항으로 전환

■ 식품원료 사용에 관한 규제개선

- 식품이나 축산물가공품의 원료사용인정기준을 국민들의 식관습에 맞게 정비하여 음식료품의 원·부자재 인정범위를 확대
 - 관습적으로 식품의 원·부자재로 사용해 온 동식물에 대해 가공식품 허용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사용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
 - 예) 옷닭, 유황오리, 초당두부(바닷물 사용), 동충하초, 상황버섯 등
- 장기적으로는 음식료품의 원부자재 중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열거(Positive System)' 하는 방식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식품위생이나 안전상 식품원료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원료의 종류를 열거(Negative System)' 하는 방식으로 전환
 - 제조물책임법 도입 등 보완제도 도입병행
 - ※ 미국에서는 어느 민족이 오랫동안 섭취해온 동식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식품자원으로 간주하여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 식품의 성분규격 등과 관련한 규제 정비

- 소비자들의 기호와 소비패턴, 기술진보 등 식품산업을 둘러싼 여건변화에 맞추어 성분규격과 원료의 성분배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성분기준은 식품의 품질관리 및 국민의 보건증진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 축소하고, 원료배합기준은 완화하거나 제조업자의 책임과 자율에 맡기되 그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여 리콜제 도입 등 엄격한 사후관리(자가규격에 의한 품질관리) 확대
 - 식품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분별 최소기준을 완화하고, 식품의 품목분류를 세분화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식품개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변경 또는 신설시 절차의 방법 객관화

- 기술개발 및 새로운 식품자재의 이용 등으로 식품공전 등에 규정한 기준·규격에 변경 또는 신설이 필요한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을 제도화하고 투명화 하여 민원인들의 불편·불만 해소
 - 민원인들의 신청에 의해 수시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변경 또는 신설할 수 있는 탄력적인 시스템 도입

식품 제조형태 관련 규제개선

가. 규제현황

- 식품의 제조방법에서 특수영양식품 · 건강보조식품 · 인삼제품류만 캡슐 또는 정제 형태의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
 - 정제 형태의 제품으로서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는 정도로 제조한 과자류는 제외 (‘식품공전’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제도가공 기준)
- 초콜릿제품, 비타민 C, 껌 등 과자류는 구형 및 타원형을 허용하고, 1998년부터 환(丸) 형태의 식품제조 허용으로 인진쑥환, 누에가루환 등 다양한 새로운 상품이 출현

나. 문제점

- 일반식품은 캡슐 또는 정제형태의 제품으로 제조하지 못하게 가공형태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형태의 식품개발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저해
 - 식용하기에는 맛이 없거나 음용이 불편한 식품(예: 한약재추출물, 천연비타민 등) 경우 이를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정제나 캡슐형태로 제조할 수 없음
- 정제나 캡슐형태의 식품제조를 금지하는 사유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함
 - 의약품과 혼동 오인할 소지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다면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등도 정제나 캡슐형태의 제조를 허용해서는 안되나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과자류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형평성의 문제)
 - 정제 또는 캡슐형태의 식품제조를 금지하는 것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식품위생법의 목적과 괴리
- 세계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정제나 캡슐형태로 식품(예: 천연비타민, 칼슘, DHEA 등)을 복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를 제한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식품생산이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 식품산업의 경쟁력 약화
 - WTO체제하에서 관련제품 거래시 무역분쟁 초래 우려

다. 외국의 사례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등에서도 구형(丸) 및 캡슐형태의 식품을 광범위하게 허용
 - 미국에서는 정제나 캡슐형태로된 허브(한약재)추출물, 천연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기타 식물류(마늘, 인삼, 차전자 등) 등을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 제제형태를 제한없이 자유롭게 허용

라. 개선방안

- 당분간 일반식품에 대해서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건강보조식품·특수용도 식품·인삼제품의 품목을 다양화하여 캡슐 또는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 식품의 허용범위 확대
- 장기적으로는 캡슐 또는 정제 형태의 식품제조를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의약품과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표시의무 강화
 - 캡슐 또는 정제형태의 식품은 이것이 '식품'이라고 하는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의약품과 혼동의 소지를 최소화

건강보조식품 관련 규제개선

가. 규제현황

- '건강보조식품'이란 "건강보조의 목적으로 특정성분을 원료로 하거나 식품원료에 들어 있는 특정성분을 추출·농축·정제·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식품공전' 제4)"을 말함
 - 1990년 9월 건강보조식품의 적용범위 및 성분규격 결정
 - 1992년 2월 건강보조식품 사전제품 검사제도 실시
 - 1996년 12월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광고사전심의제 도입
-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식품공전'에 기준 및 규격 설정 : 정의, 원료의 구비조건, 제조가공기준, 주원료의 성분배합기준, 성분규격, 보존 및 유통기준, 시험방법
 - 1998년말 현재 25개 종류의 건강보조식품을 인정하고 있는데, 시장규모는 1996년 1조 1천 235억원에서 1998년에는 6천 218억원으로 감소
- 식품공전에 수재된 건강보조식품만 영업이 가능한데 수재절차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나. 문제점

- 건강보조식품의 정의 및 품목에 대한 기준과 규격이 불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 건강보

조식품의 지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보조식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혼란

- 정부가 지정·관리하는 '건강보조식품' 외에 수 많은 '건강식품유사품' 이 불법유통되고 있는가 하면, 소비자들이 유용성을 믿고 있는 천연비타민·한약제 등은 '건강보조식품'으로 개발이 제한
- 전문성이 필요한 '건강보조식품'의 품목신고 및 사후관리 업무를 일반식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함으로써 과학적 관리 미흡
- 새로운 소재를 이용하여 제조한 건강보조식품을 식품공전에 수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투명성 부족
- 건강보조식품으로 식품공전에 수재하기 위한 절차 및 구비자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모호하게 규정(구체성 결여)
- 건강보조식품은 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과 함께 유용성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표시의 내용과 범위가 불분명
- 표시가 허용된 '유용성'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고, 식품의 종류와 특정성분의 유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기준이 없어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하는 등 과대광고 부작용 심각

다. 외국의 사례

- 일본과 미국 등이 우리 나라의 건강보조식품과 유사한 정책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건강보조식품의 개념과 허가요건, 유용성 표시의 범위와 방법 등이 구체화되어 있음
- 미국의 건강보조식품(Dietary Supplement) : 천연비타민, 미네랄, 약용식물(herbs), 기타 식물류(인삼, 마늘, 질경이 등), 아미노산, 또는 이러한 성분들의 복합물을 하나 또는 그 이상 함유하고 건강을 보조하는 식품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 일본의 영양보조식품 : 보건건강 유지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 중 통상의 식품과는 다른 분말, 과립, 정제, 캡슐형태 식품
- ※ 일본은 당초 47개 품목을 지정하였으나 규제완화와 미국의 통상압력 등으로 그동안 의약품으로 사용되던 비타민, 허브, 미네랄 등을 건강식품으로 추가(1997년 3월 : 비타민류 7개 품목, 1998년 3월 : 허브류 7개 품목, 1999년 3월 : 미네랄류 3개 품목)

라. 개선방안

-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과 과학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아울러 다양한 새로운 건강보조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건강보조식품의 인정요건 완화
 - 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지정신청 및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단축
- 천연비타민 · 식용가능한 한약재를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확대지정
- 새로운 소재를 이용한 건강보조식품을 ‘식품공전’에 등재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투명화
 - 구비요건, 제출서류, 심의기간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건강보조식품을 허가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문란하게 유통되는 건강식품을 제도권에서 흡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제품의 종류와 특정성분의 유용성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기준 또는 유용성 표시를 위한 지침 제정
 - 허위 · 과대광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련업계의 자율적인 관리시스템 정착 유도
- 현재 일반식품과 같이 취급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용도 식품을 분리하여 추진 체계와 관련제도의 종합적인 정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식품 인 · 허가(신고)에 포함되어 있는 건강보조식품의 인정 및 품목 제조신고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식약청 등)에서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장기적으로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을 별도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획일적인 자가검사항목 설정관련 규제개선

가. 규제현황

- 식품위생법(식품공전)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대해 자가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나. 문제점

- 식품유형별로 타르와 보존료, 산화방지제 등 검사항목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개별식품의 경우 타르와 보존료, 산화방지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자가검사이시 이 항목에 대한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인력 및 시간낭비

예) 유가공품 중 버터류에 대한 자가검사시 사용하지도 않는 “산화방지제와 보존료에 대한 시험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

다. 개선방안

- 개별식품별로 자가검사항목을 재검토, 불필요한 검사항목을 삭제하도록 개선

예) 산화방지제와 보존료, 타르 등을 첨가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자가검사 항목에서 이에 대한 검사의무 면제

식품 포장재의 잔류용 재검사 관련 규제개선

가. 규제현황

- 식품포장재 잔류용제에 관한 규격기준(한국식품공업협회 규격기준 제1호)에 의하면 식품포장재에 대한 잔류용제 검사는 월 1회 자가검사를 받고, 연 1회 식품위생기관의 공인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나. 문제점

-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잔류용제에 대한 공인검사가 이루어진 포장재를 구입, 사용하는 업체도 연 1회 이상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잔류용제 검사가 중복될 소지가 있음
- 한국식품공업협회가 고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회원업체의 영업활동을 제한

다. 개선방안

-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잔류용제에 대한 공인검사가 이루어진 포장재의 경우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포장재 사용업체의 공인검사 면제
 - 현행 자가검사로 포장재 사용업체에 대한 공인검사 대체
 - ※ 실제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식품포장재 제조업체의 잔류용제에 대한 공인검사이험성적서를 첨부하면 이를 근거로 연 1회 의무화되어 있는 식품포장재 사용업체의 공인검사를 면제해주고 있음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자체검사업체의 품질관리기준 정비

가. 규제현황

- 인삼류 제조에 있어서 제조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풍토를 조성하고 검사에 수반하는 기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구비한 업체를 지정하여 자체검사를 할 수 있게 허용

나. 문제점

- 수확 후 11월~이듬해 1월까지 연중 가동률이 20~30%에 불과한 인삼류 제조업체에 게 다른 용도로 제조장 사용을 제한하거나, 원료 및 완제품을 분리·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투자 유발
 - 화학적 성분변화없이 수삼을 찌거나 삶아서 건조하는 단순가공품 제조업체에게 별도의 품질관리부서를 두고 다른 업무와 겸직을 못하도록 규정

다. 개선방안

- 품질관리부서의 책임자는 다른 업무의 겸직을 금하거나, 인삼제조장의 타용도 사용금지 등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규제내용 정비

획일적 유통기한 설정관련 규제개선

가. 규제현황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우유류의 보존 및 유통기준)상 살균우유의 유통기간을 냉장(0~10°C) 5일로 규정하고 있음

나. 문제점

- 원유의 품질 및 가공기술이 낙농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나 유통기간에 있어서는 과거의 기준에서 변화가 없음
 - 우유류를 제외한 유제품의 유통기간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회사마다 원유의 품질·가공방법·포장재질·보존조건 등에 따라 유통기간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기간을 설정, 경영의 자율성 제한

- 식품공전의 경우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공통규격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는 식품별로 유통기한을 규정함으로써 형평성 문제 야기

다. 개선방안

- 제품의 품질 및 유통실정에 맞게 업체별로 유통기한 설정
 - 제조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유통기한에 표시를 의무화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후 관리체제 확립

2) 농수산물 가공 및 식품업체 시설기준 관련 규제개선

가. 규제현황

- 식품으로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제조업체가 구비해야 할 건축물의 위치와 구조,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창고 등, 검사실, 식품의 특성별 필요시설 등 시설기준을 사전적으로 설정, 영업허가조건으로 의무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해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설정
- 식품위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적거나 영세업체들이 갖추기 어려운 시설, 혹은 지역여건과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시설 등을 획일적으로 정하여 사업참여를 제한

나. 문제점

- 영세업체들이 갖추기 어렵거나 지역여건과 맞지 않는 독립건물, 자동화설비, 검사실 등 과도한 시설의 설치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하여 농산물가공사업 및 식품산업 참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참여 업체에게 과도한 부담 부과

예) ① 메주나 한과 등 전통식품 제조시에도 독립건물이 있어야 허가

② 감식초 등 단순발효식품을 만들 때도 검사실 설치

③ 식육가공품과 유가공품, 재래식 두부 제조시 자동화시설 의무화

④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농촌에서도 수세식화장실, 선상수산물가공업의 경우 남녀용으로 구분된 구조의 화장실 설치 의무화
- 식품제조업체가 갖추어야 할 시설내역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한

예) 도축장, 검사실험실, 탈의실의 시설내역을 지나치게 자세히 열거하거나 수산물가공업의 업종별기준상 어유·한천가공업의 경우 삶는 솥의 수를 3~4개씩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타 식품위생 및 안전성과 직결되지 않고 지키기도 어려운 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기업체의 부담을 가중

예) 도축장 시설 중 휴게실·식당·사무실, 검사실험실의 검사원실에 서류보관함·옷장·신발장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축장의 부지면적, 작업장의 밝기·실내온도·온수설비 등 규제

※ '식품위생법' 상 작업장 밝기에 관한 의무규정은 1998년 규제개혁시 삭제

- 검사실을 갖추기 어려운 업체의 경우 식품위생검사기관과 위탁계약에 의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검사기관의 수가 제한되어 검사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고 접근도가 낮음

• 법에서 정한 식품위생기관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검사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위생연구소, 인삼연초연구원(3개소) 등이 지정되어 있음

- 농어민들이 운영하는 단순가공품 생산업체와 같이 일반적인 시설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두고 있으나 적용대상의 범위가 모호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음

① 농림어업인 또는 농어민생산자단체가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경우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영업허가를 면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해주고 있으나 대상 불분명

② 건과류·껌류·맥아엿·절임식품·김치·건포투·면류·조미식품·도시락 제조, 단순절단포장육, 단순가공품 등은 검사실 설치의무(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별표 9)를 면제하고 있으나 여타 업체와 마찬가지로 위탁검사를 받아야 함

③ 농업인 등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업체의 시설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시설기준적용특례제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부족,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인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다. 외국의 사례

-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원칙적으로 시설은 제조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제조회사가 지도록 하고, 표시내용을 근거로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사후관리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점검과 경험위주의 위생관리방식에서 탈피하여 HACCP제도와 같이 제조업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사전 예방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임

라. 개선방안

- 식품위생법(식품공전포함), 축산물가공처리법(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포함), 수산업법 등 식품관련법의 시설기준 중에서 식품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규제는 삭제 또는 완화
 - 식품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제 예시
 - 채래식 두부제조업의 자동화시설 설치의무 → 삭제
 - 식육가공품과 유가공품제조업의 자동화시설설치,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 공장의 밝기 규정과 수세식 화장실 설치 → 예외조항 신설
 - 도축장의 부지면적(집유업의 검사실 면적 포함)과 휴게실 · 식당 · 사무실의 설치, 시설별 면적기준 → 권장시설로 전환
 - 수산물가공업 허가기준 중 남 · 녀용으로 구분된 화장실 설치 의무 및 업종별 시설기준의 삶는 술의 수에 관한 규제 → 권장시설로 전환
-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공인검사기관의 확대
 - 시설 ·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전문연구기관과 국립대학교 등 검사기관의 확대 지정
- 농업인들이 국내산 농 ·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 · 가공하는 경우 등 영업허가와 검사실 설치의무 면제대상자를 구체화하고, 전통식품제조업 등에 확대 · 적용
 - 시설기준 적용 특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협의하여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제정,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 표준조례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 예시
 - ① 가내에서 이루어져 왔던 전통식품이나 농어민들에 의한 단순가공품 제조시 독립된 건물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 및 검사실 설치의무 완화

② 복합가공을 하는 농산물제조업체의 경우, 업종별 시설기준을 주생산물목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비수기에 부분적으로 다른 품목을 생산할 때는 별도의 시설기준 적용 완화

③ 제3자의 가공시설을 임차한 위탁제조의 허용방안 등

3) 식품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규제개선

가. 규제현황

-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일반 식품(식품위생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축산물가공품(축산물가공처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을 대상으로 각각 규정
- 식품 등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금지하는 주요 내용에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실과 다른 내용, 소비자를 오인케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두 법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 다만,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에 대해서는 유용성과 용도에 대한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 3)
 -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건강보조식품) 및 한국식품공업협회(특수영양식품)가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 식품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지나친 규제 때문에 식품이 가진 유용성과 용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워서 시장개척과 판매촉진 제한

나. 문제점

- 식품에 대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개념과 적용범위가 불합리
 - 식품영양학 교과서나 학술연구 결과, 한의학 고전 등에 효능이 명기된 동식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음식료품에 대해 원전을 인용하여 효능을 표시하는 것도 허위표시·과대광고로 간주
 - 제품의 유용성이나 용도를 표시할 수 있는 품목을 건강보조식품·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로 한정하여 소비자들에게 정보제공이란 점에서 일반식품과 형평성문제 야기
예) 해당식품이 가진 특성과 관계없이 '삼계탕'은 '인삼제품'으로 분류되어 유용성을 표시할 수 있으나, 그밖에 닭고기를 원료로 만든 '닭곰탕'이나 '황기백숙' 등은 유

용성 표시 불가

- 제품이 동일한 성질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또는 식품으로 분류 하기에 따라 표기내용 및 범위가 상이

예) 비타민 C를 의약품으로 허가받으면 기미와 주근깨에 유효하다고 선전할 수 있으나, 식품으로 허가받으면 효능표기 불가

- 제품의 유용성에 대한 표시나 광고를 허용한 품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표현의 기준이 없어 과학적 근거나 의미가 없는 모호한 표현이 남발되고 있음
 - ‘유용성’이란 표현 속에 특정영양성분을 강조한 개념과 건강관련 기능성을 강조한 개념이 혼재되어 있으며, 과학적으로 입증이 곤란한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
 - 유용성을 표기할 수 있는 내용이나 그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식품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미흡

다. 외국의 사례

■ 국제식품규격(Codex)위원회

- 1998년 영양소 기능강조표시(nutrient function claim) 승인
- 현재 건강강조표시를 허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중

■ 미국

- ‘영양표시와 교육법령(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 NLEA), 1990년’ 제정 : FDA에 의해 과학적으로 특정질병과의 연관성이 입증된 성분이 포함된 식품에 대하여 건강강조표시 허용

예) 칼슘과 골다공증, 엽산과 신경관 결함, 통귀리/차전자(절경이)의 가용성 섬유와 관상동맥심장질환, 당 알콜과 충치, 식이지방과 암, 식이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과 관상동맥심장질환, 섬유(특히 가용성 섬유)를 함유하는 곡류제품, 과일 및 야채와 암, 나트륨과 고혈압

- ‘식사보조제 · 건강 및 교육법(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DSHEA), 1994년’ 제정 : 식사보조제에 대한 영양지지 서술(statements of nutritional support)을 전면적으로 허용

■ 일본

- 1991년 특정보건용식품제도가 확립, 영양개선법에 의해 특정보건용식품에 대해 유용성 표시 허용

- 표시내용 : 상품명, 품질 보존기한, 보존의 방법, 제조소의 소재지 및 제조자의 성명, 허가증표, 허가를 받은 표시의 내용, 허가를 받은 이유, 성분 분석표 및 열량, 원재료의 명칭, 내용량, 섭취량, 섭취에 따른 주의사항 등

■ 중국

- 1996년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해 건강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 허가기준과 허가과정, 표시규정, 시험방법 등에 관해 규정

라. 개선방안

- 원칙적으로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영양은 물론 건강과 관련한 제품의 유용성 등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식품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사실이 입증된 성분에 대한 특수영양 및 건강기능과 관련한 유용성 표시(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포함) 적극 허용
 - 공신력있는 외국기관이나 국제기구 등에서 허가를 받았거나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식품의 유용성(건강기능 및 영양효과)표시 인정
- 식품의 유용성에 대한 표시내용의 범위와 표시방법을 구체화하여 식품에 대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관리
 -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식품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4) 인삼제품의 재분류 및 관리체계 정비

가. 문제점

- 인삼은 크게 수삼과 이를 원형 그대로 건조한 원형삼, 그리고 수삼이나 원형삼·미삼 등을 2차 가공한 인삼제품으로 구분
 - ‘인삼산업법’ 상 ‘인삼류’를 수삼, 홍삼, 백삼, 태극삼으로 한정하고, ‘인삼제품’은 ‘인삼류’에서 제외하여 식품위생법으로 관리
- 1995년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인삼산업법을 제정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인삼관련 행정업무를 농림부로 이관
 - 농림부는 ‘인삼제품’을 제외한 인삼의 경작, 제조, 검사 및 수출입 등을 종합적으로 지

원 · 관리하고 있음

나. 문제점

- 일반적으로 '인삼가공'이란 인삼의 몸통을 홍삼이나 백삼 등 원형삼으로 제조하고, 미삼 등 부산물을 이용하여 '인삼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영업의 인·허가 및 제품검사 등 관리과정에서 동일업체에 대해 중복관리하여 기업부담 가중
- '인삼산업법' 상 '인삼류'의 개념에서 인삼제품을 제외하고 있어서 특별법 제정의 목적인 인삼산업의 종합적 발전에 한계
 - 다양한 인삼제품의 생산은 물론 생산에서 가공, 유통의 전 과정에 있어서 체계적인 위생 및 품질관리 곤란

다. 개선방안

- '인삼산업법' 상 인삼류 제조업허가를 받은 업체가 인삼을 주원료로 하는 '인삼제품(인삼분말, 인삼농축액, 당침인삼 등)'을 제조할 경우,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인삼산업법' 상의 영업 및 품목신고와 품질관리로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품목신고 및 품질관리를 갈음하도록 함
 - 외국산 인삼분말이나 엑기스를 수입해서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및 유통과정의 인삼제품에 대한 위생관리는 식품위생법체계를 적용하여 현행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행

3.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관계부처(보건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식약청)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 해당부처와 규제개혁방안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장기과제 및 시행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양해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 2000.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 음식료품의 원부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사용해서 안되는 물질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에 대한 캡슐 및 정제형태의 제품허용(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 유용성표시 허용범위 및 방법(보건복지부 · 농림부)

관련부처별 정비가 필요한 법령

관계부처	관 련 법 령
농 립 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시설기준, 표시 및 광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제도,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유통기간) 인삼산업법(인삼류의 정의 등) 인삼산업법 시행령(자체검사업체 품질기준, 인삼류 제조기준) 농산물검사규격 규칙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법 시행령(영업허가 면제, 시설기준적용특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설기준, 표시 및 광고) 식품공전(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식품제조형태, 건강보조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시지침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시행령(수산물가공업 허가기준)
기 타	한국식품공업협회 규격기준

.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의 개선방안

* 집필자 : 이용의 사무관(Tel. 3703-2159)

1. 검토배경

- IMF체제 이후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오히려 국내기업이 반사적 불이익으로서의 역차별을 받게 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에 비하여 경쟁여건이 불리해지는 상황까지도 발생하게 되었음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에는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행정지원 등 일반적인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인허가 등 각종 규제를 완화 내지 배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 아울러 각종 규제 법령 가운데 외국기업 내지 외국인투자기업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국내기업만 역차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것이 적지 않은 실정임
 - 순수하게 국내기업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제법령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문제화된 바 없고
 - ‘사실상’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함
 - ‘(대규모)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가 대표적인 사례임(대기업에 대한 규제에는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도 대상에 포함되므로 역차별의 소지가 없음)
- 무역자유화,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의 대폭 축소, 자본시장 개방 및 적대적 M & A 허용, 외국인의 토지소유 허용 등 경제의 급속한 개방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국내기업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
- 이에 따라 이제는 역으로 국내기업이 법령과 제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됨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개념 정의

- 여기에서 국내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였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구분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법인		외국인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법인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법인	외국국적을 가진 개인
비고		국내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용어정의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 대한민국 법인 :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외국인 :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법인) 및 대통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
- 외국투자자 : 이 법에 의하여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 외국인투자
 -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대통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시행령 제2조 ②

- 외국인투자
 1.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2.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 서합작투자계약서 기타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

시행령 제2조 ③

- 대통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1.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2.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
 - 가.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나. 해외모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2.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현황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역차별적 지원제도

(▲는 외국인투자지역 내 기업에만 해당)

구 분	지 원 내 용
규제완화	•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따른 지원 ① 국공유재산 매각 · 임대시 수의계약의 허용 ②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50년까지 연장 ③ 국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 허용 ④ 국공유재산 임대료 외화표시 허용 ⑤ 국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 개별적 규제의 완화 ▲⑥ 외국인투자지역내 토지의 분할 허용 ▲⑦ 무역(대리)업 신고의 면제 및 수출입 제한 완화 ▲⑧ 취업보호대상자 고용의무의 면제 ▲⑨ 중소기업 고유업종 허용 및 지정계열화품목의 제조위탁의무 면제 •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적용 ⑩ 각종 인허가의 일괄의제처리 ⑪ 요건미비시 보완조건부 인허가 ⑫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명시된 민원사무 이외의 민원사무 적용배제
민원사무처리의 간소화 및 편의 제공	① 외국인투자지원센터 파견관에 의한 민원사무 직접처리 ② 민원신청서류 작성 · 제출의 대행 ③ 민원신청서류의 간편 · 신속처리
행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②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③ 시 · 도의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 · 운영
직접적 인센티브	① 조세감면 (법인세 · 소득세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 종합토지세 등) ②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③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④ 농지전용부담금 및 산지전용부담금 감면 ▲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간접적 인센티브	▲①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비용 및 기반시설의 지원 ▲② 외국인투자지역의 의료시설 · 교육시설 · 주택 등의 지원

2) 기업집단에 대한 차별적 규제

구 분	지 원 내 용
투자, 자금조달 등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	① 투자(출자)에 대한 규제(공정거래법) ②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의 금지(공정거래법) ③ 기업집단의 부채비율 규제(법령근거 없음) ④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주식회사외부감사법) ⑤ 기업집단에 대한 여신의 제한(은행법 등)
특정산업 진입에 대한 규제	① 은행업(은행법) ②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법) ③ 보험업(보험업법) ④ 공중파방송업(방송법) ⑤ 유선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 ⑥ 신문발행업 및 통신사(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⑦ 축산업(축산법) ⑧ 수산업(수산업법) ⑨ 민자역사(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장입지에 대한 차별적 규제	기업집단의 수도권 내 공장이전 제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세제상의 차별적 기준 적용	① 지급리자 손금불산입(법인세법) ②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법인세 부과(법인세법) ③ 고가양수·저가양도 기준의 적용 배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④ 영세율 적용의 배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기타 차별적 대우	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 별도 제정·운영 등

3. 개선방안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제도의 국내기업 적용

가. 기본방향

-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내기업은 규제하면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만 허용하는 제도는 가급적 지양하고, 외자도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있을 때에는 국내기업에 대한 규제도 동시에 풀도록 함
- 조세나 부담금의 감면, 보조금 지급과 같이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로서의 지원제도는 외자유치의 효과와 국내기업과의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그 수준을 결정토록 함
- 행정서비스 차원의 민원사무처리절차 간소화는 비록 규제는 아닐지라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행정개선 차원에서 일반행정조직 및 절차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토록 함

나. 유형별 국내기업 적용 검토

- 즉시 적용이 가능한 사항
 - 각종 인허가의 일괄의제처리(법 제17조 제1항 및 별표 1)
 - 규제 자체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각 개별법의 일괄처리 조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별표 1과 일치시키고, 향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일괄처리 범위를 확대할 때에는 개별법도 동시에 개정토록 함
- 전면적인 적용을 검토할 사항
 - 국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 요건미비시 보완조건부 인허가
- 규제의 완화 내지 개선을 검토할 사항
 - 무역(대리)업 신고의 면제 및 수출입 제한 완화
 - 취업보호대상자 고용의무의 면제
 - 중소기업 고유업종 허용 및 지정계열화품목의 제조위탁의무 면제
- 산업단지 등 일부를 대상으로 적용을 검토할 사항
 - 국공유재산 매각·임대시 수익계약의 허용

-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50년까지 연장
- 국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 허용
-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의 분할 허용
-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 농지전용부담금 및 산지전용부담금 감면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외국인투자지역의 의료시설 · 교육시설 · 주택 등의 지원

다. 기업활동지원센터(가칭)의 설치 · 운영

- 현재 중소기업창업민원실(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이나 산업입지센터(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와 같은 기능 및 권한을 갖지 못하여 실효성이 약함
-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 유사한 권능을 가지는 ‘기업활동지원센터’ (가칭)를 설치 · 운영한다면 대국민 및 대기업 서비스의 향상은 물론 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임

2) 기업집단 규제의 총체적 재점검

- 지난 1986년 공정거래법에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출자규제제도가 도입된 이래 종합적인 재벌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가운데 각 분야에서 각종 법률에 의한 대기업(집단) 규제제도가 지속적으로 도입되었음
 - 재무구조(차입경영)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 재벌의 폐해를 시정한다거나 중소기업 또는 농어민의 보호, 재벌에 의한 언론장악 방지 등의 차원에서 대증요법적인 규제가 양산됨
- 최근에도 이른바 빅딜을 포함하여 기업집단의 경영구조, 지배구조 전반에 걸쳐 광범하고 강력한 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업집단에 대한 이같은 끊임 없는 규제의 신설 · 강화로 인하여, 국내 다른 기업은 물론 외국기업 내지 외국인투자기업과 비교해 볼 때 이들 기업집단들은 온갖 족쇄를 다 차고 경쟁해야 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의 도입 경과

시대	규제 내용	
5공화국	대규모기업집단 제도 도입과 출자한도 등의 규제(공정거래법)	
6공화국	언론사(신문, 방송, 통신사)에 대한 진입규제	
문민 정부	세제	•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과세 • 과다차입금 이자의 손비 부인 • 상속증여세법에 저(고)가 양도(수)에 $\pm 30\%$ 기준 배제
	금융	• 보험업 진입규제 • 은행의 비상임이사회, 주주대표 참여 배제 • 계열 투신사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제한
	진입	• 보도프로그램공급업 진입금지 • 축산업, 수산업 진입금지 • 민자역사 지분규제
	중소기업	• 중소기업에의 대금결제조건 조사, 공표 • 계열사는 중소기업이 부인됨 • 하도급에서 원사업자로 간주
국민의 정부	회계제도	•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
	금융	• 회사채 발행(5대 그룹)과 CP 발행 규제 • 이업종에 대한 채무보증 해소(5대 그룹)

- 따라서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기업집단의 구조개혁이 가닥을 잡아가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규제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각종 법령에 산재한 차별적 규제조항들을 현재 시점에서 하나하나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재벌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기업집단 규제 규정들을 모아 하나의 특별법을 제정하되,
 - 이 법은 한시법으로 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시행결과를 분석, 존속여부를 재검토함
 - 그리고 현행 규제 제도 가운데 정책목표 실현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만 남기고(필요하다면 강화), 정책목표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거나 실효성이 약한 것은 폐지하고

- 현재는 대기업(집단)만을 규제하고 있으나,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또는 국민) 일반의 문제로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모든 기업(또는 국민)을 규제하는 것으로 전환하도록 함

3)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기업집단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경영의 투명화작업 등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함

·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

* 집필자 : 윤순희 사무관(Tel. 3703-2182)

1. 전자거래의 개요

1) 전자거래의 개념

전자거래(Electronic Commerce)는 개인과 조직, 기관 등을 포함하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다양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 정보 등을 교환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소비자나 기업이 통신망, 그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이며, 넓은 의미로는 기업과 소비자간뿐만 아니라 기업과 기업간, 기업과 정부간 거래를 포함하며, 제품 판매는 물론 생산·구매·물류·유통·광고·마케팅·고객관리·서비스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쓰임

2) 전자거래의 현황

가. 인터넷의 팽창과 전자거래 시장의 확대

- 인터넷 이용자가 2003년경에는 전세계적으로 3억 5천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도 1999. 10월 현재 이미 600만명을 돌파함

인터넷 이용자 수 추이

구분(백만명)	1998년	1999년	2003년
전세계	95.4	130.6	350.0
미 국	47.0	54.1	107.0
한 국	3.1	6.3	16.0

* 자료 : eMarketer, 1998, 1999 및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 인터넷 이용자 수의 급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전자거래 시장을 창출하였으며 그 규모가 2003년경 1조달러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은 1999년 22억달러 규모로 성장(도소매 연간매출액의 1% 미만)하였으며, 유통분야뿐 아니라 금융, 주식, 경매, 오락 등 산업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임

전자거래 시장규모 전망

구분(백만달러)	1998년	1999년	2003년
전세계	77,000	340,000	1,070,000
미 국	58,709	215,677	541,423
한 국	354	2,168	9,613

* 자료 : WEFA, '전자상거래 시장기획분석', 1999. 2

나. 전자거래의 확대에 따른 기업의 변화

- 인터넷 기반의 신생기업들이 놀라운 속도로 시장을 장악
 - amazon.com : 연간매출 1,600만달러(1996) → 6억 1,000만달러(1998)
 - Cisco시스템장비사 : 연간매출 1억달러(1996) → 주간매출 1억달러(1998)
 - Dell컴퓨터 : 연간 1백만달러 미만(1996) → 일일 최고 6백만달러(1998)
- 기존 기업들도 사이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준비에 총력
 - GE : 전자구매시스템으로 구매부서 인건비 30%, 원자재비 20% 절감
 - Ford · G M : 2000년부터 부품 및 자재를 100% 인터넷으로 조달
 - IBM : 전자정보교환 처리로 재고회전을 40%, 판매량 30% 증가

다. 전자거래에 대한 각국 정책현황

- 각국 정부는 전자거래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매진중으로 미국의 경우 1997년 클린턴 대통령 '글로벌 전자상거래 추진체제'를 발표하였으며, 영국은 1999년 블레어 총리가 종합대책인 'e-commerce@its.best.uk'를 발표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도 1995년 통산성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방침'을 발표하고 이를 확대 추진중임
- 우리나라도 전자거래활성화를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여 법적 환경을 구축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통한 인력양성 및 기술제공, 초고속 정보통신망 등 인프라 기반을 확충 △기업간 전자상거래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수요를 확대 △외국과의 전자상거래를 위해 인터넷무역 알선 홈페이지를 마련하고 양자간 협력관계 개설 등 전자상거래 무역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등을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로서는 제도적·기술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임

2.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

1) 기본 방향

- 전자상거래 전 부문에서 시장기능을 중시함으로써 민간 주도화 추진
 - 정부는 환경조성(Steering역할), 민간은 자율적 추진(Rowing역할)
- 불필요한 규제는 지양하고 정부는 꼭 필요한 제도와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어 가능한 한 민간 자율적인 제도의 도입 및 준수를 유도
- 새로운 거래방식 도입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제도 구축
- 국제적 기술기준 및 규범 준수 국제 협력 강화 등 글로벌마켓 지향

2) 분야별 제도정비 방향

가.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효력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제정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효력에 대한 일반규정은 마련되었으나, 종이문서 및 서명날인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과 행정절차로

전자문서 활성화 저해

■ 정비방향

-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으로 종이문서 및 서명날인을 대체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
예) 은행에서 발행하는 전표용지가 전자문서화되어 있어도 세무당국에서 인정치 않고 있어 업체들은 은행의 확인도장을 받아 제출
- 관련부처 : 산업자원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등

나. 보안 및 암호기술 이용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전자거래기본법 제정으로 민간의 암호이용에 대한 원칙규정은 마련되었으나, 이용가능 범위 등 세부적인 이용규정이 수립되지 않아 실제 도입 및 확산이 어려운 실정

■ 정비방향

- 암호이용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암호기술이용촉진법(가칭)’ 제정 추진(2000)
예) 암호기술 이용가능 범위, 불법적인 암호사용 규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관련부처 : 정보통신부 등

다. 전자자금이체 · 전자화폐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금융기관 공동의 표준약관인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정을 추진중이나 전자화폐 운영에 관한 규정은 미흡

■ 정비방향

- 각국의 동향 및 국제적 규범정비 추세 등을 감안해 ‘전자자금이체법(가칭)’ 제정 추진 (2001년 이후)
예) 전자화폐의 분실, 도난, 부정사용시 소비자의 책임의 범위 등 규정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라. 개인정보 보호 등 소비자 보호

■ 현황 및 문제점

- 전자거래기본법 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한 원칙규정이 신설되고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추진 등으로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의한 소비자 보호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의 신설·강화나 기존규제의 개선 검토 필요

■ 정비방향

- 우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거래의 특성에 맞추어 개정 추진(2000)
예)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강화 등
- 관련부처 : 산업자원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마. 지적재산권 보호

■ 현황 및 문제점

- 전자거래에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에 전송권을 추가하여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에 대처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새로운 규범에 대응할 필요

■ 정비방향

- WIPO 저작권조약 논의 등 국제동향에 적극 대응하여 지적재산권 관련법령 정비 추진
예)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보호 여부
- 관련부처 :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특허청 등

바. 정부 조달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 조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전자거래 촉진 등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정부 조달업무의 전자화 추진

■ 정비방향

-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예산회계법령' 등 정비 추진(2000)
예) 법령체계를 정보화 환경에 맞게 전자문서 위주로 전환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등

사. 영업관련 규제

■ 현황 및 문제점

- 전자거래 업체는 전통적 영업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통적 영업방식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법령에 의해 획일적으로 전자거래 방식을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

■ 정비방향

- 청소년 보호, 소비자 보호, 탈세방지 목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후생 증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존규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정비 추진
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이버몰 운영자의 사업신고의무, 변호사·회계사·의사의 서비스의 네트워크상 제공에 대한 제한, 전자거래 대상 상품제한(주류) 등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3. 향후 추진계획

- 분야별 제도정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발굴하여 제도정비 추진

■ 추진일정

- 1999. 12 ~ 2000. 2 : 각 부처 소관분야에 대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방안 발굴
- 2000. 4월 초순 : 관계부처, 민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종합대책(안)' 수립
- 2000. 4월 중순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규제자유지역 설치방안

* 집필자 : 팽헌수 과장(Tel. 3703-2158)

1. 과제 추진배경 및 과제의 성격 등

1) 과제 추진배경

규제자유지역 설치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간사위원인 김일섭 위원이 행정규제를 획기적으

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역별 기반으로 무규제상태에서 출발하여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을 적용하는 규제자유지역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용역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음

2) 과제의 성격

본과제는 기존 행정규제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여타 핵심과제와는 성격이 달라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시행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새로운 규제개혁의 패러다임으로, 또한 기존의 수출자유지역설치법(자유무역지역설치법) 등과 같은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각종의 자유지역을 통괄하는 개념 혹은 그 상위개념으로서 규제자유지역을 설치하려면 어떤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러한 고려요소들이 행정규제기본법을 포함하여 현행법체계와는 어떤 관계를 갖는지 등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국내 최초로 추진된 연구과제임

2. 규제자유지역 설치방안 연구용역보고서 요약

1) 규제자유지역 설치방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998년 4월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불합리한 정부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규제개혁의 결과가 민간 경제주체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같은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이유로는 정책적 규제의 존재,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불신, 정부의 시장 및 경쟁질서에 대한 이해의 부족, 이해관계인의 저항, 그리고 정부조직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 등을 들 수 있음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상술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규제자유지역’의 설치 방안을 연구하게 되었음

2) 각종 자유지역의 사례

가. 자유지역의 유형

- 생산기능 중심의 자유지역
 - 수출자유지역(EPZ : Export Processing Zone)
 -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 교역기능 중심의 자유지역
 -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 자유무역항 · 자유항(Free Port)
 - 통과지대(Transit Zone)
- 금융기능의 자유지역
 - 역외금융센터(Off-shore Banking Center)
- 복합기능의 자유지역 : 말레이시아의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 말레이시아는 폭 15km 길이 50km의 녹색지대에 MSC(Multimedia Super Corridor)를 설치하여 국경없는 세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컴퓨터 · 통신 · 자본의 흐름 등 새로운 형식의 협력과 상거래 등을 육성함으로써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세계적인 요람 중의 하나가 될 것을 계획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MSC내 기업들의 성장환경의 육성에 반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Bill of Guarantee”를 제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
 - MSC의 선도적 7대 과제들은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첫째 범주는 ‘멀티미디어의 개발’로 구체적인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MSC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들로 ①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의 구현 ② 다목적 카드(National Multipurpose Card)의 사용 ③ Smart School의 운영 ④ 원격의료(Telemedicine)서비스의 제공이며, 둘째 범주는 ‘멀티미디어 환경조성’으로 MSC내의 기업들을 위한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과제들로 ⑤ 연구개발집단(R&D Clusters)의 설치 ⑥ 세계적인 제조망(World Wide Manufacturing Webs)의 운영 ⑦ Borderless Marketing Centers의 운영임

나. 시사점 : 복합기능 형태의 자유지역

- 세계 여러 국가에서 과거에 도입하였던 자유지역은 특정부문 및 특정산업의 육성을 위해

서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세제 및 금융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단순기능' 형태의 자유지역이었음.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 설치한 자유지역은 생산중심형 자유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EU·싱가포르·홍콩 등의 경우 당해국가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서 물류중심형 자유지역을 발전시켰음

- 자유지역과 관련된 최근의 추세는 특정부문 - 즉 생산중심, 교역중심 혹은 금융중심 - 에 한정시키는 '단순기능' 형태에서 벗어나 '복합기능' 형태를 취하고 있음. 복합기능 형태를 갖추고 있는 자유지역의 대표적인 예는 말레이시아의 MSC를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가 추진중인 제주도 국제자유화도시계획의 경우, 제주도 전체를 복합기능 형태의 자유지역으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따른 주요 일정은 관광자유도시의 조성(2002), 비즈니스·물류·교역 중심지의 구축(2006), 금융을 포함한 국제자유도시의 조성(2010)

3) 규제자유지역의 도입

가. 규제자유지역의 개념

- 규제자유지역을 고려하게 된 배경은 정부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보기 위한 것으로서, 규제자유지역에서는 정부규제의 일부가 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 즉 꼭 필요한 규제만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나. 규제자유지역의 기능

■ 복합기능

- 자유지역과 관련된 세계적 추세는 논외로 하더라도 규제자유지역의 설치배경 등을 감안할 경우, 규제자유지역은 복합기능의 형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복합기능의 형태

- 규제자유지역에서 고려할 수 있는 복합기능의 내용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첫째는 (신)도시적 성격을 갖지 않는 복합기능 - 즉 다기능 -의 형태이며, 둘째는 (신)도시적 성격을 지니는 복합기능의 형태임
- (신)도시적 성격을 갖지 않는 복합기능 형태란 특정규제자유지역을 설치하려는 2개 이상의 주된 목적을 설정한 후 주된 기능의 달성에 직접적으로 장애가 되는 규제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것으로, 예를 들면 제주도가 추진중인 제주도 국제자유화도시의 경우

관광자유기능, 물류·교역자유기능 및 금융자유기능 등 다양한 기능 -즉 복합기능- 을 지닌 자유지역의 형태라 할 수 있음

- (신)도시적 성격을 갖는 복합기능(이하 ‘(신)도시적 복합기능’) 형태란 전술한 2개 이상의 주된 기능 이외에, 특정규제자유지역에서 여타 경제·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제반 규제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신)도시적 복합기능의 형태로, 주된 기능의 육성과 관련된 규제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까지 정책적 규제이기 때문에 존치되고 있거나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존치되고 있는 제반 경제·사회규제도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함

다. 기존 자유지역에 대한 ‘규제자유지역설치법’ (가칭) 적용 여부

- 규제자유지역과 기존의 자유지역과의 차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규제자유지역은 기존의 자유지역이 지니고 있는 단순기능 형태에서 벗어나 복합기능의 형태 - (신)도시적 성격을 갖는 형태 포함 - 를 갖는 자유지역이라 할 수 있음. 한편 향후에 규제자유지역 설치를 위한 ‘규제자유지역설치법’ (가칭)을 제정한다면, 동법은 자유지역 설치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기존의 자유지역의 경우도 주된 기능을 제외한 부문에 대해서는 ‘규제자유지역설치법’ (가칭)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기존의 자유지역도 (신)도시적 성격을 갖는 복합기능 형태의 자유지역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자는 것임

라. 규제자유지역에 적용배제 규제의 선정

■ 적용배제 규제에 대한 심사기관

- 등록된 규제 중에서 규제자유지역에서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률 및 규제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배제할 수 없는 법률 및 규제의 선정

- 비록 규제자유지역이라 할지라도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를 위한 법체계는 필요한 것이므로 보건·안전·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제에 대한 적용배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다만, 상기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규제 중에서도 몇몇 규제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도 무방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음

■ 규제의 추가적인 적용배제

- 규제자유지역 설립과정에 혹은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규제의 적용배제를 결정할 수 있

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규제개혁위원회의 자체심사 :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자유지역에서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제를 선정한 이후에도, 잔여규제에 대한 자체심사를 통하여 규제자유지역에서의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현재는 적용배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규제 중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추가로 적용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는 규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임
- 추진주체의 요청에 따른 심사 : 규제자유지역의 추진주체 - 즉 지방자치단체 - 도 규제의 추가적인 적용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왜냐하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자유지역에서 적용배제가 가능한 규제를 선정할 경우, 특정규제자유지역의 기능을 고려하면서 심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규제자유지역의 추진주체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규제의 적용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규제자유지역의 추진주체 및 지원

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 추진주체에 따른 장·단점

- 중앙정부가 규제자유지역 설정의 추진주체가 될 경우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재정적·인적 지원을 받기가 용이할 것이며, 또한 추진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장애요인 등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쉽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임. 그러나 중앙정부가 규제자유지역 설정의 추진주체가 될 경우의 단점은, 관련부처는 자신의 소관 규제의 적용배제에 대하여는 상당히 소극적이거나 혹은 거의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자유지역 설정의 추진주체가 될 경우의 장점은 첫째, 기존 규제의 폐지 및 개선을 반대하여 온 중앙부처의 저항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규제자유지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며, 셋째는 신설될 규제자유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혹은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 민간부문 - 기업 및 거주자 - 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게 될 것임

■ 검토의견

- 첫째,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중앙정부에 의한 추진방법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주체가 되는 것이 규제자유지역의 설치목적에 더욱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 둘째,

신설될 규제자유지역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단순기능 형태의 규제자유지역은 중앙부처가 추진토록 하고, (신)도시적 성격을 갖는 복합기능 형태의 규제자유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임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자유지역을 신설·유지하기 위한 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확충할 것인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예로는 특정 지방세의 신설 또는 감면,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증액지원 등을 들 수 있음

3. 추진방안

1) 제1안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제1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여 특정지역에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된 적용배제 대상규제와 그 범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의결하고, 법령 주관부처에 의결결과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참고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예시〉

제00조(특정지역에 대한 규제의 적용배제) 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정하여 특정기능의 육성을 위해 관련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목록과 선정의 이유 등을 명시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규제개혁위원회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적용배제의 필요성과 적절성 등을 심의·의결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의결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적용배제 규제의 심사신청, 심의의결 및 이행권고 등에 관한 세부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안 : (가칭) 규제자유지역설치기본법 제정

제2안은 규제자유지역 설치에 관한 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규제자유지역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자유지역의 설치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가칭)규제자유지역설치기본법(안)의 체제 및 주요내용

가. 체제

- 제1장 ‘총칙’에 법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법 적용범위, 행정규제기본법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제2장 ‘지역별 규제자유지역’에 지정신청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시행승인, 적용배제 대상법률과 조항을 열거하여 규정하며, 제3장 ‘기능별 규제자유지역’에 기존의 관세자유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과 같은 기능별 규제자유지역 설치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가능함과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제4장 ‘행정지원’에 세제지원 등을 위한 근거조항을 규정함. 특히 제2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일명: 카르텔일괄정리법)과 유사한 체제로 적용배제 대상법률과 조항을 명시(별첨 법 제정안 예시 참조)

나. 주요내용

- 규제자유지역의 종류 및 정의
 - 유사 규제자유지역, 기능별 규제자유지역, 지역별 규제자유지역 개념정의
-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자유지역 육성에 필요한 인센티브의 제공을 위하여 특별법 제정 시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위한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도 이행조치내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제주도 등과 같은 특정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관련되는 행정규제의 적용을 일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특정지역에 복합기능의 규제자유지역 개념이 적용되는 형태의 지역별 규제자유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신청내용을 심의 의결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심의 결과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권한을 가짐

(가칭)규제자유지역설치기본법(안) 체제 및 주요 내용 예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지역에 한해 적용을 배제시킴으로써 특정지역 민간부문의 경제·사회 등 제반 활동영역에 있어서 자율과 창의를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사 규제자유지역”이라 함은 기존의 자유무역지역설치법 및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각종 자유지역을 말한다.
2. “기능별 규제자유지역”이라 함은 교육규제자유지역, 관광 레저규제자유지역, 벤처산업 규제자유지역 등과 같이 향후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행정규제의 적용을 배제시킴으로써 특정기능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지역을 말한다.
3. “지역별 규제자유지역”이라 함은 제주도 등 특정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특정한 행정규제의 적용을 일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특정지역에 단일기능 또는 복합기능의 규제자유지역 개념이 적용되는 형태의 규제자유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법률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에 근거하여 제정·시행된 것으로 본다.

1. 자유무역지역설치법(현행 수출자유지역설치법)
 2.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제주도개발특별법
 4. 관광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5.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예정)
 6. 인천국제공항 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예정)
- ② 명칭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향후 제정되는 각종 기능별 또는 지역별 규제자유지역의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타법과의 관계) 단순기능 규제자유지역 또는 지역별 복합기능 규제자유지역의 원활한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규제의 적용배제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고 승인하는 권한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있다.

제2장 지역별 규제자유지역

제5조(지정신청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시행승인) ①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복합기능 규제자유지역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청내용을 심의·의결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신청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배제)

국토이용관리법 중 다음과 같이 적용을 배제한다.

“제3장의 2 토지거래 등의 규제 등”(제21조의 2 내지 제21조의 18)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21조의 2(허가구역의 지정)

.....

제21조의 18(토지의 이용의무 등)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7조(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배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중 다음과 같이 적용을 배제한다.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8조(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9조(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8조(건축법의 적용배제)

건축법 중 다음과 같이 적용을 배제한다.

제45조(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47조(건폐율)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48조(용적률)의 적용을 배제한다.

※ 이 조항은 지역지구제(zoning)와 관련된 사항으로 적용을 배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제9조(문화예술진흥법의 적용배제)

문화예술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적용을 배제한다.

제11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적용을 배제한다.

※ 동조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연면적에 따라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조형예술물, 분수대 등 환경조형물과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제10조(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적용을 배제한다.

제3조(과외교습)의 적용을 배제한다.

※ 동조항은 누구든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11조(고등교육법의 적용배제)

고등교육법 중 다음과 같이 적용을 배제한다.

제4조(학교의 설립 등)의 적용을 배제한다.

※ 동조항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 추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이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제6조(학교교칙)의 적용을 배제한다.

※ 동조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칙의 기재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32조(학생의 정원)의 적용을 배제한다.

※ 동조항은 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33조(학생의 선발방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12조(초·중등교육법의 적용배제)

초·중등교육법 중 다음과 같이 적용을 배제한다.

제4조(학교의 설립등)의 적용을 배제한다.

※ 동조항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사립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제13조(기타 법령의 적용배제)

기타 이 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법령의 규정도 규제자유지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기능별 규제자유지역

제14조(기능별 규제자유지역의 설치) ①특정지역에 단일 기능의 규제자유지역을 설치하거나 또는 여러 기능이 복합된 규제자유지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별 규제자유지역의 설치를 원할 경우에는 특정기능 또는 주된 기능에 관한 행정규제를 주관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기능별 규제자유지역의 설치에 관한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기능별 규제자유지역설치특별법 제정) ①정부는 기능별 규제자유지역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②규제개혁위원회는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기능별 규제자유지역의 설치에 장애가 되는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의결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세부행정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행정지원

제16조(세제지원 등)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이행조치 내용에 세제혜택 등

의 지원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기능별 규제자유지역의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이 배제된다.

4. 기대효과

규제자유지역 개념은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의 자유지역을 포괄하자는 것으로서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운영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기존의 자유지역은 극히 제한적인 기능만을 수행토록 함에 따라 시대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변화를 시도할 경우에도 부처협의를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도 등과 같이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지방의 육성을 도모하려고 할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정책협의를 법 제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향후계획

본과제의 구체적인 시행여부 및 시행방안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다 많은 논의와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현재도 특별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자유지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의 여부에 대한 논란과 국가의 현행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비판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추진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규제개혁 패러다임의 하나로 소위 여러 부처와 법령에 얽혀 있는 덩어리규제나 정책규제로 인해 기존의 개별규제 개혁방식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경우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를 찾고자 함.

Ⅰ 제3절 Ⅰ

행정절차 개선

· 증명민원제도 규제개혁

* 집필자 : 오병혁 사무관(Tel. 3703-2154)

1. 추진개요

1) 추진방향

-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모든 증명서류를 원칙적으로 감축대상에 포함하여 국민편익을 최대한 증진
- 행정정보화 등의 추진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감축으로 일시감축에 따른 문제점 해소

2) 감축방법

- 1단계 감축 : 당해 행정기관의 자체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폐지
 - 규제완화에 따라 첨부가 불필요하게 된 서류
 - 신분증·자격증 등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행정기관 내부의 자체공부 등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기타 행정기관 현지 실사 등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등
- 2단계 감축 : 행정기관간 확인 가능한 서류는 폐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타 행정기관이 보유한 감축 가능한 서류

2. 감축내용

1) 총괄 현황

민 원 사무수	감축대상 민원사무	감축대상 증명서류	감축가능	감축불가	감축시기	
					1단계	2단계
4,270	1,799	3,315	1,072	2,243	485	587

2) 감축방법

감축대상 증명서류	감축가능	감 축 방 법				
		폐지	공부 확인	전산망 확인	신분증 확인	기타
3,315	1,072	506	72	416	34	44

가. 폐지

- 반공귀순상이자 등록 : 주민등록표등본(보훈처)
- 방문판매업자의 신고 : 법인 등기부등본(공정거래위)
- 보험중개인 시험 : 경력증명서(금감위)
- 세무사 등록 : 실무교육수료증명서(재경부)
- 유족연금 청구 : 사망된 주민등록표등본(국방부)
- 소방시설공사업 상속신고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행자부)
- 법인 임원의 취임 승인 : 호적등본(교육부)

- 사립과학관 등록 : 시설소유 또는 임차증명서류(과기부)
- 관광사업등록증 재교부 : 분실사유서(문화부)
- 비료수입업 신고 : 영업장의 소유 · 임차관계증명서(농림부)
- 선박내 연탄제조업 허가 : 선박등기부등본(산자부)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 호적등본(정통부)
- 소독업 신고 : 소독업자 교육필증(복지부)
- 정화조제조업(변경) 등록 :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환경부)
- 건설기계형식 신고 : 소음 및 배기가스 시험성적서(건교부)
- 선박국적증서 검인 : 선박국적증서(해양부)
- 출국가능 사실증명 : 출국사유증빙서류(대검찰청)
- 재학생 입영원 취소원 : 주민등록표등본(병무청)
-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 공장예정지 지적도(중소기업청)
- 의료용구 수입품목 허가 : 수입자확인증(식약청)
- 문화재매매업 허가 : 경력증명서(문화재청)

나. 공부확인

- 사립박물관설립계획 승인 : 국토이용계획 확인원(문화부)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 허가증(산자부)
- 염제조업 허가 : 지적도 및 위치도(산자부)
- 시설보호대상자 증명 : 시설보호대상자 증명서(복지부)
- 사설묘지 폐지허가 : 허가증(복지부)
-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 : 허가증 사본(노동부)
-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 운전면허증 사본(경찰청)

다. 전산망확인

- 보험계리인 등록 : 합격증서사본(금감위)
- 문화(학술 · 체육)협력지원자금 신청 : 사업승인서 사본(통일부)
- 승선공인 : 해기사 면허증(해수부)
- 납세관리인(설정, 변경, 해임) 신고 : 사업자등록증(국세청)
- 우선징병검사원 :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사본(병무청)

- 긴급자동차 지정 : 운전면허증 사본(경찰청)
- 국·공유지 소유권 이전등기 : 상환완료증명서(산림청)
- 마약 취급자 면허 : 의약품수입품목허가증(식약청)

라. 신분증 확인

- 보험중개인 허가 : 주민등록표등본(금감위)
- 일반(거주)여권동반자녀 추가신청 : 부·모의 영주권 사본(외통부)
- 학원설립 등록 : 주민등록표초본(교육부)
- 내용증명등본의 열람 : 주민등록증(정통부)
- 도선사 정년연장 : 호적초본(해수부)
- 육군일반병지원 입영원 : 주민등록표등본(병무청)
- 마약취급학술연구자 면허 : 재직증명서(식약청)

마. 기타

- 관리수의사 채용동의 : 수의사면허증 사본(농림부) → 수의사등록증으로 확인
- 재단(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 사실증명서류(복지부) → 회의록으로 대체
-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 수여 : 대표자 인감증명서(경찰청) → 경찰서별 개별확인
- 예보사업 등록 신청 :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기상청) → 현지 실태조사 확인

3) 감축시기

가. 1단계감축 : 368종 485건

■ 감축내용

계	폐지	공부 확인	전산망 확인	신분증 확인	기타
485	402	19	24	17	23

■ 감축시기

- 2000년 초 관보고시

■ 감축대상 : 당해 행정기관 자체 확인가능 서류

- 규제완화에 따라 첨부이 불필요하게 된 증명서류
 -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 점포소유 증명(재경부)
 - 사회교육시설 등록 : 건물소유주 인감증명서(교육부)
 - 의료용구 수입품목 신고 : 수입확인증 사본(식약청)
- 신분증 · 자격증 등으로 확인가능한 서류
 - 관용 · 외교관 여권 발급 신청 : 공무원증 사본(외통부)
 - 도선사 정년 연장 : 호적초본(해양부)
 - 마약취급학술연구자 면허 : 재직증명서(식약청)
- 행정기관 자체 공부 등으로 확인가능한 서류
 - 공연장업 등록증 재교부 : 못쓰게 된 등록증(문화부)
 - 염전개발 허가 : 지적도 및 위치도(산자부)
 -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 : 운전면허증 사본(경찰청)
- 업무전산화 등으로 확인가능한 서류
 - 문화(학술 · 체육)협력 지원자금 신청 : 사업승인신청서(통일부)
 -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 :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국세청)
 - 긴급자동차 지정 : 운전면허증 사본(경찰청)
- 기타 행정기관 현지조사 등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등
 - 재단(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지부)
 - 예보사업(변경)등록 신청 : 등록기준(상근인력, 전산기)을 증명하는 서류(기상청)
 -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 신청 : 재산 · 인력 및 시설의 확보증명서(기상청)

나. 2단계감축 : 408종 587건

■ 감축내용

계	폐지	공부확인	전산망확인	신분증확인	기타
587	104	53	392	17	21

■ 감축시기 : 2000년 이후

-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계획과 연계 추진

■ 감축대상 : 행정기관간 확인 가능 서류 폐지, 행정기관이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타 행정기관에서 보유한 관련 정보로 확인가능한 증명서류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의 등록 신청 : 주민등록표등본(보훈처)
 - 거주여권 훼손 재발급 :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외통부)
 -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 사업자등록증(정통부)
 - 공원 보호구역 점용 및 사용허가 : 위치도, 지적도 및 평면도(환경부)
 -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 외국인등록표등본(건교부)
 - 제1국민역 병역 면제원 : 호적등본(병무청)
 - 청원경찰 임용승진 : 병역증명서(경찰청)
 - 종자관리자 등록 : 자격증 사본(농진청)
 - 국유림 교환 : 임야(지적)도 등본(산림청)
 - 폐기물 운반선 등록 : 법인 등기부등본(해양경찰청)

4) 기타 구비서류 제출규정 정비

가. 고시, 훈령, 예규, 공고 등에 의한 구비서류 제출규정을 시행규칙 이상으로 상향조정된

9종의 민원사무(산자부, 해양부)

- 민원사무명 : 유통연수기관 지정(산자부)
 - 유통산업발전 시행세칙 → 유통산업발전 시행규칙
- 민원사무명 : 내수면어업 면허(해수부)
 - 내수면면허 및 허가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나. 법령상 “○○을 증명하는 서류” 등 포괄적으로 규정된 외교통상부 등 12개 부처 42개

구비서류 정비

- 민원사무명 : 신용카드업 허가(금감위)
 - 구비서류 :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 입금증, 잔고증명서 등으로 구체화
- 민원사무명 : 출소(재소)증명(법무부)
 - 구비서류 : 본인 및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 민원사무명 : 형식승인 사항의 변경신고(정보통신부)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상호변경의 경우)

→ 회로도, 부품 배치에 관한 도면(사진)(회로 · 외관 및 구조 변경의 경우)

부처별 증명서류감축 총괄표

기관명	민원 사무	감축대상 증명서류	감축 가능	감축 불가	감축방법					감축시기	
					폐지	공부 확인	전산망 확인	신분증 확인	기타	1단계	2단계
총 계	1,799	3,315	1,072	2,243	506	72	416	34	44	485	587
국가보훈처	21	55	24	31	8		16			6	18
공정거래위원회	12	16	4	12	4					4	
금융감독위원회	30	50	20	30	13		5	1	1	20	
재정경제부	12	17	9	8	9					9	
통 일 부	23	34	8	26	3		5			8	
외교통상부	25	39	23	16	1		15	7		7	16
법 무 부	31	53	9	44	4		4	1		5	4
국 방 부	32	63	34	29	29		2	2	1	21	13
행정자치부	68	116	24	92	22	1	1			21	3
교 육 부	45	102	41	61	24		14	3		27	14
과학기술부	21	33	16	17	9		7			7	9
문화관광부	83	146	45	101	34	5	1		5	36	9
농 립 부	123	213	57	156	46	7	1	2	1	42	15
산업자원부	157	273	145	128	43	25	77			30	115
정보통신부	55	111	59	52	24		33	2		25	34
보건복지부	109	185	34	151	21	11		1	1	17	17

3. 향후 조치계획

- 감축확정 증명서류의 관보고시
 - 2000년초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정시 반영
- 증명서류 감축내용의 적극적 홍보
 - 일선 행정기관에 감축내용 및 업무처리 요령 통보
 - 필요시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실시로 감축 증명서류 요구사례 방지
- 정기적인 확인·점검 실시
 - 각급행정기관 민원사무처리실태 확인·점검시 감축된 증명서류 요구사례 중점 점검

. 비영리법인 설립·감독관련 규제개혁방안

* 집필자 : 이상희 사무관(Tel. 3703-2159)

1. 규제현황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검사·감독 권한을 부여받은(민법 §31~§97) 주무관청은 각각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함)’을 제정 운용하고 있음
- 부처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설립허가 및 감독관련 규제가 과다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활동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다한 규제

- 각 부처에서는 민법상의 권한외에도 관리 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각종의 허가, 승인제를 운용함은 물론 추가적인 보고의무를 부과

- 민법상 규정된 주무관청의 권한
 - 설립허가(민법 제32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동법 제37조), 설립허가의 취소(동법 제38조), 정관변경의 허가(민법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2항), 잔여재산처분의 허가(민법 제80조 제2항) 등이 있으며, 이의 실효성 확보책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해 감사의 보고의무(민법 제67조 제3호) 및 해산·청산종결의 신고(민법 제86조, 제94조)의무 등
- 이러한 과도한 부담은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 본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내실화를 저해
- 나아가 법적규제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많은 단체들로 하여금 법인격(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남아 있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2) 부처별 관리기준의 통일성 결여

- 규칙의 제정근거가 동일하고 비영리라는 공통된 성질에 비추어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리됨이 바람직함에도 부처별로 관리기준이 통일성을 결여
 - 다수 부처에서 세제혜택 및 관리·감독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민법법인과 공익법인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

3) 규제관리상의 애로

- 규제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도 부처별로 규제 등록여부가 상이하고 등록을 한 부처간에도 그 수가 상이
 - 보건복지부 19건, 교육부 16건, 통일부 11건 등 총 85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1건 이상 등록한 부처가 13개에 불과

3. 개선방안

1) 제도개선 기본방향

가. 중장기 방안(입법론)

- 민법을 개정, 준칙주의 내지 최소한의 요건만을 규정한 인가주의로 전환하여 설립을 자
유화하되, 설립 후의 지도감독권으로 보완

※ 법무부에서 민법 개정 추진중(2001년 9월 정기국회 제출 목표)

나. 단기 방안

- 각 부처 규칙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과도한 규제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비영리
법인 설립을 활성화하고 그 활동의 자율성을 진작
 - 설립허가 기준의 단순화
 - 허가취소사유의 축소
 - 각종 승인 및 보고의무 등 규제의 최소화

2) 설립목적의 제한

가. 규제현황

- 민법상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들고 있을 뿐이나, 일부 부처
에서는 소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기획예산처, 청소년보호위원회, 법제처, 국방부, 통일부 등

나. 개선방안

- 목적사업 명시는 주무관청의 업무범위의 일부를 적시한 데 불과하므로 폐지

3) 설립허가의 기준

가. 목적사업의 공익성

■ 규제현황

- 현행 민법은 독일 민법 제21조·22조 및 스위스 민법 제60조를 본받아 비영리·비공
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산업자원부는 “공익도모”를, 문
화관광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등의 경우 “영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닐 것”을 요
건으로 명시

■ 개선방안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익성 여부에 관한 조항을 삭제
 - 민법 제32조가 요구하지 않은 공익성을 주무관청의 규칙으로 규정함은 법리에 어긋남
 - 공익에 반하는 경우 허가취소대상이 된다는 점(민법 제38조)에서 “공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은 당연한 요건임

나. 타 법인의 사업과의 경합 배제

■ 규제현황

- 일부 주무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목적사업의 경합을 배제하고 있음
 - 동일 · 현저히 유사한 경우 배제 : 국가보훈처,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 경합으로 공익실현 저해시 배제 : 법제처, 재정경제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 개선방안

- 규개위에서 기 의결(1998. 8. 14, 제9차)한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에 따라 목적사업 경합시의 불허조항 삭제

다. 명칭사용 배제

■ 규제현황

- 동일명칭 외에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부처도 있음
 - 동일 · 유사명칭 사용 금지 : 통일부, 문화관광부, 환경부(신고단체 포함)
 - 현저히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 농림부
 - 특정법인(재향군인회 등)과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 국가보훈처

■ 개선방안

-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삭제하고 동일명칭 사용금지만 존치
 - ※ 법인 등기의 실무상 기등기법인과 동일명칭으로는 등기 불가

라. 기타

■ 규제현황

- 설립목적의 달성 가능성과 관련하여 일정수 이상의 전문인력 확보(기획예산처, 통일부), 연간 일정수 이상의 간행물 발행 · 회의개최(기획예산처)를 요구하는 부처도 있음

■ 개선방안

-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도한 사전규제이므로 삭제

4) 허가신청 서류

가. 규제현황

- 민법상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 부처의 경우 설립허가 및 감독규칙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① 설립 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통
 - ② 설립취지서 1통
 - ③ 정관 3통
 - ④ 자산목록 및 출연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서류 1통
 - ⑤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 1통
 - ⑥ 사업개시 예정일과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기재서류 각 1통
 - ⑦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소 및 약력 기재서류, 취임승낙서 및 신원증명서 각 1통
 - ⑧ 설립 발기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 회의록, 설립 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⑨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사원명부 1통
 - ⑩ 설립 발기인이 수인인 경우 대표자에 의해 신청되는 때에는 다른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1통

나. 개선방안

- 첨부서류 중 허가심사에 직접 필요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②, ⑨, ⑩에 계기한 서류 및 신원증명서는 삭제
- 정관은 1통으로 축소하고, ⑤의 각종 증명서는 ④항에 입증서류로 통합

5) 임원의 취임승인·승인취소

가. 규제현황

- 민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청소년보호위원회, 통일부, 외교통상부, 교육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은 소관부처 규칙에서 임원 취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나. 개선방안

- 비영리법인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동 승인제를 폐지

6) 수익사업의 운영

가. 규제현황

- 법제처,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은 수익사업의 운영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나. 개선방안

-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허가취소가 가능(민법 제38조)하므로 수익사업 운영과 관련된 승인제 폐지

7) 정관 작성기준

가. 규제현황

- 국가보훈처, 청소년보호위원회,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부처에 서는 정관작성준칙을 마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준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동 준칙은 민법의 보충규정으로서 민원인의 정관작성 편의를 도모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는 등 비영리법인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나. 개선방안

- 정관 작성준칙 중 주무관청의 각종 허가·승인을 얻도록 한 독소조항을 삭제
- 존치여부는 부처 자율에 맡김(존치시 정관작성준칙을 규칙의 「별표」로 첨부)

8) 설립허가의 취소

가. 규제현황

■ 민법상의 취소사유

- 민법은 설립허가의 취소사유로 ①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②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③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를 들고 있음(민법 제38조)

■ 설립허가 및 감독규칙

- 노동부와 환경부(민법 제38조를 준용)를 제외한 여타 주무관청의 규칙에서는 민법상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외에 ①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②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③ 민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④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될 때, ⑤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 달성을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명령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불응한 때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나. 개선방안

- 주무관청의 규칙에 명시된 일체의 허가 취소사유를 삭제하되, 주무관청에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허가조건으로 운용
 - ※ 하위법령인 주무관청의 규칙으로 민법상의 취소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법률을 개폐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법리상 맞지 않음
- 허가취소에 앞서 청문을 의무화

9) 기본재산의 처분

가. 규제현황

- 법제처, 청소년보호위원회, 재정경제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등은 해당 부처 소관규칙에서 정관변경허가 외에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차입시에도 승인을 받도록 규정

나. 개선방안

-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여부 결정시 이를 고려하면 되고, 부당한 거래는 다른 법률(형법 등)으로 다룰 사항이므로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별도의 허가는 폐지

10) 지도·감독

가. 규제현황

- 주무관청에 따라서는 해당부처의 감독권한을 구체화하기 위해 민법상의 규정에 대한 해석규정 내지 보충적 규정을 규칙에 둔 경우도 있으나, 지도·감독권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한 경우도 있음

나. 개선방안

- 서류 및 장부의 비치의무는 실효성이 적고 관계자료 등의 제출요구권으로 보완가능하므로 삭제
- 관계서류 및 장부 등 자료제출 요청범위를 “검사·감독상 필요한 경우”에서 “검사·감독상 불가피한 경우”로 축소
- 감독권 행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허가취소에 앞선 시정명령 발동근거 마련

11) 각종 보고

가. 규제현황

- 모든 부처에서 매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을 보고받고 있으며, 부처에 따라서는 재산이전의 보고, 설립등기 등의 보고, 임원선임(취임) 보고, 해산·청산 종결신고, 재산증가(증감) 보고, 주소변경 신고, 분사무소 설치보고 등을 아울러 받고 있음
- 각종 보고에 대한 주무관청의 활용도는 미흡한 반면 비영리법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

나. 개선방안

- 법인 설립의 전제가 되는 재산이전의 보고·설립등기 등의 보고 및 민법상의 의무인 해산·청산신고만 존치
- 주소 변경신고, 분사무소 설치보고 및 임원선임(취임)보고는 모두 변경등기를 요하는 사

항이므로 설립등기 등 보고로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보고의무 폐지

- 재산의 증감상황 보고는 제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연간 사업실적 등 보고서 재산목록을 함께 제출토록 함

4.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각 주무관청 소관 규칙 개정 : 1999. 12월말

- 붙임 표준안에 의하되 각 부처별로 특수한 여건이 있는 경우 규제신설이 아니고, 개선방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분적인 수정은 가능함

■ 규제등록 사항 정리 : 1999. 12월말

- 개정 규칙에 따라 각부 공통규제(국무조정실)로 등록 · 관리
 - 기 등록된 부처의 규제는 일괄 등록사항에서 삭제

Ⅰ 제4절 Ⅰ

건 설 · 도 시 분 야 규 제 개 혁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제개선방안

* 집필자 : 민용식 사무관(Tel. 3703-2159)

1. 검토배경

-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미집행인 토지의 면적은 1997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약 1,293km²에 달하는 데, 이 중에는 일제시대에 결정된 시설부지도 있음
- 이처럼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해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2. 규제개혁방안

1) 현황

-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 52종류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으로 이를 결정고시하고 있음
- 1997년말 현재까지 도시계획 시설부지로 결정된 토지는 전국적으로 총 2,885.2 k m²(874백만평)인데 이중 55.2%만 설치되고 44.8%는 미집행 상태로 있음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28.5%, 3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6.9% 차지
 - 단위시설별로 보면 공원과 도로가 각각 전체 미집행 면적의 50.7% 및 28.9% 점유
- 지목별로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54.9%가 임야, 25.8%가 농지, 8.2%가 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위 : k m²(%))

구 분	결정 면적	집행 면적	미집행 면적	미집행 면적 내역			
				계	20년 미만	20~30년	30년 이상
계	2,885.2 (100.0)	1,592.7 (55.2)	1,292.5 (44.8)	(100.0)	(71.5)	(21.6)	(6.9)
도 로	850.1 (100.0)	476.7 (56.1)	373.4 (43.9)	(100.0)	(83.2)	(15.1)	(1.7)
광 장	47.0 (100.0)	31.0 (66.0)	16.0 (34.0)	(100.0)	(95.0)	(5.0)	(-)
공 원	924.2 (100.0)	269.1 (29.1)	655.2 (70.9)	(100.0)	(57.8)	(29.6)	(12.6)
녹 지	84.5 (100.0)	24.8 (29.3)	59.7 (70.7)	(100.0)	(83.5)	(15.7)	(0.8)
유원지	127.4 (100.0)	53.4 (41.9)	74.0 (58.1)	(100.0)	(83.2)	(16.5)	(0.3)
기 타	852.0 (100.0)	737.7 (86.6)	114.2 (13.4)	(100.0)	(94.2)	(5.8)	(-)

지, 2.1%가 잡종지로 구성

-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가운데 대지에 대한 사업비는 약 9조원으로 전 체사업비의 14.5% 차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지목별 현황

(단위 : k m², 조원(%))

구 분	전체 미집행 시설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	
	면 적	소요액	면 적	소요액
계	1,292.50 (100.0)	264.89 (100.0)	368.70 (100.0)	62.64 (100.0)
대 지	105.99 (8.2)	38.19 (14.4)	29.88 (8.1)	9.08 (14.5)
농 지	333.47 (25.8)	60.08 (22.7)	81.47 (22.1)	12.36 (19.7)
임 야	709.58 (54.9)	127.85 (48.3)	193.63 (52.5)	32.32 (51.6)
잡종지	27.14 (2.1)	7.33 (2.8)	7.74 (2.1)	1.75 (2.8)
기 타	116.33 (9.0)	31.44 (11.8)	55.98 (15.2)	7.13 (11.4)

2) 문제점

■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주민불만 팽배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에는 장래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지장이 되는 건축물 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엄격히 제한됨
 - 현재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 안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 대상인 건축물 및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의 설치(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자진철거 전 제)만이 허용

※ 건축법상 신고대상 건축물

- 바닥면적 85 m² 이내의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농어업용 소규모주택·축사·창고 등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등

※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 3층 이하이면서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
- 이처럼 행위제한이 엄격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건축물 소유자들은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을 장기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재정의 취약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의 조기집행 난망

- 1997년말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의 집행에는 약 63조원이,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의 집행에는 약 13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현재의 지방재정 여건상 조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미집행 시설 소요사업비 추정

(단위 : 조원)

구 분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1996. 12	130.1	50.8	10.2
1997.12	136.2	62.6	12.3
증가율	4.7%	24.8%	20.5%

■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도시계획 결정의 일방적 해제 곤란

- 도시계획도로(미집행 포함)의 개설을 전제로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은 도시계획이 해제되어 도로가 예정대로 개설되지 않을 경우 재산권 피해 불가피
 - ※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건축물의 2 m 이상이 도로(폭원 4 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포함)에 접하여야 가능(건축법 제 33조)
- 기타 도로 · 공원 등의 설치를 믿고 건축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에 대한 대응 곤란

3) 장기미집행 발생원인

■ 도시의 재정여건 및 사업시행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과도한 시설결정

-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시 사업집행 능력이나 설치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상에 치우친 도시계획시설 결정

■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게 된 시설에 대한 폐지 · 조정 등 신속적 대응 미흡

- 지형상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구간을 포함하고 있거나, 대체도로의 개설 등으로 도시계획 결정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도
-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 조정을 특혜차원으로 인식하거나 이해관계가 엇갈려 민원이 유발될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그대로 두고 있는 등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신속

적 대응 미흡

- 시설로 보기에선 부적절한 도시자연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어 지자체의 부담 가중
 - 도시 자연공원(서울시의 경우 관악산, 인왕산, 청계산 등)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주로 임야로 구성되어 있어 공원시설로서 관리하기보다는 용도지역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함이 타당함에도
 - 이를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과 함께 도시공원으로 취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보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대형사업 우선적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집행시기의 순연
 - 도시계획시설은 그 성격상 지구내 도로, 공원 등 주민의 생활환경과 직접 관련된 시설이 대부분임
 - 서울시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728건 가운데 폭원 12m 미만의 소로가 1,601건으로 92.7%에 달함
 -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개발투자는 주요 간선도로, 공항, 항만, 지하철 등 대규모 기반조성사업에 우선순위를 둬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4) 외국 사례

■ 프랑스 · 영국

-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권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어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재산권 침해의 여지가 없음
 - 프랑스에서는 공공단체가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를 거부할 경우 예정지(terrains réservés)지정이 자동적으로 해제됨
 - 영국에서는 공공단체가 토지매수를 거부할 경우 토지심판소에 이를 제소할 수 있음

■ 일본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장기 미집행 시설이 존재
 - 1996년 현재 도시계획도로의 49%, 공원시설의 53%만이 완료
 - 미완료시설의 상당수가 결정 후 30년 이상 경과
- 국가 및 지자체에 의한 계획적 정비 추진중

- 국가주도 시책

- 도시공원 등 정비 7개년계획(1996~2002) 추진 : 총예산 7조 2,000억엔(국가부담 : 2조 8,000억엔)

- 도로정비 5개년계획

- 동경도의 시책

- 도시계획도로 사업화계획 : 1991~2000년(10년)간 도시계획도로 가운데 우선적으로 정비할 노선을 선정하여 정비 추진

- 도시 정비용지의 선행취득사업 : 도시계획 시설부지내 토지, 보전녹지구역내 토지, 공장이전용지에 대하여 매수 신청된 토지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매수

■ 대만

- 25년 일몰제 채용

5) 개선방안

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타당성 검토 의무화

■ 5년마다 시장·군수의 도시계획 재정비 의무화

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적법상 대(垵)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

-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결정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지적법상 대(垵)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매수대상은 매수결정 후 2년 이내에 매수토록 하고

- 매수대상이 아닌 것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일정한 건축 허용

■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결정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치

- 2001. 12. 31일까지 기존의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태를 전면 재검토
 - 지형조건상 불합리하거나, 대체도로 개설 등 여건변화로 시설설치의 필요성이 감소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결정을 해제 또는 조정

- 2001. 12. 31일 이후 10년 이상 경과시까지 미집행인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중 지적법상 대(垵)에 대하여는 매수청구권 부여

-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매수대상은 매수결정 후 2

- 년 이내에 매수토록 하고
- 매수대상이 아닌 것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일정한 건축 허용

다. 20년 이상 미집행시 자동 실효

-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결정 후 20년이 되는 시점에
서 미집행인 경우 도시계획 결정을 자동 실효토록 함
-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결정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치
 -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20년 경과시까지 미집행인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동 실효

라.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 자연공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상 행위제한 준용

-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용도지구 지정 관리

마. 토지매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 시장·군수가 토지매수시 현금대신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행위규제 완화

- 당해 연도에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경우 일정한 행위는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
 -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
과 이를 위한 형질변경 등
- 3년내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

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추가 발생 억제

-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
 - 실효성이 부족한 연차별집행계획을 보상계획·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
계획으로 개편

6) 기대효과

도시계획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사적재산권 제약을 해소하고 실현가능성 있고 적절한 도시계획 수립 유도

7)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도시계획법 개정 : 2000. 1 (2000. 7. 1일 시행 예정)
- 도시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토지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폐지 : 2000. 7. 1일 시행 예정

. 주택공급 자율성 확대방안

* 집필자 : 민용식 사무관(Tel. 3703-2159)

1. 검토배경

- 1997. 12월 외환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위축되어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급락하고 주택건설경기 침체
 - 주택사업자 등의 부도증가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주택건설업체 종사자의 실업 증가
- 그동안 주택공급관련 규제개혁의 결과 미분양 주택의 감소, 건설인력 고용증대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 주택공급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조치를 추가하여, 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한 실업해소 및 주택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필요

2. 주택시장 실태

- 1980년대 주택보급률이 69.4%에 불과하여 주택공급시 분양경쟁 극심
 - 일부지역에서는 경쟁률이 100 : 1을 초과
 - 주택에 당첨되면 많은 웃돈이 형성되어 주택투기현상 심화
 - 저소득 서민들의 위화감 팽배 등 사회문제화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공급제도상 투기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장치 마련
 - 주택분양가격 통제
 - 주택분양시 채권입찰제 적용
 - 주택공급신청시 배수제 실시
 - 주택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등
- 1997. 12월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 부족, 주택수요 위축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급락
 - 1998년 한해 동안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은 평균 12.4%(서울 14.6%) 하락, 전세가격은 18.4%(서울 22.4%) 하락
 - 일부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30% 이상 하락하는 등 가격하락 현상 지속
 - 주택거래도 매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추가적인 가격하락 예상으로 실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주택건설은 1998년중 306천호가 건설되어 1997년의 596천호에 비하여 51%에 불과

1997 ~ 1998년 주택건설 현황

	1997	1998	증감(%)
• 건설수주(조원)	79.7	47.2	▽40.8
• 주택건설(천호)	596	306	▽48.7
• 건축허가면적(만㎡)	11,337	5,096	▽55.0
• 건설업체부도(개)	1,352	2,103	▲55.5
• 건설취업자(만명)	201	158	▽21.4

- 주택시장이 장기간 침체됨에 따라 국민경제에 어려움 가중
 - 고금리, 자금경색으로 건물소유자의 전세금 차액 마련이 곤란하여 세입자 주거이동 곤란
 - 연쇄적인 거래마비로 전세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악순환

- 분양주택 중도금 납부 부진으로 주택건설 자금난 가중
- 주택건설업체의 대량 도산 우려
 - 미분양 적체로 미회수 자금 과다(4~5조원)
 - 분양률 저조, 중도해약 증가로 주택건설 중단
- 개인 및 건설업체의 부실채권 증가로 주택금융기관 부실화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사고
 -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대위변제 대상이 3조 7백억원에 달하며 신규보증업무 수행 차질

3. 1998년중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주요내용

■ 주택건설 관련

- 주택사업자의 자율적 경영을 조장하기 위하여 주택가격 자율화 및 주택건설규모 제한 폐지
 - 사업자 보유대지에 건설한 주택의 분양가격 자율화
 - 공공택지의 25.7평(85㎡) 초과 주택 분양가격 자율화
 - 주택건설 규모별 비율제한 폐지
- 주택분양자들이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중도금이 미납되어 고율의 연체금을 부담하는 고층과 중도금 미납으로 인한 주택사업자들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매제한 제 폐지
 - 전매제한제도 완화(1998. 8)
 - 분양주택 전매제한제도 폐지(1999. 3)
- 조합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주택조합관련 규제 폐지
 - 주택조합원 자격요건 중 무주택기간, 동일지역 1년 이상 거주,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요건 등 폐지
 - 조합주택 18평 이하 의무건설 비율(20%) 폐지
- 주택건설 촉진을 저해하는 건설관련 각종 규제 폐지 및 완화
 - 주상복합주택의 주택부분 비율 완화(70% 이하 → 90% 이하)
 - 주택건설 사업승인 이전의 사전결정절차 폐지
 - 주택단지의 도로·상하수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건설토록 허용

-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벽체중심선에서 외벽내부선 기준으로 전환하여 주택 수요자 보호

■ 주택건설기준 관련

- 주택단지내 생활편의시설 확대
 - 노래연습장, 세무사 사무소 등
- 주택단지내 안전기준 강화
 - 보도를 설치해야 하는 최소 도로 폭을 8 m 이상으로 확대
 - 어린이놀이터는 도로·주차장으로부터 2 m 이상 이격
- 주택단지내 의무화시설 설치기준 완화
 - 유치원 설치의무 : 1,000세대 이상 → 2,000세대 이상
 - 의무설치 운동시설 종류 확대

■ 주택공급제도 관련

- 주택수요 확대를 위한 규제 폐지 및 완화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폐지
 - 기당첨자, 주택소유자에 대한 민영주택 1순위 제한 폐지
 - 타지역에서 수도권 전입시 청약제한(2년간) 폐지
 - 채권입찰제 폐지
 - 청약배수제 폐지 등

4. 규제개혁방안

1) 주택공급규제 완화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주택공급제도는 주택보급률이 80%에도 미달하여 주택투기가 극심하던 시기에 가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임
- 현재의 주택시장은 주택보급률이 92%를 초과하고 미분양주택이 103천호로서 4~5조 원의 주택건설자금이 회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택사업자의 부도가 대량 발생하고 있어 주택공급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며, 주택시장의 침체를 방지할 경우 주택사업자의 대

량 부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

- 주택가격, 전세가격의 하락으로 전세입주자의 주거이동이 불가하여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계속되어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 주택건설업 및 주택자재산업의 실업증가로 국가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음

나. 개선방안

■ 민영주택 청약자격 완화

- 2주택 이상 소유자도 민영주택 공급시 1순위에 포함
- 20세 이상 청약예금 가입 허용
- 국민주택의 5년간 재당첨 제한기간은 현행 유지

※ 국민주택은 25.7평(85m²) 이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주택임

■ 청약예금 취급기관 다변화

- 청약예금 취급기관을 주택은행에서 시중은행까지 확대

다. 기대효과

- 공동주택 수요측면의 애로요인 해소로 주택시장 활성화 유도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2000. 3 시행 예정

2) 조합주택건설관련 규제완화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 주택조합은 지역조합, 직장조합, 재건축조합으로 분류되고 있음
- 주택건설에 있어 주택조합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무주택자의 자 기집 마련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주택조합원의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되고 있어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조합원의 자격 이 주어지지 않음
- 조합주택은 25.7평(85m²) 이하의 규모로 건설하도록 획일적으로 제한을 함으로써 조 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분양시 주택규모 제한으로 수급애로가 발생하여 조합주택

주택조합의 분류

지역조합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 군에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직장조합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재건축조합	노후 ·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 근거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건설 저해

- 주택조합이 주택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지를 매입하는 경우 조합주택의 건설이 금지되고 있어 조합주택 건설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나. 개선방안

■ 주택소유자의 주택조합 가입허용

- 1단계 :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18평 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까지 확대하고, 주택건설 규모제한(25.7평)은 존치
- 2단계 : 주택소유자에 대한 주택조합 가입제한 폐지, 조합주택 건설규모 제한(25.7평) 폐지, 민영주택에 대한 공급규칙 적용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1999. 12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 조합주택 중 일반분양주택 건설규모 자율화

-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남은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분양하므로 일반분양주택은 건설규모를 자율화
※ 주택건설사업자의 분양주택 건설규모는 자율화되어 있음

■ 주택사업자 보유대지에 조합주택 건설 허용. 다만, 공공개발택지는 제외

-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대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능력이 부족하여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 주택조합에 대지 매각이 가능하며, 주택조합은 조합주택을 건설하고 주택사업자는 자금확보를 하게 되어 타사업 추진 가능
- 그러나 토지개발공사 등이 개발한 공공택지에는 일반분양 주택을 건설하도록 계속 제한하여 장기간 대기하고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을 보호

다. 기대효과

- 주택조합 결성 및 조합주택 건설상의 애로요인 해소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 1999. 12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 : 1999. 12. 7. 및 2000. 3 시행 예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개정 : 2000. 3 시행 예정

3) 주상복합주택 건설관련 규제완화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다만, 20세대 이상이라도 다음의 주상복합주택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로 건설 가능
 - 주택건설지역이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인 경우
 - 주택의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90% 미만인 경우
 - 주택의 규모가 세대당 평균 전용면적 45.5평(150㎡) 이하인 경우
- 주상복합주택은 일반공개분양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규모가 클수록 분양성도 좋으나, 주택건설규모가 제한되어 있어 주택건설사업에 애로요인으로 작용

나. 개선방안

- 주상복합주택 건설규모 자율화
 - 주택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가 자율화되었으므로 주상복합주택 건설규모도 자율화하여 수급상 애로요인 해소
 - 다만,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관리하도록 안전장치 마련
 - ※ 주상복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음

다. 기대효과

- 주상복합주택 공급상 애로요인 해소로 시장수요에 상응하는 공급상의 탄력성 제고 및 시

장 활성화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 1999. 12. 7. 시행

4) 공동주택의 유형제한 완화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 각국의 개방정책으로 우리나라에도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 외국인 등 특수한 계층을 위한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시 특정목적의 주택으로 승인을 받아야 건설 및 공급이 가능함
 -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이들에 대한 주택유형, 건설기준, 공급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이 불가함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유형 및 종류

구분기준	공동주택의 유형
형태에 따른 구분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공급방법에 따른 구분	- 분양주택, 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및 수요자에 따른 구분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 근로복지주택과 사원임대주택

- 현행 주택의 건설기준은 우리 국민의 특성에 맞게 규정되어 주거생활문화가 거실문화인 외국인에게는 맞지 않으며
 - 노인주택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주택건설 기준의 내용과는 달리 노인들의 생활을 도와 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
- 주택의 공급기준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외국인 · 노인 등 특수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
 - 현행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할 경우 외국인등은 분양기회가 없음

- 청약저축·청약예금 가입
- 세대주 청약제도
- 주민등록등본 제출

나. 개선방안

■ 주택유형 신설

- 일반국민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유형과는 별도로 외국인·노인 등에게 우선권을 주는 주택유형을 신설하여 주택건설사업 승인시부터 일반주택과 구별하여 건설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전용주택, 노인전용주택 등

■ 주택건설기준 배제

- 특수계층의 주거생활에 맞는 건설기준을 제시하고 일반주택의 건설기준 중 대부분을 적용 배제
- 주택건설에 자율성이 확대되어 다양한 주택건설이 가능

■ 주택공급제도의 개선

- 외국인도 우리 국민이 적용받는 주택공급체계에 포함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외국인(국내 비거주 외국인 포함)에게 청약예금 등 가입 허용
 - 외국인 전용주택의 경우에는 외국인 우선 청약
 - 외국인의 경우 세대주 개념 배제 후 청약자격 부여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으로 거주사실 증명

다. 기대효과

- 다양한 주택수요에 상응하는 주택공급 가능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 1999. 6. 29. 시행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1999. 9. 29. 시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2000. 3 시행 예정

5) 주택건설기준 완화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주택을 건설토록 되어 있음
 - 공중화장실 등 각종 시설의 설치의무
 -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공공시설의 설치 의무 등
- 주택건설에 있어 각종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주택건설에 자율성이 저해되고, 주택가격의 상승 등 주택건설시 부담으로 작용

나. 개선방안

- 의무설치시설 설치 자율화
 - 저탄시설 설치의무 폐지
 - 연탄사용주택에는 저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의무화 불필요
- 의무설치시설의 개별 시설규정을 의무화시설 부지확보 비율 지정으로 전환하고 시설의 종류는 자율화
 - 공중화장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우체국 등 근린공공시설
- 과도한 건설기준의 개선
 - 공동주택의 공해공장으로부터의 최소거리 제한 개선
 - 수질 : 이격거리 제한 폐지
 - 대기 : 대기환경보전법상 4종 및 5종 배출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 폐지, 다만 악취 또는 대기오염 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이격거리 적용
 - 소음 : 소음발생 시설로부터 공동주택의 주거부분의 거리가 50m 이상인 곳에 공동주택을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주거부분의 소음도가 50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함

다. 기대효과

- 불합리한 주택건설기준을 해소하여 주택사업자와 입주자의 기호에 맞는 시설의 탄력적인 설치 가능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1999. 9. 29일 시행

. 비업무용 토지제도 및 공장업종구분 개선방안

* 집필자 : 민용식 사무관(Tel. 3703-2159)

1. 검토배경

- 기업 등 법인의 투기성 토지보유를 억제하고 기업의 여유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명분으로 비업무용토지 관련제도를 1970년초 이래 도입 · 운용하고 있음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비업무용으로 분류된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
- 그러나 비업무용토지 분류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자의적이어서 비업무용토지 분류자체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21세기의 역동적인 산업발전과 치열해져 가는 국제경쟁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공장설립(입지)승인시의 업종구분이 약 600여개로 세분되어 있는바 유사업종으로의 업종변경시에도 승인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비효율 초래

2. 규제개혁방안

1) 비업무용 토지제도 폐지방안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 1972년 정부는 기업체질 개선과 투기성 토지보유를 억제키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1974년 1월 14일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3호를 발표하여 1년 동안 일반인의 공한지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취득세 7.5배, 재산세 25배 중과세함

- 1974년 5월 29일 정부는 기업의 체질개선과 자금동원에 관한 특별조치를 발표하였는 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불요불급한 토지를 처분토록 하고, 여기서 생긴 자금으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거나 신규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토록 함
- 1975년 1월 1일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사치성 재산, 공한지, 그리고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 신설
 - 이 당시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전, 답, 대지, 임야로 규정
- 1976년 12월 12일 자산재평가법을 개정하여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는 자산을 재평가할 수 없도록 함
 - 이의 구체적 실천방안의 하나로 공업용지의 업무용 범위를 판단키위해 공업입지 원단 위조사를 하고 1977년 12월 31일 공업배치법에 기준공장면적률을 규정
 - 그 이후 1990년 1월 13일 제정된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대로 적용
- 1982년 7월 22일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을, 그리고 1984년 7월 23일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주거래은행으로 하여금 비업무용토지가 담보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거나 이들 토지를 처분유도할 수 있게 하였음
- 1988년 부동산경기 과열로 비업무용토지의 보유에 대한 조세제도가 강화됨
 - 1989년 12월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제정하여 비업무용토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함
- 그러나 최근의 경제위기 타개와 규제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비업무용토지관련 규제가 1997~1998년 대폭 폐지되었으나,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한 일부 규제가 남아 있음
 - 비업무용토지와 관련한 자산재평가 제한, 여신운영규정의 제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비업무용토지의 강제처분에 관한 규제 등은 폐지됨
-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분류기준을 정하고 있음
 - 공장용지의 경우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기준공장면적률을 제시하여 비업무용분류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 비업무용으로 분류된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중과세 등 불이익을 부과
 - 취득세 5배 중과
 - 산업단지 및 공업유치지역에서의 공장건축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조치 제외

- 공장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원칙에서 제외
- 토지수용법, 국민투자기금법 등에 의한 채권보상 대상

※ 근거 : 지방세법 제112조, 제27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 제15조, 공장입지기준고시 등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일정기간(3~5년)내에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
-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
-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서 법에서 용도 지역별로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일부 특정한 용도의 경우 그 용도에 대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할 경우
 - 연수원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 휴양시설업용 토지,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전용휴양소용 토지,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 야적장, 염전용 토지 등
- 법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연평균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토지
- 농업, 축산업 또는 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로서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임야를 취득한 후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연평균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이상인 경우 등

■ 비업무용 공장용지의 범위(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기준공장면적률

구 분	주 요 내 용
기준 공장면적률	(공장건축면적/공장용지면적)×100
기준공장면적률의 산정범위	- 공장건축면적에는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와 기계 혹은 장치가 설치된 옥외사업장의 수평투영면적 -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 신고일로부터 4년 이내의 공장건축계획분 포함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예시

표준산업분류 번호	업 종 명	기준공장 면적률(%)
15111	도축업	15
15124	수생동물 냉동품 제조업	30
15491	커피가공업	15
17177	면 및 마직물 직조업	20
20295	주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15
21092	노트·앨범 및 유사제품 제조업	30
22110	서적출판업	30
23300	핵연료 가공업	15
25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0
28937	일반철물 제조업	25

* 자료 : 공장입지기준고시 별표1에서 일부 발췌

- 공장용지의 경우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업종별로 정한 기준 공장면적률에 미달할 경우 비업무용으로 분류
- 기업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충분한 용지를 확보해야 할 경우도 있으나, 모호한 기준(규제)에 의한 비업무용토지의 분류와 그에 따른 중과세 등으로 기업의 입지확보에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제는 21세기 산업의 역동적인 발전과 진화 과정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제의 개선·철폐가 요구되고 있음
- IMF사태 이후의 국내외 경제환경에 따른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와 우리나라 경제체제를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맞추어 가기 위해 대부분의 관련 법령에서 비업무용토지분류 자체를 없애고 있으나,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한 소수 법령에서는 비업무용토지 관련규제를 유지하고 있음
-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특례제한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에서 비업무용토지라는 용어와 그와 관련된 규제들이 최근 폐지되었으며, 토지초과소득이득세법은 법 자체가 없어짐

- 토지지가 상승우려를 이유로 비업무용토지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지가상승을 주도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경제성장, 소득증가, 도시화·산업화추세 및 거시경제적 유동성 과다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음
 - 더구나 앞으로는 경제성장 및 도시화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거시경제정책이 적절히 운용될 경우 과거와 같은 전반적 토지가격 급등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함
 - 만약 토지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도 비업무용토지제도로 가격상승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비업무용토지제도를 통해 토지가격안정을 기하는 효과보다는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더 큰 문제로 대두될 것임

나. 개선방안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제도를 완전 철폐토록 하되, 2001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행정자치부가 지방세법 등 관련 세제를 개선토록 함
- 단, 비업무용토지제도의 폐지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경과조치로서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공장용지 기준면적을 기존보다 50% 확대
 - ※ 현행 기준공장면적률을 2/3 축소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기 시행중인 예비면적분도 추가인정분(100%)에 포함시켜 산정함(1999년 하반기)

다. 기대효과

- 기업활동의 자율성 및 효율성 증대
 - 기업들은 중장기 전망과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한 양의 토지를 적정한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이 보다 효율화될 것임
 - 과거와는 달리 수익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기업경영환경과 여신 건전성을 강조하는 금융기관의 행태 변화로 기업들에 의한 과다토지 보유현상은 앞으로는 크게 대두되지 않을 것임
- 외국기업 국내투자여건 개선
 - 국제적인 기준에 부적합한 비업무용토지제도가 폐지되고, 취득세 등 관련세제가 단순화되면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임

- 국내 투자에 관심이 있는 외국기업들은 우리나라의 복잡한 지방세체계와 높은 취득 관련 세 부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세입의 변화

-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분으로 1990~1993년에는 연간 700억원 내외, 1994~1995년에는 연간 약 900억원, 1996~1997년에는 1,500여억원이었으나, 비업무용토지제도가 폐지될 경우 이러한 취득세 중과분이 더 이상 징수될 수 없음
 - 1996년과 1997년의 총 지방세입액은 각각 17조 4천억, 18조 4천억으로 취득세 중과분이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8~0.9%정도임
- 그러나 비업무용토지제도의 폐지로 국내기업뿐 아니라, 외국기업에 의한 토지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취득세의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비업무용토지의 구분이 없어지고, 모든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할 경우, 전체적인 세입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부과실적

연 도	부 과 금 액(백만원)
1980	12,874
1990	69,409
1991	69,796
1992	66,081
1993	73,157
1994	91,716
1995	90,942
1996	158,359
1997	151,924

- 세입의 증감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보다 확실한 전망은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나, 만약 전반적인 세수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종합토지세율 등의 조정을 통해 세수부족분을 보충해야 할 것임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장기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개정 : 2001. 1월 시행 예정
- 기타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는 법령(토지수용법, 국민투자기금법 등)도 후속조치로 개정 추진

■ 단기

- 공장입지기준 고시 개정 : 1999. 12. 16일 시행

2) 공장설립시 업종구분 단순화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 공장설립시 적용되고 있는 현행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에 따르고 있고 업종변경시도 이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 비슷한 공정의 유사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도 업종변경 절차를 거치게 되는 등 낭비요소가 발생

※ 근거조항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 시행령 제19조, 동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7조의 2

나. 개선방안

■ 1단계

- 공장업종 변경시 적용되는 업종구분을 약 600개(5단위)에서 200여개(4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는 5단위로 운용)로 단순화하고(첨부자료-3 참조), 업종변경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
 - 다른 법률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승인제 유지

■ 2단계

- 일부 환경유해업종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일부 경우만 제외하고 공장설립과 관련한 업종구분을 완전통합 단순화하거나, 소수 업종변경대상만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방안 마련

다. 기대효과

- 공장업종 변경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및 경영다각화 등 기업의 장기발전전략 수립

용이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1999. 8. 9일 시행
- 공장입지기준 고시 개정 : 1999. 12. 16일 시행

. 민간건축물 공사감리관련 규제개혁방안

* 집필자 : 민용식 사무관(Tel. 3703-2159)

1. 검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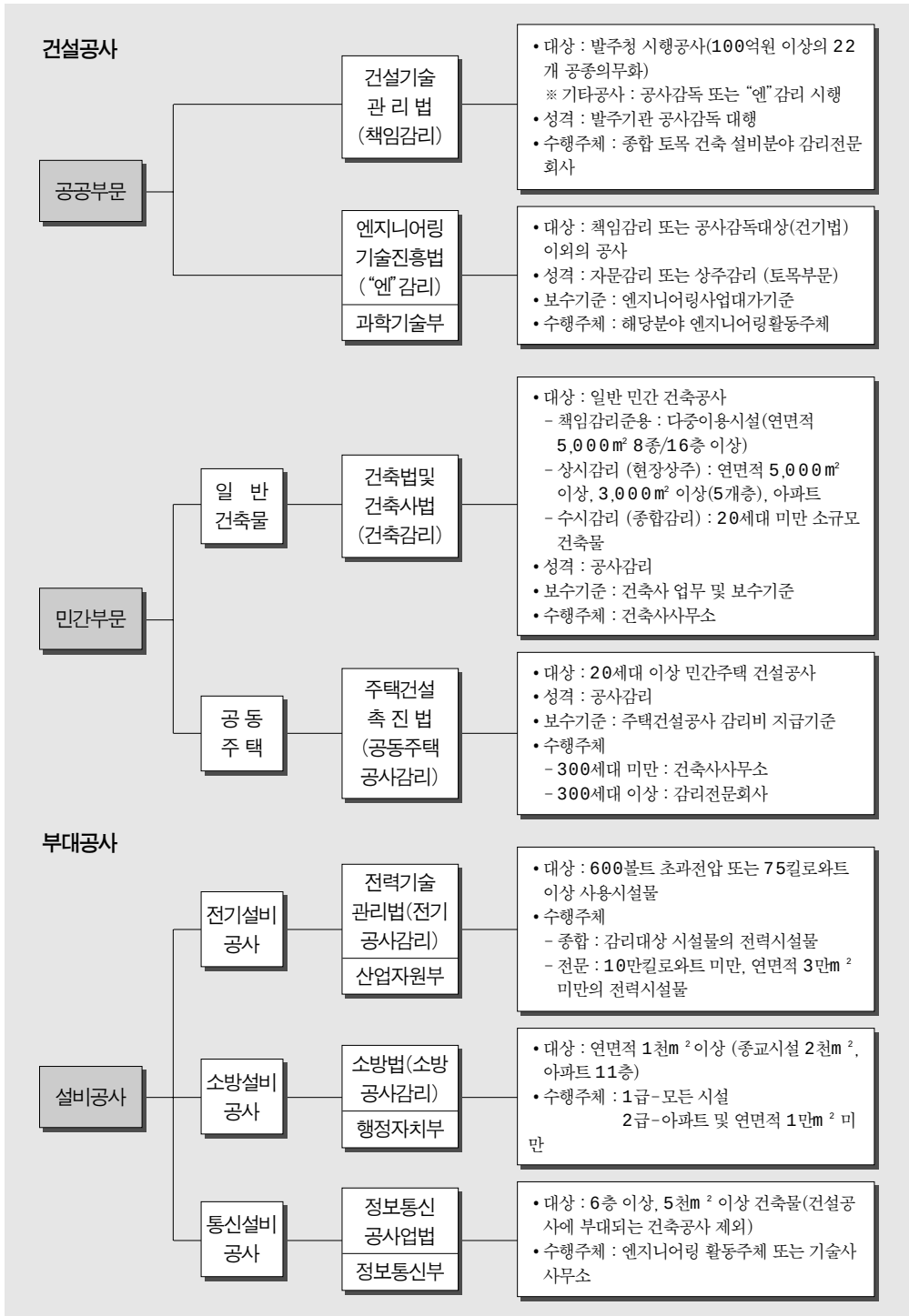
-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다중이용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감리전문회사가 각각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 씨랜드 화재사고 등을 통하여 공사감리의 부실사례가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감리업체 선정과정에서 덤핑입찰이 속출하는 등 공사감리의 질적 수준을 의심케 하는 행태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어서
- 비용의 증가를 가능한 한 억제하면서 건축물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감리방안을 모색함

2. 공사감리제도 현황

1) 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요

- 공사의 종류에 따라 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법 등 근거법이 다기화되어 있음
- 공공발주 공사 가운데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철도·공항 등 22개 공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책임감리제도 시행

건설공사의 종류별 감리제도 현황



- 민간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일반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상이한 감리제도 운용
- 기타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소방·통신설비공사에 대한 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소방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각각 별도 규정
- 본 안건에서는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한 민간발주의 건축공사감리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함
- 다기화된 감리 관련법령의 일원화 및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제도 검토는 2000년 핵심과제로 추진 예정

2) 민간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 감리제도 현황

가. 공사감리의 정의

-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

나. 공사감리 대상 건축물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 및 신고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건축물의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건축허가의 대상〉

- 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 ② 고속국도 및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m 이내의 구역,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 이내의 구역 기타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 ③ 위 ①, ②의 지역 또는 구역 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이 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신고의 대상〉

-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②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인 주택, 연면적이 200m^2 이하인 창고, 연면적이 400m^2 이하인 축사, 연면적이 400m^2 이하인 작물재배사
 - ③ 대수선
 - ④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m^2 이하인 것
 - ⑤ 기타 연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 m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산업촉진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m^2 이하인 공장

다. 공사 감리자의 지정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 건축주가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 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함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

-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text{m}^2$ 이상인 건축물
- ② 16층 이상인 건축물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권자(시장, 군수 등)가 감리자 지정

- 감리자의 자격 : 300세대 미만은 건축사, 300세대 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 감리자 지정방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함께 심사하는 적격심사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의 개요〉

- 종합평점이 7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
- 세대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기술능력(점수)	가격(점수)
300세대 미만	20	30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	70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80	70
1,000세대 이상	50	30

라. 공사감리업무의 수행방법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 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m^2 이상
 - ② 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m^2 이상
 - ③ 아파트 등의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보 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1천 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특급 또는 고급감리원, 1천 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특급감리원) 1인은 감리대상공사의 전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 배치
 - 건축·토목·기타 설비 등 분야별 보조감리원은 당해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 배치

마. 업무내용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공사감리

- 공사착공 전
 - ①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여부 확인
 - ② 공정표의 검토
 - ③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 공사착공 후
 - ①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 ②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 확인
 - ③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
 - ④ 공정표의 검토
 - ⑤ 상세 시공도면의 검토 · 확인
 - ⑥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 검토 · 확인
 - ⑦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 확인
 - ⑧ 설계변경의 적합여부 검토 · 확인
 - ⑨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 ⑩ 공사비 지불 심사 확인
 - ⑪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사감리

- ① 시공계획 · 공정표 및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 ②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 · 확인
- ③ 구조물의 위치 ·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 · 확인
- ④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 확인
- ⑤ 품질관리시험의 계획 · 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 확인
- ⑥ 누수 · 방음 및 단열에 대한 시공성 검토 · 확인
- ⑦ 재해예방 및 시공상의 안전관리
- ⑧ 설계도서의 당해 지형에 대한 적합성 및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
- ⑨ 공사착공계, 중간검사신청서, 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신청서 적정성 검토
- ⑩ 착공신고시 제출한 “건설폐자재 재활용 및 처리계획서”의 이행여부
- ⑪ 기타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

바. 감리자에 대한 감독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태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평가해야 하며, 감리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3. 규제개혁방안

1)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폐지

가. 현황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고시(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6 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7 제1항,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 감리대가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결정되며, 입찰기준금액(예정가격)은 총공사비의 2.5%로 함
 - 소요 감리인·월수의 산정은 다음 표와 같음

총공사비 (억원)	20 이하	20~30	30~50	50~ 100	100~ 200	200~ 300	300~ 500	500~ 1,000	1,000~ 2,000	3,000 이상
감리인 · 월	8.5	12.3	20.2	39.3	76.1	113.3	183.0	328	599.2	764.2

나. 문제점

- 공사의 난이도, 사용공법, 발주자 및 시공자의 기술력 등에 따라 감리수요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입찰기준금액 및 감리인·월수의 적용으로 과다·과소 감리원 투입 초래
- 주택건설촉진법 개정(1999. 2. 8)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1999. 10. 20)으로 도배·도장·조경공사 등 13개 공종이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기준금액 및 소요 감리인·월수는 종전과 같아 혼선 초래
 -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공사라 하더라도, 계약에 의하여 감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분야별로 감리원을 배치할 공사에서 제외되는 공사의 범위

분 야	공 종	공사의 범위
토 목	조경공사	조경구조물, 식재, 조경시설물, 휴게시설, 놀이시설, 안내표지시설, 잔디심기 공사 등
	부대시설공사	담장, 난간, 방음벽, 적벽돌 방음담장, 출입문, 시멘트블록 방음담장, 낙서방지철타공사 등
건 축	공동가설공사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세륜시설, 가설전기, 가설용수, 가설도로 공사 등
	가시설물공사	가시설물, 비계, 규준틀, 리프트, 안전시설물설치 공사 등
	가구공사	신발장, 수납장, 붙박이장 공사 등
	유리공사	보통유리, 복층유리, 접합유리, 강화유리 공사 등
	타일공사	타일 공사
	돌공사	돌깔기, 석재판, 테라조판 붙이기 공사 등
	도장공사	건물내부·외부도장 공사 등
	도배공사	도배공사
	주방용구공사	주방용구설치 공사
	기타공사(잡공사)	수취함 설치, 표시판 설치, 무전원흡출기 설치 공사 등
기계설비	위생기구공사	각종수전류, 세면기, 양변기, 소변기, 욕조, 수건걸이, 화장경 공사 등

로 현재의 획일적 감리비 지급기준은 존재 의의 상실

다. 개선방안

-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관련단체(협회 등) 주관으로 자율적 기준 마련
 - 공종별·규모별·공법별로 표준적 소요감리원 수 및 업무내용을 정하고
 - 법적 의무감리 대상 공종 이외의 감리대상 공종 선택 및 감리비는 감리자와 사업주체 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
- 분양공고의 내용에 감리자, 감리공종 및 감리비 포함

라. 기대효과

- 확실적인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폐지하여 건설사업자와 감리업자 간의 시장 기능에 의한 가격설정 가능

마.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고시 폐지 : 2000. 12월 시행 예정

2) 공동주택 감리자 선정방식의 개선

가. 현황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시장·군수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입찰방식으로 감리자를 선정하는데(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6, 동법시행령 제34조의 6 제5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1999. 10. 20일 이전에는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감리자에게 입찰자격을 부여하되, 입찰자격을 득한 감리자 가운데서 최저가로 응모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였음
- 그 결과 1999. 1~9월 사이에 입찰된 민간업자가 시공하는 전국 242개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60%에 해당하는 144개 공사의 감리가 예정가격의 40% 미만에서 낙찰되었으며, 1원짜리 낙찰건수도 동기간 34건에 달하였음

낙찰율별 감리자 선정현황(1999. 9. 20 현재)

(단위 : 건(%))

계	50% 이상	50~40	40~30	30~20	2~10	10% 미만
242 (100.0)	71 (29.3)	27 (11.2)	23 (9.5)	20 (8.3)	36 (14.9)	65 (26.9)

-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을 개정하여 입찰방식을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는 적격심사입찰제로 전환(1999. 10. 20)
- 종합평점이 7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
- 세대규모가 클수록 기술력에 대한 평점이 상대적으로 높음

규모별 적격심사기준

세대구분	심사항목	항목별배점	점수산정식
300세대 미만	기술능력	20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20\text{점}$
	입찰가격	80점	• 평점 = $80 -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1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300~500	기술능력	30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30\text{점}$
	입찰가격	70점	• 평점 = $70 -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3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500~1,000	기술능력	50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50\text{점}$
	입찰가격	50점	• 평점 = $50 -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1,000세대 이상	기술능력	70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70\text{점}$
	입찰가격	30점	• 평점 = $30 -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점수 산정기준

구분	배점	평가항목별 배점
계	100	
감리자 평가	40	재정상태 견실도(14), 감리업무 수행실적(13), 행정제재 여부(10), 설계용역 수행여부(3), 상훈가산(3), 품질가산(1.5), 지역가산(5), 부당행위 감리자에 대한 감점(-5)
책임감리원 평가	30	해당분야 등급(18), 감리업무 수행실적(10), 행정제재 여부(2), 상훈가산(2)
보조감리원 평가	30	3인에 대하여 각각 해당분야 등급(6) 감리업무 수행실적(3), 행정제재 여부(1), 상훈가산(1)

나. 문제점

- 적격심사입찰제의 도입으로 1원짜리 낙찰은 막을 수 있으나 일부 공사의 경우 낙찰률 63%의 저가낙찰 가능성 상존
 - 1,000세대 이상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에서 만점(70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확실하게 감리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격점수를 5점만 받을 수 있는 예정가격 대비 63%가격으로 입찰할 수밖에 없음

입찰사례(예시)

기술능력평가점수	필요 가격점수	입찰가격/예정가격
45	30	88%
46	29	87%
47	28	86%
48	27	85%
49	26	84%
50	25	83%
51	24	82%
52	23	81%

기술능력평가점수	필요 가격점수	입찰가격/예정가격
53	22	80%
54	21	79%
55	20	78%
56	19	77%
57	18	76%
58	17	75%
59	16	74%
60	15	73%
61	14	72%
62	13	71%
63	12	70%
64	11	69%
65	10	68%
66	9	67%
67	8	66%
68	7	65%
69	6	64%
70	5	63%
가격점수 평가산식	$30 -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감리의 질은 투입되는 감리원의 자질 및 성실도에 의하여 주로 결정되는 것으로, 저가낙찰은 감리원의 질적 저하 및 불성실을 초래할 개연성이 아주 높음
-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사의 난이도나 사업자의 기술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총 공사비의 2.5%를 입찰기준가격(예정가격)으로 정함으로써, 입찰기준가격이 적정가격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낙찰률이 낮다고 하여 반드시 저가낙찰로 볼 수도 없음

다. 개선방안

- 사업주체가 예정가격을 자율 책정케 하고, 적격심사 종합평점을 상향조정함
 - 사업주체가 공사계획에 근거, 표준적 감리자가 표준적 방법에 의하여 공사감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예정가격을 적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즉, 감리자 지정권자)가 이를 조정토록 함
 - 종합평점이 7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는 현행방식에서 종합평점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낙찰률 제고
- ※ 공공 발주공사의 적격심사 종합평점 기준은 현재 85점임

라. 기대효과

- 공사감리의 낙찰률을 제고하여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감리 예방

마.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 2000. 12월 시행 예정

Ⅰ 제5절 Ⅰ

단체 · 자격제도 개혁

· 전문자격사관련 규제개혁

* 집필자 : 이재홍 과장(Tel. 3703-2153)

1. 추진경과

1) 검토배경

전문자격사 제도는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로 대국민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격취득, 법인설립 등에 규제를 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로 인한 경쟁제한 등의 폐해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규제개혁 기본방안 심의 의결

가. 제27차 규제개혁위원회(1999. 4. 9)

- 전문자격사 관련 자격취득, 공무원 경력인정, 법인설립 · 운영 등 규제개혁방안을 확정하고, 각 부처는 개혁방안에 의한 부처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토록 함

- 재정경제부 및 노동부 등 6개 기관의 부처별 정비계획 제출

나. 제34차 규제개혁위원회(1999. 7. 16)

- 각 부처별 규제정비계획을 기본으로 한 규제개혁 항목별 세부방안을 상정하여 자격시험 제도 개선, 공무원 경력인정 제도, 법인설립 및 영업활동 관련 규제개혁안 의결
 - 공무원 자동자격 부여 폐지에 따른 경력자에 대한 과목 면제는 2차시험 중 시험 과목 수의 50%가 넘지 않도록 함
 - 다만, 특허청에 재직중인 박사·기술사 특별채용자는 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의거 시험과목을 추가면제할 수 있으나 전부면제는 불가
- 각 부처에서 제출한 선발예정 인원의 확대폭이 너무 적으므로 인원 확대방안을 분과위원회에서 재논의하여 결정토록 함

다. 제39차 분과위원회(1999. 8. 20)

- 5년 이내에 자격사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인회계사·관세사는 매년 전년 선발인원의 20% 이상 확대 선발
 - 세무사·변리사·감정평가사·노무사는 매년 전년 선발인원의 30% 이상 확대 선발

2. 전문자격사관련 규제개혁방안(제27차 1999. 4. 9)

1) 자격시험제도의 개선

가. 중장기방안 : 2002년 이후

- 모든 시험을 자격시험제도로 전환하고 자격사의 수급조절은 시장기능에 맡기도록 함
 - 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의 선발 예정인원 사전결정제도를 폐지하고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점수 취득자 합격
 - 시험의 난이도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을 검증하는 수준으로 조정

나. 단기방안 : 2001년까지

- 매년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 하되
 - 시험난이도, 수급상황 등을 고려 2001년까지의 연차별 선발 예정인원을 공고
- 관세사·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는 배출 자격사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축성있게 운용
- 각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장인 자격사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 자격사 제도 개선 추진
 - 각 위원회는 개별법령에 구성, 기능, 권한 및 의결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
 - 위원회에는 소비자 또는 시민대표, 대학교수 등 민간인사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회의운영을 투명하게 하며 정해진 기준은 공개
 - 위원회는 선발 예정인원 등 배출 자격사 수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의 결정, 시험의 일부 면제, 유사경력 인정 등 자격취득과 관련한 전과정을 심의, 결정함
 - ※ 선발예정인원은 자격사별 수급상황, OECD 회원국들의 자격사 1인당 국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각 자격사별 시험주기는 매년 1회 이상으로 정례화
 - 단, 행정사는 시험 실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00년말까지는 현재 제도를 잠정적으로 운용하되, 2001년부터는 행정사자격을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인정자격으로 전환 하는 등 개혁방안을 마련·추진(예 : 번역행정사 등)

2) 공무원 경력인정제도 개선

가. 공무원 자동 자격부여제도를 시험과목 일부면제 제도로 개선

- 2000년까지 시험을 통한 자격사가 자동자격 부여자보다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2001년부터는 시험과목 일부면제 제도로 개선

나. 시험과목 일부면제 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 자격사심의위원회(가칭)에서 경력인정 기준 등을 심사하여 시험과목을 면제하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타 관련 직종의 경력인정제도 도입 검토

다. 경력인정시 경력자의 보직경로, 해당분야 관련 학위취득 등을 고려해서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규정

- 단, 2차시험의 면제과목 수는 총 시험과목 수의 50%가 넘지 않도록 함

3) 법인설립 및 영업활동관련 규제의 개혁

- 법인 설립시 보유자격사 수를 적절히 하향조정
 - 공인회계사 : 자격사 20명 → 10명 이하
 - 감정평가사 : 자격사 30명 → 10명 이하
- 법인(합동사무소 포함)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자격사의 상주의무는 부과
- 보유직원 수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
- 전문자격사 수에 따른 수임한도 제한을 폐지
- 기타 관련 규제
 - 사무소 전용면적기준 폐지(공인노무사, 행정사)
 - 사무원 채용 승인제 및 사무원 등록료 폐지(행정사)

3. 부처별 자체정비계획안 및 규제개혁방안

전문자격사에 대한 진입규제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현행보다 많은 수의 자격사가 배출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을 촉진하고, 법인의 설립과 영업활동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 및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1) 자격시험제도의 개선

가. 중장기방안으로 2002년 이후 자격시험제도로 전환

■ 부처 개선안

자 격 별	규 제 개 혁 방 안
세 무 사	2002년부터 절대평가제 전환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구성된 후 결정
공인회계사	중장기적으로 선발예정인원 폐지 및 절대평가제도 도입방안 검토
변 리 사	2001년부터 선발인원공고제를 폐지하고 자격검증시험으로 전환

※ 변리사는 규제개혁방안에 부합되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는 구체적인 내용 미제출

■ 검토의견

-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 2002년 이후에는 전문자격사 확대를 위해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점수 취득자는 합격하기로 한 결정의 이행이 곤란한 이유가 없으며
 - 세무사의 경우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후 동 위원회에서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요, 외국 의 예, 납세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하나 절대평가제도의 전환은 현재 결정하고 세 부내용은 위원회 구성 후 심의하면 될 것임

■ 규제개혁방안

- 선발예정인원 사전결정제도를 폐지하고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60점 이상 점수 취 득자는 합격토록 하며, 시험 난이도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검증 수단 으로 조정함
 - 세무사, 공인회계사 : 2002년부터
 - 변리사 : 2001년부터

나. 선발인원

〈기본방향〉

- 선발예정인원은 대폭 확대하여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을 통해 서비스 향상
- 외국의 국민대비 자격사 수, 국내 자격사 수요 등을 감안하여 선발인원 확대

- 5년 후의 자격사 수가 선진국 평균에 근접되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비율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선발
- 향후 자격사시험은 일정점수 이상 취득자 전원에게 자격을 부여하므로 자체 자격사심의위원회에서 자격사시험제도의 운영기준을 적절히 조정하는 등으로 선발인원 확대방향에 부합토록 함

① 공인회계사

■ 주요국과의 자격사 1인당 국민 수 비교

구분	미 국	일 본	독 일	프랑스	선진국 평균	한 국
자격사 수	318,829	12,559	21,414	26,415	—	4,677
자격사당 국민 수	808	9,934	3,846	2,222	4,202	9,920

■ 연도별 선발인원 및 부처 선발계획

선 발 인 원				선발예정인원	
1996	1997	1998	1999	2000년	2001년
356	453	511	500(예정)	550이상	전년이상

■ 검토의견

- 학계 등에서 우리나라 회계사의 적정 수를 연구한 결과는 없으나 선진국에 비해 자격사 수가 1/2에도 못미치므로 대폭 확대가 필요함
- 향후 5년 이내에 선진국 평균 수에 달하기 위해서는 매년 20% 이상 확대선발 필요
 - 향후 5년간 매년 20% 이상 확대선발시 자격사 수는 9,640명
자격사 1인당 국민 수 4,860명으로 선진국 수준에 접근
 - 향후 5년간 20% 확대 가정시 선발 최저인원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500명	600명	720명	864명	1,036명	1,243명

② 세무사

■ 주요국과의 자격사 1인당 국민 수 비교

구 분	일 본	독 일	선진국 평균	한 국	비 고
자격사 수	63,719	59,000		3,975	미·불의 세무사 관련
자격사당 국민 수	1,958	1,395	1,676	11,788	업무는 회계사가 담당

■ 연도별 선발인원 및 부처 선발계획

구 분	선 발 인 원				선발예정인원	
	1996	1997	1998	1999	2000년	2001년
시 험	250	306	301	300(예정)	400이상	450이상
경 력	24	112	122	120(예정)	120	-

■ 검토의견

- 세무사 1인당 국민 수는 일본·독일의 1/7에 불과하며, 변호사·회계사로서 세무사 자격등록자를 포함해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독일의 1/4에 불과함
- 확대 선발인원 확대 수준 검토

확대선발 폭	1999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누 계
20% 확대	420	504	604	725	870	1,045	8,143
30% 확대	420	546	710	923	1,200	1,559	9,333
40% 확대	420	588	823	1,152	1,613	2,258	10,829

- 1999년과 2000년은 자동자격 부여대상자 중 자격 미취득자의 자격취득이 집중되어 예년에 비해 약 200명 정도의 추가취득이 예상됨

■ 선발인원 확대 후 선진국 대비 비교

- 현재 세무사로 등록된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중 세무사가 차지하는 비율 58.6% 적용
- 매년 30% 확대선발시 9년 후 선진국 평균수준 도달

확대 폭	세무사 누 계	변호사 · 회계사로서 사무사 등록 포함 추계	1인당 국민수	선진국 평균 대비
20% 확대	8,143	13,895	3,372	1/2
30% 확대	9,333	15,926	2,942	1/1.76
40% 확대	10,829	18,479	2,535	1/1.5

- 선발인원의 급격한 확대시 자질저하 및 운영상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시 30% 확대가 적절하다고 봄

③ 변리사

- 주요국과의 자격사 1인당 국민 수 비교

구 분	미 국	일 본	독 일	프랑스	선진국 평균	한 국
자격사 수	21,071	4,234	1,714	730		598
자격사당 국민 수	12,714	29,806	47,900	80,274	42,673	76,755

- 연도별 선발인원 및 부처 선발계획

구 분	선 발 인 원				선발예정인원	
	1996	1997	1998	1999	2000년	2001년
시 험	60	71	80	80(예정)	100명	미제출
경 력	17	9	6	10(예정)	10명	-

- 검토의견

- 우리나라의 국민 수 대비 변리사 수는 선진외국에 비해 1/2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가 필요함
- 향후 조속히 선진국 평균 수에 도달하고, 변리사 수의 조기확대가 산업기술 발전에 요긴한 점 및 매년 선발인원이 과소한 점을 감안하여 매년 전년 선발예정인원의 30% 이상 선발 필요

- 향후 5년간 매년 30% 이상 확대선발시 자격사 수는 1,745명, 자격사 1인당 국민 수는 26,852명으로 선진국 평균수준 상회
- 향후 5년간 30% 확대선발 최저인원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90명	117명	152명	197명	257명	334명

④ 관세사

■ 주요국과의 자격사 1인당 국민 수 비교

구 분	일 본	독 일	선진국 평균	한 국	비 고
자격사 수	8,000	5,226		575	독일 · 프랑스는
자격사당 국민 수	27,777	34,443	31,110	78,260	제도없음

■ 연도별 선발인원 및 부처 선발계획

구 분	선 발 인 원				선발예정인원	
	1996	1997	1998	1999	2000년	2001년
시 험	13	15	56	예정인원 없음	50~100명	100~150명
경 력	52	46	80	80(예정)	80명	-

■ 검토의견

- 자격사 1인당 국민 수가 선진국의 1/2미만으로 대폭 확대선발이 필요함
- 향후 선진국 평균 수에 도달하기 위해 매년 전년 선발인원의 20% 이상 선발 필요
 - 향후 4년간 매년 20% 이상 확대선발시 1,617명, 자격사 1인당 국민수는 28,978명으로 선진국 평균수준 상회
 - 향후 5년간 20% 확대 가정시 선발 최저인원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40명	168명	202명	242명	290명	348명

⑤ 감정평가사

■ 주요국과의 자격사 1인당 국민 수 비교

구 분	미 국	일 본	선진국 평균	한 국자격사 수
자격사 수	33,570	5,536		1,465
자격사당 국민 수	8,000	22,500	15,250	29,000

■ 연도별 선발인원 및 부처 선발계획

선 발 인 원				선발예정인원	
1996	1997	1998	1999	2000년	2001년
100	101	100	예정인원 없음	100명 이상	미제출

■ 검토의견

- 자격사 1인당 국민 수는 미국·일본에 비해 1/2을 약간 넘는 수준이므로 대폭 확대선발이 필요함
- 향후 5년 이후에 선진국 평균수에 도달하기 위해 매년 전년 선발인원의 30% 이상 선발 필요
 - 향후 5년간 매년 30% 이상 확대선발시 자격사 수는 2,742명, 자격사 1인당 국민 수는 17,089명으로 선진국 평균수준 접근
 - 향후 5년간 30% 확대 가정시 선발 최저 인원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00명	130명	169명	220명	286명	372명

⑥ 노무사

■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 노무사와 유사한 제도가 없음

- 미국·독일·프랑스는 변호사가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일본의 경우 '사회보험 노무사'가 있으나 우리나라 노무사와 업무대상, 영역, 성격이 달라 비교가 어려움
- 노무사 업무수요를 감안한 적정인원에 관한 연구가 없었고 개업 자격사 수 및 매년 선

발인원이 과소함

- 1985년 제도도입 후 자격취득자 729명

- 1999. 7월 현재 개업자 198명, 현직공무원 130명, 회사 등 취업자 75명, 기타 326명

■ 연도별 선발인원

구 분	선 발 인 원				선발예정인원		비 고
	1996	1997	1998	1999	2000년	2001년	
시 험	-	43	37	예정인원 없음	미제출		96년 이전 격년선발
경 력	96	0	49	50(예정)	50(예정)	-	

■ 검토의견

- 노동부에서도 선발인원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고 선발 총인원이 과소하므로 확대선발이 필요함
- 향후 5년간의 선발계획은 전년 선발인원의 30%이상 선발을 권고 필요
 - 향후 5년간 매년 30% 이상 확대선발시 자격사 수는 1,877명으로 1999년에 비해 2.6배가 됨
 - 향후 5년간 매년 30% 확대 가정시 선발 최저인원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90명	117명	152명	198명	257명	334명

〈규제개혁 방안〉

- 각종 자격사 수, 선진국 자격사의 국민 대비 수, 매년 선발인원 수 등을 감안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자격사 수를 선진국 수준 으로 확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선발인원 수를 확대하고 선진국 수준 달성 후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
 - 공인회계사, 관세사는 매년 전년 선발인원의 20% 이상 확대 선발
 -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노무사는 매년 전년 선발인원의 30% 이상 확대 선발
- ※ 향후 자격사 선발인원 등 자격사제도 운영이 규제개혁 기본방향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별도의 대책방안을 강구할 계획

다. 자격사심의위원회 구성

■ 부처 개선안

자 격 별	규 제 개 혁 방 안
세 무 사	• 세무사자격사심의위원회 설치(현행 시험위원회 기능 흡수) - 위원장 국세청장, 10인 이내 위원 중 5인을 소비자·시민대표·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권한으로 선발방법 및 예정인원 결정, 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심의
관 세 사	• 관세사심의위원회(가칭) 설치 - 위원장 관세청장, 위원 8명 중 학계대표·업계대표 등 민간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권한으로 시험에 관한 사항, 제도발전에 관한 사항 등 심의
공인회계사	• 현행 시험위원회를 두고 있음 - 재경부 훈령으로 시험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선발예정인원, 일부 자격사 인정,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 심의
감정평가사	• 현행 감정평가사시험위원회에 자격사심의위원회 기능통합 운영 - 위원장을 건교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위원 8인 중 5인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위원회 권한으로 시험에 관한 사항,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 자격사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은 노동부 기획관리실장, 위원 6인 중 4인은 공인노무사회, 근로자단체, 사용자 단체, 변호사회 추천자로 하고 위원회 기능으로 시험에 관한 사항, 유사경력 인정범위 등으로 함
변 리 사	• 현행 시험위원회를 자격사심의위원회로 확대개편 -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 위원은 교수·변리사·발명가 대표 등 민간인을 50% 이상 참여토록 하고 선발인원, 합격자결정, 시험면제, 경력인정 기준 등 심의

■ 검토의견

- 공인노무사, 변리사는 노동부 기획관리실장과 특허청 차장을 시험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자격사 대폭 확대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위원장은 기관장으로 함이 적절
- 공인회계사는 재경부 훈령으로 시험제도개선위원회 설치안을 제출했으나 향후 자격사 확대 선발에 관한 사항과 시험제도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적절하므로 당초 안대로 기능·권한을 법에 정한 자격사심의위원회 설치 필요

■ 규제개혁 방안(당초 규제개혁방안대로 추진)

- 각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장인 자격사심의위원회 구성
- 각 개별법령에 구성, 기능, 권한, 의결방법 규정
- 위원회 구성에 소비자·시민대표 등 민간인사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회의운영은 투명하게 하고, 정해진 기준은 공개
- 위원회는 선발자격사 수, 시험에 관한 사항, 유사경력 인정 등 자격취득 관련 전과정 심의·결정

라. 행정사의 민간인정자격 전환 등 개혁방안

■ 부처 개선안

- 민간인정자격으로 전환해도 자격증 발급 주체만 변경될 뿐 실익이 없고, 민간인정자격사 운영 및 민간인정자격관리자에 대한 확인·점검이 필요하므로 전환 불필요
- 행정사제도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을 때 행정사법을 폐지하고 자유업으로 전면개방이 바람직함

■ 검토의견

- 행정자치부에서도 행정사의 자유업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시기를 정하여 제출하지 않았으나 행정사제도의 필요성이 매우 낮고 행정사시험 실시 없이 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부여 만으로 자격사를 선발하는 현실은 조속히 개선해야 하는 점을 감안시 지금이 폐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 규제개혁방안

- 행정사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사업을 자유업화 하되 그 시행일은 2002년 1월부터로 함

2) 공무원경력 인정제도 개선

가. 공무원 자동자격부여제도를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로 개선

■ 검토의견

- 공인노무사 및 변리사는 현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기간을 두지 않을 경우 신뢰 보호원칙 위배 우려가 있고 특허청의 박사특채자 반발 등을 들어 경과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나
- 본건은 불합리한 현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으로 제27차 회의시(1999. 4. 9) 충분히 토론한 내용이므로 동 결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음

■ 규제개혁방안

자 격 별	규 제 개 혁 방 안
세 무 사	• 2001년부터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
관 세 사	• 2001년부터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
공인노무사	• 자동자격부여제도는 폐지하되 개정법 시행 5년 이후부터 시행
변 리 사	• 2001년부터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 단, 현 재직자에게는 2004년 4월말까지 종전규정 적용
행 정 사	• 민간인정자격으로 전환시 검토

-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제도는 2001년부터 폐지함

나. 시험과목 일부 면제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부처 개선안

자 격 별	규 제 개 혁 방 안
세 무 사	• 1차 면제 : 국세경력 10년 이상 • 1차 및 2차 일부면제 : 국세경력 20년 이상, 국세경력 10년 이상이고 5급 이상 5년 이상 인 자, 2차 4과목 중 2과목(세법 1, 2부) 면제
관 세 사	• 1차면제 : 관세행정경력 10년 이상 중 관련분야 5년 이상 • 1차 및 2차 일부면제 : 관세행정경력 5급 이상 10년 이상 중 관련분야 5년 이상, 관세행정 20년 이상 중 관련분야 5년 이상, 2차 4과목 중 2과목 면제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부서)
공인노무사	• 1차면제 : 노동부, 지자체 노동관련업무 등 10년 이상 경력자 • 1차 및 2차 일부면제 : 노동부 등 관계부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중 6급 이상 8년 이상 재직자에 2차 중 1과목 면제하는 현행규정 존치
변 리 사	• 1차면제 : 특허행정 10년 이상 근무자 • 1차 및 2차 일부면제 : 특허행정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자 (2차 면제과목은 추후 결정)

■ 검토의견

- 자격사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시험면제 대상으로 한 경우는 구체적인 관련분야 행정을 수행한 경력에 국한시킬 필요가 있음

■ 규제개혁방안

- 경력인정시 경력자의 보직을 고려하여 자격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인정하여 경력인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자격사 관련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는 2차시험 면제과목 총수는 총 시험과목수의 50%가 넘지 않도록 함. 다만, 특허청에 현재 재직중인 박사·기술사 특별채용자에 한해 자격사심의위원회 의결에 의거 시험과목을 추가면제할 수 있되 전부 면제는 할 수 없음
- 자격사심의위원회(가칭)에서 경력인정기준을 심사·결정하여 그 기준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

다. 공무원 외 관련직종의 경력인정제도

■ 부처 개선안

자 격 별	규 제 개 혁 방 안
세 무 사	• 세무대리 자질여부, 타자격사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하여 자격사심의위원회 구성 후 심의 결정
관 세 사	• 관세사 사무소 사무원 10년 이상, 무역업체에서 무역업무 10년 이상자에 1차과목 중 2과목 면제
공인노무사	• 노동조합 근무자 등에 1차시험 중 일부과목 면제하는 현행규정 존치
변 리 사	• 변리사 사무소, 기업체 특허전담부서, 특허법무대학원 학위 소지자 등에 대해 일부면제 검토

■ 검토의견

- 공인노무사 및 공인회계사는 현재 관련직종의 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세무사·관세사·변리사는 자격사심의위원회 구성 후 심의결정계획을 제출했음

■ 규제개혁방안

- 세무사·관세사·변리사의 자격사심의위원회 구성후 자격사 관련직종에 대한 경력인

정대상 및 시험면제범위를 결정하여 관련법령에 규정

3) 법인설립 및 영업활동 관련규제의 개혁

■ 부처 개선안

자 격 별	규 제 개 혁 방 안
감정평가사	• 법인설립시 보유자격사 기준을 현행 30명에서 25명으로 하향조정 • 수임한도 제한을 폐지하도록 재경부에 요청
세 무 사	• 분사무소 설치제한 폐지 계획
회 계 사	• 회계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지역 제한 및 상주인원 제한 폐지 계획 • 전문자격사 수에 따른 수임한도 제한폐지 추진중
공인노무사	• 사무소 전용면적기준 폐지계획 미제출

■ 검토의견

-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행정사는 규제개혁방안에 부합되는 계획을 제출했거나 규제정비를 추진중임
- 감정평가사는 법인설립시 보유자격사 기준을 30명에서 25명으로 하향하는 조정안을 제출했으나 당초 규제개혁방안인 10인 이하와는 차이가 커 규제개혁 효과가 거의 없고
- 법인설립시 보유자격사 기준의 축소가 곤란한 사유로 소규모 법인화시 과당경쟁 방지, 법인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현재 추진하는 법인의 대형화시책에도 반한다는 주장을 하나
-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해 제27차 본회의(1999. 4. 9)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감정평가 법인의 전문경영 활성화, 대형화는 진입규제나 정책에 의해 추진하는 것보다는 업계의 자율적 필요에 의해야 할 사안이며
- 자격사 수에 따른 수임한도 제한은 시장경쟁원리에 의해야 할 사항이므로 폐지하되, 다만 폐지시기는 수임한도를 규정한 자산재평가법이 2000년말까지만 적용되므로 그에 맞춰 시행함

■ 규제개혁방안

- 감정평가사 법인설립시 보유자격사는 10인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자격사 수에 따른 수

임한도 제한은 2001년 1월부터 폐지함

-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에 대한 보유직원 수 제한, 전문자격사에 따른 수입한도 제한, 사무소 면적, 사무원 채용, 사무원 등록제는 폐지하고, 개인사무소를 제외한 분사무소 설치제한은 폐지하되 자격사 상주의무는 존치함

4. 향후 조치계획

- 규제개혁방안에 의거 각 부처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
 - 법령 정비 즉시 해당 부처에 자격사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자격사 시험관련 사항을 심의
- 전문자격사에 대한 진입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여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촉진을 지속적 추진

· 국가자격제도관련 규제개혁

* 집필자 : 최동운 서기관(Tel. 3703-2177)

1. 현황 및 문제점

- 자격제도는 우수 산업인력 수급을 위한 객관적 능력검증 수단으로써 교육·훈련시장과 산업현장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위주로 운영되어 오면서
 - 민간자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산업·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의 양성·공급이 미흡
- 인재양성·공급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인력수요·활용을 담당하는 노동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나
 - 관련법령의 중복(자격기본법 : 국가기술자격법)과 협조체제 미흡으로 자격시장 발전저해

- 전문기관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우리나라 자격제도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외국의 자격제도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혁안 마련
-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자격 719개, 민간자격 200여개 운영

2. 규제개혁방안

1)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본법의 통합·일원화

- 자격관련 법체계의 정비 → 가칭 ‘자격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자격관리 종합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원화에 따른 혼란 및 문제점을 방지하고
 - 국민들이 자격관련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함
- 주무부처인 노동부, 교육부의 역할분담 명료화
 - 노동부 : 국가기술자격의 총괄 주관부처
 - 교육부 : 민간자격의 공인관련 총괄 주관부처
- 국가기술자격법과 각 개별법령상의 유사·중복자격 통합, 검정절차 통일

2) 자격관련 심의기구의 일원화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의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자격심의회 기능을 통합
 - 가칭 ‘자격관리정책심의회(위원장 : 국무총리)’ 로 일원화
 - ※ 관계부처(교육·노동·산자·과기부) 장관 및 민간대표 참여
- 자격관련 심의·의결사항
 -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국가자격 신설, 개선, 폐지에 관한 사항
 - 국가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 민간자격 활성화 및 공인에 관한 사항 등

3) 민간자격의 활성화

- 민간자격, 국가자격의 설정기준 구체화
 - 국가자격 : 기간산업 소요인력관련, 국민의 생명·안전관련 종목 등
 - 민간자격 : 신 산업소요인력의 능력발전 분야 등
- 민간자격, 국가자격을 경쟁을 통한 상호발전 도모
 - 국가자격 중 민간자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종목 명문화
- 민간자격의 공인기준과 절차의 합리화·간소화
 - 법령에 민간자격 공인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인신청시 심의기구에서 심사
 - 소관부처 기능의 강화(직업능력개발원 주관 → 소관부처 주관)
 - 소관부처의 공인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자격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강화
 - ‘광고 및 표시공정화법’에 따라 제재 : 5억원까지 과징금 부과
- 자격의 유효기간 설정
 - 공인민간자격에 자격유효기간제도 시범적 도입 → 점진적 확대

4)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의 개선

- 국가기술자격을 응시자격인 학력·경력조건의 합리적 조정
 - 기초자격의 학력제한 폐지, 학력·경력의 인정수준 합리화방안 마련
- 국가기술자격검정 위임·위탁범위의 확대
 - 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기타 관련 전문기관 확대
 - 초기단계에는 시험출제와 검정시행을 분리하는 방안 검토

5) 기타 자격관련 제도 개선

- 자격정보관리체계 구축
- 자격과 교육·훈련, 산업현장의 연계방안 검토
- 기초 직업능력인증제도의 조기 도입

3. 기대효과

- 교육훈련과 산업현장을 연계하는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수행
- 이를 통해 기업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전문인력이 공급되어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주도

4.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노동부·교육부 합동으로 Task-Force를 구성하여 후속작업중
 - 2000년 상반기까지 통합법(가칭 자격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규제개혁방안 법제화 완료
 - 자격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직업교육훈련제도 규제개혁방안'을 2000년도 규제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1999년도에 추진한 자격제도 규제개혁방안과 연계 검토계획임

.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추진

* 집필자 : 이재홍 과장(Tel. 3703-2153)

1. 1998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사업자 등록·교육 등 정부사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단체가 독점권을 이용한 카르텔 형성, 가격담합, 회원 강제가입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한 폐해를 개선
- 규제개혁 대상 사업자단체
 - 사업자단체 중 법령에 설립기반을 두고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의 대한변호사협회 등 13개 정부부처 관련단체 155개

- 법무부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 재정경제부 :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관세사회
- 보건복지부 :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2) 규제현황

- 정부는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유도하여 집행사무를 위탁하고, 사업자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규제를 운영

가. 위탁사무의 과다 및 독점 위탁

- 등록심사·징계권을 협회에 위탁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실상 가입을 강제하는 부작용 유발

나. 설립, 가입 및 회비납부 강제

- 설립, 가입 및 회비납부 등을 법규로 강제하여 경쟁적인 복수단체의 설립을 원천 봉쇄

다. 단체설립에 까다로운 조건 부과

- 단체설립에 대하여 ① 일정수 이상(예 :1/3) 동종업자의 동의확보, ② 유사명칭 사용금지, ③ 5개 이상의 시·도에 지부설치 등 조건을 부과

라. 임원선임, 사업 등 단체운영에 대한 통제

- 인원의 구성방법과 임원수, 선출된 임원에 대한 정부승인, 위탁사무의 경중 및 내용과 무관한 보고의무 부과 등으로 단체의 운영을 통제

3) 규제개혁 방안 확정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사업자단체의 과도한 규제에 의한 폐해를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정책집행의 공정성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자단체 개혁방안을 의결·확정하고, 해당부처에 법령개정을 추진하도록 국무총리지침(1998. 11. 6)으로 시달
- 규제개혁 주요내용

- 설립 및 강제가입의 원칙적 폐지(한국공인노무사회 등 37개 사업자단체)
- 등록업무의 국가기관 회수(대한변리사회 등 3개 사업자단체)
- 징계권 회수 등(대한변호사협회)
- 보수교육 폐지(한국세무사회 등 65개 사업자단체)
- 수출·입 승인제 폐지(한국섬유수출입조합 등 18개 사업자단체)
- 위탁사무 개선(한국공인노무사회 등 31개 사업자단체)
- 사업자단체 설립조건 개선(대한약사회 등 23개 사업자단체)
- 기타 각종 승인 및 보고사항 정비, 실적확인 및 시공능력 산정 폐지 등

2. 1999년도 법령정비 결과

1) 설립 및 가입강제의 원칙적 폐지

- 규제개혁 대상인 37개 사업자단체 중 대한법무사회를 제외한 36개 단체 등 총47개 단체가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대한행정사회 등 35개 사업자단체가 규제정비 완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 9개 단체의 법안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되어 설립 및 강제가입 조항 존치

2) 등록업무의 국가기관 회수 등

부처별 법령정비 내용

구 분	부처 및 협회명
법개정 완 료 (35개)	행정자치부(3) : 대한행정사회, 한국경비협회, (한국광고사업협회) 노동부(1) : 한국공인노무사회 과학기술부(1)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정보통신부(4)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구 분	부처 및 협회명
법개정 완 료 (35개)	농 림 부(2) : 대한수의사회,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문화관광부(2)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영상음반협회) 환 경 부(2) :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 (환경영향평가협회) 산업자원부(4) : 대한변리사회, 한국난방시공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건설교통부(8)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한국골재협회,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 한국감정평가업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설매매협회) 보건복지부(8)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의무기록사협회
국 회 수 정 (9개)	보건복지부(8) :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안마사협회, 대한약사회 법 무 부(1) :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계류(3개)	재정경제부(3) :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 () : 자체 제도개선 추진(13개)

- 대한행정사회 및 대한건축사협회의 등록제 폐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대한변리사회는 주무부처, 변호사회는 법무부에서 처리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 국회입법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관련 법안이 수정되어 등록업무 존치

부처별 법령정비 내용

구 분	부처 및 협회명
법개정 완료(3개)	행정자치부(1) : (대한행정사회), 산업자원부(1) : 대한변리사회 건설교통부(1) : (대한건축사협회)
국회 수정(1개)	법 무 부(1) : 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법무사회는 법개정 추진중
국회 계류중(1개)	재정경제부(1) : 한국공인회계사회 ※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청에서 등록업무 수행

* () : 자체 제도개선 추진

3) 징계권 회수 등

- 대한행정사회 등 3개 단체가 자체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징계권 폐지 및 회수 등 관련 규 제완화
 - 국회 입법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관련 법안이 수정되어 징계권 존치

부처별 법령정비 내용

구 분	부처 및 협회명
법개정 완료(3개)	행정자치부(1) : (대한행정사회), 산업자원부(1) : 대한변리사회 건설교통부(1) : (대한건축사협회)
국회 수정(1개)	법 무 부(1) :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계류중(1개)	재정경제부(1) : (한국공인회계사회)

* () : 자체 제도개선 추진

4) 보수교육 폐지

- 보수교육 폐지 대상인 65개 사업자단체 중 골프장사업협회와 스키장사업협회를 제외한 63개 사업자단체 등 총70개 단체가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대한행정사회 등 47개 사업자 단체가 법령정비를 완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17개 단체의 법안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 또는 상임위에서 폐기되어 보수교육 폐지조항 존치

부처별 법령정비 내용

구 분	부처 및 협회명
법개정 완 료 (47개)	행정자치부(3) : 대한행정사회, 한국경비협회, 한국광고사업협회 노 동 부(1) : 한국공인노무사회, 정보통신부(1)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문화관광부(6) : 한국청소년시설운영자협회, 한국체력단련장경영자협회, 한국수영장 경영자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 대한당구협회, 한국볼링경영자협회 ※ 한국골프장사업협회 및 한국스키장사업협회는 보수교육 없음

구 분	부처 및 협회명
법개정 완 료 (47개)	환 경 부(1) : 한국수도협회 산업자원부(5) : 한국난방시공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건설교통부(11)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 한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대한측량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한국자동차폐차협회) 보건복지부(19) :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세탁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한국위생관리구역협회, 대한제과협회,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 한국인삼제품공업협회, 한국유희음식점중앙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휴게실업중앙회, 한국조리사회중앙회,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압착식용유업중앙회), (한국식품임가공업협회),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국 회 수 정 (17개)	보건복지부(9)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의무기록사협회 등 8개 협회의 관련 법안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상임위에서 폐기(존치), 대한안마사회 건설교통부(7) :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농 립 부(1) : 대한수의사회
국 회 계류중 (6개)	재정경제부(2) : 한국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건설교통부(4)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별화물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용달화물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 : 자체 제도개선 추진(13개)

5) 실적확인 및 시공능력산정 폐지

- 정비대상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5개 사업자단체와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6개 사업자단체가 실적확인·시공능력산정 폐지 또는 위탁기관 복수화

부처별 법령정비 내용

구 분	부처 및 협회명
법개정 완료 (6개)	정보통신부(1)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산업자원부(1) : (한국전기공사협회) 건설교통부(4) :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 () : 자체 제도개선 추진

6) 수출·입 승인제 폐지

- 정비대상인 18개 사업자단체 중 단체가 해산된 한국강관협회와 국제간 협정에 의해 제

부처별 법령정비 내용

구 분	부처 및 협회명
법개정 완 료 (19개)	해양수산부(1) :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농 립 부(1) : (한국농림수산물수출입조합) 문화관광부(1) : (한국영상음반협회) 환 경 부(1) :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 산업자원부(12) : 한국섬유수출입조합, 한국생활용품수출조합, 한국피혁제품수출조합,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대한타이어공업협회, 한국신발산업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광학기기협회,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 한국봉제기계공업협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 기폐지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 대만과 협정체결로 존치(1996. 10) ※ 한국강관협회 해산(1999. 4. 30) 건설교통부(1) :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보건복지부(2) : ※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2개 협회는 1994. 4. 15일 수출승인제 기폐지

* () : 자체 제도개선 추진

도준치가 불가피한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및 기 제도를 폐지한 한국봉제기계공업협회 등 6개 단체를 제외한 12개 단체와 한국수산물수출조합 등 7개 사업자단체가 수출·입승 인제를 폐지하여 19개 사업자단체가 제도개선

7) 시험대행 및 시험관리제도 개선

- 정비대상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3개 사업자단체가 시험제도를 개선하여 법령에는 위탁근거만 두고 위탁단체 지정조항을 폐지

부처별 법령정비 내용

구 분	부처 및 협회명
법개정 완료 (3개)	문화관광부(1)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건설교통부(1) : 한국감정평가협회 건설교통부(1) : 대한건축사협회

* () : 자체 제도개선 추진

8) 검사, 평가, 심사, 지도, 확인 추천제도 개선

- 정비대상인 10개 사업자단체 중 한국광고사업협회 등 6개 단체가 검사 위탁기관을 복수화 하는 등 법개정 완료

부처별 법령정비 내용

구 분	부처 및 협회명
법개정 완료 (6개)	행정자치부(1) : 한국광고사업협회 건설교통부(1) : 한국감정평가협회 산업자원부(4) : 한국난방시공협회, 한국엘피가스공업협회,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국회 계류중 (4개)	건설교통부(4)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개별화물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용달화물운송사업연합회, 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9) 기타 위탁사무 개선

-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22개 사업자단체가 교육위탁 제도 및 기타 위탁사무를 복수기관에 위탁토록 하는 등 제도 개선
 - 국회 입법과정에서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 등 8개 사업자단체의 위탁사무 개선 조항 존치

부처별 법령정비 내용

구 분	부처 및 협회명
법개정 완료 (22개)	행정자치부(1) : 한국경비협회 노동부(1) : 한국공인노무사회 과학기술부(1)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정보통신부(2)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환경부(1) : 한국수도협회 건설교통부(8) :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한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한국자동차폐차협회, 한국항공진흥협회 보건복지부(8) : 대한임상병리사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의무기록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국회수정 (8개)	건설교통부(7) :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보건복지부(1) : 대한안마사협회
국회계류(1개)	재정경제부(1) : 한국공인회계사회

10) 사업자단체 설립조건 개선

- 정비대상인 23개 사업자단체 중 협회가 해산된 부정기항공사업협회를 제외한 21개 단체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68개 단체가 설립조건 및 발기인 수 완화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등 설립조건을 개선

부처별 법령정비 내용

구 분	부처 및 협회명
법개정 완료 (68개)	행정자치부(2) : (대한행정사회), (한국경비협회) 해양수산부(1) : (한국항만하역협회) 과학기술부(1)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정보통신부(1)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문화관광부(1)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환경부(1) : (한국수도협회) 산업자원부(34) :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한국생활용품수출조합), (한국피혁제품수출조합), (한국군납조합),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대한타이어공업협회), (한국신발산업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섬유기계협회),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 (한국베어링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봉제기계공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대한방직협회), (대한염업조합),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대한제당협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한국비료공업협회), (한국양회공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광학기기협회),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건설교통부(15) : 한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항공진흥회, (한국자동차폐차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자협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대한건축사협회) ※ 부정기향고사업협회 →해산 보건복지부(12) : 한국압착식용유업중앙회, 한국식품임가공협회,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한국인삼제품공업협회,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유홍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휴게실업중앙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조리사중앙회, (한국식품공업협회)
국회수정 (8개)	건설교통부(8) :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국회계류 중 (5개)	재정경제부(1) : (한국공인회계사회) 건설교통부(4)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별화물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용달화물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 : 자체 제도개선 추진

- 국회 입법과정에서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 등 8개 사업자단체의 설립조건 존치

11) 각종 승인·보고사항 정비

- 대한행정사회 등 90개 사업자단체가 임원선임 승인, 총회의결사항 보고 등 각종 승인·보고 사항을 정비하여 규제완화
- 국회 입법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16개 사업자단체의 승인·보고사항 존치

부처별 법령정비 내용

구 분	부처 및 협회명
법개정 완료 (90개)	행정자치부(2) : 대한행정사회, 한국광고사업협회
	노동부(1) : 한국공인노무사회
	과학기술부(1) : 한국에너지어링진흥협회
	정보통신부(2)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농림부(2) : 대한수의사회, 한국농림수산식품수출입조합
	문화관광부(8)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영상음반협회, 대한당구협회, 한국체력단련장경영자협회,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 한국볼링경영자협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운영자협회 → 정관개정추진
	환경부(3) : 한국수도협회,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 환경평가협회
	산업자원부(40) : 한국섬유수출입조합, 한국생활용품수출조합, 한국피혁제품수출조합, 한국외국기업협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군납조합, 한국난방시공협회, 한국엘피가스공업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대한타이어공업협회, 한국신발산업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섬유기계협회,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 한국베어링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봉제기계공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대한방직협회, 대한염업조합,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대한제당협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한국비료공업협회, 한국양회공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광학기기협회,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건설교통부(12) :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자협회,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한국감

구 분	부처 및 협회명
법개정 완료 (90개)	정평가협회, 한국자동차폐차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보건복지부(19) :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압착식용유업중앙회, 한국식품임가공협회,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한국음식점중앙회, 한국인삼제품공업협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휴게실업중앙회,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조리사회중앙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공업협회, 대한약업자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국 회 수 정 (16개)	법 무 부(1) : 대한변호사협회 건설교통부(7) :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보건복지부(8) :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안마사협회, 대한약사회
국회 계류 중 (6개)	재정경제부(2) :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건설교통부(4)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별화물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전국용달화물운송사업연합회

3.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1) 법령정비 현황

■ 1998년 정기국회 이후 44개 사업자단체 관련법 중 행정사법 등 40개의 법률 개정 등 경쟁제한적인 사업자단체 관련규정의 정비를 추진하였으나,

- ‘공인회계사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4개 법안이 1999년 정기국회에 계류중으로 법안처리가 지연되었으며

※ 국회 계류법안(4개) :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세무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특히, 법령정비의 관건인 변호사법이 국회법사위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정부의 사

국회 법령개정 중 주요 수정 내용

사업자단체명	법 률 명	부 처 명	규개위 제도개선안	국회수정내용
대한변호사회	- 변호사법	법 무 부	- 설립 및 강제가입 폐지 - 등록업무 및 징계권 회수 - 승인 및 보고사항 정비	존 치
전국고속버스운송 사업조합등 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교통부	- 설립조건 개선	존 치
대한의사협회등 8개협회 ²⁾	- 의 료 법 - 약 사 법	보건복지부	- 설립 및 강제가입 폐지 - 승인 및 보고사항 정비	존 치
대한임상병리사 협회등 8개 ³⁾	- 의료가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폐지	존 치
대한안마사회	- 의료법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폐지	존 치

1)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 자체 제도개선 추진)

2)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안마사회, 대한약사회

3)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의무기록사협회

업자단체 규제개혁 방안과 달리 변질 · 수정 통과되는 등 다른 사업자단체 관련법안 심의까지 영향을 미쳤음

2) 향후조치 계획

■ 국회계류중인 공인회계사법 등 4개 계류법안이 모두 정부원안대로 국회에서 의결 · 통과될 수 있도록 당 및 국회와 최대한 협조

• 변호사법, 약사법, 의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국회에서 수정 통과된 4개 법안의 재입법 추진

■ 개정 법안에 대한 경쟁제한적인 요소 점검 및 개선으로 지속적인 사업자단체 제도개혁 추진

Ⅰ 제6절 Ⅰ

안전 · 의료분야 규제개혁

· 산업현장 안전기준 등 관련규제 합리화방안

* 집필자 : 김재열 과장(Tel. 3703-2157)

1. 안전보건 교육의 합리화

1) 규제현황 및 문제점

가. 규제현황

-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은 표와 같음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생산직 종사 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월 1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채용시 교육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 근로자를 제외한 자	8시간 이상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 근로자	1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 근로자를 제외한 자	2시간 이상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 근로자	1시간 이상
특별교육	영 별표 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자를 제외한자	16시간 이상
	영 별표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2시간 이상

나. 문제점

- 출퇴근 시간의 캠페인, 중식시간에 사내방송을 통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하더라도 개개인에게 교육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교육시간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산 계획에 따른 교육시간 안배가 어려움
- 자율안전체계 수준에 따른 규정의 차등적용 등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우대제도가 없어 안전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짐

2) 개선방안

- 교육확인서 제도를 개선하여 사내방송, 캠페인 등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인정하는 등 교육시간의 인정범위 확대
- 교육확인서 제도는 작업자 개개인의 서명을 받는 대신에, 기업에서 해당지방 노동관서에 제출하는 실시보고서로 대체
- 또한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안전교육 의무적용 차등화

3) 기대효과

-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인정되고, 안전교육 의무적용 차등화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교육부담 완화

4)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2000년 상반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련고시를 개정하여 시행 예정

2.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 규제 폐지

1) 규제현황 및 문제점

가. 규제현황

-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6 m, 기타의 자동차는 12 m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나. 문제점

- 현행 소형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 규제는 국내 소형화물차의 새로운 제품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국내 소형화물차의 경우 캡오버 타입이 대부분이며, 충돌시 안전성 및 상품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본넷 혹은 세미 본넷 타입의 화물차량 개발이 필수적임
 - 본넷 혹은 세미본넷 타입의 차량 개발시 길이, 축간거리 증대에 따른 최소회전반경 증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본넷 타입의 경우 본넷이 돌출됨으로써 현재 캡오버 타입 소형트럭과 동일 수준의 적재함 길이를 확보하려면 차량길이와 축간거리가 모두 약 6000mm 내외의 증대가 필요하나, 이럴 경우 최소회전반경이 6 m를 초과하게 되어 소형화물차로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임
 - ※ 북미, 유럽은 소형화물자동차의 최소회전 반경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일본의 경우도 기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12m 로 제한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경형 및 소형화물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 규제 폐지

3) 기대효과

- 본넷 혹은 세미본넷 타입의 차량 개발시 길이, 축간거리 증대에 따른 최소회전반경 증대가 가능해져, 다양한 경형 및 소형화물자동차의 개발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고 자동차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

4)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1999년 6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1999년 6월부터 시행

3. 보험급여 결정시 사업주의 청문제도 도입

1) 규제현황 및 문제점

가. 규제현황

- 산재보상보험법은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이때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보험가입자(사용자)는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 심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고, 재심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

나. 문제점

-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즉 수급권자)로 한정하고 있고
- 산재보험료는 사용자의 전액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불합리한 지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2) 개선방안

- 업무상 재해여부 결정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제도’ 도입 의무화
 - 외부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문절차 시행

3) 기대효과

- 사용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산재보험료의 실질적 부담자인 사용자의 부담 완화와 합리적인 보험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기대됨

4)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1999년 8월 사업주 청문제도에 관한 시행 지침을 시달하여 시행

4. 청소년수련시설법인 운영책임자 선임제한 폐지

1) 규제현황 및 문제점

가. 규제현황

- 법인이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는 임원 중에서 청소년지도사 관련 자격을 갖춘 자를 운영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나. 문제점

- 전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법인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종업원 자녀 및 인근지역 청소년들의 심신수양을 위한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임원중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운영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함
 - 즉 임원 중에서 자격검정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별도로 자격증 소지자를 임원으로 영입해야 하는 실정임

2) 개선방안

- 전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법인이 아닌 일반 기업체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의 운영책임자와는 관계없이 임·직원 중에 청소년지도사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개선함

3) 기대효과

- 수련시설 설치·운영자의 자율에 의한 운영책임자 선정이 가능하여 업무의 자율성 제고

4)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2000년 상반기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여 2000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석유·화학시설 등의 안전관리관련 규제개혁

* 집필자 : 최동운 서기관(Tel. 3703-2177)

1. 현황 및 문제점

- 안전관리 업무는 부처별·기능별로 전문화하여 분산관리하고 있음
 - 노동부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이라는 측면에서 안전을 담당
 - 산업자원부는 가스·전기·에너지 측면에서 안전을 담당
- 그동안 대형 안전사고가 있을 때마다 안전관련 제도가 사후대책 차원에서 도입·시행됨으로써
 - 동일현장에 대한 중복규제가 양산되고,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화 및 관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안전관리 합리화방안 모색이 현안과제로 대두

2. 규제개혁방안

1) 안전관리 시스템관련 중복 규제 합리화

- 노동부의 공정안전보고서(P S M)과 산자부의 안전성향상계획서(SMS)관련 규제
 - 대동소이(大同小異)함에도 2대 기관(산업안전공단, 가스안전공사)에서 2중으로 작성토록하고, 2중으로 심사·확인
- 개선방안
 - 신·증설시에만 작성하고 5년마다 재작성하는 제도는 폐지
 - 변경된 부분만 수정작성, 자체보관
 - 기존 시설의 경우, 재작성 서류 제출의무 폐지
 - 심사제도 폐지
 -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정기검사시 등 현장확인업무 수행시 병행해서 확인

2) PSM/SMS 적용대상 기업에 대한 법정안전검사 주기 일원화 및 자체검사의 자율화

- 각 법에 따라 검사주기가 다양하여 수시로 공장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거한 정기검사
 - 공장가동을 중지하여야 하는 검사는 검사주기를 4년으로 통일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검사
- 화재보험법에 의한 안전검사 중 P S M/SMS적용 대상기업에 대한 것은 법적 의무화가 아닌 보험약관에 따라 결정하도록 관계 규정 개정

3) 안전보건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규정(고압가스안전관리법)/예방규정(소방법) 등의 작성 통합

- 1개의 규정으로 통합작성
- 통합된 규정을 비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통보

4) 압력용기의 완성 · 성능 · 정기검사 수수료 선정기준의 개선

- 장기적으로 민간검사기관 도입을 추진하여 검사기관간 경쟁체제 도입
- 단기적으로 과도한 수수료 징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수수료의 상한선 설정

5) 수입 안전밸브 성능검정에 대한 중복규제의 개선

- 외국의 공인검사기관 검정을 필한 경우 국내기관 성능검정 면제
- 아울러 국내의 타기관에서 검사 받은 것은 상호인정

6) 휴지중인 설비에 대한 법정검사 면제

7) 압력용기 수리시 검사제도의 개선

- SMS 대상업체로서 자체 전문인력 · 장비를 구비하여 수리하는 경우, 수리검사 면제범
위 확대
 - 국제기준에 따라 경미한 수리는 검사면제

8) 수력, 화력 및 복합발전설비의 정기검사주기 완화

- 제작사 매뉴얼과 국제적 검사주기를 감안, 과도하게 엄격한 검사주기 연장
 -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계통 등 : 2년 → 4년
 - 가스터빈, 보일러, 열교환기 및 발전기 계통 등 : 1년 → 2년
 - 수압관로 : 검사대상 제외

9)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선

- 연료탱크의 연료를 타 종류로 교체시,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세정의무 면제

3. 기대효과

- 산업안전관리의 효율성·자율성 제고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 PSM/SMS 등 안전관련 계획서 작성, 각종 검사제도 등에 대한 규제개혁방안은 그동안 불합리한 제도운영을 개선하고 부처간·기관간 갈등을 해소하여 산업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며
 - 또한 각종 규제의 폐지, 합리적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임

4.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사업법, 화재보험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중

. 건설현장 안전관리관련 규제개혁

* 집필자 : 최동윤 서기관(Tel. 3703-2177)

1.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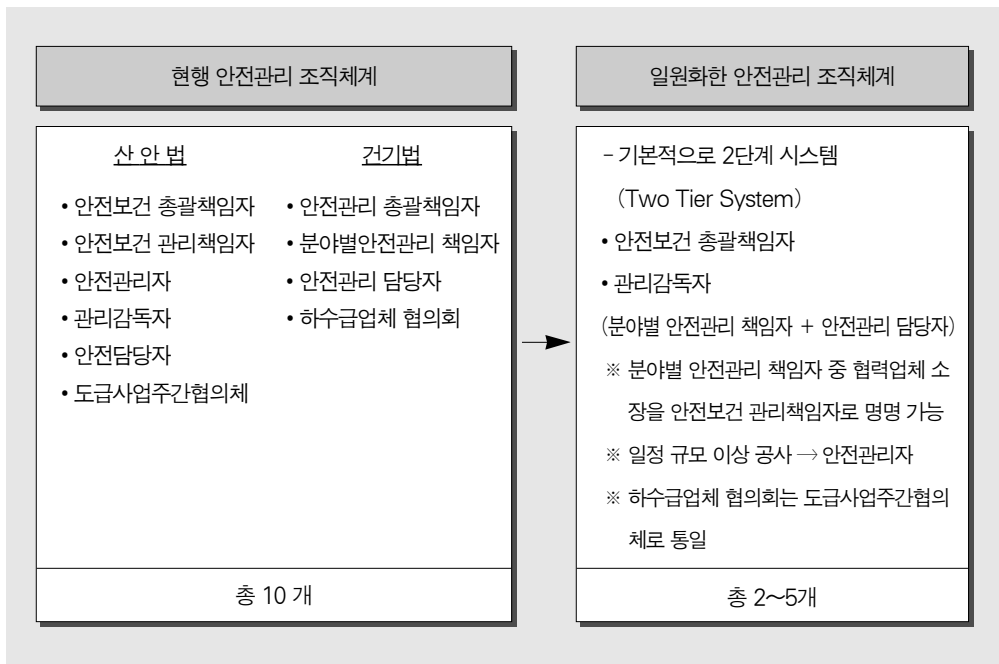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필요이상의 간섭과 규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제도 및 수단이 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과 건설기술관리법(건교부)으로 이원되어 있어 업체로부터 현장의 잦은 중복점검 등에 대한 문제 제기
- 따라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건설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규제개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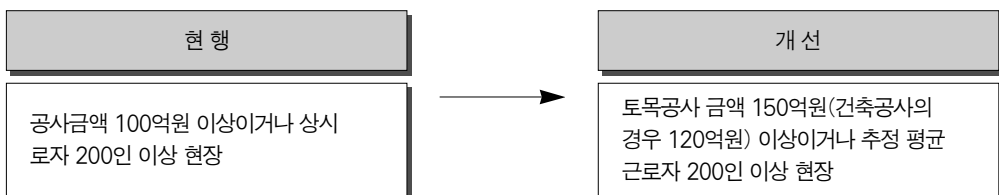
1) 안전관리조직

- 산업안전보건법의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반영
- 총 10개의 이중적 조직 → 기본적으로 2단계 시스템(Two Tier System)

안전관리조직체계 개선안



- 산안법상의 안전관리자는 대형현장에 한하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총괄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존치토록 함
- 다만, 대상 공사 규모를 상향조정



※ 이에 따라 기술지도 대상 적의 조정

2) 안전점검체계 개선

- 건설현장에 대한 외부기관 점검·방문은 원칙적으로 제한
 - 점검실명제 도입
 -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만 가능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명시화
- 점검요원증 소지
- 점검대장 비치의 법정화
 - ※ 발주청, 인·허가·승인행정기관의 점검도 원칙적으로 제한토록 법정화
- 근로감독관의 현장방문 근거 구체화
 - 근로감독관의 현장방문은 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존치시키되
 - 직무와 무관한 임의적인 현장 방문은 제한
- 건설기술현장 점검제도의 법정화(정기안전점검)
 - 점검회수와 시기를 법령에 명시하여 업계의 부담경감 및 점검의 내실화
 - 임의의 현장안전점검제도의 폐지
- 외부기관에 의한 점검은 대상과 절차를 법령에 정하여 제한하고, 필요시 합동점검 실시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제도 개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위생분야에, 안전관리계획서는 구조물품질, 시공 및 주변 안전대책에 중점을 두어 상호중복 최소화
- 양 계획서 작성 대상공사의 대폭 축소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8종 → 5종
 - 안전관리계획서 : 4종 → 2종
- 우수업체에 대한 양 계획서 작성 제출·확인의 면제제도 도입
- 양 계획서 중복제출공사는 합본작성 가능 조치
- 총괄 안전관리계획서와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안전관리계획서로 통합
- 중장기적 차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확보방안 강구

- 공사감리 기능과 근로자 안전감독 기능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감독하는 가칭 종합안전관리 조정자 내지 종합안전감독자제도 도입을 위해 노동부, 건교부 공동 연구 시행
- 2000년말까지 연구보고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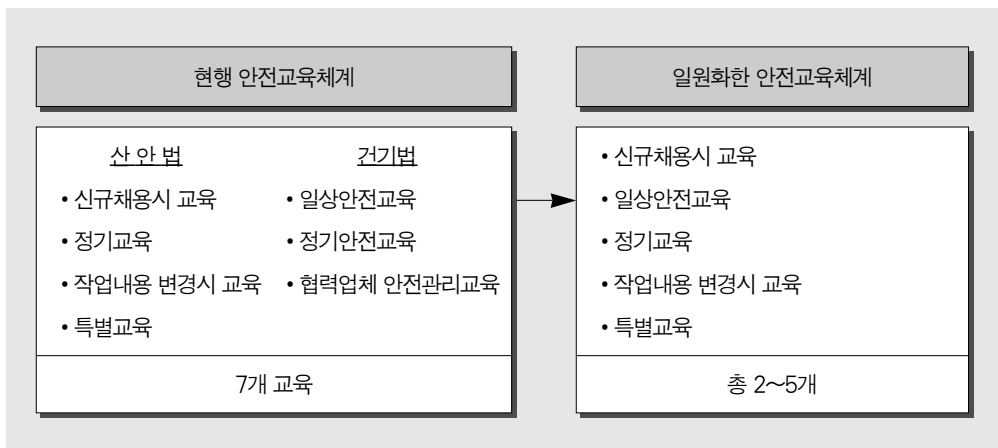
4) 안전관리비용체계 개선

- 안전관리비를 그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
 - 표준안전관리비 → 근로자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시공안전관리비
- 표준안전관리비(산안법, 근로자 안전목적)와 안전관리비(건기법, 주변피해예방 중점) 별도 책정의 필요성 인정
- 표준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불법사용에 따른 벌칙규정 강화
 - 표준안전관리비 : 300만원 이하 과태료→1,000만원 이하
 - 안전관리비 : 부당사용시 벌칙 규정 신설

5) 안전관리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체계를 유지하면서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반영
- 총 7종의 이중적 교육 → 5개의 일원화된 교육

안전관리교육체계 개선안



6) 건설안전벌칙 개선

가. 문제점

- 사후규제 강화 차원에서 벌칙규정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벌칙규정이 너무 약하여
- 소액의 벌금을 납부하고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식 팽배

나. 개선방안

- 산안법 및 건기법상의 벌칙조항 등을 보완·강화
-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행 벌칙규정은 실제 최종 법원 판결시 처분자체가 미약하여 그 실효성이 약하여 사업주가 법을 재차 위반하는 사례 빈발
- 외국의 경우와 같이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 하고, 과태료 금액도 대폭 상향조정하여
 - 사업주 등이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하는 풍토 조성
 - ※ 노동부에서는 '신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건교부에서도 법령개정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 중간에 추진상황 보고
 - 법무부, 법제처와 협조

3. 기대효과

1)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내실화 및 투명성 제고

- 점검실명제의 도입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및 비리 차단
- 벌칙개선, 안전관리비 개선 등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 및 내실화

2) 건설업체의 불필요한 부담 경감

- 안전관리조직 정비, 안전관리 교육제도 개선 등을 통해 건설업체의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각종 부담을 경감

4.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완료(2000. 1. 7 공포, 7. 7 시행) 후, 하위법령 개정 작업중
- 건설기술관리법은 2000년 상반기 시행 목표로 건설교통부에서 개정 추진중
- 점검실명제는 위생분야, 소방분야 등 부정·비리의 소지가 있는 분야에 확대 시행 예정

. 소방관련 법령·규제 정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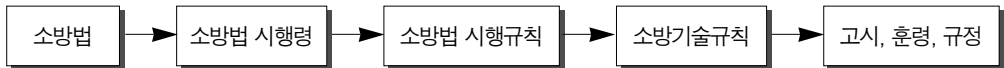
* 집필자 : 오병혁 사무관(Tel. 3703-2154)

1. 추진명위

- 현행 소방법은 1958년 단일법으로 제정되어 소방행정체제, 소방관련산업, 위험물관리, 소방검사 및 진압, 그리고 산하단체까지 규제하여 왔고, 법 제정 후 4회의 전문개정 및 16회의 부분개정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소방법령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대표적인 안전관련규제인 소방관련규제는 1998년과 1999년 규제정비시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법체계가 복잡하여 효과적인 규제개혁에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따라 현행 소방법을 소방기본법 등 4개의 법으로 분법화하여 분야별로 효과적인 육성·발전체계를 구축하고, 소방기술 발전에 따른 소방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전관련 규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방법체계 개편과 관련 규제개혁을 동시에 추진

2. 소방법령체계 개편방안

1) 현행 소방법령 체계



가. 소방법(총15장, 119조문, 6부칙)

- 소방행정 및 조직, 소방관련 산업 및 기술인력, 위험물관리, 소방시설, 소방검사, 화재진압 · 구조 · 구급활동, 산하단체 등 소방분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규정

나. 소방법시행령(총12장, 65조문, 6부칙, 8별표)

- 특수장소, 동의범위, 시설종류 · 설치, 방화관리자, 위험물 취급, 공사업 기준, 설계 · 감리등록, 기술위원회, 협회등 소방법 위임사항에 대한 시행기준 규정

다. 소방법시행규칙(총13장, 97조문, 5부칙, 21별표)

- 소방동의, 검사, 위험물설치 · 관리자, 시설기준 · 점검, 시설관리자, 소방용수, 공사 · 설계 · 감리업 절차, 방화관리자 교육 등 시행 세부기준 및 절차 규정

2) 현행법령의 문제점

- 종합적이고 복잡한 조문체계로 인하여 소방법령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장애
- 부분 개정시에도 많은 조문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법령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 곤란
- 빈번한 소방법 개정(20회)으로 제도별 규정체계의 일관성 결여와 구조 변질
-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법에서 규정
- 대형사고가 많은 건축, 전기, 가스 등 안전관련 법령과의 연계규정 미흡
- 고층건물, 산업시설, 대량위험물 등의 급증에 따른 대형화재에 대비한 법규 미비

3) 법령 개편방향

- 소방기본법을 제정하여 소방행정·조직 등의 대강을 정하고 소방시설·소방공사업·위험물 등 분야별 4개의 법으로 분법화하여 현행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개편하고 소방법령 체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신뢰성 제고
 - 소방행정 목적에 부합된 제도 및 분야별 규정체계를 정립하여 특성에 맞는 소방 육성·발전체제 구축
 - 벌칙규정의 개선을 통하여 위반행위에 의한 전과자 양산 방지하고, 단순 소방법 위반은 신체형·벌금형에서 과태료 처분 등으로 변경
 - 일반적이고 행정적인 사항은 법령에 규정하여 일관성을 유지시키고, 기술적 기준은 규칙·고시 등으로 정하여 소방환경 변화에 대응

가. 외국의 소방법령 체계

■ 일본

- 소방법 → 소방법 시행령 → 소방법 시행규칙, 위험물 규제에 관한 규칙 → 고시

■ 미국

- 건축관계 법령(소방관계 규정) → 주 예방행정에 관한 법률, NFC 준용기준 → 건축기준 조례, 화재예방 조례

■ 영국

- 소방법(조직, 권리, 의무 등) → LPC Code
- 화재 예방법, 작업장 등 안전위생법, 폭발물법, 석유법 등 → LPC Code

나. 국내 안전분야 법령체계

■ 전기분야 및 가스분야(산업자원부)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한국전력공사법
-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한국가스공사법

■ 통신분야 (정보통신부)

-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4) 소방법 분법

- 현행 소방법을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 및 기술관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4개법으로 분법화 하여 특성별 소방법령체계 구축
 - ※ 소방관계법령 개정시 보완 필요성이 있는 관련 법령
 - 건축, 전기, 가스, 유해물질, 환경, 산업안전, 재산관리 등 방화안전과 상호연관성이 있는 법령의 합리적 조정 필요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소방행정 효율화 방안 및 소방활동기금제도 신설방안 마련 필요

가. 소방기본법

- 소방활동의 목적 및 업무범위, 조직, 소방업무의 책임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소방 법령의 적용대상 및 소방활동 대상의 범위, 화재의 예방·진압 및 구급·구조업무, 소방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 등 소방력 배치에 관한 규정, 화재원인조사 및 분석, 소방예산 및 기금, 소방활동부담금, 의용소방대 설치, 소방관련기관·단체, 행정처분, 권한의 위임, 벌칙 등을 규정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대상물 및 종류, 소방시설별 설치기준, 시설점검·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소방용기계·기구의 정의, 제조 및 검정, 검정기준, 검정업무의 위탁, 민간 인증기관 지정, 무검정제품에 대한 처분, 행정처분 및 벌칙·과태료 처분 등을 규정

다. 소방시설공사 및 기술관리법

- 소방시설공사업·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감리업·소방시설관리유지업 등록, 취소, 승계, 도급, 영업 등에 관한 규정, 소방기술의 진흥 및 관리, 소방업단체·소방기술 등을 규정

라. 위험물 안전관리법

- 위험물의 정의 및 종류, 허가 및 안전관리, 위험물시설 설치기준, 자체소방대, 운반 및 저

장의 기준, 무허가시설 등에 대한 조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대행업 등에 관한 규정, 소방안전활동기금, 행정처분 및 벌칙·과태료 처분 등을 규정

5) 기타 기술적 기준의 고시화

- 법령체계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술적인 사항은 고시로 하여 소방환경 변화에 따른 신기술 및 신제품 등을 수용하고 국제적인 대응력이 있는 소방체계 확립
 - 행정적 사항 : 소방시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험물시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기술적 사항 : 소방시설 및 안전 등에 관한 기준(통합고시), 위험물시설 설치 및 안전에 관한 기준(통합고시)

3. 규제정비 계획

1) 소방검사제도 개선

■ 현황

- 1급 방화관리대상 등 대형건축물에는 연 1회, 2급 방화관리대상 등 중·소규모 건축물에는 2년 1회 소방검사 실시
- 구조변경이 없는 건축물은 3년 1회 소방검사 실시

■ 문제점

- 자체 소방안전관리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건축물 용도·규모에 따라 검사횟수를 일률적 적용하고 있어 자율관리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흡

■ 개선방안

- 소방안전관리평가제를 도입하여 등급에 따라 소방검사를 차등실시하고 세분화된 소방검사의 종류를 통합조정하여 검사의 효율성 제고

2) 소방시설 설계·감리·점검업 등록기준 완화

■ 현황

- 소방시설설계·감리업 등록사항중 전용사무실은 1급 30㎡, 2급 및 3급 15㎡ 이상,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은 전용사무실은 3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

■ 문제점

- 통신 등 기술발달로 사무실의 유무 및 면적에 관계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함에도 사무실 전용면적을 인위적으로 확보하게 함으로써 관련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

■ 개선방안

- 사무실 면적기준을 폐지하여 소방시설 설계·감리·점검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

3) 건축허가 사용승인 동의제도 개선

■ 현황

- 소방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동의기간은 3일이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3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됨

■ 문제점

- 건축허가청에서 해당소방관서에 소방시설 동의요구 후 동의기간 3일을 초과하더라도 동의서가 도달할 때까지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 국민불편 야기

■ 개혁방안

- 동의기간 내에 동의여부에 대한 소방관서의 회신이 없을 경우 동의된 것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업무지연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4) 학력·경력인정 기술자의 제재규정 신설

■ 현황

- 국가기술자격자(소방기술사, 기사)는 이종취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하고 있으나, 학력·경력인정기술자에 대한 제재규정 없음

■ 문제점

- 학력 · 경력 인정기술자의 이중취업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국가기술자격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이들의 이중취업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됨

■ 개선방안

- 학력 · 경력인정기술자에 대해서도 국가기술자격자와 같이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토록 개선(1997년 감사원 감사시 지적)

5)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

■ 현황

- 제조소 등의 위치 · 구조 · 설비 또는 취급위험물의 종류 등 허가받은 사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문제점

- 허가받은 사항 중 위험물의 종류, 수량 등을 변경할 때마다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허가받은 위험물을 수시로 변경하여야 하는 등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특별한 안전성 심사가 없는 허가업무로 인하여 허가청의 행정부담이 증가

■ 개선방안

-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위험물의 종류,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제로 개선

6)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제한

■ 현황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을 제한

■ 문제점

- 등록제한 사유를 타 법률 전체에 의한 범죄경력으로 확대함으로써 소방목적에 관계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

■ 개선방안

- 등록제한 사유의 범죄경력을 소방법 위반에 의한 것에 한정

7) 위험물 운송제도의 개선

■ 현황

- 위험물을 운송하는 이동탱크를 설치하는 사람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문제점

- 전국을 운행하는 이동탱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에 의한 이동탱크관리와 운전자에 대한 자체 안전교육 곤란 및 운전자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위험물 운송사고 다발 우려

■ 개선방안

- 위험물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하되, 이동탱크 설치자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

8) 위험물규제 관련 벌칙의 정비

■ 현황

-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 운반의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

■ 문제점

- 전과자의 양산 우려가 있으며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도한 벌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발생

■ 개선방안

- 단순한 기준위반의 경우에는 벌칙 대신 과태료로 완화하되, 기준위반에 의하여 화재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벌칙을 적용하고, 위험물의 유출 등으로 화재의 위험과 공공의 위험을 동시에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현행보다 벌칙 강화

9) 다중이용업의 허가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제도개선

■ 현황

- 다중이용업 허가시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고 소방서장의 확인검사에 따른 완비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소방법 제8조의 2 제2항)

■ 문제점

- 현행 다중이용업의 허가시 소방·방화시설 등 완비여부를 민원인이 직접확인 요청함으로써 시간낭비 등 민원불편 초래

■ 개선방안

- 행정기관간의 협의 등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소방법 규정을 개정

10)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사전제품검사대상 축소

■ 현황

- 소방용 기계·기구 등은 사전제품검사(소화기 등 30개 품목) 또는 사후 제품검사(방열복 등 8개 품목)를 받도록 규정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전 및 사후 제품검사 대상을 축소하여 제품검사로 인한 민원유발을 해소하여야 하나 불량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우려가 크기 때문에 기능상 설비의 중요도, 구조의 단순성 여부, 기술의 난이도 등 복합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필요
 - 사전 제품검사 품목의 기능상 안전성확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사후 관리검사 품목으로 전환

11) 소방용 기계·기구 형식승인대상 축소

■ 현황

- 현행 형식승인대상 품목은 수동식소화기 등 38개 품목으로 과다함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형식승인 품목의 과다로 민원유발 우려가 있으므로 방수구 등 성능이 일정 기술수준으로 확보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품목에 대해 형식승인 제외하되, 형식승인 제외품목에 대하여는 성능 인정품목으로 전환하여 관리

4.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가. 제1단계 추진(1999. 4 ~ 2000. 3)

-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처 협의 : 1999. 3
- 소방법령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 1999. 5 ~ 2000. 4

나. 제2단계 추진(2000. 4 ~ 2000. 12)

- 연구용역결과 발표회 : 2000. 4
- 개정시안 작성 및 의견수렴 : 2000. 4 ~ 2000. 5
- 공청회 개최 : 2000. 6
- 개정안 확정 및 부처협의 : 2000. 7
- 정기국회 제출 : 2000. 9 ~ 2000. 12
- ※ 소방법령개편기획단 운영(비상설, 1999. 4 ~ 2000. 3)

. 지정진료제도 개선방안

* 집필자 : 권태성 과장(Tel. 3703-2177)

1. 규제현황 및 문제점

- 지정진료제도가 모법인 의료법에 근거없이 보건복지부령인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실시됨
- 지정진료기관의 지정은 병원의 진료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레지던트 수련 여부와 병상 수에 따라 이루어짐
 - ※ 400병상 이상 레지던트 수련병원, 치과대학병원, 한방 6개과 설치 한방병원
- 전문의는 지정진료에 치우치고 진료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초임의사들이 일반진료를 담당해 일반진료 부분이 크게 위축되는 한편 지정진료가 일반화되는 경향을 초래함
- 지정진료가 환자의 우수한 의사선택권 보장보다는 의료기관의 수입증대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음

2. 개선방안(선택진료제도 실시방안)

1) 대상의료기관 확대

■ 개선내용

- (현행) 지정진료실시기관 : 400병상 이상 레지던트 수련병원, 치대병원, 한방 6개과
설치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 (개선) 선택진료기관 :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

■ 기대효과

- 지정진료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이상의 시설 확대(400병상)의 잘못된 관행 개선
- 대상기관 확대(121 → 968개소)로 의사선택 범위 확대 및 중소병원에 우수전문의 유
인 등을 통한 중소병원의 전문화 · 특화계기 마련

2) 추가비용 징수의사 자격기준 강화

■ 개선내용

지정진료	선택진료
• 의사 : 전문의로서 의사면허 후 10년 이상 • 치과 의사 : 면허취득 후 10년 이상 • 한의사 : 면허취득 후 15년 이상 * 대학병원은 전임강사 이상	• 의사 :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 치과 의사 · 한의사 : 면허취득 후 15년 이상 * 조교수 이상

■ 기대효과

- 대상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추가비용 징수 의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의사 수 축소(70.3% → 39.7%)
→ 기존 지정진료실시 의료기관에서 추가비용 징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의사범위
확대

3) 추가비용 징수대상 진료행위 개선

■ 개선내용

- (현행) 지정진료제도상의 지정진료행위
 - 환자가 지정한 지정진료의사의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동 지정 진료의사가 의뢰한 진료지원과 지정진료의사의 의료행위도 포함
- (개선) 선택진료제도상의 지정진료행위
 - 진료과나 진료지원과를 불문하고 환자가 선택한 의사가 직접 행한 의료행위
 - ※ 추가비용 징수대상 진료행위(11개 항목) : 진찰, 의학관리, 검사, 방사선진단 및 치료, 마취, 정신요법, 처치, 수술, 침구, 부황

■ 기대효과

- 그 동안의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과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일괄지정을 유도하는 행위, 진료지원적 성격을 가진 마취와 검사행위 등에 대한 추가비용징수와 관련한 분쟁 해소

3.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의료법 개정(2000. 1. 11)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0년 하반기 시행 예정

Ⅰ 제7절 Ⅰ

교육 · 문화분야 규제개혁

· 저작권관련 규제개혁 방안

* 집필자 : 권태성 과장(Tel. 3703-2177)

1.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운영체제 개선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 규제현황

-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 자격요건, 수수료율 승인, 감독 등의 규제가 있음
- 관련 근거규정 : 저작권법 제78조, 제79조

■ 문제점

- 현행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전문분야별로 세분화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구성 · 운영되어 서비스 향상에 대한 인센티브 저하, 경직된 조직구조로 인하여 신속한 대응 미비 등 저작물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미흡
- 저작권의 포괄적 관리에 따라 내부운영 시스템의 비효율, 저작자에게 불리한 저작권신탁계약 약관 시행, 저작권계약 · 사용료 징수 및 분배규정의 투명성 미비 등의 문제점

이 있음

나. 개선방안

- 저작권신탁관리 분야 세분화 및 전문분야별 신탁관리업 허가 확대
 - 자격과 능력을 갖춘 전문분야별 저작권단체에 대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게 하여 분야별 권리보호 강화
 - 허가확대 대상분야
실연, 음반제작, 출판, 미술, 사진 등 집중관리 필요 분야
-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운영개선 추진
 -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내부운영 시스템 정비, 저작권신탁계약 약관의 합리적 개선, 저작권계약 · 사용료 징수 및 분배규정의 정비 등 운영개선 추진
 -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관리구조, 사용료 수납방법 전산화, 신탁계약 연장기간 단축 (10년 → 5년) 등

다. 기대효과

- 전문분야별 저작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문자, 사진, 그림, 음악 등을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창작 및 이용 활성화 도모
-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운영의 투명성 제고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2000년 상반기중에 관련단체의 신청을 받아 권리자의 대표성을 구비한 단체에 대하여 신탁관리단체 허가 · 고시하여 시행 예정
- 기존 단체에 대하여는 2000년 상반기중에 단체별 운영개선 추진

2. 분야별 규제개혁 방안

가.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범위 명확화

- 규제현황 및 문제점
 - 저작권신탁관리업은 허가제로, 대리 · 중개업은 신고제로 되어 있으나 업무범위에 대

한 규정이 없어 일부 저작권대리·중개업체는 사실상 신탁관리업을 함으로써 형사고소 남발, 수수료 폭리 사례 등 저작자와 이용자에 미치는 피해가 큼

■ 개선방안

- 저작권법 개정시 신탁관리업 및 대리·중개업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함

■ 기대효과

-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합법적 저작물 이용 활성화

■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2000년 1월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2000. 7월 시행 예정

나. 저작재산권 제한관련 규제 개선

■ 규제현황 및 문제점

- 도서관 복제시설의 지정,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시설의 지정, 방송용 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지정 및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결정·고시 등 행정관청의 자의적 판단 개입 여지
- 근거법령 : 저작권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 개선방안

- 복제시설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법령에 규정하고 보상금 결정·고시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

■ 기대효과

- 저작자 권리보호 강화 및 합리적 저작물 이용 여건 조성

■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2000. 1월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2000. 7월 시행 예정

다.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제도 개선

■ 규제현황 및 문제점

- 저작자 소재 불명 등의 경우에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저작물 이용승인을 하고 있으나 법정허락 요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으며 법정이용승인 실적인 저조

■ 개선방안

- 법정이용허락업무에 관한 문화관광부 장관의 권한을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하고 법 제47조상 '상당한 노력'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

■ 기대효과

- 법정이용요건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 편의도모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

■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2000. 1월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2000. 7월 시행 예정

. 문화산업관련 규제개혁방안

* 집필자 : 유주봉 서기관(Tel. 3703-2178)

1. 등록관련 규제개선

1) 등록제도 개선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법 제4조·제7조)

-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제작업자와 유통관련업자는 문화관광부 장관,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함
 - 제작업자와 유통관련업자 중 배급업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배급업자의 판매·대여 등 유통업자는 시·군·구에 등록
 - ※ 유통관련업자 : 음·비·게임물의 배급업·판매업, 비디오물대여업, 게임제공업, 시청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 기타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
- 제작업과 유통관련업의 등록제는 자유로운 업계진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음란제작물 등의 방지를 위한 등록제는 등급분류제도와 중복
- 비디오물감상실업·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시설 요건이 없음에도 별도의 요건확인 절차가 필요한 등록제를 유지하고 미등록시 과도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나. 개선방안

- 음·비·게임물 제작업 및 유통관련업 중 배급업(현재 문화부 장관에 등록)은 신고제로 개선(신고업종화)
- 비디오물·게임물 판매·대여업, 숙박업소 등의 기타 시청제공업은 등록제 폐지(자유업종화)
- 성인물 미취급 게임제공업은 기유통중인 게임물에 대한 재등급분류 기한(2001. 5)을 고려, 신고제로 개선하고 2002년 1월부터는 신고제 폐지(2002년 자유업종화)
- 성인물 취급 게임제공업·비디오감상실업·노래연습장업은 등록제 유지(등록업종 유지)

다. 기대효과

- 자유로운 창작·제작활동의 보장과 일정시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유통관련업을 자유업종화함으로써 자율성 신장 및 관련산업 활성화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2000년 상반기중에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00년 하반기 시행 예정

2) 기타 등록제도관련 규제개선

가. 변경등록(신고)제도 개선(법 제9조·제13조, 시행령 제15조)

- 제작업자·유통관련업자는 등록사항중 중요 사항(대표자, 소재지) 변경시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등록하도록 하고, 기타 등록사항 변경시는 등록청에 신고해야 함
- 기타 등록사항은 규제 필요성이 낮고 잦은 변경신고로 인한 일반 국민의 불편과 행정낭비를 초래하므로
- 중요 사항 변경등록은 변경신고로 개선하고 기타 등록사항 변경신고제도는 폐지

나. 등록취소·정지사유 개선(법 제13조·제14조)

-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산음반·국산비디오물 또는 국산게임물의 제작실

적이 없을 때 그 등록을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하나의 콘텐츠(정보·오락제공)를 제작하는데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1년 이상 연구개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에도 창작·제작활동을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산음반, 국산비디오물 또는 국산게임물의 제작실적이 없을 때” 처벌조항 삭제

다. 등록증 반납의무 폐지(법 제12조)

- 등록업자가 당해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등록청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으나
- 대부분의 해당업소가 폐업시 등록증을 반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제내용이므로
- 폐업시 등록증 반납의무 폐지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2000년 상반기)

2. 게임제공업종 구분관련 규제개선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법 제21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별표 1, 2)

- 업종구분
 - 전용게임장 : 게임물을 이용 대중오락 제공
 - 멀티게임장 : 게임물을 이용 문화·오락서비스 제공(단, 인터넷전용선과 근거리통신망(LAN)으로 연결된 컴퓨터가 설치되어야 함)
 - 종합게임장 : 성인물(18세 이용가) 게임물 제공 가능
 - ※ 전용·멀티게임장은 시·군·구 등록, 종합게임장은 등록 후 별도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함
- 게임제공업소가 건전한 오락·문화공간으로 육성·발전되어야 하나 사행성 게임물의 불법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인해 규제위주로 관리함으로써 게임제공업의 발전을 저해

- 건전하게 성인용게임물을 취급할 수 있는 종합게임장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종합게임장 제도 활성화 미흡
- 전용바닥면적 500㎡ 이상인 대형업소에만 종합게임장을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은 반발

나. 개선방안

■ 기본방향

- 게임제공업소를 건전한 문화·오락공간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되 불법·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행성게임물 등 성인용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개선방안

- 성인용게임물 취급 게임제공업이 합법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 성인용게임물 취급 게임제공업소 면적기준, 성인용게임물 취급비용 등 검토
 - 불법·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임제공업소의 사행행위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2000년 3월까지 별도 마련하기로 함(문화부)
- 성인용게임물 미취급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전용·멀티게임장 업종구분에 따른 규제 관련사항 폐지(2002년 자유업종화)
 - 다만, 게임장 유형별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용·멀티게임장업 영업형태에 대한 정의 규정은 존치

다. 기대효과

- 종합게임장 등 게임장제도의 전향적 개선을 통해 건전한 게임장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
- 게임장의 특성에 맞게 규제를 함에 따라 효율적인 게임장 운영 및 불필요한 정부의 간섭 배제와 사행행위 등 불법행위 방지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2000년 상반기중에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2000년 하반기 시행 예정

3. 등급분류제도 개선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법 제18조·제19조·제20조)

- 등급분류
 - 게임제공업소 게임물은 전체이용가, 18세 이용가 2단계
 - 기타 비디오물 또는 가정용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8세 이용가 3단계로 등급을 분류함
 - ※ 음반의 경우 등급분류·보류제도는 없으나 사행심·성적충동·폭력조장 우려시 연소자 이용불가 음반 결정 가능
- 게임물의 경우 가정용게임물은 3단계로(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8세 이용가), 업소용게임물은 2단계로 양분되어 있으나 구별의 실익이 없음
- 비디오물의 경우 등급의 폭이 지나치게 커서 등급분류상의 애로와 청소년층의 문화향수 기회를 제약
 - 약간의 선정성·폭력성만 포함되어도 18세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되어 중고생이 볼 수 있는 영화나 비디오는 크게 제약

나. 개선방안

- 가정용게임물과 업소용게임물의 등급 일원화
 - 전체 이용가, 19세 이용가
- 비디오 등급분류제도 개선
 - (현행) 전체·12세·18세 이용가
 - (개선) 전체·12세·15세·19세 이용가

다. 기대효과

-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일원화하여 일반국민 및 업계의 혼선 방지
- 비디오물의 경우 15세 이용가 등급을 신설, 선진국 형태의 등급분류제도로 전환하여 일반국민들의 문화향수권과 창작자의 권리행사를 신장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2000년 상반기중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2000년 하반기 시

행 예정

4. 수입·반입 추천제도 개선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법 제16조·제17조)

-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 수입시 및 외국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국내에서 제작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고, 외국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반입시에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외국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 수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심의를 받고 있음에도 동일 기관으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중적인 규제에 해당됨
- 여행자 등이 비영리 목적으로 반입시에도 추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국민의 문화향수권 침해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의 실효성이 없음

나. 개선방안

- 등급분류제도가 없는 음반의 경우는 수입추천제를 존치하되
- 비디오물·게임물은 별도의 “수입추천” 절차를 폐지하고 등급분류시 등급을 부여받지 못할 경우 수입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등급분류시 수입 추천업무 통합운영)
- 반입추천제는 세관신고로 대체

다. 기대효과

- 등급분류와 수입추천업무 통합운영을 통하여 일반국민의 편의 제공 및 행정절차 간소화
- 반입추천제 폐지를 통한 국민문화향수권 신장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2000년 상반기중에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2000년 하반기 시행 예정

5. 기타 게임제공업소관련 규제개선

가. 게임제공업소 준수사항 개선(시행령 제14조)

- 게임제공업자는 게임기구(부분품 포함) 및 경품의 매입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 중고게임기 매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여건상 매입자료 확보는 사실상 곤란하며, 또한 이미 구입 사용되고 있는 게임기구 및 부분품의 매입자료 확보는 더욱 불가능하는 등 규제의 현실성이 미비하고
- 경품의 경우에도 수입품 여부, 다량구매, 제조자로부터 직접구매 등의 구입방법에 관계없이 시중 판매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매입자료 보존의무가 불필요한 실정이므로
- 게임기구(부분품 포함) 및 경품의 매입증명 자료 보존의무와 행정처분 규제 폐지

나. 게임제공업소의 시설기준 개선(규칙 별표1)

- 게임제공업소(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의 높이 1.3 m 이상의 칸막이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 전용게임장의 게임기구는 음향을 이용한 뮤직시뮬레이션 및 댄싱게임기 등 체감형 게임기와 PC를 이용한 게임기 등으로 혼합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나친 소음차단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 비디오물감상실 등과 같은 밀실을 방지하여 건전 영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밀실·밀폐된 공간의 설치만 금지” 하도록 하고 칸막이 설치금지 규제는 폐지하도록 함

다.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2000년 상반기중에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2000년 하반기 시행 예정

6. 청소년 연령기준 정비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흥업소 출입, 음주·흡연금지 등 관련 연령기준들이 개별법에서

18세 미만, 20세 미만 등으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어 단속 등 청소년 보호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19세 미만으로 일원화하기로 함

- 영화, 공연물, 음·비·게임물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급분류 및 업소 출입금지 연령은 종전대로 18세 미만 기준을 계속 적용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과 충돌

나. 개선방안

- 청소년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청소년보호법의 연령기준에 맞추어 문화관련법(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영화진흥법, 공연법)의 연령기준을 조속히 정비

다. 기대효과

- 법규정의 충돌로 인한 일선기관과 관련업계의 혼선 방지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2000년 상반기중에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2000년 하반기 시행 예정

Ⅰ 제8절 Ⅰ

규제 품질 개선

. 규제영향평가 사례연구

* 집필자 : 이재홍 과장(Tel. 3703-2153)

1.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 영역

1) 추진경위

-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로 인한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행정·사회에 미치는 제반상황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규제수단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규제의 신설·강화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행정규제기본법에 의무화되어 있음
- 그러나 규제영향분석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규제를 입안하는 각 부처 공무원들이 제대로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취지를 살려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영향분석 지침의 개발·보급과 사례를 통한 실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러한 필요에 의해 외국의 다양한 영향분석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분류·정리·해설하

여 공무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 능력을 배양토록 하여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연구용역 추진

2) 추진내용

가. 용역 실시기관 : 한국행정연구원(기간 : 1999. 1. 30 ~ 1999. 5. 31)

■ 연구원 : 김태운 박사 등 6명

나. 규제영향분석 연구 수행

■ 방문 사례수집

- 미국 대통령실 관리예산처 산하 정보 및 규제분석실 규제영향분석 책임자 회합
- 환경행정관련 미래를 위한 자원(RFF) 등 민간 환경관련 비용편익분석 전문가 회합
- 환경성(EPA), 산업안전청(OSHA), 교통성 등 일선부처 규제담당관

■ 통신망 및 주재원 활용

- OECD의 규제연구 전문집단
- 호주, 캐나다, 영국 등 관련자료

다. 주요 연구내용

■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

- 수질개선을 위한 규제, 산업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정보통신 분야의 규제, 대표적 인 비용·편익분석 사례 등

■ 규제영향분석서 실무지침

- 절차, 주요 점검사항,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서 사례토론, 선진국 사례분석의 교훈

2.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 요지

1)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 특정한 규제대안 효과를 체계적·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과도한 정부개입 및 비효율을 제

거하고 이를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여 정책결정의 객관적 근거 제시

- 규제정책결정의 질적 향상
- 정책의 효율성과 정책과정의 합리성 증진

2) 규제영향분석의 조건(OECD 권고안 중심)

- 규제영향분석의 성공적 운영은 제도의 성과기준과 시행을 위한 실행 전략하에서 성공적인 규제영향분석서의 요건도출이 필요

가. 규제영향분석의 성과기준

- 체계성(systemic)
 - 규제영향분석 결과가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책체계의 일부분으로 규제정책 결정 전과정에 활용
- 실증성(empirical)
 - 규제영향분석에 실증기법을 최대한 적용하여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동일한 영향분석을 하였을 경우 동일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신뢰도 수준 제고
- 일관성과 융통성(consistent but flexible)
 - 분석자가 규제영향분석 수행과정에서 분석적 접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중요한 규제 이슈 선택이나 분석기법 적용에 있어 충분한 유연성 확보
- 확장성(broadly applicable)
 - 규제영향분석은 가능한 많은 정책수단에 적용
- 투명성과 자문(transparent and consultative)
 - 규제영향분석제도에 대한 관료들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와 광범위한 자문활동 필요
- 적시성(timely)
 - 규제영향분석이 정책결정의 타당성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규제정책결정의 전과정에 걸쳐 합리적 정책도구로서 제도화
- 대응성(responsive)
 - 영향분석 결과가 정책결정자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적실성을 가져야 하며 조직 내외부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는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

■ 실용성(practical)

- 규제영향분석의 수행과정에서 실현 불가능한 자원구비를 요구하거나 수용 불가능한 지연을 초래해서는 안되며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경제적 운용과 심사체계의 합리적 설계 등에 있어 실용성 기준을 고려하여야 함

나. 규제영향분석의 실행전략

■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정치적 지지 확보

-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지지를 확보하여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정책과정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실질적 기여토록 함

■ 규제 담당자들의 권한 강화

- 규제 담당자들에게 주인의식을 부여하고 분석의 질 향상 및 일관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규제 담당자들의 권한 강화 필요

■ 규제 담당자들에 대한 훈련과 교육

-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준비가 학계나 실무현장에서 미흡한 상태이므로 규제 담당자들에 대한 훈련과 교육체계의 확립이 제도의 성패에 관건임

■ 일관적이면서도 신축적인 분석기법의 활용

- 비용편익의 원칙은 모든 규제영향분석에 적용되어야 하나 분석기법들은 상황에 따라 신축적이어야 하며 분석기법 적용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실행전략이 필요

■ 자료수집 전략개발과 실행

- 규제영향분석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료에 대한 질적기준의 명백성과 제한된 시간 내에 최소비용으로 높은 질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

■ 규제영향분석과 정책결정 과정의 통합

- 규제담당자들이 규제영향분석을 부가적인 절차로 인식하여서는 안되며 정책결정의 본질적인 요소로 인식

■ 분석자와 실무자간 원활한 의사소통

■ 일반 국민들의 광범위한 참여

■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에 기존규제도 포함

- 현재의 행정규제기본법은 신설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강화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규제에 한해서만 선별적 적용을 규정하고 있어 보완 필요

3)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실무지침

가. 성공적인 규제영향분석서의 요건

- 행정규제영향분석요령에 따르면 성공적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의 성과기준에서 검토한 바 있는 객관성, 실증성, 일관성과 융통성, 확장성, 실용성, 명백성, 포괄성 등의 요건이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충족되어야 함

나. 예비분석(Preliminary Analysis) : 분석 실시 전단계

- 구체적인 규제안의 상세한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규제의 도입이 조직 내부에서 원칙적으로 결정이 되면 규제입안 실무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기획하여야 하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계획을 수립
 - 첫째, 규제영향분석서의 주요 변수(key variables)를 확인하여 현재 검토중인 규제안의 비용과 편익, 실현가능성, 준수율, 영향요인 등 주요변수를 파악
 - 둘째, 선정된 주요 변수들에 대한 규제의 비용과 편익분석의 추론
 - 셋째, 선정된 주요 변수들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데 소요되는 자원(인원, 책임분석자, 소요시간)에 대한 개략적 예상
 - 넷째, 소요예산과 영향분석 일정을 개략적으로 수립하여 과업의 흐름을 순조롭게 이끌 수 있는 준비
 - 다섯째, 예비분석 과정에서 담당 실무자는 부처 내외부의 전문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활동 전개 필요

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참고사항

-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을 분석서가 입증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함
 - 다수의 국민이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
 - 정부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
 - 목적을 가능한 한 구체적인 목표의 체계로 구성
-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검토는 피규제자의 준수율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으로 피

규제자가 규제를 어느 정도 수용해서 지킬 것인가를 자문 등을 통해 규제의 준수율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해야 함

■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 무규제 대안(현 상황 유지)

-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데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방치하여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는다는 대안으로 정의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규제의 준수율이 낮아서 정책이 사문화되는 경우나 비리의 가능성이 높아 정부실패가 야기되는 경우, 규제의 집행비용 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등이 해당되며
- 규제입안자는 제안하는 규제가 무규제대안에 비해 우수하고 무규제로 방치하였을 경우보다는 규제가 도입되었을 때의 상황이 사회적으로 소망스럽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함

• 비규제대안(정책수단으로 규제목적 달성)

- 비규제대안이란 규제가 아닌 정책수단을 의미하며 민간부문의 자율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비규제대안은 보편적으로 규제에 비해 민간의 활력과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규제보다는 비규제대안을 선호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기본정신과 부합

〈정보제공 및 교육〉

- 정보제공 및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던 사실을 인지하게 하여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예 : 초보운전 표지 부착, 금연을 장려하는 홍보 등)를 유도하여 정책목표 달성

〈과세, 보조금, 사용자 부담금〉

- 과세 등의 수단으로 외부성(externality)의 문제를 해결(예 : 오염 배출자 및 감소자에 대한 공해세 및 보조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비규제 대안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규제입안자가 피규제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보유 필요

〈보험 및 책임규정〉

- 책임규정과 연관된 보험제도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강구(예 : 건물의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책임보험에 가입 유도)

-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 규제입안자는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규제가 규제를 낳는 경우
 - 규제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른 규제가 필요하게 되는 등 규제는 확대 재생산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규제입안자는 제안된 규제가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적거나 없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

라.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비례의 원칙

- 합리적인 정책분석 도구로서 비용편익분석의 요체는 비용과 편익을 수치화된 지표를 통해 측정하고, 최종적으로 단일의 화폐가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안된 규제의 채택여부는 규제영향분석, 특히 비용편익분석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임

■ 부처차원의 비용편익분석 전략

- 각 정부부처에서는 부처가 추구하는 일반적인 목표나 가치가 비용편익분석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그 평가와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규제를 도입할 때마다 그 목표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음
 - 이런 경우 부처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부처의 목표 내지는 가치를 각각 단계적으로 평가해 나가는 방안도 중장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전략이 될 수 있음

■ 시나리오의 수립

-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 기법의 성패는 각 대안들의 영향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며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대안의 숫자는 늘어나게 되므로 피규제자가 규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예상하기 위한 시나리오 작성작업은 피규제자 입장으로 감정이입 시도가 필요

※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준수율이며, 예상준수율은 비용편익분석의 모든 단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주요 변수가 되기 때문에 현실성과 설득력있는 예상준수율을 계상해야 함

■ 비용분석의 의무와 특성

- 규제의 경제적 · 사회적 비용이란 규제로 인하여 사회 총후생 수준에 초래된 부정적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제의 편익을 획득하기 위해 국가 전체가 포기하는 희생의 수

준이 비용임

- 규제영향분석에 활용되는 비용의 특성은 단순히 현재 시점에서 추산되는 회계적 비용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적인 차원의 경제적 비용이므로 기회비용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규제의 파급효과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함

〈기회비용/잠재가액〉

- 비용편익분석에서 사용되는 비용은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기회비용은 어떤 정책의 도입이 초래한 사회의 후생변화로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변화로서 산정하여야 함

〈감정이입과 자문〉

- 규제라는 외부의 충격에 대응하여 피규제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가능한 많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각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이해가 대립되는 집단 각각에 대하여 광범위한 자문 수행이 필요함

〈중복산정〉

- 비용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중복산정을 피해야 함

〈계량화 및 화폐화〉

- 가능한 한 산정된 비용항목에 대하여 계량화 또는 화폐화가 필요하며 계량화 또는 화폐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비용의 내용을 명기해야 함

■ 편익분석의 의미와 특성

- 규제의 경제적·사회적 편익이란 규제에 의해 사회 총후생 수준에 초래된 긍정적 효과를 의미하며, 규제의 편익은 규제입안 부처의 조직목표나 세부목표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부처의 입장에서는 몇년간의 계획하에서 자체규제의 주된 편익항목을 평가/측정하여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야 함

〈편익의 수혜자 확인〉

- 규제는 일반적으로 한 집단의 경제적 편익이 다른 집단의 부담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의 부담이 비용분석 과정에서 공정하게 반영되었는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

〈편익의 추정〉

- 규제의 편익은 대기질의 개선, 건강의 향상, 수질의 개선, 예상수명의 연장 등 계량화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측정방법의 결정이 중요함

- 제안된 규제와 특정한 편익과의 함수관계 파악 필요
- 파악된 편익에 대한 경제적 가치 부여

〈준수율〉

- 규제의 도입효과를 정확히 측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우나 집행상 최악의 가능성과 최선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수준까지 준수율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함

■ 할인율

- 할인율은 편익과 비용의 시간성 비교를 통해 순편익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부처가 결정한 할인율을 부처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음
- 할인율은 화폐화된 비용과 편익뿐만 아니라 규제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보호받는 생명의 수, 부상자의 수와 같은 편익의 항목들도 화폐화된 항목들처럼 각각 할인되어야 함
 - ※ 할인율이 10%라고 가정한다면, 내년에 발생하는 11건의 편익은 현재로 환산하면 10건으로 상정

■ 분배적 가치치

- 소득분배에 대한 배려가 없는 비용편익분석은 규제의 배분적 효율성만을 평가하는 기계적인 도구로 전락하게 되므로 규제입안자는 상이한 소득집단에 대한 상이한 규제효과를 기술하여야 함

■ 불확실성과 위험의 고려

- 규제의 불확실한 상황을 의사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영향분석서 작성요령이 요구하는 확정동등치(certainty equivalent) 개념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분석서 작성자는 불확실성(예 : 규제준수율)의 정도와 내용을 가능한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복원 불가능성과(option value)

- 대형댐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등 정부행위가 어떤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option value 개념을 도입하여 신중히 기다리는 행위자체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여 회복 불가능한 정부의 결정의 유보하거나 방지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
- 규제가 복원 불가능한 심각한 변화를 야기하는 경우 예상되는 상황을 가능한한 상세히 명기하고 규제의 효과의 개념적 평가에 반영

3. 연구결과 활용계획

- 규제영향분석 연구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배포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각 담당관 및 전문위원들에게 배포하여 규제심사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 도모
- 각급 교육훈련기관 및 각 부처 공무원 교육교재로 활용
 - 규제개혁위 전문위원, 담당관이 각급 기관 공무원 교육시 활용
 -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규제개혁 실무과목에 편성 교육
 - 각급 기관 규제개혁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교재로 활용
 - 규제담당공무원의 연찬회 등에서 교육

. 규제대안개발 연구

* 집필자 : 이재홍 과장(Tel. 3703-2153)

1. 규제대안개발 연구용역

1) 추진경위

- 규제대안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가능하면 규제적인 정책수단을 피하고, 불가피하게 규제수단을 사용할 경우에도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고품질의 규제를 개발하는데 있음
- 현행 규제영향분석 제도는 규제입안부처에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무규제 및 비규제 대안을 적극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 규제대안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고 규제개혁의 철학과 비전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실질적인 의미의 규제대안을 개발하고 정책 프로그램화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규제대안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현실적 적합성과 응용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각 부처 정책입안자들이 여러가지 비규제를 포함한 대안을 개발할 수 있는 능

력 함양이 필요함

-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여러 가지 정책수단에 대한 다양한 규제대안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분류·정리·해설하여 공무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규제대안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고,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추진

2) 추진내용

가. 용역실시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기간 : 1999. 6. 24~1999. 11. 23)

■ 연구원 : 김태운 박사 등 3명

나. 규제대안 개발 연구를 위한 사례조사

■ 방문 사례조사 : OECD PUMA

■ 통신망 및 주재원 활용

- 미국 대통령실 관리예산처 산하 정보 및 규제분석실
- 미국 환경행정관련 미래를 위한 자원 등 민간연구소
- 호주, 캐나다, 영국 등 관련자료

다. 주요 연구내용

- 규제대안으로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여러 정책수단(정보제공 및 교육, 과세/보조금/사용자분담금 등)의 이론적 근거를 소개하고, 각 대안의 장단점을 유효성, 효율성, 현실적합성 등 분석
- OECD지침과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각 부처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 및 영역을 선정하여 규제대안의 적용사례를 정리·요약

2. 규제대안개발 연구 요지

1) 규제대안개발의 의의

- 규제대안은 규제가 아닌 비규제 대안과 고품질의 규제인 규제적 대안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규제적인 정책수단을 피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고품질의 규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규제개혁의 철학이 반영된 개념으로, 규제개혁 이후의 단계인 규제관리의 단계로 발전·이행되는 과정의 결정적 요소임

- 규제를 입안하는 각 중앙행정기관 실무자들이 규제수단을 선정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제대안 개념의 틀 제시
- 각 행정기관 특유의 성격과 관련된 특수한 규제의 분석에도 유용하도록 보편성있는 규제대안 개발지침의 제시
- 해외의 성공적 사례의 적극적 활용으로 실무적 교훈 제시
- 각 규제대안에 대한 기본이론의 정리를 통해 각 규제입안자들이 규제방식을 창의적, 주도적으로 고안, 설득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

2) 규제대안

가. 규제적 대안(regulatory alternatives)

- 규제적 대안의 특성은 규제이기는 하나 명령·지시적 방식의 전통적 규제에 비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대안을 말하는 것으로, 정적 효율성, 집행의 용이성 등 대안평가의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규제를 의미
- 성과기준규제, 안전조항 및 면제조항, 과정규제, 자동조정조항, 사후적 통제, 동기유인 및 보상 등

나. 비규제적 대안(non regulatory alternatives)

- 전통적 규제방식에 의해 수행되어 오던 정책집행을 가능한 한 규제적 성격이 줄어들거나 또는 완전히 없어진 수단, 즉 규제가 아닌 정책대안을 의미
- 정보수단, 공동규제, 자율규제, 자율협약, 경제적 유인, 거래가능한 재산권적 권리, 동기유인 및 보험 등

3) 규제대안 선정을 위한 판단

가. 절차적 투명성(transparency)

- 규제대안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고 규제대안의 모든 중요한 결정과정에 관련 이해관계집단의 참여와 정보의 제공이 실질적으로 보장됨으로써 규제대상집단이 규제대안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함
 -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자문(consultation), 공청회,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 투명한 행정절차 등의 보장 및 장려 필요

나. 정적 효율성(static efficiency)

- 효율적인 규제대안은 선택된 목표를 최소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나, 규제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집행비용이나 행정비용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도입이 초래한 사회적 희생이라는 경제학적인 기회비용에 입각한 규제의 순응비용과 집행비용 등의 포함된 광의의 개념을 포함하여야 함
 - ※ 정적 효율성의 '정적'은 정책목표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단기적 상황에서 정책집행에 대한 반응의 효과를 의미하며, 대안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효율이 있는 정도를 말함

다. 정보수요(information intensity)

- 정보수요는 고려하고 있는 대안을 프로그램화하고 집행하는 데 어떠한 수준의 정보가 어느 정도로 필요한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보수요는 제각기 서로 다른 행위자가 다양한 문제영역에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과 관련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정보수요라는 판단차원을 평가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은 규제의 입안, 집행, 모니터링, 평가의 각 단계에서의 정보수요가 동일한 규제대안이라 하더라도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규제대안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규제의 각 단계에서의 정보수요에 대한 독립적 검토가 필요 함

라. 정책집행 및 감시의 용이성(ease of monitoring and enforcement)

- 규제 순응수준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 정도를 나타내는 평가변수로 비순응을 포착하거나 감시를 위한 기술적·사회적 어려움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규제기관이 일탈행위를 포착

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을 초래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평가변수의 의의가 있으며, 그 용이성이 낮을수록 피규제자에게 주어진 규제수단을 준수하는 유인의 발생정도를 높여야 함

마. 상황 변화에 대한 유연성(flexibility)

- 주어진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적용되는 기술이나 소요되는 자원의 종류, 기타 경제적 상황이나 행위가 변화하였을 경우 규제대안이 이에 적응하여 집행의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 것으로,
 - 규제대안이 경제적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있다면 추가적인 정보수집과 여러가지 복잡한 조정과정을 피할 수 있으며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바. 동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

- 동적 효율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혁신적 기법과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러한 동적 효율성은 규제대안이 경제의 장기적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의 수단임
 - 예) 새로운 환경변화와 기술변화에 적응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유도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대안은 동적 효율성이 높은 대안이 되는 것임

사. 정치적 고려(political consideration)

- 사회의 집합적 선택문제에 있어 중요한 평가차원으로 분배문제와 윤리문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분배문제는 규제대안이 사회적 형평성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어야 하고, 규제대안이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사회구성원의 일반적 윤리기준과 불일치하여서는 안됨

4) 규제대안 해설

가. 무정책 대안

- 아무런 정책수단도 새로 만들지 않는다는 대안, 즉 무정책이 최선의 대안인 경우로는
 - 첫째, 정의된 사회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를 포함한 정부의 행위가 의도와는 달리 부작용과 반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어떤 사회문제를 정부의 간단한 간

여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정부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대안될 수 있음

- 둘째, 규제의 준수율이 낮아서 정책이 사문화되거나 비리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성공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비용 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는 차라리 정부의 간섭이 없는 것이 더 큰 사회적 실패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의 과정에서 현실성이 없는 규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규제, 부정과 비리의 소지가 야기되는 규제, 지나친 재량권을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규제의 폐지는 규제적 정책수단에서 무정책으로 정책을 전환한 예라고 할 수 있음

- 셋째, 민간 또는 시장의 자동·자율적인 정화기능이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무정책이 좋은 정책대안이며, 단기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민간의 자율적인 사회적·도덕적 조정능력이나 시장의 경쟁 등에 의한 개선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됨

나. 규제적 대안

■ 성과기준규제

- 성과기준규제는 전통적인 명령지시적 규제와는 달리 정책입안자가 의도한 결과나 목표달성 수단을 규정하기보다는 그 바람직한 결과나 목표의 수준 자체를 규제로 설정하여 정책의 목표를 보다 직접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피규제자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목표수준을 달성하는 것임
- 성과기준규제는 결과지향적인 창조적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규제개혁의 주된 흐름에 부합한 규제적 대안임

■ 안전조항(Safe harbours)

- 성과기준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피규제자에게 성과기준과 함께 세부 지침을 제공하여 피규제자에게 성과기준에 따르거나 또는 명령지시적인 세부규정에 따르도록 선택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과기준의 장점을 확보하면서 수단 선택의 불확실성이라는 성과기준규제의 단점을 보완
- 그러나 안전조항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규제가 사실상의 지시적규제로 전락하는 경우에는 성과기준규제의 실효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조항의 도입에 대한 면밀한 조사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적·지시적 접근보다는 성과기준 규제를 보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교육적 기능위주로 안전조항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

■ 면제조항(Waiver or Variance Provisions)

- 면제조항을 활용한 규제적 대안은 명령지시적 규제와 마찬가지로 상세한 표준의 설계로부터 출발하나 피규제자가 동등한 성과를 다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명령지시적 규제사항에 면제조항을 첨가하는 것으로 면제조항을 통하여 명령지시적 규제를 성과기준규제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달성
 - 안전조항이나 면제조항 등 복수의 규제대안을 채택하는 것은 피규제자가 달성할 수 있는 성과의 향상에 있으므로 정부는 가능한 한 목표달성을 권장하여야 하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제의 부과는 지양하여야 함

■ 과정규제(Process Regulations)

- 과정규제는 그 대상과 적용영역이 다소 제한되어 있는 규제로 기업 등 피규제자가 자신들이 준수하여야 할 요건들을 사전에 결정하게 한 후 그 생산과정을 자체적으로 감시하도록 하는 규제로 피규제집단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질적보증요구(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와 유사한 규제대안임
 - 과정규제는 정책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통제하는 체계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과정규제의 전형적인 적용영역은 환경관리, 식품안전 기준의 유지, 작업장 안전, 위험 관리 등이 해당

■ 자동조정조항(Automatic Updating)

- 명령지시적 규제의 문제점인 규제개정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규제에 만기시점을 지정(일몰조항)하는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규제자에게 주기적으로 규정을 재검토하게 하여 규제가 필요없게 된 경우 폐기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함
 - 그러나 규제의 일몰조항은 피규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장래의 계획을 수립할 수 없게 되므로 가능한 한 미래의 환경변화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적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세제의 지수화, 최저 임금제, 가격 통제, 금융통제 등 자동조정조항의 대안채택이 필요

■ 사후적 통제(Ex Post Controls)

- 사전통제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피규제자들이 일반적인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개입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한 행동의 자유를 가지게 하는 침묵정책(silence policy)으로 규정의 상한선을 지키는 경우에는 모든 유형의 행동에 대한 승인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안임

■ 보상(Rewarding Good Behaviour)

- 규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상이라는 긍정적 유인을 제공하여 피규제자의 자발적인 순응을 유도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규제대안임
- 예) 환경관련 기업이 자체적인 기술혁신을 통하여 낮은 오염배출을 하였을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출부담금 부과 또는 보조금과 같은 보상을 지급하는 등 피규제자의 자발적 순응을 유도

다. 비규제 대안

■ 정보의 제공 및 교육, 제품표시제(Information Measures)

- 시장실패의 주요한 형태의 하나인 소비자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생산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의 해소와 바람직한 소비자 선택을 위하여 규제정보의 제공 및 교육, 제품표시제등을 문제의 해결수단으로 활용

※ 공공교육(public education)

- 정부가 광고·유인물 등으로 소비자나 일반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인식시키는 것으로 공중 보건이나 안전과 관계된 에이즈 예방 캠페인, 금연 캠페인,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통하여 현행법에 대한 순응을 향상

※ 정보공개(information disclosure)

- 정보 공개는 직접적으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일반대중이 자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사적인 정보공개와 정부가 정보를 취합하여 대중에게 공개하는 공적인 정보공개의 방법이 있음

※ 설득에 의한 접근(persuasive approaches)

- 정보에 근거한 비규제전략의 변형된 형태로 정부의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적인 합의가 불충분하거나 규제변화에 기술적인 한계가 있을 경우 설득에 의한 접근이 유용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의 방지, 에이즈 확산의 차단, 흡연의 감소, 에너지의 보존, 인종차별의 금지 등과 같은 영역에서 효과적인 설득 프로그램으로 활용

■ 공동규제(Co-Regulation)

- 공동규제는 업체로 구성된 협회나 전문가 협회간의 합의가 규제의 역할을 대신하는 형태의 비규제 대안으로 공동규제의 전형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실행규칙은 기업체로 구성된 산업조직, 직능대표 및 정부 사이에 협의로서 이루어지고 협회 등의 내부적인 처벌을 통하여 규칙에 대한 순응을 높이는 대안임

■ 자율규제(Self-regulation)

- 자율규제는 독립된 정책수단은 아니나 조직화된 집단이 그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자율규제는 법이나 의약품, 금융과 같은 영역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잠재적 피규제자인 내부자에 의해 규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주 관찰할 수 있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피규제 집단이 규제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책임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음

■ 자율협약(Voluntary Agreements)

- 민간부문의 이해관계가 정부의 정책목표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황에 대하여 당사자인 민간부문의 피규제자가 동일한 선호나 상황인식을 하는 경우에 민간부문이 정부에게 자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비규제 대안

■ 경제적 유인 : 과세/보조금/사용자부담금(Economic Incentives)

- 과세는 경제적 유인이라는 비규제 대안으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납세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조절하여 조세의 삭감이나 세금을 공제해 주는 등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사용자 부담금은 규제적인 프로그램의 일부로서의 정부 활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든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한 도로의 혼잡을 통제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도로 사용료가 인접지역의 교통혼잡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용자 부담금은 규제에 대한 순응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보조금 또는 분담액은 세출이란 정부의 편익을 개인이나 다른 정부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규제대안으로서의 세출은 여러가지 형태의 편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목표집단에게 직접적으로 그 편익이 제공되어야 함

■ 거래 가능한 재산권적 권리(Tradeable Property Rights)

- 시장 지향적 규제의 한 형태로 거래 가능한 재산권적 권리란 어떤 특정 권한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발행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대단히 희귀성이 높은 자원을 배분하거나, 오염배출권과 같이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한 것임
 - 거래 가능한 재산권적 권리는 정부가 제약을 받는 활동에 관여하거나 희소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창출되며 자연적 희소성 및 한계에 근거하여 정부가 할당규모를 부과하고 재산권적 권리에 대한 최초의 할당은 정부가 조정

■ 보험(Risk Based Insurance)

- 정부는 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나 생산자 및 지역공동체에게 위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비용을 낮추어 줄 수 있으므로 보험을 생산품의 속성과 생산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명령지시적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 가능함
 - 또한 보험제도는 수용가능한 위험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형평성을 추구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음

3. 연구결과 활용계획

- 규제대안개발 연구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배포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각 담당관 및 전문위원들에게 배포하여 규제심사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 도모
- 각급 교육훈련기관 및 각 부처 공무원 교육교재로 활용
 - 규제개혁위 전문위원, 담당관이 각급 기관 공무원 교육시 활용
 -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규제개혁 실무과목에 편성 교육
 - 각급 기관 규제개혁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교재로 활용
 - 규제담당공무원의 연찬회 등에서 교육

Ⅰ 제9절 Ⅰ

기 타 개 별 기 획 과 제 개 혁

.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제도 규제개혁

* 집필자 : 최동윤 서기관(Tel. 3703-2177)

1)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유학생에게 신원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신원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여 입학이 지연되거나 입학을 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학교 초청 입학시 필요서류를 출입국관리소에 접수시 반드시 학교직원이 직접 내방하여 접수토록 하여 불편 초래
- 출입국관련 서류가 중복되거나 담당자에 따라 요구서류가 서로 달라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업무에 혼선 초래

※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은 5,300여명(외국인 등록 유학생은 2,700여명)이며 매년 증가추세임

2) 규제개혁방안

외국의 입법례 참고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 마련

현 행	규 제 개 혁 방 안
• 유학사증 발급신청시 신원보증서 제출	• 신원보증서 제출 폐지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직접 지참 제출로 해석 · 운용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직접 지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4년제 대학 또는 2년제 전문대학 총(학)장 명의의 초청으로 인한 유학생의 경우에는 - 총(학)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
• 첨부서류를 개략적으로만 규정 -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지침으로 운용 • 외국인 유학생 입학허가시 수학능력만 검증 •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등록시 출입국관리소에 미통보	• 구체적인 첨부서류를 시행규칙에서 열거하여 규제 법정주의 원칙을 준수 • 행정처리상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중요한 요건은 시행규칙에서 명문화하고, -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장관 고시에 포함, 공표 • 입학허가시 재정능력을 함께 심사 • 학교당국에서 통보하도록 제도화

3) 기대효과

- 신원보증서 제출 면제 및 입학허가시 수학능력의 재정능력 심사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선진화 및 국제적 추세에 부응
- 사증발급인정서 직접 신청 개선, 첨부서류 법정주의 등을 통해 출입국 절차 개선, 간소화 및 명확화

4)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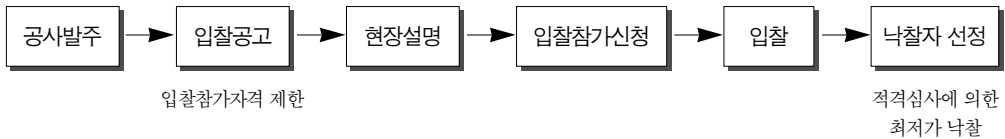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법무부, 1999. 2. 27, 1999. 12. 3)
- 외국인유학생관리지침 제정, 시행(교육부, 1999. 12. 16)

· 공공공사의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참가 자격제한 개선

* 집필자 : 박계옥 사무관(Tel. 3703-2158)

1. 규제현황

일반적인 경쟁입찰 절차



- 입찰은 일반경쟁에 의해 참여자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 및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으로는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필요한 기술 보유 상황, 영업소의 소재지 등이 사용되고 있음
- 공사실적에 의해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 당해 공사규모(양)의 1배, 공사추정가격의 1배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는 제한기준을 정하여 그 공사실적 규모 또는 공사실적액 이상의 업체만을 참여시키고 있음
 - (예시) 공사 규모가 1,000톤일 경우 입찰참여업체를 과거 준공실적 500톤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고, 공사추정가격이 1,000만원일 경우는 과거 공사실적액을 500만원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음

※ 규제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5조

2. 문제점

- 현행규정에 의하면 ①공사목적물의 규모(양) ②공사의 추정가격 ③목적물의 규모 또는 추정가격 등 3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그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이 가능하나 일부 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에서는 '가격'만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더욱 제한하는 사례가 있음

-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공사 '규모' 기준에 비해 참여업체 수가 더욱 더 제한되며 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비합리적임
 - ※ 문제사례 : 하·폐수 종말처리시설 공사 입찰
 - 1993년부터 1996년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를 당해 계약목적물의 1일 처리용량을 기준으로 제한하였음
 - 1997년 이후 조달청에서는 계속 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와 정부투자기관에서는 공사실적금액(준공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을 신설
 - 다만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참여제한을 최소화하는 기준, 즉 입찰참여를 가장 많이 허용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함

현행규정 및 개선안 비교

현 행	개 선 안
②~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도급 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사제조 또는 용역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실적 가.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2.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②~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도급 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공사제조 또는 용역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참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기준 즉, 입찰참여를 가장 많이 허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가.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 2.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

4.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개정(1999. 9. 9) 현재 시행중

· 자동차 운전속도 제한관련 제도개선방안

* 집필자 : 권용식 사무관(Tel. 3703-2154)

1. 자동차 운전속도제한 현황

가. 운전속도 관련제도

- 도로별 · 차종별 법정최고속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조)
 - 도로별 법정최고속도
 - 일반도로 : 60km/h (편도 2차로 이상 70km/h)
 - 자동차 전용도로 : 70km/h (편도 3차로 이상 80km/h)
 - 고속도로 : 편도 2차로 이상 100km/h (중부고속도로는 110km/h), 편도 1차로 80km/h
 - 차종별 법정최고속도(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 한함)
 - 승용차 및 고속용 승합차 : 100km/h (중부 110km/h)
 - 고속용을 제외한 승합 · 화물 ·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80km/h (중부 90km/h)
- 차로별 통행차량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8)
 -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의 통행차량 기준
 - 1차로 : 승용차의 추월차로
 - 2차로 : 승용차의 주행차로, 3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
 - 3차로 : 고속용 승합차의 주행차로, 4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
 - 4차로 : 고속용 이외 승합 · 화물 · 특수 ·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고속도로 이외 도로의 통행차량 기준(편도 4차로의 경우)
 - 1, 2차로 : 승용차
 - 3차로 : 승합, 화물, 건설기계(덤프, 레미콘)
 - 4차로 : 이륜, 원동기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기타 건설기계

나. 운전속도관련 실태

■ 도로별 법정최고속도 관련

- 제한속도에 대한 규제준수율이 낮음
 - 실제주행 평균속도는 대부분 법정최고속도를 상회하고 있음
 - 고속도로보다 일반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위반정도가 큼
 - 야간에는 모든 도로에서 주간보다 5~10km/h 정도 높은 속도를 보이고 있고, 위반자 수도 더욱 많음

■ 속도위반 단속

- 1998년 단속실적(20km/h 초과) : 1,348천건
- 단속방법 및 장비
 - 무인단속 설비 및 경찰관 단속(차량에 설치한 포토레이저 및 휴대용 스피드건 사용)

■ 교통사고 실태

- 1998년 교통사고 발생 239천건(1997년비 2.7% 감소), 9,057명 사망(1997년 대비 21.9% 감소)

2. 외국의 속도관련제도 현황

각국의 고속도로 제한속도 비교

국 가	최 고 제 한 속 도
한 국	• 100(110)km/h : 승용, 고속승합 • 80(90)km/h : 일반승합, 화물, 특수 등
일 본	• 100km/h : 승용, 승합, 5톤 미만 화물 • 80km/h : 5톤 이상 화물 및 기타 지정차량(대형특수자동차, 3륜차, 660cc 이하 경자동차, 견인차, 125cc 이상 이륜차)
미 국 (캘리포니아)	• 70mph(112km/h) : 승용, 승합, 2축 이하 화물 • 65mph(104km/h) : 지정차량(3축 이상 트럭, 다른 차량을 견인하는 승용차량과 버스, 학교버스, 사람수송 농업용 차량, 위험물적재차량, 10인 이상 수송하는 트레일러 버스)
영 국	• 70mph(112km/h) : 승용차량, 12m를 넘지 않는 버스, 7.5톤 미만 화물차량 • 60mph(96km/h) : 밴과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승용차량, 7.5톤 이상 화물차량

- 전체적으로 선진 외국의 최고속도는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고, 차종별 속도에 있어서는 승합 및 중소형 화물차량도 승용차와 동일한 속도로 규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 기준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물 적재차량 등에 한하여 속도와 주행차로를 지정하고 있음

3. 제도개선방향

1) 도로별 운전최고속도 개선

가. 일반도로

■ 현황 및 문제점

- 일반도로의 설계속도는 편도 1차로는 60km/h이며, 편도 2차로 이상 신설도로의 경우 80km/h 까지 설계되는 구간이 있음
- 일반도로는 자동차 외에 이륜차·농기계 등이 혼입되어 각 차량간 속도 차이가 크고, 곡선구간이 많은 도로와 함께 편도 2차선 이상이고 마을과 연결되지 않은 운전여건이 양호한 도로도 있음
- 평균주행속도가 법정규제속도보다 13.6~29km 높아 규제준수율이 매우 낮고 단속에 대해 불만이 많고, 기하구조가 양호한 경우에도 법정최고속도가 설계속도보다 낮아 도로상황을 감안한 탄력적 속도지정을 저해함

■ 개선방안

- 일반도로에서의 법정제한속도 60km/h(편도 1차)~70km/h(편도 2차로 이상)를 탄력적 속도제한제를 도입하여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의 경우 설계속도, 평균주행속도, 도로 주변상황을 감안, 최고 80km/h 범위내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함
- 속도상향구간 중 부분적으로 속도제한이 필요한 구간에 대한 안전표시등으로 사고예방 조치 강화

나. 자동차전용도로

■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 전용도로는 이륜차·농기계 등의 통행이 제한되어 일반도로보다 차량간 속도

차가 크지 않고, 대부분 설계속도가 80km/h이며, 중앙분리시설 등 비교적 양호한 기하구조로 건설되어 있음

-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실태
 - 기하구조가 양호한 도로의 규제준수율이 3%이내
 - 설계속도, 규제속도, 실제 주행속도의 적절한 고려가 미흡하여 차량간 속도 분산이 큼

■ 개선방안

- 현행 법정제한속도 70km/h (편도 2차로 이하)~80km/h (편도 3차로 이상)를 도로 설계속도, 평균주행속도, 도로주변 상황을 감안하여 차로수에 관계 없이 90km/h 범 위내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

다. 고속도로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100km/h (중부 110km/h)이나 산간지형이 많고 일부구간의 설계속도는 법정최고속도보다도 낮음
 - 설계속도가 법정제한속도 이하인 구간 : 경부고속도로 10개 구간 연장 60.4 k m, 영 동고속도로 12개 구간 연장 79.2 k m, 호남 · 동해 · 남해고속도로 19개 구간 연장 50.4 k m 등
- 고속도로 이용실태
 - 고속도로의 규제준수율이 낮으며 제한속도 상향요구가 있음

구 분	설계속도	법정속도	평균속도	규제속도 초과율
경부고속도로	100km	100km	111.7km	82.7%
중부고속도로	120km	110km	113.7km	54.3%

■ 개선방안

- 고속도로의 일부구간이 법정속도보다 낮게 설계된 점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
- 다만, 속도위반시 단속방법을 개선하여 경미한 위반시는 지도 · 계몽위주로 단속하고 일정범위 이상 위반시에 처벌함으로써 민원을 감소시키고 부정소지를 줄임

2) 고속도로에서의 차종별 법정최고속도

■ 현황 및 문제점

- 승용차·고속용 승합은 100km/h (중부 110km/h), 고속용이외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등 80km/h (중부 90km/h)인 현행 제도는 승용차 중심으로 되어 있고 여타 차량의 성능향상이 고려되어 있지 않음
-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는 승용차에 비해 제한속도가 낮아 불만이 크고 제한속도 위반이 많고, 법정최고속도가 다른 승용차와 승합차·화물차가 섞여 운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외국의 경우 승합·소형화물차는 일반적으로 승용차와 같은 규제를 받음

■ 문제점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는 최고속도 100km/h인 고속용 승합차량과 80km/h인 일반승합이 동일한 차로를 이용하여 제도상 모순임
- 자동차관리법상 고속용 승합과 일반승합의 구분은 없으며, 1996. 12. 9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2001. 1. 1일부터 발효되면 현재 승합자동차인 승차정원 7~10인 차량이 승용자동차에 포함되므로 현행 차종별 속도제한은 개선이 필요함

※ 외국의 사례

- 일본 : 5톤 미만 화물·승합차량은 제한속도에서 승용차와 같이 규정
- 미국(캘리포니아) : 승합, 2축 이하 화물차량은 승용차와 같이 규정
- 영국 : 12m를 넘지 않는 버스, 7.5톤 미만 차량은 승용차와 같이 규정

■ 개선방안

- 승합자동차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내 법정최고속도를 100km/h (중부는 110km/h)로 조정하여 승용차와 불균형을 해소
 - ※ 1.5톤 초과 화물, 특수차량, 건설기계 등은 현행 80km/h를 유지하되, 차종별로 고속주행 시 안전성에 관한 연구후 제한속도 조정을 재검토

3) 차로별 통행차량 기준

■ 현황 및 문제점

- 고속도로에서는 주행차로와 추월차로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우측추월이 증가하여 사고

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차종별 차로 지정으로 비어 있는 차선의 이용이 제한되어 도로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물류비용이 증가됨

- 일반도로의 차로지정도 도로이용 효율이 떨어지나 고속도로와는 다른 시내도로의 경우 차종별 차선제한을 통한 차선변경을 억제하여 사고요인을 줄이는 효과도 있음

■ 개선방안

- 지정차로제는 도로이용효율을 떨어뜨리므로 원칙적으로 차로별 통행기준은 폐지하되 시가지 구간 등 필요한 구간은 경찰청장 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되, 단 대형차량, 위험물 적재차량, 건설기계, 특수차량 등은 최우측차로 통행을 계속 의무화함

4) 속도 위반시 단속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종전의 스피드건에 의한 경찰관 직접단속에서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으로 변경함에 따라 과속에 의한 사고가 감소되고 있음
- 무인 카메라에 의한 단속대상은 속도초과 15~20km/h 이상에 대해서만 단속(무인 단속장비관리 및 사무처리지침에 근거함)
- 이동식장비 및 휴대용 속도측정기에 단속은 주행속도계나 속도측정기 등의 오차를 감안하여 일정범위 내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이 없이 단속경관이 임의 판단한 범위 초과시 처벌함
 - 단속 경관간에 단속대상 제외 범위가 달라 민원 및 부정의 소지가 될 수 있음

■ 개선방안

- 이동식 및 휴대용 속도측정기에 의한 단속은 주행속도계, 속도측정기 오차 등을 고려하여 법정속도에서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때에 하고 구체적인 속도는 도로별로 지방경찰청장이 정함

5) 속도 위반시 면허정지처분 기준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규정속도 위반시 범칙금(20km/h 초과시 6만원) 및 벌점 15점 처분을 받으나 전반

적으로 처분에 대한 심리적 반발이 큰 편임

- 1년내 2회 처분되어 벌점이 30점이 되면 1점당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 처분(교육 이수시 20일 감경)을 하나 과도하다는 민원이 있음

■ 개선방안

- 면허정지기준을 벌점 30점에서 40점으로 조정하여 3회 이상 위반시 면허정지되도록 함

4.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 1999. 4. 30 시행

-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사무처리지침 개정 : 1999. 5. 24

5. 차로별 동행차의 기준(지정차로제)관련제도 보완사항

■ 검토경위

- 지정차로제 개선 이후 경찰청에서 추가로 최우측통행의무대상에서 제외시킨 대형화물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대형차의 난폭운전과 상위차로 진입에 따른 시야 장애로 승용차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여론 지적 및 불만민원이 증가하고, 화물적재차량이 상위차로로 지속주행함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을 저해하며 잦은 진로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

■ 개선방안

〈제54차 행정사회분과위원회(1999. 12. 24) 및 제46차 규제개혁본회의(2000. 1. 28) 심사결과〉

- 중·소형승합, 1.5톤 이하 차량은 승용차와 같이 차로제한을 폐지, 대형승합(36인승 이상), 1.5톤 초과 화물차 등은 차로별 통행제한

※ 차로별 자동차 통행기준

〈편도 3차선 고속도로〉

- 1차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차의 앞지르기 차로

- 2차로 : 승용 · 승합, 1.5톤 이하 화물차의 주행차로

- 3차로 : 1.5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주행차로

〈편도 3차선 고속도로 이외도로〉

- 1차로 : 승용차, 중 · 소형승합차,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차

- 2차로 : 대형승합차,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 3차로 :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그 밖의 건설기계 · 저속차량의 하위차로 통행의무(하위차선 통행의무대상에 위험물 적재차량을 추가)

■ 시행시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일정기간의 제도보완 및 제도활동 후 2000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의료용구산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 집필자 : 권태성 과장(Tel. 3703-2177)

1. 의료용구 품질관리제도 개선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 규제현황

- 의료용구 제조 · 수입자는 제조 · 수입시설에 대해 조사기관(생산기술연구원)의 ‘품질 관리기준적합인정’을 거쳐 식약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약사법 제26조, 규칙 제22조, 제23조)
- 조사기관은 제조 · 시험시설 또는 보관시험시설, 품질문서 등이 ‘의료용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규칙 별표 4의 2)’ 또는 ‘수입의료용구품질관리기준(규칙 별표 4의 3)’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적합 인정

※ 시설기준령(시행규칙 별표 4의 3)에서 정한 시설기준(약사법 제26조 제2항)

- 제조 : 작업소 · 시험실 및 보관소 면적의 합이 100㎡ 이상이고, 그 중 시험실의 면적은 15㎡ 이상

- 수입 : 영업소 및 창고 면적의 합이 33㎡ 이상, 시험실 15㎡ 이상
- ※ 제조업자는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및 제조위생관리 기준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함(수입자의 경우에는 제품표준서, 수입관리기준서)
- 품목별 제조(수입)허가는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 안전성·유효성검사(대상품목에 한정), 시험검사를 거쳐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의약품구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되며, 이중 1등급은 신고, 2~3등급은 허가사항
- 동일 외국제조회사의 동일제품(모델)을 타수입자가 수입할 경우 품목허가에 있어 그 품목에 대한 최초 수입자와 동일 절차 필요

■ 문제점

- 품질관리 적합 인정기준이 까다로워 사업자의 자유로운 활동 및 진입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
- 작업소·시험실, 영업소·창고 등의 면적은 사업자가 자기필요에 따라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불필요
- 또한, 다양한 의약품기기 제조(수입)소에 동일한 면적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고용규모별 업체수 및 인원현황(제조업)

고용규모	구 분	업 체 수		인 원 수	
			점유율(%)		점유율(%)
300명 이상		4	1.0	2,048	17.0
300~200명		7	1.7	1,809	15.0
200~100명		16	3.9	2,344	19.0
100~ 50명		27	6.6	1,940	16.0
50~ 20명		58	14.3	1,809	15.0
20명이하		295	72.5	2,142	18.0
합 계		407	100	12,092	100

- 종업원 20명 이하의 소규모기업이 대부분(약 73%)인 국내의료용구시장의 실정 고려시 품질관리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비현실적
- 제품품질이 기검증된 동일회사·동일제품을 다른 수입자가 품목허가 요청시에도 동일 절차(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 형식시험)를 요구함은 불합리

-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시간·비용(검사료)을 수반케 함

나. 개선방안

- 제조(수입)품질관리 기준 적합 인정시 시설 면적기준 삭제
 - 외국의 예 : 미국, 일본, 유럽은 시설 면적기준을 두고있지 아니하며 해당품목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고 시험실, 제품보관실 등 합당한 공간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 의료용구 제조(수입)설비 등의 품질관리 기준항목을 간소화하고 실효성 있게 개정
 - 품질관리기준 항목 중 작업실 및 설비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원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은 품목의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
- 동일 외국제조회사의 동일제품을 타 수입업자가 수입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와 기 허가된 제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만으로 대부분의 품목이 수입허가가 가능토록 개선
 - 사업자가 동일품목의 수입여부 확인을 식약청에 요청할 경우 이를 확인해 주도록 의무화

다. 기대효과

- 제조(수입)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시 시설면적기준을 폐지함으로써 품목에 따라 제조 및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시설을 구비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게 되므로 의료용구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활성화를 도모
- 의료용구 제조(수입)설비 등의 품질관리기준항목을 간소화하고 실효성 있게 개정함으로써 제조 및 수입업소의 시설투자비 경감효과
- 국내에서 이미 수입품목허가를 득한 제품일 경우 제품의 동일성 확인으로 쉽게 수입할 수 있음에 따라 수입업무 간소화 및 경비절감효과 기대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2000년 상반기중에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제3항,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및 4의3,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를 개정 시행 예정

2. 기준 및 규격의 투명성 확립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 규제현황

- 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의 사전절차로 제조(수입)자는 의료용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식약청의 검토를 받음
 - 제조(수입)업체는 기준 및 규격 작성근거, 해외 기준 및 규격자료를 검토 하여야 함
 - 식약청에서는 해외의 공인된 기준 및 규격과 각국의 특수 기준 및 규격을 적용(다만 현재 34개 품목의 기준은 복지부 또는 식약청 고시로 규정)
 - 기준 및 규격 기재사항 : 제품의 명칭 및 등급, 형상 및 구조, 원자재, 성능, 효능 및 효과, 사용·조작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시험규격, 표시사항, 참고사항 등
- 식약청의 기준 및 규격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검사신청을 할 수 있음
- 관련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 결과 적합인정을 받은 경우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허가 신청

■ 문제점

- 기준 및 규격의 투명성 결여로 인하여 품목제조(수입)을 위한 시간·비용부담 가중
 - 표준기준 및 규격이 미비하여 의료용구 제조업체가 세계 각국의 기준 및 규격을 검토 하여 제시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
 - 식약청 검토결과 기준 미달시에는 새로이 제품을 개발하여야 하는 부담 초래
 - 따라서 제조자는 제품개발시부터 사전에 시험검사 적합 등 절차를 수행하기가 곤란 하므로 허가기간 장기소요(4개월 이상)
- 식약청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시험검사 기준 및 규격이 달리 적용될 수도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외국의 예 : 미국의 경우 시험항목을 제조자가 국제규격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일본 규격(JIS) 제정하여 이를 준용토록 하거나 국제규격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나. 개선방안

- 제조자가 기준 및 규격을 예측하여 제품개발시부터 시험검사 적합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일반화된 기준·규격 등 공통부문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공통기준

및 규격으로 제정하여 법규에 명문화

예) 전기·기계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기준, 생물학적안정성에 관한 시험기준, 전자파 장애방지에 관한 시험기준, 방사선 안전에 관한 시험기준 등

- 제품의 특성에 따라 표준화가 곤란한 개별적 시험검사 기준 및 규격은 제조자가 설정하여 검사기관의 사전 시험검사 후 식약청에서 적합 여부 판정

다. 기대효과

- 제조업체는
 - 기준 및 규격 작성비용 및 시간 절감
 - 제품개발시부터 예측된 시험검사기준에 의하여 시험검사를 사전에 완료, 허가절차를 1개월 이상 단축
 - 기준 및 규격 불합격으로 인한 제품재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부담 완화
- 담당 공무원은
 - 제조업체가 명문화된 기준 및 규격에 맞게 기준 및 규격을 작성하면 검토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어 업무량 감축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2000년 상반기중에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를 개정 시행 예정
 - 의료용구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및 검토지침 개정(1999. 1. 5)
- 의료용구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을 제정하여 1999. 12월부터 시행
-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 규격안을 제정하여 2000. 3월부터 시행
 - ※ 전자파 장애방지에 관한 시험기준 제정(1997, 전파법)
 - ※ 방사선 안전에 관한 시험기준 제정(1996, 의료법)

3. 제조(수입)품목 허가증 발급기일 단축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 및 규격검토, 시험검사, 제조(수입)품질관리조사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인증을 획득한 후에 품목허가증만을 발급하는 기간을 25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불

합리

나. 개선방안

- 제조(수입)품목허가증 발급기일을 10일 이내로 의무화

다. 기대효과

- 허가증 발급기일 단축(25 → 10일)으로 제품을 조기생산, 시장진입할 수 있음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민원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1999. 5월부터 시행

4. 의료용구산업체의 전문화·특성화를 위한 위탁제조 범위 확대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 규제현황

- 의료용구를 제조할 때는 제조자가 당해 품목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직접 제조해야 하며, 다만 고비용 시설 또는 이용빈도가 낮은 시설을 필요로 하거나 특수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조공정에 대해서 제3자에 위탁가능(이 경우도 부분위탁만 가능하며 완제품 위탁은 불가함)
 - 위탁자는 수탁자의 제조공정 및 시험검사에 대해 관리감독

■ 문제점

- 위탁제도가 제한됨으로써 그 제조업체가 다른 종류의 품목을 개발한 후 생산하고자 할 때 과도한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함
 - 따라서 영세한 중소기업체의 경우는 생산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음
 - 이는 중소기업체의 신기술 개발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서 개발전문업체 또는 생산전문업체 등 업체별 전문화 및 특성화를 유도키 어려움

나. 개선방안

- 수탁업체가 동일제품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질관리기준 인증(예 : 우수 GMP,

E N 46000, ISO 9000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완제품 위탁제조를 인정

다. 기대효과

- 신제품(기술) 개발전문업체 · 생산전문업체로 특성화 발전을 유도
- 기존 업체의 경쟁력 향상 및 신기술 개발 업체의 시장진입 용이 → 창업기회 확대 → 고용창출 효과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2000년 상반기중에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 · 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및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 · 시행 예정

. 오수처리시설 설치관련 규제개혁

* 집필자 : 김덕영 사무관(Tel. 3703-2189)

1. 오수처리시설 설치관련 규제현황

가. 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

- 하수처리구역내 건축물 : 기본적으로 단독 정화조
 - 합류식 하수처리지역 : 단독 정화조
 - 분류식 하수처리지역 : 설치면제
- 하수처리구역외 건축물 : 기본적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
 - 건물 신축시 :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
 - 하천, 호수, 바다로부터 500m 이내 : 97. 7. 1일부터 시설
 - 상수원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 99. 1. 1일부터 시설
 - 일반 및 청정지역 : 2002. 1. 1일부터 시설
 - 청정지역내 기존건축물 중 800m² 이상(음식점은 200m²)은 오수처리시설로 교체 설치 의무

나. 오수처리시설 규모기준

- 오수처리시설 : 1일 오수발생량 및 BOD농도 등을 산정하여 처리 가능한 이상의 규모시설을 설치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 방법」(환경부 고시) 적용
- 단독정화조
 - 한국산업규격 KS F1507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산정기준 (국립기술품질원 고시)에 의거 규모 산정

2. 분야별 개선방안

가. 청정지역내 기존건물의 오수처리시설 교체 규제 합리적 조정

- 규제현황
 - 청정지역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없는 지역의 건축연면적 800m² 이상(음식점 200m²)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1998. 12. 31일까지 오수처리시설로 교체(6개월 연장 가능)토록 의무화하고
 -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도 1999. 1월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방류수질기준 : BOD 40~80ppm → 20 ppm
- 문제점
 - 기존의 처리시설(정화조 또는 성능이 낮은 오수처리시설)을 건물의 증축, 용도변경 등 새로운 원인행위가 없음에도 오수처리시설로 교체토록 하여 경제력이 낮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 국가에서 종합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하지 않은 지역의 주민에게만 개인 비용으로 부담케 하고 있어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대두(교체비용 : 규모에 따라 2천만원~1억원 수준)
 - ※ 강원지역 기존건물의 시설교체 이행률(1998. 12월말 기준)
 - 오수처리시설 설치 : 대상시설 803개소 중 89.5%인 728개소 미설치
 - 오수처리시설 개선 : 개선대상 587개소 중 66.6%인 391개소가 시설 미개선
 - 오수처리시설은 설치 후 계속적인 관리가 미흡할 경우 오히려 미처리오수 방류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시설로, 적절한 시설관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률적 시설교체로

인한 문제발생 우려

■ 개선방안

-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중에 있는 구역은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방류수질기준 강화대상에서 기본적으로 제외토록 함
 -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개별건축물의 오수를 모아 종합적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오수처리시설은 불필요하게 됨
-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지 않는 구역의 기존건축물은 용도변경, 증축 등 원인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토록 하되
 - 용도변경, 증축 등의 원인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교체 및 방류수질기준 적용을 일정기간(예 : 3년) 유예토록 개선하고
 - 유예기간 동안 국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 관리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 추진

■ 기대효과

- 주민부담경감(교체대상 약 2,500개소)
 - 교체대상 주민부담 경감 및 지속적인 범범자화 방지
 - 유예기간 동안 국가의 지원방안 추진, 합리적으로 교체
- 처리시설 관리능력 수준에 적합한 처리시설 유지

나. 단독정화조 설치 기존건물 용도변경시 정화조 증설 규제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도시내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증축 없이 건물용도가 오수발생량이 증가되는 용도로 변경시에도 증가하는 용량만큼의 정화조를 증설(교체)토록 하고 있음
 - 정화조 규모는 KS F1507(건축물 용도별 정화조 처리대상기준 : 국립기술품질원 고시)에 따라 용도별로 인원산정
 - 일반음식점 : 바닥 연면적 m^2 당 0.3인
 - 사무실 : 바닥 연면적 m^2 당 0.08인
 - 단란주점 : 바닥 연면적 m^2 당 0.23인
- 도심지역내 기존 건물의 경우, 정화조 증설(교체)부지 확보가 어렵고 교체비용이 과다함에 따라 사실상 정화조 증설이 불가능하여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변경이 가능하여도

오수법상 정화조 증설이 되지 않을시 영업허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정화조 증설규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통상 건물임대 계약 후 허가여부 문제가 발생, 계약 다툼이 있거나 허가 없이 불법영업하는 실정

※ 정화조경유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최종 재처리되므로 분류식 하수종말처리지역에는 증설문제가 기본적으로 불필요하나 합류식 하수종말처리지역에서는 악취문제 등으로 증설이 필요함

- 건축물 용도별 정화조 대상기준 설정을 업무와 전문성이 없는 국립기술품질원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1999. 1월 기준 개정시 일부기준 과다 강화
- 종래 영업장 면적 → 건물연면적(바닥, 복도 포함) 기준으로 강화

■ 개선방안

- 하수종말처리시설내 구역으로서 건물용도변경으로 인한 오수증가가 20% 이내인 경우로 정화조 증설이 불가능할시에는 정화조 청소 횟수증가 등으로 보완토록 하고 정화조 증설을 면제토록 완화
- 건축물 용도별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은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제·개정하고, 국립기술품질원은 용량크기별로 규격의 기준만 고시토록 업무조정

■ 기대효과

- 하수종말처리구역내 정화조 건물(1,368천개소)의 건물 용도변경 원활화
- 일부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 오수농도 적정화로 처리효율성 제고

다. 공동주택 등의 오수처리시설 설치규모 기준의 합리적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이 과다·확일적으로 설정되어 도시에 비해 오수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읍·면지역의 경우 일부 과다한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 발생
- 일부시설의 경우, 처리유입량 부족으로 오수를 일정시간 모아 시설을 가동(처리)하기도 하여 관리 소홀에 따른 가동 중단으로 미생물이 죽는 등 부적정 처리 우려
- 설치비용 및 시설가동 전기료의 과다 비용부담을 초래

■ 현행기준의 문제점

- 1인당 오수발생량의 최소기준을 가정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화초재배, 정원관리 등 오수발생과 연결되지 않는 수량만큼 오수발생량 기준이 과다

현행기준 : 공동주택의 경우

1인당 오수발생량	200 l	• 수도물의 가정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가구당 인원산정	거실3개일시 4인	• 1가구당 3.5인, 거실2 초과 거실 수마다 0.5인 가산 • 1거실만 있는 경우 2인으로 산정

* 현행기준은 최소기준으로 실제 현행기준보다 더 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일본의 경우 오수전환율(80%)을 적용하여 기준산정

- 특·광역시, 읍·면 등 도시와 농촌지역에 따라 가정용수 사용량(오수발생량)의 편차가 상당함에도 전국적 획일적인 기준 적용
 - 도심지역보다 읍·면 지역의 경우 과다시설이 되어 부적정처리 발생
- 교육시설 등의 경우 연간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오수발생이 없는 기간(방학 등)이 있어 유입량 부족으로 시설가동 중단에 따른 미생물 고사로 미처리오수 방류 등 문제 발생

■ 개선방안

-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역별로 적정규모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오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

- 1인당 기본적 오수발생량 기준을 가정용수 사용량에 오수 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조정(구체적인 오수전환율은 환경부에서 조사 후 결정)

(예시) 1인당 기본 오수발생량 = 1일 가정용수 사용량(205l) × 전환율(90% 가정) = 185 l/일

※ 참고 : 상수도 사용관련 통계

- 1인 1일 수도 사용량 : 409l (공급기준, 공업·농업용수 포함)
- 1인 1일 가정 용수 사용량 : 205l (수도권 228l, 기타지역 182l)
- 1인 1일 가정용수 사용량(수도요금부과기준) : 183l

중·수도기술개발 방안연구(1994. 건교부)의 용도별 자료

수도권	세탁	화장실	목욕	취사	세면	살수세차 등 기타
233 l	47.0	63.2	34.1	45.1	27.0	16.9
100%	20.1	27.1	14.6	19.3	11.6	7.3

- 오수전환율을 고려한 기본오수발생량에 특·광역시, 읍·면 등 지역별로 계수를 달리 적용토록 추가 조정, 지역별 적정규모 시설이 되도록 개선

- 구체적인 지역별계수는 환경부에서 표본조사 후 결정

(예시) : 특·광역시 전국 평균의 110%, 기타 시 지역 97%, 읍·면지역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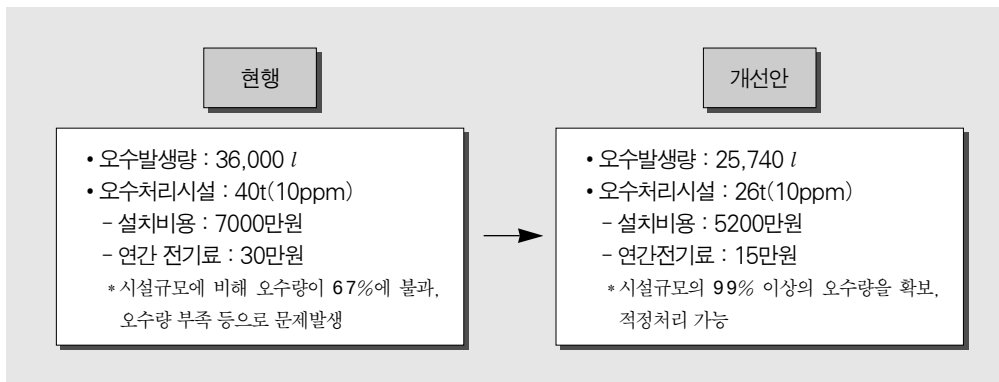
- 교육기간, 연수원 등 가동중지기간이 연속적으로 2개월 이상 있는 시설의 경우

- 오수처리시설의 구조를 시설의 폭기·처리조 내에서 소규모로 처리가 가능토록 계획을 설치하는 등 별도 오수처리시설 개발 및 별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

■ 기대효과

- 오수발생량에 적합한 오수처리시설 규모설치로 오수처리효율성 제고
- 읍·면지역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비용부담 경감

개선예시 : 읍·면지역 45세대(3개룸) 공동주택의 시설규모



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오수처리시설 공동설치 권장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대도시 주변지역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인 소규모공동주택(주로 19세대 미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와 관련 문제점상당

• 문제점

- 대도시 주변 읍·면지역에 증가하고 있는 19세대 미만의 소규모공동주택은 대부분 시설에 비해 유입량 부족, 기술관리인 부재 등으로 시설의 적정가동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음

※ 관리부족으로 미생물이 죽은 상태로 미처리 오수 방류 등

-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실제 연접하여 건축함에도 각 동을 19세대 미만으로 분리(명의를 달리하는 등)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으나, 각 공동주택마다 오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토록 하여 설치비용 과다 및 개별시설마다 유입량 부족 등으로 부작용 발생 가중

■ 개선방안

- 소규모공동주택 신축시 주변의 기존공동주택 오수처리시설의 용량 범위내에서 인입처리가 가능한 경우 공동 이용을 원칙으로 하는 적극적인 권장 규정 도입
-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이 인접하여 유사시기에 건축이 예상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의 공동설치를 적극 유도
- 주택업체는 편법에 의한 19세대 미만으로 분리 건축하는 것이 아님을 위장하기 위해 공동설치를 회피하고 별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일선 집행기관의 경우 감사 지적 우려 등을 이유로 별도 설치를 원칙으로 처리하고 있어 적극적인 권장 규정 도입이 필요함

■ 기대효과

- 적정 오수량 확보에 따른 오수처리 효율성 제고
- 소규모 공동주택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담 경감

. 보세구역관련 규제개혁방안

* 집필자 : 이용의 사무관(Tel. 3703-2159)

1. 검토배경

- 1999년 '수출입통관 관련 규제개혁방안' (1998. 7. 16, 제8회 규개위) 및 '1998 관세청 규제정비' (1998. 8. 14 제9회 규개위)를 통하여 보세구역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나
- 보세판매장 설명특허요건 및 보세장치장내 내국물품장치제도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이를 검토하게 됨

2. 세부 개혁방안

가. 보세판매장 설립특허요건 완화

■ 규제현황

- 보세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제4조, 제7조)

※ 보세판매장

-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구역(관세법 제116조의 2)

〈자격요건〉

-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을 원칙
-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등이 아닐 것
- 관세 등 국세 체납이 없을 것
- 어음 등의 부도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완전히 치유될 것

〈시설요건〉

- 보세판매장의 건물은 자기소유여야 함. 다만 관광진흥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특1등급 호텔내의 시내 면세점은 타인소유의 건물 임차 가능

■ 매장의 면적

- 지역별
 - 서울·부산은 매장 150평, 부대창고 50평 이상
 - 기타지역은 매장 100평, 부대창고 20평 이상
- 업종별
 - 모피류 면세매점 등은 매장 50평, 부대창고 10평 이상
 - 귀금속류 면세매점은 매장 50평, 특수금고 설치

■ 기타 세관장이 지시하는 시설 또는 기구 등을 구비

■ 문제점

- 설립인의 자격요건에서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이어야 하고, 2,000만원 이상의 담보물을 제공토록 하고 있어 이미 면세점 운영에 관한 사업운영능력 및 관세보전 차원의

필요조건을 충족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이에 더하여 시설요건에서 건물은 반드시 자기소유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사실상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불필요한 규제

- 보세판매장의 신규특허 여부나 장기적으로 시내보세판매장을 축소할지 여부 등과 같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관련 정책방향과는 별개로 특허조건은 보세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또한 2000년 제3회 ASEM,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등 대형 국제행사가 국내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것에 대비하여 외국관광객 등의 편의 및 국내경기부양을 위하여 행사장이나 경기장 및 주요도시의 도심지역에 보세판매장의 증설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큼

- 면세점 사업은 전체이용자 중 약 90%를 차지하는 외국인 이용에 따른 외화획득과 고용창출효과가 큼(판매면적 1,000평 기준 400명 고용)

※ 무역센터의 경우 2000년 ASEM 이후 연간 120만명의 외래객이 무역센터단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

■ 개선방안

- 보세판매장 시설요건중 건물요건을 폐지함

■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개정(1999. 7)

나. 보세장치장내 내국물품장치제도 개선

■ 규제현황

- 보세장치장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후 장치
 - 세관장에 사전신고서 '내국물품 보세구역 장치신고서'에 장치장소, 장치기간, 신청사유, 신청물량 등을 기재하고, 물량을 장치할 위치를 표시한 평면도를 첨부하여 세관에 접수하고 신고가 수리된 후에야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음

■ 문제점

- 보세장치장내 내국물품장치제도에 대해서는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 제8차회의(1998. 7. 26)에서 당초 허가제에서 현행과 같이 신고제로 개선되었음
- 그러나 일선 세관에서 신고수리를 함으로써 개선 이전인 허가시와 절차상 큰 차이가 없어 현장에선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

- 사전신고시 화주의 요구에 의해서 작성된 신고서를 접수시켜 수리를 받은 후 해당 내국물품을 장치하게 되나, 대부분 실제 입고되는 물량은 당초 요구시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다시 정정신고서(이상화물 보고)를 작성,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등의 비효율을 초래

〈사례〉

- 당초 화주는 원양에서 어획한 명태 1,000톤을 적재한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기 이전에 전체물량인 1,000톤을 입고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냉동·냉장업자에 요구하고, 냉동·냉장업자는 이를 기준으로 세관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득함
- 부두에서 하역작업시 원매자들이 매입을 위해 실제로는 판매후 남은 500톤 또는 10톤만이 입고되는 경우가 있고, 전량이 판매되어 전혀 입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함
- 이 경우 화주 자신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화주가 최대량을 기준으로 입고를 의뢰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전신고를 득하였으나, 실제 입고된 물량은 신고수리시와 많은 차이를 보임으로써 다시 정정신고를 해야 함
- 특히 냉동물품의 경우 일과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선박입항시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입고가 절실하나 신고가 불가능하여 다음 근무일에 사전신고가 수리된 후 물품을 입고해야 함. 이 경우 온도변화로 인한 제품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먼저 물품을 장치하고 사후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 내국물품 장치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관에 직접 제출하고 신고수리를 받기까지 최소 소요시간인 약 3시간 동안, 여름철의 경우 -20℃이하에서 보관되던 물품이 상온 30℃에 노출됨에 따라 50℃의 온도차에 따른 급속한 품질저하로 사업자들에게 큰 손실 초래

■ 개선방안

-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내국물품의 장치가 가능토록 신고수리절차 생략
 - 신고필증 교부 폐지
 - 신고서 접수방법의 다양화(전자시스템(EDI), 전자메일, FAX등)로 사업자의 편의 증진
- 성실신고업체에 대하여는 사후신고로 갈음

■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1999.7)

· 승강기 검사제도 개선방안

* 집필자 : 이용의 사무관(Tel. 3703-2158)

1. 검토배경

- 승강기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 및 이용단계에서 완성검사·수시검사·정기검사·자체검사를 받아야 함
- 그러나, 완성(수시)검사기관(3개)과 정기검사기관(2개)은 검사의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요건을 규정하여 지정된 검사만 수행하고 있어 검사기관간의 경쟁이 저해되고 있고, 수요자에 대한 검사서비스가 미흡
 - 또한, 검사기관 중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어 다른 검사기관에 게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
- 따라서, 검사기관이 검사의 종류에 따라 분리지정된 것을 통합하여 지정하고, 검사기관 모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검사기관간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검사서비스도 제고

2. 승강기 검사제도 개선방안

가. 승강기 검사제도 변천경위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는 산업용승강기에 대해서 승강기안전센터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었음
- 1991. 12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특별법인인 "승강기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모든 승강기에 대해서 완성 및 정기검사를 실시
- 1995. 5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기관을 확대하기로 결정
- 1996. 12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1997. 8월 시행규칙에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신설
- 1997. 12월 완성·수시검사기관으로 기계연구원, 산업기술연구원을 1년 한시적으로 지정하고, 정기검사기관으로는 승강기안전센터를 추가 지정
- 1998. 8월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검사기관별 검사종류 제한을 폐지하여 기계연구원 및

산업기술연구원도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또한 동 2개 기관에 대한 한시적 지정을 폐지하도록 함

- 1999. 6. 22일 산업자원부에서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 완성검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가 정기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

나. 현황

- 승강기 완성(수시) · 정기검사는 산자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 대행(승강기제조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 완성(수시)검사기관으로는 승강기안전관리원, 기계연구원, 산업 기술연구원이 지정되어 있고 정기검사기관으로는 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안전센터가 지정되어 있음

지정기준

완성(수시)검사 기관	정기검사 기관
제22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를 대행하는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으로서 승강기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업무로 하고 있을 것 2. 별표 7의 3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보유할 것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것 4. 임원중 법에 의하여 징역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②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대행하는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의 법인 · 특정연구기관 기타 비영리법인으로서 특별시 · 광역시 및 도 (이하 “시 · 도”라 한다) 중 5 이상의 시 · 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2. 별표 7의 4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보유할 것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것 4. 임원중 법에 의하여 징역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 법 시행규칙 제22조

검사실적

(1998년말 기준)

	완성·수시검사			정기검사	
검사기관	승강기 안전관리원	기계 연구원	산업기술 연구원	승강기안전 관리원	승강기 안전센터
1997년 (점유율)	21,079대 (100 %)	-	-	90,672 (100 %)	-
1998년	16,448 대 (95.6 %)	377 (2.2%)	382 (2.2%)	87,257 (74.4 %)	30,049 (25.6%)
검사인원	194 명	7 명	11 명	194 명	40 명
수수료	216,000 + @ (충당 3,000)			103,500 + @	

* 자료 : 승강기안전관리원

- 검사실적은 1998년의 경우 승강기안전관리원이 완성 수시검사의 95.6%, 정기검사의 74.5%를 점하였고 여타 검사기관의 실적은 미미함
- 완성검사기관중 기계연구원, 산업기술연구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음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면세)제1항제 1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에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 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다. 문제점

- 검사의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완성검사기관과 정기검사기관을 분리하여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경쟁제한적 요소로 작용
- 완성검사기관이 정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데는 “5개 시·도 지방사무소” 요건 충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
- 완성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이 정기검사기관보다 엄격

- ※ 정기검사기관의 검사설비는 완성검사기관의 검사설비(16종) 중 ‘초음파두께측정기, 와이어 로프결합테스터’가 제외된 14종임
- 정기검사기관이 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데는 “특별법인 및 특정연구기관”의 설립 요건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
- 이러한 진입제한적 요소로 검사기간의 장기화(완성검사는 신청 후 15일, 정기검사는 신청후 30일내), 서비스개선노력의 미흡 등 폐해 발생
- 같은 검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중 연구기관인 기계연구원, 산업기술시험연구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됨
- ※ 연구기관이 본래의 연구기능이 아닌 사업적 성격의 검사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은 원래의 면세취지에 어긋나는 소지

라. 개선방안

-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기관의 구분을 폐지
 - 현재의 검사기관(4개)이 모두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개정
 - 정기검사기관 지정기준중 ‘5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 설치’ 요건을 폐지
 -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개정(1999. 12)
- 승강기검사업무에 대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검사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부과하도록 개선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개정(1999. 12)

마. 예상 파급효과

- 검사기관간의 경쟁이 촉진되어 검사수수료 인하 및 검사기간단축 등 검사수요자가 우수한 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 검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모든 검사기관에 대해 부과됨으로써 검사기관간 공정한 경쟁이 촉진됨

제 3 장

분야별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성과

Ⅰ 제1절 Ⅰ

경제 및 공정거래 분야

* 집필자 : 이용의 사무관(Tel. 3703-2159)

. 개요

1. 규제 및 근거법령 현황

1) 규제근거법령

가. 재정경제부(비금융부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 관세법,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보호법, 담배사업법 및 하위규정

나. 공정거래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 및 관련고시 등

다. 관세청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입물품 상설판매장 관리에 관한 고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건설장관리에 관한 고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외국선(기)용품 및 선(기)내판매용품의 적재·판매 등에 관한 고시, 선박편으로 일시 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등 관세청 고시

라.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 주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통계법 및 하위규정

2) 규제 성질별 분류

가. 재정경제부(비금융부문)

- 국가와의 각종 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위한 입찰관련 절차적 규제
- 물가안정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규제
- 담배소매인 지정요건에 대한 규제
- 수출입통관 및 보세구역관련 규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관련 규제

나. 공정거래위원회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및 경제력집중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 불공정하도급거래 방지 및 불공정 약관조항의 사용금지 등에 따른 규제
-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문, 통신, 다단계판매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관한 규제
- 소비자보호, 공정한 거래질서를 방해하는 부당표시광고에 대한 규제

다. 관세청

- 수출입신고 및 통관절차관련 규제
- 보세관련 규제
 - 영업용·자가용 보세구역운영,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 보세판매장·전시장 및 보세건설장운영, 보세운송·컨테이너 관리 등

라. 국세청·조달청·통계청

- 주정 및 주류의 제조·판매 등에 대한 진입제한 규제
- 입찰참가자격등록절차에 대한 규제
- 통계간행물 발간승인 및 통계자료 제공 등에 관한 규제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1) 재정경제부(비금융부문)

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공사금액이 30억원 미만인 정부공사계약의 경우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가장 낮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음
- 그런데 동 제도가 사실상 업체간 담합에 의해 낙찰자 배정방식으로 운영되어 당초 취지인 건설기술 개발과 중소기업 보호목적과는 달리 운용되는 문제 발생

■ 개선방안

동제도 폐지

■ 시행시기

1999. 9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시행

나. 수입인지판매인 지정제도 폐지

- 수입인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수입인지 판매인의 지정을 받도록 하던 지정제 폐지
 - 수입인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인이 되도록 함
- 1999. 2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

다. 상품권관련 규제 폐지

■ 폐지이유

- 상품권관련 영업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제근거법인 상품

권법 자체를 폐지

- 법 폐지에 따라 우려되는 상품권과 관련된 개인간의 갈등·피해보상문제는 민법·형법에 따라 처리

- 법 철폐에 따라 상품권법상의 규제 22건은 자동폐지

■ 개선방안

- 상품권 발행관련 인가·등록규제 폐지
- 상품권 발행보증금 공탁의무 및 시·도지사의 공탁명령권 폐지
- 상품권 권면금액(10만원) 제한 폐지
- 상품권 할인판매·위탁판매 금지규제 폐지 등

■ 시행시기

- 1999. 2월 상품권법 폐지

라. 공기업관련 규제

■ 현황 및 문제점

- 공기업의 동일인의 주식소유가 제한되어 민영화가 부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유제한 등을 정비할 필요

■ 개선방안

- 공기업에 대한 동일인의 주식소유제한 완화
 - 한국중공업 : 금지 → 소유제한 폐지
 - 담배인삼공사 : 금지 → 7%
-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소유제한 완화
 - 한국담배인삼공사 : 금지 → 25%
 - 한국통신 : 20% → 33%

■ 시행시기

1999. 2월 관련 공기업 정관 개정·시행

2) 공정거래위원회

가. 특수 불공정 거래행위관련 규제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할인특별판매행위의 불공정거래규제고시 등 특수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중 여건변화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규제(고시)가 다수 있어 이를 대폭 정비

■ 개선내용

- 할인 특별판매행위의 불공정 거래규제(할인특매관련 고시) 폐지
- 공공건설공사 저가입찰의 불공정 거래규제(공공건설관련 고시) 폐지
- 학습교재 등 판매업의 불공정 거래규제(학습교재고시) 폐지
- 신문업의 불공정 거래규제(신문업관련 고시) 폐지
- 환경관련 표시·광고의 불공정 거래규제(환경표시·광고관련 고시) 폐지 등

■ 시행시기

- 1998. 12월 관련고시를 폐지하여 1999. 1월부터 시행

나. 절차적 규제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실체적 규제의 집행을 위한 각종 신고의무 등 절차적 조항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를 정비할 필요

■ 개선방안

- 재판매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된 상품(저작물 등)의 생산·판매자는 재판매가격 유지계약사항을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규제를 폐지(1999. 2월 시행)
- 최근 1년간 국내공급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품·용역시장에서 일정한 점유율(1개 사업자 50%, 3개 이하 사업자 합계가 75%) 이상인 사업자를 매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고시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개별사건조사·심사시 시장지배력을 사후판단(1999. 2월 시행)
- 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를 폐지하여 공정위가 주무관청과 협조하여 자료를 입수토록 함(1999. 2월 시행)
-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시정요청·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에게 이행결과를 보고토록 하던 것을 폐지(1998. 12월 시행)
- 법 위반자에게 법 위반사실을 신문 또는 사업장에 공포하게 한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사실을 공정위에 보고토록 한 규제를 폐지(1998. 12월 시행)
- 공동행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 6개월마다 출고실적, 가격동향 등을 보고토록 하였는데 이를 폐지(1999. 3월 시행)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경쟁규약을 정하여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상황을 보고토록 한 규제 폐지(1999. 3월 시행)

다. 기타사항

■ 개선내용

- 기업결합 허용기준 중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
 -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피해보다 큰 경우
 -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중 기타 조항(법 제3조의 2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시행시기

- 1999. 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 시행

3) 관세청

가. 수출입관련 기관과의 전산망 연계로 신속한 물류체제 구축

- 통관시 세관장이 사전확인하여야 하는 각종 수출입요건(승인 · 허가 · 추천 · 검사 등) 관련 구비서류 제출 등에 따른 물류흐름 자체와 통관지연 등을 방지하고 검사 · 검역대상물품의 신속통관지원을 위해 관련기관과 전산망을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수출입물류 소요시간 및 비용을 절감
- 1998. 5월 전산망 연계시스템 구축 · 시행

나. 보세운송제도의 개선

- 서류없는 보세운송신고제 및 전산에 의한 보세운송신고 자동수리제를 도입
 - 보세운송사업자가 운송하는 검역물품이나 위험물품 등 보세운송승인대상을 신고대상으로 완화하고
 - 성실업체가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으로 완화하는 등 보세운송관련 규제를 완화
 - 보세운송업자의 운송수단제한, 간이보세운송업자의 운송수단제한, 화주의 보세운송수

단제한, 수출(반송)물품의 운송수단 제한, 내외국물품 혼적운송 금지 등 보세운송수단
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폐지

- 1998. 9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 · 시행

다. 특허보세구역 설영요건의 완화

- 설영특허기간을 10년으로 일원화하여 업체편의 및 행정간소화를 도모하고 영업용 보세
구역의 시설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소규모 업체도 특허보세구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 보세영업의 활성화를 도모
- 아울러 기존 대기업 위주의 보세건설장 특허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산업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업종제한을 폐지
- 1998. 10월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시행

라. 여행자관련 입국절차의 개선

- 입국여행자에 대한 일정비율 검사규정 폐지
- 감시대상자가 휴대반입한 상용물품에 대해 B/L 반송만 허용하던 규정 폐지
- 특별관리 감시대상자의 지정요건 완화
- 세금 사후납부 대상물품에 대한 제한 폐지 등
- 1998. 11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 시행

마. 기타 개선사항

- 기타 통관화물 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
- 1998. 8월 수입물품 상설판매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 시행

4) 국세청

가. 주정의 가격고시제도 개선

- 주정의 제조장 출고가격과 판매장 판매가격 고시제도를 가격상한제로 개선
- 1998. 11월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 시행

나. 탁주의 물료첨가제한 완화

- 탁주에 식물약재의 물료첨가 허용
- 1998. 12월 주세법 시행령 개정 · 시행

다. 주류제조 시설기준 완화

- 주류제조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탁 · 약주제조용기의 재질제한을 최소화
- 1998. 12월 주세법 시행령 개정 · 시행

라. 주류제조방법의 사전신고

- 주류제조방법의 신규 또는 변경시 제출하는 신고서의 제출기간을 3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단축
 - 15일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신고수리된 것으로 간주
- 1998. 12월 주세법 시행령 개정 · 시행

마. 알코올 도수 규제완화

- 다양한 주류의 제조가 가능하도록 알코올 도수규제를 완화
 - 탁주의 경우 3도 이상
- 1998. 12월 주세법 시행령 개정 · 시행

바. 국산주류상표 기재내용 완화

- 주류상품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축소하고 국산주류상표의 문자크기에 대한 규제 폐지
- 1998. 11월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 시행

사. 리큐르원액의 제조 및 사용규제 완화

- 리큐르원액 제조 및 사용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
- 1998. 11월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 시행

아. 주조사 활동규제 폐지

- 주조사의 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초래하는 규제 폐지
- 1998. 11월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 시행

자. 주류판매업 면허 통합

- 12종류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6종류로 통합
- 1998. 12월 주세법 시행령 개정 · 시행

차. 전통주 판매경로제한 완화

- 일정규모(연간 생산량 5kl) 미만의 소규모 특산주 제조자는 슈퍼마켓 · 연쇄점이나 주류 소매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 허용
- 민속주(특산주 포함) 도매업자가 슈퍼마켓 · 연쇄점 가맹점에 주류를 직접 판매토록 허용
- 1998. 11월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 시행

카. 주류통신판매 허용

- 우체국으로 한정하여 민속주 · 전통주의 통신판매 허용
- 1998. 11월 국세청 지침으로 시행

5) 조달청

- 조달청이 보험사를 지정해 오던 공사손해보험 가입보험사 지정제도를 폐지
 - 1998. 7월 조달청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선 · 시행
- 설치 · 시운전 조건부 계약인 경우에 설치 후 시운전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급을 유보하던 유보금제도를 폐지
 - 1998. 12월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개선 · 시행

6) 통계청

- 통계간행물 발간승인제도를 폐지, 통계간행물의 발간을 활성화하였고, 직권에 대한 민간 지정제도를 폐지
- 직권에 의한 민간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민간통계 작성기관의 경우
 - 직권에 의한 지정통계 지정제도 폐지
 - 신규통계에 대한 조사사항 등의 승인제도 폐지

- 통계작성결과 공표의 사전협의 등의 규제 폐지
- 1999. 1월 통계법을 개정하여 1999. 4월부터 시행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가. 재정경제부(비금융부문)

- 재정경제부의 비경제부문의 경우 1998년도 규제개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비

나. 공정거래위원회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에 대한 추가 개선여부중점 검토
- 행정수요자의 편의 증진
- 규제내용의 구체화 · 객관화로 규제의 투명성 제고

다. 관세청

- 기업의 자율경영성 및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의 정비
- 통관업무 전산화에 따른 중복규제의 간소화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가. 심사경위

- 1999. 4. 13 부처별 잔존규제정비지침 확정
- 1999. 4~6. 15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세청의 잔존규제 정비방안 검토 (KDI, 한국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원 등)
- 1999. 6~7. 8 검토결과에 대한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 1999년 규제정비대상 마련
- 1999. 7. 9~8. 26 규제정비대상에 대한 재정 · 금융심사소위원회 심의(2차~7차)
- 1999. 9. 22 경제1분과위원회 심의(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 1999. 10. 1 제40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재정경제부)

나. 정비결과

구 분	1998년 정비			1999년 변경					1999년 정비				정비 후 존치 규제수
	당초 규제수	폐지	잔존 규제	신설 (재심사 포함)	국회 수정	법제처 심사 수정 등	누락 등록	소계	대상	폐지	제외	개선	
재정경제부 (비금융부문)	48	29	19	19				+ 19	38			1	38
공정거래위원회	75	16	59	16				+ 16	75			2	75
관 세 청	251	133	118	1				+ 1	119	8	3	9	108
국 세 청	27	7	21						21	1		4	20
조 달 청	27	17	10						10		-3		7
통 계 청	10	7	3				1	+ 1	4				4

.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1. 재정경제 분야

1) 세무사 관세사의 자격취득관련 규제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세 또는 관세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공무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세무사나 관세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진입을 위한 공정한 경쟁원리를 저해

나. 개선방안

-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자격사관련 규제개혁방안'에 따라
 - 세무사의 경우 국세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등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시험을 통하여 자격부여

- 관세사의 경우 관세행정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해서는 연수를 거쳐, 관세행정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전형을 거쳐 관세사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시험을 통하여 자격부여

다. 시행시기

- 1999년 12월 세무사법 및 관세사법을 개정하여 2001년 1월부터 시행

2) 통관법인 허가요건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수출입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수출입화물의 운송, 보관 및 하역을 하는 자에게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관취급법인을 허가하고 있으나 시설·장비허가기준이 높아 과도한 진입규제로 작용

나. 개선방안

- 육상운송업기준중 화물자동차 30대 이상에서 20대 이상으로 완화

다. 시행시기

- 2000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령 개정 예정

2. 공정거래 분야

1)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 토록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 하위규정에 부당한 경영간섭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수급사업자 보호의 실효성 의문

나. 개선방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 부당한 경영간섭에 대한 예시를 명시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율 경영을 보호
- 예시
 - 수급사업자의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 ·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 · 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다. 시행시기

- 1999. 12월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 · 시행

2) 원사업자의 탈법행위 금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 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금지”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 하위규정에 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수급사업자 보호에 의문점 야기

나. 개선방안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원사업자의 탈법행위에 대한 예시를 명시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보호
- 예시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다. 시행시기

- 1999. 12월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시행

3. 주류 분야

1) 탁주의 공급구역 제한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비살균탁주의 공급구역을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제한하여 경쟁여건을 저해함에 따라 주질개선에 대한 노력 미흡 및 전체 탁주산업의 사영화 원인으로 작용

나. 개선방안

- 2001년부터 탁주의 공급구역 제한을 폐지

다. 시행시기

- 1999. 12월 주세법을 개정하여 2000. 1월부터 시행

2) 주조사 의무고용제도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주류제조장에 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주조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 주류제조장에 불필요한 비용부담 초래

나. 개선방안

- 주조사의 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하고 자율고용으로 전환

다. 시행시기

- 1999. 12월 주세법을 개정하여 2000. 1월 시행

3) 주류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가입제한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주류제조업자가 주류제조업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류별로 조직하여야 하고
- 주류제조업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업단체 이외에는 별도로 주류사업자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 사업자가 자유롭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업자단체의 설립·가입 및 탈퇴 등을 제한

나. 개선방안

- 제조주류에 관계없이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가입을 자율화

다. 시행시기

- 1999. 12월 주세법을 개정하여 2000. 1월 시행

4) 주류업단체의 공동행위제도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주류업단체는 주류업자의 생산, 가공, 주류의 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공동판매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주류제조자 및 판매업자의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제한 등의 문제발생 소지

나. 개선방안

- 공동행위의 우려가 있는 규정 폐지

다. 시행시기

- 1999. 12월 주세법을 개정하여 2000. 1월 시행

4. 관세 분야

1)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영업관련 규제정비

가. 현황 및 문제점

-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특정물품에 대한 영업보고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정정 및 보완 시에도 기한(정정 및 보완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을 정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음
- 또한 동 판매장의 영업보고자료 검토, 영업장 점검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기업의 자율경영 및 활동을 과도로 제약하고 있음

나. 개선방안

-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영업에 관한 보고, 정정보고 및 보완자료 제출의무 폐지
-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에 대한 실태조사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조사내용을 조사목적별로 구체화하도록 개선

다. 시행시기

- 1999. 12월 수입물품 상설판매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 시행

2) 보세판매장 설영특허요건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보세판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매장면적 150평 이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확보 등 재무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특허요건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장 건물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시설요건은 과도한 규제로서 진입장벽으로 작용

나. 개선방안

- 보세판매장 시설요건 중 보세판매장의 건물은 자기소유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

다. 시행시기

- 1999. 8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시행

3) 보세건설장 특허기준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산업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산업시설 건설용기계, 장치물 등의 수입금액이 200만달러 이상이어야 보세건설장의 특허를 허가함
- 과도한 금액기준으로 국가산업시설 건설에 부작용 초래

나. 개선방안

- 금액기준 폐지

다. 시행시기

- 1999. 12월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 시행

4) 컨테이너 관리에 대한 명령불이행 제재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컨테이너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세관장이 컨테이너 관리에 관하여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토록 하고 있음
- 행정편의적인 명령으로 인해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명령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명령자체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방안

- 컨테이너 사업자의 세관장 명령불이행 제재 폐지

다. 시행시기

- 1999. 12월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 시행

5) 외국선(기)상 일일보고제도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세관장은 외국선(기)상의 판매자로 하여금 일일판매량, 재고량, 판매대금의 매각사항 등을 익일까지 보고케 함으로써 과도한 영업규제 초래

나. 개선방안

- 선용품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재고관리사항 등 종전의 보고업무를 전면 폐지

다. 시행시기

- 1999. 7월 외국선(기) 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적재·판매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 신설·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1.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 재정경제부(비금융부문)의 경우 심사요청한 총 27건의 법령 가운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세법 개정안, 세무사법 개정안 등 4개 법령의 신설 17건 및 강화 1건의 규제심사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심사요청한 총 7건의 법령·고시 가운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등 4개 법령의 신설 3건 및 강화 5건의 규제심사

2. 심사 및 조정내역

1) 재정경제부(비금융부문)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심사요청규제의 내용(신설 1)
 -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단계별로 강화
- 심사결과(1999. 6. 30)
 - 원안의결

나.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심사요청규제의 내용(신설 15)
 -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재경부 장관이 관세자유지역 지정
 - 관세자유지역 안에서는 등록사업 또는 지원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수 없음
 - 등록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함
 - 등록업체는 사용승인 이후 5년 안에는 공작물을 등록업체가 아닌 자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 등록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관세자유지역에 반입하는 내국물품 등은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관세자유지역내에서 외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세관장은 관세자유지역 내의 일정물품에 대하여 국외반출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음
 - 관세자유지역 밖에서 외국물품을 가공 또는 보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관세자유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동 지역 밖으로 건품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등록업체는 반입·반출물품에 대한 재고기록을 5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함
 - 관세법 제146조 각호의 물품 및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반출입 금지
 - 세관장은 물품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하여 관세자유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운송수단 및 물품의 검사 등을 할 수 있음

- 세관장은 등록업체에 대한 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회계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세관장은 등록업체, 그 임원 등이 이 법 및 관련법에 의한 명령 등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세관장은 등록요건 등에 미달한 경우 등록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심사결과(1999. 9. 1)

- 등록사업에는 국제물류사업 등 등록사업으로 운영가능한 업종을 추가지정함으로써 등록사업의 범위를 확대
- 처분권 제한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
-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에 경우 “이 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 등”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분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수정토록 함
- 나머지 부분은 원안의결

다. 주세법 개정안

■ 심사요청규제의 내용(신설 1)

- 주류제조자가 설치하는 직매장의 주류 무자료 거래행위에 대한 주류제조·출고정지 및 제조면허 취소

■ 심사결과(1999. 9. 8)

- 원안의결

라. 세무사법 개정안

■ 심사요청규제의 내용(강화 1)

- 현행 등록취소 및 정직명령으로 되어 있는 세무사의 징계범위에 자격정지명령을 추가 신설

■ 심사결과(1999. 9. 15)

- 원안의결

2) 공정거래위원회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심사요청규제의 내용(강화 1)

- 기업의 과징금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리를 상향조정(6 → 14%)

■ 심사결과(1999. 3. 10)

- 가산금리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금리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토록 함

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심사요청규제의 내용(신설 1)

- 표시·광고내용의 실증방법 및 실험·조사기관 제한
 -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한 내용을 실증하는 경우, 실증에 사용되는 실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함
 - 실험 또는 조사를 행하는 기관 등은 실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함

■ 심사결과(1999. 4. 28)

-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을 “학술적으로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수정하고
- 실험기관 등의 독립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공정거래법 등에서 정한 기업집단·계열기업 분류기준 등을 원용하여 실질적 독립기준을 제시토록 함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심사요청규제의 내용(신설 2, 강화 4)

- 대규모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신설
- 출자총액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소유주식 등의 취득가액 10% 범위내, 매출액의 5% 이내로 각각 상향조정
- 탈법행위금지대상에 출자총액의 제한을 추가
- 출자총액의 제한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식을 지정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음

-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공시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다른 회사주식의 합계액(출자총액)이 당해 회사 순자산의 25%(출자한도액)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 심사결과(1999. 10. 1)

- 대규모기업집단 내부거래의 공시에 있어서, 공시위탁기관에 대하여 필요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삭제토록 함
- 출자총액제한규정에 위반한 경우 최근에 취득한 주식을 지정하여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삭제토록 함
- 나머지 부분은 원안의결

. 누락규제 등록

1. 누락규제내용: 통계간행물의 사후통보의무(1999. 5. 12)

- 통계의 수록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발간토록 하는 통계간행물 발간승인제도를 폐지(1999. 1. 29일 통계법 개정) 하였으나
 - 통계간행물의 사후통보의무는 존치

2. 검토의견

- 당초 통계간행물 발간승인제도와 사후통보제를 병행하여 시행하였음에도 사후통보제를 규제신고에서 누락하였음
- 누락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나
 - 통계작성기관의 발간내역 사후통보 의무규정은 국가통계사무를 총괄하는 통계청이 통

계간행물 발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 통계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규제로 등록하도록 함

3. 누락규제 등록: 1건

'통계간행물의 사후통보의무'를 추가규제로 등록함

Ⅰ 제2절 Ⅰ

금융 분야

* 집필자 : 이상희 사무관(Tel. 3703-2159)

. 개요

1. 규제 및 근거법령 현황

1) 규제 근거법령

-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 25개의 규제관련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 규정·고시 등

2) 규제성질별 분류

- 재정경제부 규제는 금융기관의 진입·퇴출 및 금융기관 업종별 영위업무의 내용에 대한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 금융기관의 진입 및 퇴출 관련 각종 인·허가에 관한 규제
-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설정하는 규제
-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 유지 및 예금자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기관의 자산운용방법을 제한하는 규제 등이 있음
- 한편, 금융감독위원회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고객(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많음. 유형별로는
 -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경영지도비율의 설정 및 적기시정조치 등에 관한 규제
 - 금융기관 이용자(고객 및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공시의무 부과 등 규제
 - 금융기관 업무감독을 위한 각종 신고 및 보고관련 규제 등이 있음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1) 금융산업부문 규제개혁

가.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및 퇴출관련 규제 개선

- 증권위탁매매업, 증권투자신탁업,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등 금융서비스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을 대폭 완화
- 투자자문회사·투자일임회사·자산운용회사의 설립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공사채등록업 및 담보부사채신탁업에 대한 인가제는 신고제로 전환
- 증권업·선물거래업 등 영업의 일부 양도시 재경부 장관의 인가제를 폐지
-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다른 금융기관과 같이 영업양도를 허용
- 보험회사의 점포설치·이전·폐쇄에 대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 보험중개인에 대한 종전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함
-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양도시 이사장의 승인제 폐지

나. 금융기관의 영업관련 규제개선

- 자본시장 육성을 저해하는 관련규제의 대폭 개선
 - 코스닥(KOSDAQ)시장을 증권거래소와 차별없는 제2거래소로 육성
 - 증권거래소 회원이 아닌 자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제한 폐지

- SPOT펀드 매각한도를 폐지. 회사별 원금한도 변경에 대한 승인제로 보완
- 분리형 및 대용납입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허용
- 비은행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및 경영자율성 제고
 - 종금사·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영업인가 유효기간 폐지
 - 신용협동조합의 지역제한범위를 읍·면·동 → 시·군·구로 확대
 - 종합금융회사의 증권투자신탁업 겸영시 수익증권의 발행한도 규제 폐지
 - 보험회사의 외환업무 취급금지규제를 폐지하여 보험사업과 관련된 외환업무취급을 허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사채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15배 수준으로 완화
- 신용카드 회원자격요건 현실화(미성년자와 무소득자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발급을 금지)
- 은행·신탁업 경영의 자율성 제고
 - 은행의 연간 금융채 발행계획 신고 및 월별 발행계획 신고를 폐지하여 금융채 발행을 자유화
 - 은행신탁상품의 신탁보수율 및 중도해지수수료율 규제를 최저한도 규제만으로 단순화
 - 신탁상품개발관련 업무방법서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위탁회사의 수익증권 발행시 금감위 인가제를 사전신고로 개선
- 증권회사의 주식청약자금 등 대출제도 개선
 - 대출한도 폐지
- 증권회사별, 개인별 한도규제 폐지
 - 담보유지 비율 및 대출기간을 자율화
- 보험계리인 선임시 사전신고를 요하던 것을 사후보고제로 변경

다. 외국인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 및 사무소의 신고·보고의무 부담 경감
 - 국내지점의 영업개시전 인원 및 시설 신고의무
 - 국내지점의 영업자금 증액 또는 감액시 보고의무
 - 사무소의 본점 및 사무소현황 보고의무 등 폐지
- 외국인 보험회사 설치시 재경부 장관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외국인이 국내 기존주식을 취득할 경우, 이사회 동의 없이 취득가능한 범위를 폐지하여 적대적 M & A를 전면 허용

- 외국인의 은행임원 취임제한 폐지

2) 외환거래관련 규제개선

가. 경상거래 자유화

- 20개 대외지급제한 항목을 아래 5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
 - 국제평화 및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지급
 - 증여성 송금(건당 5천달러 초과)
 - 여행경비(기본경비 1만달러)
 - 해외이주비(4인 가족 100만달러)
 - 해외교포 재산반출(연간 100만달러)
- 상계, 제3자 지급·영수 등 정상외 결제방법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통계작성을 위한 신고의무만 존치

나. 자본거래 자유화

- ‘원칙금지·예외허용체제’를 ‘원칙자유·예외규제체제(Negative system)’에 의한 규제방식으로 전환
 - 선물환 거래 등의 실수요원칙 폐지
 - 해외건설사업자 및 용역사업자의 현지보유 공사대금 용도제한, 거주자계정의 예치의 무 등 폐지
 -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설치 및 폐쇄시 신고제를 단순신고제로 전환하여 자유화
 - 재외동포에게만 허용되던 국내재산 반출을 영주권자에게도 허용
 - 현지금융 용도제한 폐지
 - 기업의 해외부동산 투자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다. 환전상관련 규제 폐지 및 개선

- 환전상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 환전상의 환전수수료율(전신환 매매율의 10% 범위 내) 제한 폐지
- 환전상의 외화보유한도(전년도 환전실적의 50% 이내 또는 10만달러 이내) 폐지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1998년도 규제개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금융산업의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쟁체제 구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비

1) 재정경제부

-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체제 확립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 금융업 퇴출요건의 객관화 · 투명화를 통한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및 예측가능성 제고
- 금융기관 겸업화의 전향적 수용
- 외환거래 자유화의 차질없는 추진

2)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적인 규제는 대폭 완화하되, 사후적인 건전성 감독으로 이를 보완
- 금융기관 경쟁 저해요인을 과감히 발굴, 개선
- 검사 · 감독상 필요한 명령의 발동요건을 객관화 · 투명화하여 감독기관의 권한남용 여지를 축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부여
- 금융관계단체의 자율적인 시장질서유지 기능을 존중하고, 감독기관의 관여를 최소화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가. 심사경위

- 1999. 4. 13일 부처별 잔존규제 정비지침을 마련한 후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관 잔존규제 정비방안에 대해 금융연구원, 증권연구원, LG경제연구원 등에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결과에 대한 해당부처의 의견을 수렴, 1999년도 규제정비대상을 마련하였음
- 1999. 7. 9~8. 26일 기간중 규제정비대상에 대한 6차에 걸친 재정 · 금융 심사소위원회 심의, 2차례의 경제1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999. 10. 1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

- 재정·금융 심사소위원회 구성 : 김일섭(위원장), 김종석(홍익대), 이용환(전경련), 오규택(중앙대), 강철준(금융연수원), 조장옥(서강대)

나. 정비결과

구 분	1998년 정비			1999년 변경					1999년 정비				정비 후 존치 규제수
	당초 규제수	폐지	잔존 규제 (A)	신설 (재심사 포함)	국회 수정	법제처 심사 수정 등	누락 등록	소계 (B)	대상 (A+B)	폐지	제외	개선	
재정경제부	461	△226	235	70	12	△1	-	81	316	△5	△7	27	304
금융감독위원회	630	△315	315	101	14	-	9	124	439	△30	△5	6	404

* 주) 2000년 이후 폐지·개선 제외

.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1. 재정경제부

1) 경쟁체제 확립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허가 기준이 단순하고 외국에 비해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업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시장의 안정유지와 경제력집중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거나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수요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영업범위에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운용되는 인허가제도, 인허가기준의 투명성 부족 등이 금융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함으로써 금융산업에 경쟁원리가 정착되지 못한 결과, 경영효율화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게 되고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확실적이어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음

나. 개선방안

- 일부 증권업(위탁매매, 자기매매 등)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허가제를 2000년 말부터 등록제로 전환
- 보험업 허가시 경제적 수요심사제(ENT)를 폐지
- 증권투자신탁업의 등록제전환 검토(1999. 12)
- 은행,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기준을 객관화·투명화
 - ※ 금융업 최저자본금요건 완화 등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선방안은 2000년 중점 규제개혁과제(재정경제부 추진)로 추진

다. 시행시기

-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2000년 상반기중 시행

2) 금융업 퇴출요건의 객관화·투명화를 통한 책임경영체제의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기관의 합병·전환, 해산, 영업 전부의 양수도 등의 인가기준이 경직적이고 단순하여 금융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나. 개선방안

- 각종 금융기관의 합병·전환, 해산, 영업 전부의 양수도 등의 인가기준을 개별 법령에 명시하는 등 객관화, 투명화함
 - M & A를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 우량화 유도

다. 시행시기

- 은행법, 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상호신용금고법 등을 개정하여 2000년 상반기중 시행

3) 금융기관 겸업화의 전향적 수용

가.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기관별 영위업무가 개별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고 있음. 그 결과 전 세계적인 조류인 금융의 겸업화를 수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나. 개선방안

- 은행의 은행업 이외 업무 영위시 인가기준을 객관화·투명화
- 증권회사에 대한 장외파생상품업무 허용방안 마련(2000. 6), 증권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
-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 등록제한의 규제일몰제를 적용함으로써 은행, 종금 등 금융기관도 보험대리점이 될 수 있도록 함

다. 시행시기

-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을 개정하여 2000년 상반기중 시행

4) 금융산업의 독점체제를 지양, 경쟁체제 구축기반 조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관계 법령에서 허가 등을 받거나 지정된 자가 당해 법령에 의해 특정 업무를 독점적으로 영위함으로써 경영효율성 추구 유인이 부족하게 되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제고되지 못함

나. 개선방안

- 자금중개회사 설립 승인요건을 투명화하고,
- 보험요율 산출기관 설립 인가기준을 객관화·투명화하여 장기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다. 시행시기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을 개정하여 2000년 상반기중 시행

5) 외환거래 자유화의 차질없는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1999. 4. 1일 1단계 외환자유화조치를 완료한 바 있고, 대외거래를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대외신인도의 제고를 위해서는 2단계 외환자유화의 차질없는 추진이 요구됨

나. 개선방안

-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인가기준 폐지
- 외국환거래법상 2000년말까지 규제일몰제 적용대상인 자본거래 허가제를 전면 신고제로 전환
 - 예금신탁에 따른 자본거래 허가
 - 금전대차·채무보증계약 허가
 -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 허가
 -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취득·외국부동산취득 등
- 허가대상인 외국환은행의 원화대출 및 외화대출을 신고대상으로 전환(2000년말)
- 대외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한도, 외국환은행의 외국환 매각한도 및 해외여행경비 한도, 해외체재비 지급한도, 재외동포재산 반출규모 제한, 거주자의 해외외화예금 한도 등의 폐지(2000년말)

다. 시행시기

- 외국환거래법을 2000년중 개정하여 시행(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인가기준은 2000. 1월 현재 폐지)

2. 금융감독위원회

1)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 제고

가.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기관의 인사 및 조직관리 등 내부경영문제와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해 왔으며, 부동산신탁의 신탁보수율과 최단 신탁기간을 제한하고, 증권회사별 신용융자한도·대주(貸株)한도 및 신용거래보증금률(40%) 등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옴
- 이는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나. 개선방안

- 은행의 자체검사인력 운용기준(검사부서의 직급별 인원구성 유지 및 검사역의 인사관리상 우대방안 마련 등) 등 인사관리상의 규제를 폐지
- 예금증서 등 중요증서는 차장급 이상 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던 상품별로 규제하던 은행의 중요증서 관리기준을 폐지
- 은행의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지도기준 설정 및 경영개선조치 요구 폐지
- 은행의 업무용고정자산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에만 신설할 수 있도록 지도하던 국내영업소 신설 등 기준을 폐지
- 토지신탁,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부동산담보신탁 등 상품별로 규제하던 부동산신탁의 신탁보수율 및 최단 신탁기간 제한을 폐지
- 증권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증권거래준비금 적립의무, 증권회사별 신용융자한도·대주(貸株)한도 및 신용거래보증금률(40%) 등을 폐지
- 투자일임 계약자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던 투자자문사의 고객에 대한 성과급 징구제한을 1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완화
- 보험사업자의 재산이용방법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2000. 6월말)
- 상호신용금고의 여유자금 운용방법을 예금, 유가증권 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완화
- 은행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설정되어 있는 유가증권 투자한도 적용대상에서 사채(社債)를 제외
- 금융기관의 국공채 창구판매 제한 폐지

다. 시행시기

- 은행감독규정, 신탁업감독규정,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규정,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보험업법 시행령, 상호신용금고법 등을 개정하여 2000년 상반기중 시행
- 은행의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지도기준 설정 및 경영개선조치 요구, 금융기관의 국공채 창구판매 제한, 투자자문사의 고객에 대한 성과급 징구제한은 2000. 1월 현재 폐지

2)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신상품 개발촉진을 위해 사전규제를 최소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신탁회사가 새로운 신탁상품을 개발할 경우 업무방법서를 변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사전 규제로 인해 판매되는 상품이 유사하고 신탁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나. 개선방안

- 신탁 신상품 개발에 따라 업무방법서를 변경할 경우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전환
- 투자신탁약관 제·개정시 금감원장 승인을 받아야 하던 것을 사전보고로 가능하도록 변경하되, 위법한 경우 변경요구권 신설로 보완
- 투자신탁보수의 하한 제한을 상한규제로 전환하면서 판매보수와 운용보수를 분리함

다. 시행시기

- 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등을 개정하여 2000년 상반기중 시행

3) 금융기관 등 부담경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가.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이나 사업자단체 등에 대해 각종 보고 또는 조사 요구가 과다하여 해당기관의 인적·물적 낭비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나. 개선방안

- 1999. 8월말 현재 34만명에 이르는 보험모집인의 금감원(현재 보험협회에 위임) 등록 의무를 폐지
- 금융감독원의 조사·연구 등을 위한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 보고의무를 폐지하여 보험회사의 부담을 경감
- 금융감독원장의 중금협회에 대한 조사·보고지시 근거를 삭제
- 금융기관이 감독원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 부담경감을 위해 전산화를 추진

다. 시행시기

- 보험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2000년 상반기중 시행

4) 검사감독권의 명확화를 통한 책임경영체제 구축 및 예측가능성 제고

가. 현황 및 문제점

- 금감위의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검사·감독과 관련한 명령권 발동요건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피감독기관의 책임경영을 어렵게 함

나. 개선방안

- 위탁회사가 공정거래 저해행위를 한 경우 금감위의 조치요건을 객관화·투명화
- 투자신탁약관의 변경, 신탁재산 운용결과에 대한 금감위의 신문공고 명령요건을 객관화·투명화
- 증권사고 발생으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등 금감위 보고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위탁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에 대한 금감위 등의 명령·검사권 발동요건을 객관화·투명화
- 금감위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기초서류 및 부수사업의 종류와 방법에 대한 변경명령권 발동요건을 구체화

다. 시행시기

- 보험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금융기관검사규정 등을 개정하여 2000년 상반기중 시행

5)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규제기관의 기능과 역할 제고

가. 현황 및 문제점

- 개별 금융법률에 의거 금감위 등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정 설립된 각종 협회에 대해 사전·사후 규제가 과다함
- 사업자단체인 각종 협회의 자율성을 진작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하고는 사전규제를 지양하고 사후보고의 범위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방안

- 투자신탁협회의 정관 인가범위 축소
- 투자신탁협회의 업무규정에 대한 금감위의 인가를 사후보고로 전환
- 증권거래소의 금감위에 대한 예·결산 보고의무 폐지
- 증권금융(주)의 정관 변경승인 및 업무규정 변경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 증권업협회의 정관 변경 및 승인, 증권예탁원의 업무규정 승인 등을 금감위 앞 사후보고로 전환
- 중개회사·명의개서 대행회사의 정관변경에 대한 금감위의 승인을 사후보고로 전환
- 상장회사협의회 등의 정관변경에 대한 금감위의 승인을 사후보고로 전환
- 선물협회에 대한 정관변경명령권을 폐지
- 보험관계단체의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를 사후보고제로 전환
- 보험사업자가 상호협정 체결·변경·폐지시 금감위 인가기준을 법령에 명시하여 객관화

다. 시행시기

-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정을 개정하여 2000년 상반기중 시행

· 신설·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1.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가. 재정경제부

- 신설규제 30건, 강화규제 11건 등 총 41건의 규제심사를 의뢰받아 신설 4건 및 강화 1건 등 5건에 대해 개선을, 신설 1건에 대하여는 철회를 권고하였음

신설·강화규제 심사 현황

구 분	계	신 설	강 화
심사대상	41	30	11
철회	1	1	-
개선권고	5	4	1

나. 금융감독위원회

- 신설규제 71건, 강화규제 7건 등 총 78건의 규제심사를 의뢰받아 신설 16건 및 강화 1건 등 17건에 대해 개선을, 신설 6건에 대하여는 철회를 권고하였음

신설·강화규제 심사 현황

구 분	계	신 설	강 화
심사대상	78	71	7
철회	6	6	-
개선권고	17	16	1

2. 심사 및 조정내역

1)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신탁회사의 선물거래 한도 설정(안 제9조의 2)
 - 동일종목 등에 대한 투자한도 적용이 배제되는 사모펀드의 범위 설정(안 제16조의 2)
- 심사결과(1999. 3. 10) : 원안의결

외국환거래규정 제정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 강화 1)
 - 기업의 단기외화자금 차입 허용기준(안 제7-21조)
 - 역외펀드 설립에 대한 신고(안 제7-34조)
 - 본사 및 계열사의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 제한(안 제8-3조)
 -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심사강화(안 제9-7조)
- 심사결과(1999. 3. 24) : 원안의결
 - 본사 및 계열사의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 제한은 그 대상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로 하도록 수정하고,
 -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심사강화와 관련 안 제9-7조 제2항 2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되, 나머지는 원안의결

증권거래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1)
 - 위탁매매전문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보관·관리 제한(안 제35조의 2)
 - 예치기관의 자기재산과 고객예탁금의 구분관리(안 제35조의 8)
 - 상근감사의 결격요건(안 제84조의 19)
- 심사결과(1999. 3. 31) : 원안의결

선물거래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선물거래업자의 고객예탁금 분리보관의무(안 제13조의 2)
 - 예치기관의 자기재산과 고객예탁금의 구분관리(안 제13조의 7)
- 심사결과(1999. 3. 31) : 원안의결

증권거래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우리사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법(안 제2조의 7 제1항 제2호의 2)
- 심사결과(1999. 7. 14) : 원안의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신용카드 등 발행업자의 보고의무(안 제4-12조 제4항)
- 심사결과(1999. 11. 3) : 원안의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 : 신설 1
 - 정부 등 출자 금융기관의 통제(안 제12조 제10항)
- 심사결과(1999. 11. 8) : 철회를 권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
 - 유사수신행위의 금지(안 제3조)
 - 유사수신행위의 광고 금지(안 제4조)
 - 금융업 오인 명칭사용 금지(안 제5조)
- 심사결과(1999. 11. 8) : 원안의결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감사위원회 설치(안 제22조의 2)
- 심사결과(1999. 11. 8) : 원안의결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1)
 - 종금사의 사외이사 선임(안 제5조)
 - 감사위원회 설치(안 제5조의 2)
 - 임원의 결격사유(안 제3조의 6)
- 심사결과(1999. 11. 8) : 원안의결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신탁회사 임원의 자격제한(안 제8조의 2 제1항)
- 심사결과(1999. 11. 8) : 원안의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 신용정보업 종사자의 자격제한(안 제9조 제1항)
 -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안 제35조 제2항)
- 심사결과(1999. 11. 8) : 원안의결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1)
 - 사외이사의 선임(안 제54조의 5, 제191조의 16)
 - 감사위원회(안 제54조의 6, 제191조의 17)
 - 과징금 부과(안 제206조의 11)
- 심사결과(1999. 11. 8) : 원안의결

선물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미공개정보 이용 및 누설금지 강화(안 제33조 제3호)
- 선물거래소 임원의 결격사유 보완(안 제21조 및 제39조의 3)
- 심사결과(1999. 11. 8) : 원안의결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 강화 1)
 - 사외이사의 선임(안 제14조의 4)
 - 감사위원회 설치(안 제14조의 5)
 - 신탁재산의 운용지시 제한(안 제33조)
 -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금지(안 제34조)
- 심사결과(1999. 11. 8) : 원안의결

증권투자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 감독이사의 결격사유 확대(안 제19조 제2항)
 - 미공개자산운용정보의 이용금지(안 제35조의 2)
- 심사결과(1999. 11. 8) : 원안의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외부감사인앞 회계처리기준 이용료 부과징수(안 제13조)
- 심사결과(1999. 11. 8)
 - 제13조 제5항 중 “명할 수 있다.”를 “요구할 수 있다.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7항 중 “감사보수중”을 “감사보수의”로 자구를 수정할 것을 권고
 - ※ 법제처 심의시 재경부에서 철회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사외이사 선임(안 제12조의2)

- 감사위원회 설치(안 제12조의3)
- 심사결과(1999. 11. 8) : 원안의결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1)
 - 예금보험관계에 대한 타당성 심사(안 제29조 제3항)
 - 금융기관의 차등보험 요율 비교광고 등 금지(안 제30조의 2)
 - 과태료 부과(안 제44조 제1항 제2호)
- 심사결과(1999. 11. 8)
 - 예금보험관계에 대한 타당성 심사 : 제29조 제2항의 표시의무와 합쳐 1개 규제로 등록할 것을 권고
 - 금융기관의 차등보험료율 비교광고 등 금지 : 5년의 규제일몰제 적용을 권고
 - 과태료 부과 : 원안의결

2) 금융감독위원회 소관 법령

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부동산신탁회사의 토지신탁수탁한도 설정(안 제28조의2)
- 심사결과(1999. 1. 20)
 - 건전성감독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고, 위임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철회를 권고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전자문서 제출인의 등록(안 제4조, 17조)
 - 전자문서의 작성 · 제출절차(안 제11조)
- 심사결과(1999. 1. 20) : 원안수용

상호신용금고감독규정 · 신용협동조합감독 규정 ·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감독 규정 · 보험감독 규정 등 4개 규정 개정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 백지수표의 청구 금지
- 심사결과(1999. 3. 24) : 원안수용
 - 다만, 동 금지는 불건전한 금융관행을 청산하고 경제적 약자인 차주(借主)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한 규제이므로 규제로 보지 아니하기로 함

외국환업무감독 규정 제정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종합금융회사의 유동성위험 관리(안 제6조)
 - 내부위험관리조직을 통한 위험관리(안 제10조 제2항)
- 심사결과(1999. 3. 24) : 원안수용

선물업자감독 규정 개정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8, 강화 2)
 - 선물거래업자의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제11조 내지 26조)
 - 선물거래업자의 자산부채비율 보고(제27조)
 - 부실선물거래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제28조 내지 36조)
 - 선물거래업자의 개별자산운용 제한(제37조 내지 39조)
 - 선물거래업자의 재무위험 내부통제(제40조 및 제41조)
 - 선물거래업자의 경영공시(제42조)
 - 선물거래업자의 위험고지서 및 약정서 규제(제46조 내지 48조)
 - 선물거래업자의 위탁자에 대한 조연 규제(제50조 내지 53조)
 - 선물거래업자의 위탁자에 대한 통지(제50조 내지 53조)
 - 선물거래업자의 자기계산에 의한 거래(제63조 및 64조)
- 심사결과(1999. 3. 31)
 - 선물거래법 제45조에 규정된 부당권유행위 등의 금지만으로 규제목적 실현이 가능하고, 동 부당권유행위의 유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임근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물거래업자에 대한 조연 규제(제50조 내지 53조)는 철회를 권고하고
 - 나머지는 원안의결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공모주식의 인수가액 산정방법 제한(규정안 제19조 제1항 및 세칙안 제9조)
- 수요예측제도를 기업공개 외에 협회등록공모에도 확대 적용하고, 공모금액에 따라 수요예측 참가 증권회사의 수의 하한을 설정
 - 공모주 청약 및 배정방법 제한
- 심사결과(1999. 5. 12)
 - 공모주식의 인수가액 산정방법 제한 : 수요예측제도가 관행으로 정착되는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2년의 규제일몰제)할 것을 권고
 - 공모주 청약 및 배정방법 제한 : 원안의결

은행감독규정 개정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은행의 리스크관리기준 설정(안 제31조 내지 제31조의 3)
- 심사결과(1999. 6. 13)
 - 개별 은행이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리스관리 전담부서를 전담조직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

자산유동화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5)
 - 채권유동화계획 및 계획변경의 등록(안 제3조 내지 5조)
 - 주택저당채권 양도 등의 등록(안 제9조 내지 11조)
 - 채권유동화회사의 신고사항(안 제19조)
 - 채권유동화관련 서류의 공시(안 제20조, 제22조)
 - 주택저당채권의 구분관리 등(안 제16조, 제17조)
- 심사결과(1999. 7. 14)
 - 주택저당채권의 구분관리 등 : 규정안 제17조(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감독 규정 제정안 제7조와 중복되므로 준용조항에서 제외(규제사무명을 자산관리의 위탁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나머지는 원안의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감독 규정 제정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3)
 - 정관 및 업무의 종류 또는 방법의 변경 보고(안 제3조)
 - 경영지도비율(안 제4조)
 - 자산건전성 분류 및 적정 대손충당금 적립(안 제5조)
 - 위험관리체제 구축(안 제6조)
 - 회계처리원칙(안 제7조)
 - 업무보고서 및 영업보고서 제출(안 제8조)
 - 경영개선조치(안 제9조)
 - 경영공시제도(안 제10조)
 - 약관보고(안 제11조)
 - 채권유동화증권 거래조건의 공시(안 제12조)
 - 주택저당증권의 기준가격 공고·개시(안 제13조)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안 제14조)
 - 금융사고 예방대책의 수립·운영(안 제16조)
- 심사결과(1999. 7. 14)
 - 정관 및 업무의 종류 또는 방법의 변경 보고(안 제3조) : 금감원장의 변경요구권 행사 요건을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 약관보고(안 제11조) : 전면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 채권유동화증권 거래조건의 공시(안 제12조) : 거래조건의 공시를 규정한 제12조 제3항은 자산유동화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한 공시와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 금융사고 예방대책의 수립·운영(안 제16조) : 금융기관 스스로 마련 시행하고 있는 당연한 사항이므로 철회를 권고하되
 - 여타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는 원안수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과태료 부과(안 제28조)
- 심사결과(1999. 11. 8) : 원안의결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 : 신설 1
 - 내부통제기준 마련(안 제22조의 3)
- 심사결과(1999. 11. 8) :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로 수정할 것을 권고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종금사의 내부통제기준마련(안 제5조의 3)
 - 대기업소속집단 금융기관간 교차지원행위 금지(안 제17조의 2)
- 심사결과(1999. 11. 8)
 -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고,
 - 대기업소속집단 금융기관간 교차지원행위 금지(안 제17조의 2)는 원안의결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
 - 신탁회사 건전경영의 지도기준(안 제24조의 3)
 - 외국신탁회사가 국내영업시 인가(안 제29조의 4)
 - 외국부동산신탁회사의 인가취소(안 제29조의 6)
- 심사결과(1999. 11. 8) : 원안의결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1)
 - 내부통제기준 마련(안 제54조의 4)
 - 코스닥법인에 대한 공시사항 확대(안 제186조)
 - 소액공모시 발행인에 대한 공시의무 등 부과(안 제18조의 2)
- 심사결과(1999. 11. 8)
 -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고,
 - 나머지는 원안의결

선물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내부통제기준 마련(안 제40조)
 - 협회에 대한 정관변경 승인권 신설(안 제75조 제3항)
- 심사결과(1999. 11. 8)
 - 내부통제기준 마련 : 원안의결
 - 협회에 대한 정관변경 승인(승인대상을 중요사항에 국한시켜 최소화할 것을 권고)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 내부통제기준 마련(안 제14조의 2)
 - 판매관련자료의 금감위 보고(안 제26조의 2)
 - 신탁재산의 회계감사(안 제26조의 3)
 - 판매행위의 제한(안 제41조의 3)
- 심사결과(1999. 11. 8)
 - 내부통제기준 마련 :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로 수정하고
 - 판매관련자료의 금감위 보고 : 제1항의 보고의무를 삭제하고, “위탁회사 및 판매회사는 판매권유광고를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성기준을 준수하도록” 수정하며
 - 신탁재산의 회계감사 : 원안의결하되
 - 판매행위의 제한은 철회를 권고

증권투자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6)
 - 등록전 모집 또는 매출금지(안 제12조)
 - 내부통제기준 마련(안 제35조의 3)
 - 판매관련자료의 금감위 보고(안 제41조의 2)
 -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 등(안 제42조의 2)
 - 자산운용회사의 등록취소(안 제63조의 2)
 -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취소(안 제63조의 3)

• 심사결과(1999. 11. 8)

- 판매관련자료의 금감위 보고(안 제41조의 2) : 제1항의 보고의무를 삭제하고, “위탁회사 및 판매회사는 판매권유헌고를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성기준을 준수하도록” 수정하도록 권고하고
- 나머지 규제는 원안의결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강화 1)

- 내부통제기준 마련(안 제6조의 5)
- 보고의무 부과(안 제7조의 2)
- 타사업겸영시 구분계리(안 제9조)
- 교차자금지원등 부당한 자산운용 금지(안 제19조의 2)
-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에 대한 보험사업 허가취소(안 제28조)

• 심사결과(1999. 11. 8)

-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에 대한 보험사업 허가취소는 제한적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하고, 나머지는 원안의결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

- 내부통제기준 제정의무(안 제22조의 3)
-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대한 경영건전성기준(안 제25조의 6 제3항)
-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안 제36조 제3항)

• 심사결과(1999. 11. 8) : 원안의결

종합금융회사감독 규정 · 상호신용금고감독 규정 · 여신전문회사 등 감독 규정 ·

상호금융감독 규정 등 4개 규정 개정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개별 규정별 1)

- 리스크관리 기준설정

• 심사결과(1999. 12. 1)

- 종합금융회사감독규정 및 상호신용금고감독규정 개정안은 원안의결하고, 여신전문회

사등감독규정 및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명백한 법적 근거 마련 후 재추진할 것을 권고

금융기관 등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금융기관의 업무제휴에 대한 기준설정(안 제3조 내지 제5조)
- 심사결과(1999. 12. 1)
 - “업무위탁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의 적정성”을 “업무위탁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증권회사 등의 무보증채권 인수 제한(안 제35조)
-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단축(6월 → 3월), 정기 또는 수시평가결과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조정된 경우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신용평가를 의무화
- 심사결과(1999. 12. 1) : 원안의결

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의 이익상충방지체제 구축(안 제34조의 2)
 - 부동산신탁회사 자산건전성 분류(안 제30조의3 내지 제30조의 5)
- 심사결과(1999. 12. 1) : 개선권고
 -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의 이익상충방지체제 구축(안 제34조의 2) : 인력운용 분리를 제외하고, 적용유예기간을 2000년말까지로 수정하고
 - 부동산신탁회사 자산건전성 분류(안 제30조의 3 내지 제30조의 5) : 2000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조정(50% 이상 → 70% 이상)할 것을 권고

Ⅰ 제3절 Ⅰ

산업자원 분야

* 집필자 : 김재열 과장(Tel. 3703-2157)

I. 개요

1. 규제 및 근거법 현황

가. 규제근거법령

- 산업자원부의 규제근거법령은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대별할 수 있다
 - 무역분야 : 대외무역법,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수출자유지역설치법 및 동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 산업 및 기술분야 : 산업발전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품질경영촉진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염관리법, 염업조합법,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 에너지 및 자원분야 : 광업법, 광산보안법, 석탄산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저광물 자원개발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송유관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 중소기업청의 규제근거법령에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있고
- 특허청의 규제근거법령은 특허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변리사법, 발명진흥법, 의장법, 상표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있다

나. 규제성질별 분류

- 산업자원부의 규제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 수출입 업무관련 승인, 신고, 지정 등 관련규제
 - 산업발전, 기술기반조성, 산업표준화 등 관련 규제
 - 안전준수, 품질확보 등에 따른 관련 규제
 - 협회, 조합, 단체 등의 지정 및 설립·운영 관련규제
 - 광업 및 에너지사업(석유, 가스, 전기) 영위관련 규제로 대별할 수 있다
- 중소기업청의 규제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 및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위한 규제
 - 중소기업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로 대별할 수 있다
- 특허청의 규제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위한 규제
 - 변리사회 및 정보이용에 대한 규제
 - 부정경쟁 방지 및 발명진흥 촉진을 위한 규제로 대별할 수 있다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가. 산업자원부 소관 규제정비

- 수입승인제를 폐지
- 형식승인의 명칭을 안전인증으로 변경하고, 정부가 직접 형식승인하던 것을 민간기관에게 이양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광업권 소유제한을 폐지
-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한정하던 것을 폐지
- 석유정제업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를 50%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
- 고압가스 또는 가스용품, 용기 등 사전 신고제를 폐지
-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한 표준공사비 고시 준수의무를 폐지
-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설치허가를 폐지
- 특정전기사업(전기를 발전하여 특정한 공급지점에 전기를 공급)제도를 도입
- 전기공사업에 대해 면허제를 등록제로 개선하고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1·2종 공사업 구분 및 면허갱신제를 폐지
- 수급한도액제도를 폐지
- 수입선다변화제를 철폐하고 일반기계, 자동차 및 동부분품 등의 중고품에 대해 수입승인제를 폐지
- 국외에서 발행된 오판(물품매도확약서)은 국내에서 갑류무역대리점업자가 오판을 발행하고 있지 않음을 한국무역대리점협회의 확인을 받던 것을 폐지
- 수출입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인가제를 폐지하고 수출입조합의 정관변경시 인가를 받던 것을 폐지
- 업종합리화제도를 폐지
- 금융기관은 매분기별 산업기반기금 용자내역서 보고의무와 산업기반기금 사용자의 사업진도를 보고하던 것을 폐지
- 대규모 판매시설의 시설운영기준을 폐지
- 1종 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제 폐지
- 1종 전기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형식승인을 받던 것을 민간 안전인증기관이 하도록 하였음

- 승강기제조업의 등록·변경·폐지신고 등을 폐지
- 승강기 제조업자·보수업자 등의 제조·보수 등의 관리에 관한보고, 승강기 검사실적·형식승인을 위한 부품시험실적보고, 승강기보수관리 등에 관한 실적보고, 사용중인 승강기의 폐지보고 등을 폐지
- 안전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폐지할 경우 사전신고제,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사전검사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의 승인제를 폐지
-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채굴시 신고제와 석유·우라늄 등 특수 광물의 허가 제한을 폐지
- 특정열 사용기자재 시공업자의 시공기록을 보존하던 것을 폐지
- 무역자동화사업자의 사업계획 승인 폐지
- 무역자동화 지정사업자의 보고·검사의무제를 폐지
- 수출품 품질향상에 관한 법률 자체를 폐지
- 군납에 관한 법률 자체를 폐지
- 기준공장 면적률을 하향조정 하도록 개선하고 강제매각제도를 폐지
- 수출자유지역에서 각종 자료를 보고토록 하고, 토지·공장 등의 임대료 미납시 연체료를 부과 하던 것을 폐지
- 품질인증기관,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 연수기관의 업무규정을 산업자원부 장관, 한국품질인증협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
- 대규모 점포의 증설등록제도를 폐지
- 대규모 점포의 등록자가 폐업하거나 개설자가 사망한 때, 또는 개설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합병 신고폐지
-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물류공동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지정제도를 폐지
- 집배송 시설의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
- 산업정보망구축시 산업정보전산망 지정 및 지정을 받은 사항을 변경시 승인을 받던 것을 사전협의로 개선
- 계량기의 경우 형식승인을 받던 것을 폐지하고, 계량기의 자체검사·교정검사를 폐지하고 계량기의 정기검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품질보증연수기관의 연수업무규정, 연수실적 및 결과를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 대한 보고의무 폐지

- 안전전문기관의 매사업연도마다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와 검정업무와 관련된 업무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시 승인을 받던 것을 폐지
- 우수산업디자인(GD) 상품선정 관련 업무의 주관기관을 정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였고, 우수산업디자인 선정결과 보고의무, GD등록상품의 허위표시·유사표시 및 과대광고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
- 광산 종업원의 교육 및 사고대피 훈련, 지표침하, 갱도 붕락 방지를 위한 보안주 설치 및 채굴의 제한, 구호대 구성 및 광산보안 기본장비 등 확보, 광산보안에 관한 서류보존 의무 등을 폐지
- 계획채광의 불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작업중지명령 등을 폐지
-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업자의 석유소비실적 또는 석유소비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한 것을 폐지
- 천연가스의 수출입계약 및 수송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개선
- 석유판매업을 하려고 등록할 경우 저장시설, 수송장비, 주유기 등을 자기소유로 하여야 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폐지
- 석유정제업자·판매업자 등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고시하던 것을 최고가격제 자체는 유지하되 국제가격 등 원가변동요인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원가 연동제로 개선
-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 또는 제조한 용기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토록 하던 것을 폐지
- 고압가스용기의 내구 연한을 폐지
- 유통중인 고압가스용기 불량품에 대해 교환·환불명령도 가능하게 개선

나. 중소기업청 소관 규제정비

- 투자회사 또는 투자조합의 투자제한을 폐지
- 국·공립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소내 실험실을 활용한 벤처기업 창업시 기관장 추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허용하고, 공장등록도 가능토록 하며 창업자본금을 2,000만원 이상으로 완화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이 정한 단체수의계약물품 추천을 위한 세부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 폐지

- 조합은 매분기 종료 후 조합원에 대한 수혜상황(계약실적)을 중앙회장에게 제출하고, 중앙회장의 중소기업청장에 대한 제출 폐지
- 조합원의 생산실적 종합 보고 폐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단체표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폐지
- 지정계열화품목 생산시설의 신규설치 제한 폐지
- 중소기업자가 협동조합을 설립시 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중앙회의 추천제를 폐지
- 조합구역 안에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에 대한 조합가입 명령과 조합원이 임의탈퇴를 하려면 90일 전에 예고하고 사업연도 말에 한하여 탈퇴를 허용하던 것을 폐지
- 외국인은 출자금을 요구불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출자금 전액을 신주인수에 한한 투자 제한 폐지
- 투자회사가 상장 또는 장외등록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보고 폐지, 투자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규모, 방법 등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보고 폐지
- 창업에 따른 구비서류 중 공장예정지적도, 공인회계사의견, 투자조합결산서 등의 제출을 삭제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에 등록하고 매년 결산보고를 하는 것을 상법상의 요건만 갖추고 전문인력도 최소인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
- 품질경영 진단실시계획보고, 진단중단보고, 진단 상황의 점검 및 평가제도를 폐지
- 진단사 보수교육과정의 내용·분야·강사·부담금 등의 교육내용 승인 폐지

다. 특허청 소관 규제정비

- 외국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국적증명서 제출 폐지
- “전자” 서류에 의한 출원제를 도입하였고, 내국인이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하는 경우 그 사용언어를 한국어로도 국제출원을 하도록 하였음
- 상표권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상표권 이전 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시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표권 이전 신청 폐지
- 1출원서에 2이상의 의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출원공고 이전에도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변리사의 변리사회 강제가입을 폐지
- 수습변리사가 1년간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주던 것을 폐지
- 특허청이 소유하고 있는 자료 중 간행물을 복제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때의 특허청장의 사전승인 폐지
- 파리조약 당사국 안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우수발명시작품 제작비 지원대상을 권리설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 지원 폐지
- 일정한 시설과 기준을 갖춘 자는 등록만 하면 누구라도 특허정보보급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1998년도 규제개혁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
 - 경쟁을 제한하거나 기업의 자율성이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요인의 제거
 - 동일 목적의 다른 규제가 존재하는 중복규제의 통합화
 - 규제내용의 구체화 · 객관화를 통한 규제의 투명성 제고
 - 규제효과에 비해 비용이 더 큰 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가. 심사경위

- 1999년 산업자원부 규제정비계획 심사대상 총 355건에 대해 산업 · 건설 심사소위원회를 1999. 7. 15, 1999. 7. 29, 1999. 8. 12 등 3회에 걸쳐 개최하여, 환경부의 환경친

화기업지정제도와 산업자원부의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의 통합화와 외국인의 일반방산 업체의 주식취득허가건을 토의과제로 하여 경제1분과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제59차(1999. 9. 22) 경제1분과위원회에서는 심사소위원회안에 대해 심사하고 총 355건 중 폐지 등 16건, 개선 25건의 정비계획에 합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제40차(1999. 10. 1)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999년 산업자원부 잔존규제정비계획을 확정하
바 있음

- 1999년 중소기업청 규제정비계획심사대상 총 40건에 대해 산업·건설 심사소위원회를 1999. 7. 29 개최하여 이 중 1건을 폐지하기로 하고 경제1분과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제 57차(1999. 9. 8) 경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사소위원회안에 대해 심사하고 1999년 중
소기업청 잔존규제 정비계획을 확정하
바 있음
- 1999년 특허청 규제정비계획 심사대상 총 36건에 대해 산업·건설 심사소위원회를 1999. 7. 29일 개최하여 이 중 5건에 대해 개선하기로 하고 경제1분과위원회에 상정하였
고, 제57차(1999. 9. 8) 경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사소위원회안에 대해 심사하고 1999
년 특허청 잔존규제 정비계획을 확정하
바 있음

나. 정비결과

구 분	1998년 정비			1999년 변경					1999년 정비				정비 후 잔치 규제수
	당초 규제수	폐지	잔존 규제	신설 (재심사 포함)	국회 수정	법제처 심사 수정 등	누락 등록	소계	대상	폐지	제외	개선	
산업자원부	667	345	322	23	1	△2	9	31	353	15	1	22	337
중소기업청	89	47	42	-	-	△2	-	-	40	1	-	-	39
특 허 청	75	39	36	-	-	-	-	-	36	-	-	5	36

.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1. 산업자원부 소관 규제

- 품질보증체제인증제도 민간이양(2000. 7)
 - 품질보증체제인증 및 사후관리보고 폐지
 - 품질보증체제인증기관, 품질보증체제연수기관 지정 폐지 등
- 에너지 저장의무 폐지
-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고시의 폐지(2000년 말)
- 환경설비품질인증의 민간기관 이양
 - 환경설비품질인증기관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도 개방
- 사전안전검사수수료 징수방법 개선
 - 사전안전검사의 검사수수료를 실제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도록 징수방법 개선
- 석탄가공업 승계신고 개선
 - 신고인의 신원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
-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 제출의 일몰화(2004. 7)
 - 민영화 시점까지 계획수립 제출
-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조정 명령의 최소화
 - 비상시에 대비한 최소한의 사항에 한하여 조정 명령
-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명령의 합리화
 - 집단에너지시설의 이전 명령을 개체명령으로 개선
-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방법 개선
 - 검사방법의 차등화
- 석유사업자의 사업보고의 간소화
 - 석유정제업자·수출입업자의 원가 및 경영상황 자료보고 폐지
- 가스안전교육 개선
 - 신규종사 후 보수교육(매 2년) 폐지
- 보험사업자의 부담완화
 - 고압가스사고 예방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 폐지

-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의 공급규정 개선
 - 공급규정의 승인제를 신고제로 개선
- 액화석유가스관련 검사제도 개선
 -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시의 중간검사 폐지하고 완성검사만 실시
- 전기설비 정기검사의 개선
 - 업무휴지기간중 검사 실시
- 전력기술관리 설계업, 감리업 등록기준 개선
 - 사무실, 자본금 중 출자증권 조항 삭제

2. 중소기업청 소관 규제

- 대기업 사업의 중소기업 사업이양대상업종 등 폐지
 - 중소기업고유업종의 사업, 지정계열화 품목에 관한 사업,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업종 및 품목에 관한 사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자 등은 중소기업자에게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업종을 고시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도모함

3. 특허청 소관 규제

- 출원서 제출서류 간소화
 - 출원서정본만 제출하도록 하고 출원서 부분(2통)제출 폐지
- 출원료 감면에 따른 제출서류 간소화
 - 학생출원시 재학증명서로 확인 가능
- 출원관련 보정기간 개선
 - 보정기간 연장은 필요한 경우 2개월 범위 내에서 일괄연장 가능
- 변리사등록제도 개선
 - 변리사 갱신등록(2년)제도 폐지
- 평가기관의 취소사유의 명확화

- 내부규정으로 마련된 취소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의 고시화

· 신설·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1.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신설·강화규제 심사 현황

구 분	계	신 설	강 화
심사대상	67	44	23
철 회	11	9	2
권 고	22	15	7

2. 심사 및 조정내역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사용되는 부품중 로딩암, 세이프티커플링은 안전성 검증없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허가대상가스용품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가스사고의 예방을 강화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의 시설기준(사업소경계와의 거리 및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등) 강화하여 가스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도모
- 액화석유가스 지하저장탱크의 과충전 방지장치설치를 의무화하여 가스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
- 신규용기충전소에만 설치토록 의무화한 로딩암을 기존의 용기충전소와 자동차충전소에도 설치를 의무화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충전원에 대해서도 신규종사시 특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충전

원의 응급조치능력의 향상으로 가스사고의 사전예방

2)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기준통합고시 중 개정령안

- 액화석유가스의 점화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존충전소의 전기설비 중 방폭성능이 상실된 것에 대해 방폭성능을 갖추도록 하였음
- 엘피지자동차에 대해서도 충전중 오발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자 하던 것을 권고사항으로 하도록 하였음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 가스사고시 대인보상의 경우 사망시 종전의 3,000만원 이상에서 6,000만원 이상으로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한도를 조정하고, 상해급별 보상액은 1,000만원 이상에서 15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며 후유장해급별 보상액은 장해등급별로 240만원 내지 6,000만원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가입한도를 상향조정하였음
- 가스사고시 재산피해의 경우 일률적으로 1억원이던 것을 3억원 이상 100억원으로 차등화하여 배상할 수 있도록 가입한도를 상향조정하였음

4)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기준고시 중 개정령안

- 압축천연가스의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중 사업소내에 있는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유지하는 안전거리를 현행 17m에서 24m 이상으로 하고, 보호시설까지는 50m 이상으로 확대하여 가스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5)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설정 및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중 개정고시안

- 에너지 최저효율기준달성 및 효율등급표시의무 대상품목을 전기세탁기와 직관형 26mm32W형광램프 및 전용안정기, 환형 40W형광램프 및 전용안정기, 전구식 형광등 기구까지 확대하였음

6) 석유사업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 석유수입 판매부과금 채납시 가산금을 채납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분의 5를 징수하고 있어 장기채납자와 정상적인 납부자와 형평성을 잃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중 가산금제도를 도입하였음
- 유사석유제품의 범위에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포함함으로써 유사휘발유 뿐만아니라 유사경유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 석유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도 석유판매업자별 취급석유제품 외의 석유제품을 석유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를 확대 하였음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명시하였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
 -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
 -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
 -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8)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 폐광지역에 설치되는 카지노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 지분비율을 51% 이상으로 한정하였음

9)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 천연가스인수기지에 설치하는 초저온저장탱크에 대해 저장성탱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정설비의 허가범위를 확대하고자 했으나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규정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품검사를 받도록 개선권고하였음

10) 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등록요건과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사업자가 전문회사 겸 업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설정하여 공신력을 갖추도록 하였음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최저출자금총액을 30억원으로 설정하여 부실기업의 인수, 투자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 최근 3년간 이월결손금이 연속 발생한 기업, 부채비율이 업종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 사업전환이 필요한 기업, 기업집단의 전문화를 위하여 매각이 필요한 기업 등을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하고자 했으나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으로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기업, 부채비율이 업종평균의 1.5배를 초과한 기업, 사업전환이 필요한 기업, 기업집단의 전문화를 위하여 매각이 필요한 기업 등을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규정하도록 개선권고하였음
-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조합규약을 제출하도록 하였음
-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조합의 자산을 구조조정업무와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업무에만 운용하도록 제한하고 조합의 자산을 조합의 주요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인수하는 데 운용하지 않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는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영업보고서 및 사업연도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했으나 매분기의 영업보고서 및 사업연도결산서를 제출하도록 개선권고하였음
-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업무집행원이 아닌 출자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음
- 업무집행조합원의 자산운용에 따라 출자자의 이익이 심대히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당해업무집행조합원과 조합에 대해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 도심지역인 주거 상업지역 충전소의 경우 이 · 충전회수가 빈번하여 안전관리원이 일시적으로 부재중인 경우에도 이 ·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스사고의 개연성이 커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원 1인을 추가로 선임하도록 하였음

12)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중 개정령안

- 사업자가 권장소비자가격을 실거래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표시한 후 할인판매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오도하고 있어 TV,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VTR, 운동복, 신사정장, 숙녀정장, 아동복, 롤러블레이드, 운동화, 런닝머신에 대해서는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금지품목으로 선정하였음

1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 전기사업자 또는 발전사업자가 납부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음

14)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령안

- 연구개발기업과 특허·신기술의 사업화기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총매출액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음
 - 총매출액의 산정기간이 1년인 경우 9,600만원 이상
 - 총매출액의 산정기간이 2분기 이상 4분기 미만인 경우 4,800만원 이상

15) 전기사업법시행규칙 개정령안

- 전기사업자의 전기사업 양수신고시 제출서류 중 양수인이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임원이 될 자의 이력서를 삭제하도록 개선권고하였음
- 전기사업자의 합병신고시 제출서류 중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및 임원이 될 자의 이력서를 삭제하도록 권고하였음
- 사용전 검사대상대상에 용접검사를 포함시키되, 검사의 실명제를 강구하도록 개선권고하였음

1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 집단에너지사업 양도, 양수 및 합병 신고시 승계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사업의 일부양수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및 양수받는 공급시설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자 했으나 승계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전 사업연도 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삭제하도록 개선권고하였음

17)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법률안

- 창업투자회사의 상근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자 했으나 대표이사에 한하여 자격을 제한하도록 개선권고하였음
- 공장을 경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공장을 설립한 후, 제조활동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창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 및 공장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중소기업상담회사가 아닌 자는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중소기업상담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했으나 철회하도록 권고하였음

18) 산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등록 후 2년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납입자본금의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기업인수와 인수한 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 사업에 운용하여야 하며, 2년 이후에도 동 비율이상의 금액을 계속 기업인수와 인수한 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 사업에 운용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였음
- 전문회사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전문회사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등을 한 날로부터 또는 자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과 병합하거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영업 또는 자산을 매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을 매각하도록 하였음

- 전문회사는 조합을 결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매월의 영업 보고서 및 매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의 출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와 조합에 대하여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19)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자구능력이 없는 어린이 등의 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전기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어린이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시·도지사가 특히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전기사용시설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20)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 입주허가의 취소요건에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기업체가 장기간 휴폐업하는 경우에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장설립의 완료 전에 토지, 공장 등을 처분할 경우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최초의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완료 전에 토지, 공장 등을 다른 입주기업체에게 처분할 경우 그 양도가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입주기업체가 국유의 토지 위의 공장 등을 양도 또는 임대(전대를 포함한다)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음
- '수출자유지역물품의 역외수리가공승인요령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하여 물품의 반출입신고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자유지역입주기업체의 물품반출입 신고의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현행 고시규정상 물품반출입관련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입신고를 하도록 개선권하였음
- '수출자유지역물품의 역외수리가공승인요령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던 물품반출입시 검사, 확인의무를 법률에서 규정하되, 관할세관장의 검사를 받도록 개선권

고하였음

- ‘수출자유지역물품의 역외수리가공승인요령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던 물품처분시 신고의무를 법률에서 규정하되 물품의 폐기, 양도, 임대 등을 업체의 자율에 맡기도록 개선권고하였음
- ‘수출자유지역물품의 역외수리가공 승인요령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하여 운용하던 물품 관리상황의 기록보존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였음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로부터 생산, 수출, 투자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나 철회하도록 권고하였음

21)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

-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에게 분할절차 간소화, 세제 등의 구조개편지원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력회사가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음
- 전력회사는 신설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외에는 신설법인의 경영에 간여하지 않도록 하고자 했으나 철회하도록 권고하였음
- 전력회사 및 신설회사는 전력시장의 입찰에 있어서 공정한 전력거래가격의 결정을 저해하는 담합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자 했으나 철회하도록 권고하였음

22)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 석유품질검사기관을 복수화함에 있어서 석유제품 품질검사업무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가 요구하는 정도의 검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일정수준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이를 충족시키는 기관에 한하여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어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와 정유사 등에 대한 자체검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되,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않도록 개선권고하였음
- 석유판매업의 등록수수료의 현실화 및 신고수수료의 징수근거 마련과 함께 수수료를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23) 전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 송전사업의 통합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자원부 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 송전사업에 대하여는 2이상의 사업자를 허가하지 않고자 했으나 철회하도록 권고하였음
- 자연독점이 불가피한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전기설비의 개방에 대한 대가의 산정 등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음
- 전기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판매 사업자에 의해 발행되는 전기요금청구서에 발전 · 송전 · 배전 · 판매 등 각 단계별로 발생한 요금을 구분하여 명시하도록 하였음
- 전기사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적정 전압 및 주파수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음
-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사익추구를 위하여 전력시장이나 시장밖에서 가격 조정, 송 배전시설의 부당한 개방거부 지연, 정보의 부당한 이용 등 불공정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어 전기사업자의 불공정 및 부당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지행위의 재발을 막고 이미 획득했을 가능성이 있는 부당이득을 회수한다는 차원에서 전기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도록 하였음
- 자연독점 상태로 있게 되는 송 배전 사업자의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보유하도록 하였음
- 긴급사태 발생으로 전력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은 재해 기타 긴급사태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에 대하여 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한국전력거래소의 조직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하여 중요 사항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기 위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자 했으나 철회하도록 권고하였음
- 거래소가 아닌 자는 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시설을 이용하여 전력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했으나 철회하도록 권고하였음
- 전력 거래소의 회원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자 했

으나 철회하도록 권고하였음

- 한국전력거래소의 수수료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음
- 전력거래소가 전력거래량, 전력거래가격 및 전력수요전망 등 전력시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 거래소는 원활한 전력시장의 운영과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규칙 또는 기타 거래소 업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음
- 전력거래소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 거래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나 철회하도록 권고하였음
- 산업자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거래소의 휴장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관리를 추가하도록 개선권고하였음
- 산업자원부 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전기요금의 100분의 7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나 100분의 6.5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연차적으로 부담금을 축소해 나가도록 개선권고하였음
-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했으나 철회하도록 권고하였음

24) 품질경영촉진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 자동차용타이어와 가스라이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품으로 최근 불량 저가의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고 잔디깎기기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치명적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안전규제가 필요하여 안전검사대상공산품 중 사전검사란 화학 분야의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 포함)”을 “자동차용타이어”로 하고, 생활용품 분야의 “가스라이타”를 추가하며, 사후검사 구분란 화학분야의 “판유리”, 전기·전자 분야의 “할로젠전구” 및 생활용품 분야의 “라이트”를 삭제하고, 기계 분야에 “잔디깎기기”를 추가하도록 하였음

Ⅰ 제4절 Ⅰ

건설교통 분야

* 집필자 : 민용식 사무관(Tel. 3703-2159)

. 개요

1. 규제 및 근거법령 현황

1) 규제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70여개의 법률 및 동 법률관련 하위규정

2) 규제성질별 분류

- 국토개발기본계획,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유도와 수도권집중 억제 및 지역균형개발 유도를 위한 규제
- 중소건설산업 및 전문업체 등의 기반구축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규제
- 주택분양 기회의 형평성 제고 및 주택·토지의 경기과열 방지를 위한 규제

- 운수사업과 물류산업 관리 및 교통안전 등을 위한 규제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가. 건설산업·안전 분야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경영자율성 제고

- 턴키공사의 경우 시공부문 일괄하도급 허용
- 건설업자의 상호·영업소재지 등 변경사항 신고의무 폐지
- 건설업자의 시공관리대장 작성의무 폐지
- 해외건설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
- 해외진출 건설업자 및 도급·하도급업자 지정제도 폐지
- 해외공사의 수행계획 신고제도 폐지
- 일정 경력 고졸자도 특급건설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
-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폐지
- 부실설계 등을 한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폐지
- 설계 등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제한 폐지
- 감리원의 겸직금지 폐지
- 감리원의 중복배치 금지 폐지
-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일지 보고의무 폐지
- 사업시행자의 감리비 예치의무 폐지
-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자격제한 폐지
- 책임감리 대가기준 폐지

■ 시설물 안전관리 합리화

- 일상안전점검 대상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점검주기 완화
- 시공자보수계획에 대한 승인제 및 보수완료 확인제 폐지
-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조정

나. 주택·건축 분야

■ 주택건설·공급·관리에 따른 경쟁제한 및 불편사항 개선

-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결정 제도 폐지
- 아파트 건설시 진입도로 등 간선시설 기부채납제도 개선
- 주택건설에 따른 운동시설 · 생활편익시설 설치기준 폐지
- 주택자재생산업 등록제 및 등록자재 사용의무 폐지
- 사업주체의 감리비용 예치의무 폐지
- 수도권 전입자에 대한 2년간 청약제한 폐지
- 경쟁과열구역에서의 민영주택 공급기준 폐지(20배수 청약제 폐지)
- 아파트 입주 시기 지정에 대한 제한 폐지
-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 폐지
- 민영주택의 무주택 우선 공급 폐지
- 외국인의 민영주택 청약 허용
- 주택분양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폐지
- 아파트 자치관리기구 구성에 대한 인가제 폐지
- 주택관리업자의 업무범위 제한 폐지
- 주택관리사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 폐지
- 우수 주택건설사업자 지정제도(지정업체제도) 폐지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폐지
- 건축물 건축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
 - 신고로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확대
 - 건축물 건축시 각종 부대시설 설치의무 폐지
 - 각종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 지하층 설치의무제도 폐지
 - 허가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착공신고 등 폐지
 -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축소
 -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 기준 폐지
 - 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 안의 공지확보 의무 폐지
- 건축사 영업활동 제한 개선
 -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의 업무 및 보수기준 폐지

다. 국토·토지 분야

■ 지역개발사업 추진상 각종 제한 폐지

-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 여부를 사업시행자의 자율에 맡김
-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 승인제 폐지
- 개별공장 설립허용 규모(15만 m^2 이하) 폐지
- 지역개발법인 설립인가 및 공공의 출자한도(50%) 폐지
- 제주도 농어촌 지역에서의 유선업 신고, 농산물·임산물 등 제조판매 허가 또는 신고 제도 폐지
- 제주도 농어촌 지역에서의 보세판매장 등의 허가 및 관광토산물 제조업 등록제도 폐지

■ 토지거래관련 규제 개선

- 토지거래계약 신고제도 폐지
- 유희지제도 폐지
- 중개업허가갱신제도 폐지
- 공인중개사 고용의무, 중개보조원 고용인원 수 제한 폐지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매년 시행
- 외국인의 토지취득제한 철폐
- 외국인에 대한 토지사용 권고제도 폐지
- 외국인의 토지취득 목적 변경 허가 또는 신고제도 폐지
- 외국인의 토지처분 명령제도 폐지
- 해외동포의 국내토지 계속보유 허가 또는 신고를 사후신고로 전환
- 택지소유 상한제도 폐지
- 감정평가사 선발인원 제한 폐지
-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의 법인대표 금지규제 폐지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업협회 의무가입제도 폐지

라. 교통·물류·항공 분야

■ 육상교통·운수업관련 각종 제한 개선

- 사업용자동차의 구조 등 각종 시설기준규칙 폐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예비자동차 확보의무 폐지
-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제작·조립자의 완성검사 폐지

-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중 사무실 확보기준 폐지
- 자동차정비사 등의 교육의무 폐지
- 자동차 일상점검(매일점검)의무제 폐지
- 교통안전관리자 의무고용제 폐지
- 자동차 신규등록 · 이전등록 · 정기검사시 보험가입증명서 제시의무 폐지
- 자동차에 책임보험 등 보험가입증명서 비치 및 자동차 보험 가입표지 부착의무 폐지
- 물류산업에 대한 경쟁제한 및 불편사항 개선
 - 화물터미널사업 등록시 사업계획서 제출의무 폐지
 - 화물터미널공사 완성검사 폐지
 - 화물터미널 사용개시신고 폐지
 - 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폐지
 - 화물터미널사업자의 요금 및 약관계시의무 폐지
 - 창고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제도 폐지
 - 창고업자의 창고증권 발행의무 폐지
 - 창고업자의 보험가입의무 폐지
 - 유통단지개발사업대행 승인 폐지
 - 유통단지관리 관련자료의 인계의무 폐지
 - 개발한 토지 · 시설 등의 처분계획 승인 폐지
 - 유통시설 등의 양도신고의무 폐지
 - 유통시설 등의 건설의무 폐지
 - 유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등의 설립인가(취소) 폐지
 - 유통단지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 폐지
 - 유통단지관리기관의 공동부담금 징수 승인 폐지
 - 유통단지내 입주신고 폐지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21세 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폐지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사무실 면적기준(주사무소 20㎡ 이상, 영업소 10㎡ 이상) 폐지
 - 복합운송주선업 등록기준완화 및 사업계획서 제출의무 폐지
 - 복합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폐지
- 항공운수업 관련 규제 개선
 - 항공기 조종연습 등의 비행허가제 폐지

- 항공종사자 취업실태 분기별 보고의무 폐지
- 항공기 도착통지 의무 폐지
- 항공종사자 해외취업 제한제도 폐지
- 국제항공노선의 운임 · 요금의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국내항공노선의 운임 · 요금 신고제 폐지
- 항공운송사업자간 운수협정의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 항공운송사업자의 정기 또는 임시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 항공기취급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외국인 투자제한 폐지
- 항공기로부터 낙하산 강하 허가 폐지
-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 전문의료기관 지정제도 폐지
- 항공기운송사업 운송약관 인가제 폐지

마. 도로 · 수자원 · 지리 분야

■ 도로건설 · 관리상 불편 해소

- 고속국도 통행제한 위반자에 대한 조치명령권 폐지
- 지방자치단체의 유료도로개설에 대한 허가제 폐지
- 사도개설자의 통행제한 사유의 명확화
- 점용공사비용 예치제 폐지
- 도로상부를 횡단하는 전기선로 설치 협의제 폐지

■ 수자원개발 · 관리에 따른 규제 개선

- 지하수개발 · 이용자의 착공신고제 폐지
- 지하수 개발 · 이용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폐지
-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 휴 · 폐업신고제 폐지
-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의 영업정지제도 폐지
- 하천 연안구역내 토지소유자 등의 부담 폐지
- 하천관련 권리 · 의무의 양도 · 양수허가제도 폐지
- 하천구역내 행위제한 완화
- 하천공사에 따른 각종 부담금제도 폐지
- 하천점용허가 제한 제도 폐지
- 댐사용권 처분에 대한 허가제 폐지

■ 지리·측량관련 규제개선

- 측량업 재등록 의무제 폐지
- 측량업자의 하도급 제한 폐지
- 측량기술자의 등급별 업무범위 폐지
- 측량기술자의 보수교육의무 폐지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기업 경영자율성 및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의 개선
- 사업진입규제 완화
- 중복규제의 간소화
- 규제내용의 구체화·객관화로 규제의 투명성 제고
- 국민의 일상생활상의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으로 생활편의 증대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가. 심사경위

- 1999년도 건설교통부 규제정비 심사대상 총 606건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사무에 대한 타당성 분석의 경험적 토대를 마련하고 전문·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교수·전문연구원·기업경영가 등 민간인 전문가 7인을 초빙하여 산업·건설부문 전문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 산업·건설 부문 전문가 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1차(1999. 6. 25), 제3차(1999. 7. 22), 제4차(1999. 7. 27), 제6차(1999. 8. 2) 등 4회에 걸쳐 건설교통부 소관 규제사무를 체계적으로 검토
- 심사소위원회는 국토정책국, 토지국, 주택도시국, 육상교통국, 건설경제국, 기술안전국, 도로국, 수자원국, 항공국 등 9개 국 소관 법령에 대한 부문별 규제심사를 통하여 총 606건의 규제 가운데 21건을 쟁점과제로 경제1분과위원회에 상정
- 경제1분과위원회는 제49차(1999. 6. 30) 및 제54차(1999. 8. 18) 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 심사소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안 및 쟁점사항에 대해 심사·조정을 거친 결과 총 606건 중 폐지 21건, 개선 33건의 정비계획에 합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 규제개혁위원회는 1999. 8. 27일 제37차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교통부 총 규제 수 606건 중 23건(3.8%)을 폐지 또는 규제사무에서 제외키로 하고 33건(5.4%)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총 56건을 정비하기로 하는 내용의 1999년도 건설교통부 규제정비계획을 확정

나. 정비결과

1998년 정비			1999년 변경					1999년 정비*				정비 후 잔치 규제수
당초 규제수	폐지	잔존 규제	신설 (재심사 포함)	국회 수정	법제 처 등	누락 등록	소계	대상	폐지	제외	개선	
917	467 (50.9%)	450	+37	+6	+14	+99	+156	606	△21	△2	33	583

* 2000~2002년 폐지 15건, 개선 35건 제외

.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1. 경영자유성 및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의 개선

1) 건축사 사무소 등록시 직원명단 제출의무 삭제

가. 현황 및 문제점

-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할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면허증사본
 - 건축사보 및 직원의 명단
 - 사무실보유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나. 개선방안

- 건축사무소 등록시 직원명단 제출의무 삭제

다. 시행시기

- 건축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0. 4월부터 시행 예정

2) 중개업자의 이중소속금지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중개업자 등은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중개업과 타업종간의 2중소속은 금지하지 않으면서 중개업자간의 2중소속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함

나. 개선방안

- 중개업자 등의 2중소속 금지규정을 폐지
- 중개업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따로 중개업을 겸업하는데 대하여는 상법상 상업사용인 및 임원의 겸업금지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며, 명의대여 행위에 대하여는 등록취소와 함께 형사처벌됨

다. 시행시기

-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하여 2000. 7. 1일부터 시행 예정

3)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승인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중개사무소 이전시 사전신고를 사후신고로 전환

가. 현황 및 문제점

-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소씩만 설치할 수 있고, 설치시에는 사전에 등록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중개업자가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신고하도록 하고,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의 이전시 현 중개업소를 폐업하고 새로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 이전을 위한 절차가 번잡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하여 사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음

나. 개선방안

-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설치시에는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개선함
 -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가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대장 등을 새로운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으로 송부

다. 시행시기

- 중개법인 분사무소 설치완화 :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하여 1999. 7. 1일부터 시행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완화 :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하여 2000. 7. 1일 시행 예정

4)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주재사원 수 제한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감정평가법인은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일정 수 이상의 사원이 주재하도록 하여야 함
 - 주사무소 : 20인 이상
 - 분사무소 : 지역에 따라 5~10인 이상

나. 개선방안

-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주재사원수 제한 폐지

다. 시행시기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0. 4. 1일 시행 예정

5) 복합운송주선업의 휴·폐지의 경우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전환

가. 현황 및 문제점

-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어 신고·수리시까지 자유로운 사업의 휴·폐지가 어려움

나. 개선방안

- 복합운송주선업 휴·폐지시 신고제를 통보제로 전환

다. 시행시기

- 화물유통촉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0년말 시행 예정

6) 국제항공노선의 운임신고시 산출기준 제출의무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정기운송사업자의 국제항공노선 운임(요금) 인가 또는 신고시 그 운임(요금)내역 및 산출근거 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경영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음

나. 개선방안

- 신고시 운임(요금) 산출근거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폐지

다. 시행시기

-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99. 12. 17일부터 시행

7) 일반·전문건설업자의 겸업 및 영업범위제한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제한하고,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한정된 영업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생산활동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음

나. 개선방안

- 일반·전문건설업자의 겸업 및 영업범위제한제도를 폐지하되, 현재 업역중심으로 되어 있는 건설업의 분류체계 개편 및 기존 건설사업 관리제도의 활성화방안 검토

다. 시행시기

-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2002년부터 시행 예정

2. 사업진입규제 완화

1) 중개법인의 업역제한을 완화하여 임대료수납, 부동산개발 허용

가. 현황 및 문제점

- 중개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개업 외에 다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중개법인이 다른 자격자를 보유하는 등 능력을 갖추더라도 종합서비스업으로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나. 개선방안

- 중개법인의 겸업제한을 폐지하여 중개법인의 업무범위를 확대
 - 중개법인의 업무범위
 - 중개업
 - 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
 -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 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

다. 시행시기

-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하여 2000. 7. 1일부터 시행 예정

2)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가능한 주택공급 호수를 5호 이상에서 2호 이상으로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5호 이상의 주택을 가져야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소규모 여유자금을 가진 경우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기가 곤란함

나. 개선방안

-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기준을 현행 5호에서 2호로 완화

다. 시행시기

- 임대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1999. 11. 12일부터 시행

3) 부동산중개인의 영업구역(시·군·구)제한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중개인의 업무범위는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는 전국으로 하여 중개인과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를 구별하고 있음(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한 경우에는 예외)

나. 개선방안

- 중개인의 업무범위를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으로 확대

다. 시행시기

-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하여 2000. 7. 1일부터 시행 예정

4)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요건 중 차고의 일부를 주차장으로도 확보 가능토록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요건 중 차고는 자기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로 터미널의 주차장,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 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받은 경우에만 인정하여 운송사업자의 진입규제 및 부담가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나. 개선방안

-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고지로 인정

다. 시행시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99. 12. 16일부터 시행

5) 조경공사업(일반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전문건설업)의 등록 기준 중 토지보유의무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 및 장비'로서 수목 재배용 토지 5만 m^2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지나친 진입규제로 작용

나. 개선방안

-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장비기준을 폐지
 - 동 개선방안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 폐지와 연계하여 추진

다. 시행시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1년부터 시행 예정

- 6) 지구 내 일반토지 보유와 지구내 주민 중 일정비율의 동의를 조건으로 토지수용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용도지역의 과도한 변경제한 및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정비하여 택지개발사업 민간개방 허용

가. 현황 및 문제점

- 택지개발사업시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민관 합동법인
- 택지개발사업 대행 : 공공시행자의 택지개발사업 일부를 민간기업이 대행할 수 있음

나. 개선방안

-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하고, 토지수용권 · 토지용도지역변경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민간에게도 택지개발사업 시행 개방 추진(2000년 도입추진)

다. 시행시기

-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하여 2003년부터 시행 예정

3. 중복규제의 간소화

- 1) 광산보안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광산구내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의한 검사를 면제

가. 현황 및 문제점

- 광산구내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광산보안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중복적인 검사가 이루어짐

나. 개선방안

- 광산구내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로서 광산보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를 면제토록 함

다. 시행시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99. 10. 19일부터 시행

4. 규제내용의 구체화·객관화로 규제의 투명성 제고

1)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시 '허가대상·허가기준·허가절차'를 구체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허가대상·허가기준·허가절차를 구체화하고 객관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방안

-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도시계획법에 허가대상·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허가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지방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시행하도록 함

다. 시행시기

-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2000. 7. 1일부터 시행 예정

2) 공원 및 녹지관리청이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취소·효력정지·사업정지 등 처분시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도시공원법상 공원 및 녹지관리청이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취소·효력정지·사업정지 등 처분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또는 공익에 대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관리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나. 개선방안

-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시행시기

- 도시공원법을 개정하여 2000년 하반기에 시행 예정

3) 건설기술관리법상 '신기술지정요건' 구체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기술관리법상 기술개발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하는 신기술 지정요건의 내용이 기술의 신규성·유일성, 진보성, 보급성 등 추상적인 용어로 되어 있어 신기술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혼란을 주고 있음

나. 개선방안

- 신기술지정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

다. 시행시기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건설교통부 고시)을 제정·고시하여 1999. 12. 10일부터 시행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관리주체 등에게 혼란의 소지가 있음

나. 개선방안

-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중대한 결함의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예 : 시설물기초의 세굴 및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등

다. 시행시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1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5. 국민의 일상생활상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으로 생활편의 증대

- 1)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내에서 타자치구로 퇴거하는 경우에도 양도 및 전대사유로 인정

가. 현황 및 문제점

- 특별시 및 광역시내에서 근무·생업상 타 자치구로 이주하는 경우에 임대주택의 양도·전대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임차인들의 불편 초래

나. 개선방안

-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내의 타 자치구로 근무, 생업 등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양도·전대가 가능하도록 함

다. 시행시기

-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0년 상반기 시행 예정

- 2) 토지거래허가기준의 합리적 조정 및 개발·이용착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가. 현황 및 문제점

- 토지거래 허가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토지이용계획서상의 개발·이용계획 착수기간이 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정되어 있어 피허가자에 대한 제한이 과도

나. 개선방안

-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발·이용계획상의 착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다. 시행시기

- 토지거래 허가기준 조정 :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1999. 2. 8일부터 시행
- 개발·이용계획상의 착수기간 연장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99. 3. 18일부터 시행

3)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자동차 주소변경 신고를 갈음토록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기재토록 하는 것은 자동차의 차적관리를 원활히 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것으로서
- 주소가 변경되어 전입신고시 신고서 양식에 자동차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 변경등록신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 전입신고서 제출시 관련법규나 처리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소유자동차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함으로써 자동차 변경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많음

나. 개선방안

- 자동차관리전산망과 기존의 주민전산망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별도의 변경등록신청 없이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함

다. 시행시기

-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하여 2001년부터 시행 예정

4)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시 1월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통보토록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정해진 기간내에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고 30만원 범위내에서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 경과기간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30만원
- 현재는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사전에 교부하고, 검사대행자(교통안전공단)가 검사일을 미리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으나, 검사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자동차가 운행되고 누진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많음

나.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검사 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파악,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제도 도입
 - 장기간 자동차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의 운행 방지로 안전운행 확보
 - 누적되는 과태료 부담 감소(경과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 과태료 2만원)

다. 시행시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99. 12. 31일부터 시행

5) 접도구역내 사유재산권 행사제한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도로예정지의 경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밖으로 고속도로는 25m(경부·중부선의 경우는 30m), 일반국도·지방도·군도 등은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죽목의 재식이나 벌채,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일부 허가를 받거나 법령으로 규정된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음

나. 개선방안

- 죽목의 재식이나 벌채행위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고, 그 동안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했던

15㎡ 미만의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이전 및 주차장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도 가능토록 완화

- 장기 미집행 등 도로개설이 불투명한 도로 예정지에 대하여 지정된 접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조치

다. 시행시기

- 축목의 재식·벌채 제한 폐지, 15㎡ 미만 건축물 증·개축, 이전 및 주차장 설치 :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999. 8. 9일부터 시행
- 도로개설계획이 불투명한 경우 등에 대한 접도구역 지정 해제 : 접도구역관리지침을 개정하여 1999. 9. 3일부터 시행

6) 건축신고제도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및 읍·면 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에 갈음하고 있음
- 건축허가신청시 설계도서를 반드시 건축사가 작성하여야 하고,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시간과 경비의 부담이 과중하고 빠른 시일 내 건축허가를 받고자 급행수수료 등 부조리 발생의 소지가 있음

나. 개선방안

- 단독주택의 신고대상을 330㎡로 확대
 - 건축사 설계의무는 존치

다. 시행시기

-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0. 7. 1일부터 시행 예정

· 신설·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1.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건설교통부는 1999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해 동안 신설규제 11건, 강화규제 18건, 내용심사 5건 등 총 34건에 대한 심사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청구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적절성 등 측면에서 심사한 결과, 신설규제 11건 중 6건(54.5%)과 강화규제 18건 중 5건(27.8%)에 대하여 이를 철회 또는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신설·강화규제 심사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신설·강화규제 심사 현황

(단위 : 건)

	계	신 설	강 화	내용심사
심사대상	34	11	18	5
철회	7	6	1	-
개선권고	8	-	4	4

2. 심사 및 조정내역

1) 지하수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

■ 지하수 개발·이용의 변경신고(안 제13조) ☞ 규제강화

- 지하수 개발·이용시 신고시설은 용도를 하위용도로 변경하거나 양수능력 증가가 없는 시설변경시 또는 이용중지시 이에 대한 아무런 행정절차가 없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므로
- 지하수 개발·이용의 용도변경(상위용도에서 하위용도로의 변경 포함), 양수능력의 증감에 관계없이 시설변경 및 지하수 개발·이용을 3월 이상 중지하는 경우 신고하도

록 의무화함

-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의 조사계획 통보의무(안 제12조 제1항) ☞ 규제강화
 -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이 영향조사를 할 때에는 대부분 토지를 굴착하게 되나 조사 후 굴착공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나 지하수 개발이 곤란한 경우에 굴착공을 그대로 방치하여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이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의 굴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굴착지점, 굴착관정의 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나. 심사결과

- 원안수용
 - 부적절한 지하수 관리로 인하여 지하수가 오염될 경우 그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대단히 높으므로
 - 지하수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갖추어 지하수 오염에 대한 사전적 예방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
- 원안수용
 -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의 영향조사를 위한 토지굴착시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지하수 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 지하수 영향조사를 위하여 토지굴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굴착의 사전적 억제 및 굴착공의 사후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으므로 타당

2) 측량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

- 측량기기 성능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설정(안 제4조의 2 및 제4조의 5) ☞ 규제강화
 - 검증되지 않은 측량기기를 사용하여 생산한 측량성과는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어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므로,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측량기기를 검사대상기기로 선정하고 이들 장비에 대하여는 정확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성능검사를 의무화함에 따라(측량법 제6조의 2)
 - 19종의 측량업종별 등록기기 중 대다수 업종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본기기인

트랜짓(데오드라이트), 레벨, 거리측정기, 토털스테이션, GPS수신기 등 5종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성능검사 주기를 2년으로 정함

■ 성능검사대행자 지정(안 제4조의 6) ☞ 규제강화

- 측량법 제6조의 3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하여금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성능검사의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술인력 등의 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지정신청시 제출서류 및 검사대행자 지정요건으로서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기준을 정함

나. 심사결과

■ 원안수용

- 측량기기는 높은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기기로서 운반 또는 사용 중의 충격과 부품의 마모 및 노후화 등의 원인으로 정밀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 대다수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본기기인 트랜짓(데오드라이트), 레벨, 거리측정기, 토털스테이션, GPS 수신기 등 5종을 2년 주기의 성능검사 대상기기로 선정하는 것은 타당

■ 개선권고

- 지정요건의 기술인력 중 “특급기술자 또는 정밀측정기사 1급으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정밀측정기사 2급으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자”는 과도한 기준이므로 이를 삭제토록 권고함

3)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안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

■ 전동식 창유리 기준(안 제34조) ☞ 규제강화

- 창유리를 윈터치 전동식으로 한 경우 어린이 등의 오조작으로 인해 유리틈에 손가락이나 목 등이 끼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승용자동차와 총중량 4.5톤 이하 승합자동차의 창유리를 윈터치 방식의 전동으로 할 경우에는 오동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물질 감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함

■ 방전식 전조등 채용시 광축조절장치 설치의무화(안 제35조) ☞ 규제강화

- 기존 램프 외에 방전식 램프가 새로 개발되어 유럽 및 일본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전조등으로서 기존 램프 외에 방전식 램프(High Intensity Discharge Lamp)를 추가하되 방전식 램프의 경우 고광도인 점을 감안하여 광축을 수동 또는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함

나. 심사결과

■ 원안수용

- 전동식 창유리 중 윈터치식인 경우에는 스위치에서 손을 떼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작동하게 되므로 어린이 등이 창 밖으로 머리카락 등을 내민 상태에서 스위치를 잘못 작동시키게 되면 질식 등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므로, 윈터치식 전동식 창유리의 경우에는 이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므로 타당
- 최근 미국·유럽 등지에서는 신규개발된 고광도 방전식 램프(High Intensity Discharge Lamp)를 추가로 채택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신기술을 반영하여 자동차 전조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 다만, 방전식 램프는 기존의 필라멘트 또는 할로겐 램프에 비해 약 2배의 광도를 가지고 있어 광축이 상향인 상태로 주행하면 대향차 운전자의 눈부심을 초래하여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 고광도 방전식 램프를 채택할 경우에는 전조등의 광축방향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하향 조정토록 하는 조절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것이므로 타당

4) 건축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

- 주거·상업지역 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설치 제한(안 제65조 제1항) ☞ 규제강화
 - 가스사고는 안전시설 미비 등에도 일부 원인이 있지만, 대부분 사업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과 취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하지만, 교육과 홍보 등으로는 취급자의 순간적인 실수나 부주의까지도 완벽하게 방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 가스폭발 사고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구밀집 지역인 주거·상업지역 안에서 가스충전소 등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나. 심사결과

■ 원안수용

- 주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

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안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

■ 주택단지 진입도로 확보기준(안 제25조 제4항) ☞ 규제강화

- 기존의 주택단지 주변에 추가로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등 하나의 진입도로를 둘 이상의 단지가 이용할 경우, 진입도로 폭 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적정 도로폭이 확보되지 않아 단지내·외 주민들의 불편 및 분쟁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가 둘 이상으로서 당해 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 폭은 사업계획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교통량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세대수로 보아 진입도로 폭을 확보토록 함

나. 심사결과

■ 개선권고

- 행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 의한 주관적인 판단 부분인 “사업계획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교통량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를 삭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토록 개선권고

6)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안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

■ 건축물에 설치하는 회전문의 설치기준(안 제25조) ☞ 규제강화

- 건축물에 설치되는 회전문은 에너지 절감 및 방음효과 등에서 일반문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 및 품질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작·설치의 불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회전문에 대한 최소안전기준을 정함
- 회전문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 m 이상 거리에 설치하여야 하고, 사람이나 물건 등이 끼지 않는 기밀성의 구조로 하여야 하며, 출입하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회전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함

나. 심사결과

■ 원안수용

-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회전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전문의 안전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는 국민의 생활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고 건축주의 자율적인 고려와 선택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부문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보호원의 '회전문안전실태조사(1998. 6)'에 의하면 국내 회전문 제작업체들은 미국의 NFPA(미국소방협회)의 규정에 따르고 있으므로 기준신설에 따른 기술적인 애로는 없을 것으로 예상

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

■ 주택건설 등 사업자의 출자비율 제한(안 제6조의 2) ☞ 규제신설

-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민관합동법인이 추가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주공·토공이 주택건설 등 사업자와 합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 민간부문의 출자비율을 공공택지개발의 취지를 살려 50% 미만으로 제한

나. 심사결과

■ 원안수용

-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방식은 공공사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을

전제로 공익을 위하여 사권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으며, 민간개발자의 경우 거쳐야 하는 승인절차가 생략 혹은 의제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출자비율을 100분의 50미만으로 제한하여 사업주체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은 타당

8)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

- 택지개발사업 준공시 성토재 사용실적 확인(안 제6조의 2) ☞ 규제신설
 - 택지개발사업에서 불법폐기물 매립 방지를 위하여 준공검사신청서에 성토재사용실적을 첨부하도록 함
- 택지의 공급방법에 대한 기준설정(안 제7조) ☞ 규제신설
 - 수도권지역에서도 택지개발지구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 일정규모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토록 하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의 문제점과 소규모 필지의 경우 공공시설면적 등을 감안하여 협의양도한 토지면적의 기준을 1,000㎡ 이상인 경우로 정함

나. 심사결과

- 철회권고
 -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4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및 제2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서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장부비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서 개발사업 준공시 성토재 사용실적 확인서를 다시 첨부토록 하는 것은 이중규제로서 부당하며, 폐기물 불법매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령 등에 근거하여 사후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원안수용
 -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한 공공택지개발의 경우 중산층 및 서민을 위한 공동주택용지 확보를 우선하고 있어 일정비율의 공동주택의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협의양도대상 토지의 최소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토지소유 규모를 고려하여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시가로 보상하는 방안 포함) 강구 필요

9) 공동주택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중 개정고시안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

-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강화(안 제4조 제4호, 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 부칙 제4조) ☞ 규제강화
 - 공동주택의 온수온돌 바닥 단열재는 슬래브와 온돌 사이에 설치하여야 함
 - 공동주택, 숙박시설, 목욕장·수영장, 병원, 판매시설, 사무소, 관람집회시설, 학교건축물 등에는 고효율 조명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에는 역류개선용 콘덴서 및 에너지절약형 저손실형 변압기를 설치하는 등 고효율 기자재를 설치하여야 함

나. 심사결과

- 원안수용
 - 에너지절약정책 추진노력의 일환으로 전열기기 등의 기준을 강화·보완하고 기준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취지는 타당하며, 규제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설계를 통한 에너지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강제적인 수단의 적용보다는 다양한 유인책의 마련과 소비자들에게 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 할 것이나,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과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에너지 절약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규제강화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

1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안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

- 공동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안 제22조) ☞ 규제강화
 -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설계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건축허가 신청시 그 준수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심사결과

- 원안수용

- 강제적인 규제의 적용보다는 다양한 유인책의 마련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나, 단기적으로 에너지 절약의 절박성에 따라 규제대상 확대를 통한 규제강화는 타당

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

-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위원 중 조합원 축소와 외부전문가 확대 및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52조 제1항 및 제2항) ☞ 규제강화
 - 공제조합이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공익성보다는 조합원 이익이 우선 고려되어 부실의 우려가 있고, 공제조합이 부실화되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인 발주자의 피해가 확산되어 외부전문가에 의한 통제제도가 필요하므로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중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 위원 7인을 4인으로 하고,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위원 1인을 4인으로 조정하며
 -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부도·정리절차 또는 화의개시 결정을 받고 그 사유 종료 후 2년 미경과자를 추가함
- 건설공사 실적이 일정 금액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79조) ☞ 규제강화
 - 명목상의 회사난립에 따른 수주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고 부실한 업체를 정비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실적이 일정금액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제재를 하여 왔으나, 실적금액이 1989년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현실에 맞게 이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은 2억 5천만원에서 4억원, 조경공사업은 4억원, 토목건축공사업은 6억원에서 10억원, 산업설비공사업은 10억원,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3종 제외)은 5천만원에서 1억원, 가스시설시공업(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제2종·제3종)은 5천만원으로 조정

나. 심사결과

- 원안수용
 - 건설공제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판으로서 선택한 정책수단이며 사회적 공익과 조합의 사적이익의 조화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 철회권고

-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이나 부실 건설업체 강제 퇴출 수단을 시장이 아닌 정부에서 행사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의 기본취지와 맞지 않음

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

■ 여객자동차서비스관리사업의 등록(안 제14조의 2 제1항 및 제2항) ☞ 규제신설

- 승차거부, 부당요금 요구, 과속·난폭운전 등 택시의 만성적인 서비스 부재를 탈피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택시업계의 서비스 경쟁체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나
- 현재의 택시업계의 규모와 택시운행 및 이용형태로서는 서비스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곤란하므로 서비스 경쟁체제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여객자동차서비스관리사업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나. 심사결과

■ 철회권고

- 여객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제를 철회하고 정부재정지원의 사전절차로서 신청제도로 전환하여 비규제적인 수단을 취하는 것으로 개선권고(예 : “여객자동차서비스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

■ 경영부실업체의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 취소(안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 규제강화

- 서울시내버스 서비스 수준에 대해 많은 시민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나, 서울시내버스업계의 경영여건 악화로 서비스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

- 시민여론조사(1997. 3월 서울시) 결과 57%의 시민이 불만 제기

- 향후 교통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시내버스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부실업체는 퇴출시켜 경쟁력있는 업체 중심으로 시내버스업체를 재편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1년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을 취소하고자 함

나. 심사결과

■ 개선권고

- 경영부실업체에 대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 취소는 운수사업자의 M & A를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및 시민편의 제고를 지향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내용으로 수용하되
- 시행령안 별표 2의 위반내용 제57호 라목(빈번한 법령위반)은 불합리한 기준이므로 이를 삭제토록 하고, 시행령안 별표 2의 위반내용 제74호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는 “사업경영의 현저한 부실”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14)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

■ 중개보조원 명부 비치(안 제6조) ☞ 규제신설

-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자를 보조하는 자로서 중개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에게 등록을 대여하여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중개질서를 어지럽히고 중개사고를 야기하여 중개의뢰인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어
-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 그 인적사항과 고용기간 등 최소한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고예방과 사고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심사결과

■ 철회권고

- 중개보조원의 관리에 관하여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명부비치가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를 막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철회토록 권고

15) 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

- 하천유수사용자의 범위(시행규칙안 제12조 내지 제14조) ☞ 내용심사
 - 홍수기에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고 갈수기에 물공급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대처하기 위하여 하천유수의 저류량, 방류량, 취수량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 하천수의 저류량, 방류량 또는 유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유수사용량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유수사용자의 범위를 1일 5천m³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1일 1천m³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1일 8천m³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로 정하고
 - 하천유수사용자는 매월 25일까지 다음달 사용할 유수사용계획량을, 매주 화요일까지 지난 일주일간의 사용실적을 각각 관리청에 통지하도록 함
- 댐 등 설치자의 기록작성사항(시행규칙안 제16조) ☞ 내용심사
 - 댐 등의 설치자는 당해 댐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계획·설계·시공에 관한 자료(시설개요, 설계도, 지질도 및 각 계산서)와 건설 후 자료(안전진단기록, 보수내역, 수문기상자료, 수질자료, 퇴사·퇴적현황, 점·사용현황)를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
-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시행령안 제32조, 시행규칙안 제22조) ☞ 내용심사
 -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토록 하며
 - 인가신청서에는 위치도, 실시설계도서,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예정공정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함
- 하천점용허가 등의 기준(시행규칙안 제28조) ☞ 규제강화
 - 하천변에서의 무분별한 행위남발로 하천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수의 근원인 하천수의 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 하천에서 점용허가 등의 제한행위에 독성이 강한 농약·비료를 사용하는 행위, 체육시설,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을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로 설치하는 행위, 평형하상고 이하로 골재를 채취하는 행위,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의 설치행위 등을 추가하여 동 행위에 대하여는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점용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심사결과

■ 개선권고

- 하천유수사용자의 주간실적보고는 과도한 기준이므로 이를 월간실적보고로 전환토록 개선권고(예시 : 하천유수사용자는 매월 5일 전월의 사용실적과 금월의 계획을 보고)

■ 원안수용

- 댐 등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기록·보관이 요구되는 필요최소한의 자료로 판단

■ 개선권고

- 실시계획 인가신청 전 “3월 이내”를 “6월 이내”로 연장토록 개선권고

■ 개선권고

- 추가되는 제한행위 중 “평형하상고 이하로 골재를 채취하는 행위”를 “평형하상고 이하로 골재를 채취하는 행위 등 하천 및 하천의 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하여 현행 제한행위 규정에 통합

16)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

■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범위 등(안 제22조의 6) ㉠ 내용심사

-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책임감리원)의 자격기준을 1천세대 미만은 고급감리원 이상, 1천세대 이상은 특급감리원으로 설정하고, 책임감리원 이외에 공사 공종별로 감리원을 1인 이상 배치토록 하며
- 주택건설공사 중 도배·조경·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1999. 2. 8)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총 75개 공종 가운데 토목분야(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시설물공사, 부대시설공사), 건축분야(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미장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수장공사, 주방용구공사, 기타(잡)공사), 기계설비분야(위생기구공사) 등 18개 공종을 감리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공사로 설정

나. 심사결과

■ 개선권고

- 책임감리원 이외에 공사 공종별로 감리원을 1인 이상 배치토록 하는 규정은 주택건설 촉진법시행규칙 제22조의 5 제2항 “감리자는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사업주체와 협의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의 내용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감리원은 공사의 성질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함이 바람직하므로 감리원 배치기준은 “공종에 따라 필요한 감리자”를 배치토록 명확화
- 감리자 배치기준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서 토목분야 중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시설물공사 건축분야 중 미장공사, 금속공사, 수장공사 등 5개 공종은 제외토록 개선권고

17)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

■ 과징금의 부과(안 제131조 제1항) → 규제강화

- 현행 항공법에서는 항공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선임·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징금 부과 최고한도가 사업정지 등에 따른 수익감소에 비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사고 항공사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징금 한도를 100억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나. 심사결과

■ 원안수용

- 사고 항공사에 대한 원칙적 제재방법은 사업정지이나 항공기 운항정지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대체수단으로 과징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 항공사가 사고노선에 대한 운항을 계속할 경우에는 사업정지에 의하여 초래될 수 있는 손실만큼을 과징금으로 납부함이 타당하며, 현재 서울-동경 노선의 6개월간 운항이익이 160억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과징금 한도를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타당

1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

■ 자동차공제사업자에 대한 처분(안 제36조의 2, 제50조 제1항) ☞ 규제신설

- 운수사업의 진흥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그 동안에는 자동차공제조합의 자율적 경영을 최대한 보장하여 왔으나, 공제조합의 규모확대 및 경영상태 안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 보상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처벌조항 신설을 통한 정부의 지도·감독기능 강화가 불가피하므로
- 건설교통부 장관은 공제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제사업의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제사업자에게 임직원 등의 해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분쟁조정위원회 설립과 위원회 운영 및 분쟁조정을 위한 분담의무(안 제36조의 3) ☞ 규제신설

- 일반보험회사 가입차량에 대한 사고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공제에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피해자는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의할 수밖에 없으나
-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부담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의료·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객관적 심의기구를 구성하고
-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버스·택시·개인택시·전세버스·화물 등 5개 공제조합에서 분담토록 함

나. 심사결과

■ 철회권고

- 포괄적인 근거로서 공제사업의 인가취소 및 공제사업 임직원 해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의 기본방향과 상치되는 것으로 철회토록 권고

■ 원안수용

- 교통사고 피해자의 구제 및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분쟁조정기구 설립·운영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

19) 부동산중개업법 중 개정법률안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

■ 중개계약서 작성의무(안 제15조의 2 및 제23조 제11호) 규제신설

- 현재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인에게 구두로 중개를 의뢰함에 따라 중개의뢰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중개업자가 사후에 수수료를 과다 요구하거나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 중개업자와 중개인간에 중개대상물의 위치, 규모 및 거래예정가격 등 중개의뢰 내용과 중개수수료, 중개업자 및 중개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케 함으로써
- 부당수수료 징수를 근절하고 문제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공정한 중개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나. 심사결과

■ 철회권고

- 거래관행과 상이한 제도 도입은 실효성이 문제되므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은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하여 6월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한다”를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로 개선하여 규제적 성격을 배제토록 철회권고함

2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

■ 자동차공제사업자에 대한 처분(안 제65조의 2) ☞ 규제신설

- 운수사업의 진흥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그 동안에는 자동차공제조합의 자율적 경영을 최대한 보장하여 왔으나, 공제조합의 규모확대 및 경영상태 안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 보상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처벌조항 신설을 통한 정부의 지도·감독 기능강화가 불가피
- 건설교통부 장관은 공제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제사업의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제사업자에게 임직원 등의 해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분쟁조정위원회 설립과 위원회 운영 및 분쟁조정을 위한 분담의무(안 제65조의 3 내지 제65조의 9) ☞ 규제신설

- 일반보험회사 가입차량에 대한 사고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공제에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피해자는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의할 수밖에 없으나
-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부담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의료·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객관적 심의기구를 구성하고
-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버스·택시·개인택시·전세버스·화물 등 5개 공제조합에서 분담토록 함

■ 운수사업의 면허취소·과태료 처분(안 제76조, 제78조 및 제85조) ☞ 규제강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반시의 처벌내용이 미약하기 때문으로 전액관리제의 도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처벌강화가 필요하므로
- 운수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년 이내에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때 운수사업자의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년 이내에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때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나. 심사결과

■ 철회권고

- 공제조합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내용으로 규제신설의 타당성이 없음

■ 원안수용

- 교통사고 피해자의 구제 및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분쟁조정기구를 설립·운영케 함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

■ 원안수용

- 전액관리제 실효성 제고 위해 처벌강화안을 수용하되, 영업활동에 대한 공공부문의 간섭을 줄이는 방안으로 개인택시 공급확대, 택시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및 교육제도 보완, 첨단택시미터기 개발 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가 검토 추진

21)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안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

■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 및 도시철도차량 성능시험기준(안 전문) ㉠ 내용심사

- 종전에는 제작자가 자체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제3자가 감리·감독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수요의 증대 및 운영기관의 다양화에 따라 일관된 기준에 의한 성능시험 필요성 증대
- 이에 따라 1995. 12. 29일 도시철도법을 개정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에 의한 성능시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세부기준과 방법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도시철도법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과 성능시험기준을 마련

나. 심사결과

■ 개선권고

- 도시철도차량의 안전성은 이용 국민의 안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안으로 이를 수용하되, 안전기준과 성능시험기준 간의 중복성 제거, 성능검사 대행기관 지정지 경쟁원리 적용(2개 기관 이상 지정), 안전기준 중 가능한 부분을 구체화·명확화하는 방안을

22)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

-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안 제14조 제1항) ☞ 규제강화
 - 준농림지역의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한 개발행위인 공동주택 및 공장시설은 동일한 목적의 개발이 아니더라도 각각의 목적으로 개발된 부지의 합산 면적이 3만 m^2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발을 제한토록 하되
 - 일정 규모 이상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동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3만 m^2 이상의 개발이나 연접개발 행위를 허용하여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
-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안 제17조 제1항) ☞ 규제강화
 - 개발용도의 준농림지역에서는 음식점·숙박업소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음에도,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어 용도지역의 위계상 모순되므로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도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음식점·숙박업소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토의 친환경적인 보전을 도모

나. 심사결과

- 원안수용
 - 1994년 이후 국토면적의 27%를 점하는 준농림지역에서 3만 m^2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가 허용되면서 난개발에 따른 국토의 오염 및 경관파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용적률 강화(400 → 100%),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금지, 조례에 의하지 않는 음식·숙박업소의 설치 금지, 동일목적의 3만 m^2 이상 연접개발행위 금지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 온 바 있으나, 대증요법적인 토지이용규제의 강화·완화 반복은 국토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 궁극적으로 개발할 토지와 보전할 토지를 구분한 뒤 개발할 토지에 대해서는 “계획적

개발”을 도모함이 필요하다고 보아, 준농림지역에 대한 시장·군수의 개발계획제도 도입은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됨

■ 원안수용

-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자연경관·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명승·천연기념물·문화재 보호구역 등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의 보호구역을 포괄하는 구역이므로
-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경관이나 수자원,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장,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설치에 이를 엄격히 제한함이 타당

. 누락규제 등록

1. 등록누락규제 정비 추진명위

가. 일제정비

- 1998. 8. 31일 기준 건설교통부소관 규제사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규제총수는 917건으로 조사됨
 - 총 917건의 규제 가운데 1998. 8. 31일 이전 폐지된 17건을 제외한 900건을 기존규제로 등록
- 1999. 4. 21~4. 24일 기간 중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건설교통부에 대한 규제개혁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90건의 등록 누락된 규제사무 지적
- 1999. 5. 7일 누락된 규제사무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폐지를 원칙으로 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토록 조치(국무총리 지시 1999-10호)
- 건설교통부에서는 지적된 등록누락규제 190건 중 기등록된 규제 12건, 비규제사무 10건을 제외한 등록누락 규제 168건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1999. 6. 7)

나. 수시정비

-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에서 누락된 규제사무에 대하여 부처의 요청에 따라 이를 심사한 후 등록토록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 자체정비

- 부처 자체적으로 누락된 규제사무를 발굴하여 등록 조치

2. 등록 누락규제에 대한 심사

가. 일제정비

- 건설교통부는 등록에서 누락된 것으로 지적된 190건 중 기등록된 규제와 규제사무가 아닌 것을 제외한 실제 누락규제 168건에 대하여 정비계획 제출
-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를 전문가심사소위원회에 부의하였고 건설·교통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소위는 제1차(1999. 6. 22) 회의를 개최하여 규제사항이 아닌 15건 및 기폐지된 규제 26건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38건을 재분류하여 1건으로 통합하는 등 등록누락규제 총수를 99건으로 조정하고, 이 중 30건(30.3%)을 폐지하고 24건(24.2%)을 개선기로 하는 내용의 심사안을 확정하고 이를 분과위원회에 상정
-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제47차(1999. 6. 16) 및 제49차(1999. 6. 30)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소위원을 심사한 결과 등록 누락규제 99건 중 30건(30.3%)을 폐지하고, 23건(23.2%)을 개선기로 하는 내용의 분과위안에 합의하여 이를 위원회에 상정
- 규제개혁위원회는 제37차(1999. 8. 27) 회의시 등록 누락규제에 대한 분과위의 정비계획안을 심의하고 등록 누락규제 99건 중 30건을 폐지하고, 23건을 개선기로 확정하고 등록 누락규제 99건을 추가로 등록기로 의결

건설교통부 등록 누락규제 일제정비 결과

구 분	누락규제 총 수	폐 지			개 선	존 치
		계	기폐지	향후폐지		
건교부안	168 (100%)	67 (40%)	26	41	16 (9%)	85 (51%)
위 원 회 의결결과	99 ¹⁾ (100%)	30 (30.3%)	(26)	30	23 (23.2%)	46 (46.5%)

* 주 1) 기폐지(26건), 규제사무 아님(15건), 규제 재분류(37건) 제외

나. 수시정비

- 규제개혁위원회는 건설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등록에서 누락된 규제사무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이에 대한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등록토록 조치

건설교통부 등록 누락규제 수시정비 결과

구 분	누락규제 총 수	폐 지			개 선	존 치
		계	기폐지	향후폐지		
건교부안	1	-	-	-	-	1
위 원 회 의결결과	1	-	-	-	-	1

다. 중앙행정기관 자체정비

- 건설교통부 및 철도청은 자체적으로 소관 행정규제사무 중 등록에서 누락된 규제사무를 발굴하여 이를 등록

건설교통부 및 철도청 등록 누락규제 자체정비 결과

구 분	누락규제 총 수	폐 지			개 선	존 치
		계	기폐지	향후폐지		
건교부	6	-	-	-	-	6
철도청	2	-	-	-	-	2

등록 누락규제 일제정비 내역

규제사무명	규 제 내 용	위원회 심사결과
건설산업기본법		
1.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13조)	파산자·금치산자, 면허취소 후 5년 미경과자,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형집행 만료 후 5년 미경과자 등	개선 (2000년) - 결격사유 기간단축 및 국가보안법·형법 등 에 의한 결격사유 삭제
2.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 (법 제21조)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	존치
3.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법 제22조,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21조)	-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서면에 의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존치
4.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법 제24조 제2항)	-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 관계기관 등에 건설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건설업자 등은 이에 응해야 함	개선 (2000년) - 제출대상 구체화 - 후단 삭제
5. 건설업자간의 협력 (법 제48조, 시행령 제40조 내지 제44 조)	건설교통부 장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하도급,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음	개선 (2000년) - 협력업자 등록제도 삭제
6. 공제규정의 인가 (법 제57조)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폐지 (2001.7)
7. 공제조합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 등 (법 제65조)	건설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폐지 (2000년)
해외건설촉진법		
8. 대리시공 (법 제33조, 시행령	건설교통부 장관은 해외건설업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대외적인 공신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	폐지 (2000년)

규제사무명	규 제 내 용	위원회 심사결과
제33조)	른 해외건설업자에게 당해공사를 대리시공하게 할 수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9. 건설기계 등록번호 표의 반납 (법 제9조)	•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사항 중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시·도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여야 함	존치 - 무등록 건설기계의 불법운행으로 인한 피해 방지
10. 구조 및 성능 등의 기준 (법 제12,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6)	• 건설기계의 제작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함	개선 (1999년) - 안전기준으로 전환
11. 검사대행 등 (법 제14조)	• 건설교통부 장관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하여 건설기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함	존치 - 1998년 핵심과제와 연관
12. 건설기계검사증 등의 비치 (법 제15조)	•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에 항상 비치하여야 함	폐지 (2000년) -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서 확인
13. 제작 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 관리(법 제20조)	• 건설기계를 제작한 자는 그 건설기계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과 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 또는 교육자료 제공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폐지 (2001년)
14. 건설기계매매업자의 고지의무 (법 제25조)	• 건설기계매매업자는 중고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알선시 당해 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을 매수인에게 정확히 미리 알려주어야 함	폐지 (2000년) - 매매업자와 소비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
15.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 의무 (법 제30조)	• 건설기계조종사는 주소지 등 건교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폐지 (2000년) - 주민등록전산망과 통합관리
16. 건설기계소유자 등의 보고·검사 등(법 제35조)	• 건교부 장관 등은 건설기계의 소유자, 검사대행자, 제작자, 건설기계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개선 (2000년) - 소유자, 검사대행자, 제작자 삭제

규제사무명	규 제 내 용	위원회 심사결과
	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건설기계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음	- 보고·검사내용 구체화 - 조사·검사 실명제 도입
골재채취법		
17. 등록명의대여의 금지등 (법 제18조)	• 골재채취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케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함	존치
18. 골재채취업자의 지도·감독 (법 제21조)	•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장비와 골재채취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수 있음	개선 (1999년) - 보고내용 구체화 - 조사·검사 실명제 도입
건설기술관리법		
19. 감리원의 관리 (법 제28조의 2)	• 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책임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	존치 - 부적격 감리원을 배제 함으로써 감리업무의 질서유지
20. 감리원의 결격 사유 (법 제28조의 3)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등 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감리원이 될 수 없음	개선 (2000년) - 결격사유 중 “국가기술 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및 “국가보안법·형법상 결격사유” 삭제
21. 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법 제29조)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등 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없음	- 결격사유 중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국가보안법·형법상 결격사유” 삭제

규제사무명	규 제 내 용	위원회 심사결과
22. 건설업자에 대한 시정 명령 (법 제36조의 17)	• 건설교통부 장관은 건설업자 등이 보고의무, 품질시험·검사·안전점검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	존치 - 부실공사 방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3. 안전진단전문기 관의 결격사유 (법 제9조의 2)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지정취소 후 2년 미경과자, 동법위반으로 형집행 후 2년 미만자, 임원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존치 - 공중의 안전확보 및 진단의 책임·신뢰성 확보
24. 명의대여의 금 지 등 (법 제9조의 3)	•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	존치
25. 안전진단전문기 관에 대한 지도· 감독 (법 제9조의 6)	•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을 기재한 장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며, • 건설교통부 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안전진단 실시현황 등 업무현황을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개선 (2000년) - 장부비치 의무 삭제 - 보고내용 구체화 - 조사·검사 실명제 도입
26. 안전진단전문기 관에 대한 시정 명령 (법 제9조의 7)	• 건설교통부 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점검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음	존치 - 공중의 안전도모 및 부실진단 방지
27.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법 제31조)	•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아닌 자는 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폐지 (2000년) - 과도한 규제
주택건설촉진법		
28.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법 제32조의 3)	•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당해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저당권의 설정을 제한함	존치 - 주택사업자 부도발생 시 주택을 공급받은 자 보호
29. 사용검사 등 (법 제33조의 2)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사용검사를 받도록 함	존치 - 입주민의 생명보호

규제사무명	규 제 내 용	위원회 심사결과
30. 주택의 설계 및 시공 (법 제33조의 5)	• 주택의 설계자는 설계도서(설계도,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품질관리계획서 등)를 작성하고 설계도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재료·공사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주택을 시공하는 자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함	존치 - 주택의 부실공사 방지
3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39의 7)	• 건설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임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개선 (2000년) - 보고내용 구체화
32.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법 제46조)	• 등록업자·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사 등은 타인에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주택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할 수 없음	존치 - 주택건설사업의 신뢰성 확보
33. 공급질서 교란 금지 (법 제47조)	•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이의 알선 금지 및 사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됨	존치 - 주택공급질서를 유지하여 실수요자 보호
34. 협회의 설립인 가 등 (법 제47조의 4)	• 협회설립시 협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작성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존치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단체의 설립근거 확보
35. 각 협회 및 조합 의 지도·감독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 10)	• 각 협회와 조합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음	존치
36. 보고·검사 등 (법 제49조)	•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개선 (2000년) - 보고내용 구체화 - 조사·검사 실명제 도입
임대주택법		
37. 임대사업자의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기준 미달시, 임대사	존치

규제사무명	규 제 내 용	위원회 심사결과
등록말소 (법 제11조)	업자의 매각제한 및 임대조건 위반시 등록말소	- 임차인 보호 및 국민 주택기금지원 및 각종 세제혜택에 대한 정당 성과 형평성 확보
38.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법 제14조)	•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 선정방법 · 임대보증 금 ·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함	존치 - 무주택 저소득 임차인 의 주거생활 안정도모
39. 우선매각 (법 제15조)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시 일정기간의 무주택세대주 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기준 설정	존치 - 무주택 저소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
40. 임대조건의 신고 (법 제16조)	• 임대보증금 · 임대료 및 임대차계약기간 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함	개선 (2000년) - 공적자금이 지원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41. 임대주택의 관리 (법 제17조)	• 임대주택도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기준을 적용함	존치 - 공동주택 관리의 안전 및 효율성 확보
42. 특별수선충당금 의 적립 (법 제17조의 2)	• 건설임대주택 사업자는 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주요시 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 도록 함	존치 -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수선비 확보로 임대차 인간 분쟁 사전예방
43. 감독 · 시정명령 (법 제19조)	•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법령 및 명령위반시 시정명 령 등을 할 수 있음	존치
도시재개발법		
44. 조합의 법인격 등 (법 제13조)	•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登記하여야 성립하며, 조합 외의 자는 재개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 용할 수 없음	개선 (2000년) - 유사명칭 사용금지 삭제
45. 조합임원의 결격 사유 (법 제17조)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가 있 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음	존치 - 조합원의 이익도모를 위하여 조합임원 자격 규정

규제사무명	규 제 내 용	위원회 심사결과
46. 총회 및 결의사항 (법 제18조)	•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며, 정관의 변경,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 재개발사업 및 조합임원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존치 - 조합 투명성 확보
47. 분양신청 등 (법 제33조 제1항)	•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시행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하여야 함	존치 - 토지 등의 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개인의사를 존중
48. 등기절차 및 권리 변동의 제한 (법 제40조)	• 시행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함	존치 - 소유권 등기시 혼란 방지와 분양받을 자의 권리보호
49. 투기방지 대책 등 (법 제52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개발구역 안에서 투기과열이 우려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 신고내용을 시행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음	폐지 (2000년) - 과도한 규제
50. 공공시설의 설치 등 (법 제55조)	• 재개발구역 안의 공공시설은 시행자가 설치함	존치 - 불량 노후 도시환경 개선목적 수행
51. 관계서류의 보관 (법 제59조)	• 재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된 경우는 민간인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인계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존치 - 사후 분쟁발생시 증거보전
도시공원법		
52.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법 제6조의 2)	•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존치 - 공원이용자의 안전도모
53. 원상회복 (법 제9조)	• 도시공원을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함	존치 - 원인자부담에 의한 원상복구로 공공이익도모
건축사법		
54. 결격사유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	개선 (2000년)

규제사무명	규 제 내 용	위원회 심사결과
(법 제9조)	는 자는 건축사 면허를 받을 수 없음	- 국가보안법 · 형법 등의 사유 삭제
55. 면허증 등의 부당 행사 금지 (법 제10조)	• 건축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면허증, 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할 수 없음	존치 - 소비자 보호 및 행정질서 확립
56. 건축사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법 제12조)	• 건축사가 아닌 자는 건축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폐지 (2000년) - 과도한 규제
57. 건축사협회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법 제37조)	• 건축사협회가 아니면 건축사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폐지 (2000년) - 과도한 규제
58. 건축사협회의 설립의 인가 및 공고 (법 제38조)	• 건축사협회를 설립한 때에는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존치
59. 건축사협회에 대한 감독 (법 제38조의 2)	• 건설교통부 장관은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건축물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협회가 건축사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 조직과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음	개선 (2000년) - 위탁업무에 대한 감독에 한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60. 보고 및 검사 (법 제52조)	• 시 · 도지사 등은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개선 (2000년) - 공무원의 직접 검사 삭제 - 보고내용 구체화 - 조사 · 검사 실명제 도입
61. 이주대책 등 (법 제24조)	•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개발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인근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개선 (2000년) - 인근주민 우선고용의 무삭제
국토이용관리법		
62. 개발이익의 환수	•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여 토지가격이 정상지가 상승	존치

규제사무명	규 제 내 용	위원회 심사결과
조정 (국토이용관리법 제3조의 2)	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63.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법 제5조)	•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	개선 (2000년) - 핵심과제(준조세관련 규제개혁)로 처리
64.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자 (법 제6조)	•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구체적으로 정함	개선 (2000년) - 핵심과제(준조세관련 규제개혁)로 처리
부동산중개업법		
65. 중개업자의 결격사유 (법 제7조)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음	개선 (1999년) - 제4호 5년을 3년으로 단축
66. 금지행위 (법 제15조)	• 중개업자는 부동산매매업, 직거래, 부동산투기행위 등을 할 수 없음	존치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이익보호
67.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법 제17조)	• 중개업자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함	폐지 (1999년)
68. 감독관청의 지 도·감독상 명령 (법 제21조)	• 중개업자 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음	개선 (1999년) - 보고내용 구체화 - 조사·검사 실명제 도입
69. 장부의 비치 등 (법 제27조)	• 중개업자는 사무소에 계약서, 확인·설명서 사본, 영수증 사본 등 장부를 일정기간 비치하고 기장하여야 함	존치 - 67번과 통합하여 "중개업자는 계약서, 확인·설명서, 영수증의 원본을 중개의뢰인에

규제사무명	규 제 내 용	위원회 심사결과
		게 배부하고 사본을 비치하도록” 개선
70. 사무소의 명칭 표시 등 (법 제28조)	• 중개업자는 시행규칙 별표 1의 명칭을 사용하여 하고, 전단·명함·신문 등 간행물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의 허가번호와 중개업자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명기하여야 함	폐지 (1999년)
71. 정관 기재사항 등 (법 제32조)	• 중개업 협회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관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폐지 (1999년)
72. 협회의 임원 (법 제34조)	• 협회의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은 회장 1인을 포함 50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폐지 (1999년)
7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보고 (법 제35조)	• 중개업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결산보고도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폐지 (1999년)
74. 공제사업 (법 제35조의 2)	• 중개업협회는 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으며, 공제사업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내용, 공제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폐지 (1999년) - 전단 존치, 후단삭제하고 규제사무에서 제외
지하수법		
75. 허가의 취소 (법 제10조 제1항)	•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존치 - 지하수개발·이용질서 확립
76. 결격사유 (법 제23조)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은 지하수개발·이용업 등록을 금함	존치 - 부실시공 방지 및 거래 질서 확립
77.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의 명의대여의 금지 등 (법 제26조)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대여를 금지함	존치 - 부실시공 및 지하수 오염방지
78. 지하수영향조사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존치

규제사무명	규 제 내 용	위원회 심사결과
기관의 명의대여 금지 (법 제30조)	명칭을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대여를 금지함	- 지하수영향조사의 부실화 방지
79. 보고·검사 (법 제34조)	• 시·도지사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및 영향조사 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개선 (2000년) - 보고내용 구체화 - 조사·검사 실명제 도입
하천법		
80.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법 제42조)	• 하천공사, 하천의 보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존치 - 공사의 원활한 추진 및 하천보존
81. 보고 및 출입 등 (법 제72조)	• 하천관리청은 허가 또는 승인받은 자로부터 하천관리상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사항을 검사할 수 있음	개선 (2000년) - 보고내용 구체화 - 조사·검사 실명제 도입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82. 주택의 전매·전대제한 (법 제10조 제6항)	•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된 주택을 공급받은 지구내 주민은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전매·전대가 제한됨	존치 - 영세주민의 현지 정착 유도 및 투기방지
항공운송사업진흥법		
83. 항공보험의 가입의무 (법 제7조)	• 항공사업자와 자가용항공기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존치 - 사고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84. 보조 또는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감독 (법 제8조)	• 국제항공노선의 신규개발 및 항공기조종사 등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는 이의 교부목적 외 사용을 금함	존치 - 보조금 등의 투명성 제고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85. 시설·장비의 보유증명	• 시행령 제19조의 골재채취업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폐지 (1999년)

규제사무명	규 제 내 용	위원회 심사결과
(규정 제10조)		
86. 자산평가 (규정 제12조 내지 제14조)	• 시행령 제19조의 골재채취업등록기준에서 정한 자본금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폐지 (1999년)
87. 보호구역 등 (규정 제20조)	• 하천에서 골재채취시 하천보호를 위하여 골재채취 제한 사항을 규정	폐지 (1999년)
88. 골재채취기간 (규정 제23조)	• 골재채취 준비기간과 채취완료 후 원상복구기간 산정 등 골재채취기간 산정에 관한 기준제시	폐지 (1999년)
89. 골재의 반출 (규정 제25조, 제26조)	• 반출시간을 지정하여 지정된 시간외 반출금지 등 반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한 반출증을 교부토록 함	폐지 (1999년)
90. 정기 및 수시점검 (규정 제31조)	•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법규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작업중지, 시정명령, 허가취소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폐지 (1999년)
91.채취구역의 정리 및 복구 (규정 제29조)	• 골재채취구역의 정리 및 복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해 완료 조치	폐지 (1999년)
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운영요령		
92. 마을버스 및 공항 버스 운송사업 면 허기준 (요령 제4조)	• 관할관청은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한 지역은 노선·운행대수 등을 정한 후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노선연고도,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선정·면허함	개선 (1999년) - 한정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
93. 마을버스의 차고 등 시설기준 (요령 제5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차량, 차고시설 및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함	존치 - 공익상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필요
94. 마을버스의 차 종·차량구조·예 비차량·차량 등 (요령 제7조)	• 차종은 16인승 이상 승합차로 하되,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로 할 수 있음	개선 (1999년) - 9인승 이상 승합차로 개선, 단서 삭제
95. 마을버스의 양	•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폐지 (1999년)

규제사무명	규 제 내 용	위원회 심사결과
도·양수의 제한 (요령 제8조)	는 양도·양수를 할 수 없음	
96. 마을버스의 증·감차 (요령 제9조)	•관할관청은 교통량을 조사하여 증·감차를 인가할 수 있음	폐지 (1999년)
97. 마을버스의 운임의 신고 등 결정 (요령 제10조)	•마을버스 및 공항버스 운임은 신고운임제로 운영	존치 - 과다한 요금인상 억제 및 이용자 불만해소
도시계획법(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98.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행위제한 등 (도시계획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20조, 동 시행규칙 제7조, 개발제한관리규정 제5조 내지 제22조)	•건축물 등의 입지조건, 휴식시설 등 각종 시설의 설치를 제한함	폐지 (2000년) -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법률에 동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 제정시 폐지
제주도개발특별법		
99. 인근지역주민의 우선지원 (법 제13조)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개발사업장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존치

등록 누락규제 수시정비 내역

규제사무명	규 제 내 용	위원회 심사결과
항공법		
1. 과징금 부과 (법 제131조,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1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선임·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사고가 발생한 때 등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존치

건설교통부 등록 누락규제 자체정비 내역

규제사무명	규 제 내 용	규제등록일(시행일)
주택건설촉진법		
1. 주택단지안의 보도 설치기준(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주택단지에는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세대수 기준에 의한 일정 폭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여야 하고, 주택단지안의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는 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1999. 8. 23 (1991. 1. 15)
2. 주택단지안의 전기 시설 설치기준(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은 세대별로 일정 용량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피뢰설비를 하여야 함	1999. 8. 23 (1991. 1. 15)
3. 주택단지의 어린이 놀이터 설치기준(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세대수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1999. 8. 23 (1991. 3. 15)

규제사무명	규 제 내 용	규제등록일(시행일)
건축법		
4. 표준화자재(KS표 시품) 사용의무(건축법 제42조, 건축법 시행령 제60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32조)	건축물의 구조체, 마감, 기계설비, 전기설비, 창호·철물 등은 일정한 건축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비상탈출구는 일정한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함	1999. 8. 23 (1998. 9. 29)
측량법		
5.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측량법 제6조의 2)	측량기기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측량기기를 사용하여 측량을 해서는 안됨	1999. 8. 23 (1997. 1. 13)
6.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행자 지정(측량법 제6조의 3, 측량법 시행규칙 제4조의 7)	건설교통부 장관은 필요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성능검사 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시설·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함	1999. 8. 23 (1997. 1. 13)

철도청 등록 누락규제 자체정비 내역

규제사무명	규 제 내 용	규제등록일(시행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 철도신호공사의 제한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제한경쟁운용요령 제2조 제2항)	철도신호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신호공사 기술난이도 및 장치의 중요도에 따라 해당 공사별로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토록 제한	1998. 9. 5 (1982. 2. 6)
레일용접표준시방서		
2. 철도레일용접공의 인정(레일용접표준시방서 제3조)	레일용접공의 자격을 용접면허 소지자 중 철도레일용접가능여부를 철도청의 관계자 입회하에 용접공법 종류별로 2개의 시험편을 제작하여 철도기술연구원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인정함	1998. 9. 5 (1979. 11. 23)

Ⅰ 제5절 Ⅰ

보건복지 분야

* 집필자 : 권태성 과장(Tel. 3703-2177)

. 개요

1. 규제 및 근거현황

1) 규제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약사법, 의료법 등 56개의 법률과 137개의 시행령·시행규칙과 식약청소관으로 약사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한 49개의 고시·훈령 등에 근거하여 규제를 운영하고 있음

2) 규제성질별 분류

- 보건복지 부문은 아동·모자·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 매장 및 묘지, 일용하는 식품, 의약품, 병·의원의 진료 및 의료보장 등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인간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규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규제가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 확보와 관

런된 대표적인 사회적 규제이고 규제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고 양도 많음

- 사회복지시설의 면적이나 입·퇴소 조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등 사회복지관련 규제
- 의료보험·국민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급여 대상 범위의 제한, 외국인의 자격취득 및 상실의 제한적 적용, 보험료징수·지급 등의 운영에 관한 국민연금·의료보험 관련 규제
- 의료인 및 환자의 권리·의무·의료기관의 설립 운영, 의료인의 자격, 그리고 의료인 단체 설립운영 등 의료관련 규제
-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의 확보, 약사·한약사 등의 자격관리, 사업자단체 설립운영, 약품유통 가격제한, 그리고 약품 등의 제조 수입판매 등 약품관련 규제
- 식품의 안전한 생산과 유통 및 식품접객업의 위생확보를 위한 식품제조허가·신고, 제품검사 및 자가품질관리를 위한 식품의 기준규격, 시설기준, 그리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관련 규제
- 목욕장업, 숙박업, 세탁업, 이·미용업, 그리고 공중이용 시설 등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용품의 규격기준, 관련단체의 운영 등 공중위생관련 규제
- 전염병 예방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건강진단, 소독업의 허가 및 시설기준, 전염병 환자의 격리 및 취업제한, 선박·항공기 및 출입국자 및 수입물품 등의 검역,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 등 전염병예방 및 검역관련 규제
- 식품·의약품 안전성의 사전관리를 위하여 기초가 되는 식품·식품첨가물·의료용구 등의 기준·규격과 이의 실험방법, 사후관리를 위한 감시규정관련 규제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 보건복지부 소관 규제는 국민의 건강·안전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제로 규제의 폐지보다 규제품질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였으나, 과도한 규제가 많고 특히 규제준수율이 낮은 가정의례 및 공중위생분야 규제는 전면폐지하고 정부가 간여할 최소한의 분야만 존치하는 등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규제총수 1,702건 중 50.4%인 857건을 폐지하고 256건을 개선조치하였음

-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규제는 기업활동의 자유와 안전성 확보라는 서로 상반되는 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시장진입장벽의 규제는 완화하되 식품·의약품 안전과 관련하여 존속이 불가피한 규제에 대하여는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규제총수 311건 중 50.8%인 158건을 폐지하고 55건을 개선조치하였음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1998년도 폐지규제를 제외한 보건복지부의 잔존규제 882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잔존 규제 151건을 대상으로 '존치불가의 규제'와 '정비대상규제'로 분류
- '존치 불가의 규제'에 대하여는 보건위생의 안전확보,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규제품질개선 방안 강구
- '정비대상규제'는 폐지·개선 등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비
 - 개별검토와 병행하여 근거법률별로 패키지(package) 방식으로 규제폐지 또는 통·폐합방안 검토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1) 심사경위

- 1999. 4. 13. 부처별 잔존규제 정비지침 확정
- 1999. 4~1999. 6. 15. 보건복지부 잔존규제 정비방안 용역연구
 - 공공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민간기관 : 경원대 생활과학연구소
- 1999. 6. 16~1999. 7. 21. 용역결과에 대한 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후 정비 검토 대상 확정
- 1999. 7. 22. 전문가 심사소위원회 심사
- 1999. 9. 16.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심사
- 1999. 10. 1.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의결

2) 정비결과

- 보건복지부는 잔존규제 882건 중 폐지 90건, 개선 36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1건 중 폐지 10건, 개선 39건으로 정비

구 분	1998년 정비			1999년 변경						1999년 정비			1999년 정비 후 규제수
	당초 규제	폐지	잔존 규제 (A)	국회 수정	법제처 등 수정	추가 폐지	신설 심사	누락 등록	소계 (B)	정비 대상 (A+B)	폐지 등	개선	
계	2,013	△1,015	998	6	8	△23	31	13	35	1,033	△100	75	933
복지부	1,702	△857	845	6	8	△20	31	12	37	882	△90	36	792
식약청	311	△158	153	-	-	△3		1	△2	151	△10	39	141

.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1. 기초생활관련 규제개혁

1) 사회복지사업종사자 훈련규칙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사업종사자의 훈련과목, 훈련기간 등 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을 종료한 때마다 훈련과정명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종사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훈련기관의 장이 훈련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낭비초래 및 훈련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됨

나. 개선방안

-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 대한 훈련과목, 훈련기간 등 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훈련대상자별로 훈련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며,
- 훈련실시 종료보고는 훈련을 종료한 때마다에서 당해연도사업 종료 후 1월 이내로 완화

다. 시행시기

- 사회복지종사자 훈련규칙을 개정하여 2000. 1월부터 시행

2) 공동모금회에 대한 시정명령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동모금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개별법 규정에 의거 시정을 명하거나 임직원의 해임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1조)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법인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규정과(제22조 및 제26조) 불일치

나.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개선

다. 시행시기

- 1999.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개정하여 1999. 4월부터 시행

3) 공동모금된 재원의 운영비사용 제한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공동모금회가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과 모금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한도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모집금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규정(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21조)하여

부족한 모집비용 및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함에 따라 공동모금회 운영의 자율성이 훼손됨

나. 개선방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공동모금회의 기부금품모집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모금회운영의 자율성 확보

다. 시행시기

- 1999.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개정하여 1999. 4월부터 시행

4) 공동모금된 예산안 및 사업계획 승인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공동모금회는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9조)함에 따라 공동모금회 운영의 자율성이 훼손됨

나. 개선방안

- 공동모금회는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개선하여 모금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

다. 시행시기

- 1999.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개정하여 1999. 4월부터 시행

5) 장애인자동차표지 신청 및 발급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자동차표지와 고속도로통행료 할인표지가 발급대상이 서로 달라 상이한 표지로 운영되므로 장애인 등의 혼란과 불편 초래

※ 장애인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의 할인은 고속도로통행료 할인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

- 장애인자동차표지

- 발급대상 : 장애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차종 등 불문)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의 차량

- 표지형태 : 초록색 바탕에 흰색의 휠체어 문양

- 고속도로통행료할인표지

- 발급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중 2,000cc 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중 1대(단체 또는 시설명의의 차량은 제외)

- 표지형태 : 도안은 장애인자동차표지와 같으며, 노란색 바탕에 청색의 휠체어 문양

나. 개선방안

-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두 가지 표지를 한 가지의 표지로 일원화 하고, 통행료 할인대상의 확인은 고속도로할인카드만으로 수행

다. 시행시기

-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업무지침’ 및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1999. 8월부터 시행

2. 가정보건복지관련 규제개혁

1)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자의 재정확보기준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주체는 재정적 기반을 확보한 자이어야 하며, 30% 이상 자기 자본 확보 의무(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고시 1995-63호)
- 자율적인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를 곤란하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임

나. 개선방안

- 30% 이상 자기자본 확보의무 폐지

다. 시행시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99. 8월부터 시행

2) 경로연금 수급권 상실신고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경로연금수급자는 사망, 국적상실 등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함(노인복지법 제21조)
- 시·군·구에서 경로연금수급권자의 수급권 상실 확인이 가능한 부문에 대하여도 신고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소득증가 등으로 인한 수급권 상실의 경우는 거의 없음에도 미신고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을 주게 됨

나. 개선방안

- 시·군·구에서 확인이 될 수 있는 사망·국적상실·해외이주 등의 경우는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소득 증가로 인한 수급권상실의 경우는 신고제를 존치하되 과태료 부과제도는 폐지

다. 시행시기

- 2000년 중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01. 1월 시행 예정

3) 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실적 보고의무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매반기마다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토록 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 매반기마다 교육훈련을 실적을 보고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나. 개선방안

- 매반기마다 교육훈련실적보고를 폐지함

다. 시행시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99. 8월부터 시행

4) 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수립보고 등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 매년 교육훈련계획 수립보고는 과도한 규제

나. 개선방안

- 교육훈련계획 수립보고를 폐지함

다. 시행시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99. 8월부터 시행

5) 아동복지시설 비용의 수납승인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시설보호에 따른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보호비용수납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구 아동복지법 제28조)
- 시설에서 수납하는 비용에 대해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시설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

나. 개선방안

-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비용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보호비용수납한도

액을 초과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다. 시행시기

- 2000.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2000. 7월 시행 예정

6) 보육시설운영기준 설정

가. 현황 및 문제점

-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8은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보육시설 운영기준임
 -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가정자녀 우선입소 원칙
 - 입소신청자 명부 작성·비치 및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필요장부 비치
 - 보육시설 12시간 운영원칙 및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계속 운영 원칙
 - 조직, 인사 회계 등에 관한 필요규정 제정
-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계속운영으로 시설수리 및 보강, 보육시설 종사자의 교육 등을 통한 재충전 기회 마련 등이 어렵고, 조직·인사·회계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 등이 어려움

나. 개선방안

- 보육시설에 동·하절기 휴가기간을 설정하여 시설 수리 및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보육의 질 향상 도모
- 보육시설의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시·군·구 단위로 제정, 선택하여 수용토록 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계약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운영자의 부담을 완화

다. 시행시기

- 2000년 상반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 예정

7) 모자복지급여 신청시 호적등본 생략

가. 현황 및 문제점

- 모자복지시설 입소 및 복지급여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매년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보호신청을 하여야 함

나. 개선방안

- 모자보호시설 입소와 복지급여 신청시 신분의 변동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출을 생략함

다. 시행시기

- 모자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99. 10월부터 시행

8) 여성복지상담소 소재지 등의 변경신고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상담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상담소의 소재·명칭 또는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이사회의 의결서 등의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설치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이를 신고토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임

나. 개선방안

- 상담소 소재지·명칭 등의 변경신고서 제출 폐지

다. 시행시기

- 윤락행위 등 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99. 5월부터 시행

9) 피임시술 후 쿠폰관리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보건소장은 쿠폰(피임시술요청 및 확인서)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 송부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장은 쿠폰의 제기록을 검토·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 보건소장 보고의무는 근거가 없으며, 쿠폰에 관한 반기별 보고는 매월 실적보고로 대체 가능

나. 개선방안

- 시술 후의 쿠폰관리관련 조항 폐지

다. 시행시기

- 가족보건업무규정을 개정하여 2000. 1월부터 시행

3. 보건정책관련 규제개혁

1) 공중보건장학제도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6. 12. 22일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의과·치과·간호대학생에게 재학중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당 면허 취득후 그에 상응하는 기간(2년~5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실시
- 그러나 1978년 군복무 대신 3년간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실시되는(1978년) 등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요원의 수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의사는 1990년, 간호사는 1996년에 장학생 선발을 중단하고 현재는 그동안 배출된 장학생의 조건이행을 위해 동 법률 존속

나. 개선방안

- 공중보건장학금의 기 수급자의 조건이행이 사실상 완료되는 2002년경에 공중보건장학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일괄 폐지할 계획임

다. 시행시기

- 2002년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폐지 예정

2) 식품운반·판매업 및 식품자동판매기업 영업자 교육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위생교육시간
 - 식품운반·판매업 영업자 : 매년 4시간
 - 식품자동판매기업 영업자 : 3년마다 4시간(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 후 6월 이내에 4시간)

나. 개선방안

- 보수교육 : 영업자에 대한 의무적 보수교육은 폐지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집단식중독 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신규교육 : 영업신고 후 6월 이내에 4시간

다. 시행시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99. 12월부터 시행

3) 유흥종사자 범위 등에 대한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유흥종사자 및 유흥시설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유흥주점에만 종사하거나 설치할 수 있음
 - 유흥종사자의 범위
- 유흥접객원, 댄서, 가수 및 악기를 다루는 자, 무용을 하는 자, 만담 및 곡예를 하는 자, 유흥사회자

- 유흥시설의 범위
- 무대장치, 무도장, 조명시설 및 음향시설

나. 개선방안

- 국민의 일상적인 대중예술 향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중예술에 과도한 규제를 완화
- 유흥종사자 등의 범위를 조정하여 일반음식점 등에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흥종사자 등의 범위 중 유흥종사자에는 유흥접객원만을, 유흥시설에는 무도장만을 규정하고 종전의 가수, 무용을 하는 자와 무대장치, 음향시설 등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 일반음식점 등에서도 종사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시행시기

-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999. 11월부터 시행

4)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효율적인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피라미드 구조의 응급의료기관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므로 1차로는 응급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 2차로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 종합병원 중에서 30병상 이상의 응급실과 기타 인력, 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에 대하여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그밖의 종합병원에는 최소 15병상 이상의 응급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였으며 병원이나 의원 중에서 15병상 이상의 응급실 및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의료법상 반드시 응급실을 갖추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중복된 규제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지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있으나 실제로 현장확인 등의 세부적인 사항의 점검을 해당 시·군·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신청기관의 입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함

나. 개선방안

- 종합병원에 대한 강제 응급의료기관 기준 의무를 삭제하고 동시에 지역응급의료센터(중전의 응급의료센터)의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하며 지역응급의료기관(중전의 종합병원 또는 응급의료기정기관)의 지정은 시·군·구청장이 지정토록 함(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다. 시행시기

- 2000.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00. 7월부터 시행 예정

5) 의료기사 등 협회설립 및 인가 등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기사 등은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의무적으로 설립하여야 하고 의료기사 등은 협회에 당연 가입하여야 하며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등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함(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 의료기사 등 단체설립 현황
 -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1965. 12 설립, 회원수 10,500명)
 -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1965. 7 설립, 회원수 8,500명)
 -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1966. 11 설립, 회원수 7,554명)
 -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1993 설립, 회원수 200명)
 -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1966. 7 설립, 회원수 4,961명)
 -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1977. 12 설립, 회원수 10,162명)
 -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1974. 10 설립, 회원수 13,180명)
 -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사협회(1966. 8 설립, 회원수 2,593명)
- 사업자단체의 설립 강제 및 협회 의무가입으로 사업자의 재량을 제한함은 비합리적임

나. 개선방안

- 협회설립의 임의화와 강제가입 제도 폐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의 협회 설립인가 조항은 폐지(민법의 일반조항 등에 따라 설

립인가)

다. 시행시기

- 1999. 2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999. 2월부터 시행

6) 적출물처리업무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적출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적출물처리업자 지정서를 발급받아야만 적출물처리업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적출물처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출물처리업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 적출물처리업자 지정 : 185개소
- 적출물처리업의 진입규제로 작용

나. 개선방안

- 2000. 8. 9일부터 적출물처리업자가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체계로 일원화,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처리규칙은 폐지

다. 시행시기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00. 8. 9일 시행 예정

7)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목적사업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의료법제41조 제1항 단서)
- 그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 신청하는 2중 규제로 행정기관 및 법인의 업무 가중

나. 개선방안

- 목적사업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다. 시행시기

- 2000. 1월 의료법을 개정하여 2000. 7월 시행 예정

8) 안마시술소 인력기준 및 개설관련 사항 등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공중위생법에 의한 호텔·농원·여관 및 여인숙이 있는 건축물에는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
- 안마시술소 개설시 안마사회의 의견을 들어 수리하도록 하고 있어 지나친 개설제한 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고 안마시술소 시술실 3실당 1인 이상의 안마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어 시술소 운영에 있어서 자율 운영권 침해
-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도지사가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지도·점검횟수 과도

나. 개선방안

- 안마시술소 개설 장소제한 규정 완화 및 안마시술소 인력기준 폐지
-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시 안마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리하되 의견조회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개선
-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군·구청장이 매반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개선

다. 시행시기

- 2000년 상반기 중에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 예정

9) 수급조절한약재 지정 및 우선배정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한약재수급조절제도는 한약재의 품질향상, 가격안정, 원활한 공급기반조성, 한약재배농가보호 등을 위하여 한약재 26종을 '수급조절대상'으로 지정하고 가격폭등, 품귀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량의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임
- 그러나 한약재의 수입제한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한약재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식용 수입품의 불법유통, 밀수 등 유통구조의 왜곡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음
- 또한 한약규격화제도에서는 한약의 품질확보를 위해 중요 한약재를 한약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소에 한하여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중 한약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그 수입량을 한약제조업소단체인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에 '우선배정'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를 한약제조업소에 대한 특혜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나. 개선방안

- 수급조절대상 한약재를 단계적으로 축소조정
 - 한약재 수입개방에 따른 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수급조절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은 관련부처,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선정하고
 - 재배농가에서 수입개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의 개방예고제 도입
 - 다만, 수급조절대상 한약재의 '우선배정' 제도는 한약재 규격화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한약재수급조절제도 폐지시까지 존치

다. 시행시기

- 2000. 2월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수입개방시에도 재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5개 품목을 2001. 1. 1일부터 수입개방 예정
 - 대상품목 : 강활, 구기자, 목단피, 치자, 향부자
- 나머지 품목은 재배농가 실태, 가격동향 등을 조사분석하여 단계적으로 수입개방 추진

4. 보건증진관련 규제개혁

1) 이용·미용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이·미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년 2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공중위생법 제 13조)
- 건강진단은 결핵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어 온 것이나, 전국민 의료보험시대에 맞지 않고 정기검사의 필요성이나 효율성도 낮음

나. 개선방안

- 의무적인 건강진단제도를 없앴

다. 시행시기

- 공중위생법 폐지, 1999. 8. 9일 시행

2) 영업자단체 설립(정관 변경)인가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영업자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공중위생법 제33조)
 - 단체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를 받아야 함
- 영업자단체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설립 등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이중규제임

나. 개선방안

-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규정만 공중위생관리법에 신설하고 정관인가 절차 등 관련규정 폐지

다. 시행시기

- 공중위생법 폐지, 1999. 8. 9일 시행

3) 이·미용사 학교의 지정제도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이·미용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이·미용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1년 이상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공중위생법 제9조)
-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등을 또다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절차임

나. 개선방안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이용 또는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1년 이상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변경(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 이·미용 학교지정 기준 등 관련 조항(삭제)

다. 시행시기

- 공중위생법 폐지, 1999. 8. 9일 시행

4)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함
- 시설의 입퇴소 결정, 복약지도, 환자의 신체적 건강에 관한 사항을 정신과 전문의의 지도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

나. 개선방안

- 사회복지시설을 일반인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
- 정신과 전문의의 지도에 따라야 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완화

다. 시행시기

- 2000년 1월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2000. 7월 시행 예정

5) 정신질환자의 경과관찰을 위한 의료기관의 지정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시·도지사는 가퇴원 환자에 대한 경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주 1회 이상 진단을 받게 할 수 있음

나. 개선방안

-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

다. 시행시기

- 2000년 상반기 중에 정신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0. 7월 시행 예정

6) 건강진단 실적보고제도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건강진단을 실시한 지정의료기관장은 건강진단 실적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건소장은 매분기 당해 보건소의 건강진단실적과 보고받은 지정의료기관의 건강진단실적을 종합하여 매분기가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하여 일선 병·의원 및 보건소 등에 불편 초래(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9조)

나. 개선방안

- 의료기관의 장은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전염병환자 수 등을 전염병 예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건강진단실적 보고제도는 폐지함

다. 시행시기

-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1999. 8월부터 시행

7)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진료기관 지정제도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감염자의 보호·관리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기관 또는 진료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3조) 국립의료원, 국립보건원, 의과대학부속병원, 종합병원 등 전문진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14조), 전문진료기관 등의 지정절차에 대하여 규정(동법 시행규칙 제12조)된 것은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일부 의료기관의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진료거부 등 폐해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음

나. 개선방안

-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의 격리·보호제도와 진료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감염자의 치료와 요양을 위한 시설과 편의제공을 위한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시행시기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령을 개정하여 1999. 8월부터 시행

5. 연금보험관련 규제개혁

1) 요양기관 지정의 제한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지정취소된 요양기관과 동일 장소에서 지정금지기간중에 있는 자를 고용하거나, 지정금지기간중에 있는 자가 타인 명의로 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할 때에는 지정을 제한토록 하였음

나. 개선방안

- 의료보험 요양급여질서의 확립 등을 이유로 요양기관 지정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의료보험법 제32조의 개정으로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등은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요양기관으로 당연히 인정하는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 요양기관지정을 전제로 지정의 제한을 규정한 동 조항은 불필요한 규정에 해당되어 폐지

다. 시행시기

- 1999. 2월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1999. 7월부터 시행

2) 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요양기관 등이 폐쇄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요양기관지정서 반납신고서 및 폐업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반납하여야 하는 등 행정절차의 번거로움 발생

나. 개선방안

- 의료보험 요양기관이 폐업 신고하면 별도의 절차없이 당연히 지정취소된 것으로 봄
- 요양기관 지정취소시 의료보험연합회 및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하던 요양기관지정서 반납신고서 및 폐업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요양기관지정취소가 이루어졌으나 의료기관 폐업시 당연히 취소되므로 동 조항은 불필요한 규정에 해당되어 폐지

다. 시행시기

- 1999. 2월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1999. 7월부터 시행

3) 요양기관 지정금지기간의 설정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보험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부당금액과 부당비용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의료보험요양기관으로의 지정을 금지토록 정하였음

나. 개선방안

-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 사전예방 및 의료보험 요양급여질서의 확립 등을 이유로 동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의 요양기관 지정취소제도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폐지

다. 시행시기

- 1999. 2월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1999. 7월부터 시행

4)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자단체의 지정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의료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에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요양기관을 지정토록 정하였음

나. 개선방안

- 의료보험 요양급여질서의 확립 등을 이유로 요양기관 지정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의료보험법 제32조의 개정으로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등은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요양기관으로 당연히 인정하는 제도로 변경

다. 시행시기

- 1999. 2월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1999. 7월부터 시행

5) 의료보호기간의 연장승인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의료보호대상자가 연간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여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999년의 경우 330일로 제한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여 의료보호를 받아야 할 경우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을 받도록 함(의료보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의료보호기간의 제한은 불필요한 의료기관의 이용을 억제하고,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연중 의료기관을 이용하여야 하는 보호대상자들은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도록 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의료보호기금의 적절한 운용을 위한 제도이나,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절차가 번거롭고 실효성이 없음

나. 개선방안

- 2000년부터는 보호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의료보호대상자가 연중 제한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다. 시행시기

- 1999. 7월 의료보호법을 개정하여 2000. 10월 시행 예정

6) 의료보호의 기간 산정방법 규정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의료보호대상자가 연간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여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999년의 경우 330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임

나. 개선방안

- 2000년부터는 보호기간의 제한을 폐지할 것이므로 의료보호의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도

당연 폐지됨

다. 시행시기

- 2000. 7월 의료보호법을 개정하여 2000. 10월 시행 예정

7)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취소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의료보호진료기관 중 제1차 진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차 진료기관은 시·도지사, 제3차 진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보호진료기관이 의료보호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의료보호진료기관이 지정취소된 경우 진료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고, 지정 취소 기간이 종료되면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번거로움

나. 개선방안

-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의료기관 등이 개설됨과 동시에 당연히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지정됨(의료보호법 제10조)
-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취소처분을 의료보호업무 정지처분으로 변경하여 진료기관이 업무정지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재지정행위 없이 당연 의료보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의료보호법 제24조)

다. 시행시기

- 1999. 2월 의료보호법을 개정하여 1999. 7월부터 시행

8) 의료보험진료비 상근심사위원의 임명 및 해임 승인제도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의료보험연합회 진료비 상근심사위원 임명, 해임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의료보험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진료비심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1항, 3항)
- 상근심사위원 임명, 해임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은 형식적인 규제임

나. 개선방안

- 상근심사위원은 장관의 승인없이 임명, 해임토록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안에 반영

다. 시행시기

-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2000. 7월 시행 예정

9) 의료보험요양급여기간 제한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보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연간 요양급여기간을 330일로 제한
- 만성질환 등 장기 요양급여가 필요한 피보험자인 경우 연간 요양급여기간의 제한으로 인한 의료비의 부담이 가중됨

나. 개선방안

- 연중 보험급여가 가능하여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피보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요양급여기간 제한을 폐지
- 국민의료보험법을 폐지하고 2000년 7. 1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관련규정 삭제

다. 시행시기

- 1999. 2월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2000. 7월 시행 예정

10) 3세 미만 보험급여 제한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약국에서 조제투약을 받은 경우로서 만 3세 미만의 영유아가 조제투약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함
- 2000.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될 경우 약사의 임의조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규제임

나. 개선방안

- 2000. 7월 의약분업 시행시 실효성이 없는 규제이므로 관련 조항 삭제

다. 시행시기

- 2000. 7월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고시)을 개정하여 2000. 7월 시행 예정

11) 1회 투약품목수 제한 및 1회 투약일수 제한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약국에서 조제투약을 받은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함(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Ⅱ-3)
 - 약국급여 대상 의약품으로서 1회 투약범위인 4품목을 초과하여 투약받은 경우 초과 투약한 해당 의약품의 약제비
 - 1회에 7일분을 초과투약할 경우 초과투약한 해당 의약품의 약제비
- 2000.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될 경우 약사의 임의조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규제임

나. 개선방안

- 2000. 7월 의약분업 시행시 실효성이 없는 규제이므로 관련 조항 삭제

다. 시행시기

- 2000. 7월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고시)를 개정하여 시행 예정

12)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기한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임의계속가입신청은 60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제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 이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하고 있지만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가입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공적연금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는 점이 있음

나. 개선방안

- 60세에 도달하고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입자들이 원할 경우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신청기한이 짧은 데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함
- 65세까지는 아무 때나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제한기한을 폐지함(개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다. 시행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99. 4월부터 시행

6. 식품·의료용구 분야

1) 식품 등의 기준·규격(식품공전) 관련 규제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식품의 제조 및 가공방법, 성분규격, 원료배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유로운 식품개발을 저해
- 식품기준 및 규격의 신설·변경 절차와 방법이 불투명
- 건강보조식품과 특수 영양식품 등을 제외하고는 캡슐 혹은 정제형태의 제품으로 제조할 수 없도록 가공형태를 제한

나. 개선방안

- 식품의 제조 및 가공방법 중 권장사항을 확대
- 식품기준 및 규격의 신설 또는 변경시 절차와 방법을 객관화
- 건강보조식품 등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정제와 캡슐형태의 식품허용 확대

다. 시행시기

- 2000년 상반기 중에 식품공전(고시)을 개정하여 시행 예정

2) 식품 등의 표시사항(식품 등의 표시기준)

가. 현황 및 문제점

-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소비자에게 식품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올바른 상품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
 - 그러나 식품별 개별기준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민원이 빈발하고, 식품공전 상에 분류된 ‘유형’ 표시의무, 인쇄가용면적에 따른 활자의 크기 조정의무 등 불필요하거나 애매한 규정이 포함

나. 개선방안

- 지나치게 세분화된 식품별 개별 기준항목을 단순화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많은 다류·혼합음료·건강보조식품 등을 제외한 품목은 식품의 유형표시 의무 면제
- 인쇄가용면적에 따른 활자의 크기를 표기하도록 한 애매한 규정은 삭제하고, 제조업자가 자율적으로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 및 포장지의 특성에 맞게끔 활자크기를 표시토록 의무화

다. 시행시기

- 2000년 상반기 중에 식품 등의 표시기준(고시)을 개정하여 시행 예정

3) 의료용구의 품목추가지정 등 심사기간 단축(의료용구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가. 현황 및 문제점

- 1998년 의료용구 시험검사기관 등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규제개선하고
- 의료용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Ⅰ, Ⅱ, Ⅲ 등급으로 분류·지정하여 관리하여 새로운 의료용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와 기존의 등급을 재분류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청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심사결과 통보기간이 90일로 지나치게 길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과다하게 소비

나. 개선방안

- 동 심사결과 통보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

다. 시행시기

- 2000년 상반기 중에 의료용구의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 예정

. 신설·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1.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 1999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된 27개 법령의 신설·강화규제 92건을 심사한 결과 60건은 규제내용 적절, 32건은 부적절하여 9건은 개선하고 23건은 철회권고

2. 심사 및 조정내역

1) 유흥주점의 주간무도 행위제한 고시 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건)
 - 유흥주점의 영업행위 중 “무도장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추게하는 행위”에 대하여 09:00~17:00까지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신설규제를 긴급심사요청
- 심사결과(1999. 3. 8) : 원안통과 1건
 - 무도장과의 형평성을 고려 원안통과

신설·강화규제 심사 현황

구 분	계	신 설	강 화
심사대상	92	46	46
철 회	23	15	8
개선권고	9	6	3

2)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건)

- 컴퓨터게임장업 시설 설비기준 중 전자유기기구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강화규제 심사를 요청

■ 심사결과(철회권고 1건)

- 공중위생법이 1999. 8. 9일부터 폐지되는 상황에서 규제강화 보류하도록 권고

3) 적출물처리규칙 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건, 강화 5건)

- 태반 양여시 적출물 처리업자만이 수거·운반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 적출물의 수거·운반·보관 용기 및 표시기준을 설정하고 의료기관 및 적출물 처리업자는 규격용기 사용을 의무화함
- 소각능력 상향, 연소실 출구온도 상향, 수거운반 차량수(1대 → 3대) 등 처리시설·장비 기준과 의료기관의 적출물 처리기준 강화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과 적출물을 혼합 또는 동일한 장소에 보관을 금지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과 적출물처리시설의 동일사업장 내 설치금지 규제신설
-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으로 의료기관은 적출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적출물처리시설을 갖춘 처리업자와 처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적출물 수거업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적출물을 수탁받은 때에는 수탁총량에 대하여

그 종류별로 처리확인증을 당해 의료기관으로 교부받아 중간처리업자의 처리확인을 받은 후 1대는 자체보관, 1대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제강화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시·도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을 처리업자에게 권역별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처리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규제강화

■ 심사결과(1999. 5. 12) : 원안통과 2건, 철회권고 3건, 개선권고 1건, 일부신설유보 1건

- 태반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냉동보관하고 있으며, 제약회사에 양여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적출물 처리실적보고서 확인으로 의료기관에서 직접 제약회사에 양여했다는 확인이 가능하므로 특정업체에게 수거·운반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단서조항 신설은 삭제를 권고함
- 적출물 처리시설·장비기준을 강화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시설·장비기준에 적합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나, 수거·운반차량기준 확대(1대 → 3대)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이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삭제를 권고함
- 적출물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분리보관은 동의하나, 같은 사업장 내 설치금지 규제는 환경부의 용역(1999. 10월 용역기간 만료) 결과에 따라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일부 신설을 유보시킴(용역결과 신설동의)
- 중간처리시설을 갖춘 처리업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수거·운반업자를 계약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이는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어 삭제를 권고함
- 영업활동구역은 경쟁원리에 배치되고 또한 교통망의 발달로 전국 어디에서나 신속하게 운반처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영업활동제한은 부적절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5에 규정된 무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 입소자가 퇴소할 경우 지체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과 동일하게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경우도 입소자 퇴소시 보증금을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함

■ 심사결과(1999. 6. 16) : 원안통과 1건

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건)

-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건강증진기금에 납부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제조담배 20개비당 2원에서 8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규정함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주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와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장업소를 추가함

■ 심사결과(1999. 7. 14) : 원안통과 1건, 조건부통과 1건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추진 문제는 정부의 기금운용, 물가, 공사민영화 등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다른 입법절차(차관회의 등)를 통해 구체적 인상액수·시기 등을 협의 추진하도록 함

6) 약국 및 의약품 등 제조업 수입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및 기준령 시행규칙 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 : 강화 1건

- 완제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도 우수한 품질관리 체계하에서 제조·공급될 수 있도록 여과·분쇄·정제 및 공정 등의 시설에 관한 의약품 GMP기준을 의무사항으로 정하여 2001년부터 시행하도록 함

■ 심사결과(1999. 8. 27) : 원안통과 1건

7) 영양사에 관한 규칙 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건)

-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련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 제한하던 것을 학과구분 없이 영양학 또는 식품학을 전공하되, 최소 18과목 및 5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강화

■ 심사결과(1999. 9. 2) : 철회권고 1건

- 개정안 제2조(정의) 제1항 별표1의 영양사 시험응시 요건 중 최소이수과목 18과목 52학점 요건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개정안 제9조(면허증의 교부신

청) 제1항 1호의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영양학 또는 식품학을 전공한 자의 인정서”
삭제를 권고함

8)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건, 강화 8건)

- 수련한방병원은 수련실시 및 전공의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 등의 수련규칙 및 수련 기록을 작성 비치·보관해야 함(신설)
- 한의사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수련한방병원에서 일반수련의는 1년, 전문 수련의는 3년간 수련을 받아야 함
-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한방병원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시킬 일반 및 전문 수련의의 정원은 수련한방병원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함
- 수련한방병원의 장이 전공의를 임용 또는 해임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수련을 받는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 겸직금지
-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한방병원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음
- 수련한방병원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등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음
- 한의사 전문의는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등 전문의 자격의 인정에 관하여 규정

■ 심사결과(1999. 9. 2) : 원안통과 9건

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3건, 강화 4건)

- 식품제조·가공 등 영업자 매년 4시간 위생교육의무 등의 의무보수교육 유지와 위생 교육실시기관으로 한국식품공업협회를 지정

-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일반음식점 객실 내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 설치금지
- 영업신고시 수질검사성적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 유선 또는 도선사업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등의 구비서류 추가
- 식품접객업자 등의 티켓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준수사항 추가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검사능력관리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보완 등
- 정밀검사 및 그 대상추가 등 식품 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강화
- 심사결과(1999. 9. 16) : 원안통과 4건, 철회권고 1건, 개선권고 2건
 - 기의결된(1998. 11. 6)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에 따라 의무적 보수교육은 폐지하되 전염병 만연 등과 같이 필요시 교육명령도 동취치가 퇴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교육대상자·교육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며,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특정교육기관을 지정을 폐지하는 대신에 “관련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수정 권고 하고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변경신고 의무사항 중 “기타 식약청장이 정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은 그 내용이 너무 막연하므로 삭제 권고함

10)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건)
 - 의약품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약국 등의 개설자의 의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를 추가함
 -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함
- 심사결과(1999. 9. 16) : 원안통과 1건, 개선권고 1건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절은 너무나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과도한 규제가 우려되므로 “식약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는 의사의 처방전 등 별도의 준수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로 개선권고

1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건, 내용심사 1건)

- 위생관리 의무사항 위반 등 공무원이 공중위생영업소 및 공중이용시설 출입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세부적으로 규정
- 세탁업자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탁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해결에 필요한 권고 등 분쟁조정에 노력해야 함(신설)
- 공중위생과 국민보건 향상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중위생영업자단체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영업소 자율지도 등의 업무범위를 정함(신설)

■ 심사결과(1999. 10. 15) : 개선권고 1건, 철회권고 2건(비규제로 개선 1건)

- 출입검사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위생관리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위생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물질이 발생한 때”는 출입검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위생관리 의무사항에 대한 신고 등이 있는 때”로 개선권고하고, “위생평가 실시 및 이에 따른 감시의 경우”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권고하고, “보건위생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사실시가 필요한 경우”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예시추가 등 규정을 구체화하여 명기하도록 하였으며, 출입검사시 비리발생 방지를 위해 출입사유, 출입시간, 자필서명 등 점검자 실명제를 도입토록 함
- 세탁업자단체에서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이는 단체의 정관에 정할 사항이므로 “세탁업자단체는 세탁업과 소비자간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선언적의미로 개선토록 함
- 공중위생영업자단체의 업무범위는 법률의 위임이 없고 단체의 정관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지 법률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철회권고함

12) 약사법 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건)

-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함
- 의료기관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원외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할 수 없도록 함

■ 심사결과(1999. 10. 15) : 원안통과 2건

1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7건)

- 장애인복지에 관한 기본시책의 강구 및 조치에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들 단체 등은 이에 협조해야 함
- 장애인보조견 훈련기관의 지정, 감독, 지정취소 등을 규정함
-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국가시험제도의 실시시기, 실시방법 등 검정절차에 필수적인 사항을 정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정함

■ 심사결과(1999. 11. 5) : 원안통과 3건, 철회권고 4건

- 민간단체 등에 자료제공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 미근거 규제에 해당되므로 동규제는 철회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 자료제공 요청 및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함
- 훈련기관 지정·감독·지정취소등의 규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된 실정이므로 규제신설에 대한 법률적 근거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철회권고함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건, 강화 2건)

-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여부를 검사하도록 하여 비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다른 병원이나 비응급실로 보내도록 함
-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의무부여
-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가 중앙응급센터 및 권역응급센터를 지정함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시·도지사의 평가 및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평가를 위한 각종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하도록 함
-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평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운영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모든 구급차량이 출동할 때에는 반드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도록 함. 단, 의사나 간호

사가 탑승할 경우 같음함

■ 심사결과(1999. 11. 5) : 원안통과 2건, 철회권고 4건

-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진료 의무나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을 부과하는 것은 이미 법률에 응급환자의 선별검사의 뜻이 내포되어 별도의 규제신설은 불필요하여 철회권고함
-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의무적 평가실시는 이중적 규제에 해당되며,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불편과 인적·물질적 부담을 초래하고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등이 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철회권고하고 비규제대안을 검토토록 함
- 일반 및 특수구급차량 등 모든 구급차량에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탑승을 의무화하는 것은 특정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호규제가 되므로 철회권고

15)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0건)

- 전신성질환에 이환된 자의 장기 또는 장기특이질환에 침범된 장기로서 동질환에 의한 손상으로 인해 의학적으로 이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기 등은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제한
- 전국을 3개권역으로 구분하여 동일권역 내에 있는 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고 동일 조건인 경우 다장기 이식대기자 우선 등으로 선정 기준을 정함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은 별도의 구획된 사무실, 전산장비, 등록 및 상담인력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장기이식등록기관이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 뇌사판정위원회의 구성요건, 뇌사판정시 뇌사판정서와 회의록에 기재할 사항을 정함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은 각 장기별 적출 및 이식에 필요한 전문의, 검사시설, 장비 및 시설 요건을 정하고 비밀을 유지해야 할 종사자 등의 범위를 정함
- 등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장기 등 기증자 등의 등록, 장기 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이식의료기관, 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이 폐업하거나 업무정지·취소되는 경우에는 별도 정한 자료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자료의 목록 및 수

량을 작성하여야 함

■ 심사결과(1999. 11. 12) : 원안통과 8건, 개선권고 2건

-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 장기 종류를 정하여 지정신청한 경우에 신청한 장기에 한해 지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굳이 법령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선권고
- 등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폐업하고자 하거나 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취소 사유로서 업무정지를 명할 실익이 없으므로 개선권고

16)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규정 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 : 신설 2건

-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 인정에 따른 시설·장비현황, 진료과목별 인력현황 등 신청서류의 서식을 정하고, 요양기관이 인정서를 반납하거나 인정기준에 미달할 때 인정해지 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 심사결과(1999. 11. 12) : 원안통과 2건

1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건)

- 의지·보조기사는 매년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전문훈련기관의 설비, 사업내용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함
- 장애인보조견 표지의 발급대상을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견을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중이거나 훈련을 받은 보조견으로 제한함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시설운영을 중단·재개·폐지신고를 할 때에는 사유서,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 등 행정처분기준을 정함

■ 심사결과(1999. 11. 26) : 원안통과 2건, 개선권고 2건

- 기의결된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의 방침에 따라 의무적 보수교육은 폐지하고, 신규취업시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있을시에 한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함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의 설비, 사업내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은 미근거규제에 해당하므로 철회권고하고, 법 체계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훈련기관을 인정하고 전문훈련기관이 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함

18)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4건)

- 방사성의약품은 허가대상의약품으로만 관리하도록 하고,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이 아닌 수입의약품부외품 및 수입위생용품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게 하며 대한약전 또는 대한약전의 한약규격집 품목 중에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품목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의료기관에 부속 또는 부설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약국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는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됨
- 의약품 등의 임상시험 실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때의 처분기준을 정함
- 의약품부외품 및 화장품에 있어 용기나 포장에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을 표시하도록 함

■ 심사결과(1999. 12. 17) : 원안통과 1건, 철회권고 2건, 개선권고 1건

- 의약품부외품 및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허가·신고제를 유지할 필요성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대한약전 등에 수재된 품목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대한약전 등을 정비하여 표준서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대한약전이나 규격집에 수재된 품목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철회권고함
- “특정의료기관에 부속·부설된 것으로 오인할 약국명칭 배제”는 “특정의료기관에 부속·부설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과 동일한 약국명칭 사용금지”로 개선권고함

- 의약부외품 · 화장품의 효능 · 효과와 용법 · 용량을 표시하는 것은 법규에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알려야 할 기본사항이므로 철회권고함

19)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건)

- 한방전공의 공개경쟁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는데 당해연도 정원에 미달될 때에는 보 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한의사회의 장이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명부와 사진을 합격 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심사결과(1999. 12. 3) : 원안통과 2건

20)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7건)

- 장기등 기증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시 제출서류를 정함
- 자신의 장기 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자는 장기 등 기증자 및 이식대상자 에 대한 신체검사결과서 등을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승인을 신 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도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 부 장관에 신청하여야 함
- 뇌사판정의료기관은 별도 정한 인력 ·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뇌사조사에는 신 경과 전문의사가 반드시 1인 이상 참석하여야 함
-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도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 신청하고, 장기 등을 적출 · 이식한 경우 별도 정한 사항이 포함된 기록을 작성 하여야 하며,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대한 기록은 10년간 보존
- 의료보험법이 정하지 않은 수술비용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신고
- 등록기관의 수수료는 3만원 이하로 하고 그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 관에 신고

■ 심사결과(1999. 12. 24) : 원안통과 5건, 개선권고 1건, 철회권고(비규제로개선) 1건

- 장기 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류중 “장기 등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신체검사 결과서”는 장기 등 매매 배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고, 장기 등 이식시 필수적으로 신체 검사는 실시하므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미리 검사하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 권고함
- 의료보험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소요비용은 의료법에 의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있으므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시·도지사가 이식의료기관장에게 의료보수 인가용으로 징수한 자료를 통해서 장기이식비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의료보험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비규제로 개선

21) 식품첨가물공전 중 천연첨가물사용기준 개정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건)

- 올레오레진캡시킴, 오징어 먹물색소 등 4개 천연첨가물의 사용제한 식품유형에 식초·해조류 등을 추가

■ 심사결과(1999. 6. 2) : 원안통과 1건

22) 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첨가물 안전성평가자료 심사지침 제정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건)

- 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평가한 자료를 심사하기 위한 제출 자료의 범위·심사절차·심사위원회 등과 관련된 규제 신설

■ 심사결과(1999. 8. 2) : 철회권고 3건

- 전형적인 인·허가 규제유형에 해당되나 식품위생법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철회권고

23) 오·남용 우려의 약품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건, 강화 1건)

- 구연산실데나필정제(비아그라정)를 오·남용우려의 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 약국 등의 개설자의 비아그라 판매시 준수사항을 정함(신설)
- 심사결과(1999. 9. 30) : 원안통과 1건, 개선권고 1건
 - 준수사항 1호 중 “20세 이하 미성년자”를 “20세 미만 미성년자”로 개선권고
 - 준수사항 2호에 “소비자가 진단서 원본을 원할 경우 진단서 원본에 판매일시, 판매량, 판매업소명 등을 기재하여 되돌려 줄 것”을 추가하고
 - 준수사항 4호 “판매시 정보소책자 배포 및 구입자에게 숙지시키도록 의무를 부과” 삭제권고함

24) 식품첨가물 중 스테비오사이드의 사용기준 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건)
 - 스테비오사이드의 사용제한 식품유형을 ‘알사탕’에서 중분류에 해당하는 ‘캔디류’로 확대
- 심사결과(1999. 10. 5) : 원안통과 1건

25) 국내외 공인검사기관과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인정기준절차 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건)
 - 국외공인검사기관은 국외민간검사기관의 경우 수출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사항의 변경시 등의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검사성적서 허위발급 등의 경우에 국외공인검사기관의 인정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심사결과(1999. 11. 19) : 원안통과 2건

26) 의약품 등의 안전성 · 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건)
 - 의약품의 안전성 · 유효성 심사자료의 작성, 범위 및 첨부자료의 요건을 의약품안전성 시험관리기준(GLP)에 적합한 독성시험자료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함
- 심사결과(1999. 11. 29) : 원안통과 1건

27)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7건)

-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기준을 국제적 기준(ICH Guideline)과 조화시키기 위해 국내 기준 강화

■ 임상시험계약의 투명성확보 및 실시기관장 임무 강화, 피험자 보호를 위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구성·임무 강화, 임상시험책임자 및 담당자 자격요건 등 강화, 임상시험의뢰자의 임무 및 보고의무 확대, 피험자 선정 및 동의강화, 관리약사의 임무 및 제조관리 준수사항 세분화, 임상시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사 및 자료의 보존 명문화

■ 심사결과(1999. 12. 18) : 원안통과 7건

Ⅰ 제6절 Ⅰ

일반행정 및 법무 분야

· 행정자치부 소관 규제개혁

* 집필자 : 이재홍 과장(Tel. 3703-2153)

1.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현황

- 행정자치부 규제는 주민등록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소방법 등 28개 법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지방행정지원 관련 규제와 소방법 등 안전관련 규제로 대별할 수 있음
- 1998년도에는 소관규제 484건 중 214건을 폐지(44.2%)하고 119건을 개선한 바 있으며, 이후 법령정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는 등 47건이 증가하여 총 317건의 잔존규제에 대하여 1999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음

2. 잔존규제정비 추진명위

- 1999. 4. 13. 부처별 잔존규제 정비지침 확정

- 1999. 4 ~ 1999. 6. 행정자치부 잔존규제 정비방안 연구용역
 - 공공기관 : 시정개발연구원
 - 민간기관 : 고대 부속 정부학연구소
- 1999. 6 ~ 1999. 7. 16. 용역결과에 대한 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 1999. 7. 21 ~ 1999. 8. 3. 정비검토대상에 대한 행정복지심사소위원회 심사
- 1999. 8. 20 ~ 1999. 9. 10.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심사(제39차, 제42차)

3. 정비결과

1) 정비방향

- 행정자치부 잔존규제 317건을 대상으로 존치불가피 여부와 규제품질 개선 필요성 유무를 검토하여
 - 진입규제와 과도한 영업제한은 규제목적에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폐지 또는 완화하고
 - 소방관련 규제는 안전을 확보하면서 규제수준을 합리화하여 기업의 부담완화와 함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음

2) 정비결과

잔존규제 317건 중 폐지 16건, 개선 16건 등 32건(10.1%)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1998년 정비결과			1998년 정비 이후 변경					1999년 정비계획(안)			1999년 정비 후 잔존 규제수
당초 규제수	폐지	잔존 규제 (A)	국회 수정	재 심사	신설 심사	누락 등록	소계 (B)	정비 대상 (A+B)	폐지 등	개선	
484	△214	270	31	16	-	-	47	317	△16	16	301

3) 주요정비내용

가. 다중이용업의 허가시 소방시설 완비증명 폐지(소방법 제8조의 2)

■ 현황

- 다중이용업(지하음식점중 66㎡ 이상,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감상실,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허가시 소방관서의 방화시설 검사에 따른 완비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
 - ※ 소방시설 : 소화기, 피난설비, 경보설비, 방화문, 누전차단기 등

■ 문제점

-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화재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설치는 필요하나 이는 허가관청에서 소방관서의 확인결과를 통보받아 처리하면 될 것임에도 민원인에게 증명을 제출하도록 하여 과도한 부담 초래
 - ※ 유사제도로 건축허가시에는 소방관서의 동의에 근거해 건축허가 및 사용허가 처리

■ 규제정비 방안

- 다중이용업의 허가시 소방시설 완비증명 제출제도 폐지
 - ※ 기관간 절차협의를 통해 시설확인절차 규정

나.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사전 검사대상 축소(소방법 제50조 1항, 영 제36조)

■ 현황

- 형식승인을 받고 생산하는 소방용기계·기구 등은 사전 또는 사후 제품검사(검정)를 받아야 함
 - ※ 사전 검사대상(30종) : 누전경보기, 감지기, 수신기, 소방호스,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소화약제 등
 - ※ 사후 검사대상(8종) : 방열복, 살수헤드, 결합금속구, 송수구, 방수총 등

다. 외국의 예 : 소화기·감지기 등 15종에 대한 사전검정제도 실시(소방법)

■ 문제점

- 소방용기계·기구는 형식승인을 받고 생산하며 생산된 제품이 형식승인에 미흡할 때에는 폐기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사전검사대상이 과다하여 제조자에게 과도한 부담초래
 - 쉽게 성능의 결함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유도등 등까지 사전검사 실시로 업계 부담

초래

■ 규제정비 방안

- 검사필요성이 적은 제품은 검사대상에서 제외
- 검사대상품목을 전면 재검토하여 사전검사대상 축소
 - 불합격률이 현저히 낮은 품목과 유도등 등 성능의 이상유무를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는 제품은 사후검사로 전환하되 불량품을 제조한 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강화

■ 소방용기계·기구 형식승인 대상 축소(소방법 제50조 제3항)

- 현황
 - 소방용기계·기구 등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라. 형식승인 대상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 소화약제
- 방염제, 소방펌프, 소방펌프자동차, 소방용 흡수관, 소방호스
- 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옥내소화전 방수구, 옥외소화전
- 송수구, 방수구, 연결밸브, 피난사다리, 구조대, 방열복
- 유도등, 비상등, 누전경보기 등

■ 문제점

- 형식검정이 기술진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기술의 신속한 제품화를 저해
- 형식검정이 기술경쟁을 통한 국제적 비교우위 확보보다 소극적인 국내시장 방어수단으로 이용

■ 규제정비 방안

- 형식승인 필요성이 적은 제품은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
 - 형식승인대상을 전면 재검토하여 기계기구의 성능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도, 외국의 예 등을 감안하여 규제의 국제 수준화

■ 기부금품모집 허가제 개선

- 현황 : 기부금품의 모집허가 대상
 - 국제적으로 행해지는 구제사업
 -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사업

-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한 규제는 허가대상 외에 공개된 장소에서만 접수받고 접수시설을 장부에 기재할 의무, 기부금품 모집·사용 등의 확인을 위한 검사, 법령위반시 허가취소, 기부금품의 목적외 사용금지, 사용결과 공개의무 등이 있음

※ 1998~1999년중 기부금품 모집허가는 수재민돕기 등 13건, 1,626억원을 모집(100억이상 4건, 10~100억 4건, 10억 미만 3건)

■ 문제점

- 기부금품모집은 구제, 구휼, 자선사업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허가하고, 그외 공익목적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사업에 한해 허가함으로써 지나친 규제로 민간활동 위축
- 최근에 급증한 복지수요, 환경문제, 반부패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능력의 한계를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 대두
- 선진국의 경우 복지예산 등의 축소로 초래된 국가와 시민사회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비영리조직의 활성화에 주력

■ 규제정비 방안

- 기부금품의 모집허가 대상범위 확대
-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 참여가 필요한 사업을 구체화하여 건전한 시민단체의 활동 활성화 도모
- 기부금품모집의 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대폭 이양

4. 잔존규제 정비계획 세부내역

1) 총괄표

정비계획 총괄

분 야	계	폐지 등	개 선	존 치
계	317	16	16	301
공직자윤리법	1			1
개인정보보호법	3			3
정보공개법	2			2
새마을금고법	8			8
지방공무원법	3			3
지방행정공제회법	3			3
인감증명법	6			6
행정사법	3	3(폐지 3)		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3			23
기부금품모집규제법	7		1	7
지적법	18			18
온천법	16		1	16
오지개발촉진법	1			1
도서개발촉진법	1			1
자전거이용활성화법	2			2
농어촌도로정비법	7			7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7			7
유선 및 도선사업법	30			30
재난관리법	5			5
자연재해대책법	12	3(폐지)		9

분 야	계	폐지 등	개 선	존 치
소하천정비법	7			7
소방행정공제회법	3			9
소방공무원임용령	2			2
소방법	117	4(폐지3, 통합1)	14	113
국가공무원법	2			2
사법시험령	2			2
공무원신체검사규정	1			1
공무원임용시험령	1			1
연금법	3			3
지방재정법	3			3
지방공기업법	2			2
주민등록법	10			10
비영리법인설립 및 감독 에 관한 규칙	6	6 (등록제외)		-

2) 법령별 정비내용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규제등록 번 호	규제사무명	1998계획	용역 결과	부처 의견	위원회 의결결과
1	설립허가 신청 및 허가	개선	존치	존치	규제등록 제외
3	설립등기의 보고	개선	존치	존치	"
5	예산서 등 제출	개선	존치	존치	"
9	파산신청의 신고	존치	존치	존치	"
11	잔여재산의 처분허가	존치	존치	존치	"
12	청산종결의 신고	존치	존치	존치	"

행정사법

규제등록 번 호	규제사무명	1998계획	용역 결과	부처 의견	위원회 의결결과
82	행정사의 등록업무	폐지	존치	개선	폐지 -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 방안에 의거 2002. 1.
86	행정사업무 수행중 성실 및 지득사실 누설금지	폐지	존치	개선	”
97	행정사의 결격사유	폐지	존치	개선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규제등록 번 호	규제사무명	1998계획	용역 결과	부처 의견	위원회 의결결과
139	기부금품모집허가	개선	존치	존치	개선 - 허가대상 확대 및 내용의 구체화

온천법

규제등록 번 호	규제사무명	1998계획	용역 결과	부처 의견	위원회 의결결과
152	온천 전문기관 지정제한	존치	-	존치	개선 - 등록요건 규정 후 등록

자연재해대책법

규제등록 번 호	규제사무명	1998계획	용역 결과	부처 의견	위원회 의결결과
280	재해영향평가서 대행자의 자격제한	존치	존치	존치	폐지 -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제정과 연계해서 법령정 비
281	재해영향평가서 대행자의	존치	폐지 및 존치	존치	
282	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미이행시 공사중지명령	개선	폐지 및 존치	존치	

소방법

규제등록 번 호	규제사무명	1998계획	용역 결과	부처 의견	위원회 의결결과
308	소방대상물개수명령	존치	개선	개선	- 대상물 등을 구체 적으로 규정토록 개선
309	건축허가·사용승인 동의	개선	개선	개선	- 동의여부에 대한 화신이 없을 경우 동의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
310	다중 이용업의 허가시 소방시설완비 명령	존치	개선 및 폐지	존치	폐지 - 기관간 절차협의 를 통해 시설확인 절차규정
327	위험물 공동저장의 금지	개선	존치 및 개선	존치	- 성상이 같은 위험 물의 경우 공동저 장범위 확대
333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	개선	개선	존치	- 위험물의 품명변 경을 신고제로 완화 - 허가제 외 대상 확대

규제등록 번 호	규제사무명	1998계획	용역 결 과	부 처 의 건	위원회 의결결과
338	관계전문단체에 완공검사 의뢰의무	존치	존치 및 개선	존치	- 폐지(필요시 검사 규정에 단서로 의 뢰근거 설정)
346	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자	개선	개선	개선	- 범죄경력에 따른 제한을 소방법 위 반에 한정하고 탱 크성능시험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349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시 즉시 선임의무	개선	존치 및 존치	개선	- 위험물 안전관리 자 선정 관련 규제 에 통합
395	자체점검할 수 있는 자의 자격제한	존치	개선	존치	- 자체점검중 작동 기능 점검은 소방 설비 기술사 및 소 방설비기사(전기 +기계)포함
396	소방시설점검업 등록	존치	존치 및 개선	존치	- 사무실 바닥 기준 폐지
400	등록취소·정지	개선	존치 및 개선	존치	- 임원에 대한 제한 규정 삭제
403	소방시설관리자 응시자격 제한	개선	존치 및 폐지	존치	- 실무위주 시험으 로 전환
410	사전·사후 제품검사 제도	존치	개선	존치	- 사전검사 대상을 축소하고 사후 검 사 전환 - 필요시 위반자에 대한 벌칙강화
411	제조업자의 관련 시설구비 및 심사	개선	존치 및 개선	존치	- 폐지(핵심과제 시 보완방안 등 검토)

규제등록 번호	규제사무명	1998계획	용역 결과	부처 의견	위원회 의결결과
414	형식승인대상 기계·기구	존치	개선	존치	- 승인제외 대상 확대
442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의 등록	존치	존치 및 폐지	존치	- 사무실 면적기준
443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의 영업범위 제한	존치	존치 및 폐지	개선	- 설계업 등록기준 중 전용 사무실 확보 기준 폐지
446	소방시설 설계·감리업 자격제한	개선	존치 및 폐지	존치	- 임원에 대한 제한 폐지

· 법무부 소관 규제개혁

* 집필자 : 최동윤 서기관(Tel. 3703-2177)

1. 개요

1) 규제근거법령

- 법무부는 변호사법, 공증인법, 국적법, 법률구조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6개 법률 및 하위법령에 88개의 규제가 있었으나, 이후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일부 규제가 폐지되고 인권법, 민영교도소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법 제정 등으로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어 1999. 12. 31일 현재 111개의 규제를 운영중에 있음

2) 규제성질별 분류

- 변호사·공증인 업무관련 규제는 사업자단체 및 전문자격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주 내용임

- 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법률구조, 보호관찰 업무관련 규제는 재소자관리, 범죄예방, 법률구조, 갇생보호사업에 대한 인허가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여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재외동포, 국적, 출입국 업무관련 규제는 기본적인 국가법질서와 내외국인의 국·내외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3)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가. 변호사법관련 분야

-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에 따라 변호사단체의 설립과 가입을 자율화하고,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 등록권을 국가기관에 환수하도록 함
- 변호사 검직제한 및 변호사업무에 대한 광고제한을 완화하여 변호사업의 자율성을 높일도록 하였음

나. 공증인법관련 분야

- 외국인도 공증인이 될 수 있도록 국적제한을 폐지함
- 공증인보조자 고용시 소속 지방검찰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신고제로 전환함
- 법인의사록 인증사무는 회사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이 취급토록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여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함

다. 국적법관련 분야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 출생자에게 특별귀화 절차없이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국적회복, 이탈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라. 출입국관리법관련 분야

- 외국단체 설립시 주무부처에 등록하고 연 2회 활동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부응하고 내국인단체와의 형평을 고려, 이를 폐지함
- 장기체류 외국인의 신원확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외국인 지문찍기제도는 내·외국인

형평차원에서 대상연령을 상향(17 → 20세 이상) 조정함

- 기업투자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함(5종→1종)

4)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존치규제의 품질향상 및 신설규제 억제
-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 규제 변동사항 등록의 철저

5)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구 분	1998년 정비			1999년 변경					1999년 정비				정비 후 규제수
	당초 규제수	폐지	잔존 규제	신설 (재심사 포함)	국회 수정	법제처 심사 수정 등	누락 등록	소계	대상	폐지	제외	개선	
법무부	88	11	77	34					111		109	2	111

2.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1) 공증협회 설립 · 가입의 자율화

-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에 따라 공증협회 설립 · 가입을 자율화하고
- 공증인 총수의 5분의 1이상으로 공증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 1999. 6. 29일 시행

2) 재외동포의 국내활동 여건 개선(체류기간 연장 등)

-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에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종전의 1년에서 2년으로 상향조정 하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국내 체류

활동상 편의를 제공함

- 재외동포의 사증발급 신청서류 중 신원보증서와 초청장을 폐지하여 재외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만으로 사증 발급토록 함
-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경우 종전에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단순 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999. 12. 3일 시행

3) 외국인유학생 출입국제도 개선

- 외국인유학생의 출입국제도 규제개혁방안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의 신원보증서 제출을 폐지하고, 외국인유학생 출입국 절차 개선
 - ※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유학생 출입국제도 규제개혁방안 참조(p. 358)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999. 12. 3일 시행

3. 신설·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1)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신설·강화규제 심사 현황

구 분	계	신 설	강 화
심사대상	34	29	5
철 회	-	-	-
개선권고	1	1	-

2) 심사 및 조정내역

가. 변호사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6, 강화 4)

- 판사, 검사 기타 재판, 수사기관 직원들의 소속기관 사건에 대한 변호사 소개 금지
- 판사, 검사 기타 재판, 수사기관 직원과의 연고관계 선전금지
- 변호사선임서의 지방변호사회 경우 법적의무화
- 수임관련 장부 작성·비치
- 변호사 등의 사건유치목적 수사기관 등의 출입금지
- 변호사 광고 허용
- 판사, 검사 등으로 재직중 취급사건의 수임금지(강화)
- 비리행위로 퇴직한 판사, 검사 등에 대한 변호사 등록 거부(강화)
- 비위전력자의 변호사사무직원 채용제한(강화)
- 변호사 징계처분 강화(강화)

■ 심사결과(1999. 2. 12) : 원안통과

나. 인권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 국민인권위원회 위원자격사칭의 금지
- 국민인권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 국민인권위원회 유사명칭 사용 금지
- 국민인권위원회 조사·사찰업무 거부·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 심사결과(1999. 2. 12) : 원안통과

다.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법무부에 출국금지실무위원회 신설

■ 심사결과(1999. 3. 8) : 개선권고

- 출국금지실무위원회의 심사기능을 삭제하고 자문기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추후 법 개정시 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라. 공증인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공증협회의 설립요건 : 공증인 수의 1/5 이상
- 심사결과(1999. 6. 2) : 원안통과

마. 민영교도소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5)
 - 교정업무의 민간위탁
 - 위탁계약의 체결
 - 위탁계약의 해지
 - 교정법인의 임원
 - 교정법인의 예산 및 결산
 - 교정법인의 합병
 - 민영교도소 등의 조직 등
 - 과태료
 - 수용대상자 선정기준
 - 위탁업무의 정지
 - 교정법인의 설립
 - 교정법인의 재산
 - 교정법인의 해산
 - 민영교도소 등의 시설 등
 -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 심사결과(1999. 10. 22) : 원안통과

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하여 단순노무행위, 사행업종 등의 국내활동 제한
- 심사결과(1999. 11. 5) : 원안통과

사.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국내거소신고의 첨부서류 : 영주권 사본, 호적등본 등
 - 외국국적동포 체류기간 연장 불허 사유 : 출입국관리법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등
- 심사결과(1999. 11. 5) : 원안통과

· 경찰청 소관 규제개혁

* 집필자 : 권용식 사무관(Tel. 3703-2154)

1. 개요

1) 규제근거법령

- 경찰청관련 규제는 범죄예방 및 법질서유지 등 국민생활의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가 대부분이며, 경비업법·풍속영업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유실물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청원경찰법 등 12개 법률과 21개의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총 382개의 규제를 운영하고 있음

2) 규제성질별 분류

- 이를 성질별로 나누어 보면 도로교통관련 규제가 가장 많아 140개이고, 총포 및 사격장 관련 규제가 66개, 경비관련 규제가 46개 등으로 되어 있음
- 질서유지 및 공공안전확보관련 규제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화, 중복규제의 정비, 실효성이 미미한 규제의 정비에 중점을 두었으며,
- 풍속영업 및 사행행위영업관련 규제는 공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계의 자율성 신장과 경쟁이 촉진되도록 하고,
 - 경비업 및 청원경찰제도는 안전확보 범위 내에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업주의 자율과 책임강화에 중점을 두어 정비하였음

3)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 1998년도 규제개혁 종합지침에 따라 경찰청에서 1998년 10월 31일 총 382건의 규제 중 148건을 폐지하고 90건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규제정비계획을 제출
- 1998년도 법령별 정비실적을 보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규제가 83건이 정비되었고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규제가 35건, 용역경비업법에 의한 규제가 26건 등이

정비되어, 총 382건의 규제 중 148건(38.7%)을 폐지하고 90건(23.6%)을 개선

법률별 규제관련 주요개선 내용표

법 률	주요정비내용
용역경비업법	• 「경비업법」으로 제명 개정 • 용역경비협회의 설립과 가입을 자유화 •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연령을 3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전당포영업법	• 법을 폐지하여 각종 규제 철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음반판매업 등을 풍속영업에서 제외 • 노래연습장 등 4개 업종은 문화관광부로 이관하고 풍속 영업법상의 시설기준 등 삭제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 14세 미만의 자 중 사격선수와 후보자는 사격 가능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 총포 · 도검 · 화약류 관련 각종 민원 처리기간 단축
사행행위규제 및 처벌특례법	• 사행행위 영업방법, 사행기구 제조 · 판매업자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중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폐지
미성년자보호법	• 청소년보호법에 일부내용 흡수하고 법 폐지
유실물법	• 관련업소가 인식표 해당 물건을 받았을 때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 등 폐지
도로교통법	• 응용학과 시험 폐지 • 연습운전 면허의 효력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60세 미만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정기 적성검사 폐지 •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의무 폐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 경찰청장의 경우회에 대한 감독명령 범위 조정 • 경찰청장의 경우회 임원 승인 대상 축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72시간에서 10일로 연장

4)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경찰청 잔존규제 234건(개선+존치)과 1998 규제정비과정에서 변경 9건(국회 5, 법제처 등 4), 신설 6건 등 총 249건을 대상으로 '존치불가피규제'와 '정비대상규제'로 분류
- '존치불가피규제'에 대해서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 확보 등을 위한 규제의 품질개선 방안 강구
- '정비대상규제'는 폐지·개선 등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비
 - 개별검토와 병행하여 근거법률별로 패키지(package) 방식으로 규제폐지 또는 개선 및 규제의 통·폐합방안 검토

5)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가. 심사경위

■ 잔존규제 정비추진

- 1999. 4~6. 18. 경찰청 잔존규제 정비방안 용역연구
(공공기관 : 시정개발연구원, 민간기관 : 고대 정부학연구소)
- 1999. 6. 21~7. 3. 용역결과에 대한 경찰청 의견 수렴
- 1999. 7. 5~7. 22. 용역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비 검토대상 확정
- 1999. 7. 23. 정비검토대상에 대한 행정사회 전문가심사소위원회 심사
(폐지 등 21, 개선 10, 이 중 쟁점 4(폐지 4))
- 1999. 8.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심사

나. 정비결과

구 분	1998년 정비			1999년 변경					1999년 정비				정비 후 존치 규제수
	당초 규제수	폐지	잔존 규제	신설 (재심사 포함)	국회 수정	법제처 심사 수정 등	누락 등록	소계	대상	폐지	제외	개선	
경찰청	382	148	234	6	5	4	-	15	249	19	1	10	229

총괄현황

분 야	계	폐 지	개 선	규제제외	규제통합	존 치
계	249	6 (2.4%)	10 (4.0%)	1	13	219 (88.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4	3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					8
청원경찰법	11	1	4			6
경비업법	22				1	2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31				2	29
유실물법	5					5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14		1			1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50	1	1		1	47
도로교통법	102	1	4	1	9	87

다. 세부내역

■ 폐지 6건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3건(유사명칭 사용금지, 총회의결사항의 승인, 경우회 감독)
- 청원경찰법 1건(청원경찰 해임명령)
- 도로교통법 1건(자동차 통행구간 고시)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1건(총포소지의 신체상 적성기준)
 - 단,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상 경우회감독규정은 국회심의과정에서 경우회에 대한 일반적 감독은 폐지되었으나, 다만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서류제출 명령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존치함
 - ※ 지난 1981년부터 경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실적이 없고 향후 교부할 가능성도 적은 점을 감안시 동 조항의 경우회 감독규정은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고 판단되어 국회의견을 수용함

■ 개선 10건

- 청원경찰법 4건(청원경찰 배치승인, 청원경찰 제복착용 의무, 청원경찰 징계요구, 청원경찰의 배치승인·임용승인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임용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1건(사격장 허가 취소)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1건(화약류의 사용 허가)
- 도로교통법 4건(운전전문학원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 주취중 운전금지, 전문학원취소시 동일장소에서 지정금지, 전문학원 취소시 설립자 등의 지정금지)

2.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1) 경비업관련 규제개혁

가. 경비협회의 설립 및 가입의무 규제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하나의 경비협회'를 설립하도록 협회 수를 제한하고
-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경비협회의 회원이 되도록 강제하는 등 경비업자의 협회가입 선택권을 제한

■ 개선

- 5인 이상의 경비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개선
- 경비업자의 협회가입 의무규정 삭제

나. 기타 경비업관련 규제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경비지도사 자격취득기회 제한
 - 경비지도사 응시연령을 30세 이상으로 과다제한하여 젊고 유능한 인력의 자격취득 기회를 제한
-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강제
 -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

기 위하여 공제 · 공탁 ·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손해배상 수단(유형)을 제한

- 공제사업승인

- 경비협회가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법률에서 강제한 것은 경비협회 설립이 임의화되고 공제사업이 공제사업자와 공제가입자간의 사항인 점을 감안시 과도한 규제임

- 허가신청 제출서류

- 경비업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자본금에 관한 서류를 각 2부씩 제출토록 되어 있어 국민의 불편을 초래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병과규정

- 감독관청의 지시 · 명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결격사유가 있거나 무자격 경비원 · 경비지도사에 대한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타 위반사항과 형평에 맞지 않음

- 개선

- 경비지도사 응시연령 제한을 3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개선
- 손해배상 수단으로서 공제 · 공탁 · 이행보증보험 가입규정 폐지
- 공제사업승인 폐지
- 허가처분불응시 형사처벌규제 폐지

- 시행시기

- 1999. 10. 1일 시행

2) 총포 · 도검 · 화약류관련 규제개혁

수출용 총포 등의 구조 및 성능 제조기준 규제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총포 등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구조 및 성능 등 제조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토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주문을 받아도 국내법규에 저촉되면 제조할 수 없는 등 규제가 획일적임

- 개선방안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개정하여, 수출목적으로 총포 등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제조기술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예외 인정

■ 시행시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 1999. 3. 31일 공포

3) 총포소지허가 처리기간의 단축 등 규제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총포·도검 등의 소지허가, 화약류제조 및 관리보안책임자 면허신청시 그 처리기간이 행정편의 위주로 길게 되어 있어 불합리

■ 개선방안

- 총포·도검 등 소지 허가업무 처리기간의 단축으로 민원편의 제공
- 총포소지허가 및 허가갱신 신청 : 15일에서 10일로 단축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신청 : 15일에서 7일로 단축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해임신고 : 15일에서 10일로 단축
- 허가 및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 12일에서 10일로 단축 등

■ 시행시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개정, 1999. 7. 15일 공포

4) 도로교통관련 규제개혁

가. 운전면허 갱신관련 규제개혁

■ 현황 및 문제점

- 면허증 갱신제도
 - 2종 면허소지자는 정기적성검사는 면제하되 면허취득 후 매 7년마다 운전면허증 갱신필요
 -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까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하다고 결정
- 면허증 갱신관련 절차

- 경찰서에서 면허증 갱신을 신청할 경우 약 2주 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를 재차 방문해야만 갱신면허증 수령 가능
- 주간에 바쁜 민원인은 야간에 면허증을 찾을 수 없어 불편

■ 개선방안

- 면허증 갱신주기를 현행 매 7년에서 매 9년으로 확대
 - 갱신의무 미이행시에도 우선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하고, 동 정지기간에도 갱신의무 미이행시 면허취소
 - 운전면허증의 신규·갱신교부시 파출소에서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자택에서 수령 가능

■ 시행시기

- 면허증 갱신주기 확대 : 2001. 1. 시행추진
- 면허증 갱신관련 절차개선 : 2000. 1. 10

나. 운전면허증 기재사항 중 주소지변경시 신고의무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운전면허증 기재사항(주소등)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신고의무
 - 미신고시 3만원의 과태료처분(1995. 7. 1일부터 시행)
- 1995년 이전에 변경사유가 발생했던 사람도 1995년 이후 운전면허증 갱신시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됨
 - 소급입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이라는 민원 발생

■ 개선방안

- 면허증 주소지변경시 신고의무 폐지

■ 시행시기

- 2000. 1. 1

3. 신설·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1)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경찰청은 1999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설규제 5건, 강화규제 14건, 내용심사 1건 등 총 20건의 신설·강화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함.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적절성 측면에서 심사한 결과, 신설규제 5건 중 1건(20%)과 강화규제 14건 중 4건(28.6%)에 대하여 이를 철회 또는 개선하도록 권고함

신설·강화규제 심사 현황

구 분	계	신 설	강 화	내용심사
심사대상	20	5	14	1
철회	2	1	1	-
개선권고	3	-	3	-

2) 심사 및 조정내역

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확대(강화)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

- 현행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듣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마약·대마·알콜중독자 등

- 추가

- ①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장애발생 경우 포함(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반신마비가 된 사람,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등)
- ②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정지처분 대상이 된 사람으로서 1년간 누산벌점이 80점 이상을 초과한 사람

• 심사결과

- 교통사고 등으로 후천적 사유가 있는 경우 : 규제강화 동의

제2종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후천적 신체장애를 입은 자에 대한 운전의 결격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므로 이들을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포함

-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초과자 : 규제강화 동의

운전기록 불량자에 대한 운전자격 결격여부 검증필요

■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지정 및 통지의무 부과(강화)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내용을 매분기별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심사결과 : 규제강화 동의

수시적성검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구축이 불가피함

■ 법령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강화)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

- 제한속도보다 20km/h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과 운전자가 미확인된 경우 고용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과의 균형을 위해 고용주 등에 부과하는 금액을 상향조정

• 심사결과 : 철회권고

- 속도위반으로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었을 경우 관할 경찰서의 출두요구에 응할시에는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고 불응시에는 운전자 미확인으로 간주,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선량한 운전자보다 악의의 운전자가 더 유리하게 되는 제도의 불합리한 면이 있음

- 그러나 과태료를 2~3만원 더 인상한다고 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태료 인상은 불인정

- 경찰청은 속도위반으로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었을 경우 부과하는 벌칙 중 확인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과 고용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예 : 가능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개정안

■ 화약류의 종류 추가(강화)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
 - 법 제2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파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과염소산염을 주로한 화약, 산화납 또는 과산화바륨을 주로한 화약, 브르모산염을 주로한 화약, 클롬산납을 주로한 화약에 '황산알루미늄을 주로한 화약'을 추가함
- 심사결과 : 규제강화 동의
 - 화약류는 일반위험물과 달리 소량으로 대량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는 제조·수입부터 사용할 때까지 전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바
 - 현행 법규에서 규제하고 있는 화약보다 위력이 강한 황산알루미늄을 주로 한 화약이 아무런 규제없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어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화약류의 범주에 포함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총포개조·수리업자의 개조·수리명세부 비치 및 작성(강화)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
 -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의 제조업자·판매업자·화약류저장소 설치자 또는 화약류 사용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에 '총포개조·수리업자는 총포개조·수리 명세부'를 비치하도록 추가함
- 심사결과 : 규제강화 동의
 - 불법 개·변조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허가업자가 총포를 개조·수리할 때 장부에 작업내용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개조·수리의 근거를 확보함은 물론, 불법 개·변조행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게 하여 불법행위를 스스로 방지케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주거지역 등의 범위(내용심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의원입법 과정에서 '집회·시위장소가 주거지역 등인 경우 금지·제한통고 규정'의 신설(1999. 5. 24일 공포)에 따른 내용심사규정임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

- 법 제8조 제3항에서 ‘주거지역’이라 함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인접한 공터·상가·도로 등을 포함하고,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등이 있는 장소를 말함

■ 심사결과 : 내용심사 동의

- 법에서 일정한 경우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만 정하고 그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관성있는 법집행과 피규제자에 대해 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 범위의 규정이 필요
- 규제의 입법취지가 집회·시위의 자유보장과 함께 집회·시위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을 감안할 때 동 사항에 대한 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질서유지인의 명단통보(강화)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

- 질서유지인의 명단은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 등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심사결과 : 규제강화 동의

- 집회·시위의 안전보장 및 이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질서유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질서유지인은 질서유지의무 등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질서유지인 명단의 서면제출은 필요
- 현재 시행규칙에 신고서식을 정해 사실상 서면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동 조항을 규정하는 것임

라. 청원경찰법 개정안

■ 법령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증액(강화)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

-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지방경찰청장의 승인 없이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 법령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기존의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증액

• 심사결과 : 규제강화 동의

- 청원경찰은 시설내 경찰권을 행사하므로 청원경찰을 지도·감독하는 청원주의 법령 위반시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이 필요하며, 규제개혁차원에서 '해임명령'과 '징계의 무조항'이 삭제되므로 청원주와 청원경찰에 대한 유일한 강제적 규제수단인 과태료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과태료규정 제정당시(1980년)의 화폐가치와 현재의 화폐가치의 변화, 경비업법 등 유사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500만원 이하'로의 상한증액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마. 경비업법 개정안

■ 경비업의 허가업종 추가(강화)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

- 특수경비업무를 경비업 허가업종으로 추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방호 및 도난·화재 기타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서 특수경비업무를 경비업법상 경비업종으로 추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함

- 기계경비업무를 경비업허가업종으로 추가

경비업자가 기계경비시설(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관제시설)을 갖추어 경비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계경비시설 설치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해 감지한 정보를 당해 경비대상시설 이외의 장소에 설치한 기기로 송신하고 이를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서 기계경비업무를 정의하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함

• 심사결과 : 규제강화 동의

-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능력 있는 법인으로 제한하고 그 자격요건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고, 경비업법 적용대상인 경비업 허가분야들(시설 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등 5개분야)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제조치임

- 기계경비업에 대한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기존의 경비업이 허가제로 되어 있으며 경비의뢰자인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적인 성격의 영업을 하고 있는 바 기계경비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허가제 전환

에 동의함

■ 허가사항 변경 등 신고(강화)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

- 기존의 허가사항 등 변경신고의무에 특수경비업자가 특수경비업무를 도급받아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허가관청에 신고토록 의무를 추가함

• 심사결과 : 규제강화 동의

-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업자 및 특수경비원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규제이고, 허가제를 채택하는 상황에서 변경신고는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됨

■ 법인임원의 결격사유(강화)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

- 기존의 법인임원 결격사유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에 특수경비업 법인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함

- 특수경비업 법인임원의 결격사유

① 상기 법인임원 결격사유 외에

② 이 법 또는 경비업무에 관한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심사결과 : 개선권고

-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일반경비업 법인임원보다 결격사유를 강화함은 필요하며, 특히 도입초기 건전한 운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규제라고 판단됨

- 단, 제5조 제2항 제3호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법인임원의 결격사유는 법에서 규정할 입법사항으로서 법의 위임범위를 이탈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토록 함

■ 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허가(신설)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

-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갱신허가를 받도록 신설함

- 심사결과 : 규제신설 동의

- 경찰행정력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규제임. 무단 휴·폐업 업체 등 부실업체를 정비하여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 부실업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두는 것은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됨

- 경비업자의 의무 등(누락, 강화)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

- 경비업자 등의 의무(부분폐지로 누락규제임)로서,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경비원은 시설주 등의 관리권행사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 수행,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금지, 경비업자 등의 성실의무, 직무상 비밀누설금지, 경비업자의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금지 등
- 특수경비업자의 의무로서, 경비업무의 중단을 금지하고, 부득이 중단할 경우를 대비하여 특수경비업무 개시신고시 경비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신고해야 하며, 특수경비원에 대해 필요시 단체행동권을 제한 등

- 심사결과 : 등록조치 및 개선권고

- 경비업자 등의 의무는 경비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 등록조치하되, 특수경비원에 대한 단체행동권 제한은 과도한 규제일 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가 있고, 쟁의행위를 전면 인정하는 경우 경비중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필요최소한의 경우에만 쟁의행위를 제한하도록 노동부와 협의한 수정안으로 개선권고하되, 동 조항의 헌법적 검토와 관련하여 법제처와 협의토록 권고함

- 기계경비업무관련 특칙의무(신설)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

- 기계경비업자의 이상정보 수신시 대응체제 구축 및 사실확인·대응조치의무
- 기계경비업자의 오경보 방지 설명의무 및 관련서류 비치의무(신설)

- 심사결과 : 규제신설 동의

- 국내 경비업무 관련 현실을 고려할 때 부적격 기계경비업체에 대한 제재와 경비의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비업관련제도의 건전한 제도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다만,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대응체제, 대응조치 등 기계경비업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오경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업자에 대한 의무부과 등 규제 필요성은

인정되고, 기계경비업의 낮은 서비스 제공수준(높은 오경보율)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강화)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

-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기존의 일반경비원 결격사유인 파산선고 미복권자, 금치산자,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미경과자 등 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함

- 18세 미만 또는 58세 이상인 자(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할 것)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 심사결과 : 규제강화 동의

-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일반경비원 결격사유보다 특수경비원 결격사유를 강화함은 필요한 규제라고 봄. 제도시행 초기 대폭적인 인력수요에 따른 경비인력의 질 저하 가능성에 따른 예방조치로 필요한 규제임

■ 특수경비관련 무기대여절차 및 휴대기준(신설)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

- 특수경비관련 시설주가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케할 필요가 있을 때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경찰서장으로부터 무기를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기휴대에 관한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함

• 심사결과 : 규제신설 동의

- 무기사고를 예방하고 무기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무기대여 및 휴대절차를 규정함은 필요한 규제임. 기존의 청원경찰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담당하기 위한 일관성 확보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임

■ 특수경비원에 대한 해임명령(신설)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

-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법 제11조 제2항의 결격사유(18세 미만 또는 58세 이상인 자(남자의 경우 군필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경비업자에 대하여 해임을 명하도록 함

- 심사결과 : 철회권고

-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 해임명령제도를 과도한 신분상 불이익규정으로 1999년 경찰청 잔존규제 정비계획(1999. 9. 3)에서 폐지한 바 있으므로 이에 균형을 맞추고,
- 결격사유가 발생한 특수경비원 발견시 법 제21조(감독규정) 등에 의거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규제를 신설할 의의가 미약하여 이를 철회토록 함

- 법령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누락 및 강화)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

-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신고 불이행자
-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 배치 · 폐지신고 불이행자
-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미선임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심사결과 : 규제강화 동의

-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함은 타당함

4. 누락규제 등록현황

1) 누락규제 목록

가. 경비업자 등의 의무(누락규제)

※ 1998년 규제정비시 부분폐지한 것을 규제전체의 폐지로 착오한 사항

- 규제내용(경비업법 제7조 제1항 내지 제5항)

-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경비원은 시설주 등의 관리권행사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 등

나. 경비원 명부의 작성 · 비치의무(누락규제 : 규제분류상 착오)

- 규제내용(경비업법 제18조 제1항)

- 경비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함

다. 법령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누락 및 강화규제 : 규제분류상 착오)

■ 규제내용(경비업법 제27조)

-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신고 불이행자
-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미선임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누락규제의 등록

- 전 1항의 가, 나, 다항의 규제는 심사를 거쳐 등록조치

. 청소년보호관련 규제개혁

* 집필자 : 최동윤 서기관(Tel. 3703-2177)

1. 개요

1) 규제 근거법령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1999. 12. 31일 현재 25개의 규제를 운영하고 있음

2) 규제성질별 분류

- 청소년보호관련 규제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기준설정, 의무 부과, 금지규정 등이 주요내용임

3)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 청소년보호법이 의원입법으로 개정되어 국회 통과(1998. 12. 24)

- 청소년보호법령상의 23개 규제신설 · 등록

4)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종래 청소년관련 법령에서 각기 상이하게 규정되었던 청소년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통일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 개별법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던 청소년연령을 일원화함으로써 법 집행상의 혼란 방지 및 영업자들의 법 준수율 제고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보호법상 규제의 세부내용 규정

구 분	1998년 정비			1999년 변경					1999년 정비				정비 후 존치 규제수
	당초 규제수	폐지	잔존 규제	신설 (재심사 포함)	국회 수정	법제처 심사 수정 등	누락 등록	소계	대상	폐지	제외	개선	
청 소 년 보호위원회	23	-	23	2	-	-	-	25	25	-	25	-	25

5)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2.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연령도 19세로 통일
- 영화진흥법, 공연법,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에 관한 법률의 청소년연령기준도 조속히 통일하도록 입법 추진

3. 신설·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1)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신설·강화규제 심사 현황

구 분	계	신 설	강 화
심사대상	12	2	10
철 회	-	-	-
개선권고	-	-	-

2) 심사 및 조정내역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10)

-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의 결정기준
-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 청소년유해 표시의무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배포시 연령확인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분·격리방법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확대
-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의무
- 청소년통행금지 등의 설정(신설)
-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유해 표시의무
- 과징금부과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대상매체물의 범위(신설)

■ 심사결과(1999. 4. 24) : 원안 통과

Ⅰ 제7절 Ⅰ

교육 분야

* 집필자 : 최동운 서기관(Tel. 3703-2177)

. 개요

1. 규제 및 근거법령 현황

1) 규제근거법령

-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22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1999. 12. 31일 현재 143건의 규제를 보유하고 있음

2) 규제의 특성

- 교육분야 규제는 주로 학교의 설립·인가, 학사운영, 학생 전·입학, 졸업, 학원 설립 운영, 교과용 도서 발행, 교원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 개인의 교육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고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준에 관한 사항과

- 공교육 활동을 지원·조장하는 교육 행정의 기본 목적에 따라 교육 여건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한 규제
- 교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하여 사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 등을 정하며, 초·중등학교 교육의 정상 운영과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교육 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 등이 주 내용임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1) 편입학·전학·졸업관련 분야

가. 조기진급·졸업관련 규제완화

- 5세 아동의 조기입학을 학급당 인원이 39명 이하일 경우에만, 생년월일 순으로 허용토록 함으로써, 인구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취학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횟수를 초등학교에서 1회 중·고등학교에서 1회로 제한하고 대상자를 학년별 학생수의 상위 1%로 제한하고 있음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횟수와 대상 학생수의 제한을 폐지하여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조기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도록 함

나. 귀국학생 편입학 규제완화

-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의 경우 외국학교와 국내학교간 수학기간 등의 차이로 인해 편·입학시 학년 산정에 불합리한 사항이 많음
- 귀국학생이 편입학할 경우 총 수학기간에 의해 학교급 및 학년을 결정하되 학제의 차이가 있는 경우 1학기(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학년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하여 학년 산정에 탄력성을 부여함
- 귀국학생의 고등학교 특례입학의 요건으로 외국에서의 재학기간을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2개 학년'을 마치고도 기간산정을 인정받지 못하여 민원이 야기되어 왔음
- 재학기간을 '2년 이상 또는 2개 학년'으로 함으로써 기간산정에 탄력성을 부여함

다. 국비유학생 선발제도 개선

- 국비유학생 응시연령이 30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우수한 졸업생들이 나이제한 때문에 응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국비유학생이 외국에서 유학을 마친 후 국내 지정연구기관 등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선진 응용기술을 계속 습득할 기회가 제한됨
- 국비유학생 응시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국비유학생의 유학기간 종료 후 복무의무 대상을 국가정책상으로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한정하고 그 이외에는 폐지함

라.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시험제도 개선

- 과학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입학전형시험시 필기시험을 금지해 왔으나 학교의 자율성 확대차원에서 폐지함

마. 각종 학교 졸업자의 대학 편입학 제한 완화

- 전문대학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 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졸업한 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학, 전문대학 등에 편입을 허용함

2) 교육기관 설립 · 운영관련 분야

가. 기술대학 설립 규제 개선

- 학교법인이 아니면 기술대학을 설립할 수 없으며, 기술대학을 설립 ·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기술대학 이외의 다른 대학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기술대학의 발전 및 활성화에 저해하고 있음
- 기술대학을 설립 ·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기술대학 이외 다른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학교법인 회계업무관련 규제 완화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와 계획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현황은 예 · 결산서 제출로 파악이 가능하므로 신고제를 폐지함
- 대학 · 사범대학 · 산업대학 등 입학정원이 500인 이상인 학교의 경우 공인회계사를 감

사로 선임하고, 입학정원 2,000명 이상인 대학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중부담을 주고 있음

- 입학정원 2,000명 이상인 대학이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함

3) 학원 · 사회교육관련 분야

• 학원이 학교교육을 보완한다는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학원의 교습가능 과목범위,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등 학원운영관련 규제가 과도하여 학원운영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학원강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동일학원 내에서도 복수의 교습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단일 교습과정 등록제한을 폐지함

- 학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습과정을 117개 과정으로 제한하는 것을 완화, 유사 교습과정도 학원설립을 허용함

4) 교원자격 검정관련 분야

• 교원자격 취득 신청기간을 졸업 후 3년으로 제한하고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교원자격관련 절차적 규제가 심하여 우수한 교원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등학교 이상 학력으로 규정한 제한사항을 폐지하여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사자격 취득이 가능토록 함

-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어 자격요건을 갖추어도 3년을 경과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여 언제든지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 교사 공개채용시, 교원은 퇴직한 후 1~3년이 경과되어야 응시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이 제한사항을 폐지하여 퇴직한 후 곧바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국 · 공립대학의 경우 외국인인 초빙교원 등 계약직 교원으로만 채용이 가능하고 교육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1998년도 폐지규제를 제외한 잔존규제 130건을 대상으로 ‘존치 불가피 규제’와 ‘정비 대상 규제’로 분류
- ‘존치 불가피 규제’에 대하여는 중·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 대학입학지원방법 개선 등 규제품질개선 방안 강구
- ‘정비대상규제’는 폐지·개선 등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비
 - 개별검토와 병행하여 근거법률별로 패키지(package) 방식으로 규제폐지 또는 통·폐합방안 검토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가. 심사경위

- 1999. 4. 13. 부처별 잔존규제 정비지침 확정
- 1999. 4~1999. 6. 15. 교육부 잔존규제 정비방안 용역연구
 - 공공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 민간기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1999. 6. 16~1999. 7. 21. 용역결과에 대한 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후 정비 검토 대상 확정
- 1999. 7. 22. 정비검토대상에 대한 행정사회심사소위원회 심사

나. 정비 결과

구 분	1998년 정비			1999년 변경					1999년 정비				정비 후 존치 규제수
	당초 규제수	폐지	잔존 규제	신설 (재심사 포함)	국회 수정	법제처 심사 수정 등	누락 등록	소계	대상	폐지	제외	개선	
교육부	272	142	130	10	3	8	-	21	151	30	94	27	121

.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1. 대학원 및 대학관련 분야

1) 교육대학과 산업대학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설치 허용

- 교육대학과 산업대학에는 특수대학원만 설립토록 하고, 특수대학원에는 박사학위과정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교육대학과 산업대학에 특수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설립을 허용하여 박사학위과정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예정(2000년 상반기)

2) 대학원 정원 자율화

- 대학은 대학원별, 계열별, 과정별로 대학원 정원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교육부 장관이 최소한의 인력·시설기준만 정하고, 대학원 정원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각 대학은 계열별 정원조정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예정(2000년 상반기)

3) 대학지원방법 제한 폐지

- 대학 특차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이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2년부터 대학자율로 학생 수시모집이 가능하게 되어 특차모집의 의의가 없어지므로 동규정 폐지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예정(2000년 하반기)

2. 초·중등교육관련 분야

1) 초등학교 전학절차 개선

- 초등학교 학생이 주소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모가 직접 관련서류를 전입예정학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전·출입학교간 행정 내부협조를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기개정, 시행중

2) 고등학교 입학제도 개선

- 고등학교의 전기학교에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에 입학할 수 없음
 - 전기학교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후기학교에 응시·입학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00년 상반기)

3. 교과용 도서관련 분야

1) 수업용 교재 제한 완화

- 교육부 발행의 1종 도서, 교육부 검정의 2종 도서, 학교장 등이 선택하여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 이외의 교재는 수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학교의 교제 선택폭을 넓히기 위하여 1·2종 도서 77종을 자율발행도서로 하고, 단계적으로 1·2종 도서 축소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예정(2000년 상반기)

2) 규정위반에 대한 처분내용의 명확화

- 2종 도서의 제작자 또는 발행자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교재 발행을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자의적 판단에 의해 행정처분이 좌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1년 이하로 명확히 정함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예정(2000년 상반기)

3)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 채택권유 금지규정 폐지

- 교과용 도서의 저작자, 발행자는 교과용 도서 및 교과용 도서를 이용한 부교재의 채택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당경쟁 및 부조리 방지의 실효성이 없고, 상호결탁에 의한 부조리는 형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채택권유 금지규정을 폐지함
 - ※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 채택관련 과당경쟁과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나, 저작자와 발행자의 판촉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음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예정(2000년 상반기)

4. 폐교재산관련 분야

1) 폐교재산 수의계약 대부·매각 허용

- 지방재정법 시행령 상 공유재산은 교육적 활용 희망자라 하더라도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도록 규제되어 있어서, 폐교재산의 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음
- 앞으로는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로 활용하거나 주민복지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문화예술관련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개선함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시행(1999. 12. 27)

2) 폐교재산 대부요율 인하 및 대부기간 연장

- 지방재정법 시행령 상 공유재산의 대부 요율은 3/100 이상, 대부 기간은 5년 이내임
- 폐교 재산을 교육적 용도 등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대부 요율을 1/100 이상으로, 대부

-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함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 시행(1999. 12. 27)

3) 폐교재산 용도변경 및 개축 허용(법 10조 및 영 5조)

- 현행 수도법상 상수원 보호 구역 안에 있는 폐교 재산을 다른 교육용으로 용도 변경 및 개축할 수 없음
- 오염의 정도가 작은 경우에는 다른 교육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및 개축을 허용하도록 특례 인정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 시행(1999. 12. 27)

4) 폐교재산관련 공원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 국립공원 지역에 있는 폐교재산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상의 용도변경 절차의 적용으로 활용이 제한되어 있음
-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폐교재산이 자연교육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공원 관리청의 공원 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원 계획 변경 · 개축 등의 경우 사업 시행 허가를 한 것으로 보도록 특례 인정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 시행(1999. 12. 27)

5) 폐교재산 대부기간 연장 및 영구 시설물 축조 허용

-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은 대부기간 5년, 영구시설물 축조 불가 등 계약 조건이 제한되어 있음
-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조건을 대부기간 10년으로 연장하고, 영구 시설물도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 시행(1999. 12. 27)

·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및 조정

1.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신설·강화규제 심사 현황

구 분	계	신 설	강 화
심사대상	7	5	2
철 회	1	1	-
개선권고	-	-	-

2. 심사 및 조정내역

1) 유치원 설립·운영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1)

- 유치원 원사는 원칙적으로 2층 이하의 건축물로 하되, 대피시설을 갖춘 경우 3층도 가능
- 유치원 원사는 설립자의 소유로 하되, 5년 이상 재산사용 승락을 받은 경우 타인 소유 시설 설립 가능
- 유치원 원사 및 유원장의 기준면적 산출방법(강화)

■ 심사결과(1999. 2. 9, 1999. 5. 9 재심사) : 원안통과 2건(신설 1, 강화 1), 철회권고(신설 1)

- 타인 재산을 사용하는 임대유치원 증가와 유치원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중단 사태 발생간에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으며
- 유치원 설립비용 부담의 경감을 통해 유치원 설립을 활성화시키고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원사의 설립자 소유 규제는 철회권고

2) 교육공무원 임용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대학교육원에 대하여 특정대학 출신 1/2 이상 신규채용 금지
- 심사결과(1999. 9. 20) : 원안통과

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대부·매각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상의 수익계약 특례 인정
 -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용도변경에 대한 수도법의 특례 인정
- 심사결과(1999. 11. 19) : 원안통과

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내용심사 1)
 - 교원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 명칭의 변경, 통합, 신설(강화)
 - 교원의 무시험검정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기본 이수영역의 이수학점을 9학점 이상에서 14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내용심사)
- 심사결과(1999. 11. 25) : 원안통과
 - 단, 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장애유형 표시방법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시행요망
 - 장애영역 폐지로 인한 특수학교 교사의 전문성 저해 여부
 - 시각장애·청각장애의 장애영역 구분, 존치 필요성
 - 정교사 1급자격증 장애영역 구분의 타당성

5)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내용심사 1)
 -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분양안내서에 명기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신설)

-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기준 : 공동주택은 주택분양가격의 8/1000, 단독주택은 토지분양가격의 15/1000(내용심사)

■ 심사결과(1999. 11. 26) : 원안통과

Ⅰ 제8절 Ⅰ

문화관광 분야

* 집필자 : 권태성 과장(Tel. 3703-2177)

. 개요

1. 규제 및 근거법령 현황

1) 규제근거법령

-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체육·종교·신문·방송 등 소관업무가 다양한 관계로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방송법 등 33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을 규제 근거법령으로 하고 있음

2) 규제성질별 분류

- 문화관광분야 규제사무는 공연분야, 영화·음반·비디오물분야, 출판·정기간행물분야, 방송분야, 관광분야, 체육·청소년 육성분야, 도서관·박물관·미술관·향교·문화원 운영분야, 문화재관리 분야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 문화예술진흥법 · 공연법 · 관광진흥법 등 33개 법률에 규정된 외국 영화 · 음반 · 비디오 물 수입추천 등 국익보호 및 사회 질서문란 억제에 위한 규제, 체육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기준 등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규제, 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 관광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건전한 관광문화 정착을 위한 규제, 문화재보호를 위한 규제 등 총 540건임
- 이 중 공연 · 영화 · 음반 · 출판분야 등 예술 · 창작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등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폐지 269건, 개선 101건을 추진함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1999년도에는 잔존규제 271건과 신설된 규제 등 44건을 포함한 315건을 대상으로 예술 · 창작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문화 · 관광사업 · 체육시설업 등 사업자들과의 자율경쟁 촉진을 통한 대국민 문화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정비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1) 심사경위

- 1999. 4. 13. 부처별 잔존규제 정비지침 확정
- 1999. 4 ~ 1999. 6. 15. 문화관광부 잔존규제 정비방안 용역연구
 - 공공기관 : 문화정책개발원
 - 민간기관 : 문화정책학회
- 1999. 6. 16 ~ 1999. 7. 21. 용역결과에 대한 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후 정비검토대상 확정
- 1999. 7. 22. 전문가 심사소위원회 심사
- 1999. 9. 10.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심사
- 1999. 9. 17.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의결

2) 정비결과

- 문화관광부는 잔존규제 244건중 폐지 14건, 개선 22건, 문화재청은 71건 중 폐지 1건, 개선 17건으로 정비

구 분	1998년 정비			1999년 변경					1999년 정비				정비 후 잔존 규제수
	당초 규제수	폐지	잔존 규제 (A)	신설 (재심사 포함)	국회 수정	법제처 심사 수정 등	재분류	소계 (B)	정비 대상 (A+B)	폐지	제외	개선	
계	540	269	271	19	26	4	-5	44	315	15	261	39	300
문화부	404	202	202	17	26	4	-5	42	244	14	208	22	230
문화재청	136	67	69	2	0	0	0	2	71	1	53	17	70

.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1. 문화·예술 분야

1) 문예진흥기금관련 규제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등 모금대상시설 운영자는 당해 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모금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토록 함
- 모금대상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모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모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나. 개선방안

- 문화예술지원 재원에 대한 국고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최소한 4,500억원의 조성목표 달성될 때(2004년)까지만 모금의 납부 및 자료제출(법 부칙 제2조 제1항)
- 문예진흥기금 조성 목표액 4,500억원이 달성되거나 미달성시에도 2005년부터는 모금제도 폐지(법 부칙 제2조 제1항)

다. 시행시기

- 2000. 1월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여 2000. 7월 시행 예정

2)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비율 규제완화

가. 현황 · 문제점

- 건축 연면적 $1만m^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 $1만m^2$)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장식을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 미술장식품의 종류도 조형예술물과 환경조형물로 한정함으로써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음

나. 개선방안

- 설치비율 완화
 - 현행 건축비용의 1% 이상에서 연면적 $2만m^2$ 이하는 0.7%, $2만m^2$ 초과는 $2만m^2$ 까지 0.7% + $2만m^2$ 초과분의 0.5%로 조정
 - 시·군지역 건축물의 설치비용은 일반건축물 0.5~0.7%, 공동주택 0.1~0.7%로 조정
- 미술장식품 범위 확대
 - 현행 회화, 조각 등 조형예술물과 벽화, 분수대 등 환경조형물 외에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공간 확보시는 설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건축물의 선택범위 확대

다. 시행시기

- 2000. 1월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여 2000. 7월 시행 예정

2. 관광 분야

관광사업 운영 자율성 향상을 위한 규제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관광호텔 등급 결정 권한을 특급관광호텔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일반관광호텔은 시·도 지사가 수행함에 따라 실제 이용객이 느끼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해외여행객 증가추세에 따라 더욱 많은 국외여행인솔자 양성이 필요함에도 국외여행인솔자를 양성하기 위해 과도한 교육시간 등이 소요
-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불필요하게 제한

나. 개선방안

- 관광호텔 등급결정 권한을 민간에 위탁 (법 제9조)
- 국외여행 인솔자 소양 및 양성 교육시간 축소 및 지정교육기관 확대(국외여행인솔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요령 개정)
-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 불량을 사유로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폐지(법 제18조 제1항 제4호 삭제)

다. 시행시기

- 1999. 1월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1999. 3월부터 시행
-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기관 등의 지정 등에 관한 요령(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20호) 개정하여 1999. 7월부터 시행

3. 체육·청소년 분야

1) 체육시설 및 직장체육 운영관련 규제완화

가. 현황·문제점

-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재원의 하나로 경기장, 수영장, 골프장 등 8개 체육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입장료의 10% 범위 내)을 부과·징수해 옴으로써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
- 직장 내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시·도지사가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 직장 내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할 직장의 범위를 상시근무인원이 500인 이상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기업체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의무 위반시 기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직장의 범위를 공공단체의 기관, 기업체 또는 단체로 하여 기업체를 규제하고 있음

나. 개선방안

- 체육시설에 대한 부가금 징수를 모두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법 제19조)
- 직장 내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사항을 폐지함(시행령 제16조)
-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를 상시근무인원 1,000인 이상인 국가기관·공공단체로 축소하여 기업체의 부담을 없애고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에 관하여는 권장사항으로 유도하여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제17조 제1항)
- 직장운동경기부를 두어야 할 직장을 국가기관·공공단체로 축소하고 기업체를 제외함으로써 기업체의 규제사항을 폐지하고 권장 사항으로 유도함(시행령 제17조 제2항)

다. 시행시기

- 2000. 1월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0. 2월부터 시행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부가금 징수는 국회에서 존치

2) 골프장 설치·운영관련 규제개선

가. 현황·문제점

- 골프장업 부지면적 제한(108만 m^2 이하) 폐지, 골프장 클럽하우스 면적 제한 완화, 골프장부지 내 경기안내원 숙소, 조경용 정자 설치제한 폐지 등으로 골프장업 자율성과 효율성을 도모
- 회원제 골프장업의 연간 사업계획 승인건수가 20건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제한하고 있으나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회원제골프장 연간사업 승인건수(20건) 제한 폐지

나. 시행시기

- 2000. 2월까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2000. 2월부터 시행

3) 청소년수련지구조성 규제완화

가. 현황·문제점

-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수련지구를 지정, 조성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시·도의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조성계획 수립·시행 곤란

나. 개선방안

- 시·도지사가 지역별 수련활동 환경 등 실정을 고려하여 수련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고시 관련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법 제41조)

다. 시행시기

- 1999. 1월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여 1999. 7월부터 시행

4. 음반·비디오물 분야

1) 컴퓨터게임장 이용요금 관련 규제개선

가. 개선방안

- 업계자율적으로 결정할 컴퓨터게임장 내 게임물의 이용요금을 300원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동 사항을 폐지(고시 제3조)

나. 시행시기

-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8-34호 폐지, 1999. 8. 27일 시행

2) 음반·비디오물·게임산업관련 규제개선

- 제3장 제26절 문화산업관련 규제개혁방안 참조

5. 정기간행물 분야

정기간행물 유사제호 등록금지 규제개선

가. 개선방안

- 정기간행물 등록의 유사제호 등록금지 조항을 폐지하여 제호선택의 범위를 확대(법 제7조 제7항)

나. 시행시기

-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1999. 7월부터 시행

6. 문화재관리 분야

가. 현황·문제점

-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하고 국민들이 함께 향유해야 하며,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문화재 소유자·관리자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제약하고 있음

나. 개선방안

- 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
 - 현행 : 한번 지정되면 영구적
 - 개선 : 10년 단위로 일제조사하여 조정(해제, 확대 등) 추진
- 국외 반출 문화재의 단순한 반출기간 연장 경우 국무회의 심의 폐지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교부 사실 보고 폐지
- 등록 취소된 문화재 수리기술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완화
- 문화재 수리기술자의 자격요건(실무경력 5년 등) 폐지 및 결격사유 완화(실측·설계기술자 제외)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포함)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완화(등록 취소 → 업무정지로, 업무정지 6월 → 3월로 완화 등)
- 문화재 매매업의 휴·폐업시 휴업신고 폐지(폐업신고 존치)
- 문화재 발굴 후 발굴조사 완료보고서 제출기간의 연장(2년 이내)
- 발굴비 지원 건설공사의 범위 확대(단독주택 : 대지 100평 → 150평 등)

다. 시행시기

- 2000년 상반기 중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2000. 7월 시행 예정

· 신설·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1.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의 개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16건의 규제가 신설되고 20건의 규제가 강화되었음
- 문화관광부·문화재청에서는 당초 43건(신설21, 강화22건)을 신설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심사요청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신설강화의 필요성이 없고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 7건은 철회토록 하고 규제수준이 과도한 17건은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음

신설·강화규제 심사 현황

구 분	계	신 설	강 화
심사대상	43	21	22
철회	7	5	2
개선권고	17	7	10

2. 심사 및 조정내역

1)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신설 2건, 강화 5건, 내용심사 2건)

- 휴양콘도미니엄의 공유자 및 회원보호에 관한 근거조항, 고속도로 주변에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허가 사항을 신설
- 등급 외 관광호텔 및 가족호텔 내 오락·공연시설의 제한, 관광공연장업 신설 및 등록 기준설정, 관광사업의 종류에 국제회의시설업과 시내순환 관광업을 추가하고, 휴양콘도미니엄 및 종합휴양업의 분양 및 회원모집시기의 조정, 관광호텔 등록기준 등 수세

식 화장실 설치 및 외국어 구사 종사원 고용의무 사항 등을 강화

- 법률에서 위임된 유원시설업 종류 재구분에 관한 사항과 관광숙박업 등급결정 위탁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규제의 내용심사를 요청

■ 심사결과(1999. 3. 8) : 원안통과 5건, 개선권고 2건

- 휴양콘도미니엄의 공유자 및 회원보호에 관한사항 규정, 고속도로 주변에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등급외 관광호텔 및 가족호텔내 오락·공연시설의 설치제한, 관광사업의 종류에 국제회의 시설업과 시내순환 관광업을 추가하는 사항, 휴양콘도미니엄 및 종합휴양업의 분양 및 회원모집시기의 조정, 관광호텔 등록기준 등 수세식 화장실 설치 및 외국어 구사 종사원 고용의무 사항 등은 원안통과 시키고
- 관광공연장업 신설 및 등록기준설정에 관해서는 시설기준은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호텔 등록기준 등 수세식 화장실 설치 및 외국어 구사 종사원 고용의무 사항은 수세식 화장실 설치 의무규정을 삭제하도록 개선권고함

2)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개정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강화 1건)

- 고속도로변·국도변 지주이용 광고물 설치(커브구간이 아닌 1km 이상의 직선구간에 설치)제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요청함

■ 심사결과(1999. 3. 23) : 철회권고 1건

- 실효성이 없고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철회권고함

3) 공연법 시행령 개정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 (신설 4건, 강화 2건)

-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실시, 무대전문인의 등급별 검정시험자격 기준,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검정기관지정, 300석 이상의 민간 공연장에 무대예술전문인 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요청함
- 공연장에서는 재해대처계획 등을 제출토록 하고 공연장업은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심사결과(1999. 4. 24) : 원안통과 3건, 개선권고 2건, 철회권고 1건

- 무대예술전문인의 등급별 검정시험자격기준, 교육기관·검정기관지정 신설과 공연장업의 등록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은 원안통과 시키고
-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실시의 근거조항 신설과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개선을 권고하고, 3백석 이상의 민간공연장에 무대예술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철회 권고함

4)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신설 1건, 강화 3건)

- 종합게임장 지정 및 운영규정 신설과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추가, 유통관련업자(노래연습장·게임장업 이관) 등록시설기준 준수사항 마련을 위한 규제강화를 요청함

■ 심사결과(1999. 4. 24) : 개선권고 4건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신설 3건)

- 문화산업 전문조항 요건,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방송국·방송법인의 영상 프로그램 독립제작사 지원 등을 신설할 수 있도록 요청함

■ 심사결과(1999. 4. 24) : 개선권고 3건

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신설 1건, 강화 2건)

- 휴양콘도미니엄 회원증 발급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확인을 받은 후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 신설과 유원시설업 종자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호텔등급결정 평가요원의 자격기준 설정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청함

■ 심사결과(1999. 5. 19) : 철회 1건, 개선권고 2건

- 휴양콘도미니엄 회원증 발급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확인을 받은 후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 신설은 철회시키고, 유원시설업 종자사에 대한

안전교육실시, 호텔등급결정 평가요원의 자격기준 설정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함

7)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신설 1건, 강화 2건)

-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연수과정 개설을 신설하고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기준, 청소년 수련시설 시설기준 규제 강화를 요청함

■ 심사결과(1999. 5. 19) : 원안통과 1건, 개선권고 2건

-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은 원안 통과시키고,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과정 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과 청소년 수련시설 시설기준 규제강화 사항은 개선을 권고함

8) 저작권법에 따른 국정교과서 저작료에 관한 고시 개정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신설 1건)

- 국정교과서에 실린 산문, 운문, 음악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료 보상기준을 정함

■ 심사결과(1999. 6. 23) : 원안통과 1건

9)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강화 1건)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운영허가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조치 강화를 요청함

■ 심사결과(1999. 7. 20) : 원안통과 1건

1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신설 2건, 강화 3건)

-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시 사전협의 및 지표조사 의무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제한 신설
-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일정기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 교부 및 전수교육 보조

자 선정해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지역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청함

■ 심사결과(1999. 7. 20) : 원안통과 4건, 철회권고 1건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보조자 선정 해제와 관련 전수교육 보조자가 전수교육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보조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규제 강화가 불필요하므로 철회를 권고함

11) 저작권법 개정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신설 2건)

- 사적복제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사적복제 요율을 최초 판매가액의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보상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보상금 청구단체를 지정하도록 함

■ 심사결과(1999. 10. 15) : 원안통과 2건

12) 영화진흥법 개정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신설 4건, 강화3건)

- 영화진흥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사용 금지, 등급외 등급 신설 및 전용영화관 도입 추진에 따른 규제 신설과
- 등급외 등급 영화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한 광고제한, 전용영화관 허가제 도입, 등급외 등급영화의 비디오물 제작금지, 전용영화관 부가모금 도입 등 규제신설 또는 강화를 요청함

■ 심사결과(1999. 10. 22) : 원안통과 2건, 철회권고 3건, 개선권고 2건

- 규제개혁의 기본원칙과 맞지 않는 영화진흥위원회와 유사명칭 사용금지, 준조세적 성격의 전용영화관 부가모금제와 위반시 과태료 신설규제는 철회를 권고함
- 전용영화관 시·도지사 허가제 신설규제와 등급외 영화선전물의 배포·전송·게시를 제한하는 강화규제는 타 영화관(시·군·구 등록)과의 형평성을 고려 광고금지는 영업허용과 배치되는 점이 있으므로 일몰제를 적용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선을 권고함

- 영화진흥법 개정안 국회심의과정에서 등급외 등급 신설에 따른 법률 개정안은 모두 삭제됨

13) 무대예술전문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 (내용심사 2건)

- 공연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도입한 무대예술전문인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기준, 무대예술인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심사를 요청

■ 심사결과(1999. 12. 3) : 원안통과 2건

Ⅰ 제9절 Ⅰ

노동 분야

* 집필자 : 최동윤 서기관(Tel. 3703-2177)

. 개요

1. 규제 및 근거법령 현황

가. 규제 근거법령

- 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 19개 법률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420개의 기존규제가 있었으나, 이후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일부규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어 1999. 12. 31일 현재 263개의 규제가 있음

나. 규제성질별 분류

- 노동분야 관련규제는 그 성질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직업소개사업, 장애인의 고용촉진분야 등 직업안정 분야, 실업 및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으로서의 세부기준을 정한 고용보험 분야, 근로자의 직업훈련과 기술능력 향상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등 능력개발 분야,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기구 및 권한, 의무 등을 규율하는 노사관계 분야, 근로자의 각종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등 근로기준 분야, 산업재해 예

방 및 최적의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 분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가. 국가기술자격 등록제 개선 및 보수교육 제도 폐지

-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자 등록제를 교부제로 전환하고 갱신등록제도를 폐지하여 연간 100여만명에 달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 합격자들이 검정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을 방문하여 자격증을 등록 또는 갱신등록하여야 하는 불편이 없어졌으며, 등록 미 이행으로 인한 자격 정지 등 불이익 방지
- 또한 기계기사 등 259종목의 자격취득자가 5년마다 1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규정을 폐지하여 보수교육대상자(연간 10여만명)는 앞으로는 보수교육 이수를 위하여 2~3일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불편 해소

구 분	종 전	정 비
신규등록	합격 후 60일 내 (등록시까지 자격정지)	등록제를 교부제로 전환 (필요시 신청교부)
갱신등록	매 5년마다 갱신등록	폐 지
보수교육	매 5년마다 14시간 이상	원칙적으로 폐지(자율화)

나. 직업소개사업의 활성화

- 직업소개사업으로의 진입을 자유롭게 하고 경쟁을 유도하여 직업정보의 수집·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무료직업소개업은 주로 공공단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큰 부작용의 소지가 없으므로 신고제로 전환하고
 -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일정요건을 갖추어 행정기관 등록토록 하는 등록제로 개선
- 직업소개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를 폐지하여 자율적인 책임의식과 경쟁을 유도

구 분	종 전	정 비
무료직업소개사업	허 가 제	신고제로 전환
유료직업소개사업	허 가 제	등록제로 전환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교육	연 4시간 이상 의무교육 · 훈련 부과	폐 지(자율화)
직업정보제공사업	사업자에게 간행물 납본 의무	폐 지(자율화)

다. 고용보험제도의 개선

-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앞당기고 사업주도 고용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구 분	종 전	정 비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12월 이상	이직일 이전 12개월(기준기간) 중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6월 이상
고용유지 지원제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휴업수당지원금, 고용유지훈련지원금 등 기업주에 대한 지원제도가 너무 복잡하여 활용 미흡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로 통합 · 단순화

라. 직업훈련시장의 경쟁 유도

- 기존의 규제위주의 직업훈련제도를 대폭 정비하여 훈련기준을 준수하느냐에 따라 '기준 훈련' 과 '기준 외 훈련' 으로 구분하고 훈련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훈련시

구 분	종전(직업훈련기본법)	정비(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훈련의무	1,000인 이상 사업장 직업훈련 의무 부과	폐지
훈련기준	모든 직업훈련에 적용	기준 훈련과정에 적용
교 재	국가편찬 · 검인 정교재 사용	자율적으로 교재선정 · 편찬사용
교 사	면허받은 훈련교사가 담당	자율성 대폭부여(자격증소지)
훈련인정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훈련만 인정(영리법인 참여 제한)	영리 · 비영리법인 · 개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

장에 경쟁체제를 유도

마. 공인노무사 관련규제의 대폭 정비

-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을 반영하고 공인노무사법 관련 규제의 대폭 정비

구 분	종 전	정 비
허가·신고	겸직시 허가, 사무소 설치·이전·휴업시 신고	폐지(자율화)
가입의무	개업노무사는 공인노무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	〃
보고의무	업무실적·결산 및 직무보조원 임명시 보고	〃
교육의무	자질향상 교육	〃
사원수 규제	노무법인은 5인 이상, 합동사무소는 3인 이상의 공인노무사를 두어야 함	〃

바. 산업안전관련 규제의 합리화

-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용기회가 확대되도록 산업안전분야 규제를 폐지·완화

구 분	종 전	정 비
일반 건강진단기관	지정제	폐지
유해·위험기계 자체검사 실시자	교육이수 의무	폐지
표준안전관리비	제1차 금속산업 계상 의무 부과	폐지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결과	3년간 보존	2년간 보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후 보고	폐지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1998년도 폐지규제를 제외한 잔존규제 209건을 대상으로 ‘존치불가피규제’와 ‘정비대상규제’로 분류
- ‘존치불가피규제’에 대하여는 근로자 권익보호, 실업안정대책 강구, 산업현장 안전유지 등을 위한 규제품질 개선방안 강구
- ‘정비대상규제’는 폐지·개선 등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비
 - 개별검토와 병행하여 근거법률별로 패키지(package) 방식으로 규제 폐지 또는 통·폐합방안 검토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가. 심사경위

- 1999. 4. 13. 부처별 잔존규제 정비지침 확정
- 1999. 4~1999. 6. 15. 노동부 잔존규제 정비방안 용역연구
 - 공공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민간기관 : 서울산업대 부설 안전과학연구소
- 1999. 6. 16~1999. 7. 21. 용역결과에 대한 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후 정비검토대

행정사회심사소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직 책
위 원 장	안 문 석	고려대 교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원 (간사)	김 용 범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연구원
위 원	김 상 태	한국관광연구원 연구원
”	김 흥 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	김 선 수	한국노총 고문변호사, 숭실대교수
”	이 상 윤	연세대 교수, 노사정위원회 특위 위원
”	사공영호	평택대 교수

상 확정

• 1999. 7. 22.

정비검토대상에 대한 행정사회심사소위원회 심사

나. 정비결과

구 분	1998년 정비			1999년 변경					1999년 정비				정비 후 존치 규제수
	당초 규제수	폐지	잔존 규제	신설 (재심사 포함)	국회 수정	법제처 심사 수정 등	누락 등록	소계	대상	폐지	제외	개선	
노동부	420	211	209	40	-3	1	18	60	269	11	215	42	258

.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1. 고용정책 분야

가. 대량고용 변동신고제 폐지

-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량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해당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근로기준법(제31조 제4항)에서도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어 2중 규제가 되고, 또 신고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폐지

고용정책기본법	근로기준법 신고대상
• 300인 미만 : 30인 이상 • 300인 이상 : 10/100	• 99인 이하 : 10인 이상 • 100~999인 : 10퍼센트 이상 • 1,000인 이상 : 100명 이상

-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2. 직업안정 분야

가.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제 개선

-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 ※ 노동조합에만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항만노동이 근로자 공급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음
-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제에 대한 제도 개선 문제는 제31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1999. 6. 4)에 따라 항만근로자의 단계별 상용화를 추진하되, 2002년 단위사업장 복수노조의 허용시점에 항운노조 가입의 개방(또는 항운노조 가입 폐쇄성의 지양), 복수노조의 허용, 근로자 파견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항운노조의 노동공급 독점의 지양 및 항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직업안정법 개정 예정(2002년)

나. 유료직업소개사업 가격고시제 합리화

- 유료직업소개소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요금 외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자율경쟁체제 도입 차원에서 직업소개사업 가격고시제를 폐지하여 서비스요금을 자율화하는 것이 일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가격고시제 폐지가 요금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상효과를 가져와 근로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 현재 상황하에서는 가격고시제를 존치하되, 직업소개사업 촉진과 근로자의 민간직업소개소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 유료직업소개사업 요금 합리화 방안
 - 등록제 운영실태 파악 및 진입장벽 완화 방안(규제일몰제 도입 방안 포함)
 - 전자직업소개소 제도 도입 및 활성화 방안
- 규제개혁위원회 보고 후, 직업안정법 개정 추진

다.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 사업주는 매년 3월말까지 장애인 고용계획을, 매반기 다음달 20일까지 실시 상황을 노

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장애인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규정(법 제38조)을 통해 장애인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2중 규제 완화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임

※ 취지에 대한 충분한 홍보 필요

-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정(2000년 상반기중)

3. 고용보험 분야

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입제도의 개선

- 실직자가 이직 후 1년 이내 재취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3년 이내 재취직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피보험자의 권익 보호
 - 고용보험법 개정(1999. 12. 31), 2000. 4. 1 시행

나. 구직급여 지급기간의 개선

- 실직자가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만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2개월 이내까지로 연장하여 실직자의 편의 도모
 - 고용보험법 개정(1999. 12. 31), 2000. 4. 1 시행

다. 조기재취직수당 지급기준의 개선

- 실업신고일로부터 일정한 대기기간 경과 후, 이직 전 사업주와 관련이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조기재취직수당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범위를 확대함
 - 고용보험법 개정(1999. 12. 31), 2000. 4. 1 시행

라. 이직사유에 의한 수급자격의 확대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정당한 이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이를 노동부령 등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실업급여가 가족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점을 감안하여 제한을 가급적 억제하고 수급자격을 확대함
 - 고용보험법 개정(1999. 12. 31), 2000. 4. 1 시행

마.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제도 개선

-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시, 자진신고 등의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있음
 - 추가징수 면제사례 확대 검토
 - 고용보험법 개정(1999. 12. 31), 2000. 4. 1 시행

고용보험관련제도 주요 개선사항

1. 고용보험 적용대상 범위 확대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
- 제외대상이었던 원양어업 중 원양봉수망어업, 원양채낚기어업의 선원도 포함

2. 실업급여 수급요건 확대

-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종전 60~210일에서 90~240일로 연장
- 실업급여 최저급여일액을 1일 최저구직급여일액의 70%에서 90%로 인상
-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10개월 → 1년), 피보험단위기간 축소(12월 → 6월)

3. 각종 장려금제도 신설 및 범위 확대

- 재고용장려금제도,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제도,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지원제도 등 신설
- 채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4. 종업원 인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

- 종전사업의 근로자 60% 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되거나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이 휴업·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지원

5. 기타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확대,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완화 등

4. 노사관계 분야

가. 노동조합 주요 변경사항 신고제의 통보제 전환

-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중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는 존치하되, 법정사항 변경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사후신고제로 전환 차원에서 변경된 법정사항 미신고 및 미통보관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삭제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예정(2000년 상반기)

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신고제 폐지

-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시,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단체협약 제도는 노사관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단체협약 체결시마다 그 사항을 신고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가 단체협약 내용 중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신청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법 제 31조 제3항을 개정하고, 단체 협약신고제 및 과태료 부과는 폐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예정(2000년 상반기)

다. 노사협의회 설치·운영관련 규제 완화

- 노사협의회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사협의회 설치·운영관련 규제 완화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예정(2000년 상반기)

현행	개선
• 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 이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되, 개최 시기는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벌칙은 현행대로 존치
•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협의회 설치 15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 이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협의회 규정 보관의무 및 노사협의회 설치신고 의무 부과 • 벌금은 폐지하고, 규정보관의무 및 설치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고충처리위원 임명을 의무화하고 • 이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고충처리위원 임명의 임의 규정화 • 벌금 폐지

5. 산업재해 · 산업안전 분야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 조합인가 설립기준 완화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사무조합 인가 설립은 사업주단체에만 인가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가입자가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도 보험사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가대상을 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1999. 12. 7), 2000. 7. 1 시행 예정

나. 산업안전보건관련 안전관리자 등 선임 보고제의 신고제 전환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시 노동관서에 대한 보고제로 되어 있음
 - 기업주와 노동부 장관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이므로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보고와 같은 형식을 취할 필요는 없으므로 통보제로 전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예정(2000. 9)

다. 산업안전관련 규제개혁 방안 추진

- 안전관리 시스템관련 중복 규제 합리화
 - 노동부의 공정안전보고서(PSM)과 산자부의 안전성향상계획서(SMS)관련 규제는 그

내용이 대동소이함에도 두기관에서 2중으로 작성(산업안전공단 PSM, 가스안전공사 SMS)토록 하고, 2중으로 심사·확인하고 있었으나

- 신·증설시 등 변경된 부분만 수정 작성하여 자체 보관하도록 하고, 5년마다 재작성해 심사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정기검사시 등 현장확인업무 수행시 확인토록 개선
- PSM·SMS 적용대상 기업에 대한 법정 안전검사주기 일원화 및 자체검사의 자율화
 - 각 법에 따라 검사주기가 다양하여, 수시로 공장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한 정기검사 중 공장가동을 중지하여야 하는 검사는 검사주기를 4년으로 통일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 화재보험법에 의한 안전검사 중 PSM·SMS적용 대상기업에 대한 것은 법적 의무화가 아닌 보험약관에 따라 결정하도록 관계 규정 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규정(고압가스안전관리법)·예방규정(소방법) 등을 1개의 문서로 통합작성하되 통합된 규정을 비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개선
- 압력용기의 완성·성능·정기검사 수수료 선정기준의 개선
 - 민간검사기관 도입을 추진하고, 과도한 수수료 징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상한선의 설정
- 수입안전밸브 성능검정에 대한 중복규제의 개선
 - 외국의 공인검사기관 검정을 필한 경우, 국내기관 성능검정을 면제하고, 타기관에서 검사 받은 것은 상호인정
- 휴지중인 설비에 대한 법정검사 면제
- 압력용기 수리시 검사제도의 개선
 - SMS 대상업체로서 자체 전문 인력·장비를 구비하여 수리하는 경우, 수리검사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경미한 수리는 검사면제
- 수력, 화력 및 복합발전설비의 정기검사주기 완화
 - 제작사 매뉴얼과 국제적 검사주기를 감안, 과도하게 엄격한 검사주기는 연장하거나 또는 검사면제(증기터빈 등 2년 → 4년, 열교환기 등 1년 → 2년, 수압관로 검사대상 제외)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선
 - 연료탱크의 연료를 타 종류로 교체시,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세정의무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대한 특별법, 화재보험법 등 개정 예정

라. 건설현장관련 규제개혁방안 추진

- 안전관리조직 정비
 - 산업안전보건법의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총 10개의 유사중복 조직을 2단계 시스템 총 2~5개 조직으로 축소 정비
- 안전점검체계 개선, 점검실명제 도입
 - 건설현장에 대한 외부기관 점검·방문을 가급적 제한하는 차원에서 '점검실명제'를 도입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만 점검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화(점검요원증 소지, 점검대장 비치의 법정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제도 개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위생분야에, 안전관리계획서는 구조물 품질·시공 및 주변안전대책에 중점을 두어 중복부분 최소화하고
 - 양 계획서 작성 대상공사의 대폭 축소(유해·위험방지계획서 8종 → 5종, 안전관리계획서 4종 → 2종)
- 안전관리비용체계 개선
 - 안전관리비를 그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
 - 표준안전관리비 → 근로자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공사안전관리비
 - 표준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안전목적)와 안전관리비(건설기술관리법, 주변피해예방 중점) 별도 책정
 - 표준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불법사용에 따른 벌칙규정 강화(표준안전관리비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1,000만원 이하, 안전관리비 : 부당사용시 벌칙 규정 신설)
- 안전관리 교육개선
 -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체계를 유지하면서,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총 7종의 이중적 교육을 5종의 교육으로 통합 축소
- 건설안전벌칙 개선
 - 현재의 벌칙규정이 너무 약하여 소액의 벌금을 납부하고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행 벌칙규정은 실제 최종 법원 판결시, 처

분자체가 미약하여 그 실효성이 약하여 사업주가 법을 재차 위반하는 사례 빈발

- 외국의 경우와 같이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 하고, 과태료 금액도 대폭 상향조정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상의 벌칙조항 등을 보완하여 사업주 등이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개정 예정

※ 산업안전 및 건설현장 안전관련 규제개혁추진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 311, 316 참고

· 신설·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1.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신설·강화규제 심사 현황

구 분	계	신 설	강 화
심사대상	47	33	14
철 회	9	7	2
개선권고	2	1	1

2. 심사 및 조정내역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건)

- 고용보험관련 채용장려금 지급 요건 : 이직자를 1분기 동안 5인 이상, 월평균근로자의 5/100 이상 채용한 경우, 임금액의 1/2을 6개월간 지급
- 실업급여 지급초기인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을 1일 7만원에서 6만원으로 하향 조정(월 최대 105만 → 90만원)

- 심사결과(1999. 1. 15) : 원안통과

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건)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최저임금법 적용 확대
- 심사결과(1999. 1. 22) : 원안통과

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건)
 - 사업주에게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의무 부과
 -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등 직장 내 성희롱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심사결과(1999. 2. 12) : 원안통과

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2)
 - 보건관리자의 자격(강화)
 - 50인 이상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부과(강화)
 - 행정처분에 의해 지정이 취소된 측정기관의 1년 이내 재지정 금지 (신설)
- 심사결과(1999. 4. 2) : 원안통과 1(신설), 철회권고 2(강화)
 - 강화규제 중 철회권고 2건은
 - 보건관리자 자격강화는 환경관리기사(대기분야)에 대하여도 현행대로 계속 자격을 주도록 권고하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강화는 노사협의회와 통합운영하는 방안 검토

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5)
 - 진폐작업환경측정기관 · 건강진단기관의 취소 후 1년 이내 재지정 금지
 - 진폐유소견판독조건 및 정밀건강진단대상자 명단통보
 - 진폐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의 대행지역 및 지정기관수의 제한
 - 진폐건강진단기관 지정시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등 첨부

- 진폐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독위원 위촉
- 심사결과(1999. 4. 2) : 원안통과 4, 철회권고 1
 - 철회권고한 진폐건강진단기관 지정시 입력 · 시설 · 장비 현황과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등 첨부는
 - 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위한 검사와 현지조사과정에서 의료기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신설 불필요함

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1, 강화 2)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에 관한 서류 및 직무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
 -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요원 1인이 월간 담당할 수 있는 기계 · 기구 및 설비별 대행한계
 -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 · 시설 · 설비기준 추가
 -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요건 신설 : 건강진단업무를 소홀히 한 때
 - 건강진단결과 보고 일정 명시 : 20일 이내에 결과표를 노동관서에 보고
 - 방호장치 수거검정 실시 : 제조 · 유통단계에서 방호장치 수거 검정
 - 검사합격을 받은 위험기계 · 기구의 주요 구조부 변경시 새로운 검사 실시
 - 기업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안전 · 보건관리대행 수수료를 노동부 장관이 고시
 -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최근 1년 이내 정도관리적합증명서류 제출
 - 기술지도 대상공사 중 4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기술사 등의 방문지도 의무
 -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강화) : 산업보건 실무경력 추가
 - 냉동창고, 호텔건설공사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확인을 6월에 1회에서 3월에 1회로 확대(강화)
- 심사결과(1999. 4. 28) : 원안통과 7건(신설 6, 강화 1), 철회권고 6건(신설 5, 강화 1)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비치서류 보존의무는 운영의 묘를 살리고 관련법령에 의거 사후지도감독이 가능하므로 규제신설 불필요
 - 지정검사기관 대행한계 규정은 지정검사기관 관리 · 감독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법규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 규제신설 불필요
 -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시설 · 설비기준은 사후감독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므로 규제신설

불필요

- 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 등의 요건은 기존 법령의 행정처분 등을 통해 규제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규제신설 불필요
- 건강진단결과 보고일정 명시는 법에서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시 20일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 규제신설 불필요
-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은 사후 지도감독을 통해 대행의 질을 높일 수 있으므로 규제강화 불필요

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5건)

- 보험급여(장의비 제외)산정기준의 최고한도 설정 : 노동부 장관이 고시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보험급여 산정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별도 기준 설정 : 통상근로계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
- 일정연령 이상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
- 유족연금 수급 의무화 : 유족보상 일시금제와 유족보상 연금제 병행 실시하였으나 유족보상 연금수급을 원칙으로 하고 50% 일시금제도 병행 실시
- 장의비의 최고·최저 보상금액 설정 : 노동부 장관이 고시

■ 심사결과(1999. 6. 4) : 원안통과

- 단, 장의비 지급기준 설정시 '소득비례분+정액분'에 최고한도를 추가하는 방안도 일응 검토하도록 권고

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8건)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 전산회계사, 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소자본창업지도사, 전자상거래관리사, 국제회의기획사 등 6개 자격 신설
- 자격신설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응시자격, 검정기준, 검정방법, 시험과목, 합격 결정기준, 검정의 위임·위탁

■ 심사결과(1999. 6. 30) : 원안통과 7, 개선권고 1

-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일정학력 이상자에게도 전문사무 1급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개선권고

-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기술자격제도 규제개혁방안과 자격검증위탁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권고

자. 고용보험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2)
 - 구직급여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도 부정수금액 추가징수
 - 훈련연장급여 지급기준(신설) : 법률상 근거 마련
 - 1억원 이상 고액금품 수령이 확실시 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유예
- 심사결과(1999. 10. 1) : 원안통과

차. 고용보험법 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건, 내용심사 5건)
 - 하도급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에게 하수급현황 자료제출 의무 부과
 - 채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여성 고용촉진장려금의 월지급 한도액 설정
 - 재고용장려금,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도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제한 대상에 포함
 - 내용심사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지원의 한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기준,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유예, 구직급여의 지급제한 등 5건임
- 심사결과(1999. 12. 17) : 원안통과 2건, 철회권고 1건
 - 하도급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에게 하수급현황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관련사항을 충분히 고려·검토한 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철회 권고

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건)
 - 복수노조의 경우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관철목적의 쟁의행위 금지
- 심사결과(1999. 12. 24) : 원안통과
 -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별도의견을 다음과 같이 의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규제개혁위 의견

〈권고사항〉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법안 상정시 다음 내용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이 법안 심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입법추진 양해

1. 전반적 의견

-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제도’는
 - 1997. 3. 국제경제위기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여건하에서 정치권의 합의 및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어렵게 도입되어
 -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02년부터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완전 금지되도록 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 이번 노동부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하여 동 금지규정을 완화하여, 사실상 급여금지규정을 무의미하게 하려는데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로서는 반대의 의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밝혀둠
- IMF 경제환란이 아직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불러 일으켜 결과적으로는 경제개혁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려되는 바가 큼
- 아울러,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의 유효기간 및 복수노조 허용시점이 2년여 남아 있는데
- 노사간의 합의가 없는 가운데 내용검토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성급히 법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도 국민적 여론 등을 감안, 재검토되어야 함

2.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

-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①전임자 수의 결정(법개정안 제24조 제3항) ②1·2단계의 협상창구 단일화 불가시 제3안의 대안(법개정안 제29조의 2 제3항)은
- 법률에 원칙, 기준, 구체적 위임범위 등을 규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투명성 확보와 위임입법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봄
- 또 현실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위한 노·사 양측과의 합의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예상되어, 결과적으로 관련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도 많은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됨

〈의결사항〉

- ① 동 개정안 제29조의 2(교섭창구의 단일화) 제4항과 관련, ‘사업장에 2 이상의 노동조합

이 직종·업종 또는 장소별로 구분되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동 제1항, 제2항, 제3항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본의 아니게 단위사업장 노조의 난립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노동부 동의)

② 1999년 잔존규제 정비계획 반영사항 중 개정안 제13조 제1항 등의 변경신고제는 법제처의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 당초 위원회가 의결한 통보제를 사후신고제로 수정

. 누락규제 등록

1. 누락사유 및 등록현황

- 노동부의 누락규제는 총 18건이며,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신설규제임

2. 누락규제 목록

- ①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범위 기준설정
- ②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기준설정
- ③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변경허가, 허가기준, 허가취소 허가
- ④ 허가신청의 결격사유
- ⑤ 근로자 파견사업 갱신허가
- ⑥ 근로자 파견사업 폐지신고
- ⑦ 근로자 파견사업의 겸업금지
- ⑧ 근로자 파견사업의 명의대여금지
- ⑨ 근로자 파견의 제한 금지

- ⑩ 근로자 파견사업의 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⑪ 근로자 파견사업의 사업보고 보고의무
- ⑫ 근로자 파견계약 체결방법, 내용
- ⑬ 파견사업주의 조치의무
- ⑭ 근로자 파견관련 파견사업관리대장 작성·보존
- ⑮ 근로자 파견사업관련 사용사업주의 조치의무
- ⑯ 근로자 파견사업관련 사용사업관리대장 작성·보존
- ⑰ 근로자 파견사업관련 보고와 검사
- ⑱ 근로자 파견사업관련 과태료

Ⅰ 제10절 Ⅰ

외 교 . 국 방 및 보훈 분야

. 외교통상부 소관 규제개혁

* 집필자 : 최대용 과장(Tel. 3703-2155)

1. 개요

1) 규제 및 근거법령 현황

가. 규제 근거법령

- 외교통상부 소관 규제의 근거법령으로는 여권법, 해외이주법, 재외국민등록법 등 3개 법률, 동 시행령(대통령령) 및 시행규칙(부령), 외교통상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부령)이 있음

나. 규제성질별 분류

- 외교통상부가 운용하고 있는 규제를 그 특성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음
 - 여권의 발급, 유효기간 연장, 분실신고 등 여권발급 업무관련규제
 - 해외이주신고, 해외이주 알선업의 허가 등 해외이주 업무관련규제

- 재외국민등록, 변경 신고 등 재외국민등록 업무관련규제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의무 등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관련 규제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가. 여권발급관련 규제개선 : 여권발급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규제 완화

- 병역의무 종사중인 전문연구요원에 대해서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 발급 허용
- 여권 유효기간 연장시 최초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연장 허용(단, 여권 총 유효기간은 10년 이내)
- 국외여행신고대상 국가(지역) 폐지, 모든 국가에 대한 해외여행 자유화

나. 해외이주관련 규제개선 : 해외이주알선업체의 자유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 제고 및 해외이주희망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규제완화

- 해외이주알선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개선
- 해외이주알선 · 수수료 상한선을 철폐하여 시장자율원칙 도입
- 해외이주알선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정비하고 알선 실적 보고의무 폐지
-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해외이주동의서 징구 폐지
- 해외이주대상지역 제한의 폐지
- 병역기피자와 형집행중인 자 이외 여타 해외이주 결격사유 폐지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부적합한 규정 폐지 등 재외국민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외국민등록법 개정
- 여권 효력 정지 유예기간 도입 및 여권 분실신고 의무 폐지 등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여권법 하위법령 개정
-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해외이주희망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외이주법 하위법령 정비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 한 비영리법인 설립 · 감독에 관한 규제개혁 방안(표준안)에 의

거, 민법에 규정된 비영리법인 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존치하고 법인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령 정비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가. 심사경위

- 1999년 규제정비계획 수립 · 제출하여 심의확정
 - 재외국민등록 관련 규제정비 계획으로 재외국민등록 불신고자 및 허위등록자에 대한 보호제한 폐지, 재외국민등록기간을 30일로 그리고 재외국민등록 변경신고기간을 14일로 각각 단일화(폐지 2건, 개선 2건)
 - 여권분야 규제정비 계획으로 여권만기일 이후 6개월간 효력정지 유예기간 도입과 여권 반납 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시 불복할 수 있는 근거 도입, 여권 분실신고의 무제 폐지 등(폐지 1건, 개선 2건)
 - 해외이주분야 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피해자의 보험금을 직접 수령이 가능토록 정비(개선 1건)

나. 정비결과

구 분	1998년 정비			1999년 변경					1999년 정비				정비 후 존치 규제수
	당초 규제수	폐지	잔존 규제	신설 (재심사 포함)	국회 수정	법제처 심사 수정 등	누락 등록	소계	대상	폐지	제외	개선	
외교통상부	40	2	38	3	-	-	-	3	41	4	-	6	37

2.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1) 재외국민등록관련 규제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는 20일 이내에, 20일 이상 체류시 3일 이내에 소관

공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기체류자의 증가로 신고대상자의 과다 및 실효성 상실

- 외국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체류지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전 거주지 또는 전 체류지를 관할하는 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 거주지 또는 신 체류지 공관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신고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미신고시 제재수단의 부재로 실효성 상실
- 재외국민등록과정에서 허위등록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공관장의 증명서 발급 거부와 교부된 등록증 횡수는 과도한 제재로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정책에 배치

나. 개선방향

- 재외국민등록 불신고시 보호정지 규정을 폐지하여 재외국민보호대상 확대(2000. 2. 29일부터 시행 예정)
- 등록대상자(일정지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등록기한을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완화하여 재외국민의 편의 도모(2000. 2. 29일부터 시행 예정)
-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신고를 하도록 변경신고기한을 완화하여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2000. 2. 29일부터 시행 예정)
- 재외국민등록 허위등록과 허위증언시 등록증 횡수 규정 폐지로 제재조치 완화(2000. 2월 중 시행령 개정 예정)

2) 여권분실신고관련 규제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여권은 5년 이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며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효력 상실
- 여권분실 재발급의 경우에 여권 발급자 또는 관할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의무 부과

나. 개선방향

- 여권만기일 이후 효력정지 유예기간(6월)을 두어 그 기간 내에 신청이 있을 경우 효력연장 허용(1999. 9. 9일부터 시행중)

- 여권분실 신고 의무제 폐지하고 재발급시 그 신청사유에 포함하여 처리(1999. 10. 27일부터 시행중)

3) 해외이주관련 규제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영업보증보험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인 외교통상부 장관의 승인 필요

나. 개선방향

- 외교통상부 장관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현행 보증보험제도하에서는 규제개선이 불가능하므로 보증보험관련 규정이 개정이 되면 이에 맞추어 영업보증보험금 인출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아니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수령이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4)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감독관련 규제개선 (1999. 10. 11일부터 시행중)

- 법인설립허가 제출서류 중 사원명부제출과 설립발기인이 다수인인 경우 다른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제출 및 신원증명서 제출 폐지
- 임원선임에 대한 보고의무 폐지
- 수익사업운영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폐지
- 법인설립허가 취소요건 중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를 삭제하고 허가취소에 앞서 청문 실시 의무화

3. 신설·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1)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 1999년도에 제·개정된 외교통상부 소관 법령 중 신설·강화규제 심사대상에 해당된 것은 해외이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있었음

신설·강화규제 심사 현황

구 분	계	신 설	강 화
심사대상	2(1)		2(1)
철 회	(1)		
개선권고	1		

* ()는 수정반영 심사건

2) 심사 및 조정내역

■ 심사요청규제의 내용(강화 1, 1998년 정비계획 수정반영 1)

-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등록요건중 자본금요건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1998년 규제정비계획과 다르게 수정하여 심사요청
 - 2억원 이상 → 1억원 이상(1998년도 규제정비계획) → 2억원 이상(국회 법률통과시 수정)
- 해외이주 희생자의 피해구제관련 보증보험금 지급신청절차를 규정한 강화규제 심사요청

■ 심사결과

- 1999. 4. 15일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반영된 자본금요건은 당초의 규제개혁위원회 의결대로 하향조정하고, 강화규제는 개선하는 것으로 의결됨

· 통일부 소관 규제개혁

* 집필자 : 김경탁 사무관(Tel. 3703-2156)

1. 개요

1) 규제 및 근거법령 현황

가. 규제근거법령

- 통일부 소관 규제의 근거법령으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기금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있음

나. 규제성질별 분류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규제
 - 남북한 왕래, 물품의 반입·반출 및 남북협력사업에 따른 각종 승인 등 규제
- 남북협력기금에 관한 규제
 - 남북협력기금 자금신청 등에 관련된 규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관련 규제
-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관련 규제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가. 남북한 왕래관련 규제개선

-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서신왕래·상봉 등을 위한 북한주민접촉 및 방북승인을 신고제로 전환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시 관계부처 협의 간소화 및 재외국민의 북한방문절차를 방북신고서 제출로 일원화하고 북한방문결과보고서 폐지

나. 남북교류협력관련 규제개선

- 남북교역 당사자 지정제도 및 교역대상물품 공고절차, 교역에 관한 사항보고 절차를 폐

지하여 교역당사자간의 자율성을 향상

- 남북한간에 반출입할 경우 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축소(205개 품목 → 178개 품목)
- 북한지역 내의 사무소 상주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승인을 받도록 한 규제를 폐지

다. 남북협력기금관련 규제개선

- 남북경협사업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지원신청 전에 거치도록 한 사전협의를 폐지
- 남북한 문화·학술·체육 협력사업 지원자금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별도의 변경신청서 제출을 폐지하고 기금사용 결과보고서를 통해 사후 보완토록 개선

라. 비영리법인관련 규제개선

- 법인설립허가 후 법원등기를 한 뒤 7일 이내에 보고토록 한 규정을 폐지
- 법인이 재산을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한 때 증빙서를 첨부하여 보고토록 한 규정을 폐지
- 매년 1회 법인의 사무를 검사·감독토록 한 규정을 폐지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개정
 - 정부의 활동만으로는 사회 각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민간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인 분야가 나타나고 있는 등 민간단체의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소관 규정의 재검토를 통해 과도한 규제를 축소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 활성화 및 활동의 자율성을 진작시키고자 함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가. 심사경위

- 비영리법인의 설립활성화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관련규제 중 법인설립등기 등의 보고 등 일부규제를 1998. 11. 6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비 심의·의결에 따라 폐지(1999. 2. 3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

칙을 개정하여 1999. 2. 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비영리법인관련 규제 16건 중 5건을 폐지

- 국무조정실에서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각 부처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비영리법인관련 규제정비계획(1999. 7. 6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하여 잔여 규제 11건 중 법인해산신고 규제 폐지 등 5건을 추가로 폐지

나. 정비 결과

구 분	1998년 정비			1999년 변경					1999년 정비				정비 후 존치 규제수
	당초 규제수	폐지	잔존 규제	신설 (재심사 포함)	국회 수정	법제처 심사 수정 등	누락 등록	소계	대상	폐지	제외	개선	
통일부	57	13	44	-	-	-		-	5	10	-	-	34

2.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비영리법인관련 규제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민법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가 존속하여 법인의 본래 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초래

■ 개선방안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한 규정을 폐지
- 법인설립등기 후 7일 이내에 보고규정 폐지
- 법인임원선임시 보고규정 폐지
- 법인의 임원으로 승인한 자의 부당행위 등으로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임원승인취소규정 폐지
- 법인임원취임을 승인토록 한 규정을 폐지
- 법인의 재산증감관련 사항을 보고토록 한 규정을 폐지

■ 시행시기

- 1999년 2월과 12월에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개

정하여 1999년 2월과 12월에 각각 시행

3. 신설·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1)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 금년도에 제·개정된 통일부 소관 법령 중 신설·강화규제 심사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있었음

신설·강화규제 심사현황

구 분	계	신 설	강 화
심사대상	9	5	4
철 회	1	1	—
개선권고	3	3	—

2) 심사 및 조정내역

가. 심사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취업을 알선받고자 하는 취업보호대상자는 취업신청서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취업보호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주지보호기간(5년) 종료 전에 취업보호를 신청하여야 함
- 1993. 12. 12일 이후 보호결정된 보호대상자 중 이미 취업한 자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 이직 전 사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제한
- 동법령에 의거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최초 급여일 익월부터 매월단위로 보호대상자의 고용지원금신청서와 임금대장 1부를 첨부하여 고용지원금지급을 신청
- 취업보호대상자 본인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취업보호가 곤란할 경우 일정기간 취업 보호를 제한함
- 취업보호대상자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고용주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청

- 생업지원의 대상자를 한정
 - 장애인 및 장기질환자, 모자(母子)가정, 55세 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
- 모범사업주는 통일부에 모범사업주로 등록을 신청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이 편의시설 등의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생업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

나. 심사결과

- 1999. 12. 17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총9건 중 5건을 동의하고 1건을 철회, 3건을 개선권고토록 의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99. 1. 28, 2. 15일 각각 개정하여 동일자 시행)
- 신설 규제 목록(4건, 1건은 법제처 심사시 삭제)
 - 고용지원금 지급신청
 - 취업보호의 제한
 - 생업지원신청서 제출
 - 우선구매 등 지원신청서 제출

. 국방부 소관 규제개혁

* 집필자 : 최대용 과장(Tel. 3703-2155)

1. 개요

1) 규제 및 근거법령 현황

가. 규제근거법령

- 국방부 소관 규제의 근거법령으로는 향토예비군설치법,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인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방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있음

나. 규제성질별 분류

- 예비군의 편성·유지를 위한 각종 신고의무 부과 등 규제
- 군복·군용장구 및 기타 군납업체에 대한 감독을 위한 규제
- 군인연금지급 및 산하 비영리법인에 관한 각종 신고·보고·감독 등 규제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가. 예비군대원신고관련 규제정비

- 행정기관과 군부대간 협조하여 거주지 읍·면·동에 예비군 대원 편성 및 거주지이동사항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예비군에 통보토록 함
- 1999. 7. 1일부터는 예비군대원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군과 행정기관이 협조처리

나. 군납업체 단속에 관한 규제정비

- 군납을 희망하는 모든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납업체 실태조사 및 사전등록제도를 폐지
- 군납업체에 대해 2년 마다 실시하던 안전진단을 신규업체만 실시토록 하고 대상 품목도 대폭 축소(1,235개 → 361개)하고 처리기간도 단축(30일 → 10~15일)

다. 군인연금관련 규제정비

- 종전에는 연금수급권자가 연금지급 정지 대상기관에서 퇴직할 경우 본인이 퇴직 신고서류를 직접제출하였으나, 1998. 12. 18일부터 퇴직자가 근무하였던 소속기관장이 통보토록 개선하고 구비서류 간소화,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정비함

라. 국방부 산하 비영리법인감독관련 규제정비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중 각종 보고·신고의무 등 행정규제로 법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제약하고 있었으나, 법인의 재산이전 보고 등 6개 조항을 폐지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1998년도 미정비규제 정비완료
- 규제개혁 이행실태 확인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구 분	1998년 정비			1999년 변경					1999년 정비				정비 후 존치 규제수
	당초 규제수	폐지	잔존 규제	신설 (재심사 포함)	국회 수정	법제처 심사 수정 등	누락 등록	소계	대상	폐지	제외	개선	
국방부	39	17	22	-	-	-	-	-	9	8	-	1	14

2.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 관련규제 정비

-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허가, 영업품목 변경허가, 폐업신고, 영업정지 등 각종 허가제 폐지
 - 다만 민간인의 군복 및 군용장구 등의 불법착용 금지는 국가안보를 고려하여 금지범위 완화로 개선(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99. 12월 현재 국회 계류중임)

. 병무청 소관 규제개혁

* 집필자 : 김정탁 사무관(Tel. 3703-2156)

1. 개요

1) 규제 및 근거법령 현황

가. 규제근거법령

- 병무청 소관 규제의 근거법령으로는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병무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이 있음

나. 규제성질별 분류

- 병역의무에 관한 규제
 - 징병검사,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에 관한 규제 등 병역처분에 관한 규제, 병역의무 대상자 편입신고,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신고 등 병역의무자에 관한 규제
- 병역복무에 관한 규제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에 관한 규제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가.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신고제도 폐지

- 매년 17세가 되는 남자는 읍·면·동장에게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제출을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신고로 같음

나. 징병검사 대상자의 징병검사

- 병역의무자 중 수형자·혼혈아·고아·귀화자·중학 중퇴 이하자 등 징·소집 비대상자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생략하고 제2국민역 처분을 함

다. 징병검사의 연기

- 재외국민 2세 연기범위 확대
 - 국외에서 출생 성장한 사람으로서 영주권(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 국외에서 출생 또는 6세 이전 국외로 출국한 사람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시민권이나 영주권(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들의 연기
 - 시·구·읍·면장의 사실확인서 폐지
- 행방불명자의 연기
 -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연기 → 통산 2년에 불구하고 그 사유 해소시까지 연기

라. 전·공상사유 보충역 처분

- 전·공상 사유범위에 어머니 또는 자매까지 가족으로 보충역 편입범위 확대

마. 병역의무자 거주지 이동신고

- 병역의무자 거주지 이동신고를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로 같음

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귀국신고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의 귀국신고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

사. 병역의무자 출국확인

- 군복무필자, 제2국민역, 재외국민 2세는 최초 출국시 여권에 병역사항 기재 후 재출국시 부터 출국확인 생략

아.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전역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 편입 또는 전역(소집해제)
 - 구비서류 중 복무확인서 제출생략

자. 병적기록정정원 처리

- 병적기록 정정사항들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전산자료를 통보받아 지방 병무청에서 직권정

리가 가능하므로 병적기록정정원 제도 폐지

차. 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

-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때, 벤처기업에 한하여 지정업체 선정기회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승인

- 의무종사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되어야 전직이 가능
 - 벤처기업에 한하여 의무종사기간 2년 미만자도 전직승인
- 전직사유 발생일 또는 승인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전직
 - 전직대기 기간연장(3월 → 6월)

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승인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0일 이상의 국내교육훈련 및 파견근무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지방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의 승인대상 기간 연장(30일 → 3개월)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공정한 병역의무부과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대상자의 편익증진을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규제정비
- 행정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자체확인 가능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규제 개선
-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과 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규제 개선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가. 심사경위

- 기존규제 27건에 대하여 분야별로 심층검토하여 공정한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선과제 8건 선정하여 1999년도 규제정비계획 수립·제출

나. 정비결과

구 분	1998년 정비			1999년 변경					1999년 정비				정비 후 존치 규제수
	당초 규제수	폐지	잔존 규제	신설 (재심사 포함)	국회 수정	법제처 심사 수정 등	누락 등록	소계	대상	폐지	제외	개선	
병무청	29	2	27	-	-	-	-	-	8	-	-	8	27

2.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가. 우선 징병검사원 처리

■ 현황 및 문제점

- 지정업체종사중인 자의 산업기능요원 조기 편입 등 수검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우선 징병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출원기일을 징병검사일 10일 전까지로 규정하여 불편 초래

■ 개선방안

- 징병검사일(출원일 포함)까지로 연장 시행
- 시행시기 : 2000. 2. 3

■ 기대효과

- 출원당일 징병검사 실시로 원스톱(One Stop) 민원처리에 의한 편의제공

나. 병역의무자 출·귀국 확인

■ 현황 및 문제점

- 군복무를 마친 자와 면제된 자의 해외여행 신고 및 확인절차 등에 따른 민원인 부담 증가

■ 개선방안

- 출·귀국확인 신고절차 폐지
- 시행시기 : 1999. 12. 31

■ 기대효과

- 국제화 · 개방화시대에 맞추어 늘어나고 있는 출 · 입국자들에 대한 출 · 입국 편의 제공

다. 전문연구요원 편입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학위 취득자는 졸업 후 1월 이내에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을 출원하여야 하며 국외 유학자는 졸업 후 6월까지 출원함에 따른 형평성 문제제기

■ 개선방안

- 국내수학자도 국외유학자와 동일하게 출원기일을 졸업 후 6월까지 연장
- 시행시기 : 1999. 12. 31

■ 기대효과

- 국내수학자와 유학자간의 형평성제고 및 편의제공

라. 기간산업분야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현황 및 문제점

- 편입원 출원 구비서류 중 지정업체에 취업(재직)사실 확인을 위해 취업(재직)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음

■ 개선방안

- 편입원서의 각란 기재사항 확인으로 같음하고 취업(재직)증명서 첨부 생략
- 시행시기 : 2000. 2. 3

■ 기대효과

- 구비서류 감축으로 민원편의 제공

마. 공익근무요원 및 지정업체의 실태조사

■ 현황 및 문제점

- 복무기관 및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실태조사를 하는데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 미흡

■ 개선방안

- 우수기관 및 우수지정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면제(1년간)
- 시행시기 : 1999. 12. 31

■ 기대효과

- 우수기관 및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로 타 기관 및 업체에 파급효과

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승인

■ 현황 및 문제점

- 의무종사기간 중 동일법인 내의 전직자도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직처리함에 따른 불편

■ 개선방안

- 동일법인 내의 전직자는 신상이동 통보로 갈음
- 시행시기 : 2000. 2. 3

■ 기대효과

- 행정절차 간소화로 업체 및 의무자 편의제공

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파견근무

■ 현황 및 문제점

- 동일법인 내에서의 파견근무시 지방청장 승인을 받아 처리함에 따라 해당업체 및 의무자 불편

■ 개선방안

- 동일법인내의 파견근무자 신상이동 통보로 갈음
- 시행시기 : 2000. 2. 3

■ 기대효과

- 행정절차 간소화로 업체 및 의무자 편의제공

아. 수형자 등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처분

■ 현황 및 문제점

- 징역 1년 이상 2년 미만자는 보충역, 징역 2년 이상 자는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함에 따라 보충역자원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장 지휘 감독 부담

■ 개선방안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미만자는 보충역, 1년 6월 이상자는 제2국민역 편입
- 시행시기 : 1999. 12. 31

■ 기대효과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장 지휘부담 경감 및 규제완화

. 국가보훈처 소관 규제개혁

* 집필자 : 최대용 과장(Tel. 3703-2155)

1. 개요

1) 규제 및 근거법령 현황

가. 규제 및 근거법령 현황

- 국가보훈처 소관 규제의 근거법령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있음

나. 규제성질별 분류

- 국가유공자의 지원·보호관련 규제
- 국가유공자단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비영리법인 설립·감독에 관한 사항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가. 기업체 등의 보훈대상자 의무고용부담 완화

- 종업원 수가 제조업인 경우 200인 이상, 비제조업인 경우에는 20인 이상인 기업체에 대하여 그 업종을 23개로 분류한 후 총 종업원 수의 3~8%에 해당하는 인원을 보훈대상자로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 업종 분류를 한국표준산업 분류방식에 따라 61개 업종으로 세분한 후 보훈대상자의 취

업보호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세업인 37개 업종의 고용비율을 1~4% 하향 조정

나. 국가유공자단체 지도·감독관련 규제개혁

- 한국보훈복지공단 또는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벌금 부과규정을 삭제
- 재향군인회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승인제도 중 임원승인 사항을 삭제하여 단체 자율성 제고
- 국가유공자단체의 회원명부,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회의록 비치의 무제도를 폐지

다. 비영리법인 설립·감독관련 규제개혁

- 비영리법인 임원취임인가 또는 승인의 취소 및 시정요구 규제 폐지
- 법인설립 허가 취소, 해산신고, 잔여재산 처분허가 규제 폐지

라. 법령 미근거 규제개혁

- 법령에 근거없이 훈령·지침 등에 의한 규제사무 12건 발굴하여 폐지·개선
 - 양로·양육 입소, 국립묘지안장 신청, 취업관련 서류 제출 규제 폐지
 - 단기근무 퇴직자 취업보호제한, 취업불이행자 취업보호 제한 등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 마련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1998년도 계획상 미추진 규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법령 개정 추진
- 제33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비영리법인 설립·감독에 관한 규제개혁 방안에 의거, 민법에 규정된 비영리법인 감독·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존치하고 법인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 정비 추진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가. 심사경위

- 제33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1중 규제적 규정을 정비함

나. 정비결과

구 분	1998년 정비			1999년 변경					1999년 정비				정비 후 존치 규제수
	당초 규제수	폐지	잔존 규제	신설 (재심사 포함)	국회 수정	법제처 심사 수정 등	누락 등록	소계	대상	폐지	제외	개선	
국가보훈처	87	42	45	-	-	1	-	1	3	2	-	1	44

2.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가. 1998년도 규제개혁 계획 실행

- 국가유공자등록 및 보상관련 15건 폐지, 8건 개선
- 국가유공자 단체관련 3건 폐지, 1건 개선
- 재향군인회 및 보훈복지공단관련 2건 폐지, 2건 개선
- 비영리법인관련 14건 폐지, 2건 개선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관련

- 민법규정과 동일한 2중 규제적 규정 삭제
- 법인설립 허가기준 중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 삭제

제 11 절

환경 분야

* 집필자 : 김덕영 사무관(Tel. 3703-2189)

. 개요

1. 규제 및 근거법령 현황

1) 규제근거법령

환경분야 규제의 근거법령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27개 법령과 굴뚝 자동측정기 부착관련 고시, 토양환경전문기관 인정기준,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지침 등 743개 고시, 훈령, 예규로 구성

2) 규제성질별 분류

- 자연생태계 보호,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상하수도관리, 폐기물관리 등 일반국민이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환경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각종 부담금 납부, 환경관련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오염물질 측정·기록 및 보존, 보고나 자료제출 또는 조사·검사 등에 관한 규제

- 환경관련 법령 위반시 조업정지, 배출·방지 시설 가동중지, 과징금, 과태료 등과 같은 제재조치
- 환경산업 진입과 관련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업, 설계·시공업, 측정대행업, 영향평가대행업 등의 등록제(허가제 또는 지정제) 및 등록(허가 또는 지정)요건 규정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야생 동·식물의 보전이나 유해화학물질관련 협약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유통 등의 관리를 위한 규제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국민건강과 생태계보존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규제는 존치하되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지 않거나 국제적 협약보다 과도한 규제, 각종 환경진입과 사업활동제한으로 과부담을 주는 규제는 대폭완화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규제정비를 추진하여 환경분야 규제 총 643건 중 34.8%인 224건을 폐지하고 26.4%인 170건을 개선하였으며 유형별 주요 정비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환경관련기업의 부담경감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 환경관리인 등 환경관련 자격사에 대한 정기적인 의무교육을 폐지하거나 신규 및 법규위반 사업장 중심으로 개선하고, 교육기간이나 시간 등을 단축
- 사업자에게 신고나 자료제출을 명하고, 조사·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법령에 명시
- 대표자 변경신고 등 불필요한 신고사항 폐지 및 신고방법 개선 등

2) 환경산업의 진입과 사업활동 제한 완화를 위한 규제정비

- 인적(기술)요건 등을 현행보다 낮추거나 완화
- 장비요건 중 고가의 장비 등은 임대사용 계약 체결로 요건충족

- 자본금, 실험실 면적기준 등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폐지
- 허가·신고 등의 대상범위 축소

3) 수질·대기 등의 오염물질 배출관련 규제를 합리화

- 수질오염여부 측정의 객관성 제고와 업체 민원해소를 위해 1회 시료채취에서 복수 시료 채취로 개선
- 배출허용기준이 선진국 수준보다 높거나 급격한 허용기준강화로 기업에 부담이 되는 일부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완화
 -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전기로의 먼지배출 허용기준 완화 등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1998년도 규제개혁의 미비점을 보완
 - 포괄적인 규제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규제기관의 재량권 축소
 - 규제신고센터에 빈번히 접수되어 타당성이 있는 사항의 반영
 - 사업자의 경영자율성 보장 및 부담경감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 주요정책 건의사항 반영
 - 부조리 관련규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규제, 규제의 국제규범화를 위한 규제 등 반영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1) 심사경위

- 1998년도 규제정비 결과 잔존규제 419건으로 정비된 후 국회, 법제처 등에서 27건의 규제가 수정변경되었고 신설규제 48건, 누락 또는 오분류규제 42건이 추가되어 536건 규제가 잔존하게 되었으며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1999. 7. 28일 환경정보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비대상 536건

중 폐지 등 30건, 개선 89건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의하였고

- 1999. 8. 27일 규제개혁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에서 환경정보소위원회 논의사항을 중 심으로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폐지 등 26건, 개선 69건으로 조정하였고
- 1999. 9. 3일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서는 경제2분과위원회 심의사항을 폐지 등 25 건, 개선 67건으로 재조정하여 잔존규제 511건으로 확정하고 쟁점사항 1건(수질개선부 담금 부과징수) 완화조치

나. 정비결과

구 분	1998년 정비			1999년 변경					1999년 정비				정비 후 존치 규제수
	당초 규제수	폐지	잔존 규제 (A)	신설 (재심사 포함)	국회 수정	법제처 심사 수정 등	누락 등록	소계 (B)	대상 (A+B)	폐지	제외	개선	
환경부	643	224	419	48	10	17	42	117	536	25		67	511

* 1999년 정비 후 변동사항 신설 20건, 누락 2건, 감사원지적 5건, 제 27건 미포함

.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1. 환경일반 분야

1) 환경기준위반시 조업정지집행기간을 명확히 규정

가.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자가 환경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조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환경관련법)
- 조업정지기간의 집행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집행기관이 재량에 따라 휴가기간, 명절, 연휴등에 조업정지토록 조정하는 등으로 부조리 개연성이 높고 행정의 권위를 떨어뜨리 는 문제점이 있음

나. 개선방안

- 조업정지시작 시점을 조치명령 후 일정기간이내 등으로 명확히 규정

다. 시행시기

- 2000년도 하반기 시행 예정

2) 환경관련 진입규제 일부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방지사설을 설계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 등 일정자격을 갖추도록 규정
- 환경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하도록 하는 등 진입규제요인

나. 개선방안

- 방지사설업 등록의 경우 자본금 사무실 면적기준은 삭제하고 고가장비, 임대계약방법 허용
-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시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 자본금제한은 폐지하되 일정액수의 보증금가입으로 대체, 차량은 임차 가능하도록 완화

다. 시행시기

- 2000년도 상반기 시행 예정

2. 자연공원법 분야

1) 공원용도지구 내 허용행위 기준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의 용도지구별 행위제한으로
-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 민원 과다발생

- 1998년 정비 후 미흡한 부분보완

나. 개선방안

- 공원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를 밀집취락지구와 자연취락지로 구분하고 밀집취락지구 내에서는 금지행위 열거규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금지의 행위는 신고로만 가능토록 완화
- 공원보호구역제도를 폐지하고 취락지구 구역으로 분류하여 합리적으로 규제
- 취락지구 내 개인 박물관 등은 시설계획 반영없이 가능토록 개선

다. 시행시기

- 2000년도 하반기 시행 예정

3. 대기환경 분야

1) 소음진동 규제완화 조정

가. 현황 및 문제점

-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규제함으로써 사업자 불편초래 및 민원과다 발생

나. 개선방안

- 소음진동배출신고(허가)대상 기기의 마력기준을 기술개발에 맞추어 완화하고 공사장의 특정장비 사용시간별 소음 측정방법 또는 보정수치를 보완하여 공사장의 소음기준 적용을 현실에 맞게 조종

다. 시행시기

- 2000년도 하반기 시행 예정

4. 수질환경 분야

1)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일부면제

가. 현황 및 문제점

-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함
- 2중적 규제로 축산농가에 불편을 줌

나. 개선방안

- 축산폐수를 해양운반 배출처리시 폐수처리시설 설치는 2중규제로 설치의무를 면제

다. 시행시기

- 2000년도 하반기 시행 예정

2)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신·증축, 재·개축 이전제거, 죽목재 배 또는 벌채,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시 시장·군수에게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나. 개선방안

- 기존건물의 오염물질 발생량이 명확하게 종전보다 낮아지는 용도로 용도변경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 한우 비가림시설 설치완화

다. 시행시기

- 2000년도 하반기 시행 예정

3)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 내 폐수 배출시설 입지제한 일부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팔당·대청호 상수원 주변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동지역 내에서 토지이용과 폐수 및 오수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

나. 개선방안

- 대책지역 내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서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유해물질 배출시설 중 인쇄·사진처리시설 등 일부 입지허용

다. 시행시기

- 2000년도 상반기 시행 예정

5. 폐기물관리 분야

1)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범위조정

가. 현황 및 문제점

-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폐기물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함
- 폐유기용제 포함물질의 경우 지정폐기물 분류를 위한 유기용제 함유 비율기준이 없어 폐유기용제가 한방울만 있어도 전체가 지정폐기물로 되기 때문에 지정폐기물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에는 많은 기업부담 초래

나. 개선방안

- 지정폐기물 대상이 되는 폐유기용제 함유비율을 설정하여 기업부담완화 및 합리적으로 폐기물 처리유도

다. 시행시기

- 2000년도 하반기 이후 시행 예정

2) 폐기물처리업 기술관리인 임명제도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 또는 대행계약을 체결
- 2중규제로 기업 불편요인

나. 개선방안

-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처리업허가시 기술능력이 확보되었음에도 기술관리인을 별도 임명하는 것은 중복규제로 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기술관리인 임명 폐지

다. 시행시기

- 2000년도 하반기 시행 예정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인계서 작성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일로부터 1개월 내 폐기물 처리계획을 포함한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및 장거리이동 사업장의 폐기물의 폐기물 인계서 작성·제출 의무화
- 고철·폐지 등 유해성없는 부산물 사업자에게 불편가중

나. 개선방안

- 고철·폐지 등 유해성이 없는 부산물은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 제외

다. 시행시기

- 2000년도 상반기 시행 예정

6. 먹는물관리 분야

1)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기준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먹는샘물은 판매가의 20%, 청량음료와 주류는 샘물원가의 5%를 수질개선부담금으로 각각 부과하여 형평성 문제 및 물량탈루 등 유통질서 문란

나. 개선방안

- 탈루방지를 위한 납부 병마개제도(납부증명제도)를 도입하여 납부병마개 부착 외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청량음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20%를 7.5%로 하향조정

다. 시행시기

- 2000년도 하반기 시행 예정

. 신설·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1.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 환경부의 규제는 환경의 보호와 규제완화라는 대립관계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적 인식의 확산 등으로 타분야보다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1999년도에 환경부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의거 신설·강화규제로 심사요청한 규제는 27개 법령 총119건에 이르고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38건의 신설 또는 누락규제는 19건이 개선권고, 3건은 철회 되었으며 나머지 규제는 원안수용 되었음
- 또한 강화규제 62건과 내용심사규제 19건은 29건이 개선권고되었고, 2건은 철회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

신설·강화규제 심사 현황

구 분	계	신 설	강 화	내용심사
심사대상	119	38	62	19
철 회	5	3	2	
개선권고	48	19	29	

2. 심사 및 조정내역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건, 강화 3건

- 토양오염유발시설 필요조치 명령강화
 -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게 2년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하던 것을 1년 범위 내에서 3회까지 기간연장할 수 있도록 강화
- 조치명령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서 제출의무 신설
 - 조치명령을 받은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개선완료시에도 개선완료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
- 토양오염물질 검사항목 추가 및 기준설정
 -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기존의 BTEX 검사에 TPH 검사를 추가
- 토양오염(우려, 대책)기준 적용범위 확대
 - 토양오염우려(대책)기준 적용대상 토지를 농경지 및 공장산업지역에 추가 세분화

나. 심사결과(1999. 1. 29일 심사)

- 환경부안 수용

2)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강화 3

- 토양오염물질 누출측정기기의 형식 승인
 -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에 토양오염물질 측정기기 추가
- 토양오염물질 누출측정기기 사용자의 정도검사
 - 누출측정장비를 정도검사의무에 포함
- 환경측정기기 제작, 사용사업장출입, 확인점검
 -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대상환경측정기기 제작 및 사용자의 시설 사업장에 관계공무원이 출입 확인점검
- 정도검사 등 대행자 지정 제한기준 설정
- 검사대행자 지정취소, 업무정지기준 설정
 - 공공성 유지를 위한 결격 사유를 별도로 추가설정하고 위탁사무의 부적절한 운영을 막기 위해 행정제재기준 설정
- 환경성적표지 인증전문기관 지정
- 환경성적표지 및 유사표지 사용금지
 - 인증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인증받은자가 아니면 표지 및 이와 유사표지를 하거나 광고를 할 수 없음

나. 심사결과(1999. 1. 29일 심사)

- 정도검사의 대상을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 누출측정자(측정대행전문기관)가 사용 관리하는 측정기기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 환경측정기기제작, 사용사업장 출입확인점검은 삭제하고 기존자료 통보제도를 존치하고 대행전문기관에 대해서만 필요시 점검하는 것으로 수정
- 정도검사 등 대행자 지정제한 기준설정과 검사대행자 지정취소 업무정지 기준설정을 규제개혁위원회 신설 허용가능 기준 검토내용으로 수정보완
 - 기타 환경부안 수용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심사요청규제내용-강화 1건

-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품목 확대
 - 모든 음식점과 매장면적 33㎡ 이상 영업장에서 1회용 컵, 용기, 접시 등 1회용품 사용 자제

나. 심사결과(1999. 1. 29일 심사)

- 환경부안 수용

4)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고시)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건

- 수입중고차에 대한 환경보증대상 기준강화
 - 중고 수입차량은 각각 다른 차종으로 보아 각각 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

나. 심사결과(1999. 2. 26일 심사)

- 환경부안 수용

5)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기준고시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건

- VOC를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기준을 설정하는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설치기준 설정

나. 심사결과(1999. 3. 12일 심사)

- 환경부안 수용

6)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 종합대책(고시)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건, 근거이동 1건

- 팔당·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 집단묘지 신규입지 제한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설묘지 및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m^2 이상 묘지
- 특별대책지역 내 오수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지침의 고시통합
 - 고시제정 이후 고시규제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오던 특별대책지역내 오수배출시설 설치 관련 업무지침을 고시에 통합

나. 심사결과(1999. 3. 12일 심사)

-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령 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규제하는 조건으로 환경부안 수용

7) 재활용 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고시)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건

- 재활용 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 상향조정
 - 재활용 지정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2002년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을 설정하고 폐유리용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폐유리용기 이용 목표율 신설, 폐캔류 회수 목표율 설정

나. 심사결과 (1999. 3. 12일 심사)

- 폐유리용기의 목표율은 45%로, 페트용기는 1998년부터 45%로 2002년부터는 55%로 조정하고 기타 플라스틱은 용기와 제품으로 분리하고, 기타 플라스틱용기는 1998년부터 20%로 2002년부터 25%, 기타 플라스틱제품은 1999년 5%에서 2002년부터 10%로 조정의결

8)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건

- 규정수량 이상 가스상 유독물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영업등록 및 허가대상에 포함
 - 규정수량 이상 연간 240톤 이하를 사용하는 가스상 유독물과 규정수량 이상 연간 60톤 이하 사용하는 취급제한 유독물 등록 또는 허가대상에 추가

나. 심사결과(1999. 3. 26일 심사)

- 환경부안 수용

9) 환경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6건

- 상습적 환경범죄 사업장 대표자의 업무정지
 - 동일사업장에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등 당해사업장 대표자에게 5년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명령
- 오염물질 불법배출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제 3건)
 -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자에 대하여 불법영업수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징수하고 미납시 조업정지 또는 대표자 업무정지를 명함, 2차 납세의무자 대납
-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철거명령 및 대집행(규제 2건)
 -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당해시설의 사용 또는 영업정지 및 철거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할 때 대집행.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등에게 승계

나. 심사결과(1999. 4. 23일 심사)

- 상습적 환경범죄사업장 대표자의 업무정지 : 철회(불인정)의결
- 오염물질불법배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 수정의결(개선권고)
 - 과징금을 불법영업수익의 2~10배로 정하고 위반횟수 등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되도록 하여 규제신설의 목적에 맞도록 조정
 - 원상회복비용 중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한하는 것을 삭제

- 과징금 미납시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자 대납은 벌금부과의 성격에 맞도록 2차 대납대상을 축소·명확히 하고(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제외), 불법자에게 신용거래 조치 등으로 대체(보완)방안 개선
- 불법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승계는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해 철거명령이 있는 사실을 양수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 마련

10) 굴뚝 자동측정기 부착대상사업장 측정항목 및 부착시기 지정고시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건

- 굴뚝자동측정기 부착대상사업장 측정기기종류 및 부착시기 설정
 - 대형일반보일러 등 12개시설을 대상으로 아황산가스 등 6개 대기오염물질이 측정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 부착의무화

나. 심사결과(1999. 5. 21일 본회의 심사)

- 환경부안 수용

1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누락 등 5건, 강화 7건, 내용심사 7건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의 보증예치, 보험가입조건등의 의무내용 제정
 - 전년도말까지 1년 이상 단위로 계속 갱신 가입하되 환경단체의장이 지정하는 자를 수령자로 계약
- 조업중단기간초과 보관폐기물 처리명령의 조업중단기간 구체화
 - 처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보증토록 한 후 폐기물처리업자가 조업중단시 처리명령하고 처리명령 불이행시 보증금으로 대체, 조업중단기간을 대통령령에서 신설
- 사업장폐기물운반처리시 폐기물 인계서 작성, 인계시기 등의 내용규제
 - 간이인계서 작성대상-건설폐기물 주 5톤 이상,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월 200kg 이상 배출
 - 인계서 작성대상-공장운영으로 1일 100kg 이상 1일 300kg 이상 배출, 1주 5톤 이상 공사폐기물 배출, 이동거리 100km 이상 이동

-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제도의 대상, 방법, 절차 신설
 - 대상폐기물-폐유 등 배출량이 월 50kg 이상이거나 합계가 월 100kg 이상 폐산, 폐알카리, 폐석면 등으로 월 100kg 이상 또는 월 합계가 200kg 이상, 월 500kg 이상 오니, 감염성 폐기물 등
 - 처리증명서류는 폐기물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작성, 처리시마다 폐기물 인계서 6매(4매) 작성
- 폐기물인계서 검인제도(강화된 처리증명) 방법 규정
 - 폐기물 인계 3일 전까지 처리 자는 처리 7일 전까지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 검인
- 폐기물보관량, 기간 초과금지 등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 인수받은 폐기물 처리기간을 종래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보관, 기타처리업자 준수사항
-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금지 및 처리시설 설치기준
 - 시간당 25kg 미만 소각시설금지, 소각시설, 매립시설 설치기준 마련
- 사업장 폐기물 공동처리 대표자 선정, 업무대행방법, 보고자료 제출의무 신설
 - 사업장폐기물 인계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배출자가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처리시 운영기구 설치의무 대표자 선정의무 부여
- 폐기물처리시설 면제결정 및 면제자 준수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일정한 경우 면제(연구기관, 대학 등) 결정 후 일정한 조건준수 의무부여
-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강화(분류, 누락 및 강화)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누락 및 강화)
 - 중전위반행위 그 이상일 때 중한처분만 적용하던 것을 각각 적용하고 위반행위 산정방법강화, 행정처분 위반행위 24개 행위로 확대
- 폐기물 처리시설의 오염물질 측정의무(분류 및 강화)
 -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의무 부여
- 폐기물의 적용범위 강화
 - 종전의 43종에 한정된 비할로젠족 폐기물 기타 폐유기용제로 분류하여 할로젠족 외의 모든 폐유기용제로 확대, 기타사항 강화
-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요건 강화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차량요건 강화(3대 → 5대 특별시 광역시 3대 → 10대) 등 다수 요건 강화
-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기준 강화
 - 감염성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수집운반보관 처리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추가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 강화
- 폐기물처리시설 승인(변경승인) 규제내용 강화
-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규제내용 강화
- 폐기물 재활용 신고규제내용 강화

나. 심사결과(1999. 6. 18일)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제도 규제의 내용심사관련
 - 보험 · 예치제 가입의 경우, 가입통보, 증서제출, 금액갱신 등의 의무기간을 완화토록 함(2주 정도)
 - 보험가입의 수령자를 환경관서의 장으로 명확히 함
- 조업중단기간 초과 폐기물처리명령 규제의 내용심사
 - 노사관계, 주민민원 등 불가피한 경우(처리할 의사는 있으나)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 마련
- 사업장폐기물 운반처리시 폐기물인계서 작성, 인계시기 등 내용심사
 - 적용대상을 완화하는 방안마련(주 5톤 → 주 10톤 월 200kg → 월 500kg으로 조정)
 - 의무대상거리 100km를 시 · 군 · 구 등으로 명확히 구분토록 수정
- 폐기물인계서 검인제도 방법 내용심사
 - 검인시기를 처리시 7일 → 3일 전으로 완화
- 폐기물보관량, 기간초과금지 등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 배출자의 편의를 위해 배출자와 처리업체간의 계약을 FAX, PC통신 등의(직접 입회방법외) 방법도 인정하도록 조치
- 규모미만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 운영 금지 규모설정 및 처리시설 설치기준
 - 강열감량기준의 강화를 적용시기를 2008년 이후로 완화
-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강화
 - 소각시설의 경우 관리기준은 완화조정

- 폐기물처리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 1개의 시설이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업체전체에 대한 영업정지는 과도하므로 일정기간 · 일정시설의 위법적발시만 행정처벌 하는 방안마련으로 완화조정
- 폐기물관리의 적용범위
 - 감염성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는 제도는 관련업계 준비를 위해 유예기간 1년에서 1년 6월로 연장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요건 강화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차량요건을 현행(3대 이상)으로 존치하되, 필요시 서울특별시 등의 경우 5대 이상으로 일부강화
 - 감염성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도 여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와 같이 다른 분야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무실, 실험실, 시설 등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정
 - 기타규제 환경부안 수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규칙 재심사(1999. 6. 25)
 - 심사대상 : 강화 1건
 - 심사결과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요건 중 파쇄시설구비기준을 1일 300톤→100톤 조정하고, 재활용신고업자에의 업종전환의 유예기간을 3년 존치토록 수정

1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누락규제 6건, 강화 10건, 내용심사 5건

- 오수처리대책지역내 오수처리시설 설치
 - 대책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및 관광숙박업건물은 지역지정일부부터 2년 이내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 건축물 등 증축용도변경시 오수처리시설 증대
 -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기존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의 범위를 규정
- 오수처리시설 등의 공동이용시 운영기구 설치 및 신고
 - 300세대 미만이 입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운영기구 설치 및 대표자를 지정하고 신고
- 오수처리시설 등의 성능 및 재질검사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제조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사전

- 에 재질 및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고 등록 이후에도 2년에 1번씩 사후검사
- 과태료 부과
 - 법령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시행령에 규정
- 설치시공업자의 처리효율개선 검토서 제출의무
 - 건물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단독정화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그 증설에 갈음하여 처리효율개선 검토서 제출을 의무화
- 오수처리시설 등 위탁관리 후 시설소유자의 책무
 -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를 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당해시설의 부적정 운영책임은 관리업자에게 부과되 일정한 경우 처리시설 소유자에게 책임부과
-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설정 준수 의무
- 오수처리시설 등의 제조판매에 관한 규칙
-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설정 준수 의무
-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지정 및 준수사항 준수 의무
-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강화
 -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에 기존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대상에 포함. 단, 기간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대상의 경우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500mg/l 이하로 유지
- 방류수 수질기준 및 준수 의무
 - 수변구역 및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 안에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적용 등
-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 신고 강화
 - 분뇨 등 관련영업자의 허가요건에 사무실 및 차고추가,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질소 및 총인의 실험기기추가 등
-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신고)강화
 - 분뇨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의 등록요건에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질소 및 총인의 실험기기 추가
-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강화
 - 수세식화장실 미설치된 경우 1일 오수발생량 1톤 미만의 건물 또는 과자점 형태 건물 오수처리시설 설치면제
- 분뇨 또는 축산폐수 재활용 신고

-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사업장 소재지 변경 등을 한 경우 시장, 군수에게 신고
-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기준 강화
 - 축산폐수를 퇴비화 또는 액비화 하는 경우 관리일지 작성의무화
- 오수처리시설 등 제조업변경등록 강화
 - 오수처리시설 등 제조업자가 처리시설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대상에 포함
- 정화조 제조업자 준수사항 강화
 - 설계시공업자 및 오수처리시설 등 제조업자가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3월 이상 시운전 실시
-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기준 설정 및 준수의무
 - 사육두수 및 가축별 배출원 단위 강화, 액비살포에 필요한 조치 또는 농경지 면적 기준 강화

나. 심사결과(1999. 6. 25일 심사)

- 오수처리시설 등의 성능 및 재질검사는 추후 법개정시 등록요건 또는 지정제도를 반영하도록
-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기준 강화 중 관리일지 작성의무화 규정삭제
-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기준설정 및 준수의무중 퇴비화·액비화
 - 처리방법의 농경지 확보 면적 강화기준을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2~3년 부여하고 연차적으로 강화토록 조정
 - 기타 환경부안 수용

13)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건, 내용심사 2건

- 수변구역내의 행위허가 규제의 내용범위
 - 신고대상규모 : 돼지사육시설 140~1000m², 소사육시설 200~900m² 등
- 행위제한이 배제되는 시설의 허가시 조건부여
 - 행위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 허가시 시장군수가 조건을 의무적으로 부여토록 함
- 물이용부담금 부과규제

- 팔당호 및 팔당댐 하류의 한강분류 하천구간을 부과수역으로 조정

나. 심사결과(1999. 6. 25일 심사)

- 행위제한이 배제되는 시설의 허가시 향후 원상복구 등의 조건부여 규제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일정범위를 정하여 허가시 총량계획 이행을 평가하는 기관과 허가 전에 협의토록 하는 방안강구로 대체토록 조정
- 기타 환경부안 수용

14) 하수도법 시행규칙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건

-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규제의 절차 마련
-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수배출공정도 등 5가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신청서를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제출

나. 심사결과(1999. 6. 25일 심사)

- 환경부안 수용

15)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고시)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건

- 건설폐재 배출사업자 준수사항 규제강화
- 지정부산물 중 건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재활용 목표율 상향조정

나. 심사결과(1999. 6. 25일 심사)

- 환경부안 수용

16) 습지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2건

- 습지주변지역내 행위 승인 또는 협의대상 행위의 범위설정
 - 매립사업,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 행위, 골재채취허가 대상사업 등
- 습지보호구역의 습지 훼손시 일부 습지 존치규모 등 기준마련
 - 습지보호지역 안에서 공익상 군사상 불가피하게 습지를 훼손할 경우 훼손면적이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상일 경우 전체면적의 2분의 1 존치

나. 심사결과(1999. 6. 25일 심사)

- 습지주변 관리지역의 고시대상범위 선정기준을 법제처와 협의 시행령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규정하도록 조정
- 환경부안 수용

17) 수질환경보전법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건 강화 1건

- 주요 상수원 주변도로의 유해물질 수송차량 운행제한
 - 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서 유류, 유독물 등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제한
- 배출시설 설치제한
 -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도 일반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강화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자의 불법행위시 처벌, 운영자의 유지관리지침 준수유도

나. 심사결과

- 상수원 주변도로 유해물질 수송차량 통행제한
 - 규제대상 중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중 오염확산성이 높은 액상의 유류, 유독물 성질로 제한하는 등 대상을 조정

- 지정대상지역은 시행령 등에서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우회도로가 통상거리상 일정배수 이내 등으로 지정가능 범위를 구체화할 것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지정
 - 하위법령에서 지정대상을 구체화 축소토록 조종
 - 중복 규제될 우려가 높은 특별대책지역내, 상수원보호구역내, 수변구역내 등은 대상에서 제외
-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 원안수용하되 단, 벌금은 타벌금액과 형평을 고려하여 조정을 권고

18)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인정기준(고시) 및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지침(예규)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4건

-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검사시설 등 기준강화
 -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기본적 보유장비에 시추기, 초음파 추출장치 등 추가
- 토양관련 전문기관 누출검사장비의 교정검사 강화
 - 누출검사분야 장비 중 1종류만 교정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것을 누출검사 분야 장비 모두 교정검사를 받도록
- 토양시료채취 강화
 - 토양오염도 검사시 각 1개소에서 시료 채취하던 것을 2개소로 확대
- 누출검사 이행기간 단축
 -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저장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 사고 등으로 저장물질의 누출이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 누출검사받는 것으로 강화

나. 심사결과(1999. 7. 2일 심사)

- 초음파추출장비 시추기를 전문기관의 장비기준에 포함은 하되 임차도 가능토록 조정하고, 아울러 임대업자의 임시 시추 등을 배제하기 위해 시료채취 검사를 전문기관 책임하에 실시될 수 있도록 조정
- 부지내 시료채취를 2개소로 강화하되, 차기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시 법령에 근거를 명확히 규정토록 조치
 - 기타 환경부안 수용

1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건

- 제작이륜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유럽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강화기준 적용(CO : 8.0g/k m, HC : 4.0g/k m)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항목에 공기과잉률 추가
 -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수시검사항목에 공기과잉률 검사항목 추가

나. 심사결과(1999. 7. 9)

- 환경부안 수용

2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건, 강화 6건, 후속심사 1건

- 대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및 조치명령
 -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측정기기의 운영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미준수자에 게 필요한 조치명령
- 생활악취시설의 개선기간 및 개선 계획서 제출
 - 생활악취시설 대상확대 및 생활악취제거 억제조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범위추가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용적 3 m³ 또는 동력 20마력 이상의 가황시설 추가
- 악취배출 허용기준 강화
 - 울산, 온산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수도권 대기환경 규제지역은 악취로 인한 주민피 해가 심각하여 공업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타지역 수준으로 강화
-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중량자동차 보증기간 추가
 -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에서 제외되고 있는 중량자동차에 대해서도 2년 또는 4 만 k m까지 보증의무기간을 신설
- 첨가제 제조관리기준 강화
 - 첨가제를 제조하는 자는 자가 시험 또는 공인기관을 통해 매년 시험하고 그 결과를 보

고, 배출가스 총량은 첨가제 첨가전보다 5% 이상 증가해서는 안됨

- 행정처분기준 강화

- 불법연료 사용제한 명령 위반시 조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등 다수 처분 기준 강화

- 대기배출부과금의 부과금계수 및 처리부과금 상향조정

-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를 1.35배 상향조정
- 초과율별 부과계수를 약취 1.7배 기타 1.2배 상향조정

나. 심사결과(1999. 8. 13)

- 대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및 개선계획서 제출

- 자동전송된 데이터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기기오작동 여부에 의한 결과인지 객관적인 확인 검정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

- 생활악취시설의 개선기간 및 개선계획서 제출, 생활악취시설 대상확대 및 생활악취저거 억제조치

- 생활악취 규제대상 중 제조업을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규정함은 지나치게 규제를 확대하는 결과이므로 그동안 문제된 업종 등 구체적인 업종을 나열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규제대상은 시도조례로 위임하도록 수정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범위추가

- 시설설치에 따른 유예기간을 1년간 주도록 조정

- 악취배출 허용기준 강화

- 기기분석법의 규제수준 강화는 원안대로 하되
- 울산, 온산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수도권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기준강화는 VOC방지시설의 설치 시행결과를 관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규제강화를 결정하도록 수정

- 첨가제 제조관리 기준강화

- 제조공정변경, 새로운 제품생산 및 수입시에만 검사·보고하도록 조정

■ 기본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의 농도별 부과계수를 조정(30% 미만 : 0, 30~40% : 0.15, 40~50% : 0.25, 50~60% : 0.35, 60~70% : 0.5, 70~80% : 0.65, 80~90% : 0.8, 90~100% : 0.95)

- 기타규제 : 환경부안 수용

2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건

-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에 따라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및 잠실 수중보권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나. 심사결과(1999. 8. 27일 심사)

- 환경부안 수용

22)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고시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건

- 유독물 취급제한 물질 등 금지물질로 고시
- 취급제한 유독물금지물질로 고시, 취급제한 유독물 범위 확대

나. 심사결과(1999. 8. 27)

- 유독물 취급제한 물질을 금지물질로 강화는 환경부안 수용
- TBT제한 강화는 연근해어선 등 연안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는 환경부안을 수용하되 TBT의 유독물고시(1999. 6)에 따른 조선업의 설비기준강화 문제는 1999년 환경부 규제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완화토록 조정

23) 먹는물관리법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건, 강화 3건

- 먹는샘물 부담금 증명표지 사용
- 부담금 증명표지(병마개) 제조업자 지정 및 관리
- 부담금 증명표지를 하지 않은 샘물판매 금지
- 납부증명표지 미사용제품의 압류 및 폐기
- 납부증명표지 미사용제품 판매시 허가 취소 등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정도관리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검사능력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수질검사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외에 검사능력추가, 검사기관 지정요건 강화
- 먹는물관련 유통판매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 유통판매업체가 허위표시, 광고의 금지 등에 위반한 경우와 부담금 증명 미표시 샘플 판매시 시도지사에게 허가취소 요구

나. 심사결과(1999. 9. 17일 심사)

-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업자 지정관리는 법에서 증명표지 제조자 지정요건을 어느 정도 규정토록 하고 지정취소 및 취소의 요건도 규정토록 조치
- 수질개선 부담금 3회 이상 체납시 허가취소규정 철회(불인정)의결
- 별도 정도검사제도를 신설하지 않고 검사수행 능력정도를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으로 규정하여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이 측정, 평가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정도관리신설은 철회
- 먹는물관련 유통업자에 대한 허가(등록)취소 규정은 철회(불인정)

24)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시설 지정고시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건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 확대
 - 4시 2군 9읍 26면 17동 1,824km² 확대

나. 심사결과(1999. 9. 17)

- 환경부안 수용

25) 환경교통재해 등의 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건

- 평가서의 보완 재작성 반려
 -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 내용보완만 요구하던 것을 내용보완 외에 반려도 가능토록

- 사후환경 영향조사제도 강화
 - 사후환경 조사결과 주변환경의 피해방지를 위해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완
- 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범위확대 및 상향조정
 - 평가서 부실작성으로 재작성 요구받은자 등 과태료 부과 신설

나. 심사결과(1999. 9. 17)

- 평가서의 보완 · 재작성 반려
 - 별도의 반려(재작성) 규정은 철회하고 보완요구 규정으로 보완
- 사후환경 영향조사(1999. 10. 5 재심사)
 - 환경영향평가 후 사업시행과정 및 완료 후 일정시점까지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를 사업자로부터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 그러한 조사가 사전에 예측한 영향평가항목의 조사가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연속적인 것이므로 별도 사후영향 평가제도로 규정하지 않고 평가 이행 등에 함께 규정토록 조정

26)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고시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누락강화 1건

-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위탁자 지정
 - 소각시설 자본금 3억원 이상 폐기물 처리기술사 등 3인, 운전경력 매각시설 자본금 3억원 이상 기술인력, 운전경력 등 기준요건 마련

나. 심사결과(1999. 10. 5)

- 자본금은 보증보험 등으로 대체도 가능토록 선택적으로 규정
 - 운전경력은 공공시설의 근무경력 외 민간부문의 경력도 인정 가능토록 진입제한을 완화
 - 설치만 위탁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기술인력이나 운전경력 중 천장크레인 경력 등 불필요한 요건을 완화 · 조정한 별도 요건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규정
 - 자격위주의 기술인력 외에 위탁업체(법인 또는 개인)의 대표자 · 임원 등에 폐기물관리

법 위반(횡수 등으로 조정) 행위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인력요건을 보완토록 조정

27) 환경기술발전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훈령)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건

- 환경기술개발 촉진관련 환경시설 입찰 및 기술공모시 자격기준 등 기술경쟁확대를 위해 준공실적의 제한은 당해공사 시설용량의 1/3 이내로 하고 환경기술평가서를 발급받은 기술은 시설규모의 10배 이내에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시설로 인정하는 등 입찰참가 자격기준을 정함

나. 심사결과(1999. 10. 5)

- 민간실적인정(안 제6조 제2항)관련 부가세납부 증명제출 신설은 원칙적인 사전인정 대상으로 규제하지 않고, 첨부서류로 전환하여 부가세 납부증명이 명백하게 발주처의 사유로 인한 경우 등 향후 필요시 대체서류(사유서 등)로 가능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힐 수 있도록 조정
- 외국인 실적인정(안 제6조 제3항) : 해외건설협회의 실적확인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여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도 가능토록 규정을 수정
- 설계도서 크기·면수제한(안 제9조) : 위반을 할 경우 감점을 주는 것보다 적정분량의 기준만 제시하고 기준준수시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제로 변경

28) 자연공원법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누락 2건, 강화 6건

- 공원시설 등 설치시 공원계획 결정변경
 - 진입도로 주차장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공원구역 밖의 지역에 대하여도 공원계획에 포함
- 공원관리상의 필요에 따른 건축물 등의 철거이전
 - 공원관리청은 공원관리상 필요시 손실보상을 전제로 건축물, 공작물의 철거이전을 명령할 수 있음
- 용도지구 허용행위 기준조정

- 용도지구 구분을 조정하고 지구별 행위허용을 조정, 자연보존지구 내에서는 규제강화,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구분하고 자연취락지구에서 토착주민 외에 외래인의 주거용 건축물 편익시설 설치를 금지
- 공원의 점용·사용허가 및 협의시 공원위원회 심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점용·사용허가시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공원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 공원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의 포획기도행위, 수목고사, 승인없이 총기나 톱 등을 휴대하고 공원구역을 출입하는 행위추가
- 토지소유자 등의 토지출입 등 방해금지행위
 - 공원관리상 필요로 정당한 절차에 의한 공원구역내 토지출입시 토지소유자 등이 출입의 방해를 금지토록 규정
- 과태료 조정
 -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및 과태료금액 100만원 → 200만원으로 조정
- 공원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고시
 - 공원구역 내에서 공원의 점용 및 사용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공원관리청에 원상회복 소요비용을 사전에 예치

나. 심사결과(1999. 10. 22, 10. 29)

- 공원시설 등 설치시 공원계획 결정 변경
 - 공원구역외 계획확대용지는 주차장과 도로만으로 한정토록 조정
- 공원관리상의 필요에 따른 건축물 등의 철거이전 : 철회(불인정)
 - 유사한 규제를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토지 등의 수용규제에 공원미관 등의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토록 수용조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대체
- 용도지구 허용행위 기준조정 : 재심사(10. 29)
- 공원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 : 재심사(10. 29)
- 과태료 조정 : 원안수용
 - 단, 입장료, 이용료를 지불 않고 입장한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은 하위규정에서 통상수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과태료 수준을 낮추어 조정
- 공원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 고시신설 : 수정의결

- 예치금요율을 각각 5~10%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보증보험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용도지구 허용행위 기준조정(강화)-재심사
 - 자연보존지구내 행위 허용관련 : 수정의결
 - 사찰의 복원은 복원을 위한 고증이나 복원가치와 훼손과의 비교분석(영향평가), 위원회 심의 등 복원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하되 원천적인 금지는 않도록 조정
 - 사찰의 부대시설 중 다원, 매점 등의 시설은 허용범위를 전통사찰보존법의 사찰경내지(사찰소유지)에서 “사실상의 사찰경내”(시설물주변)로 축소하되 원천적인 설치금지는 않도록 조정
 -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증축은 금지하되 공원지정 이전에 건립된 건축물에 대한(부대시설 포함) 동일 건축물면적범위내 개축·재축·복원은 허용. 단, 현재 시설물이 없는 복원의 경우 부대시설 설치(복원)는 하위법령 범위 내에서 가능토록 조정
 - 욕립, 임도설치는 금지하되 조립, 사망사업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토록 조정
 - 자연취락지구내 행위허용관련 기타 : 환경부안 수용
- 공원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 수정의결
 - 개정안 제36조 제1항의 8호(불을 내는 행위), 9호(총기, 삼, 도끼 휴대금지)는 불인정(삭제), 단, 9호 중 총기휴대 금지는 규제토록 조정

29)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고시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건

- 배출허용기준 준수강화
 - 2003년부터 한강수계 잠실수중보 상류 및 문산 취수장 상류권역에 위치한 “가” “나”지역기준에 해당하는 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 청정지역 기준으로 적용

나. 심사결과(1999. 10. 22)

- 폐수배출 허용기준 준수규제를 강화하되, 기존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피규제자가 규제강화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설비개선비의 국고보조 또는 세제혜택 등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대책 강구필요 조건으로 원안수용

30)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건

- 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
 - 연료검사기관과 첨가제 검사기관의 시설장비 인력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이 수수할 수 있는 검사수수료 고시
- 연료 및 첨가제의 사용현황 보고
 - 생산 또는 판매의 매반기 실적, 첨가제를 신규로 생산 배합하는 경우 업체명, 대표자 변경사항, 제품명, 제조공정 변동사항 등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보고

나. 심사결과(1999. 10. 22)

- 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 등 : 수정의결
 - 검사시설은 구비하되 획일적인 면적의 크기 제한은 각각 삭제
 - 연료 및 첨가제 검사기관을 중복 지정받을 경우 장비 및 검사인력을 중복해서 구비하지 않도록 완화
 - 연료검사기관의 검사장비(별표1) 중 원자흡광 광도계와 유도결합 프리즈마 원자분광 광도계는 유사용도장비로 선택적으로 구비토록 조정
 - 첨가제 제조업자 보고사항(별표7)에 “구성성분의 분자별 조성”을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분자별 조성비율이 필요하다면 원소분석기가 필수적인 바 이를 명확히 할 것
 - 첨가제 배출가스 검사고시 수수료액이 현재 검사기관들이 받고 있는 수수료와 차이가 있어 합리적인 조정필요
- 연료 및 첨가제의 사용현황보고 등 : 수정의결
 - 연료의 경우 대다수 대기업체로 현황파악이 가능하므로 각종 보고제도 삭제
 - 첨가제의 경우는 소규모 수입업자가 많으므로 신규로 제조(수입) 및 공정변경시 실시토록 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보고로 조정

31) 폐기물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세부검사 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건

-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

- 소형소각시설에 대한 설치장소에서 검사, 소각시설의 체류가스 체류시간 산정방법 강화, 매립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방법

나. 심사결과(1999. 12. 10)

- 소각시설의 연소가스 체류시간 산정방법 강화 : 환경부안 수용
 - 단, 연소가스 체류시간은 본 고시안의 단순계산 결과와 실제 체류시간과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제 체류시간에 근접할 수 있는 산정방법의 기술에 대해 별도 검토 하고 반영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매립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항목, 방법 : 수정의결
 - 설치검사 후 1년내 정기검사 등에 있어서 경미하거나 중복되는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업계의 검사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도록 수정의결

제12절

해양수산 분야

* 집필자 : 변주대 과장(Tel. 3703-2181)

. 개요

1. 규제 및 근거 법령현황

1) 규제근거법령

해운법, 항만법, 도선법, 수산업법, 수산물검사법, 어선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30개 법률 및 33개 대통령령, 57개 부령 등에 해양수산부는 535개의 규제가 있으며, 해양경찰청에서는 85개의 규제를 운영하고 있음

2) 규제의 성질별 분류

- 해양수산부분은 1·2·3차 산업이 공존하고 있고, 환경·안전·자원보호 및 위생관련 사회적 규제가 전체 규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해운, 선원, 해양오염 등에 있어서는 국제협약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 많음

- 규제의 성질별로 살펴보면

- 해상교통 안전 및 질서유지, 선원 및 선박의 안전관리, 어업의 질서유지, 해난심판을 위한 규제
- 유류오염 방지를 비롯한 해양환경 보전,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을 위한 규제
- 해운서비스, 항만의 건설 및 항만의 입출항 질서유지를 위한 규제
-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및 수산물검사 등 식품위생 관련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1) 총괄

- 해양수산부는 1998년도에 총 778건의 규제 중 당초에 폐지 422건, 개선 169건의 규제를 개선기로 하였으며, 이 중 국회입법과정 등에서 변경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었음
 - 아울러 116건의 법령 미근거 규제를 발굴하여 68건을 폐지하였으며, 항만내 위험물 반입신고 등 존치가 불가피한 규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해양경찰청에서는 총 124건의 규제 중 폐지 63건, 개선 36건의 규제를 개선기로 하였으며, 이 중 폐지 4건이 존치되었으나, 대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

2)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 지정해운사업자 지정 등을 규정한 해운산업육성법을 폐지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등이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는 해무사와 해기관리사제도를 폐지
-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등록으로 전환하고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해무사 등의 일부요건과 등록 제한사항을 폐지
- 외항화물운송사업의 사전요금 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공표토록 완화
- 해운중개업 등의 영업실적 보고, 매매, 대여, 용대선의 경우 수시신고제도 등을 폐지

3) 항만이용 효율증대를 위한 규제 완화

- 민간이 투자하여 설치한 민간전용 항만시설의 민간소유권을 허용하여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건설을 촉진
-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및 노동력요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물품공급업을 신고업종으로 전환
- 항만공사 시행자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를 폐지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항만시설의 준공 전 사용 허가제를 민간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신고제로 전환
- 입·출항에 필요한 18종의 서류를 9종으로 줄이고, 정보공유를 통하여 관세청 등에 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폐지
- 도선사 면허의 유효기간, 도선사 실적평가제도, 순번제에 의한 도선사의 이용 및 도선사 고용시 승인제를 폐지

4) 수산자원 보존 및 어업 분야 규제의 합리화

- 양식어장에 대한 시설규모, 어장사이의 거리 등에 대한 규제를 현실여건에 맞게 완화하고 양식품종의 확대에 소득향상 도모
- 동일한 어선에서의 2개 이상 동시 어업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연안어업의 업종을 단순화하여 복수의 어구·어법사용 허용
- 수산물의 검사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수출용 수산물 의무검사제도와 수산제품 생산과정의 검사대상을 축소
- 수심 5 m 이내의 마을어업에서는 낙지 등 10종만 채포가 가능하도록 지정되었으나 이를 폐지

5) 선박 및 선원분야의 규제 개선

- 선박 및 선박용 물품의 제조·정비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제조·정비규정에 대한 승인제도를 폐지
- 선원의 구인·구직등록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외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확대

- 모든 선박에 부과되었던 안전운항을 위한 선상훈련 등의 의무를 300톤 이상의 국제운항 선박으로 완화

6) 해양 환경관련 규제개선

- 폐기물 운반선의 등록요건, 설비 및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폐기물 운반업의 진입규제 완화 및 방제·청소업의 시설·장비기준을 완화하여 방제·청소업의 진입규제 완화
-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시 사업계획서 제출 내용 중 해양환경영향평가를 폐지하고, 지정기간 연장시 연장기간을 3년으로 하는 등 폐기물 해역배출 지정에 따르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1998년도의 규제개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추진
 - 법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여 규제기관의 재량권을 축소
 - 해운·항만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운송분야 및 해상운송사업의 고비용 유발규제 개선
 - 행정목적상 존치가 불가피한 해양환경, 해상질서 유지, 선박의 안전, 수산자원 보호 등 사회적 규제는 규제의 품질개선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규제 중 중복등록되어 있는 규제를 일원화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1) 심사경위

1999. 4. 13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부처별 잔존규제정비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잔존규제 정비방안에 대한 용역을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행(4~6월, 3개월)하였으며, 용역 결과에 대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후 규제정비대상을 확정, 농림해양소위원회 심

의(1999. 7) 및 경제2분과위원회 심의(1999. 8)를 거쳐, 1999. 9. 3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의 잔존규제정비계획을 확정·의결함

2) 정비결과

가. 해양수산부

- 정비대상 규제건수를 총 535건으로 확정하여 91건을 폐지 또는 개선키로 함(폐지 등 53건, 개선 38건)
 - 규제심사대상 규제수는 1998년 폐지규제 중 입법과정에서 존치된 규제 50건, 연안관리법·어장관리법 등에 대한 신설규제 91건, 누락규제 등 38건을 포함하여 총 535건으로 함

1998년 규제정비(%)			1998년 정비 후 변경(%)				1999년 정비(%)				1999년 정비 후 변경(%)		
당초 규제수	폐지	잔존 규제	신설 (재심사 포함)	국회 수정	법제 처 등	계	대상	폐지 등	제외	정비후 존치 규제수	신설 등	기타	계
778	422 (54.3)	356 (45.7)	129	11	39	179	535	53 (9.9)	38 (7.1)	482	8	1	9

* 폐지 등 : 폐지규제·규제제외 및 통합규제 등임

나. 해양경찰청

- 정비대상 규제건수를 총 85건으로 확정하여 14건을 폐지 또는 개선키로 함(폐지 등 13건, 개선 1건)
 - 규제심사대상 규제수는 1998년도 폐지규제 중 입법과정에서 존치된 규제 4건, 수상레저안전법 제정안에 대한 신설규제 20건 등을 포함하여 총 85건으로 함

1998년 규제정비(%)			1998년 정비 후 변경(%)			1999년 정비(%)			
당초 규제수	폐지	잔존규제	신설 (재심사 포함)	국회수정	법제처 등	대상	폐지 등	개선	정비후존 치규제수
124	63 (50.8)	61 (49.2)	20	4	-	85	13 (15.3)	1 (1.2)	72

* 해양경찰청은 1999년 정비 후 변동사항없음

. 1999 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1) 국가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대상 확대(항만법 제17조)

가. 규제내용

- 항만공사로 조성된 항만시설 중 하역장비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며, 민간투자자가 국가귀속시설을 무상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함

나. 정비내용

- 비관리청의 타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시 동일한 항만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사용료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컨공단의 임대시설은 사용료 면제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사용료 면제대상에 컨공단의 임대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비관리청의 투자비보전 극대화로 항만의 민자유치를 촉진

다. 시행시기

- 항만법을 개정하여 1999. 8월 시행

2)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규정 완화(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가. 규제내용

- 선박·화물 및 여객의 입출항과 관련된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나. 정비내용

- 후순위 입항선박이 먼저 접안하여 하역시에는 선순위로 입항하여 접안대기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정박료를 면제
- 제3국 경유를 위하여 입항하는 통과선박의 정박료 감면

- 선사가 화주의 화물입항료를 징수 대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지급

다. 시행시기

- 무역항의 항만시설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00년 1월 시행
※ 수수료는 2001년 1월 시행

3) 항만시설의 사용허가기간 연장(항만법 제27조)

가. 규제내용

- 국유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대사용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받도록 함

나. 정비내용

- 외국항만의 임대사용기간은 보통 10년 이상 장기간이고,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운영계획 수립 및 항만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임대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다. 시행시기

- 항만법을 개정하여 2000년 1월 시행

4) 산처리제 성분허용량 완화 등(김양식어장 산처리사용기준 제3조 제3항)

가. 규제내용

- 산처리제 성분에 있어 염소이온, 황산이온, 질산이온의 합계허용함량은 3% 이하이어야 하며, 양식효능시험 및 품질검사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나. 정비내용

- 김양식 어장에서 사용되는 산처리제의 효능제고를 위한 무기산성분 함유량 범위를 상향 (3% → 5%)조정
- 양식효능시험의 편의제공을 위해 효능시험기관을 확대

다. 시행시기

- 김양식어장산처리 사용기준을 개정하여 2000년 1월 시행

5)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규제 개선(항로표지법 제6조)

가. 규제내용

- 사설항로표지의 폐지, 위치변경 등 기능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설항로표지의 변경완료시 변경사항에 대한 사실을 지방청장에 신고하여야 함

나. 정비내용

- 사설항로표지는 최초에 설치될 때에는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므로 사용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설치한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사설항로표지의 폐지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다만, 항로표지는 해상교통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치목적이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허가제를 사전신고제(폐지예정일 6개월 전에 신고토록 함)로 전환토록 함

다. 시행시기

- 2000년 상반기에 항로표지법을 개정하여 2000년 12월 시행 예정

6) 양식어업관련 규제개선

가. 규제내용

- 양식어업의 종류별 어장의 수심 등을 규제하고, 3년 이내에는 어업권의 이전변경을 제한하며, 양식어장 청소주기를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정함

나. 정비내용

- 양식어업권의 이전변경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어업권의 공유지분 처분시 공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공유자의 확인사항으로 개선하여, 양식어업의 경영안정화 및 재산권행사의 자율성 도모
- 어장수심의 기준을 시·도에서 해역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확대 및 새로운 양식기술의 시도를 가능케 함

- 현행 일률적으로 3년으로 규정된 어장청소 주기를 어장위치 및 양식물에 따라 3~5년의 범위내에서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완화함

다. 시행시기

- 수산업법 등을 개정하여 2000년 10월 시행 예정

7) 내수면어업관련 규제개선(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가. 규제내용

-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내수면관리자의 자원조성 의무 및 내수면개발 대행자의 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내수면어업면허·허가시 우선순위를 정함

나. 정비내용

- 내수면관리자의 개발의무 및 내수면 개발대행자의 자격을 폐지
- 수산업법의 규정과 통일하여 면허우선순위 배제요건 명시

다. 시행시기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개정하여 2000년 7월 시행 예정

. 신설·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1.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총 36건의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여 이 중 18건의 신설·강화규제를 수정하여 의결함

- 심사대상으로 어장관리법 제정안과 선원법 시행규칙, 개항질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 총 13개 법령을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1998년도에 이미 만들어진 수상레저안전법·해양오염방지법 등의 하위법령에 대한 내용심사도 실시함

구 분	계	신 설	강 화	내용심사 등
심사대상	36	11	10	15
철 회	-	-	-	-
개선권고	18	5	1	12

2. 심사 및 조정내역

1) 어장관리법 제정안

가. 심사요청 규제의 주요내용(신설 8건)

- 연안어장의 환경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유지하며, 연안어장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위생적인 수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어장관리법을 제정하게 됨
- 주요 규제내용으로는 연안어장의 환경조사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타인 면허·허가어장에의 출입, 해역별 환경수용력에 적정하게 양식면적 또는 시설량, 양식어장간 거리 등의 조정, 면허일제갱신시 어장부실관리자나 환경오염유발자 등에 대한 제한규정, 환경오염이 심각한 어장에 대한 사전예고후 휴식제도, 어장정화 정비사업의 시행 및 수익자 부담금 부과, 어장정화 정비업의 등록, 어장부실 관리자나 환경오염 유발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제한 등임

나. 심사결과

- 환경수용력에 따른 어장조정시 어민간 이해관계가 막대하므로 사전협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토록 하며, 어장휴식기간을 하위법령에 명시
- 어장청소 의무기간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어장정화정비업은 규제일몰제 5년을 적용토록 함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가. 심사요청규제의 주요내용(내용심사 6건)

- 정부의 재정부담감소 및 민간의 창의성 유도를 위해 조종면허시험 및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일정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민간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대행토록 함
- 수상레저기구 운항중 발생하는 충돌, 좌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항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규칙의 세부사항을 정함
- 국가자격증 시험의 공정·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및 안전검사대행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을 정함
- 수상레저기구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과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 시설, 인명안전요원 비상구조선 등 안전과 관련된 등록기준을 정함
- 다수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수상레저활동을 보장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레저기구에 대하여 안전검사 시기·절차 등을 정함

나. 심사결과

-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필기시험장의 면적기준을 '충분히 수용'하도록 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 시험대행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관련
 - 교육대상을 축소하여 '직원 중에서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자' 대신에 '직접적으로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토록 하며 시험실시 후 재교육하는 제도는 폐지토록 함
 - 면허시험제도가 최초로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5년 정도는 교육제도를 유지하되 이후에는 폐지토록 함(규제일몰제 5년 적용)
- 운항규칙 중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항은 개선
 - '해수욕장 다이빙대, 계류장, 교량 등 위험발생 요소가 많은 지역을 근접하여 운항하는 때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중 '안전한 속력'을 '5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대체하도록 함
- 지정기준의 자격기준 중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종사자는 제1급 조종면허'를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종사자 중 1인 이상을 제1급 조종면허'로 대체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조종면허소지의 의무를 면제

- 수시안전검사를 폐지하고 정기안전검사만 실시토록 함

3)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 심사요청 규제의 주요내용(강화 1건)

- 구명정수(求命艇手)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의 구명정수 승선인원을 정함

나. 심사결과

- STCW 협약내용과 부합되게 생존정·구조정과 고속구조정의 자격요건 및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규정함이 타당

4) 개항질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가. 심사요청규제의 주요내용(강화 2건)

- 개항질서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위험물취급사업자의 안전관리자 보유기준 강화

나. 심사결과

- 부처원안 통과

5)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가. 심사요청 규제의 주요내용(강화1건, 내용심사 4건)

-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인증 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 사전준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전관리대행업에 관한 등록(변경등록)절차 및 등록기준을 정함
- 안전관리대행업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심사결과

-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한 국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감독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불필요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심사대행기관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필요
 - 다만, 매분기별 실적을 보고토록 한 사항은 반기별 보고로 완화
-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과 관련 ①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한정하여 관련협회 등 기타 법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진입규제에 해당되므로 기타 법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을 만들고 ② 내항선의 경우 5척 이상 안전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소규모로 안전관리 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상속에 의한 사업승계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내지 '신고인 외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안전관리대행업을 승계하는데 대한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삭제하고, 상속인의 사업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토록 함

6)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가. 심사요청규제의 주요내용(내용심사 2건)

- 항로표지에 사용하는 장비·용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를 제조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로 구분하고 검사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항로표지장비·용품의 검사대상과 검사항목을 정함
-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로표지장비·용품의 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 검사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도록 지정 기준 등을 정함

나. 심사결과

- 검사대상 및 장비용품과 관련, 레이콘 및 부표의 검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므로 삭제토록 하고, 추후에 검사대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력 및 시설기준과 관련, 레이콘 및 부표검사가 삭제됨에 따라
 - 기계분야 검사원 및 통신분야 검사원요건을 삭제, 검사책임자 및 전자분야 검사원 중 기계분야 고급기술자1인 요건을 삭제
 - 레벨측정기, 디지털 비중계, 축전지 용량측정분석기, 음향측정기, 축전지 비중계, 축전

지 온도계, 습도계 및 노트북·개인용 컴퓨터 요건을 삭제하고, 광속계·배광측정기장치 요건은 추가

7)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가. 심사요청 규제의 주요내용(누락규제 강화 4건, 신설 3건)

- 지구별조합은 상호금융업무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및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조합에 대한 경영지도, 조합감사 위원회의 설치 및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조합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으로서 조합원 및 제3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조합간의 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특례규정을 신설함
- 임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가하였을 때에는 그 임원은 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 상임이사 등에 대한 경영평가결과 경영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합장 등이 총회에 상임이사 등을 해임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심사결과

- 부처원안 통과

8)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가. 심사요청규제의 주요내용(내용심사 1건)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장은 조업실적을 어업무선국장, 업종별·지구별수협조합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심사결과

- 영세어민의 경우 매월 조업실적을 보고하는 것이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규정을 어업관련 기초자료가 축적될 수 있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함(3년 일몰제 적용)

9)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 심사요청 규제의 주요내용(강화 1건, 내용심사 2건)

- 환경보전해역에 시설설치 제한기준을 2000m³ 이상 폐수배출사업장,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허가시설 등으로 규정함
- 해양폐기물 배출금지장소로서 선박, 해양시설 외에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 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 해양에 접해 있는 발전소·제철소·조선소·정유소,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어장을 추가함
- 해양오염사고시 해양오염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해양오염 영향조사기관 지정기준 및 조사항목을 규정함

나. 심사결과

- 해양오염 영향조사기관의 선정기준 및 평가항목과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상에는 기술사 대체경력 부분의 경우 1급기사 자격취득 후 8년 이상 종사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시행령도 경력인정기간을 9년에서 8년으로 완화
 - 아울러 물적 조건과 관련, 당해 장비를 보유한 해양오염 영향평가대행자 또는 측정대행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측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것으로 함

10)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에 관한 고시 개정안

가. 심사요청규제의 주요내용(강화 1건)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및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에서 채택한 회원국 이행사항에 따라 동 협약수역 입어선들의 선박감시를 위하여 어선에 자동위치발신장치 부착 및 자동작동 등 의무 추가

나. 심사결과

- 부처원안 통과

· 누락규제 등록

1) 누락사유 및 등록 현황

- 1998~1999년도 규제정비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국제협약 관련사항 및 규제해당 여부 판단이 곤란한 사항들이 일부 규제등록에서 누락되어 지속적으로 발굴·정비를 추진중에 있음
- 1999년초 누락규제에 대한 1차 발굴과정에서 36건, 1999년도 규제정비과정 및 신설 강화규제 심사, 감사원 감사시 발굴된 8건 등 총 44건임

2) 누락규제 목록(총 44건)

번호	규제사무명	유형	근거법령
1	국제안전경영규약에 의한 협약증서의 비치	1차 발굴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
2	보장계약증명서의 비치	기타 4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1조
3	분담유 수량 및 분담금납부 보고	보고의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31조
4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 비치	기타 4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
5	양화장치 및 양화장구의 제한하중 지정 등	지정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1조 내지 제57조
6	컨테이너형식승인 신청 및 승인서 재교부 등	검사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컨테이너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7	선박복원성 기준에 따른 검사	기준설정	선박안전법 제12조의2
8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의 배출금지	금지	해양오염방지법 제5조
9	유조선의 화물창으로부터 물밸러스트배출 요건	기준설정	해양오염방지법 제5조
10	선박의 화물구역에 오염방지를 위한 기름오염방지 설치	기타 4	해양오염방지법 제6조
11	유조선의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 물밸러스	금지	해양오염방지법 제7조

번호	규제사무명	유형	근거법령
	트 적재제한 등		
12	선박안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의 처리	기타 1	해양오염방지법 제8조
13	선박으로부터 유해액체물질 배출 사전처리 및 배출방법	기타 4	해양오염방지법 제11조
14	유해액체물질의 해양배출을 위한 설비의 설치 및 배출지침서의 검인	검사	해양오염방지법 제12조
15	선박에 유해액체물질 기록부의 비치 및 기록	기타 1	해양오염방지법 제13조
16	선박의 포장유해물질 운송요건 및 배출금지	금지	해양오염방지법 제15조의2, 제15조의3
17	폐기물의 해양배출 방지를 위한 오염방지설비의 설치의무	기타 1	해양오염방지법 제17조
18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설정	해양오염방지법 제17조의2
19	선박에 폐기물기록부 비치 및 기록	기타 4	해양오염방지법 제22조
20	해양오염방지증서의 협약증서 교부	증명	해양오염방지법 제26조
21	해양오염방지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증명	해양오염방지법 제30조
22	국제협약에 의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등	검사	선박안전법 제16조의2
23	국제협약(SOLAS)에 의한 특수화물선박 운송	기준설정	선박안전법 제16조의2
24	원양어선 및 선원사고 및 처리보고	보고의무	수산업법 제60조 제2항
25	연근해 오징어 채낚기어선의 집어등 광력기 준설정	기준설정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2호
26	수산물가공업(변경)신고	신고의무	수산업법 제49조, 제51조 제2항
27	수출용패류의 생산해역 지정 및 패류채취 신고	지정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
28	수출용 패류가공공장등록 및 공장위생평가	등록의무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
29	패류처리가공의 위생관리기준	기준설정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
30	생식용 생굴 처리 가공 공장의 등록	등록의무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
31	패류의 채취, 구입, 제품 판매서류 작성,	기타 4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

번호	규제사무명	유형	근거법령
	비치		
32	구명정수의 자격요건	기준설정	선원법 제63조 제4항
33	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	보고의무	수산업법 제77조 제2항
34	항만시설사용신고 및 정정신고 대리의무	신고의무	항만법 제27조 제1항, 제4항
35	항만시설 사용권의 타인양도금지	금지	항만법 제27조 제1항, 제4항
36	항만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	허가	항만법 제27조 제1항, 제4항
37	국제수산기구 등의 협약수역 내에서의 어업 제한	기준설정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8호
38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	기준설정	선박안전법 제8조 제7항
39	해운업자 등의 보고·검사	기타 4	해운법 제56조
40	선원의 쟁의행위 제한	금지	선원법 제27조
41	수산업협동조합 임원의 해임	기타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3조
42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사업영역구분	기준설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43	수산업협동조합 임원의 성실의무	기타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8조의2
44	선장의 도선사에 대한 고지의무	기타 4	도선법 제13조

Ⅰ 제13절 Ⅰ

농림 분야

* 집필자 : 전홍 과장(Tel. 3703-2188)

. 농림부 소관 규제개혁

1. 규제 및 근거법령 현황

1) 규제근거법령

농림부(농촌진흥청 포함)의 규제근거법령은 농지법, 양곡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 29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으며 수입농산물검사 실시요령,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 유기농산물 품질관리 요령 등 133개의 관련 규정·고시·훈령 등임

2) 규제의 성질별 분류

- 농림부의 규제사무는 크게 농업생산기반 유지와 농산물의 품질·안전 및 가격유지를 위한 규제로 나눌 수 있는데 농업의 생산성을 저해하거나 농업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민의 식생활과 관련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위생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양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농림부 규제를 성질별로 세분하면 우량농지보전 및 농지이용의 효율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국민보건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농산물과 영농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한 규제, 생산자·소비자보호와 가격유지 및 수급조절을 위한 규제, 농림사업 지원과 관련된 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1) 총괄

- 농림부는 1998년도에 총 701건의 규제 중 당초에 폐지 362건, 개선 165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하였으며, 이 중 법제처, 국회입법과정등에서 변경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었음
 - 아울러 28건의 법령미근거 규제를 발굴하여 12건을 폐지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대체 지정 등 존치가 불가피한 규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농촌진흥청에서는 총 14건의 규제 중 폐지 7건, 개선 6건의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당초계획대로 추진되었음

2) 농업경영체 및 농지 분야

- 도시자본의 농촌유입 촉진 및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출자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주식회사의 출자한도를 1/2로 확대
- 농업경영체의 자율성제고 및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의 설립등기 통지 의무 폐지
- 시장·군수의 농지소유상한 인정절차를 폐지하고 농지를 5ha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일괄 확대하여 농지이용률 제고 및 규모화 촉진
-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 폐지

- 공장설립 승인을 위한 농지전용 협의시 농지관리위원 확인 생략으로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및 부조리 개연성 제거
- 중소기업의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농지조성비 분할납부를 허용함으로써 일시에 자금확보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창업을 지원함

3) 양곡관리 및 농산물검사 분야

- 양곡매매업을 전면 자유화하여 신고없이 영업이 가능토록 하고, 양곡가공업 중 제분업·제조업의 등록제는 존치하고, 도정업은 신고제로 완화하되 일정규모 이하(자가도정기 등)는 신고의무를 면제
- 상호계약으로 충분히 당초목적이 달성 가능하므로 정부관리 양곡의 취급자 지정 및 지정취소 폐지
- 농산물 검사과정에서의 입회의무를 폐지하되 수검자 또는 대리인의 희망에 따라 입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 도모
- 농산물 검사장소 지정제를 폐지하여 현지사정에 따라 시장·군수 및 농협장 등과 협의하여 수검장소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농민들의 농산물검사를 용이하게 함

4) 농자재(농약, 농기계, 종자, 비료) 관련 분야

- 농약관련업 등록시 업체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험실, 제조시설 등 기본시설을 제외하고는 임차를 통한 장비의 확보도 가능하도록 개선
- 농약품목 등록시 제출시료량을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감량하여 비용부담 경감
- 농약영업 등록자의 인력이나 시설·장비 변동시 신고토록 하며 폐업·휴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시 사전신고 및 상속, 양수·양도 등의 지위승계 신고의무 폐지
- 농기계구입자에 대한 업체의 의무교육을 폐지하되 업체의 교육필요성 정도에 따른 자율교육으로 전환하여 농기계제조업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관련비용부담을 경감토록 개선
-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자의 이동장비, 수리장비 확보의무를 폐지하고, 인력기준에 기계분야 기능사 2급 이상을 추가하여 수리기사의 확보도 용이토록 개선
- 민간업체의 부담경감 및 자율적인 성능관리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품종유지책임자 지정제도 폐지

- 해외채종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
- 수입업 등록을 신고제로 완화하여 비료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비료생산·수입업·판매업의 영업승계신고제도 폐지로 해당업체의 업무 간소화 도모
- 비료생산업체의 출하 전 비료품질 검사의무를 폐지하되 자유품질 관리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

5) 인삼의 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

- 인삼경작을 토양조건 등을 판단하여 경작자의 책임과 자율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정제 및 변경신고를 폐지하여 농업인의 불편해소 도모
- 경작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인력투입에 따른 행정비용이 소요되므로 5년근 이상 인삼 수확시 신고 및 입회제 폐지
- 제조입회에 따른 행정비용(연 458명 투입)의 절감과 제조업체의 불편해소를 위해 인삼 제조확인제 폐지
- 인삼제조업체가 이윤동기에 따라 스스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체검사업체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생산성 증대 및 검사소요 비용 절감
- 경작자가 인삼류를 제조하여 수집상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인삼제조업(4년근 이하) 신고를 면제하여 인삼경작자의 불편해소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6) 축산(사료, 초지포함) 관련 분야

- 축산업의 등록·허가제를 폐지하여 축산물의 수입자유화가 된 상태에서 국내축산업자만 규모 제한한다는 차별을 해소하여 축산업자의 자율경영 강화 및 경쟁력 강화
- 축산업자의 자율적 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수급조절 명령제도 및 사육가축 감축명령 폐지
- 사료조절단체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사료산업의 민간자율경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료의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사료제조업체의 특성에 맞게 인원을 배치하도록 인원기준을 폐지하여 자율검사를 유인하고 인건비 절감과 업체의 자율성 보장
- 초지전용 허가시 일정기간(30년) 경과초지는 신고로 완화하여 초지소유자의 권익보호 및 개발여건 조성

7) 농촌경제 활성화 분야

- 농어촌주택, 토지 및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받은 자는 최초로 공급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은 전매제한 기간을 폐지하여 주민재산권 보장 및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분양 촉진에 기여
- 농어촌휴양지 개발사업에 농업회사법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관광농원의 상한규모를 2만 평으로 확대하여 입장료, 시설사용료 신고제를 폐지하여 업체의 자율성 보장
- 농어가 민박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농어가의 민박사업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농어가의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1998년도의 규제개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 검토
 - 규정을 구체적·명확히 규정하여 규제기관의 재량권을 축소
 - 규제신고센터에 빈번히 접수되어 타당성이 있는 사항의 반영
 - 사업자의 경영자율성 보장 및 부담 경감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 부조리 관련규제, 규제의 국제 규범화를 위한 규제 등 주요정책 건의사항의 반영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1) 심사경위

- 1999. 4. 13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한 부처별 잔존 규제정비지침에 따라 농림부 잔존 규제 정비방안에 대해 농촌경제연구원과 서울대농지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위 두 기관의 용역결과에 대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후 규제정비대상을 확정하고 농림해양소위원회 심의(1999. 7. 27) 및 경제2분과위원회 심의(1999. 9. 3)를 거쳐, 1999. 9. 17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농림부의 잔존규제정비계획을 확정·의결함

2) 정비결과

- 정비대상 규제건수를 총 423건으로 확정하여 38건을 폐지 또는 개선키로 함(폐지 등 23건, 개선 15건)
- 규제심사대상 규제수는 1998년 폐지규제 중 입법과정에서 존치된 규제 6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업인협동조합법·농안법 등 제정안에 대한 신설규제 75건, 누락규제 등 14건을 포함하여 총 423건으로 함

1998년 규제정비(%)			1999년 정비 후 변경(%)					1999년 정비(%)			정비 후 존치 규제수
당초 규제수	폐지	잔존 규제	신설 (재심사)	국회 수정	법제처 등	누락 등록	계	대상	폐지 등	개선	
701	362	339	75	6	-11	14	84	423	23	15	400

* 폐지 등 : 폐지규제·규제제외 및 통합규제 등임

5.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1)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 면제대상 확대

가. 규제내용

-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농지법 제10조)

나. 정비내용

- 농지처분 의무 대상 중 농지개량을 위해 경작을 하지 못한 경우는 농지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다. 시행시기

- 1999. 10. 1일 시행

2)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기간 연장

가. 규제내용

- 농지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업용시설 등으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3년 이내)동안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나. 정비내용

-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편입된 농지 위에 간이농업용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현행 3년 한도에서 1회만 가능하던 것을 1회 연장(6년 범위) 가능토록 개선

다. 시행시기

- 1999. 10. 11일 시행

3) 대체농지 조성비 감면범위 확대

가. 규제내용

-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함(농지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나. 정비내용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및 농어촌의 육아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체농지 조성비를 감면하여 농촌에 들어서는 복지시설 설치자에게 실질적 혜택부여

다. 시행시기

- 1999. 10. 11일 시행

4) 일정규모 이하의 양곡가공업(제분업, 제조업) 등록제 폐지

가. 규제내용

- 양곡을 원료로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양곡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항)

나. 정비내용

- 1998년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양곡판매업을 완전 자유화하였고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신고제로(일정규모 이하는 신고의무 면제)완화한데 이어 양곡가공업 중 제분업 및 제조업의 경우에도 일정규모 이하는 등록의무를 면제하여 소규모 가공업체 설립상의 진입제한 완화

다. 시행시기

- 2000. 6월 시행

5) 양곡의 매입 및 판매명령 대상품목의 구체화

가. 규제내용

- 농림부 장관은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농협 등으로 하여금 양곡의 매입 및 판매에 관한 명령을 할수 있음(양곡관리법 제16조 제1항)

나. 정비내용

- 양곡의 출하 및 가격조절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미곡, 맥류, 두류 등 주요 곡종으로 품목을 구체화

다. 시행시기

- 2000. 6월 시행

6) 사료 성분등록제의 신고제 완화 및 각종 시설기준 완화

가. 규제내용

- 사료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의 종류, 성분, 성분량에 대한 사항을 공정규격에 적합하게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사료관리법 제 12조 제1항)

나. 정비내용

- 현재 사료제조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을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하여 제조업자의 등록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아울러, 사료제조업의 진입에 따른 각종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규로 사료제조업 등의 참여 희망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함

다. 시행시기

- 2000. 6월 시행

7) 타조의 식용허용을 위한 규제개선

가. 규제내용

- 타조의 내수용 수입을 허용(1998. 5. 7)한 이후 현재 타조의 국내사육이 급증(600여 농가, 2만 마리 추정)하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식용 및 가공용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으나,
- 현행 법령상 타조가 식용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또한 유통·판매되기 위한 제도가 미비하여 타조의 식용이 허용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관련법상의 미비점

- 농림부(축산물가공처리법) : 타조가 도축대상 가축(현재12종)에 포함되지 않아 위생적 도축·검역 및 유통 불가
- 복지부·식약청(식품위생법) : 식품공전상 식품으로 인정되지 않음
- 환경부(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 1998. 5. 7일 이전에는 타조가 재수출용으로 수입되어 내수용으로 이용되기 위해 용도전환 필요
 - 타조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아 일본의 경우 고기(74.3%), 가죽(13.2%), 깃털(13.2%) 등으로 이용

나. 정비내용

■ 농림부

- 부령을 1999년말까지 제정하여 위생적인 타조의 도축·검역 및 유통 허용 조치

■ 복지부·식약청

- 농림부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위생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조의 위생적인 도축·검역유통시 타조고기를 식품으로 인정

■ 환경부

- 1998. 5. 7일 이전에 수입된 타조에 대해 국제협약(CITES)에 의해 거래가 제한된 품목이외에는 내수용으로 전환 허용

다. 시행시기

- 2000. 3월 시행

6. 신설·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1)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총 81건의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음
 - 심사대상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령 제정안과 농업인협동조합법제정안, 인삼산업법 개정안 등 총 12개 법령에 대한 신설·강화규제를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1998년도에 이미 만들어진 농수산물품질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하위법령에 대한 내용심사도 실시함

구 분	계	신 설	강 화	내용심사 등
심사대상	81	76	4	1
철 회	-	-	-	-
개선권고	13	11	1	1

2) 심사 및 조정내역

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의 주요내용(신설 2건)

- 환경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의무적으로 영농지도 및 교육을 이수하고 비료 및 농약사용대장의 기록을 하도록 하고, 위반할 시에는 보조금의 일부(10% 예정)를 감액하여 지불
- 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산물재배 포장에 대해 토양성분검사를 농산물검사소장은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

■ 심사결과

- 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의무 중 영농지도를 계도로 완화하고, 영농교육은 환경농업신청시에 1회만 받도록 하고 기타 교육은 자율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되었고 기타 사항은 원안통과됨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정안

■ 심사요청 규제의 주요내용(신설 45건)

-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축산업협동조합법(이하 축협법)과 인삼협동조합법(이하 인삼협법)을 각각 폐지하고 농업·축산업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해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설립함(안 부칙 제2조, 제3조)
- 중앙회의 사업은 회원조합과 공동출자·공동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회원의 사업과 결합되거나 이를 위촉시킬 우려가 있는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6조 및 제143조)
- 중앙회의 금융사업에 대하여 은행법상의 건전경영지도,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금융업무의 건전화·효율화를 도모함(안 제11조)
-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임인 조합장에 대하여 업무집행에 따른 과실책임을 부과하고,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53조)

■ 심사결과

- 중앙회의 사업제한과 관련하여 법에서는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하도록 수정
- 조합의 발기인 수는 50인 이상으로 상향하지 말고 20인 정도로 유지하도록 수정의결

되었으며, 기타사항은 원안 의결됨

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심사요청 규제의 주요내용(신설 20건)

- 품질인증에 대한 기준, 대상품목, 절차 등을 규정하여 농수산물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 내지 제16조)
- 지역특화 사업의 육성을 위한 지리적표시 도입에 따라 대상품목, 신청자격, 등록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7조 내지 제19조)
- 유통중에 있는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 특산물 등을 조사 표시의 변경·정지, 인증·등록의 취소 등의 기준을 정함(안 제20조)
- 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 표시기준, 판정기준 등을 규정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질서 등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24조 내지 제26조)
- 검사대상 농산물은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입하는 농산물로 하고, 검사원의 자격 등을 규정함(안 제29조 내지 제30조)

■ 심사결과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명시하여 임의적 운용을 방지하고, 향후 지정제의 등록제 전환 검토토록 수정의결
-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시 수시로 자료제출, 장부·서류의 확인을 하는 것은 민간인증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정기점검으로 전환하되, 부정사례 발견시 특별점검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 검사기관의 업무규정승인 등 지도·감독은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수시점검을 정기점검으로 하되 부정 사례시 특별점검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되었고, 기타사항은 원안 의결됨

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심사요청규제의 주요내용(신설 1건, 강화 1건)

- 선박 등의 음식물 처리실태 확인·검사
 - 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에 남은 음식물 처리실태를 확인·검사 및 행정조치(시행규칙 제19조의2)
- 종전에 벌칙사항을 과태료로 전환 및 과태료 수준을 상향(100만원 → 300만원) 조

정 : 시행령 제5조

■ 심사결과

- 선박 등의 음식물 처리실태 확인 · 조사 등 (신설규제)의 경우 선박의 음식물 쓰레기를 육지로 반출한 때로 제한하여 규제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되었고, 기타사항은 원안의결됨

마.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의 주요내용(신설 2건)

- 자체검사업체의 관리 · 감독(시행규칙 제18조의2)
 - 인삼류의 검사업무가 민간검사기관으로 이관되고 자체검사업체를 지정하여 자율검사토록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품질경쟁력 제고 및 대외신뢰도 향상을 위해 관리 ·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
- 민간검사의원의 자격기준(시행규칙 제21조의2)
 - 검사공무원이 담당해 오던 인삼검사업무가 민간으로 이양됨에 따라 민간검사의원의 자격기준을 정함

■ 심사결과

- 민간업체의 자율성보장을 위해 제18조의2 제3항의 “필요시 자료제출요구”를 “부정행위 또는 민원발생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수정의결됨
- 민간검사의원의 자격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립농산물 검사소장의 검사원 자격기준 승인 제도를 폐지하되 “민간검사기관장이 자격기준을 정하여 고시 후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됨

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 심사요청 규제의 주요내용(강화 2건)

- 정액 등 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강화규제)
 - 정액 등 처리업의 시설 기준에 있어 소독시설에 “장비 및 운반용기의 소독시설 설치” 추가 및 검사용 장비에 “실체현미경” 추가
- 과태료 금액의 상향(100만원 → 300만원) : 강화
 - 정액처리업 등록 또는 종축업 · 부화업을 신고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등(100만원 → 300만원)

■ 심사결과

- 정액 등 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 중 “실체현미경”은 자율확보하도록 수정의결하고, 기타사항은 원안통과

사.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심사요청 규제의 주요내용(강화 1건, 신설 1건)

- 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미·보조사료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신고, 단체장(축협중앙회, 사료협회, 단미협회)에게 신고토록 함
- 단미·보조사료의 범위확대 및 시설기준 설정 : 강화
 - 단미사료 : 사탕무우박, 가수분해 및 유도단백질
 - 보조사료 : 흑운모, 견운모, 자몽종자·포도종자·켈레아종자·반추위 추출물, 헤미셀룰라아제
 - 동물성 발효사료, 가수분해 및 유도단백질, 해조분은 별도의 시설기준을 신규로 설정

■ 심사결과

- 부처의견대로 원안통과됨

아.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동물용 의료용구 규격기준 고시)

■ 심사요청규제의 주요내용(신설 1건)

- 동물용 의료용구 규격기준은 식약청 고시로 제정된 인체용 의료용구 규격기준(1999. 3. 10 제정)의 주요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돼지의 경우 피하가 두꺼우므로 주사기의 내외면 및 구조만 조금더 강하게 규정함

■ 심사결과

- 돼지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모든 동물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됨

자. 농업농촌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 심사요청 규제의 주요내용(신설 2건)

-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실태조사(시행규칙 제5조) : 신설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5항에 의거하여 농촌인력 육성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활용 및 부실법인에 대한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와 관련하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 등의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근거 마련

- 후계농업인 및 전업농, 준조합원 자격 등 : 누락등록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 규칙에서 승계되어 규정

■ 심사결과

-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청구 및 운영실태 조사시에 있어서 해산청구사유는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수정의결하였고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시행규칙 제5조 제2항)는 삭제토록 의결됨
- 후계농업인 및 전업농, 준조합원 자격 등은 하위규정 제정시 심사키로 하고 심사 유보함

차.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제정안

■ 심사요청 규제의 주요내용(내용심사 1건)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 제정
-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 및 출하전 단계에서의 잔류농약 · 중금속 · 곰팡이독소 · 식중독균 및 항생물질의 조사기준을 설정함

■ 심사결과

- 제39차 경제2분과위원회(1999. 11. 12)에서 이중규제의 문제 등으로 인해 보류되었으나 제42차 경제2분과위원회(1999. 12. 21)에서 식약청의 이견을 농림부에서 수용하고 농림부에서 관련법 개정시 '생산단계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생산단계 잔류지도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통과됨

7. 누락규제 등록

1) 누락사유 및 등록 현황

- 1998~1999년도 규제정비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시행시기상의 문제 및 규제해당여부 판단이 어려운 사항들이 일부 일부 규제등록에서 누락되어 지속적으로 발굴 · 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

- 1999년초 누락규제에 대한 1차 발굴과정에서 24건, 1999년도 감사원감사시 발굴된 1건 등 총 25건임

2) 누락규제 목록(총 25건)

번호	규제사무명	유형	근거법령	규제 시행일
1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기타 4	농지법 제26조	1996. 1. 1
2	공동방제명령	기타 4	식물방역법 제19조, 제23조, 제26조	1996. 12. 7
3	가축의 도살, 처리기준 설정	시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1998. 6. 14
4	원유의 집유기준설정	시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1998. 6. 14
5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설정	시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1998. 6. 14
6	축산물관련업의 용기 등의 규격설정	시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5조	1998. 6. 14
7	축산물의 표시기준 설정	기준설정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1998. 6. 14
8	가축의 도살, 처리 및 원유의 집유를 위한 작업장의 장소제한	신고의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1998. 6. 14
9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설정	기준설정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1998. 6. 14
10	도축장 등의 검사보조원 배치의무	고용의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	1998. 6. 14
11	수입축산물의 신고	신고의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	1998. 6. 14
12	축산물의 합격표시의무	검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	1998. 6. 14
13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축산물의 처리	기타 4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8조	1998. 6. 14
14	도축업 등의 영업시설 기준설정	기준설정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1999. 1. 1
15	도축업 등의 영업허가	허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1998. 6. 14
16	축산물운반업 등의 영업신고	신고의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1998. 6. 14
17	축산물가공품의 품목제조 보고	보고의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	1998. 6. 14
18	도축업 등의 영업승계신고의무	신고의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6조	1998. 6. 14
19	축산물 취급자의 건강진단의무	기타 4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9조	1998. 6. 14

번호	규제사무명	유형	근거법령	규제 시행일
20	축산물의 취급영업자 및 종업원의 위생교육의무	기타 4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	1998. 6. 14
21	축산물가공품의 허위표시, 과대광고 금지	금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2조	1998. 6. 14
22	축산물의 회수사실 공표의무	명령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7조	1998. 6. 14
23	비료의 공급	기타 4	비료관리법 제7조	1997. 1. 1
24	방제기술자 교육	기타 3	농약관리법 제3조제4항	1996. 12. 7
25	시도지사의 비료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기준설정	비료관리법 제24조제1항	1996. 12. 7

. 산림청 소관 규제개혁

1. 규제 및 근거법령 현황

가. 규제근거법령

- 산림법, 임업진흥촉진법, 사방사업법,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등 5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국유임산물매각규칙과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규정 등 44개 훈령, 예규, 고시 등에 128건의 규제를 운영하고 있음

나. 규제성질별 분류

- 자연환경과 자연생태, 그리고 산림보존을 위한 규제
-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 산림규제는 과거 산림녹화와 사방정책 위주의 통제적 제도가 대부분으로, 환경여건이 변화된 현시점에서는 산림자원 이용측면에 있어 민간자율성이 필요하다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규제정비를 추진하여 산림분야 총 276건 중 29%인 79건을 폐지하고 28%인 78건을 개선하였으며 유형별 주요 정비내용은 아래와 같음
 - 사유림에 대한 영림계획 작성의무 폐지
 - 입목벌채허가제 개선
 - 기능인 영림단 등록등의 폐지
 - 휴양림, 수목원 등의 경영자율화 확대
 - 조림·육림 등 시업명령 폐지
 - 임업후계자 등의 자격조건 완화
 - 화전정리에 관한 규제 폐지
 - 산림사업에 대한 민간부문 진입규제 개선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산림규제는 과거 산림녹화 등 통제적 제도가 대부분으로, 환경여건이 변화된 현시점에서는 산림자원 이용측면에 있어 민간자율성의 제고에 기본방향을 둠
 - 사유림에 대한 영림계획의 작성의무 등 비현실적인 규제정비
 - 영림기술자 자격제한 등 불합리한 진입규제 개선
 - 산지정화보호구역 지정폐지 등 과도한 산림규제정비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가. 심사경위

- 1998년 규제정비 결과 잔존규제 138건으로 정비된 후 1999년 상반기 변동 2건, 타부처 이관 22건(조수보호법 환경부 이관)의 규제가 수정변경되었고, 신설 28건(산림조합

법), 누락 7건이 추가되어 149건의 규제가 잔존하게 되었으며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1999. 7. 7일 농림해양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비대상 149건 중 폐지등 23건, 개선 5건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의하였고 분과위에서 4건을 재심사하기로 함
- 1999. 8. 13일 제31차 규제개혁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에서 농림해양소위원회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폐지 등 21건, 개선 5건으로 조정하였고
- 1999. 8. 13일 제36회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서 분과위 결과대로 잔존규제 128건으로 확정함

나. 정비결과

구 분	1998년 정비			1999년 정비 후 변경					1999년 정비				정비 후 존치 규제수
	당초 규제수	폐지	잔존 규제	신설 (재심사 포함)	국회 수정	법제처 심사 수정 등	누락 등록	소계	대상	폐지	제외	개선	
산림청	276	138	138	28	△5	△19	7	11	149	4	17	5	128

5.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1) 영림계획 작성경비 징수기준 승인

가. 현황 및 문제점

- 영림기술자가 산림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영림계획을 작성한 경우, 산주로부터 징수하는 경비기준을 산림청장이 승인
- 산주에게 영림계획 작성경비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음

나. 개선방안

- 징수기준을 임협중앙회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면 산림청장이 이를 고시

다. 시행시기

- 1999. 11. 22일 산림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 영림기술자 자격제한

가. 현황 및 문제점

- 영림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산림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관련분야에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
- 영림기술자(영림계획을 작성하고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영림기사 1급 이상의 자격자 등 임업분야 종사자만 해당되나 실제로 현장에서 1·2급 토목기사가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임

나. 개선방안

- 1·2급 토목기사의 자격인정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일정수준 이상의 임업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완화
- 임업중앙회의 교육기관을 주문진 기계훈련원뿐만 아니라 양산, 진안훈련원도 포함

다. 시행시기

- 1999. 9월부터 시행

3) 버섯종균 원균 분양신청

가. 현황 및 문제점

- 연구기관이 등록한 품종을 분양받을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신청토록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나. 개선방안

- 분양받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폐지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 도모

다. 시행시기

- 1999. 12. 30일부터 시행

4) 임산물의 사용제한 고시

가. 현황 및 문제점

-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시로 임산물의 생산·판매·이동 또는 사용을 제한함

나. 개선방안

- 현재 임협만이 특정임산물(송이버섯 등)의 생산유통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여타기관(또는 개인)도 일정한 개관적인 기준하에서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다. 시행시기

- 2000년 상반기 시행 예정

5) 목재방부제 등의 사용명령

가. 현황 및 문제점

- 목재의 효율적 사용과 목구조물의 안전시공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은 방부제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개선방안

- 목재의 효율적 사용과 목구조물의 안전시공 등을 위해 방부제의 사용은 소유자의 판단에 의할 사항이지 법으로 강제할 실익이 없음

다. 시행시기

- 산림법을 개정하여 2000년 상반기 시행 예정

6) 공·사유림내 채석(변경)허가

가. 현황 및 문제점

- 공·사유림내 채석허가시 시장·군수는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공람을 하여야 함

나. 개선방안

- 주민동의를 판단기준이 없으며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민동의를 폐지

다. 시행시기

- 산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0년 하반기 시행 예정

7) 산림병해충 구제예방 명령

가. 현황 및 문제점

- 시·도지사는 산림에 해충 또는 병균이 만연하였거나 만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구제·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나. 개선방안

- 산주에게 구제·예방에 관한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개선

다. 시행시기

- 산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0년 하반기 시행

8) 임업진흥기금의 관리대행

가. 현황 및 문제점

-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기금의 운용·관리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행

나. 개선방안

- 정부의 기금정비방안에 따라 임업진흥기금의 관리대행 폐지

다. 시행시기

- 2000. 1. 1일부터 시행

6. 신설·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1)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신설·강화규제 심사 현황

구 분	계	신 설	강 화
심사대상	30	28	2
원안수용	28	27	1
개선권고	2	1	1

2) 심사 및 조정내역

가. 임업협동조합법 개정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

- 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제한(1번-14번)
 - 조합과 중앙회의 영리 및 투기목적의 업무금지 원칙외에 회원사업과 직접 경합하여 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사업금지를 추가하고
 - 연합회의 사업시행시 회원조합과 공동출자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둠
- 조합의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제한(15번-23번)
 - 조합은 자기자본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하되,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연합회장이 정하도록 함

- 연합회의 경영평가, 산림청장의 경영지도(24번-26번)
 - 연합회장은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 산림청장은 조합원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조합에 대하여 경영지도
- 설립인가의 취소 등(27번-28번)
 - 산림청장은 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할 때 및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등에 해당될 경우 연합회장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
- 심사결과
 - 임업협동조합법 개정안 28건 누락신설 중 1건 수정의결, 27건 원안의결
 - 일정비율 이상 여유자금의 연합회 예치 의무화 규제는 회원조합의 동의 등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토록 수정(16번)
 - 기타사항은 농업인협동조합법의 변동사항에 따라 조정토록 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

나. 산림법 개정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
 - 산림청장의 국·공유림, 보안림 지정
 -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국·공유림을 보안림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맑은물 공급과 공익적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임
 - 광구 안에서의 석회석·사문석 채석허가
 -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가를 받아 인가받은 광구 안에서 채굴한 석회석·사문석을 석재용도(쇄골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림법에서 정한 채석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임
- 심사결과
 - 산림법 개정안 중
 - 산림청장의 국·공유림·보안림 지정은 원안대로 의결
 - 광구 안에서의 석회석·사문석 채석허가는 산림법개정안 제90조의 3 “석회석·사문석”은 삭제하되, 관련 대법원판결 내용을 검토 후 법령미비사항 보완으로 수정의결

Ⅰ 제14절 Ⅰ

과학기술 · 정보통신 분야

· 과학기술부 소관 규제개혁

* 집필자 : 전홍 과장(Tel. 3703-2188)

1. 개요

1) 규제 및 근거법령 현황

가. 규제 근거법령

■ 과학기술부

- 원자력법,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술개발촉진법 등 26개 법률
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150여개 훈령, 고시

■ 기상청

- 기상업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나. 규제성질별 분류

- 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 등 원자력 관계시설의 건설과 운영의 안전성에 관한 규제

- 사용후 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 등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규제
- 각종 연구사업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정, 지원관련 규제 등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가. 개요

- 과기부 소관 426개 규제 중 213개(50%) 규제를 폐지하고, 57개(12.7%) 규제를 개선 하였으며
- 기상청 소관 28개 규제 중 14개(50%) 규제를 폐지하고, 3개(10.7%) 규제를 개선하였음

나. 주요정비내용

■ 과학기술부

- 원전사업, 폐기시설,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등에 대한 허가절차중 설계, 공사방법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별도승인제도 등을 폐지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원전부품생산업 등 하도급사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규제를 폐지하고, 원전사업자의 최종적 안전관리책임하에 업체를 선정·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방식 전환
- 핵물질 가공사업과 변환사업을 통합하여 개별적인 별도 허가절차를 폐지하고 원자력 법상의 각종 중복규제를 정리하여 사업자 부담을 경감
- 원자력 사업과 관련된 불필요한 중복보고는 폐지하고, 각종 보고서류는 통합하여 보고 절차, 내용, 주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의무적 정기교육, 보수교육에 있어서도 교육대상 직종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교육내용의 실질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축소 정비
- 대덕연구단지내 임대차, 전세권 설정금지와 취득신고, 입주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존치토록 하여 입주기관의 자율적 연구환경 조성을 지원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 및 출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단체가입의무와 공제조합 출자의무를 폐지
- 과학관 설립,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관 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전면 폐지

■ 기상청

- 민간예보사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진입제한을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 선박, 항공기의 기상관측 결과보고, 선박의 관측방법 지도 등 비현실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공무원의 출입검사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업체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원자력 관계시설 및 방사능 관련물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여규제는 준치가 불가피하므로 확정된 1998년 정비계획의 엄격한 집행등 규제의 운영 및 품질개선에 중점
- 과학기술 연구사업의 촉진 및 연구결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개선
- 기술개발 및 수출과 관련하여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정비
 - ※ 기상청 규제는 잔여규제 수(14개)도 적고, 새롭게 다시 정비할 대상도 없어 1999년도 규제정비대상에서 제외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가. 심사경위

- 1999년도 과기부 규제정비계획 심사대상 총 215건에 대하여 연구기관의 검토(1999. 4~6월), 심사소위원회(1999. 7. 28), 경제2분과위원회(1999. 8. 13), 규제개혁위원회(1999. 9. 17)의 심사를 거쳐 폐지 등 24건(11.2%), 개선 3건(1.4%), 잔여규제 191건의 정비계획을 확정
- 감사원이 과학기술부에 대한 규제개혁 감사시(1999. 6. 7~1999. 7. 24) 미등록 누락규제로 지적한 35건에 대하여 지적사항의 규제여부와 누락규제의 폐지여부를 경제2분과위원회(1999. 12. 21)에서 심사하여 11건(분류조정 4건 포함)을 규제등록하고, 20건을 폐지하는 규제정비계획을 확정

나. 정비결과

1998년 정비			1998년 정비 후 변경					1999년 정비					1999년 정비 후 변경			현 규제수
당초 규제수	폐지	잔존 규제	신설 (재심사 포함)	국회 수정	법제처 심사 수정 등	누락 등록	소계	대상	폐지 (통합 포함)	제외	개선	정비 후 존치 규제수	신설	재심사	기타	
426	213	213	2	-	-	-	215	215	23	1	3	191	-	-	+11	202

2. 1999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1) 기술수출계약 사전신고 폐지

가. 규제내용

-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대가가 미화 \$10만달러 이상일 때는 계약체결 전에 기술의 내용 및 제공방법, 기술수출의 대가 및 수취방법, 계약기간 등에 대해 과기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신고된 수출계약의 경우 수출실적을 매년 보고토록 하고 있고, 허위보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나. 정비내용

- 기술수출 여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강제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따라 실적보고 및 과태료 조항을 폐지

다. 시행시기

- 기술개발촉진법을 개정하여 2000년 하반기부터 시행

2) 대덕연구단지 입주승인 개선

가. 규제내용

- 연구단지내 교육연구시설 보호구역에 입주코자 하는 자는 입주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7조)

나. 정비내용

- 입주승인의 범위에 시험공장 등을 포함시키고, 상용행위 금지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연구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설비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다. 시행시기

-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을 개정하여 2000년 상반기에 시행

3)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변경신고) 개선

가. 규제내용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천만원 또는 5억원, 기술인력 10인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음(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3,5조)

나. 정비내용

- 엔지니어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기준은 삭제하고, 기술인력 기준은 10인 이상에서 5인 내외로 완화

다. 시행시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0년 상반기에 시행

3. 신설·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1) 개요

-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1999년중 신설된 규제는 없으며 발전용원자로 사용중검사에 공사 중 검사를 추가하는 등 4건의 규제가 강화되었음
- 과학기술부는 총5건의 강화규제 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이 중 원자력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6조(핵연료물질 사용허가신청)에서 방사선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첨

부토록 하던 강화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실무협의과정에서 철회토록 조정

2) 심사 및 조정내역

원자력법 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강화4)

- 원자력발전소 사용중검사에 공사중검사를 추가
-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게 부과된 원자로의 운전조건 9가지 외에 원자로 운전원에 대하여는 매년 약물복용, 정신질환 등에 관한 진단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자가 원자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추가
- 방사성 동위원소 등에 관한 허가기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장비 및 인력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존의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신고제도와 안전관리규정 승인제도를 대체하되 허가기준중 인력기준을 추가
- 법에서 규정한 과징금 상한액인 5,000만원 이하 내에서 위반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과징금액을 최고 500%까지 인상하고, 업무대행자·판독업무자 등 2개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과징금 조항 추가

■ 심사결과(1999. 7. 16)

- 정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안)에 의하면 2015년까지 1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인 바,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위한 공사중검사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과학기술부 원안대로 심사의결
- 원자력발전소는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시 인명 및 국가경제적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국내에서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원에 대하여 매년 약물복용 및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사전에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과학기술부 원안대로 심사의결
- 1,400여개 기관에 산재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기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장비의 확보를 규정하는 동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과학기술부 원안대로 심사의결
- 원자력법에서 정한 상한액(5,000만원) 범위 내에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실질적인 과징금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징금을 상향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과학기술부 원안대로 심사의결

4. 누락규제 등록

1) 누락사유 및 등록현황

가. 개요

- 감사원의 과기부에 대한 규제개혁실태 감사시 미등록규제로 35건을 지적하였는 바, 이에 대한 규제여부 및 폐지여부 등을 경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사(1999. 12. 21)하여 20건은 폐지하고 11건(분류조정 4건 포함)을 등록기로 함

나. 누락규제에 대한 심사 및 조정결과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령

- 총 16건이 누락규제로 지적되었으나 이 중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14건을 폐지하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이사 중 과기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제는 존치하는 등 2건에 대하여 규제등록 조치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령

- 총 4건이 누락규제로 지적되었으나 이 중 산업기술연구조합 명칭사용의무 등 3건을 폐지하고, 조합의 사업계획 · 예산안 · 실적 · 결산서 제출의무는 존치시켜 규제등록

■ 원자력손해배상법령

- 총 8건이 누락규제로 지적되었는 바, 모두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존치키로 하였으나 이 중 3건은 별도규제로 보기 어려워 다른 규제와 통합하여 등록(5건)

■ 원자력손해배상 · 보상계약에 관한 법령

- 총 5건이 누락규제로 지적되었는 바, 모두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존치키로 하였으나 이 중 1건은 별도규제로 보기 어려워 다른 규제와 통합하여 등록(4건)

■ 기술사법령

- 기술사는 한국기술사회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기술사는 의무적으로 한국기술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규제하던 2건이 누락규제로 지적되었으나 이를 모두 폐지함

2) 누락규제 목록

- 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이사중 과기부장관 지명 1인 포함의무
- ②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보증액 한도
- ③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에 대한 선배상조치 의무
- ④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액에 대한 보완명령
- ⑤ 원자력배상책임 보험계약조건에 대한 승인
- ⑥ 원자력사업자의 공탁금 반환시 승인
- ⑦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감독
- ⑧ 정부와 보상계약을 체결한 원자력사업자의 보고의무
- ⑨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승인 및 보고
- ⑩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⑪ 원자력사업자의 보상계약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

· 정보통신부 소관 규제개혁

* 집필자 : 윤순희 사무관(Tel. 3703-2182)

1. 개요

1) 규제현황 및 근거법령

가. 규제근거법령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우편법 등 17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37개의 하위법령 등에 총 228건의 규제를 운영하고 있음

나. 규제성질별 분류

- 정보통신부문은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규제, 정보통신공사업관련 규제, 전파 및 유선방송

관련 규제, 정보화 관련 규제, 우편관련 규제 등으로 구성됨

• 규제의 성질별로 살펴보면

- 전기통신서비스 관련규제는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제, 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 진입관련 규제와 영업활동관련 규제 등을 담고 있음
- 정보통신공사업 관련규제는 정보통신공사업 진입관련 규제와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확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관리·감독, 공사시공·유지관리 등에 대한 규제임
- 전파관련 규제는 전파의 효율적 이용 및 혼신 등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무선국의 허가·운용, 무선기기에 대한 형식검정, 전자파 적합등록 및 무선설비에 관한 조건 등에 관한 규제임
- 유선방송관련 규제는 유선방송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 기술기준과 유선방송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제임
- 정보화 및 S/W 관련 규제는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및 S/W의 개발촉진과 관련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으로서 정보화의 진흥 및 기반제공을 위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권장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가 대부분임
- 우편관련 분야는 우편취급소의 업무 감독 및 우편수취함·사설우체통 설치, 국내사업용 서류송달업 지도를 위한 규제로서 주로 공공성 차원의 규제임

2) 1998년도 주요규제정비 사항

가. 총괄

- 정보통신부는 1998년도에 총 342건의 규제 중 당초에 폐지 182건, 개선 70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하였으며, 이 중 국회입법과정 등에서 변경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었음
- 아울러 9건의 법령미근거 규제를 발굴하여 1건을 폐지하였으며, S/W 진흥구역지정해제 등 준치가 불가피한 규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나. 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 일반기업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인수 합병 허용
- 통신사업자의 업무위탁 승인·신고제를 폐지

- 새로운 전기통신방식에 의한 역무제공시 승인제도의 폐지
- 데이터망사업자 노드설치의무 완화

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경쟁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진입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기준을 완화
- 정보통신공사의 등급별 수주범위를 폐지

라.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 무선 10%, 유선 33%로 제한된 기간통신사업의 동일인 지분한도 폐지
- 기간통신사업의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현 33%에서 49%까지) 시행시기를 2001년에서 1999. 7. 1일로 앞당김
- 무선국의 국내법인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폐지

마. 전파이용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 법인의 양도 양수시 무선국의 승계 허용
- 공중통신용 단말기의 기술기준 확인증명제도 폐지
- 전파사용료 부과방식의 합리적 개선
- 무선종사자의 자격자 배치 기준 및 계기·예비품 등 비치의무 폐지(인명·안전관련 일부 무선국 제외) 등

바. 우편관련업무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 사제우편번호부 발행제한의 폐지(사제우편번호부 발행규칙 폐지)
- 사설우체통 및 우편수취함의 설치 및 이용조건 완화 등

3) 1999년도 규제정비 방향

- 1998년도의 규제개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 검토
 - 법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여 규제기관의 재량권을 축소
 -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허가 및 등록 절차의 간소화 도모
 - 정보통신 분야의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제도 개선

- 1998년 통합방송법 제정 등의 이유로 유보한 방송관련규제 검토

4) 1999년도 규제정비 결과

가. 심사경위

- 1999. 4. 13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부처별 잔존규제정비지침에 따라 정보통신부 잔존규제 정비방안에 대한 용역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수행(4~6월, 3개월)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대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후 규제정비대상을 확정, 정통환경소위원회 심의(1999. 7월) 및 경제2분과위원회 심의(1999. 8)를 거쳐, 1999. 8. 27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보통신부의 잔존규제정비계획을 확정·의결함

나. 정비결과

- 정비대상 규제건수를 총 228건으로 확정하여 71건을 폐지 또는 개선키로 함(폐지 등 28건, 개선 43건)
- 규제심사대상 규제수는 1998년 폐지규제 중 입법과정에서 존치된 규제 10건, 신설규제 23건, 방송관련법 누락규제 등 35건을 포함하여 총 228건으로 함

1998년 규제정비(%)			1998년 정비 후 변경(%)			1998년 규제정비(%)				1998년 정비 후 변경(%)			
당초 규제수	폐지	잔존 규제	신설 (재심사)	국회 수정	법제처 등	대상	폐지 등	개선	정비 후 존치 규제수	신설 (재심사)	기타	계	
342	182 (53.2)	160 (46.8)	58	4	6	228	28 (12.3)	43 (18.9)	200	5	15	20	

2. 1999년도 규제개혁의 주요내용

1) 연구개발출연금 제도의 개선(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가. 규제내용

- 정보통신기술개발 및 정보화촉진 등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매출액의 일

정비율(1%~5%)을 정보화촉진기금에 출연토록 하고 있으며 일시출연금과 연도별출연금이 있음

나. 정비내용

- 사업자가 시장진입시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제도와 매출액 일정비율을 매년 납부하는 연도별 출연금 제도를 대폭 개선
 - 일시출연금 : 2000년부터 유선분야는 단계적으로 폐지, 무선분야는 대폭 경감
 - 연도별 출연금 : 2001년부터 기간통신 역무관련 매출액의 1%수준으로 단일화
- 무선분야는 시장성있는 주파수배분시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파수대가에 할당제도의 도입방안 검토

다. 시행시기

- 일시출연금 경감 : 2000년부터(무선분야 2000년 4월 1일)
- 연도별 출연금경감 : 2001년부터

2)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의 폐지(전기통신기본법 제34조)

가. 규제내용

-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7년으로 정함
- 형식승인 유효기간 7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정비내용

- 정보통신 기자재의 기술발전 속도는 타분야에 비해 훨씬 빠른 편으로 대부분이 형식승인 유효기간 도래 전에 새로운 제품이 출현하므로 유효기간을 규정한 의의가 적음에 따라 형식승인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폐지토록 함

다. 시행시기

- 전기통신 기본법을 개정하여 2000. 3월 시행 예정

3)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회계정보공개제도 개선(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

가. 규제내용

- 기간통신사업자의 회계정보 공개제도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상호접속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 및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회계정보 공개에 필요한 공개범위, 공개대상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식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나. 정비내용

- 회계정보의 이용목적에 따라 공개대상과 공개범위를 규정하며, 기업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
 - 접속원가계산규정, 역무별 접속원가·사업비용 등 접속원가 검증내역을 비용정산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 사업자에게 공개
 - 보편적서비스제도 등 관련제도의 정비와 병행하여 역무별 수입, 역무별 비용을 타 기간통신사업에게 공개토록 함

다. 시행시기

- 2000년 상반기에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00년 하반기 시행 예정
- 시행 : 2000년 하반기

4) 정보통신공사업의 시공제한 규정완화(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가. 규제내용

-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시공을 금지하며, 경미한 공사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역무 수행을 위해서 시공하는 경우는 제외

나. 정비내용

- 통신구공사는 토목공사(지하철공사 등과 같은 일종의 터널공사임)로서 토목건설업자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함

- 도로공사와 병행시공되는 통신관로공사에 대해서는 토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도 병행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시행시기

- 2000년 하반기

5) 설계도서의 보관제도의 개선(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가. 규제내용

- 공사의 목적물의 소유자는 공사에 대한 실시·준공설계도서를 공사의 목적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함
- 공사를 설계한 용역업자는 실시설계도서를 당해 공사가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공사를 감리한 용역업자는 준공설계도서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

나. 정비내용

- 설계도서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로 설비교체작업 및 증설작업이 잦아 설계도면의 보관·관리에 인력과 비용이 과다 소요됨
- 따라서 설비증설 등의 사유로 현행화된 설계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설계도서는 폐기 가능토록 함

다. 시행시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0년 하반기에 시행 예정

6) 일부 무선국의 허가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전파법 제12조)

가. 규제내용

- 무선국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만 재허가를 할 수 있음
 - 실험국 및 실용화 시험국 : 1년
 - 휴대기지국 · 육상이동국 · 휴대국 · 선상통신국 · 의무선박국외의 선박국 · 아마추어

- 국 · 간이무선국 · 항공국 · 무선표지국 · 무선측위국 · 우주국 · 지구국 · 기지국 · 이동
중계국 · 육상국 · 이동국 : 5년
- 도서통신용 무선국 및 해안국 : 3년

나. 정비내용

- 해안국 등은 영리목적보다는 국가의 안보 및 도서지역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서 운영되
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공복리차원에서 운용되는 해안국, 해안지구국, 선박지구국의
허가유효기간을 5년으로 함

다. 시행시기

-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0. 4. 1일 시행 예정

7) 유선방송 관련규제 완화(유선방송관리법)

- 유선방송기술기준에 의해 방송채널을 12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채널관련 규제를 완화하
여 31개로 확대(제6조)
- 유선방송사업구역은 시 · 군 · 구 등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부 장관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시 · 군 · 구 등을 하나의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유선방송사업은 허가에 의해 진입이 가능하나 음악유성방송은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
함(제10조)
- 유선방송의 운용허용시간 변경의 경우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함(제11조)
- 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유선방송일지, 사업구역도, 수신자 가입현황 등의 서류를 비치토
록 하고 있으나, 방송일지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비치의무는 폐지(제18조)

3. 신설 · 강화규제 심사 및 조정

1) 신설 · 강화규제 심사개요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신설 · 강화규제 심사를 받은 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은 전자서명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개정안 등 3개 법령으로서 총 심사 대상 규제건수는 12건임

- 이 중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상 신설규제 2건에 대해서는 규제신설을 철회하도록 의결함

구 분	계	신 설	강 화	내용심사 등
심사대상	12	7	2	3
철회	3	2	1	-
개선권고	4	2	1	1

2) 심사 및 조정내역

가. 전자서명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 심사요청 규제의 주요내용(내용심사 3건)

-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절차, 업무정지·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규정함

■ 심사결과

-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요건과 관련
 - ‘가입자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를 삭제하고, 공인인증기관과 가입자와의 관계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으로 대체
 - 자본금요건 중 100억원 이상 확보 → 80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기타 법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규정 삭제
 - 운영인력 및 기술개발인력의 필수 요건 중 각 제4호, 제3호 삭제

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심사요청 규제의 주요내용(신설 1건, 강화 1건)

- 이용자로부터 접수된 민원을 통신사업자에게 이첩·처리케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업자에게 민원업무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보호를 도모하도록 함
- 종전에 기간통신사업자만 제출하던 영업보고서를 전기통신망에 연결하여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도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심사결과

-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의 대부분은 서비스 이용해지, 요금부과 등 사업자와 이용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통신사업자가 처리할 사항이므로 특별히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정부에서 사업자의 민원처리에 대해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정부에서 지나치게 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삭제토록 함
- 영업보고서 제출대상 확대규정안은 철회, 현행대로 기간통신사업자만 영업보고서를 제출토록 함

다. 전파법 개정안

■ 심사요청 규제의 주요내용(신설6건, 강화1건)

- 경쟁적 수요가 있는 일부 사업용 주파수의 경우 가격경쟁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파자원 관리의 투명성 · 객관성 ·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 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업용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 동일인에 의한 전파자원의 독점을 방지하고 적절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주파수할당을 받더라도 관련법에 의거, 사업자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정함
 - 실수요자가 아닌 사업자의 투기목적에 의한 주파수할당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내에는 양도 · 임대 · 증여할 수 없도록 제한함
- 인공위성을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사용할 위성궤도 및 주파수에 대한 국제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바, 그 등록절차, 비용 납부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
- 국내 우주무선통신에 미치는 전파혼신 등의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우주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하여 우주무선통신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 인체에 위해 및 그 보호기준에 관한 규정을 전파법에 규정함으로써 전자파 인체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심사결과

- 주파수재할당 제외사항 중 '당해 주파수대역을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하는 것이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경우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므로 삭제

- 주파수사용권의 양도제한과 관련 양도가능한 예외규정을 두어 주파수할당 후 예상치 못한 사유(파산 등)가 발생시에는 양도가능토록 하여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
- 외국의 우주국 사용승인제도의 신설이 없더라도 법 제40조(위성궤도 및 주파수 국제 등록) 규정에 의해 사전적으로 혼신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며, 추후에 혼신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법 제41조(위성망 혼신조정)규정에 의해 시정이 가능하므로 동규정을 삭제
- 전자파에 인체보호기준은 법상 강제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인체에 대한 전자파보호기준의 초기관리단계로서 업계 및 국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토록 함

4. 누락규제 등록

1) 누락사유 및 등록 현황

- 1998~1999년도 규제정비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의원입법사항 및 규제해당 여부판단이 어려운 사항, 법령미근거 규제의 법적 근거신설에 따른 사항, 1998년도 규제정비계획 수립시 통합방송법 제정 등의 사유로 심사유보된 방송관련법 등이 일부 규제등록에서 누락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속적으로 발굴·정비를 추진하여 왔음
- 1999년초 누락규제에 대한 1차 발굴과정에서 5건, 1999년도 잔존규제정비과정시 추가 30건, 감사원감사시 발굴된 14건 등 총 49건임

2) 누락규제목록(총 49건)

번호	규제사무명	근거법령
1	종합유선방송 전송망사업자 등록	종합유선방송법 제17조·제21조 제3항, 영 제16조, 규칙 제10조
2	전송선로시설의 적합확인	종합유선방송법 제19조, 영 제17조, 규칙 제11조

번호	규제사무명	근거법령
3	종합유선방송국 및 전송망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종합유선방송법 제42조, 시행령 제38조
4	유선방송사업 허가 및 재허가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영 제3조 · 제4조, 규칙 제2조 · 제3조
5	유선방송사업의 결격사유	유선방송관리법 제4조
6	유선방송사업 허가신청 및 심사	유선방송관리법 제5조, 영 제6조, 규칙 제6조
7	유선방송기술기준및 적합확인 검사	유선방송관리법 제6조, 영 제7조, 유선방송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8	유선방송사업 임시허가	유선방송관리법 제7조
9	유선방송사업 준공기한 연기허가	유선방송관리법 제7조 제1항 3호, 영 제8조
10	유선방송사업 구역의 범위인정	유선방송관리법 제7조 제2항, 영 제10조
11	유선방송국 준공검사	유선방송관리법 제8조, 영 제11조
12	유선방송사업 임시허가의 취소	유선방송관리법 제9조
13	유선방송사업허가	유선방송관리법 제10조, 규칙 제5조
14	유선방송사업 변경 허가	유선방송관리법 제11조, 영 제12조, 규칙 제9조
15	유선방송사업 허가의 승계 신고	유선방송관리법 제12조 제1항, 규칙 제10조
16	유선방송사업자의 합병 및 양도 · 양수허가	유선방송관리법 제12조 제2항 · 제3항, 규칙 제11조 제2항 · 제4항
17	유선방송사업 이용약관 승인	유선방송관리법 제13조, 규칙 제12조
18	유선방송사업자의 역무제공 거부금지	유선방송관리법 제14조 제2항
19	유선방송사업의 범위	유선방송관리법 제15조, 영 제14조 · 제30조, 규칙 제13조
20	외국자본의 유입제한	유선방송관리법 제16조
21	유선방송송신금지 사항	유선방송관리법 제17조, 영 제15조
22	유선방송사업자의 서류비치 의무	유선방송관리법 제18조
23	유선방송사업의 임시검사	유선방송관리법 제19조 제1항, 영 제17조

번호	규제사무명	근거법령
24	유선방송사업의 검사결과 시정명령	유선방송관리법 제19조 제2항
25	유선방송사업 휴 · 폐업신고	유선방송관리법 제21조, 규칙 제15조)
26	유선방송사업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 영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규칙 제16조
27	과징금 경감 · 가중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 제3항, 영 제19조
28	협회의 조직 · 정관 · 사업 · 회원 · 감독 등에 관한 규정	유선방송관리법 제23조, 영 제22조 내지 제25조 및 제27조
29	보편적 의무제공사업자 지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 2, 시행령 제2조의 3
30	소프트웨어 진흥구역 지정 해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1조의 2, 시행령 제17조의 2
31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2조 제2항
32	우수신기술 지정의 취소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2조의 2
33	사업화지원의 취소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34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권고	전기통신기본법 제18조 제2항
35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	전파법 제12조, 영 제57조
36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37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발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
38	기간통신사업자 법인설립 승인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제2항
39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설비제공 등의 기준고시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5, 제34조, 제34조의 2
40	기간통신사업자의 토지 등의 일시사용, 장애물, 식물 등의 제거요구	전기통신사업법 제40조, 제42조
41	공사사업자의 행정처분 내용통지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22조 제2항
42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 교부 · 보관의무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26조 제2항
43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신고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39조 제1항
44	선박국의 기기조정을 위한 통신	전파법 제55조

번호	규제사무명	근거법령
45	해안국에 대한 통지	전파법 시행령 제93조, 제94조
46	승인을 얻어야 할 건조물	전파법 시행령 제112조
47	조사·확인 등	무선설비형식검정 및 형식등록규칙 제22조, 전자파 적합등록규칙 제28조
48	배상 및 보상의 제척기간	우편법 제43조 제1항
49	과태료 부과	우편법 제54조의 2 제1항

Ⅰ 제15절 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 집필자 : 오병혁 사무관(Tel. 3703-2154)

. 자치단체 규제정비

1. 추진배경

- 1998년 이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행정규제개혁의 성공적 추진과,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및 자치단체별 규제개혁 성과의 정확한 전달 및 홍보 필요
 - 자치단체별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
 - 법령에서 위임된 규제는 중앙부처의 규제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조례·규칙 등을 정비
 -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는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폐지, 완화, 존치)하여 부정부패의 발미를 제거
 - 지역단위별로 주민·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규제사무에 대한 개선 등을 받기 위한 자치단체별 규제신고센터 운영

-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추진일정에 대한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규제신고센터 설치를 반사회보, 지역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 홍보

2. 1999년도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현황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 총 규제사무수 69,660건 중 규제정비대상은 39,996건이며 이 중 95%인 38,000건의 규제정비 완료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규칙정비
 - 중앙부처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조례·규칙 등 16,730건의 정비대상 중 16,033건의 정비(96%) 완료

정비현황

(1999. 12. 31 현재)

시 도 별		총규제 사무수	정비대상 사 무 수		추진실적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조례·규칙 정비			비 고
							계획	실 적		
총계	계	69,660	39,996	57%	38,000	95%	16,730	16,033	96%	
	광역 (평균)	6,035 (377)	3,910 (244)	65%	3,565 (222)	91%	1,783 (111)	1,645 (102)	92%	
	기초 (평균)	63,625 (274)	36,089 (155)	57%	34,435 (148)	95%	14,947 (64)	14,388 (62)	96%	
서울	광역	769	627	82%	567	90%	140	128	91%	
	기초	6,566	4,334	66%	4,040	93%	1,094	1,046	96%	
부산	광역	381	229	60%	194	85%	61	56	92%	
	기초	1,845	1,180	64%	1,096	93%	661	618	93%	
대구	광역	368	213	58%	150	70%	177	120	68%	
	기초	832	486	58%	452	93%	179	168	94%	
인천	광역	496	326	66%	248	76%	127	99	78%	
	기초	1,976	1,300	66%	1,045	80%	751	619	82%	

시 도 별		총규제 사무수	정비대상 사 무 수		추진실적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조례·규칙 정비			비 고
							계획	실	적	
광주	광역시	335	204	61%	192	94%	135	130	96%	
	기초	928	621	67%	577	93%	135	128	95%	
대전	광역시	242	140	58%	138	99%	62	60	97%	
	기초	865	648	75%	648	100%	210	210	100%	
울산	광역시	389	281	72%	237	84%	105	98	93%	
	기초	805	408	51%	378	93%	105	99	94%	
경기	광역시	304	173	57%	162	94%	116	105	91%	
	기초	12,087	6,585	54%	6,267	95%	3,383	3,264	96%	
강원	광역시	379	235	62%	204	87%	33	29	88%	
	기초	5,722	3,113	54%	2,983	96%	1,078	1,064	99%	
충북	광역시	254	155	61%	155	100%	108	108	100%	
	기초	3,004	1,710	57%	1,671	98%	729	729	100%	
충남	광역시	317	208	66%	208	100%	128	128	100%	
	기초	4,737	3,326	70%	3,321	100%	1,625	1,625	100%	
전북	광역시	535	368	69%	368	100%	215	215	100%	
	기초	5,583	3,441	62%	3,441	100%	1,799	1,799	100%	
전남	광역시	472	284	60%	284	100%	48	48	100%	
	기초	6,728	4,091	61%	4,091	100%	822	822	100%	
경북	광역시	262	157	60%	149	95%	80	73	91%	
	기초	3,617	1,668	46%	1,442	86%	892	766	86%	
경남	광역시	361	187	52%	186	99%	144	144	100%	
	기초	7,751	2,850	37%	2,658	93%	1,271	1,218	96%	
제주	광역시	171	123	72%	123	100%	104	104	100%	
	기초	579	325	56%	325	100%	213	213	100%	

3.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가. 신설규제의 기존규제 대체

- 법령에서 폐지된 규제의 경우도 조례로 위임하는 등 당초 규제개혁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발생

※ 예) 옥외광고물법 → 시도조례로 위임

현수막, 벽보,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제한

안전도검사 위탁가능자 제한

나. 자치단체간의 규제개혁의지의 차이

- 자치단체별로 규제정비계획의 수립, 규제신고센터의 운영 등 전반적인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단체장(부단체장)의 목표설정, 독려, 홍보, 직원교육의 정도에 따라 규제개혁 성과 차이 발생

※ 예) 경남도 : 1인 1규제 발굴운동, 경기도 : 규제혁파위원회 운영

-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무중심의 정비계획수립 등 규제개혁의지 미약

※ 예) 의정부시 : 국무조정실 점검결과 기관경고 조치(1999. 6. 2)

다. 일선 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부족

- 변경된 법령의 내용 미숙지로 주민의 불만 야기
 - 건축물 신·증축시 신고서 외 구비서류 요구
- 사후감사 등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서류의 추가요구
 -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원상복구 이행각서 등 요구

4. 향후 자치단체 규제정비시 중점사항

가. 규제개혁 이행상태에 대한 점검 강화

- 규제정비계획상 규제사무수, 정비율(폐지율)이 낮은 자치단체에 대한 중점점검
- 정부합동 종합감사시 규제개혁분야 중점 확인

- 국무조정실 상시점검반 활동 활성화
 - 규제개혁추진 부진 자치단체에 대한 기관 경고
 - 관행 및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종전의 규제집행방식을 계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나. 대주민 홍보 추진

-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매월 ‘달라지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직접 홍보하되 시행시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의 최소화
 - 자치단체 공보(도, 시, 군보),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모든 매체 활용
 -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폐지 사례집」 발간 배포

다.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시·도 종합평가시 규제개혁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단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부여 등 필요
- 자치단체 규제개혁 유공자 표창 실시
 - 1999. 7월 대상인원 37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함(시·도별 2~3명)

라. 규제개혁관련 교육의 내실화

- 시·군·구 규제담당공무원 연찬회 실시
- 시·도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과정 편성 및 규제집행공무원의 행태, 관행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직장교육 강화

마. 중앙부처 법령정비사항의 자치단체 조속 전파

- 규제관련 법령 제·개정사항을 조속히 전파하여 조례·규칙 등 하위규정이 차질없이 정비되도록 조치(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협조)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1. 규제개혁 이행실태 상시 점검체계 운영 강화

- 국무조정실과 중앙행정기관, 시·도 등 합동으로 상시 점검단 인력 pool을 구성하여 매 2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지침, 고시 등의 후속조치가 당초 규제개혁 취지와 내용에 맞는지 여부 점검
 -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령 미근거 규제 발굴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신설·강화규제 조사
 - 폐지·개선된 규제의 내용에 대한 자체교육, 행정집행 편람(메뉴얼) 작성 등 집행실태 점검
- 점검결과 부진사항 등은 즉시 시정하고 관계자 문책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모범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조치를 강구하고 개혁분위기를 지속 확산
 - ※ 1999년도 자치단체 이행실태 점검 결과
-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지수 제고를 위해 1999. 4. 18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을 단장으로 한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 '규제개혁 이행실태 상시점검단'을 구성
 - 1999. 4. 19 ~ 11. 23일 사이에 정기적으로 2개월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총4회에 걸쳐 96개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 점검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등 15개 광역자치단체 및 46개 기초자치단체

가. 점검결과

- 총 4회 점검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27건의 부적정 운영사례를 적발하였으며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운영하는 등 규제법정주의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자치단체 점검결과

계	폐지규제 계속운영	법령미근거 규 제	법정서류외 서류 징구	후속조치 지연 등	비 고
327건	108건	73건	109건	37건	중앙행정기관 제외

나. 점검후 조치결과

-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전 행정기관에 대한 교육·홍보실시 등을 국무총리지시로 시달하여 지적사항 및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문책토록 조치
 - 국무총리 지시
 - 지시 1999-10호(규제개혁 후속조치 조속이행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지시) 등 4회의 총리 지시 시달
 - 관련자 문책
 - 경기도 의정부시 등 기관경고 2건, 징계 2건 4명, 훈계 및 주의 53건 87명

2. 국민제안 및 불편신고에 대한 환류체계 활성화

- 전체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군·구별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규제개혁 성과의 환류체계를 강화
 - 각급 행정기관에 접수된 규제개혁 제안은 차상급 중간기관을 거치지 않고, 즉시 규제개혁위원회로 송부토록 제도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
 -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시에 규제개혁관련 민원 및 제안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집·발굴하여 적극 반영

3. 규제개혁관련 교육의 내실화

- 일선 행정기관의 규제담당 공무원 및 일반 집행공무원의 인식과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혁관련 교육을 내실화
 -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교육 실시
규제개혁의 당위성, 개혁방안, 개혁내용을 숙지토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개혁추진과 개혁성과를 조기 확산
 - 각급 공무원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규제개혁관련 강좌를 신설·보강토록 함으로써 분야별 규제개혁 사항 등을 교육하여 공무원의 행태개선을 유도
 - 규제개혁관련 법령의 정비가 확정되면 업무별 편람을 즉시 개정하여 담당공무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

4. 대국민 홍보 및 여론조사

- 규제개혁 실적에 대한 일방적 단순홍보에서 벗어나 국민들로부터 직접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해결해 주는 쌍방향 적극 홍보전략(이해관계 단체와의 좌담회·토론회 개최 등)을 구사하고
 - 규제개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동안의 개혁실적을 분석·점검하고 향후 규제개혁업무 추진에 반영

5. 향후 중점 추진계획

- 향후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신설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
 -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발전을 위한 상세한 지침을 개발하고 각 부처 규제담당관에 대한 교육을 병행추진
- 신설·강화심사시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일몰제 적용확대를 적극 추진

- 특히, 폐지 또는 개선했던 규제가 다시 신설·강화됨으로써 당초 규제개혁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신설·강화규제를 철저히 검토

.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

1. 설치목적

- 그동안 기존부서(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 인력으로 자치단체 규제개혁업무의 기획·지원·지도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일선 현장에까지 규제개혁 효과를 파급시키는 데는 미흡하였음
 - 자치단체 규제개혁 지도·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Task Force'를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
- 규제폐지에 따른 주민들의 규제개혁 체감지수를 향상과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보완

2. 지원단 구성 및 기능

■ 지원단 구성 (운영기간 : 2000. 12. 31일까지)

-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장(단장) 등 6명 → 필요시 소요인력 추가 투입

■ 주요기능

- 지원단은 소관 분야별 규제개혁 추진계획 및 실적과 국민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분기별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 규제집행 실태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
 - 규제개혁 관련 조례·규칙의 정비 독려
 - 자치단체 규제개혁과제의 조사·연구 등

3. 향후 추진계획

가. 2000년도 추진목표 상향유도

- 2000년에는 정비대상 60%(폐지 45%, 완화 15%) 이상 규제폐지 위주의 정비추진
- 집행실태 개선을 통한 질적인 규제개혁 추진
 - 규제개혁의 집행실태 개선
 - 부진자치단체에 대한 지도·지원
 - 규제신설 억제 및 홍보강화
- 자치단체간 실적편차 시정·지도
 - 자치단체 유형별(광역시, 도, 일반시, 군, 구) 우수 및 부진 자치단체의 규제내용을 정밀분석하여 우수단체의 사례를 정리하여 부진단체에 시달
 - 개별 규제사무 내용 및 개선방안, 규제사무 등록단의 적정성 및 누락규제 유형연구 등

나. 규제개혁 집행실태 개선

- 자치단체 규제집행현장 확인활동 전개
 - 인허가 부서방문 및 민원처리실태 확인
 - 민간단체 및 민원인에 대한 사전면담 실시
- 자치단체 종합감사 및 자체 감사시 규제개혁분야 중점 감사
 - 자치단체 규제총괄담당자가 실무부서 집행실태를 수시확인
 - 각종 상급기관의 점검실적을 파악하여 중복점검이 되지 않도록 하고, 중앙부처의 점검 활동이 부진 자치단체에 집중되도록 조정

다.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지도

- 규제의 신설 및 등록된 규제의 변경·폐지시 공표 및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치단체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을 지도
 - 등록되지 않은 누락규제 발굴시 지체없이 등록
- 자치단체별 홈페이지를 통한 규제내용 공표 및 보완 지도
 - 자체 홈페이지가 없는 시군구는 조속히 홈페이지를 만들어 공표하거나 관할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조치

라. 규제개혁 성과의 홍보 및 공무원 교육의 내실화

- 자치단체별 우수 홍보사례를 전 자치단체에 통보
- 시도 공무원교육원에 규제개혁 교육과목 편성 및 지속적인 직장교육 강화
- 자치단체 규제담당공무원 연찬회 실시
-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정비사례집 발간

제 4 장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Ⅰ 제1절 Ⅰ

이행실태 점검 개요

* 집필자 : 류충렬 과장(Tel. 3703-2188)

· 점검체제 구축 및 점검활동

가.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단 구성

‘1998년도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법령, 조례, 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과 개선된 규제의 적정한 집행을 확인·독려하여 규제개혁의 성과를 확산·정착시키고,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지수를 제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을 단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규제개혁 이행실태 상시점검단’을 구성(1999. 4. 18)하였다.

나. 점검단 운영 및 활동

- 점검단 구성 이후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1999년중 총4회에 걸쳐 9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함은 물론 조치사례를 전 행정기관에 전파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 특히 4차점검에서는 주요 개혁법령의 개정에서부터 지침시달, 교육, 조례 등 개정과 집

행까지의 전과정을 역학조사하였고, 관련부처의 업무담당자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구분	기간	점검반원	대상기관
1차	1999. 4. 19 ~ 4. 24	15명	• 행자부, 문광부,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식약청 • 서울(종로구, 성북구, 강남구, 송파구), 인천(남구, 부평구), 경기도 (의정부시, 남양주시, 용인시, 군포시)
2차	1999. 7. 5 ~ 7. 13	15명	• 대구(북구, 중구, 달성군), 대전(서구, 대덕구), 충남(공주시, 연기군), 전남(순천시, 강진군, 구례군, 해남군), 경북(칠곡군)
3차	1999. 9. 13 ~ 9. 21	21명	• 교육부, 노동부, 관세청, 산림청, 식약청 • 부산(연제구, 중구, 기장군), 충북(충주시, 영동군, 옥천군) - 전북(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경남(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 부산 동래소방서, 충북 충주소방서, 전북도 소방본부, 경남 창원소방서
4차	1999. 11. 15 ~ 11. 23	21명	• 광주(동구, 서구, 광산구), 울산(남구, 북구, 울주군), 강원(춘천시, 인제군, 고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청도군) • 광주, 울산, 강원, 경북의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 광주, 울산, 강원, 경북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 • 광주세관, 울산세관, 동해세관, 포항세관
계	연 33일	연인원 72명	11개 중앙행정기관, 15개 광역자치단체, 46개 기초자치단체, 소방분야 12개 기관, 경찰분야 8개 기관, 4개 세관 등 총 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 점검결과

가. 점검실적

1999. 4월 이후 총 4회에 걸친 점검결과 총 355건의 부적정 운영사례를 적발하였는바, 폐지 또는 개선된 규제를 계속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지적되어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 및 준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규제심사를 받지 않고 규제를 신설한 다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운영하는 등 규제법정주의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점검 후 조치결과

국무총리지시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전 행정기관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를 시달하여 지적사항 및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중요한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문책토록 하였다.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소계	무심사 규제신설	규제 누락 등	소계	폐지규제 계속운영	법령 미근 거규제	법정의 서류징구	후속조치 지연 등
355건	28	8	20	327	108	73	109	37

* 1차(68건), 2차(91건), 3차(110건), 4차(86건)

■ 국무총리 지시

- 지시 1999-10호 : 규제개혁 후속조치 조속이행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지시
- 지시 1999-17호 : 규제개혁추진 관련법령 조속정비 및 이행철저 등에 관한 지시
- 지시 1999-25호 : 규제개혁에 따른 관련법령개정 및 집행 등 철저한 후속조치 지시
- 지시 1999-31호 : 규제개혁 후속조치 철저이행 등 지시

■ 관련자문책

- 기관경고 : 2건(경기도 의정부시, 전남 순천시)
- 중징계 및 경징계 : 2건 4명
- 훈계 및 주의 : 53건 87명

※ 이상은 3차점검까지의 조치결과이며, 4차점검에 따른 관련자문책(13건 요구)은 현재 진행 중

Ⅱ 제2절 Ⅱ

1차 이행실태 점검

* 집필자 : 류충렬 과장(Tel. 3703-2188)

. 점검개요

1. 점검기간 및 대상기관

가. 점검기간 : 1999. 4. 19 ~ 24(6일간)

나.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7개 부처
 - 행자부, 문광부,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식약청
- 지방자치단체 : 3개 시·도 및 10개 시·구
 - 서울시(종로구, 성북구, 강남구, 송파구), 인천시(남구, 부평구), 경기도(의정부시, 남양주시, 용인시, 군포시)

2. 품점점검항목

- 부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실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규제신설 사례 등 신설·강화규제의 엄정한 심사 여부
-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법령정비 내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로의 조속한 전파 등 1998년도 규제개혁의 후속조치 추진상황
- 폐지·개선된 규제의 교육, 행정집행 매뉴얼 작성·시행 등 일선 기관의 규제집행방식 개선실태
- 폐지된 법령미근거 규제의 계속운용 여부, 부정부패와 연결되는 관행적 행정규제 운용 사례 등

. 점검결과

1. 점검결과 총평

가. 일선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기반 구축실태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규제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신고센터 등을 구성·운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규제개혁 추진체제는 구축되었으나
- 일부 일선행정기관에서는 기관장의 개혁의지가 미약하여 규제정비가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규제신고센터 역시 홍보부족 등으로 처리실적이 전무하는 등 규제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

나. 신설·강화규제의 억제 노력 미흡

- 점검대상 중앙행정기관 모두가 자체 규제개혁협의회 등을 구성하였으나, 위원회의 민간인 구성비율이 낮고 대표성이 부족하며, 서면심사 위주로 운영되어 위원간 토론이 없는 등 대부분의 기관이 자체심사를 형식적으로 운영

- 특히, 행정규제기본법상 모든 신설·강화규제는 자체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법령심사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기관에서는 법정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됨

- 무심사 규제신설·강화사례 : 행자부, 농림부, 산자부 등 5건

- 예 : '환경농산물품질관리요령' 제정시 농약잔류기준, 자료비치의무, 장부열람요구 등의 규제를 규제위 심사 없이 신설

다. 1998년도 정비계획 후속조치 부진

- 규제개혁위원회가 폐지키로 의결한 규제 중 부처의 입법추진 과정에서 당초계획과 다르게 변경된 사항이 상당수 있으며 이 중에는 충분한 검토 없이 부처 임의로 수정한 사례도 있었음

- 부처 입법과정에서 수정 변경된 규제 : 건교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82건

- 예 :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거래에 관한 출입조사 규제는 당초 폐지키로 의결되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재심사 없이 “보고 및 자료제출”은 폐지하고 “공무원의 출입조사” 규제는 존치

- 1998. 8. 31일 기준으로 규제사무에 대한 일제전산등록을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규제가 등록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

- 규제등록 누락사례 : 건교부 190여건, 산자부 13건, 농림부 6건 등

- 예 :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 건설기계소유자 등의 보고·검사 등

라. 현장행정예의 파급 부진

- 법령 제·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규칙 등 하위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이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는 등 규제개혁 성과파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중앙부처의 경우 하위규정 정비상황에 대한 지속적 점검이나 관련교육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일선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도 법령개정에 따른 각종 업무편람 등의 정비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직원교육이 부실하여 이미 폐지된 규제를 운용하는 사례가 다수 지적됨

- 폐지규제 계속운용 사례 : 의정부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 11건

- 예 : 건축법령 개정(1996. 1)으로 건물 증개축시 구비서류가 감소되었으나 종전의 규정
에 의해 불필요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계속 요구

마. 법령미근거규제 운용

-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법령 미근거규제를 정비하도록 여러차례 지시하였고 실태점검(1999. 1)까지 실시하였으나 기 파악되지 않은 법령미근거 규제를 현재까지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자체적인 추가발굴 정비 독려 및 지속점검이 필요
- 특히, 감사를 의식한 보신행정 및 행정편의주의로 법령상 근거도 없이 과다한 민원서류 징구 및 불필요한 동의·협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수 지적됨
 - 법령미근거 규제 운용 사례 : 식약청, 서울시 등 11개 기관 30건
 - 예 : 보육시설 설치신고시, 주변주민의 '보육시설 설치동의서'를 법령 근거없이 징구

2. 분야별 점검결과

1) 일선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시·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규제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신고센터 등을 구성·운영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전반적 추진체제는 구축된 것으로 판단
- 또한 규제개혁의 성과 등에 관한 책자발간, 언론매체, 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일부기관에서는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는 상태로 개척실적이 거의 없고, 정비계획도 상급기관에서 통보된 사무를 중심으로 수립하는 등 형식화되어 있으며, 규제신고센터 역시 홍보부족 등으로 처리실적이 전무한 기관도 있음

가. 우수사례

- 민간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15명 중 민간인 13인)에서 총9차에 걸쳐 기존규제 및 신설규제를 심사하고, 누락규제에 대한 발굴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당초 규제수(4,060건) 이외에 1,430건을 추가 발굴하여 정비(서울시)
-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혁파위원회”로 확대개편(74명 중 민간인 55명)하여 자체 규제사무 12,053건을 발굴 정비하고, 규제개혁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3억원) 도입(경기도)

- 인터넷 규제신고센터에 올려진 민원이 타 기관과 관련된 경우 중간회신을 하는 등 1~2 일 안에 답변이 신속히 이루어지며, 담당공무원의 답변내용 역시 매우 친절하고 성실함 (인천시)

나. 부진사례

- 자체규제사무 발굴 정비실적이 전무하고 상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규제사무만을 관리하고 있으며, 규제개혁홍보 및 직원교육 미흡 등 전반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부진하고 기관장 관심도 미약(의정부시)
- 위원회 구성안만 마련한 채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위원회의 실제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인천 남구, 군포시)
- 홍보부족으로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이 전무하여 운영 미흡(군포, 용인, 종로, 성북, 인천남구)
- 기관장의 의지 및 관심도에 따라 자치구별로 규제발굴 실적 및 정비수준이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서울시)
 - 규제발굴 : 강서구 354건, 종로구 215건, 성북구 129건
 - 정 비 율 : 성동구 75.3%, 종로구 67.0%, 성북구 53.5%, 구로구 32.9%

2) 규제의 신설·강화 억제노력 미흡

- 점검 대상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이 자체 규제개혁협의회 등을 구성하고 신설·강화규제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위원회의 민간인 구성비율이 낮고, 그나마 산하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어 시민단체·이해관계인의 참여가 배제되는 등 대표성이 부족함
- 또한, 심사를 서면으로 대체함으로써 위원간 활발한 토론이 없는 등 자체심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발언요지 등 기록관리도 부실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
- 특히, 행정규제기본법상 모든 신설·강화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고시·훈령 등 하위규정은 대부분 부처의 자체심사조차 거치지 않고 규제가 신설됨
- 일부기관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면서도 규제개혁위원회의 법정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됨

가. 우수사례

조직관리, 지방행정, 소방행정 등 11개 분야별 소위원회를 민간위원 85명, 국장 8명 등으로 구성하여 분과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참여자들의 주요 발언요지 등을 기록 관리(행정자치부)

나. 부진사례

- 자체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6명을 모두 산하연구소 연구원으로 위촉(건설교통부)
- 1998. 6 이후 고시와 훈령은 신설·강화에 대한 자체심사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법령심사를 전혀 받지 않음(농림부)
- 자체심사위원회가 서면심사로 대체되어 심사일정 및 심사참여자는 기록되어 있으나 발언요지 등의 기록이 없음(산업자원부)
- 발족 당시 1회(1998. 6)개최 후 운영실적이 없고 서면을 통한 심사로 대체(환경부)
- 전체위원회 개최실적이 없고 규제심사를 기획관리실장과 안전관련 민간위원 1~2명의 심사의견서로 심사를 대신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문화관광부)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법령심사를 거치지 않고 규제를 신설·강화한 사례가 있음
 - 행자부 2건, 산자부 1건, 농림부 2건

3) 누락규제 발굴

- 법령 제·개정 후 신설·변경내용을 법정기일(30일)내에 전산등록토록 한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은 잘 지켜지고 있으나
- 법령 표본조사 결과 일부기관에서는 법률 전체가 규제사무에서 누락된 사례가 있고 고시·훈령상의 규제도 상당수가 등록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

부진사례

- 규제사무가 포함된 법령 전체가 규제등록에서 누락(건설교통부)
 -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 일부 법령 및 훈령상의 규제사무가 등록에서 누락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8조 영업장 폐쇄조치, 비료관리법 제24조 비료업자에 대한 명령

등(농림부 6건)

- 산업표준법 제26조 인증의 취소, 광업법 제102조의2 광물의 수입판매부과금, 염업조합법 제48조 해산명령 등(산업자원부 13건)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3 시공제한, 도시재개발법 제17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건설교통부 190여건)

4) 1998년도 규제정비계획 대비 변경사항

- 규제개혁위원회가 의결한 1998년도 규제정비계획을 각 부처가 추진중에 있으나 일부기관에서 부처의 자체사정이나 부처협의 등의 이유로 당초 계획과 다르게 변경된 규제사무가 발견됨
- 수정·변경과정에서 대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으나, 일부 부처의 자체수정된 규제사무 중에는 충분한 검토 없이 부처 임의로 수정한 사례도 있었음

부진사례

농지법 제56조의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에 관한 출입조사 규제는 당초 폐지로 의결되었으나, 존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없이 “보고 및 자료제출” 규제는 폐지하고 “공무원의 출입조사” 규제는 임의로 존치(농림부)

5) 조례·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상황

- 법령 제·개정 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규칙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이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규정 정비상황에 대한 중앙부처의 지속적 확인 및 자치단체에 대한 교육실시 등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자치단체에서는 중앙부처의 법령정비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관련 조례·규칙 등 하위규정의 정비를 추진해야 함에도 개혁 이전의 업무관행이 유지되는 사례가 있고, 시행시기 미도래 등을 이유로 준비작업도 소홀

가. 우수사례

- 자치단체 관련사무의 정비현황을 시·도에 통보하고, 시·군 및 관련기업체를 방문, 하위법령 개정실태와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을 파악, 제도개선에 반영(산업자원부)
- 법령개정 즉시 조례·규칙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목록을 작성 통보하고 통보시에 법령개정조항 및 일자, 관련조례, 시행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시달(행정자치부, 환경부, 농림부 등)
- 규제개혁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중앙부처에서 폐지되거나 정비확정된 규제사무에 대하여는 조례·규칙 개정 이전이라도 즉시 운영을 중단하거나 업무개선 조치(서울시)

나. 부진사례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1항2호 개정(1999. 3)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가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대체되었으나 1999. 4. 21현재까지 종전의 신청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계속 요구(종로구)
-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이미 폐지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소유농지현황,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불필요하게 요구(의정부시)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 규정이 개정(1997. 12) 통보되었으나, 시 조례를 개정치 아니하고 동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종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 부과(의정부시)
- 건축법시행규칙 개정(1996. 1)으로 건물 증·개축시 구비서류가 필요 없으나, 종전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요구(종로구, 성북구, 강남구, 군포시, 남양주시)

6) 법령미근거규제 운용 실태

-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법령 미근거규제를 정비하도록 여러 차례 지시하였고, 실태점검(1999. 1)까지 실시하여 기 파악된 미근거규제는 대부분 정비되었으나
- 아직도 지침·고시 등으로 법령미근거 규제를 운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지속적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

가. 우수사례

- 기과악된 법령미근거 규제 18건 중 17건을 정비완료하고,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법령에 상위하여 규정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1건의 규제사무는 관련기관에 즉시 집행 중단을 통보하는 공문 시달(환경부)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지된 법령미근거규제 사례 등을 종합 통보하고 미근거규제를 자체적으로 추가 발굴하여 정비(경기도)

나. 부진사례

- 의료기기의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의뢰”를 신청한 민원인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보완 지시할 수 있다는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기준과 관련 없는 문구수정(열쇠 → 키, 주스위치 → 메인S/W) 지시만으로 5차례나 반려(식품의약품안전청)
- 서울특별시 주요소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97-5)에서 주유소의 등록신청시, 법령에 규정된 서류 외에 공동주택 및 학교와의 거리를 측정한 도면을 추가로 제출토록 요구(서울시)
-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법령에 없는 피해방지계획서, 원상복구 이행각서를 첨부토록 하고, 허가시 ① 차량으로 인한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상주 ② 강우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배수로 확보 ③ 민원발생시 피허가자 책임 등 근거없는 조건 부여(군포시)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시에 유사한 서명을 반복적으로 날인, 행정사에게 신청하였을 경우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날인을 첨부토록 법령에 근거없는 지침(경기도교행 91153-1660) 운용(군포시, 의정부시)
-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시 생활보호법상 근거가 없는 소득·재산관계서류를 징구토록 1999 보건복지부지침서에 규정(복지부, 송파구)
-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 보육시설(놀이방) 설치신고시 주변주민의 ‘보육시설 설치동의서’를 징구하는 사례(강남구)

7) 공무원의 규제집행방식 개선실태

- 담당공무원이 업무에 대하여 인터넷이나 부처의 교육을 통하여 폐지·개선된 규제의 법령을 숙지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각종 민원업무 편람 등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체 직원교육도 부실하여 폐지된 규제를 운용하는 사례가 많았음

- 특히 감사를 의식한 보신행정의 결과로 과도한 민원서류 징구 및 불필요한 동의·협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수 잔존

부진사례

-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으로부터 건축·세무 등 17개 민원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대다수 동사무소에서 1993년도 서울시에서 제작한 업무편람을 아직까지 지침으로 활용하는 사례(서울시)
- 법령개정에 따라 각종 편람 등을 정비하지 않아 대부분 법개정 전의 구비서류가 명시되어 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의정부시)
- 중간간부(과장)를 대상으로 폐지·개선된 규제의 업무 숙지도를 확인한 결과 변경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못함(송파구, 강남구)

Ⅰ 제3절 Ⅰ

2차 이행실태 점검

* 집필자 : 류충렬 과장(Tel. 3703-2188)

. 점검개요

1. 점검기간 및 대상기관

가. 점검기간 : 1999. 7. 5 ~ 13(8일간)

나. 대상기관 : 3개 시·도 및 12개 시·군·구(15개 기관)

- 대구광역시(북구, 중구, 달성군), 대전광역시(서구, 대덕구), 충청남도(공주시, 연기군), 전라남도(순천시, 강진군, 구례군, 해남군), 경상북도(칠곡군)

2. 품점점검 사항

- 각 기관의 규제개혁 추진의지
-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법령정비 내용의 현장에의 반영 등 1998 규제개

혁의 후속조치 추진상황

- 폐지된 법령 미근거 규제의 계속 운용여부, 부정부패와 연결되는 관행적 행정규제 운용 여부
- 폐지·개선된 규제의 교육, 행정집행 방식 등 일선공무원의 행태개선

. 점검결과

1. 점검결과 총평

- 전반적으로 기관장 및 직원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고 규제개선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법령미근거 규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관례적으로 미근거 규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음
- 폐지되거나 개선된 규제를 대체로 잘 숙지하고, 후속조치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들은 폐지된 규제를 계속 운용하거나 법령 개정사실 자체도 미숙지 하는 사례 발생

2. 점검결과 개요

가. 유형별 지적사항 : 91건

유 형	폐지된 규제 계속 운영	법령미근거규제 운용	법령미근거 과다서류 징구	조례정비 등 후속조치 지연
건수	27	30	25	9

나. 기관별 지적사항 : 91건

■ 광역자치단체(7)

기 관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건 수	4	1	2

■ 기초자치단체(84)

기관	대구 중구	대구 북구	대구 달성군	대전 서구	대전 대덕구	충남 공주시
건수	2	5	1	11	9	10
기관	충남 연기군	전남 순천시	전남 구례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해남군	경북 칠곡군
건수	10	11	4	6	8	7

3. 분야별 점검결과

1) 기관별 규제개혁 추진의지

-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시·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규제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전반적인 추진체제는 구축된 것으로 판단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제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 개최실적이 평균 2~3회 정도에 불과하고, 규제신고센터의 신고접수, 처리실적도 저조한 상태로 보다 적극적인 운영 노력이 요구됨

가. 기관별 추진실태

- 대구광역시의 경우 누락규제에 대한 발굴노력 및 자체규제 정비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전라남도, 대전광역시의 경우 행정부지사와 각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가 중심이 되어

규제발굴 및 정비(폐지율 50% 이상)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나. 부진사례

- 전남 순천시의 경우 1998. 9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었음에도 이 조례가 1999. 6. 30일해야 제정되어 아직도 위원회 구성조차 완료되지 않는 등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시의회에 대한 설득노력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추진체계가 구축되지 못함

2) 조례정비 등 1998년도 규제개혁 후속조치 추진상황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중앙부처의 법령정비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관련 조례·규칙 등 하위규정의 정비를 추진해야 함에도 개혁이전의 업무관행이 유지되는 사례가 있고, 후속조치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도 소홀한 경우가 있음

주요사례

- 주차장법 및 동시행규칙이 1999. 3. 12일 개정되어 즉시 관련 조례를 정비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정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대전 서구, 전남 구례, 순천)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령이 1998. 5. 7일 개정되었음에도 수렵강습운영규칙을 미개정(전남도)

3) 폐지된 규제 계속 운용

이미 폐지된 규제는 즉시 그 운용을 중단해야 하나, 관련 내용 미숙지 또는 관행적으로 이를 계속 운용한 사례가 다수 지적되었음

주요사례

-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건설업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었음에도 종전의 면허제로 업무처리(전남 해남)
- 농약관리법상 농약관매업 등록기준중 면적시설기준이 폐지되었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민원처리(대전 서구)

- 출판사 및 인쇄소등록에 관한 법률상 출판사 및 인쇄업의 폐업신고가 폐지되었음에도 신고서를 받아 민원처리(대전 서구, 대구 북구·중구)

4) 법령미근거 규제 운용 및 과다서류 징구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법령미근거 규제를 정비하도록 여러차례 지시하였지만, 이번 점검 결과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운용하거나 법령에 근거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유형이 가장 많이 지적되어 지속적 점검과 자체적인 추가발굴이 요구됨

주요사례

- 공장설립승인을 함에 있어 법령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인간증명서, 실측평면도, 공장배치도, 피해방지계획도, 조경계획도 등을 징구(충남 공주시)
- 의료법시행규칙상 안마시술소 신고처리에 있어 법령상 규정되지 않은 시술실 3실당 1인 이상의 안마사가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임의로 추가하여 시설기준으로 운용(대전 서구)
- 공장설립을 승인하면서 허가조건상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나대지 상태로 전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 법령에 정하지 않은 미근거규제 운용(충남 공주시)
-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신고시 법정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설립자의 이력서, 운영규정, 회원명부, 계좌번호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토록 규정하여 운용(대구 북구)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시 법령에 근거없이 지방경찰청장 발행 무사고 운전확인서를 징구하고 면허발급시 개인택시조합 가입의무를 조건으로 부여(대구광역시)
-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일반폐기물매립 승인시 법령에 근거없는 인근주민동의서를 첨부토록 함(전남 구례)
- 하천법 및 동법시행령상의 하천공작물 신축허가시 법정구비서류 외에 재직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징구(전남 순천)
- 영유아교육법 및 동법시행규칙상 놀이방 설치신고 및 신고증 교부와 관련하여 법령구비서류 이외에 교원자격증 사본 및 아파트 양쪽 이웃 호수의 놀이방 개설 동의서를 징구(대구 북구)

Ⅰ 제4절 Ⅰ

3차 이행실태 점검 개요

* 집필자 : 류충렬 과장(Tel. 3703-2188)

. 점검개요

1. 점검기간 및 대상기관

가. 점검기간 : 1999. 9. 13~21(9일간)

나. 대상기관 : 중앙 5개, 지방자치단체 12개, 일선 소방본부 및 소방서 4개(21개 기관)

- 교육부, 노동부, 관세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 부산광역시(연제구, 중구, 기장군, 동래소방서), 충청북도(충주시, 영동군, 옥천군, 충주 소방서), 전라북도(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소방본부), 경상남도(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창원소방서)

2. 점검점검 사항

가. 중앙행정기관

- 규제심사 없는 규제신설 · 강화 여부
- 규제등록 및 관리현황
-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현황 등

나. 지방자치단체 등

- 폐지 · 개선된 규제의 실제 운영여부
- 하위법령정비 등 규제개혁 후속조치 추진상황
- 법령미근거 규제의 운영여부 등

. 점검결과

1. 점검결과 총평

- 그간 2차례에 걸친 이행실태점검과 감사원 · 중앙행정기관 감사 등 숱한 시정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번 3차점검에서 또 다시 이전과 동일한 유형의 부적합 사례가 지적되는 등 현장의 규제개혁 추진의지 및 일선공무원의 규제집행행태에 큰 변화가 없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서면심사 위주의 위원회 운영과 고시 · 예규등 자체법규의 신설 · 강화규제에 대한 심사 부적정 등 형식적 규제심사를 하는 사례가 여전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 · 규칙의 개정 등 규제개혁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와 법령개정사실을 숙지하지 못하여 폐지된 규제나 법령미근거 규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재차 지적됨

2. 점검결과 개요

가. 총괄표

구 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계
건 수	10	100	110

나. 중앙행정기관

• 유형별 지적사항 : 10건

유 형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형식적 운영	규제심사 없이 규제 신설·강화	규제등록 누락, 부적정 등	기 타
건 수	1	3	4	2

• 기관별 지적사항 : 10건

기 관	교육부	노동부	관세청	산림청	식약청
건 수	1	2	1	2	3

* 문화부 별도지적 1건

다. 지방자치단체 등

• 유형별 지적사항 : 100건

유 형	폐지된 규제 계속 운영	법령미근거규제 운 용	법령미근거 과다서류 징구	조례정비 등 후속조치 지연	기 타
건 수	38	24	28	9	1

• 기관별 지적사항 : 100건

– 광역자치단체(11)

기 관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건 수	4	2	3	2

- 기초자치단체(89)

기관	부산 연제구	부산 중구	부산 기장군	충북 충주시	충북 영동군	충북 옥천군
건수	5	7	7	11	5	8
기관	전북 전주시	전북 익산시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경남 양산시
건수	9	5	8	6	9	7

* 충북 충주소방서 2건 지적

3. 분야별 점검결과

1) 중앙행정기관

가. 규제심사 없는 신설·강화규제 운영

행정규제기본법상 모든 신설·강화규제는 자체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기관에서는 법정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됨

■ 주요지적사례

- ‘국내외 공인검사기관과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인정기준 및 절차(식약청고시 99-26호)’를 개정함에 있어 제6조(인정사항의 변경승인), 제7조(인정취소) 등의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신설규제에 해당됨에도 규제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이 없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동사항을 종결하고 동규제를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청)
- 산림법상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을 정하는 고시를 제정하면서 방부처리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강화규제를 규개위 심의없이 결정하여 고시(산림청)

나. 규제정비계획 임의수정 및 규제등록 부적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거 규제폐지·완화 후 30일 이내에 규제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규제등록을 지연시키거나, 규제사무에 해당됨에도 등록을 누락시키는 사례가 있었고, 확정된 규제정비계획을 임의로 수정하는 사례도 지적됨

■ 주요지적사례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2(응시연령) 및 제11조의3(응시자격) 등을 규제사무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교육부)
- 1998년도 관세청 규제정비계획중 폐지키로 한 132건 중 10건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규개위 재심요구등)을 위반하여 폐지를 개선으로 수정·변경하고 이를 폐지한 규제등록(관세청)

다.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할 것을 촉구하는 국무총리지시가 있었음에도 서면심사 등 형식적으로 운영한 사례

■ 주요지적사례

- 1998. 7. 25일 이후 1999. 9. 7일까지 16회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모두 팩스 등을 통한 서면심사로 운영하였고, 특히 총리지시(1999. 5. 7) 이후에도 3회에 걸쳐 서면심사로 위원회 운영(노동부)

2) 지방자치단체 등

가. 규제개혁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실태

1, 2차 점검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의 효과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전반적인 규제개혁 추진기반은 구축되어 규제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신고센터 등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다만 이의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보다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과 홍보가 요구됨

■ 주요지적사례

- 규제개혁위원은 민간인을 50% 이상 위촉하여야 함에도 규제개혁위원 16명 중 10명은 본청 간부직 공무원으로, 도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은 6명으로 구성(충북도)
- 1999. 5. 10 뒤늦게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1999. 9 현재까지 단1회 개최(부산 기장군)

나. 폐지 또는 개선된 규제를 종전대로 운영

1, 2차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교적 전파가 잘 이루어져 많은 개선이 이루어

어졌으나, 최근 폐지·개선된 규제에 대해서는 업무미숙지 및 교육부족 등으로 종전 규제를 계속 운영하는 사례 다수 지적

■ 주요지적사례

- 수산업법 제12조,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 동일어선의 동시어업을 금지하는 규제가 1999. 3. 17일 폐지되었음에도 업무미숙지로 동규제를 적용하여 1999. 8. 23일까지 32건의 어업허가(부산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업자 변경신고제도가 폐지되고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제도로 대체되어 즉결민원으로 처리토록 하였으나 즉결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신고수리 통보 후 등록증 수령토록 함(부산중구, 기장군)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직원들의 업무숙지도가 낮아 개정법령을 숙지하지 못하는 사례 다수(공통)

다. 법령미근거 규제운영

법령미근거 규제를 관행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지적되어 자체적인 추가발굴 정비 및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됨. 특히, 감사를 의식해 행정내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 불필요한 서류 등을 민원인으로부터 근거없이 징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이 지적됨

■ 주요지적사례

-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령에 근거없이 건축주 준수사항으로 건축물 및 주차장 관리명판을 설치토록 함(부산연제구)
- 옥외광고물관리법상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허가업무와 관련하여 법정구비서류 이외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옥외광고업신고필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징구(충북충주시)
- 도로법 제40조에 의거한 도로일시점용허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허가 후 이설시 피허가자의 비용전체부담, 비산먼지 발생방지를 위한 청소원 상주, 출퇴근시간 공사중지, 공사현황게시문 설치 등 법령 등에 근거없는 규제를 운영(전북전주시)
- 산림형질변경 허가의 조건으로 법령 등의 근거없이 허가지내 또는 경계지내 5 m 이내 분묘가 있을 경우에는 이장 또는 분묘연고자의 동의를 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할 시는 허가를 취소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규정하여 운영(경남김해시)

라. 규제개혁 후속조치 지연 등

법령 제·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규칙 등 하위 규정을 즉시 정비하여야 하나 조례준칙 시달지연, 지방의회 의사일정, 공통조례 제정 등을 이유로 정비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 규제개혁의 국민체감도 제고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음

■ 주요지적사례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렵강습시간이 1998. 5월과 1999. 5월 2회에 걸쳐 5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되었음에도 관련자치법규인 전라북도수렵강습회 운영규칙 제5조를 개정치 않고 종전의 5시간을 그대로 존치(전북도)
- 영동군택지개발선수금규정 등 5개 조례,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등에서 해당규제가 폐지되었고, 1999. 5. 4일 자체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나 점검일 현재까지 동조례, 규칙을 정비하지 않고 지연(충북영동군)
- 정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1999. 1. 29)되어 폐지된 “판매인계약승계”에 관한 규정을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에 과거대로 존치하여 운영(경상남도)

마. 기타사항

한편 이번 점검대상 기관은 아니었으나 점검결과와 관련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발굴되었음

■ 주요지적사례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등록업자가 당해 영업을 폐지할 때는 폐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등록증을 등록청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999. 5. 27일 문화부의 관련법령 지침교육시 폐업처리시에는 법령에 근거없는 임의양식을 사용토록 교육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업신고서 양식을 만들고 노래연습장, 게임방의 폐업시 폐업신고를 받아 민원처리(부산연제구 → 문화부 시정조치)

Ⅰ 제5절 Ⅰ

4차 이행실태 점검

* 집필자 : 류충렬 과장(Tel. 3703-2188)

. 점검개요

1. 점검기간 및 대상기관

가. 점검기간 : 1999. 11. 15~11. 23(9일간)

나.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6), 기타 행정기관(20) 등 총 36개 기관

- 광주광역시(동구, 서구, 광산구), 울산광역시(남구, 북구, 울주군), 강원도(춘천시, 인제군, 고성군), 경상북도(경주시, 포항시, 청도군)
- 지방경찰청(울산, 강원, 경북, 전남) 및 경찰서, 지방소방본부 및 소방서, 세관(광주, 울산, 동해, 포항)

2. 점검점검 사항

가. 후속조치·집행실태

-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 및 추진의지
- 폐지·개선된 규제의 집행실태
- 법령미근거 규제 운영여부
-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 추진상황 및 지적·전파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여부 등

나. 주요 규제개혁 사항에 대한 역학조사

-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한 10개 법령을 선정하여 규제개혁후 법령, 조례개정에서부터 실제 집행상황 등 전과정을 점검하고 집행후 문제점 및 보완필요여부를 조사

. 점검결과

1. 점검결과 총평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속적인 점검 및 전파의 효과로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의지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규제개혁 분위기가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세관, 경찰서 등의 경우는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향후 특별지방행정관청(경찰청, 세관, 교육청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필요

주요 수범사례

- 규제개혁 집행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규제기본법령 및 소관분야의 규제개혁내용에 대하여 주·객관식 시험을 통해 업무숙지도를 평가하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노력(울산)
- 시·군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평가(2회)하여 우수 시·군에는 사업비 예산을 지원하

고, 부진한 시·군에 기관경고 및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에 노력 (경북도)

- 폐지·개선된 규제에 대해 대부분 잘 숙지하고, 개선된 내용대로 집행하고 있었으나 일부의 경우 아직도 규제개혁 사항을 잘 모르고 종전 규제를 집행하는 현상이 남아 있고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운영하는 사례가 여전히 지적되는 등 전반적으로 규제법정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법령에 근거없이 과다서류를 징구하는 사례도 계속하여 지적
- 규제개혁 관련 개정법령 홍보 및 교육등 후속조치는 대체로 원만히 추진중이나 조례 등 개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 등의 절차로 인해 다소 지연되고 있음
- 건축법 등 10개 법령 규제개혁에 따른 조례·규칙 개정 및 실제집행 과정과 집행 후 문제점 등 전과정의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소방법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2. 지적사항

가. 기관별 지적 사항

■ 광역자치단체 : 13건

기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건수	4	2	3	4

■ 기초자치단체 : 52건

기관	광주 동구	광주 서구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울산 울주군
건수	3	5	1	5	2	4
기관	강원 춘천시	강원 인제군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포항시	경북 청도군
건수	7	4	3	7	8	3

■ 특별지방행정관청 등 : 16건

세관	소계	광주세관	울산세관	동해세관	포항세관
건수	3	1	1	1	-
경찰	소계	전남지방경찰청, 광주북부경찰서	울산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강원지방경찰청, 고성경찰서	경북지방경찰청, 경주경찰서
건수	11	2	3	3	3
소방	소계	광주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소방본부, 남부소방서	강원소방본부, 춘천소방서	경북소방본부, 소방서
건수	2	-	1	-	1

■ 기타(중앙행정기관 지적) : 5건

나. 유형별 지적 사항 : 86건

유 형	폐지된 규제 계속 운영	법령미근거규제 운 용	법령미근거 과다서류 징구	조례정비 등 후속조치 지연	기 타
건 수	26	9	41	5	5

3. 분야별 점검결과

1) 후속조치 및 집행실태 점검

가. 폐지 또는 개선된 규제 집행실태

- 지난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교적 전파가 잘 이루어져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폐지·개선된 규제에 대해서도 지적건 수가 많이 줄었으나 종래 규정 집행 현상은 시정되지 못하고 있음

1차	2차	3차	4차
13개 기관 17건	15개 기관 27건	21개 기관 38건	36개 기관 26건

■ 주요지적사례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제도가 폐지(1999. 8. 6)되었음에도 1999. 10. 22 일 선·해임신고를 받음(포항소방서)
- 자동차등록말소 신청처리를 함에 있어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17호 서식인 자동차말소 등록신청서가 1999. 5. 23일 개정되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사실 증명서류’ 등이 폐지되었으나 개정전 규정대로 동서류를 징구(강원 춘천시)

나. 법령미근거 규제운영

행정내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 불필요한 서류 등을 민원인으로부터 근거없이 징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이 지적됨

■ 주요지적사례

- 승강기보수업 등록신청시 법령에 근거없는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세무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징구(광주광역시)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 하천수질 보전을 위해 법령에 근거없이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오리 등 가금류의 도살행위를 금지(울산 울주군)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등록처리시 법령에 근거없이 부대시설 운영의 지역주민 우선, 종사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도내 생산물 우선사용 등의 규제를 부과(강원도)
-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처리하면서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임야도, 토지대장과 법령에 근거없는 건물배치도, 지적도, 구적도 등을 징구(경북 경주시)

다. 규제개혁 후속조치 이행실태 등

법령 제·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규칙 등 하위 규정을 즉시 정비하여야 하나 조례준칙 시달지연, 지방의회 의사일정, 통합조례 제정 등을 이유로 정비가 다소 지연되고 있음

■ 주요지적사례

- 1999. 2. 6일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하여 1999. 3. 15일 행자부에서 관련조례의 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 표준안 미시달 등을 이유로

개정이 지연되다, 1999. 11. 4일에야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 현재 계류중(광주광역시)

- 분노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의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진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타지역점점에서 법령미근거 규제로 지적되어 이를 조속히 정비하여야 하나 1999. 11. 16일 현재까지 관련 조례에 동규정을 존치(울산 남구)
- 1999. 3. 31일 농지법 제25조에 근거한 농지임차료상한규정 등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조례인 춘천시농지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1999. 11. 15일에야 자체심사 의뢰 되는등 정비 지연(강원 춘천시)

라. 기타

집행기관 점검시 상위 규정·지침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굴(문광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경찰청: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중 일부규정, 관세청: 임차보세운송허용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등)

■ 주요지적사례

- 법령 등에 근거가 없음에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조공문에 근거하여 문광부가 노래 연습장 등록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첨부한 후 등록토록 지시하여 울산광역시를 비롯 집행기관에서관 내 노래연습장 등록시 동 확인서를 첨부토록 함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에서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문광부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을 지침으로 제정·시행하여 지방에서는 게임제공업소의 영업기준 및 벌칙·행정처분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동 기준은 단순한 유권해석의 수준을 넘어 전국 게임업소의 영업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써 법령에 명문화 되어야 할 사항
- 법령 등에 근거없이 '임차보세운송허용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으로 보세운송업자가 자기보유차량 외의 차량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시는 운송인 실명제 및 세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토록 함으로써 울산세관에서 1999. 4. 1일 이후 현재까지 5건의 보세운송차량 임차승인신청을 받아 처리
- 경찰청 내부지침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으로 도로교통법령상의 근거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전문학원의 강사에 대한 선해임신고를 받도록 규정하여 지방경찰청에서 이를 신고받는 등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내용 다수 포함

2) 역학조사 결과(10개 법령)

법률	법령개정실태	후속조례, 규칙 등 개정실태	집행실태	문제점 및 보완책
건축법	개정완료	일부 개정완료, 일부 개정중	일부 집행실태미흡	-
소방법	개정완료	개정완료	일부 집행실태미흡	일부 보완필요
공중위생관리법	법은 제정되었으나 시행령, 규칙 미제정	-	공중위생법상 폐지·개선규제 적절히 집행	조속한 하위법령 제정 필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미개정	개정완료	적절히 집행	-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완료	-	적절히 집행	일부 보완필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미개정	-	적절히 집행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완료	일부 개정완료, 일부개정중	일부 집행 실태미흡	일부 보완필요
도로교통법	개정완료	-	적절히 집행	-
농지법	개정완료	-	일부 집행실태미흡	일부 보완필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완료	개정완료	적절히 집행	-

제 5 장

OECD 규제개혁 국별심사

제1절

OECD 규제개혁 심사관련 업무

* 집필자 : 최대용 과장(Tel. 3703-2154)

. 개요

1998. 4월 우리나라가 OECD 규제개혁 국별심사를 받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 등 관련업무에 착수하였다.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되어 OECD 규제개혁 심사분야와 관련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 담당관과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OECD 규제심사 준비기획단을 구성운영하였다.

심사분야	OECD 관계위원회	소관부처
규제개혁과 거시경제	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정부의 역량	공공관리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쟁정책	경쟁정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개방	무역위원회	외교통상부
전기산업	경쟁정책위원회	산업자원부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결론 및 정책대안	공공관리위원회	국무조정실

OECD 규제심사준비기획단 구성·운영

앞에서 보았듯이 OECD 규제심사는 분야별로 소관부처가 각기 달라 이들 부처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이 OECD 규제개혁 국별심사는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며 소관위원회별로 소관부처가 분담하여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즉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서 OECD 규제심사를 총괄하며 공공관리위원회 소관 정부역량부문을 담당하고 경쟁정책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개방부부는 외교통상부에서, 전기산업분야는 산업자원부에서, 정보통신부부는 정보통신부에서, 거시경제부부는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규제개혁2심의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들 소관부처 담당관과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로 민관합동 OECD 규제심사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처해나가는 체제를 구축했다.

참고로 OECD 준비기획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심사준비기획단 명단

(1999. 12월 현재)

관련부처(부문)	정부 대표단	민간 자문위원
국무조정실 (총괄 및 정부역량)	김석민 규제개혁2심의관 최대용 과장	김종석 홍익대 교수 김태윤 한국행정연구원, 규제개혁연구센터 소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한철수 국제업무2과장	김진국 건양대 교수
외교통상부 (시장개방)	이상규 경제기구과장	김도훈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산업자원부 (전기산업)	이유종 전력산업과장	하병기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한국중 한전 재무관리처장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	이기주 통신기획과장	정인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재정경제부 (거시경제전반)	문재우 경험총괄과장	양준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ECD는 지난 1995년부터 정부규제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규제에 관한 정책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1997년 5월 OECD 각료 이사회에서는 회원국의 규제개혁을 돕고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혁 보고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OECD 각료 이사회는 개별 회원국가에게 이를 적용한 규제개혁 국별심사를 실시하여 규제개혁의 모범사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책권고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승인하였다. 이리하여 1998년에 미국, 일본, 네덜란드, 멕시코 4개국이 1차 규제개혁 심사대상국이 되었다. 1999년의 심사대상국으로 한국, 덴마크, 스페인, 헝가리가 선정되었다.

규제개혁의 적극적인 추진과 대외신인도 향상을 위해 한국은 1998년 4월 OECD 각료 이사회에서 규제개혁 국별심사를 자발적으로 신청하였다. 국내에서 OECD 규제개혁 국별심사에 대해 국무조정실, 외교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간에 OECD규제심사가 규제개혁의 적극적인 추진과 대외사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찬성론과 국내의 규제여건상 국제사회에 이를 공개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반대론이 대두되었으나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OECD 규제개혁 국별심사를 받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 규제심사의 목적은 규제의 best-practices를 확인하고 규제개혁의 우선순위 설정, 자체평가 역량의 강화와 규제개혁의 비용과 위험을 줄이는 것을 도우며 규제개혁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는데 있다. 이 규제심사는 심사대상국의 자체평가에 기초하여 OECD 전문가팀의 현지방문활동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OECD 회원국 대표들과 동료심사토론을 통해 심층검토하고, 이 분야별 보고서를 종합하여 최종보고서(Country Review Report)를 작성한다. 이 종합보고서도 또한 OECD 회원국 대표들간에 심사토론을 통해 종합검토하고 이것을 OECD 각료 이사회에 보고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국제사회에 공표한다.

이 규제심사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다제적인 심사(multi-disciplinary review)를 한다. 그 심사대상분야 및 보고서의 구성은 ① 거시경제와 연계하여 규제개혁의 필요성 ② 고품질의 규제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역량 ③ 규제개혁에 있어서의 경쟁정책의 기능 ④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개방성의 제고 ⑤ 전기산업에서의 규제개혁 ⑥ 정보통신산업에서의 규제개혁 ⑦ 결론과 정책권고의 7장으로 구성된다. OECD 사무국에서도 공공관리위원회, 경제국, 경쟁, 무역위원회 등 여러 부서가 참여한다.

. OECD 규제개혁 질의서에 대한 답변

OECD 질의서에 대한 답변개요

1) OECD 질의서에 대한 답변 작성

■ 해당분야 및 분야별 소관부처

- 정부역량 : 국무조정실
- 경쟁정책 : 공정거래위원회
- 시장개방 : 외교통상부
-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부
- 전기산업분야 : 산업자원부(추후에 별도로 개별질의를 하여 미수록)

2) 답변안 작성경위

- 1999. 1. 20 OECD 규제심사 준비기획단회의 개최
 - 질의서 내용검토 및 답변준비에 착수
- 1999. 3. 31 각 부처별 작성 답변안 검토를 위한 OECD규제심사 준비기획단회의 개최
 - 답변안 전체체계 및 질문별 답변방향에 대해 토의
 - 분야별 전문가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다음 회의에 제출
- 1999. 4. 21 분야별 답변서 최종안 검토를 위한 준비기획단회의 개최
 - 답변안 일부수정 · 보완 후 확정
- 1999. 5. 7 규제개혁위원회 보고 후 OECD에 송부

3) 분야별 답변안 주요 내용

가. 고품질규제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량

■ 개요

- 질의내용 : 총 18개의 질문으로 구성

- 규제개혁 전반에 걸친 성과 및 규제결정 절차, 규제집행과 효과분석 등에 관한 총론적 질문

• 답변방향 :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지와 그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고품질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정부의 관리·조정역할에 대해 설명

■ 주요 내용

• 규제개혁의 추진개요 및 성과에 대하여,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기존규제의 절반수준 폐지를 목표로 과감하고도 대폭적인 규제개혁 추진

- 규제개혁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하여 민간부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국무조정실에서 실무조정역할을 하는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구축

• 규제 의사결정의 투명성·개방성·민주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규제심사절차 및 행정절차법상의 이해관계인 협의와 일반 국민에 대한 공표 등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제도적 장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

• 기타 준정부 및 비정부규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조정, 규제자훈련, 규제개혁 효과분석 등에 대해 질의 답변

나. 규제개혁에 있어서의 경쟁정책의 역할

■ 개요

• 질의내용 : 총 21개의 질문으로 구성

- 규제에 관한 국가정책의 기본틀에 경쟁정책이 충분히 통합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

• 답변방향 : 우리나라 경쟁정책이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지원·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경쟁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설명

■ 주요 내용

• 경쟁정책의 목표간 우선순위 및 규제개혁목표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의 우선순위를 설명하고, 규제개혁과 경쟁정책은 자율과 창의, 경제적인 효율성, 삶의 질 향상 등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설명

• 공정거래법 주요조항별로 그 내용 및 법집행 역량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규제개혁이 추진되거나 추진중인 분야에 있어서의 공정거래법 집행실적 등을 설명

•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조직과 권한, 인력 및 예산, 타정부기관과의 관계, 소비자보호와 경쟁정책과의 관계 등을 자세한 설명과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설명

다.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개방의 제고

■ 개요

- 질의내용 : 총 25개의 질문으로구성
 - 무역투자관련 규제개혁의 성과 및 규제결정절차, 외국인의 권익구제제도 등에 관한 총론적 질문
- 답변방향 :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개방의지와 그 성과를 설명하고, 시장경합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각종 국내제도 소개

■ 주요 내용

- 최혜국 대우 등 비차별원칙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GATT/WTO협정의 기본원리인 최혜국 대우원칙과 내국민 대우원칙에 따라 무역투자관련법령을 제정하고 있으며 그 운영과정에서도 원칙적으로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있음
 - 특히 통신장비, 자동차, 통신서비스, 전기부문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비차별원칙을 준수하고 있음
- 불필요한 무역제한을 피하기 위한 조항 및 관행에 대하여,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게 되어 있으며, 규제조치로 시장 접근을 손상받은 외국기업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한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을 설명
- 기타 국내표준화 과정에서 국제적인 표준 및 인증절차를 고려하고 있으며, 외국이 시행한 적합판정의 결과에 대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인정을 하고 있음을 설명

라. 정보통신산업분야

■ 개요

- 질의내용 : 총 14개 분야 57개의 질문으로 구성
 - 분야별로 과거 10년간의 규제체제의 변화를 기술 요구
- 답변방향 : 과거 10년간의 정보통신산업 관련규제의 변화를 기술하고, 규제개혁실적 및 현황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제도형성의 배경 등을 상세히 설명

■ 주요내용

- 과거 10년간 시장진입, 가격규제, 상호접속체계 및 선로권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보편적서비스 규제의 변화 기술
- 통신사업자 사전선택제, 번호이동성 도입여부, 이동통신사업자 허가절차 등 과거 10

년간 주파수 및 번호배분 방식의 변화 설명

- 과거 10년간 규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질문 : 통신부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정통부와 통신위원회의 관계, 정통부와 방송위원회의 관계, 정통부의 규제기능과 정책기능의 관계 등에 대하여 설명
- 기타 서비스 품질 규제의 변화, CATV 규제 변화, 통신·방송의 융합추세에의 대처 등에 대하여 설명

Ⅰ 제2절 Ⅰ

한국에 대한 분야별 심사

* 집필자 : 최대용 과장(Tel. 3703-2154)

. 정부역량(국무조정실)

1. OECD 보고서의 요지 및 권고사항

가. 보고서 요지

■ 총평

- 한국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와 기존규제의 50% 철폐에 대해 호평하고, 제도적 장치로써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활발한 활동과 행정규제기본법의 충실한 실천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

■ 주요내용

- 한국 규제개혁의 행정 및 법적 환경을 개관하고, 행정역량개선을 위한 개혁조치와 행정규제기본법 입법경위·주요골격 소개
- 규제개혁정책 및 주요원칙을 소개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정책과 조직의 실천의지를 지수화해서 국제적으로 비교(한국을 최고수준으로 높이 평가)
- 행정적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에 대해 강조하고, 정책 도구로서의 규제대안 주요사례

소개

- 환경개선부과금, 각종예치금, 폐기물배출부과금, 수질개선 부담금 등
- 규제의 품질향상을 위한 규제영향평가제도 강조
 - 규제영향평가제도 실천의지, 규제자 교육, 정책개발과정에 규제영향평가 포함, 이해관계집단의 폭넓은 참여, 신규 및 기존 규제에 모두 규제영향평가 적용 등
- 규제의 지속적인 검토로서 규제개혁 종합계획, 연간 규제정비계획, 규제 일몰제, 규제 개혁심사 단계 및 영업인허가제 개선 등을 평가
 - 규제검토활동을 지수화하고, 우리나라를 최고로 평가

나. 정책권고사항

규제의 질 향상을 위한 원칙 채택, 규제개혁과 행정개혁등 각분야 개혁의 연계·조정, 규제 개혁위원회의 역할범위 확대 및 NGO의 참여 확대, 규제영향평가제도 및 민간부문과 광범위한 협의(public consultation)의 활성화 등 11개 항목의 정책권고

2. Peer Review 참석결과

가. 주요토론사항

- 주토론자(lead reviewer) 등 각국 대표들은 한국이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이룩한 규제개혁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조치
 - 규제개혁에 소비자 및 시민사회 대표의 참여확대와 협의(Public Consultation)에 더 중점을 두는 방안
 - 시장경쟁을 강조하는 데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문제
 - 투명성, 규제영향분석, 순응지향적 규제 등 규제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 규제개혁의 지속성,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확대 등의 이슈제기
- 이외에 규제개혁과 행정개혁의 연계조정, 규제일몰제 적용주기(5년)의 연장 등에 관해 토론

나. 답변내용

- 규제개혁의 지속성에 대해서 규제개혁이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제도화 되어 있어 행정과 정책과정에 잘 반영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
- 내년도 총선에 의한 규제개혁 영향에 대해 규제개혁의 효과와 편익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증가할 것이므로 규제개혁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지속될 것이라고 답변
- 규제개혁에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와 협의 강화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과 행정정보공개법의 취지와 기본절차를 소개하고 규제의 질향상을 위해 **Public consultation**에 보다 관심과 비중을 두고 나갈 것임을 설명
- 시장경쟁의 강조에 따라 규제부담이 더 큰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강조한 데 대해 중소기업 보호의 경쟁예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규제의 질향상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
-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의 질향상 방안과 기법에 관해서는 제도를 도입한 초기단계라 어려움은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연구와 **Best-Practices**의 전파, 교육훈련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변
-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과 행정문화의 변화에 관해서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된 규제개혁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부처간의 조직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의 구축과 체계적인 규제검토 방식을 설명

다. 정책권고사항에 대한 우리측 입장과 조치계획

권고사항	정부입장	조치계획	소관부처 (협조부처)
1. 양질규제의 원칙 채택. 편익이 비용을 합리화하지 못할 경우 규제의 신설·유지 안된다는 원칙 채택	수용	2000년 지침에 기반영	국무조정실
2. 효과적인 경쟁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종합적인 분야별 개혁계획 필요	수용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은 행정규제기본법으로 규정되며, 규제개혁의 범위조정은 현재 추진중인 다른 분야 개혁과 관련, 장기적으로 검토	국무조정실

권고사항	정부입장	조치계획	소관부처 (협조부처)
3. 규제개혁위원회의 책임범위 확대, 조세와 보조금, 산업정책, 행정개혁 및 지역개발계획 등 연관성있는 분야 포함	장기적 검토	규제개혁은 경제구조개혁, 공공분야 개혁과 병행하여 추진중. 분야별 종합계획은 거시적 차원에서 검토	국무조정실
4. 적절한 조정과 상호지원이 가능토록 규제개혁과 행정개혁의 연계를 검토	수용	규제개혁과 행정개혁은 국무회의 차원에서 적절하게 조정되고 있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5. 한국의 시민사회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범위 확대	수용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신규위촉시에 적극 검토	국무조정실
6. 새로운 독립규제기관에 대한 검토 필요. 경쟁과 기업성장을 위한 법적·행정적인 환경을 개선	장기적 검토	시장지향적인 독립규제기관의 신설은 정부조직개편 차원에서 검토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7.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협의전략 개발	수용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참여로 규제준수율 제고와 순응비용감소 노력	국무조정실
8. 규제영향평가와 대중협의를 통합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	부분 수용	현재 규제영향평가기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의무화. 규제영향평가를 공표하는 것은 장기적 검토	국무조정실
9. 매년 규제정비계획 수립시 기존 규제의 검토에 규제영향평가 실시	장기적 검토	규제의 신설·강화시에 규제영향분석 실시.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은 장기적 검토	국무조정실
10. 높은 수준의 규제순응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천	수용	2000년도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구체적인 규제순응방안 개발예정	국무조정실
11. 행정지도를 포함하여 행정재량권 사용제한 및 개혁	수용	법령에 근거가 없는 비공식적 규제(행정지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음	국무조정실 (전부처)

· 경쟁정책(공정거래위원회)

1. OECD 보고서의 요지 및 권고사항

가. 보고서의 요지

■ 규제개혁에서 경쟁정책의 역할

- 경쟁정책이 규제정책의 기본 틀에 통합되어야 함
 - 경쟁정책은 그 원칙과 분석틀이 경제·사회적 규제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쟁을 보호하는 법적용을 장려하므로 규제개혁의 중심에 위치해야 함
-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으로 인한 혜택이 보전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경쟁법집행이 필요
 - 경쟁주창역할은 경쟁법집행을 보완하여 경쟁촉진 및 정책 및 규제과정에 시장원리를 도입가능케 함

■ 한국 공정위의 역할·권한

- 한국에서 경쟁정책·집행은 두 가지 근본적인 개혁을 가져 왔음
 - 첫째, 정부주도 성장정책에서 시장기능 중심 정책으로의 변화
 - 둘째,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개방화와 투명성 증진
- 한국 공정위는 독립적인 경쟁당국으로서 개혁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최근 그 집행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 한국의 경쟁정책은 자유경쟁, 효율성제고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공정성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지난 20여년간 개혁 프로그램과 함께 발전하여 왔음
- 한국의 기본 경쟁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동행위, 독점, 불공정 관행 등 주요 경쟁정책 문제를 모두 규율
 -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담당하고 있음
 - 법률에 의한 경쟁법적용 면제는 대부분 제거되었음
- 한국정부에서 공정위의 위상은 개혁에 긍정적으로 작용
 - 경쟁법 적용제외 축소 등으로 경쟁정책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제도폐지 등 공정위 자체의 규제도 축소됨
- 향후 공정위 역할의 중점은 경쟁원리가 정부와 시장간 관계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하

며 효율성을 정책목표 우선순위로 추진 필요

- 정보수집을 위한 권한 강화 필요

- 또한 재벌 및 시장구조조정에 있어서 반경쟁적인 경쟁자배제와 시장지배력 제거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재벌정책

• 가장 첨예한 경쟁정책이슈는 재벌이 다른 경쟁자들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토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시장지배, 경쟁자 배제 및 차별적 거래 등 전형적인 경쟁정책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에 공정위는 재벌내의 부당내부거래를 포착, 시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많은 문제점들이 경쟁정책차원보다는 기업지배구조와 금융건전성(financial prudence)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집행수단과 경험 등으로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음

- 1986년 이후 재벌의 계열기업구조와 출자구조를 규제

나. 정책권고 사항

■ 한국경제에서 경쟁정책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으며, 정책중점이 더욱 정교하고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는 추세

•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후추정제 도입, 수평적 협정(공동행위)에 대한 추정조항의 강화 등은 긍정적 변화

※ 공정위는 입찰담합 등 수평적 경쟁제한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함

• 자료요구 불응시 제재수단 미비 등 증거확보에 애로가 큼

※ 자료·정보확보를 위한 법원 명령도입 등 검토 필요

• 사적구제의 강화 및 공정위에서 각하한 사건의 불복제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 검토 필요

※ 사소제도 강화 방안이 철저히 연구되어야 함

• 경쟁법 적용면제 분야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변호사 숫자제한 등 전문직 진입규제 및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등 중소기업보호제도는 경쟁정책과 배치됨(변호사 숫자제한 및 중소기업보호제도 폐지)

- 기간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력·가스·철도 등에 있어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추진실적이 미흡
- 구조조정 결과 자산매각, 외자도입 등 기업결합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결합 심사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
 - ※ 합병심사시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함.
 - 상황, 정책목표가 상이함(현재상황 규제와 미래상황 규제)
 - 현행 심사기준은 고집중시장에서 대규모 기업의 형성도 허용
 - 시장점유율 기준은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지 못함
 - 중소기업 점유분야에 대기업의 기업인수금지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기존 중소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데 애로 초래
 - 중소기업 점유분야에 잠재적으로 효율적 경쟁자인 대기업의 기업인수를 규제하는 제도와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 공정위는 하도급, 허위광고, 불공정약관 등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분야에 법 집행의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
 - ※ 궁극적으로 경쟁정책 목표와 자원은 효율성 제고에 집중되어야 할 것임
 -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거래를 선정, 집중조사하는 것이 대규모 저인망식 조사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 개혁, 금융감독 및 시장개방이 재벌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적절한 장치들임
 - 정부가 소비자와 생산자 각각의 보호자가 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는 경쟁정책에 도전이 되고 있으며 경제 효율을 저해할 우려도 있음
- 규제개혁
 - 한국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대규모의 급격한 변화는 대부분 위로부터 추진된 것임
 - 그러나 재벌관련 부분은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개혁으로 보기 어려운 성격이 있음
- 공정위의 역할·기능
 - 대체적인 정책방향이 올바르고 또한 각 분야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였으나, 구체적 집행수단의 경우 아직도 정부통제적 성격이 강함
 - 빅딜에 대한 정부개입은 도덕적 해이 초래
 - 일부 산업정책이 아직도 묵시적 행정지도에 의하고 있음
 - 이런 상황하에서 시장경제원리가 확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경쟁정책당국이 필요

- 공정위는 창설 이후 경제규제개혁의 중심기능을 수행해 왔음
- 공정위 기능 강화는 각 분야에 경쟁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우수한 편임

2. Peer Review 참석결과

가. 회의시 주요 쟁점사항 및 우리측 답변내용

■ 정책방향

- 경제의 균형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정책목표가 효율위주로 바뀌어야 할 것
- 경쟁정책이 경쟁 이외의 동기에 의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음
 - ※ 한국 경쟁법도 효율과 소비자후생 증대를 제1차적 목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법집행에 있어서도 점차 효율문제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
- 한국 경쟁법상의 여러 정책목표는 제도도입 초기 경쟁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함
- 경쟁정책이 다른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재벌문제 개입은 한국의 경제상황하에서는 넓은 의미의 경쟁정책문제로 보아야 함

■ 재벌문제

- 30대 및 5대 재벌의 경제력 비중이 과거와 같이 유지되고 있음. 재벌정책 중 효과가 있었던 부분과 없었던 부분, 앞으로의 정책 및 공정위의 역할
 - ※ 재계와 합의한 '5+3' 원칙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
- 재벌그룹의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외국인 투자 및 인수합병부분에 많은 효과가 있었던 반면, 회계·경영의 투명성, 지배주주의 책임성강화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고 언급
- 공정위로서는 각 산업분야의 경쟁촉진을 위한 경쟁주창역할, 부당내부거래 및 상호지급보증등 재벌의 경제력남용 방지, 독과점사업분야의 카르텔 제재 및 기업결합심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답변

■ 규제개혁

- 규제목표달성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쟁과 배치되는 규제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

※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 법령의 사전협의, 공정거래위원장의 국무회의참석, 공정위의 규제개혁작업단 등에 대하여 설명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연차별 정비계획에 대해 설명

- 공기업의 네트워크 접근 관련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사례와 공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실적

※ 한국통신이 자사의 전용회선 계속 사용을 조건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의 광케이블 접속을 허용한 사례에 대한 제재조치와 과징금 부과실적 설명

■ 통신

- 정통부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그 후 단말기 구입관련 할부금융조건을 똑같이 하도록 지도한 사례와 관련 공정위가 개입한 실적 및 타부처의 행정지도가 개입된 공모행위에 대한 제재방향

※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제제한 사실은 없으나 부당광고에 대하여 제제한 실적은 많음. 타부처의 행정지도에 의한 담합의 경우에도 경쟁법을 집행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확고한 방침임

■ 기업결합심사 관련

- 빅딜에 따른 기업결합심사 실적

※ 현재까지 4건이 신고·접수되어 3개건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예외로 인정

■ 중소기업보호제도 관련

- 중소기업보호제도의 시장왜곡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 및 공정위 자체의 규제제도가 경쟁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축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 구체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계획. 공정위 자체로도 경품고시 등 유통분야의 각종 규제를 철폐·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

■ 사소제도 및 정보수집권한 강화

- 사소제도와 공정위의 정보수집권한을 강화 계획

※ 현재 공정위의 정보수집권한이 약하다고 보지는 않으나 추가적인 강화가 가능한지는 전체 법체계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함

- ※ 압수수색영장청구는 검사에 한하도록 한 헌법규정이 근본적 한계
- ※ 사소제도 강화 역시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문제가 관건임

나. 정책권고 사항에 대한 우리측 입장과 조치계획

권고사항	정부입장	조치계획	소관부처 (협조부처)
효율성을 정책목표 우선순위로 추진	수용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효율증대를 1차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정책적 관심 경주 계획	공정위
입찰담합 등 수평적 경쟁제한에 보다 중점	수용	경쟁제한성 폐해가 큰 공동행위 제제 강화를 위해 집행우선순위 개선방안 검토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수용	M&A에 따른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해 현행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하향조정 추진	공정위
자료·정보 확보를 위한 법원 명령도입 및 사적구제 강화방안 마련	검토필요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차원에서 연구·검토	공정위 (법무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등 각종 중소기업 보호제도 폐지	수용	일시적 폐지에 따른 충격완화를 위해 단계적 축소·폐지 추진	공정위 (산자부)

. 시장개방(외교통상부)

1. OECD 보고서의 요지 및 권고사항

보고서 요지

■ 총평

- U R협정 체결로 전반적인 관세 인하(20→8%)가 이루어졌고,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규제가 완화되고 금융개혁이 착수되는 등 시장개방에 있어 많은 진전

이 있었다고 평가

- 그러나 아직도 불필요한 무역제한 조치가 상당부분 남아 있고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
- 또한 시장개방에 대한 비판적 국민감정, 서비스·농업 분야의 상대적인 폐쇄성, 규제 개혁 조치의 이행이 느린 점 등도 시장개방의 장애요인으로 지적
 - 수입품과 외국인 회사에 대해 일반 국민의 부정적 시각, 소비자단체 중심의 소비절약 운동, 외제상품 불매 운동 예시

■ ‘효율적 규제’ 6원칙에 따른 평가

투명성 및 정책결정의 개방성

- 한국정부가 규제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내·외국인에게 공개하는 등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규제수립 및 시행 과정의 불투명성은 한국의 규제시스템의 주요 약점이라고 지적
- 규제수립 과정에서 경제인 등 한정된 그룹에만 언론이 개방되고 소비자단체, 환경 NGOs, 외국기업들이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

비차별 원칙

- 한국에서 활동중인 외국기업인들은 외환, 금융, 기업세, 수입세, 고용관계, 기업부지 설정, 계약체결 절차 등에서 여전히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지적
 - 소주·위스키간 차별 주세(Liquor tax), 수입품의 별도 진열장 전시, 외국은행지점의 사채 발행 금지규정 등을 차별사례로 예시

불필요한 무역제한 조치의 억제

- 무역제한 가능성이 있는 국내법규 제정에 있어 산업자원부의 자문(consultation) 기능 강화,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KOTRA 산하 한국투자서비스센터 설치 등 한국 정부의 규제철폐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 지방정부의 과도한 서류 요구 등 규제 이행과정에서의 무역제한의 경우를 예시하고, 최근 많은 무역제한 조치들이 ‘Behind Border’, 즉 국내 법규에 근거하고 있음에 유의할 것을 권고

국제기준의 활용

- 한국의 경우 표준화된 국제기준의 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
 - KS 제도와 ISO 국제기준간 합치 노력 미흡 사례 지적
 - 국제기준과 다른 Standard와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를 사용하고,

부처마다 동일한 상품에 대해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여 복잡함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
타국 규제의 동등성 인정

- 최근 한국정부의 상호인증협정 체결 증가, 표준화관련 기본법 제정 등을 긍정적 평가
경쟁원칙 적용
- 재벌의 유통구조 장악으로 인한 외국기업의 진출 어려움, 제조업자 협회 비회원에게 대
한 불리한 시장진출 여건 사례 제시
- 현재 추진중인 '빅딜'이 오히려 재벌의 독점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표시

2. Peer Review 참석결과

회의시 주요 쟁점사항 및 우리측 답변 내용

■ 총론

- 최근 경제회복에 따른 규제개혁 의지 약화 조짐 및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적 리더쉽에
의해 공급, 주도되어온 규제개혁의 장기전망에 대한 다수 회원국이 회의적 시각 표명
- 우리 대표단은 현재 추진중인 구조개혁이 지도자의 리더쉽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는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 기반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현 시점에서 규제개혁의
지가 약화될 경우 경제회복세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한국의 규제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강조
- 한국의 규제개혁이 질보다 양적인 요소에 치중해 왔으며 노력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
다는 지적도 제기됨

■ 정책의 투명성 제고

-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 결여는 최대의 약점으로 지적되었으며, 회원국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민간인, 특히 외국인과 소비자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 이와관련 규제관련 법률 공포~발효간 시간이 짧아 외국기업들이 이에 대응할 시간
적 여유가 없다는 지적과, 외국기업을 위해 해당 법률의 공식 번역본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 외국투자기업의 전경련 가입 허용 필요성도 제기
- 우리 대표단은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의약품대책위에 주한미상공회의소와 주한 EU상
공회의소가 정회원으로 활동중임을 예시하고 옴부즈만 제도 등 외국기업의 의견을 받

영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함.

- 전경련에도 외자계열 15개 업체가 회원으로 활동중임을 설명

■ 비차별 원칙

- 금융, 법률서비스, 의약품, 정부조달 분야 등 외국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분야들이 다양하게 거론됨
 - 외국계 은행의 대출한도 설정 기준, 의료 보험수가 산정시 외국의약품에 대한차별 대우, 정부조달 등을 예시
 - 세금제도의 복잡성(특히 주세)에 대한 불만 제기
- 대표단은 외국계 은행에 대한 대출한도 설정은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하며 바젤위원회 규정에 합치되는 관행이며, 의료보험 수가 문제는 국내관련 규정의 개정작업이 진행중임을 설명

■ 불필요한 무역제한조치 억제

- 정부가 운영중인 외국인 투자서비스센터가 관련규정 변경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관세청 · 관세기관간 협의채널 미비로 인해 통관시일 장시간 소요되고 있는 점, 쇠고기 등 수입육류에 대한 임의적인 원산지 **Labelling Requirement** 등을 불필요한 규제의 예로 지적하고 향후 시정 계획 문의
- 대표단은 ①외국인 투자서비스센터의 경우 재경부 · 산자부 · 법제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어 불만사항을 해당부처로 이첩,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으며, ② **APEC** 회원국간 약속에 따라 한국은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 17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통관정보전산망을 2000년까지 완성할 예정이고 ③현재 진행중인 식약청의 한국 식품공전 개정작업이 끝나면 **Labelling** 문제점이 개선될 것임을 설명

■ 국제기준의 활용

- 의약품 수입시 외국 원제조자가 작성한 제반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복잡한 화장품 검사 제도, **KS** 제도와 **ISO** 국제기준간 합치노력 미흡 등을 사례로 제시
- 대표단은 ①백신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일반 의약품 보다 엄격한 인증절차가 불가피하고, ② **KS**의 국제기준에 합치시키기 위한 계획이 추진 중이며 2005년까지 **KS**와 **ISO**의 합치율이 80%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 제시

■ 타국 규제의 동등성 인정

- 한국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금 제도의 철폐 여부 등 문의
- 대표단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는 타당한 기준이지만 한 · 미 자동차협약의 결과에 따라

배기량별 과세구간을 단계적으로 축소 중임을 설명

■ 경쟁원칙 적용

- 업종별 사업교환(빅딜)이 독점을 초래하여 오히려 시장경쟁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표명 및 대우그룹의 처리 현황에 관심 표명
- 대표단은 업종별 사업 교환은 과다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재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업체간 입장 차이로 다소 지체되고 있다는 점과 대우 문제 처리 현황 설명

■ 기 타

- 소비절약운동(frugality campaign), 수입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홍보, 교육 등) 필요성 강조
- 미국 등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내용 및 추진 현황에 대한 관심 표명

3. 정책권고 사항에 대한 우리측 입장과 조치 계획(표)

권고사항	정부입장	조치계획	소관부처 (협조부처)
1. 정책 결정시 외국기업과의 사전협의 제도 화(투명성 제 고)	수용	• 우리 규제개혁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된 투명성 제고를 2000년 지침에 반영 필요 - 소비자, 외국기업의 정부자문단 참여 확대 - 외국인을 위한 법률 공식번역본 제공 - 외국인의 규제관련 정보의 접근 용이화 (홈페이지 활용 강화)	전 부처
2. 국제기준 합치 노력 강화	검토필요	• 관계부처 검토 사항 - 표준기관의 기술능력 개선을 통한 국내기준/ISO, IEC의 합치 노력 강화 - 표준화 관련 부처간 협력강화 (동종품목에 대한 부처간 상이한 표준화절차 개선)	산자부,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식약청, 정통부, 행자부, 노동부
3. 서비스, 농업 분야의 개방/ 규제 완화	수용	• 뉴라운드 의제로서 농업과 서비스 분야 개방 관련 관계부처간 논의 진행중	농림부, 산업자원부, 재경부 등

권고사항	정부입장	조치계획	소관부처 (협조부처)
4. 정책 결정시 무역정책-국 내 규제당국간 협력	수용	• 2000년도 지침에 반영 필요 - 시장개방 관련 규제설립시 외교부, 산자부의 consultation/ monitoring 활동 강화 예정 - 무역·통상이슈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제고 - 부처간 우수 규제개혁 사례 및 각종 정보 교환 체제 강화	산자부 등 관계부처
5. 경쟁정책 강화 (특히 재벌정 책)	검토필요	• 관계부처 검토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재경부 등
6. 외국상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	검토필요	• 정부 차원의 홍보, 교육의 필요성 여부 및 적정 방법 에 대한 부처간 협의 필요 - 서울모토쇼 등 외국상품전시회 개최(예정)	관계부처
7. 실질적 차별 조치 완화	검토필요	• 관계부처 검토 사항 - 외국계 은행에 대한 대출한도 설정 - 정부조달 분야 - 외국약품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 산정 등 • 통관 절차의 신속화, 단순화 필요	재경부, 산자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 관세청-관계부처간 통관정보전산망 설치 (추진중)	

· 정보통신산업(정보통신부)

1. OECD 보고서의 요지 및 권고사항

가. 보고서의 요지

■ 한국의 정보통신인프라 및 시장발전

- 1980년대 초부터 정보통신인프라 및 시장에서 비약적 발전

- 국제전화, 시외전화 및 이동전화 서비스시장에서 경쟁 도입효과가 큼
- 1997년 시내전화시장에 경쟁도입
 -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시장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
- 인프라 및 시내전화망 경쟁 발전을 위한 과제
 - 신규사업자 시장진입촉진 및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노력필요
 - 공정경쟁 보장장치 수립 및 시행
 - 비용에 기초한 접속료 산정
 - 시내 및 전용회선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에게 가격상한제 실시
 - 보편적서비스 정책수립 및 번호이동성 도입
 - IMT-2000 서비스 허가체계수립
- 정보통신부 정책 과제
 - 정보통신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통부의 시장간섭 최소화
 - 기기산업 촉진정책과 서비스시장 촉진정책의 분리
 - 통신위원회를 독립규제기구로 확대 개편
 - 서비스허가 등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및 일관성제고

나. 정책권고사항

- 통신위원회를 독립적인 통신부문 규제기관으로 재조정하고 정통부의 정책적 책임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
- 허가신청서류 및 부대조건 최소화, 연중신청접수, 등급허가제도입, 출연금폐지 등으로 시장진입장벽 최소화
- 한국통신의 시내, 시외 및 전용회선서비스에 대한 가격상한제 시행 및 모든 서비스요금 인가제 폐지
- 장기증분비용방식을 이용한 상호접속료 산정
- 번호이동성의 조속한 시행 및 유·무선 사업자에 대한 번호할당 정책의 경쟁적 중립성 보장
-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규정 및 제공원가 산정방안 강구
- IMT-2000 서비스 허가시 주파수 경매제 채택 및 경매제를 무선분야 사업자허가의 일 반원칙화
- 시내전화부문 경쟁촉진

- 가입자망 세분화를 한시적으로 실시
- IMT-2000 사업자허가시 유선분야의 지배적 사업자 배제
- CATV 시장에 경쟁 도입 및 음성서비스 제공허용
- 외국인 지분소유제한 폐지
- 정보통신분야의 규제를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규제일몰제 도입

2. Peer Review 참석결과

가. 회의시 주요 쟁점사항

- 원가에 근거한 접속료산정, 망세분화, 가격상한제, 보편적 서비스, 번호이동성, IMT-2000사업자 선정 등 규제 안전장치 도입일정
- 정통부의 정책수립 기능과 규제 기능 분리 및 통신위 독립
-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허가시 제출자료축소 및 연중접수, 등급 허가(class licensing) 제도 도입 및 출연금
- 유·무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 및 KT 민영화와 관련하여 Golden Share 제도 도입
- 장기증분비용산정(LRIC) 방식 도입
- CATV 사업자의 시내전화 시장 진입

나. 우리측 답변내용

- 규제 안전장치 도입 일정
 - 보편적 서비스 시행(2000년), 원가에 기초한 L→M 상호접속료 산정시행(2000년), IMT-2000 사업자선정 (2000년 하반기) 및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제도 도입을 위한 전파법 개정 추진
- 정통부의 정책기능과 규제기능의 분리 및 통신위 독립
 - 기본적으로 정통부는 정책수립기능을 담당하고, 통신위는 시장 감시 및 규제기능을 담당하되,
 - 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과 서비스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책기능과 규제기능의 조화를 추구

■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

-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자료를 300쪽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제출자료 항목도 절반 이상 축소
- 허가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청을 연중상시화할 경우 심사비용 및 심사관리업무가 과다해지는 문제가 있음
- 자유신청제로 시장진입에 제한이 없어 등급허가제 시행의 실익이 없음
- 출연금은 신규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 양성 및 운영기술 개발에 이용되며,
 - 2002년부터 유선사업자에 대한 일시 출연금이 폐지되며 무선사업자에 대한 출연금도 대폭 삭감될 예정임

■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

- 우리나라는 WTO 기본통신 양허 계획보다 18개월 앞서 외국인 지분 한도를 49%까지 확대하였으며, 추가 확대는 WTO 뉴라운드협상시 논의
- 정부는 이미 정부 소유 한국통신 지분의 13%를 매각하였고 2000년까지 정부 지분을 33.4%까지 낮출 예정이며,
 - Golden Share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검토될 사안임

■ 장기증분원가방식 (LRIC) 도입

- 현재 수익배분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2000년부터 원가에 기초한 접속료산정이 시행될 것임
- 현재 전담반에서 연구중인 LRIC 모델이 적용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채택할 계획임을 설명

■ 가격상한제 등 요금규제

- SK텔레콤의 이동전화는 장기간 독점을 향유하였고 시장점유율도 52~53%로서 시장 지배력이 있으므로 경쟁촉진을 위한 요금 규제가 필요하며,
 - 한국통신의 전용회선 서비스시장은 시장점유율 면에서 지배적 사업자이나 시장규모가 작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우려가 적어 요금규제가 필요치 않음
- 시내전화 요금은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포함되어 정통부 단독으로 결정이 어려우며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이슈임을 감안할 때 가격상한제 적용의 적합성에 의문이 가며
 - 이동 전화의 경우 가격상한제를 적용하는 국가는 호주뿐이며, 향후 전담반 연구결과에 따라 입장정리

■ CATV 사업자의 시내전화시장 진입

- CATV사업자의 시내전화시장 진입에 법적 제한은 없으나
 - 시내전화 요금이 선진국 1/3~1/2 수준으로 수익성이 불투명하고 CATV 사업자의 기술력 부족으로 시내전화시장에 진출하지 않고 있는 것임

다. 정책권고사항에 대한 우리측 입장과 조치계획

- 장기적으로 통신위원회를 독립된 통신규제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심사사항을 6개에서 5개로, 세부심사사항도 종전 56개에서 24개로 대폭 축소하였고,
 - 연중신청접수에는 심사비용 및 심사관리업무가 과다해지는 문제가 있음
 - 자유신청제로 시장진입제한이 없어 등급허가제시행 실익 없음
- 한편, 사업자허가시 부과하는 일시출연금은 현재 매출액의 3.5~7%에서 유선은 2002년에 폐지하며, 무선은 2000년부터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 연도별 출연금은 1.26~3% 수준에서 2001년부터 1%로 인하할 예정
- 시내, 장거리 및 전용회선시장에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2000년에 검토할 계획이며,
 - 시장환경을 고려하여, 2001~2002년경에 가격상한제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장기증분원가방식의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며, 작업반을 구성하여 연구중임
- 현재 통신망이 아직 완전히 디지털화(1998년말 현재 71.7%)되지 못하여 번호이동성을 도입하는데 기술적 문제가 있음
 - 현재 2002년을 목표로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중으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는 경우 도입원칙과 목표를 제시할 계획임
-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될 서비스와 제공사업자를 결정하는 등 2000년부터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대로 추진중
- 정통부는 금년 7월 IMT-2000 사업추진일정을 발표
 - 2000년 상반기중으로 사업자 수 및 선정방식 등 정부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며,
 - 2000년 하반기에 주파수를 공고하고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임
- 전파법을 개정하여 통신사업용 주파수에 대해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주파수를 할당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중

- 현재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 가입자망 세분화가 사업자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나 망고도화 측면에서는 비효과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 제2사업자의 성장추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
- CATV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국(SO : System operator), 프로그램공급업자(PP : Program provider) 및 전송망사업자(NO : Network operator)로 구분되는데,
 - 프로그램공급업자 및 전송망사업자는 등록제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 CATV사업자가 음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자격만 갖추면 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외국인 지분제한을 WTO양허보다 18개월 앞서 49%로 확대하는 등 시장개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 시장개방은 WTO New Round에서 협의
-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보통신분야에서도 규제를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필요한 규제는 신설

라. OECD 정책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권고사항	정부입장	조치계획
1. 통신위 독립	검토필요	통신위 기능강화
2. 사업자 시장진입촉진	검토필요	2000년부터 출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
3. 가격상한제 실시	검토중	2000년 도입여부검토
4. 장기증분방식도입	검토중	전담반에서 연구중
5. 번호이동성실시	추진중	2002년 통신망 디지털화가 100% 이루어지는 등 제반여건이 갖추어지는 경우 도입원칙과 목표제시
6. 보편적 서비스	추진중	2000년 실시
7. IMT-2000 정책수립	추진중	2000년 상반기 : 사업자 선정방식 결정 2000년 하반기 : 주파수공고 및 사업자 선정 2002년 : 서비스 개시
8. 망세분화	검토중	전담반에서 연구중

권고사항	정부입장	조치계획
9. CATV시장 경쟁도입 등	규제완화완료	SO, PP, NO 경영허용 신청에 의하여 시내 사업자로 허가가능
10. 외국인 지분제한 폐지	검토필요	WTO양허보다 18개월 조기개방 추가개방은 New Round 협상에서 결정
11. 규제의 정기적 검토	추진중	시행중

. 전기산업(산업자원부)

1. OECD 보고서의 요지 및 권고사항

가. 보고서 요지

- 1999. 1월 발표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은 전력산업의 신뢰도·경쟁력·효율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계획(sound framework)을 담고 있음
- 한국정부의 최우선 조치사항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위한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개혁(concrete legal reforms)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임

나. 정책권고사항

- 전기소비자의 완전 소매 자유화를 위한 일정표 마련
- 한전의 송전사업을 발전회사 운영과 분리
- 정부와 소매주주간의 관계변화를 통한 한전 및 승계회사의 경영활동 개선
- 독립규제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동기관의 경쟁당국과 협조
- 적정 발전설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시장메커니즘 구축
- 경제적 효율성을 개선시키고 정부보조를 제거할 수 있는 가격설정 메커니즘 마련
- 구조개편 후 시장기능을 활용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체에너지 개발 및 활용 체제 마련

2. Peer Review 참석결과

가. 회의시 주요 쟁점 사항 및 우리측 답변 내용

구 분	주요 쟁점사항	답변내용
경쟁보장	• 시장과 계통의 독립적 운용 필요 • IPP 처리대책 • 수직적 통합에 의한 경쟁제한 방지대책 • 원자력 발전회사의 시장지배 대책	• 독립적으로 운영(전력거래소, 계통사업자) • PPA 또는 Pool 경쟁 중 선택 가능 • 배전사업자가 판매를 겸하는 경우외에는 원칙적으로 수직적 통합 금지 • 한국정부도 동 문제점을 인지, 대책 마련중 (예 : must-run, PC)
구조개혁 일정	• 배전망 접속 허용 • 직거래일정 구체화 • 2009년 이전으로 소매자유화 일정 단축	• 소매자유화단계에서(4단계) 배전망 접속 허용 • 직거래 범위에 따른 일정은 검토중 • 향후 전력시장을 monitor, 적절하다고 판단 되면 일정 단축도 가능 - 다만, 우선은 시장경제원리 도입이 최우선 과제
신재생에너지 및 열병합 등	•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 열병합발전 지원 방안 • 효율적 전력사용방안	• 신재생 발전 의무구매 및 공익기금 지원 •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여 적극적 확대 노력 및 공익기금 지원, must-run 의무 구매 • 수요관리(DSM)의 지속 확대 및 공익기금 지원
기타	• 원전 최초비용화 대책 • 외국인, 재벌의 참여 제한 여부 • 발전자회사 매각시 기존 주주 보호 대책 • 발전자회사 배전자회사의 완전 민영화 필요 • 발전원가가 높는데 천연가스발전소 건	• 원전의 높은 가동률과 경제성/높은 전기수요 증가율을 고려할 때 최초비용 문제 적음 • 국민정서 등을 무시할 수 없음 - 현재 전력산업 민영화 연구기획팀을 구성하여 검토중 • 매각에 따른 이익을 적정 배분할 계획 • 장기적으로는 완전 민영화 목표 - 시행착오를 줄이고, 적정 매각가치 확보를 고려하여 구체적 일정 수립 예정 • 침투부하용으로, 발전량기준으로 투자비평가

구 분	주요 쟁점사항	답변내용
기타	설이유 - 발전자회사간 효과적인 경쟁유도방안 - 소매자유화시 지역별 가격차별 가능성 - 효율적인 원전에 대해 시장지배력 제한 이유 - 구조개편 이후 단기건설이 용이한 가스 발전 급증우려 - 천연가스의 특소세 감면 필요 - 발전원별 공정 경쟁환경 조성 필요	는 부적절 - 이미 자회사는 경쟁환경이 조성중이며, 향후 전기위원회의 규제 · 감독을 통해 공정경쟁 보장 - 가격이 지역별로 다를 가능성 있음 - 송전망 사용료(혼잡비용 등) 차별 부과 - 원전의 효율성과 시장지배력 문제는 별개 사안 - 공정경쟁환경 조성 필요 - 발전소 건설 문제는 시장에서 결정될 사항 - 그러나, 아직 원전 경제성이 상당 우위에 있어 원전 감소 · 가스급증 우려는 적음 - 정부차원에서 노력중이며, 부처간 협의 필요 - 발전원간 차별적 세제시정 → 종합에너지세 추진중 (CO₂, 열량, 교통혼잡 등 고려)

나. 정책권고사항에 대한 우리측 입장과 조치계획

권고사항	정부입장	조치계획	소관부처 (협조부처)
전기소비자의 완전 소매 자유화를 위한 일정표 마련	- 직거래 범위에 따른 일정은 검토중 - 향후 전력시장을 monitor,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일정 단축도 가능 - 다만, 우선은 시장경제원 리 도입이 최우선 과제	계속 검토	산자부

권고사항	정부입장	조치계획	소관부처 (협조부처)
한전의 송전사업을 발전회사 운영 과 분리	아국 정부가 검토중인 방향과 같음	긍정 검토	산자부
정부와 소액주주간의 관계변화를 통한 한전 및 송계회사의 경영활동 개선			
독립규제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동 기관의 경쟁당국과 협조			
적정 발전설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 는 시장메커니즘 구축			
경제적 효율성을 개선시키고 정부 보조를 제거할 수 있는 가격설정 메 커니즘 마련			
구조개편 후 시장기능을 활용한 환 경오염물질 배 규제, 대체에너지 개 발 및 활용 체제 마련			

제 6 장

규제개혁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Ⅰ 제1절 Ⅰ

규제개혁에 대한 외부전문가 평가

· 규제개혁 2년의 평가와 과제

* 집필자 : 이성우 한성대 교수

1. 규제개혁의 배경과 특징

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먼저 규제개혁은 무엇이며,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만이 아닌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현재 규제개혁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이유는 행정환경을 둘러싼 변화 때문이다. 즉, 전통적인 정부의 개입행위인 정부규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궁극적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부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현재의 전세계적 조류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효율성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경이라는 물리적인 장벽이 현재와 미래의 세계에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울타리의 역할을 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은 기존의 정부구조와 행태가 혁신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더불어 과학과 기술부문에서의 발달, 특히 정보 및 통신분야에서의 기술적 혁신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 또한 전통적인 정부의 역할과 영역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각

국가와 도시정부에 있어서 예산압력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은 보다 효율적인 정부운영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국민들은 보다 많은 보다 질 높은 정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공공관리부문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며, 그 가운데 집중적인 논의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 규제 영역인 것이다.

규제개혁은 무분별한 정부기능의 폐지나 완화가 아니다. 기본적 정부역할은 철저히, 그러나 현명하게 수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규제 수단의 개선과 품질관리가 핵심요소이다. 부즈 앨런 & 해밀턴의 1997년 한국보고서는 규제개혁을 시장 주도와 기업가 정신의 고취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궁극적으로 규제개혁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과 기능을 적정 배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정비를 의미하며,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의 적정 배분과 조화를 통하여 민간의 자율성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규제개혁은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규제를 개혁하고자 할 때 그 목표는 첫째, 경쟁력의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적이고 구조적인 조정이라고 하는 것과 둘째, 결정과정에서의 참여와 책임성, 투명성 등을 강조하는 규제과정에서의 민주성 향상, 그리고 셋째로 예산절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효율성의 향상이라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 그 자체는 언제나 많은 제약과 장애에 부딪히게 된다. 정치적인 지원의 부족, 이해집단의 반발, 사회적 규제의 전통, 규제관료의 좁은 시각, 일반국민의 과도한 기대, 방대하고 복잡한 규제현실, 자원의 부족 등은 규제개혁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규제를 성공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규제개혁 자체가 정부정책의 핵심요소로 통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시각이 필요하며, 수단과 목표에 대한 동시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규제의 내용과 과정을 감독하는 집권화되고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러한 내용들은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인 지원이 없이는 성취되기 어렵다.

규제개혁의 첫 단계는 탈규제(deregulation)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의미에서의 탈규제, 혹은 규제완화가 먼저 시작되는 것은 기업 등에서 직접적인 불만을 표출함에 따라 문제의 노출이 빠르고, 동시에 해결과정이 비교적 쉽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문제가 되는 특정한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쉽게 확인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규제를 찾아서 없애는 것만으로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제의 전 과정이 일관되고 안정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비용-효과적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이 가능해질 때 이를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때 필요한 것은 비용-편익분석 등의 양적이고 통계적인 수단이며, 독립적이고 집권화된 심사과정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의해서 정부가 규제에 대한 인식, 특히 규제의 비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바탕이 가능해지고, 국가 전체의 규제에 관한 일관된 심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규제과정의 안정성과 반응성이 확보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를 지났을 때, 최종적으로는 규제과정 자체를 정부의 다른 정책과정, 예를 들어 예산과정 등과 동일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규제관리(regulatory management)단계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규제개혁 2년의 추진실적

정부규제의 개혁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완성과 IMF 관리체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규제개혁은 지난 30여년 동안의 정부주도의 권위주의적 관치경제,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정책, 정경유착 등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규제개혁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의 목표로서 제시한 국가경쟁력의 강화, 부정부패의 척결, 국민생활의 질 향상, 법과 제도의 국제화는 시의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있다. 지난 2년간의 규제개혁의 추진실적을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자.

가. 1998년 실적

1998년 7월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1998 기존규제정비계획」을 ‘전문가 심사소위 → 분과위원회 → 전체위원회’의 3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집중적으로 심사·조정하였다. 3단계 심사 조정 방식은 행정 편의주의적, 권위주의적 규제의 폐지대신에 필요하지만 관리가 번거롭고 책임이 많은 규제 등을 대체 폐지하려는 규제선호기관의 전략적, 기회주의적 행태에는 어느 정도 취약한 단점도 있었다. 그러나 기존규제의 50% 이상 폐지를 전제하고 모든 규제를 3차에 걸쳐 심사·정비하는 방식에 의하여 보완되었다고 보여진다. 1998년도 심사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1998년 부처별 규제정비계획 심사결과

구 분	총규제수	폐지(%)	개선(%)	존치(%)
부처자체계획	10,911	1,974(18.1)	2,730(25.0)	6,207(56.9)
심사·조정결과	11,125	5,430(48.8)	2,411(21.7)	3,284(29.5)

*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 1999. 4. 23.

각 부처가 제출한 규제정비계획(폐지 1,974건 : 18.1%, 개선 2,730건 : 25% 등 총 4,704건 : 43.1%)을 심사하여 폐지 5,430건(48.8%), 개선 2,411건(21.7%) 등 총 7,841건(70.5%)을 정비하기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65개의 법률이 수정됨으로써 폐지규제 수는 83건(18개 재개정법률 포함 시 138건)이 감소되었다. <표 4>를 보면 1999년 4월 23일 현재 53개 법률소관의 폐지규제 373건, 개선규제 121건 등이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는 폐지규제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정비계획보다 456건이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규제정비계획 변동현황

총계	1998 정비계획			국회수정의결			국회계류중			1998 정비계획확정		
	폐지 (%)	개선 (%)	소계 (%)	법률 수	폐지	개선	법률 수	폐지	개선	폐지 (%)	개선 (%)	소계 (%)
11,125	5,430 (48.8)	2,411 (21.7)	7,841 (70.5)	65	-83	8	53	-373	-121	4,973 (44.7)	2,298 (20.7)	7,271 (65.4)

개혁의 내용에 있어서 과거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의 난제 또는 성역으로 여겨지던 사안들이 이번에 대거 폐지·개선되었다. 토지·노동·금융분야의 규제를 대폭 개혁하여 생산의 3대 요소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한 점, 자율적 시민사회의 구축을 위하여 가정의례제도와 풍속영업법을 현실화한 점, 의료보험 진료권 이용제한제도의 폐지, 예비군 대원 신고제도 폐지, 단순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허용 등 국민생활관련 규제의 대폭 정비가 의의가 크다고 본다.

1998년에는 외국인 투자관련 규제개혁방안,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등 37개의 핵심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추진완료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분야 규제개혁방안, 자동차관련 규제개혁방안, 물류·유통부문 규제개혁방안, 외국인 투

자관련 규제개혁방안, 수출입 통관관련 규제개혁방안, 벤처산업관련 규제개혁방안, 관광산업 관련 규제개혁방안, 환경관련 각종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등이 그 예이다.

이외에도 식품접객업소의 심야영업 허용, 법정의무고용제도 철폐, 약·탁주 공급구역 제한 폐지, 금융기관 진입 및 영업활동 규제완화 등 규제들은 지난 10여 년간 규제개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던 과제들이었으나, 번번이 민감한 정책사안이라는 이유로 존치 또는 보류되었던 사안들이었다. 또한 벤처산업 활성화, 자동차산업 관련분야, 사업자단체 개혁, 수출입 통관 관련분야 등 여러 부처와 수 개의 법령이 복합적으로 얹혀 있던 15개 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부처간 이해를 조정하면서 개선하였다.

나. 1999년 실적

1999년에는 1998년 규제정비 이후 존치된 잔존규제 전체에 대해 국책연구소(15개) 및 민간연구소(15개)의 사전검토결과를 토대로 규제정비작업을 추진하여 37개 부·처·청의 잔존규제 총 6,820건 중 503건(7.4%)의 폐지와 570건(8.4%)의 개선으로 잔존규제의 15.8%를 정비하였다. 일부 증권업종(위탁매매업 등)의 등록제 전환(2000년말, 재정경제부), 품질보증 인증기관·연수기관 지정권한 등 민간이양(산업자원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선(보건복지부), 대학원 정원 자율화(교육부), 전기통신설비(이동통신기지국 등) 공동구축 제한 폐지(정보통신부), 일반·전문건설업의 겸업·영업범위 제한 폐지(2002년, 건설교통부), 일정규모 이하의 양곡가공업(제조·제분업) 등록제 폐지(농림부) 등이 부처별 주요 정비내용이다.

1999년에도 1998년도와 마찬가지로 33개의 핵심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모든 과제의 추진을 완료하였다. 주요 추진완료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전문자격사관련 규제개혁방안, 주택공급 자율성 확대방안, 비업무용 토지제도 개선방안, 산업안전검사 관련 중복규제 개선방안, 각종 증명민원제도 개혁방안, 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관련 규제개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규제개선방안, 자동차 운수사업 진입규제 개선방안 등이 그 예이다.

이외에도 규제개혁의 집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강구하였다.

첫째,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이다. 이는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충함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상시 점검단을 설치하여 매 2개월마다 지방자치단체를 위주로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점검(1999. 5월, 7월, 9월, 11월)하였다.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실적(1차~4차)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계	심사없이 규제신설	규제 누락 등	소계	폐지규제 계속운영	법령 미근거 규제	법정의 서류징구 등	후속조치 지연 등
355건	28	8	20	327	108	73	109	37

또한, 기업과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관련부처에 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규제개혁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지원단을, 산업자원부는 기업 규제개혁작업단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 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 운영하였다.

둘째,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총 규제사무 69,660건 중 39,996건(57%)에 대한 정비계획(폐지 28,722건, 개선 11,274건)을 확정하여, 1999년 12월 31일 현재 이 중 38,039건(95%)의 정비를 완료하였다.

셋째, 법령 미근거 규제 1,840건을 발굴, 1,466건(79.9%)을 폐지하고 162건(8.8%)은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나머지 212건에 대해서는 1999. 2. 1일부로 운용을 중단토록 조치하였다.

3. 평가

현 정부의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 중 가장 강도가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IMF 경제 위기상황과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적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양적으로 보아도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행정규제 총 11,125건 중 절반수준의 규제폐지를 포함하여 약 70%를 정비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민간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도 규제의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규제 개혁지수가 약 47% 개혁된 것으로 연구, 분석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현 정부의 규제개혁 결과 향후 5년간 국민비용절감 18조원(1997 GDP의 4.4%), 정부비용 절감 6천억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되었다.

무엇보다도 종합적 평가는 다음 기사(매일경제신문, 1999년 4월 26일자 5면)를 인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지난 1999년 4월 14일 셀톤 OECD 사무차장은 일본 규제개혁 심사결

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 나라’라며 ‘일본도 한국처럼 철저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규제개혁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첫째, 지난 2년간의 규제개혁은 IMF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전반의 구조개혁과정에서 주로 경제적 규제의 폐지에 중점이 두어졌다. 전체 사회의 선진화에 필요한 각종 환경규제, 국민의 건강, 안전, 보건, 의료관련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등 사회적 규제의 품질관리에 미미했던 점이 아쉽다. 사회적 규제는 인간의 생명·건강·안전에 대한 위협의 배제, 여성 및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 및 협상력 열위에 있는 사회집단의 보호와 권익신장 그리고 경제적 기회의 균등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의 경제사회적 활동에 대하여 취해지는 정부규제이다. 또한 인권의 보호,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이다. 사회적 규제는 경제활동의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규제 또는 기업의 사회적 횡포를 막기 위한 규제이다. 즉,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이다. 또한, 사회적 규제는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 산업사회의 발달, 사회적 가치관의 향상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처럼 사회적 규제는 사회의 선진화를 위한 규제이며 동시에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규제이다.

사회적 규제를 둘러싸고 기업의 경쟁력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규제준수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시켜 제품의 원가상승을 초래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면도 있다. 이처럼 사회적 규제의 강화는 의도한 정책목표의 달성이란 긍정적 측면 외에도 기업 등의 경제계와 일반 대중에 많은 비용부담을 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있으나, 사회적 규제의 확대에 의하여 환경관련산업이 대두되었으며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에 의하여 기본적인 사회적 불평등의 제거뿐만 아니라 사회에 바람직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할 수 있는 유효노동력을 확대시키는 효과도 있어 사회전체와 일부 기업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국경선이 무너지는 세계화된 시장에서는 오히려 높은 수준의 사회적 규제를 충족하는 제품만이 국제경쟁력을 갖게 된다. 안전도가 높은 자동차가 세계시장에서 일류제품으로 인정받으며, 환경친화적인 제품이 경쟁력이 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도외시하고는 좋은 제품을 만들 수도 없으며 기업이미지와 제품브랜드의 세계화를 꾀할 수도 없다. 따라서 기업도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일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사회적 가치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둘째, 규제를 집행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까지 규제개혁 효과의 파급·확산이 부진하다. 셋째,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혁을 주도하는 하향식 개혁으로 일선규제 집행기관의 자

발적 참여가 결여되고 있다. 넷째, 물량위주의 규제개혁에 치우쳐 규제의 품질향상이 미흡하다. 다섯째,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사전심사가 불충분하고, 정책입안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4. 과제와 전략

우리나라는 1999년까지는 탈규제의 단계에 몰입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관리를 위한 첫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인 규제관리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목표는 명확하게 제시되고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개혁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추진전략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전략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종합성이 필수요소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21세기 신지식·신기술 사회의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에 걸맞는 규제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 21세기에는 신지식·신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사회가 도래,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빈번해지고,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각종 경제 관련규제를 더욱 과감히 정비해 나가야 한다.
-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사회적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보건·위생·환경·안전 등 공익적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규제는 전 기업,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이다.
- 현 정부 출범 후 2년에 걸친 강도높은 규제개혁의 결과 기존 규제의 절반 가량이 폐지되었으나 아직도 일반 국민과 기업들이 느끼는 개혁의 체감지수는 여전히 낮다는 불만이 높다. 특히 일선행정 현장에서 규제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현장중심의 규제개혁 네트워크와 규제개혁의 방법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한다.
- 규제총량을 엄격히 관리해 나간다. 이를 위해 규제의 신설 및 폐지를 종합관리하는 ‘규제총량 관리계획’ 수립·보고를 의무화하고, 비용·효과분석을 포함한 규제영향분석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규제일몰제를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 정부산하 또는 유관단체·협회·법인 등이 행사하는 규제를 대폭적으로 정비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직접규제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국민이 행정규제로 느끼고 있는 각종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무원에 대한 규제개혁 교육 강화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중심의 행정문화 전환 및 규제개혁마인드 확산,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행정규제기본법 및 시행령의 내용, 규제영향분석(비용효과 분석 포함)의 기법과 실제 적용사례 등을 교육프로그램에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 경제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뉴밀레니엄 시대, 새 규제개혁)

* 집필자 : 엄기웅 상공회의소 이사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인터넷 이용의 급속한 증가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존 경제·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뉴밀레니엄을 맞아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정보의 확산이 시공의 한계를 넘는 광속사회의 도래는 인간의 행동과 사고의 반경을 극대화시키고 거리와 시간 제약의 최소화를 가져온다. 이와 같은 공간과 시간의 압축은 경제활동의 프론티어가 확대되는 것으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이 기업, 개인, 그리고 국가 등 모든 경제주체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 각국 정부는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 성과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997년말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도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지 않는 경제·사회 전반의 낙후된 각종 규범과 제도에 있다는 진단하에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착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규제의 50% 정도를 폐지하고, 20% 정도를 개선하여 양적으로 팔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기업이나 일반 국민이 느끼고 있는 규제개혁의 효과는 높은 수치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규제개혁의 방향은 경제환경 변화와 규제개혁의 본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질의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1. 기업의 낮은 규제개혁 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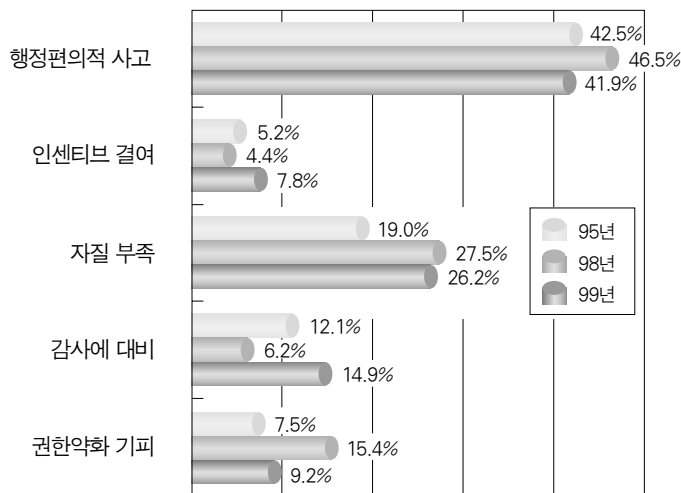
대한상공회의소가 감사원과 공동으로 지난해 8월 전국의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체감실태와 개선과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높은 인지도와 성원을 보내고 있지만 기업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경쟁국에 비해서도 규제의 강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업체의 70%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49.1%에 불과하였다.

1년여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방대한 양의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았다. 응답자 중 상당수는 연관된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 부분적인 규제 완화로는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고 그 외에 전수위주의 규제개혁, 법령은 바뀌었지만 일선 창구에서 바뀌지 않은 부분 등을 체감도가 낮은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한편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에서 기업의 34.2%는 공무원들이 업체의 실정을 잘 모르고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보다 많은 이해 관계인 및 전문가 등 민간인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처리 업무가 기업편의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이 일선 담당 공무원의 행정편의적 사고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행정일선까지 파급되지 못하고 있

규제업무 처리가 기업편의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규제개혁 체감실태와 개선과제,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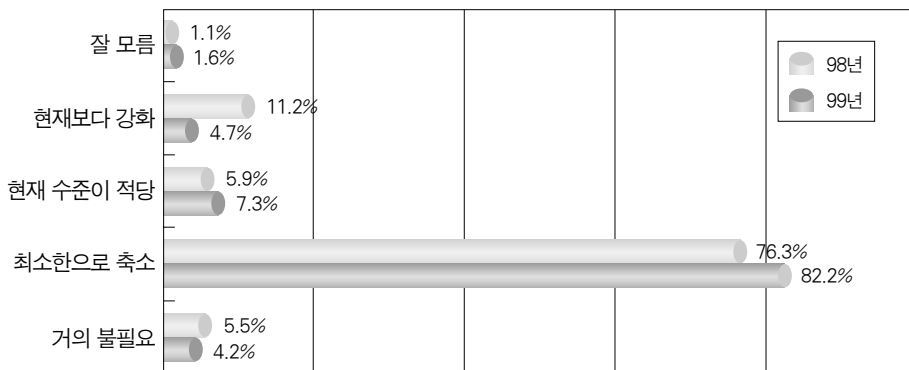
음을 타나냈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규제개혁 작업을 위해 일선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함께 규제와 관련된 음성수입을 차단하고 반면에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업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정부 규제의 정도는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비해 매우 강하거나 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58.5%, 그리고 매우 약하거나 약한 편이라는 응답은 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98년의 조사보다는 그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이지만 세계시장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바람직한 규제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은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향후 규제개혁의 방향은 기업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두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제개혁 작업은 정부 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피규제자인 기업이 현장에서 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를 관련 부처에 제기하는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에는 기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규정이라 할지라도 경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은 경제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활동에 있어 정부개입의 적정 수준



*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규제개혁 체감실태와 개선과제, 1999.

2. 급변하고 있는 경제환경과 규제개혁 과제

기업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 환경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과 제도로 기업활동의 모든 것을 정부가 규율하고 간섭할 수가 없다. 더욱이 앞으로 전개될 디지털 경제하에서 급변하는 시장환경의 변화를 기존의 규제가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상황들이 수없이 나타나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최근의 인터넷 무료전화 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해 미국 기간통신사업자인 GTE와 제휴를 맺고 시작한 무료 인터넷 전화 서비스 개시 두 달만에 미국내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1월 5일부터 똑같은 방식의 서비스를 선보여 역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향후 통신시장의 변혁을 이끌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무료 인터넷 전화 서비스의 통신역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놓고 관계당국이 고민에 빠진 것이다. 국내 유수의 통신업체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가 기존 통신업법에 의한 신고·등록·허가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신업무를 개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고, 인터넷 전화 서비스 업체는 무료전화는 통신업무가 아니라 인터넷 콘텐츠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무료 인터넷 서비스 사업이 별다른 무리 없이 해결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만약 그 때마다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거나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 기업은 결국 세계시장 경쟁에서 도태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지난 1997년 기상업무법 시행령·규칙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민간예보사업의 경우, 지금은 기상청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바탕으로 '기상 마케팅'이라는 나름대로의 시장을 창출하며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상예보 서비스를 개시한 초기에는 민간예보사업의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애로를 겪었다. 즉 민간예보사업자가 PC 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유료 제공하는 기상예보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기상예보는 기상청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민간예보사업자의 통신망과 인터넷을 폐쇄할 것을 요구해 많은 물의를 야기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인터넷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인터넷 음란물도 급증하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프트웨어나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냥 놔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음란물이 문제가 되면 음란물을 차단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올 것이고, 이는

곧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역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가 여럿 출현하면서 그 또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은 기존 경제·사회 환경 및 패러다임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지난 연말 이후 주식시장에서 기존 제조업의 경우 실적이 뒷받침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하는 반면 정보통신, 인터넷 관련 주들은 실적과 관계없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현상은 성장과 경쟁력의 원천이 '노동과 자본'에서 '지식과 기술' 위주로 전환되는 지식기반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이 급속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을 단지 경제 패러다임의 이동만으로 해석해서는 다소의 무리가 있으며, 기존의 전통산업과 신산업과의 경영환경 차이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기간산업들은 각종 규제 때문에 사업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반면 신산업은 정부의 통제손길이 미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서 성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즉 급속한 시장환경의 변화를 행정규제가 결코 따라갈 수 없으며, 이 신규 사업분야에 규제가 적은 만큼 사업기회는 오히려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볼 때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규제하는 기존 산업에 대한 규정, 법령 등은 계속적으로 철폐, 보완해 가야 하며 신산업의 출현에 따른 새로운 사업기회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

3. 규제개혁에 따른 국민경제적 효과는 매우 높아

최근 산업연구원이 지난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출범 이후 시행하기로 한 주요 규제개혁 조치를 외국인투자유치, 창업 활성화, 기업부담 경감, 국민불편 해소, 부정부패 방지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발표한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8년에 시행한 주요 규제개혁 조치로 인해 1999년 이후 2003년까지 최대 106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였는데, 이는 1997년도의 경제활동 인구의 4.9%를 추가로 고용하는 효과이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효과가 52만 8,300명으로 4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이 1999년 이후 5년간 절감하게 될 비용은 18조 6,900억원으로 1997년 GDP의 4.4%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특히 기업의 부담과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는 고용창출 및 고용효과도 커 앞

으로도 이 분야의 규제개혁에 주력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전력, 건설, 유통, 도로운송, 통신 등 5개 산업을 선정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들 산업에서 규제개혁이 잘 이루어질 경우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은 각각 4.3%와 4.8% 상승할 것으로 추산되며, 특히 통신산업의 노동생산성이 가장 크게 개선되어 25%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분석에 따른 생산성 개선 효과, 가격인하 효과, 고용 효과 등을 거시경제 모형에 도입하여 분석한 결과, 규제개혁으로 우리나라 실질 GDP는 10년 후에 8.5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규제개혁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규제개혁의 거시경제적 효과

(단위 : %)

	총요소생산성	물가	고용	임금	합계
실질GDP	7.82	0.83	-0.13	0.0002	8.57
소비자물가	-6.53	-0.85	0.18	-0.0003	-7.18
고용	0.56	0.46	-0.07	0.001	0.94
실질임금	-0.36	-0.72	0.16	-0.0105	-0.95
실업률	-0.54	-0.44	0.07	-0.0001	-0.91

* 자료 : 산업연구원, 규제개혁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1999.

그러나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제개혁 과정에는 단기적으로 잉여인력의 발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으로 인해 여타 부문에서의 성장 여건의 확충이나 새로운 경제 분야의 태동 등에서 잉여인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으므로 규제개혁의 초기 부작용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과거 80년대 초반 규제개혁으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규제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기술혁신에 따른 신산업의 출현 등으로 9년째 경기호황이 지속되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규제개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미국 이외에도 선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제기획청에 의하면, 일본이 지난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전기통신, 항공 등 8개 분야에서 규제 완화로 인한 경제효과가 총 8조 5,822억엔 상당으로, 국민 1인당 67,878엔으로 1998년도 국민소득의 2.3%에 달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호주의 경우에도 규제개혁으로부

터 오는 이익이 GDP의 5.5%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 밖의 국가의 규제개혁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선진 각국은 규제개혁을 통해 규제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쟁 촉진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또 그 성과도 상당히 크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규제개혁의 국민경제적 효과

(단위 :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GDP	0.9	5.6	4.9	4.8	3.5
실질임금	0.8	3.4	4.1	3.9	2.5

* 자료 : 산업연구원, 선진국의 규제개혁 경험, 1998. 제개혁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1999.

4. 규제개혁의 목적은 시장경제 원리의 정립 및 실천

규제완화 내지 규제철폐의 목적은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완화하거나 철폐되는 규제들은 결국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진입규제, 가격규제 등의 경제행정 규제가 중심이 되는데, 이러한 행정 규제들을 완화, 철폐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의 경제자유를 크게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통상 규제개혁은 규제목적의 변경, 규제운용의 개선 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반드시 모든 규제를 줄여나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규제개혁의 초점은 정부의 시장개입 형태를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창의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사회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는 것이다. 즉 규제완화 및 철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부가 불가피하게 존치해야 하는 규제들의 적용방식은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새로이 규제를 신설할 때 그 제정·운용의 원칙을 확립하며 정부로 하여금 규제 대신에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아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시장경제의 틀을 이루는 규칙, 즉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내용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은 규제완화(Deregulation)나 규제철폐

(Elimination of Regulation) 보다는 한층 더 발전된 포괄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초점은 정부의 시장개입의 형태를 개선함으로써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데 두어져야 한다. OECD가 마련한 규제개혁 가이드라인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시장경제의 틀을 이루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 같은 입장에 비추어 현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평가해보면, 우선 기존 규제의 70% 정도가 폐지되거나 개선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 그리고 그 동안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커서 미루어져 왔던 이른 바 핵심규제 혹은 덩어리 규제들에 대한 개혁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과거에 추진되어 온 규제개혁과는 접근방법이 많이 나아졌다고 본다.

분야별로는 금융, 정보통신, 노동, 환경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규제개혁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 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는 물론 국제적인 시각에서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핵심과제들에 대한 규제개혁의 경우에 대부분의 과제들이 경제주체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거나 단순히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고,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의 근본적인 목적에는 다소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 이와 같이 규제개혁이 시장 경쟁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규제완화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또한 크게 반감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하에서 새로운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5. 향후 과제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노력은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국가의 생존을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면이 강하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가 진정되고 있는 요즘에는 규제개혁 의지가 다소 이완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규제개혁으로 인한 효과는 사실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피부로 느끼는 경기체감은 짧은 기간에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외환위기에 따른 긴장이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과제가 아니라 무한경쟁 시대에 있어 국가 생존을 위해 필요하며 앞으로도 21세기의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수행해

야 할 절실한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각 경제주체들의 시장경제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자유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최소한으로 축소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모든 현상이 급속도로 변모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시대에 있어 민간의 창의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정규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의 케이트 연구소와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가 전세계 123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도를 조사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7위에 머물렀다. 경제자유도가 한 나라의 번영을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 사회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 집필자 : 김태운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기존규제의 반수 이상의 철폐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시현한 1998년에 이어 1999년에는 어떠한 형태와 내용의 규제개혁이 이루어졌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논자의 입장과 초점이나 기대치에 따라 상당히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리라 본다. 1998년의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하여 대부분의 전문가가 “아쉬운 점은 있지만 큰 성과”라고 동의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일 것이다. 이에 필자는 실무적,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당위성과 그 실현가능성에 비교적 높은 기대를 걸고 있는 입장에서 규제개혁의 성과 중 특히 사회분야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사회분야 규제개혁을 평가함에 앞서 우선 “사회분야 규제”의 범위를 규정해야 하는데, 그 용어의 선택에 특별한 의미는 없고 경제분야의 규제가 아닌 모든 규제를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사회분야 규제는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규제와 행정규제를 포괄하고 있다.

1. 사회분야 규제개혁의 이론과 실무적 원칙

사회분야 규제에 대한 두 가지 뿌리깊은 오해가 있는데, 첫번째는 사회분야 규제는 아무런 경제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다. 즉 사회분야규제는 너무나 당연한 공공재이므로 그 경제적 영향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무시해도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전통적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사회분야 규제가 민간부문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은 상당하며, 대다수의 국가에서 경제적 규제의 부담보다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대표적인 환경규제인 미국의 공기정화법(1970 Clean Air Act)의 경제사회적 편익을 추정한 최근의 권위 있는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정화법이 미국의 민간부문에 부과하는 부담은 5,2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우리나라의 1998년의 심야영업제한 완조치로 인한 국민의 부담 절감액이 향후 5년간 합계 약 3,600억원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었다.²⁾ 심야영업제한으로 인하여 청소년 및 가정의 보호 등 상당한 사회적 편익이 있었으나, 그 편익은 거저 생산된 것이 아니고 최소한 연간 700억원 상당의 비용을 치르는 대가였다는 것이다. 사회분야 규제도 민간부문의 행위를 제약하거나 민간부문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해서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다. 따라서 사회분야 규제의 합리화가 민간부문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회분야규제에 대한 두번째 일반적인 오해는 사회분야규제는 복지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의 안전, 보건, 복지, 환경,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규제이니만큼 합부로 철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배경으로 많은 선진국에서 1970년대 수많은 사회규제와 행정규제가 제정, 시행되었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대로 사회분야 규제도 사회에 많은 부담을 야기하는 만큼, 그 효과를 비용에 견주어 선택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현대적 의미의 규제개혁이 여러 선진국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선택에는 과연 정책 즉 정부의 개입을 시도할 것인가의 선택과 수많은 정책대안 중 어떤 대안을 결정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가 있다. 즉 모든 정책대안(무정책대안, 즉 정부가 어떤 개입도 시도하지 않는 대안을 포함한)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비교형량해서 그 차이인 사회적 순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깨우침

1) 이 비용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1990년 달러화 기준으로 1970년부터 1990년 사이의 직접비용을 합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USEPA(1997) 참조.

2) 심야영업제한 완화조치로 인한 향후 5년간의 고용증대 효과는 약 50,700명, 국민비용절감은 약 3,600억원, 정부비용절감은 약 674억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하병기 외(1999) 참조.

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규제영향분석제도(RIA)가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기법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규제영향분석은 고려가능한 여러 정책대안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다른 말로 하면 높은 품질의 대안을 추출해주는 사회분야 규제개혁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규제영향분석의 도움이 없이는 사회분야 규제의 존재의 당위성과 개선의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분야 규제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논의를 역으로 해석하면 사회분야 규제개혁과 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 추출된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의 사회분야의 규제가 철폐되면 그 규제로 인하여 유무형의 부담을 지고 있었던 민간부문은 그 제약에서 벗어나는 편익을 확보하는 반면에 그 규제가 의도했었던 안전, 보건, 복지, 행정질서상에는 특정한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분야 규제개혁의 실무적 당위는, 그것이 꼭 엄밀한 의미의 비용편익분석과정을 포함하든 안 하든 간에, 규제개혁의 효과를 비용과 편익의 차원에서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분야 규제의 도입이나 개혁의 모든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의 개념적 틀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³⁾

두 번째는 규제개혁의 방안은 무궁무진하게 다양하다는 것이다.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신설·강화되는 규제안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규제입안부처는 제안하는 규제안이 다른 어떤 정책대안보다 우수함을 보여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이 규제개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대안 결정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결국 규제개혁당국자는 규제개혁안이 현재의 규제안을 포함하는 다른 어떤 정책적 대안보다도 우수함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규제개혁은 단순히 기존의 규제를 철폐하거나, 그 집행방식 등을 완화하는 단순작업이 아니며, 기존 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고도의 정책결정과정이기이다. 그러므로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 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나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할 책임이 규제개혁 당국자에게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규제대안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숙지가 사회분야 규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⁴⁾

3)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도입과 운용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대부분의 논자의 견해를 종합하면, 그 제도의 유용성은 수긍하겠는데 과연 우리나라 행정의 환경에서 실무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현실론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규제영향분석제도가 곧 엄밀한 의미의 비용편익분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규제입안부처의 상황에 따라서 분석의 수준과 범위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도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을 고려할 때,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자세한 항목을 기회비용의 개념에 입각하여 망라하기만 해도 대부분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의 실익을 상당히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신설규제의 도입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입안과정에 참여하는 관료의 규제의 진정한 비용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과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규제관료의 행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김종석·김태운·이성우(1998) 참조.

4) 규제대안의 개념과 실무적 함의에 대해서는 본 백서의 제 2장의 제 8절, 또는 김태운(1999)을 참조.

2. 1999년의 사회 분야 규제개혁의 개요

1999년에 이루어진 사회분야 규제개혁의 대강을 살펴보면⁵⁾, 우선 산업안전분야에서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중복규제를 합리화하였고, 관주도의 타율적인 검사에서 자체적인 검사나 점검위주로 전환시켰으며,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 합리화하였다. 생활안전분야에서는 품질인증제도나 승강기검사제도의 대상을 축소하고, 그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였으며, 소방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환경분야에서는 중복규제를 제거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행위허가제도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불필요한 몇 가지 규제의 현실성을 제고하였다. 보건분야에서는 지정진료제를 개선하였고,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인 위생관련제도를 폐지내지는 개선하였으며, 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구조관련 규제를 현실화하는 한편, 식품공전의 현실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였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비율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교육분야에서는 학사행정의 편의성을 높이고,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였으며, 학원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 제공분야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본법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국가자격제도를 개선하였고, 기업의 준조세부과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각종 증명민원제도의 대폭적인 개선도 이루어졌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비영리법인들의 활동의 자율성이 진작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3. 1999년 사회 분야 규제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회분야 규제의 다양함과 광범위함을 고려할 때 1999년 사회분야 규제개혁의 문제점을 명료하게 제시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999년에 수행된 사회분야 규제개혁의 기본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그 시사비비를 가리는 것으로 사회분야 규제개혁의 평가를 갈음하고자 한다.

가.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주력

1999년 사회분야 규제개혁의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경향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

5) 사회분야 규제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백서의 제 2장과 제 3장에서 망라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약한다.

은 해당 규제 또는 규제군의 개선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실무적이거나 기술적인 결정은 당사자인 규제기관에게 일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규제개혁의 과정에 해당 관료조직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주어진 역할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향은 권장할만하며 또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규제기관의 자율적인 동참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규개위의 지나치게 일반적인 결정이 궁극적으로 그 효력을 거두리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규제개혁에 대한 정치적 지지의 부침이나 정국의 흐름에 따라서 유사한 결정들이 유명무실화되었던 그간의 경험은 이러한 회의적 시각이 무리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많은 사안이 부처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것인데도 불구하고, 범부처적 기관인 규개위가 치밀한 수준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규개위 결정의 해석과 그 실현방법을 둘러싸고 부처들의 공방이 뜨거워져서 결국은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 내지는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규개위는 앞으로 규제정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규제기관의 결정을 유도 내지는 유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객관적인 요건이나 목표를 부가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규개위의 실무적 전문성 부족을 고려할 때, 투입요소적인 요건이나 기준보다는 성과위주의 기준이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규제개혁의 기본정신에도 부합된다.

나. 대안적 정책의 틀 제시 미흡

사회분야 규제개혁 내용의 대다수가 주어진 제도적 틀 안에서 기존 규제를 개선 내지는 합리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한계가 두드러지고 있다. 즉 정보제공, 자율협약, 성과기준규제 등 비교적 고품질의 규제대안이나 보험 등의 민간시장을 활용하는 시장유인적인 정책대안의 틀로 기존 규제군을 과감히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규개위의 제한된 자원으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또한 특정 규제를 폐지했다는 결정자체가 자연스럽게 시장의 정보제공 기능에 의존하겠다는 의사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업체들과 정부간의 자율적인 협약의 가능성을 탐색한다거나, 보험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한다거나, 성과기준 규제의 도입가능성을 타진해 본 예들을 쉽게 찾아 볼 수는 없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고품질 규제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개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의 대안적 틀에 대한 자체적인 인식을 함양하는 가운데 규제입안기관에 대한 교육, 연구 및 홍보를 진행시켜야 한다.

다. 정부기능의 탄력적인 재설계 미흡

규제개혁의 진정한 의미에는 정부의 영역을 축소하자는 일방적인 방향성은 없다. 정부와 민간의 당위적 영역을 재설정한다는 규제개혁의 의의에 충실하다 보면 당연히 정부부문의 과도한 팽창이 부각되기 때문에, 규제개혁이 곧 정부영역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기획의 수단으로서 수많은 규제, 특히 사회분야 규제가 양산되어온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최병선(1999)에 따르면 우리나라 규제의 특징 중의 하나가 개발전략에 입각한 정부기획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응당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기능을 민간부문에 부담시킨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게 된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보건, 안전, 환경 등의 사회적 규제에 이러한 성격의 규제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도, 직업훈련과 관련된 각종 부담금제도 등이 이러한 사례가 될 것이다.

규제개혁이 단순히 정부영역의 축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안전관련 규제의 경우, 정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민간의 부담으로 떠넘겨 온 흔적이 있는 경우가 다수 있다. 위험물탱크 정기점검제도는 ‘소방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위험물탱크에 대한 누설여부와 구조안전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써 최근까지는 소방서에서 직접 탱크의 안전성을 점검하였던 제도였다.

그러나 소방서의 전문성의 한계, 부정 및 비리의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재에는 탱크소유자의 부담으로 한국소방검정공사와 민간의 안전점검업자가 유료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물탱크 정기점검제도규제를 개선하는 대안 중에는 정부가 다시 안전점검업무를 회수하여 엄정하게 시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규개위 결정의 경향에는 이러한 접근방법을 찾기 어렵다.

규제개혁당국이 규제개혁과정에서 민간으로 이양했던 사회적 기능을 다시 정부가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가당착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부와 민간의 영역에 대한 최선의 구분이라면, 다시 말해 정부가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선이라면, 정부가 그 일을 수행하도록 조정하는 것은 규제개혁의 정신을 보다 훌륭히 구현한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실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예산당국과의 협의 등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규개위가 대통령직속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규개위가 당면한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범부처적이며 사회총후생 극대화의 차원으로 임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많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었던 사업자단체에 대해 1999년에 행해진 규제개혁은 규개위가 자신의 소명을 올바르게 수행한 좋은 예라고 본다. 따라서 규개위가 자체적으로 미시적인 정부기능 재설계작업을 수행하던, 기획예산처 등에 의뢰하던간에 방법과 전략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사회후생 극대화의 차원에서 정부기능을 합리화하는 작업을 규개위가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4. 결론

이 글은 사회분야 규제에 대한 두 가지 뿌리깊은 오해를 지적하면서, 사회분야의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의 틀에 입각한 비교형량의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향후 진정한 의미의 규제개혁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대안을 개발, 제시하고, 정부의 기능을 합리화하는데 노력해야 함도 지적하였다. 그 결과 규제개혁이 기존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일회성 단순 작업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수많은 정책대안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개발, 발굴하는 끊임없는 과정으로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종석 · 김태윤 · 이성우(1998),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 규제개혁위원회
- 김태윤(1999), 「규제대안 개발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최병선(1999). 최병선(1997), “새로운 규제개혁 추진전략과 과제”, 「규제혁과, 새로운 전략과 과제」, 행정쇄신위원회 · 한국행정연구원 ·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최토론회, 1997. 11. 11.
- 하병기 외, (1999), 「규제개혁의 경제효과 분석」, 산업연구원.
- US EPA.(1997). The Benefits and Costs of the Clean Air Act.

Ⅰ 제2절 Ⅰ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2000년도 계획

* 집필자 : 정현용 서기관(Tel. 3703-2159)

· 기본방향

- 21세기에는 신지식·신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사회가 도래,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빈번해지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
 -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각종 경제 관련규제를 더욱 과감히 정비
- 또한,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사회적 규제의 품질을 제고
 - 보건·위생·환경·안전 등 공익적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행정문화의 창출

· 추진전략

■ 중점과제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 신지식 · 신기술 사회의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에 걸맞는 중점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소관 부처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행정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그동안의 기존규제 전면 정비방식은 지양하며 환경 · 안전 등 사회적 규제의 경우에도 규제대안개발 등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여 국민들의 규제 순응도를 높이는데 주력한다.

■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

- 지방자치단체의 제2단계 규제전수 정비작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별 균형있는 규제개혁을 도모하며 아울러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는 각종 준공공기관 (정부산하 단체 · 협회 등)의 규제도 일제히 정비한다.
- 규제개혁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 · 점검을 강화하여 일선 공무원의 규제집행 행태를 개선해 나간다.

■ 규제총량의 엄격한 관리

-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규제의 신설 및 폐지를 종합관리하는 「규제총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 비용 · 효과분석을 포함한 규제영향분석기법을 개발 · 보급하여 규제심사의 내실을 기하고, 규제일몰제를 더욱 확대하여 실시한다.

· 2000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1. 중점 규제개혁과제 등의 정비

규제개혁위원회는 2000년도에 추진이 필요한 64개 과제를 제시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제시된 과제를 참고하여 부처별로 추진할 중점과제를 발굴 · 선정, 1999. 12월말

까지 개혁과제명과 주요 개선방향, 추진일정 등 '2000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중점규제개혁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과제명과 추진일정 등을 조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라 마련된 규제개혁방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조정실과 협의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토록 할 방침임도 아울러 시달하였다.

특히, 중점과제의 선정 및 개혁방안의 마련시에는 피규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드시 첨부토록 하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시한 2000년도 중점추진과제를 보면, 21세기 신지식·신기술 기반의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으로 정보통신산업관련 규제합리화,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이 있으며, 인력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개혁방안으로 직업교육훈련 관련 규제개혁, 국가자격검정관련 규제개혁, 전자직업소개업 관련 규제개혁 등이 있다.

이와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는 교육 선진화에 필요한 고등교육 관련 규제와 학원설립·운영 관련 규제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대규모 기업집단관련 규제개선 등 중요 정책적인 규제도 재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 금융분야의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진한 채로 남아 있는 금융업 진입 및 겸업관련 규제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2000년도 중점 규제개혁과제(2000. 2. 11일 제47차 규제개혁위원회 확정) 참조(p. 876)

2.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로 하여금 2000. 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지방자치단체 잔존규제에 대한 2단계 전수 정비작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00년도 상반기중에는 지방자치단체별(광역시, 시, 도, 구, 군 5개단체) 규제개혁 모델을 개발·보급하여 모든 자치단체가 균형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1999년말에 행정연구원 및 지방자치단체경영협회에 규제개혁 모델개발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용역이 완료되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 지방자치단체에 규제개혁 모델

을 보급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자치단체 규제를 정비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3. 준공공기관 규제의 정비

규제개혁위원회는 2000년도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직접규제 이외에 실질적으로 국민이 행정규제로 느끼고 있는 정부산하 또는 유관단체·협회·법인 등과 관련된 규제를 일제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책임하에 법령 등의 근거에 의해 설립된 단체, 정부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등에 의한 규제를 일제조사하여 정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2000년도 규제정비지침을 이미 시달한 바 있다.

4. 규제총량의 엄격한 관리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신설·강화 심사를 요구할 경우 또는 중점규제개혁과제를 상정할 때 소관 규제총량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토록 하여 규제총량을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아울러 신설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제정책 차원에서 추진되는 신설·강화규제에 대하여는 동규제가 거론되는 시점부터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5. 규제개혁 사후관리의 철저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규제개혁 사항 전체에 대하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조례, 규칙 등 규제가 현장에서 집행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이행실태를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업무의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통보하고 관련 조례·규칙의 개정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확인하도록 독려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규제개혁 사항의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6. 현장중심 규제개혁 지속 추진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9년도에 이어 규제개혁 이행 실태 점검단을 계속 운영해 나가는 한편, 기설치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지원단(행정자치부), 기업규제개혁작업단(산업자원부), 경쟁제한 규제개혁작업단(공정거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00년도 중점 규제개혁 과제

■ 지식기반경제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1. 정보통신산업관련 규제합리화
2.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3. 코스닥시장 건전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4. 품질인증관련 규제개혁
5. 문화재보호 관련 규제의 합리화

■ 산업인력 개발 효율화를 위한 규제개혁

6. 국가자격검정 관련 규제개혁
7. 전자직업소개업 관련 규제개혁
8. 고용보험제도 관련 규제개혁
9. 근로자 공급허가제 관련 규제개혁
10. 법정퇴직금 관련 규제개혁

■ 교육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정비

11. 외국인학교 설립관련 규제개혁
12. 학원설립·운영관련 규제개혁
13. 사립학교 교장자격관련 규제개선

14.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제도 관련 규제개혁
- 농·어민 소득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15. 농업관련 인·허가 업무절차 간소화
 16. 축산업 진입규제 개선
 17. 농촌개발 및 지원관련 규제개선
 18. 산지의 보존 및 이용관련 규제의 합리화
 19. 수산업분야 진입규제 등 개선방안
 20. 농약유통 및 안전관련 규제개선방안
- 금융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21. 금융업 진입규제 및 겸업관련 규제개혁방안
 22.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관련 규제개선
 23. 금융기관 영업관련 규제개혁방안
 24. 동일인 신용공여관련 규제의 합리화
 25. 보호영업관련 규제개혁방안
- 중요 정책적 규제 재검토
 26.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규제개선
 27. 중소기업 고유업종 관련 규제개선
 28. 단체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제개선
 29. 수도권 산업입지관련 규제개선
 30. 시장지배적 사업자 심사기준 개선 방안
-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31. 정부산하 또는 유관단체, 협회, 법인 등에 의하 유사행정규제 정비 방안
- 국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규제개혁
 32. 지방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등 규제완화 방안
 33. 인감증명제도 개선
 34. 보호외국인 관련 규제개혁 방안
 35.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제도 개선방안
 36.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발급관련 규제개혁
 37. 의료보험관련 규제개선방안
 38. 공원지역내의 행위제한 관련 규제개선

- 3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관련 규제개혁
- 40. 광고물 관련규제의 합리화
- 41. 지방자치단체 증명민원서류 감축 방안
- 42. 자동차 운행관련 규제개선
- 산업·기술·건설·교통분야 규제개혁
 - 43. 에너지이용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 44. 전력기술관리관련 규제개선 방안
 - 45. 산업의 진입, 가격 등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 46. 무선국 및 무선종사자 관련 규제개선
 - 47. 위탁대행기관 관련 규제개선
 - 48. 해운산업의 진입규제 및 운항관련 규제개선
 - 49. 항만분야 규제개혁방안
 - 50. 수산업분야 진입규제 등 개선방안
 - 51. 도시계획지역지구제 개선방안
 - 52.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감리제도관련 규제개선
 - 53. 공공공사 입찰관련 규제개선방안
 - 54. 건축관련 규제개선
 - 55. 토지이용관련 규제개혁방안
 - 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개선
-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규제정비
 - 57. 의약품 및 검사관련 규제개혁
 - 58. 폐기물 재활용 관련 규제개선
 - 59. 환경산업업종의 합리적 개선방안
 - 60. 다단계 판매업 등 관련규제 개선방안
 - 61. 소방행정 관련 규제정비
 - 6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관련 규제개선
 - 63. 각종 보세구역 지정·운영관련 규제개선 방안
 - 64. 병역특례제도 관련 규제개선

부 록

규제개혁관련 법령/규제개혁 추진체계/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일지

| 1 |

규제 개혁 관련 법령

행정규제기본법

[1997. 8. 22 법률 제536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
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라 함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
시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라 함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라 함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동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라 함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2.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조세 등에 관한 사무중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보건과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실효성있게 정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여부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되기 1년전까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청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에 대하여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견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11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과급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호의 첨부서류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8조제3항·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

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 또는 강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7조(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이송받은 경우
3. 기타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 따라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하여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당해 기존규제의 정비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조직정비 등)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 및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

하는 자가 된다.

-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8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조정 및 의견청취등)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의 업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34조(규제개선 점검·평가)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및 평가결과 규제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규제개혁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36조(행정지원 등) 총무처장관은 규제관련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개선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4735호 행정규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법 시행 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갈음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모든 소관 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정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훈령·고시 등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훈령·예규·지침·고시 등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 결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예규·지침·고시 등에 규정된 규제는 이를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다른 법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으로 한다.

제42조중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2조제3호중 “제정 또는 개정”을 “개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행정규제”를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심사사항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

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련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병역법 · 향토예비군설치법 · 민방위기본법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 · 소집 · 동원 · 훈련에 관한 사항
2.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3. 조세의 종목 · 세율 ·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이 내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항목별 평가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다. 규제의 목표설정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가.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
 -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3. 규제와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 가.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
 - 나. 규제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 여부
 -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가.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의 분석
 -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
 -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 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여부
 -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용이성
 -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간의 타당성여부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가.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 판단
 - 나. 기존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① 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규제의 내용
- 2. 위원회의 심사의견
-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

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2조(의견제출의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모사전송·컴퓨터통신·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기타 참고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1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 ③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전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2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전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장의 임명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전문위원 등)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실지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30조(규제개선의 점검·평가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확인·점검사항
2. 확인·점검일정
3. 확인·점검자 인적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 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368호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7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규제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고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의 규제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규제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법령·조례·규칙·훈령·예규·고시 또는 공고의 형식이 아닌 것은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법령·조례·규칙이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예규·고시 또는 공고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 당시의 모든 소관 기존규제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법 시행 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소관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별정비계획은 1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차별정비계획에 다음 각호의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2. 법 시행일전 5년간 개정되지 아니한 규제
 3.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4.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5.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부터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연차별정비계획의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1998. 4. 18 제정, 1998. 7. 16 1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 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조(의안의 제출) ① 의안은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안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제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구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경제1 분과위원회

2. 경제2 분과위원회

3. 행정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을 소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배치한다.

제6조(소관) ① 경제1분과위원회는 재정경제·건설교통·산업자원·공정거래·금융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경제2분과위원회를 정보통신·과학기술·해양수산·농림·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행정분과위원회는 행정자치·외교통상·통일·국방·법무·복지·교육·노동·문화관광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분과위원회별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위원이 소관사항을 조정한다.

제7조(회의)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 ③ 분과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 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의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 1.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중요규제 여부의 결정
- 2.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규제의 긴급성 인정여부의 결정
- 3.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의결토록 위임한 사항

제9조(회의록) 분과위원회는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기구

제10조(조직)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이 수행한다.

제11조(규제개혁조정관실의 직무) 규제개혁조정관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사항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인사·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확정된 과제에의 추진상황 점검·평가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제12조(심의안건 설명) 규제개혁조정관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제5장 전문위원·조사요원 및 전문 연구기관 등

제13조(전문위원·조사요원의 구성 등) ① 전문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며,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조사요원은 소속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위원을 보좌한다.

제1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연구 의뢰) ① 위원장은 경제규제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규제개혁작업단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의 일부로 본다.

제1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위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사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 및 연구업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역비를 지급하며, 용역비의 지급기준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관계행정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7조(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의 지급기준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199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Ⅱ 규제 개혁 추진 체계

· 개요

1. 효율적이고 일관성있는 추진기구 구축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그 동안 다원화되어 있던 규제개혁 추진기구를 규제개혁위원회로 일원화하였고, 각 부처별로 규제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범정부적으로 규제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2. 추진기구

가.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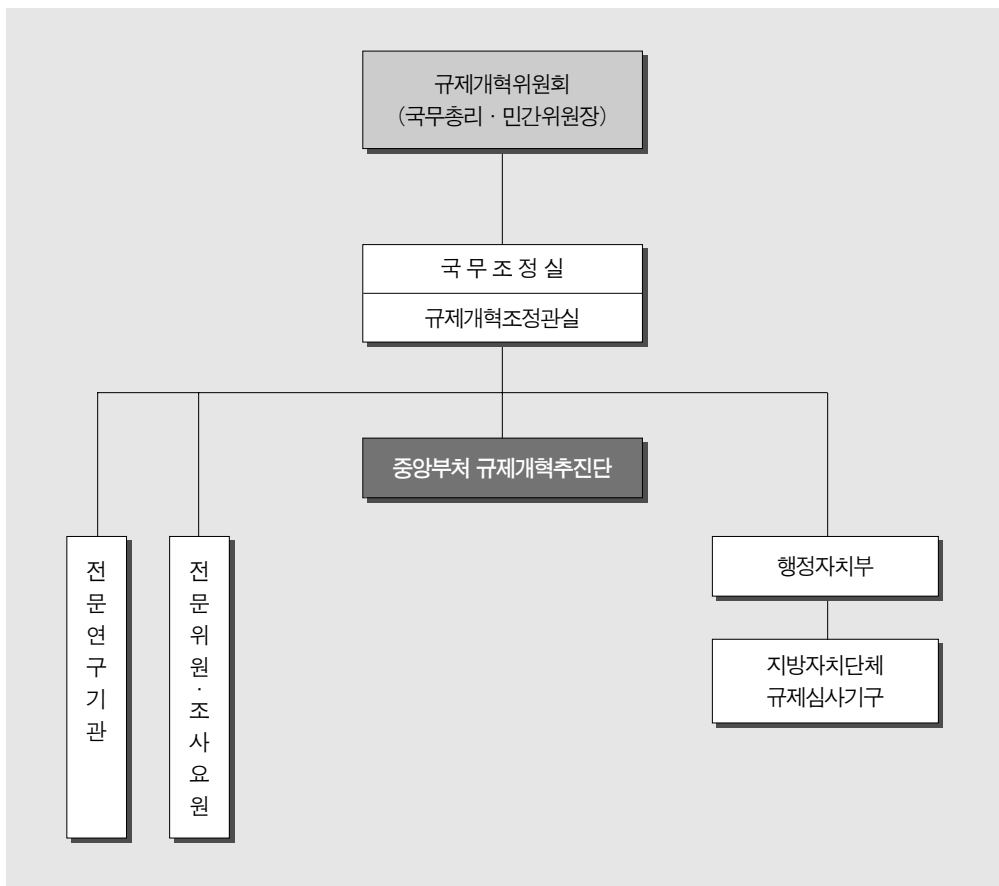
나. 각 부처별 규제개혁추진단

기획관리실장 관련 실·국장,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단은 규제의 신설·강화시 사전심사를 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

지역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의 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규제개혁추진 체계도



.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1. 개요

가. 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1998. 4. 18,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나. 기능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및 발전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명단

(1999년 12월 현재)

구 분	성 명	현 직
委員長	金鍾泌 李鎮高	국무총리 서울산업대 총장
政府委員 (6)	康奉均 金杞載 鄭德龜 鄭海洵 田允喆 金弘大	재정경제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
民間委員 (12)	高恩晶 金一燮 金在哲 梁承斗 李啓民 李珉和 李衍澤 李榮蘭 李允鎬 申受娟 趙正濟 安文錫	언어예술원장 삼일회계법인 부회장 무역협회회장, 동원산업회장 연세대 교수(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위원장)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벤처기업협회 회장, (주)메디슨 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숙명여대 교수 LG경제연구원 원장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장, 코리아스테파사장 한국해양대학교 초빙교수 고려대 교수

- 규제의 신설 · 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 규제의 등록 · 공표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 · 평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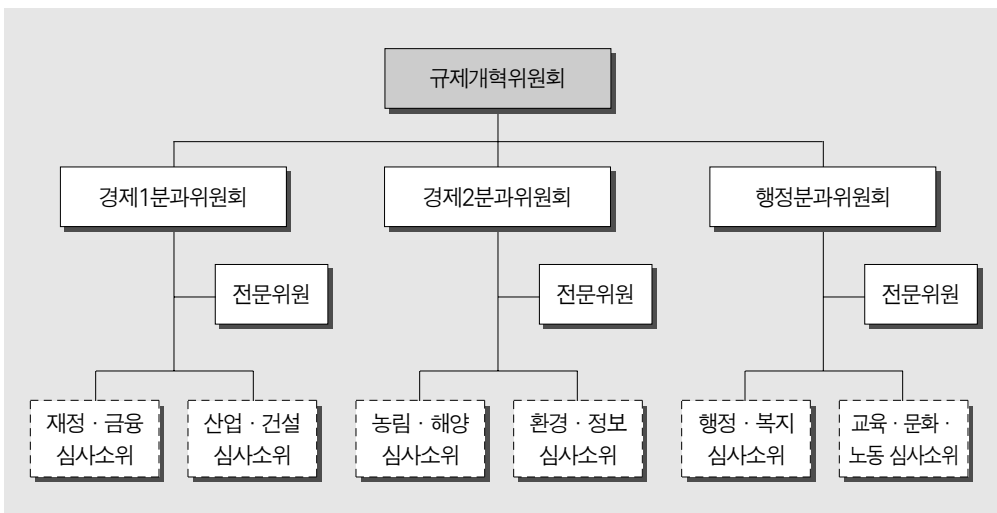
다. 구성

- 국무총리(당연직위원장), 민간공동위원장, 민간위원 12인, 정부위원 6인 등 총20인으로 구성

2. 운영체계

규제개혁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위원회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 연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8인의 전문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1998년도 부처별규제정비계획' 심사 및 '1999년도 잔존규제' 심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6개의 전문가 심사소위원회를 운영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 주 : [] 한시적 조직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명단

(1999년 12월 현재)

분 야	성 명	현 직
금융	이창기	한국은행 과장
건설	이동우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행정	김정렬	한국행정연구원 주임연구원
산업 · 에너지	고동수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일반경제	변대환	전국경제인연합 부장
농림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환경	민병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보건복지	봉성종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수석연구원

3. 회의운영

가. 소집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회의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매주 개최하고 있다.

나.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회의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라. 회의출석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규제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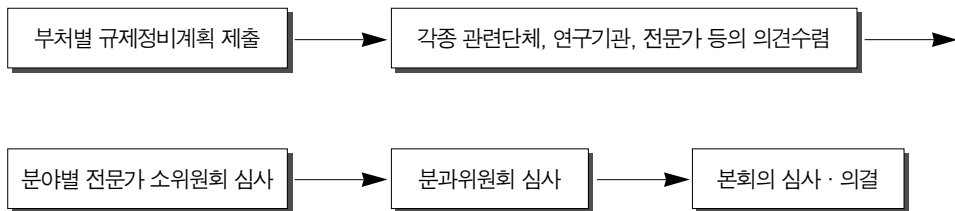
위원회의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도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마. 조정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 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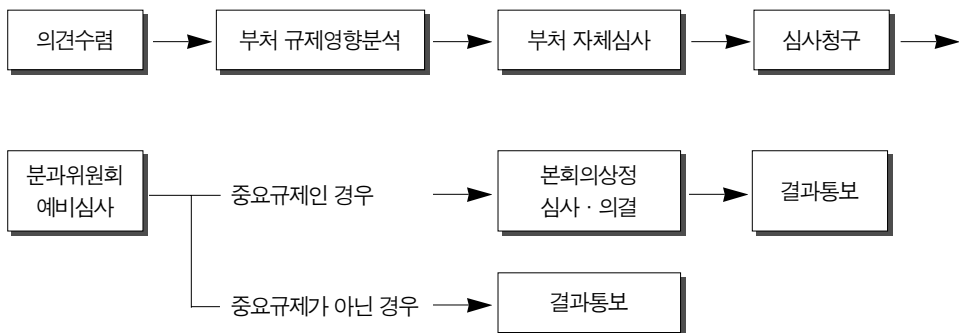
4. 심사 절차

가. 부처별 규제정비계획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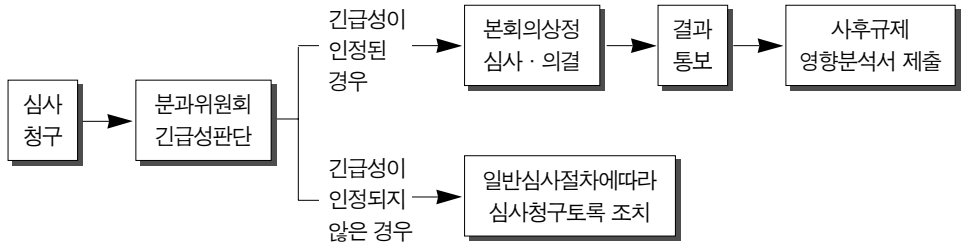


나. 신설·강화규제 심사

■ 일반적인 경우



- 긴급규제의 경우 : 부처의 사전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과정을 생략하고, 60일이내 사후 규제영향분석서 제출



※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

5. 활동실적

- 1999년말 현재 총 45회의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231개 안전상정(보고안전 : 65건, 의결안전 : 166건)
- 1998년도 부처별 기존규제 정비계획 심사 35개 전 부처의 기존규제 11,125건 중 5,430건(48.8%)폐지, 2,411건(21.7%) 개선 등 총7,841건(70.6%)을 정비토록 심의·확정
- 1999년도에는 1998년도 규제정비 이후 존치된 잔존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잔존규제 6,820건 중 폐지 503건(7.3%), 개선 570건(8.4%) 등 15.8%를 정비토록 심의·확정
- 핵심덩어리 규제개혁
외국인투자, 주택건설, 자동차, 물류·운수, 풍속영업, 건설, 관광산업, 벤처기업활성화, 수출입통관, 주류, 사업자단체, 전문자격사, 주택공급자율 확대, 비업무용 토지제도 등 50여개 핵심덩어리 규제개혁과제 정비
- 중요신설규제 심사
1998년 6월 이후 357개 법령, 1,325건의 신설·강화규제 중 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중요규제를 심사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개요

가.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
(1998. 4. 18, 행정규제기본법 제28조)

분과위원회 및 위원

(1999년 12월 기준)

분과위원회	분 과 위 원		소관부처
경제 I	민간위원	趙 正 濟(위원장) 金 一 燮 李 榮 蘭 李 允 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철도청(12개 기관)
	정부위원	재경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경제 II	민간위원	梁 承 斗(위원장) 金 在 哲 李 珉 和 申 受 娟	과학기술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9개 기관)
	정부위원	산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정	민간위원	李 衍 澤(위원장) 高 恩 晶 李 啓 民 安 文 錫	국가보훈처,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병무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문화재청(14개 기관)
	정부위원	행자부장관 법제처장	

나. 기능

-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사전 검토 · 조정
-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전문적인 조사 · 연구
-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회수는 경제1, 경제2, 행정 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등 총 6인으로 구성

2. 회의운영

가. 회의소집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나. 의결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회의공개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회의출석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도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마. 위원회 의결로 의제되는 사항

- 규제등록의 요청 및 미등록 규제의 등록·정비계획 제출요구
- 중요규제 여부 및 규제의 긴급성 인정여부의 결정
- 기존규제의 정비에 대한 위원회 심사여부의 결정
-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계획에 대한 심의
-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토록 위임한 사항

3. 활동실적

- 1999년말 현재 총 167회의 분과위원회 개최(경제1분과위원회 : 70회, 경제2분과 위원회 : 42회, 행정분과위원회 : 55회)
- 중앙부처의 기존규제 정비계획을 심사하여 위원회에 상정
- 핵심 규제개혁과제를 사전심사하여 위원회에 상정
-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예비심사하여 중요규제는 위원회에 상정

. 전문가 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개요

가. 목적

부처별 기존규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6개 전문가 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나. 구성

소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한 위원장 1인 이외에 간사 1인을 포함하여 위원 5~6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재정·금융, 산업·건설, 행정·복지, 교육·문화·

노동, 농림·해양, 환경·정보 등 6개 소위원회임

다. 기능

1998년도 부처별기준규제 정비계획 및 1999년도 잔존규제 정비계획에 대해 사전 전문심사를 실시하여 분과위원회에 상정

2. 활동실적

- 1999년말 현재 79회의 소위원회 개최
- 1998년도 기준규제 정비계획 및 1999년도 잔존규제 정비계획 심사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1.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가. 규제개혁추진단

■ 기능

- 규제개혁업무 총괄조정
- 각분과 작업반에 대한 지도·조정
- 규제개혁추진상황 점검·평가
- 정부내 규제개혁관련 부서간 협조

■ 구성

- 차관·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관련 국·과장 등 10인~20인으로 구성

전문가 심사소위원회 및 위원

(1999년 12월 현재)

구 분	성 명	현 직
재정·금융 심사소위	김일섭(위원장) 김 종 석 강 철 준 오 규 택 이 용 환 조 장 욱	한국회계연구원장(규제개혁위원) 홍익대 교수 금융연수원 교수 중앙대 교수 전경련 상무 서강대 교수
산업·건설 심사소위	조정제(위원장) 이 성 우 장 석 인 김 종 덕 정 진 행 홍 갑 선 이 주 선	한국해양대학교 초빙교수(규제개혁위원) 한성대 교수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대우건설 부사장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사회·문화 심사소위	안문석(위원장) 김 용 범 김 상 태 김 홍 주 김 선 수 이 상 윤 사공영호	고려대 교수(규제개혁위원)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연구원 한국관광연구원 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송실대학교 교수 연세대 교수 평택대 교수
행정·복지 심사소위	이계민(위원장) 한 영 주 권 혁 주 김 태 윤 박 찬 성 이 강 현 정 우 진 정 윤 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성균관대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과소비추방 범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소비자보호원 국장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명지대 교수
농림·해양 심사소위	이민화(위원장) 김 영 무 이 우 섭 백 남 훈 신 종 익 김 태 곤	벤처기업협회 회장(규제개혁위원) 한국선주협회 이사 수산업협동조합 부장 농업협동조합 이사 전경련규제개혁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환경·정보 심사소위	양승두(위원장) 김 낙 주 오 정 무 이 현 식 염 용 섭 황 진 택	연세대학교 교수(규제개혁위원) 서울산업대 교수 과학기술정책연구소 박사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실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정경쟁연구실장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박사

나. 규제심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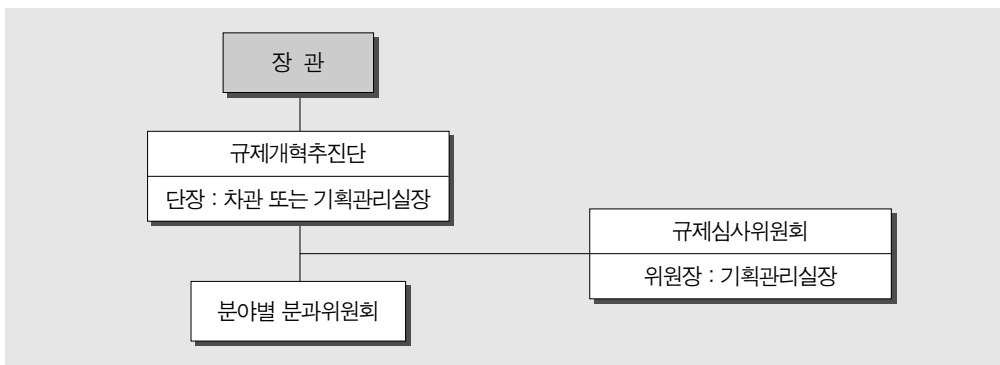
■ 기능

-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 행정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행정기능의 민간위탁 및 이양촉진에 관한 사항 심의
-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 구성

- 민간인,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부처별 10인~20인)

중앙부처 규제개혁 추진기구도



2.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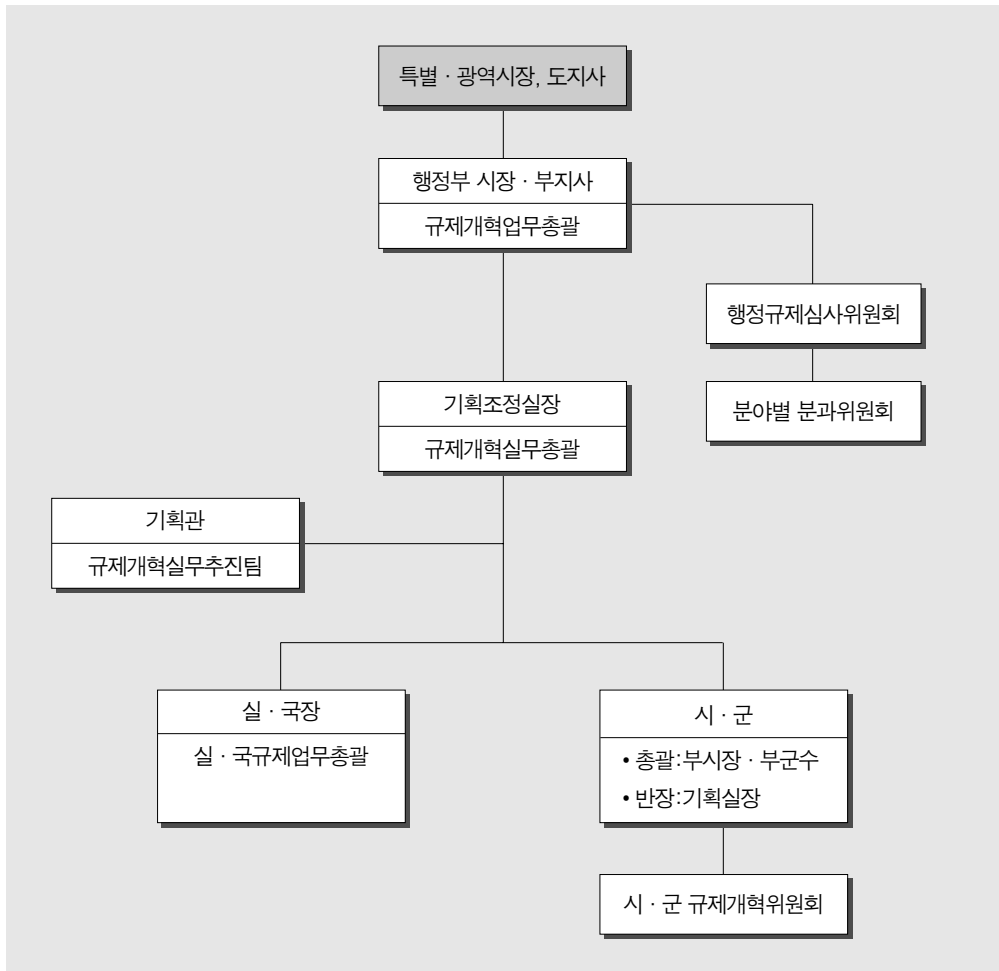
가. 기능

-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의 정비
- 규제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등

나. 구성

- 시·도, 시군구별 10~20인 내외의 민간인,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 체계



| 3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현황 및 상정안건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1차	1998. 4. 18	제1호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2호	• 분과위원회 구성 및 간사위원 지명	의결보고사항	원안의결
		제3호	• 법령미근거 행정규제 정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2차	1998. 4. 24	제4호	• 1998년 규제개혁 종합지침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5호	• 전문연구기관 지정안	의결사항	보 류
		제6호	• 외국인투자관련 규제개혁방안(Ⅰ)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7호	• 규제개혁 기본계획시안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8호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일정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차	1998. 5. 8	제9호	• 주택건설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0호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완화 방안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1호	• 규제개혁 우선추진과제 추진상황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2호	• 행정규제 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지침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4차	1998. 5. 22	제13호	• 자동차관련분야 규제개혁방안(Ⅰ)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4호	• 물류·운수분야 규제개혁방안(Ⅰ) - 해운항만부문 규제개혁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5호	• 우선추진과제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일부보류
		제16호	• 전문연구기관 지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5차	1998. 6. 5	제17호	• 풍속영업 및 식품접객업관련 규제 개혁방안(Ⅰ)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8호	• 자동차관련분야 규제개혁방안(Ⅱ)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6차	1998. 6. 19	제19호	• 건설분야 규제개혁방안(Ⅰ)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20호	• 물류·운수분야 규제개혁방안(Ⅱ)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21호	• 벤처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Ⅰ)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22호	• 관광산업관련 규제합리화 방안(Ⅰ)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23호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규제 심사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24호	• 법령미근거 행정규제 정비 추진상황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7차	1998. 7. 3	제25호	• 주차장관련 규제개혁방안(Ⅰ)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26호	• 물류·운수분야 규제개혁방안(Ⅱ-1) (판매·물류시설의 설립관련 규제 개혁방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27호	• 1998 규제개혁실적평가 및 향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28호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일정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8차	1998. 7. 16	제29호	• 수출입통관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30호	• 「증권투자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사전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1호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중 개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2호	• 항만행정 간소화 방안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3호	• 도심지주차 정책 방향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4호	• 1998부처별 기존규제 정비계획종합 및 심사계획보고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5호	• 1998상반기 신설·강화규제법령안 심사현황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9차	1998. 8. 14	제36호	• 1998부처별 기존규제 정비계획종합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7호	• 1998통계청 규제정비계획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8호	• 1998조달청 규제정비계획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9호	• 1998관세청 규제정비계획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9차	1998. 8. 14	제40호	• 1998 국세청 규제정비계획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1호	• 주류 분야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2호	• 항만하역 노무공급제도 개선방안	의결사항	보 류
		제43호	• 건설기계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4호	•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0차	1998. 8. 28	제45호	• 1998 농촌진흥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6호	• 1998 해양경찰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7호	• 1998 산림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8호	• 1998 경찰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1차	1998. 9. 11	제49호	• 1998 통일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50호	• 1998 외교통상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일부보류
		제51호	• 1998 국방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일부보류
		제52호	• 1998 병무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53호	• 1998 국가보훈처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54호	• 풍속영업관련 규제개혁방안(Ⅱ)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55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심사	의결사항	보 류
제12차	1998. 9. 18	제56호	• 1998 금융감독위원회 규제정비계획 심사 조정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57호	• 1998 중소기업청 규제정비계획 심사 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58호	• 1998 특허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일부보류
		제59호	•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3차	1998. 9. 25	제60호	• 1998 기상청 규제정비계획심사 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61호	• 1998 과학기술부 규제정비계획 심사 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13차	1998. 9. 25	제62호	• 1998 정보통신부 규제정비계획 심사 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63호	• 1998 환경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일부보류
		제64호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4차	1998. 10. 2	제65호	• 1998 행정자치부 규제정비계획 심사 조정안	의결사항	보 류
		제66호	• 1998 교육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67호	•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5차	1998. 10. 16	제68호	• 1998 행정자치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일부보류
		제69호	• 1998 재정경제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일부보류
		제70호	• 1998 산업자원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71호	• 1998 건설교통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일부보류
		제72호	• 1998 철도청 규제정비계획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73호	•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부 결
		제74호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중 개정령 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6차	1998. 10. 26	제75호	• 1999 규제정비지침(안)	의결사항	보 류
		제76호	• 1998 문화재관리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77호	• 1998 해양수산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78호	• 「수상레저안전법 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보 류
		제79호	• 1998 농림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80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7차	1998. 10. 30	제81호	• 1998 법무부 규제정비계획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일부보류
		제82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 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83호	• 1998 보건복지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84호	•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85호	• 1998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제정비계획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86호	• 1998 노동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87호	• 1998 문화관광부 규제정비계획 심사 조정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88호	• 1998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89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 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90호	• 「자산유동화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보 류
		제91호	• 「증권투자회사감독 규정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92호	•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재심사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93호	• 1999 규제정비지침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8차	1998. 11. 6	제94호	• 1998 부처청별 기존규제추가정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95호	• 1998 기존규제 정비결과 종합보고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96호	•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97호	• 「수상레저안전법 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2차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98호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중 개정법률 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부 결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19차	1998. 11. 20	제99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재심사	의결사항	부 결
		제100호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01호	• 「은행법개정안」에 대한 긴급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02호	• 「주택저당채권유동화중개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긴급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20차	1998. 12. 4	제103호	• 건설현장 안전관리합리화 방안	의결사항	보 류
		제104호	• 환경 분야 각종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05호	•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개정안」에 대한 긴급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06호	• 「담배소매인 거리제한폐지」에 대한 재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07호	• 1998 하반기 신설 · 강화 규제법령안 심사실적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08호	• 규제개혁관련 법률정비 추진현황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21차	1998. 12. 18	제109호	• 「은행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긴급 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10호	• 「무보증사채신용평가전문기관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대한 긴급 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11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보 류
		제112호	• 1998 부처청별 기존규제폐지계획 (2차분)	보고사항	원안접수

※ 1998년 총안건 112건, 의결안건 93건(원안의결 48, 수정의결 23, 보류 9, 일부보류 9, 부결 4), 보고안건 19건(원안접수 19)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22차	1999. 1. 29	제113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 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14호	• 1999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15호	• 지방자치단체의 1999 행정규제정비 추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16호	• 1998 규제개혁법률 입법추진현황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17호	• 1999 핵심과제 추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18호	• 1998 규제개혁백서 발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19호	• 법령미근거 행정규제 정비실태 점검결과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20호	• 1999 OECD 규제개혁 국별심사준비 관련보고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23차	1999. 2. 12	제121호	•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22호	• 「연안어장환경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신설규제심사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23호	• 외국인유학생 출입국제도 규제개혁 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24호	•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25호	•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 규제심사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26호	• 규제등록 및 전산화 추진현황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24차	1999. 2. 26	제127호	•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28호	• 「남북협력기금법 중 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29호	• 각종 영향평가제도 통합·개선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25차	1999. 3. 12	제130호	•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기준(고시)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 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31호	•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방안(Ⅰ)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32호	• 자동차운전속도제한관련 제도개선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26차	1999. 3. 26	제133호	• 경쟁제한적인 수출입 및 관련산업에 대한 규제개선방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34호	• 1999 부처별 규제정비계획 심사 · 조정방안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35호	• 1998 규제개혁유공자 포상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27차	1999. 4. 9	제136호	• 전자자격사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37호	•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방안(Ⅱ)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38호	•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상시 점검체제 운영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28차	1999. 4. 23	제139호	•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기준 중 개정 고시안」 신설 · 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40호	• 의료용구산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41호	• 비업무용 공장용지 종과세제도 및 공장 업종구분 개선방안	의결사항	보 류
		제142호	• 규제개혁위원회의 주요 업무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29차	1999. 5. 7	제143호	• 주택공급 자율성 확대 방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44호	• 비업무용 토지제도 및 공장업종구분 개선방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45호	• 오수처리시설 설치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보 류
		제146호	•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47호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방안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48호	• 1999 OECD 규제개혁 국별심사 준비관련 보고(Ⅱ)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0차	1999. 5. 21	제149호	• 오수처리시설 설치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50호	• 「굴뚝자동측정기 부착대상사업장 측정항목 및 부착시기지정고시」 신설 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51호	•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 출연금 제도개선 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52호	• 「농업인협동조합법 제정안」 신설 · 강화규제심사	보고사항	원안접수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31차	1999. 6. 4	제153호	• 항만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 개혁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54호	• 자동차운수사업 진입규제 개선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55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56호	• 산업현장 안전기준 등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57호	• 보세구역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2차	1999. 6. 18	제158호	• 식품 · 의약품 안전관련 규제개선방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159호	• 석유 · 화학시설 등의 안전관리합리화 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60호	• 농업관련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개선 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61호	• 「지역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중 강화규제심사	의결안건	보 류
		제162호	• 규제총량 변경상황 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33차	1999. 7. 2	제163호	• 건설현장 안전관리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64호	• 증명민원 개혁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65호	• 비영리법인 설립 · 감독관련규제 개혁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34차	1999.7.16	제166호	• 「안마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재심사	의결안건	수정의결
		제167호	• 전문자격사관련 규제개혁 추진방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제168호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선방안	의결안건	보 류
		제169호	•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심사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69-1호	• 개발제한구역관리 개선방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170호	•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 결과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171호	• OECD 규제개혁심사팀 방안결과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35차	1999. 7. 30	제172호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선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73호	• 1999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74호	• 1999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75호	•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2차)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76호	•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작업단」 운영방안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6차	1999. 8. 13	제177호	• 1999년 노동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78호	• 1999년 산림청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79호	• 승강기 검사제도 개선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80호	• 약용작물(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 관련 규제개혁	의결안건	보 류
		제181호	• 중앙일보 「규제개혁 기획보도」관련 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37차	1999. 8. 27	제182호	• 1999년 교육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83호	• 1999년 정보통신부 잔존규제 정비 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84호	• 1999년 건설교통부 잔존규제 정비 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85호	• 약용작물(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 관련 규제개혁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38차	1999. 9. 3	제186호	• 1999년 환경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87호	• 1999년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잔존규제 정비계획(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88호	• 기업의 준조세관련 규제개혁(Ⅰ)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89호	• 1999년 경찰청 잔존규제 정비계획 (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81호	• 규제개혁 체감효과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	보고안건	원안접수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39차	1999. 9. 17	제191호	• 자격제도 규제개선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92호	• 1999년 과학기술부 잔존규제 정비 계획(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93호	• 1999년 농림부 잔존규제 정비계획(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94호	• 1999년 문화관광부 잔존규제 정비 계획(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40차	1999. 10. 1	제195호	• 1999년 재정경제부 잔존규제 정비 계획(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96호	• 1999년 금융감독위원회 잔존규제 정비계획(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97호	• 1999년 산업자원부 잔존규제 정비 계획(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98호	• 1999년 행정자치부 잔존규제 정비 계획(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99호	• 1999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 안전청)잔존규제 정비계획(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00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개정 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01호	• 2000년 규제개혁추진 지침(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02호	• 교육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중 의결유보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03호	•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3차)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41차	1999. 10. 29	제204호	• 양식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05호	• 저작권 행사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06호	• 「약사법 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07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08호	• 「전기사업법 개정안」 신설 · 강화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09호	•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 제도개선방안 추진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41차	1999. 10. 29	제210호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규제심사 결과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42차	1999. 11. 12	제211호	• 지정진료제도 개선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12호	• 향만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13호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제개선 방안 조정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14호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지원단 운영 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15호	• 기업규제개혁작업단 운영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16호	• 경쟁제한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17호	• 타조의 식용허용관련 규제개선방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43차	1999. 11. 26	제218호	• 민간건축물 공사감리관련 규제개혁 방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제219호	•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신설·강화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20호	• 1999년도 규제개혁백서 발간계획	의결안건	원안접수
제44차	1999. 12. 10	제221호	• 농수산물가공 및 식품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22호	• 소방관련 법령·규제정비계획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23호	• 증명민원서류감축 추진상황 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24호	• 규제자유지역 설치방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25호	• 제4차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26호	• “고시등” 하위규정 일제정비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45차	1999. 12. 24	제227호	• 문화산업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28호	• 「노동조합법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29호	• 「대학원·박사과정 설치관련 규제」 재심사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30호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31호	• 규제대안 개발연구용역 결과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1999년도

규제개혁백서

발행처	규제개혁위원회/국정홍보처
발행인	오홍근
편집제작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편집협력	미담기획
인쇄·제본	일지사
발행일	2000. 3. 18
ISBN 89-86981-22-X 13350	

규제신고센터 안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206호 규제개혁위원회(우: 110-760)
전화 (02) 722-9797
팩스 (02) 720-2056
www.opm.go.kr
www.rrc.go.kr

국정홍보처 「열린 정부 알림 마당」

www.allim.go.kr